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華營日錄

경기도박물관도서실
012265

경기도박물관
GYEONGGI PROVINCIAL MUSEUM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華營日錄

경기도박물관
GYEONGGI PROVINCIAL MUSEUM

발 간 사

우리 박물관에서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도민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명실 공히 경기도의 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 터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술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문서·전적 국역사업도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역하여 발간하는 『華營日錄』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徐有榘(1764-1845)가 水原留守로 재임하면서 쓴 행정일기로 2년간의 관직생활을 일기형식으로 남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기가 전해져 오고 있지만, 경기도나 수원지역의 지방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쓴 관직생활일기는 그 예가 드물어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자가 생존했던 시기는 영조-헌종 시대로 소위 실학의 시대에서 개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전통적인 양반 지배체제가 동요하고 백성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화영일록』은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알려주는 사료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유구는 家學을 이어받아 농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실학자로서 『林園經濟志』, 『種藷譜』를 비롯한 많은 농업관계 서적을 편찬하였는 바 이 책에서도 그러한 그의 관심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혼란스런 시기에 일본으로 흘러 나간 많은 문화재중의 하나로서 현재 日本 오오사카府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소장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가 조선시대 우리의 역사와 생활상을 살펴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소장처로서 이번 국역을 허락해 주신 일본의 오오사카 부립도서관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국역 작업을 해주신 이해형 선생님, 그리고 해제의 옥고를 보내주신 정창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책자 출간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004년 2월

경기도박물관장 이 종 선

□ 번　　역
이해형(前 한양대학교 고서 담당 사서, 現 명지서당 훈장)

□ 해　　제
정창렬(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교　　열
김학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자료 전문위원)

□ 교정 및 편집
양상훈(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박계원(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차 례

Ⅰ. 『화영일록(華營日錄)』에 대하여 (정창렬) / 1

Ⅱ. 『화영일록(華營日錄)』 본문(本文) / 13

Ⅲ. 부 록 / 383

- 조선왕조실록 서유구 관련 기사 발췌
- 서유구 연보
- 달성서씨 서유구 가계도

※ 영인본(影印本)은 『화영일록(華營日錄)』, 1991년, 아세아문화사刊 을 참조하기 바람.



사진1. 서유구 초상(徐有榘肖像)
조선후기, 지본설채, 76×38cm, 오한근 소장



사진2. 서종옥 편지(徐宗玉簡札)

45×32cm, 강경훈 소장



사진3. 서명응 편지(徐命膺簡札)
1778년(정조2), 46.7×36.7cm, 강경훈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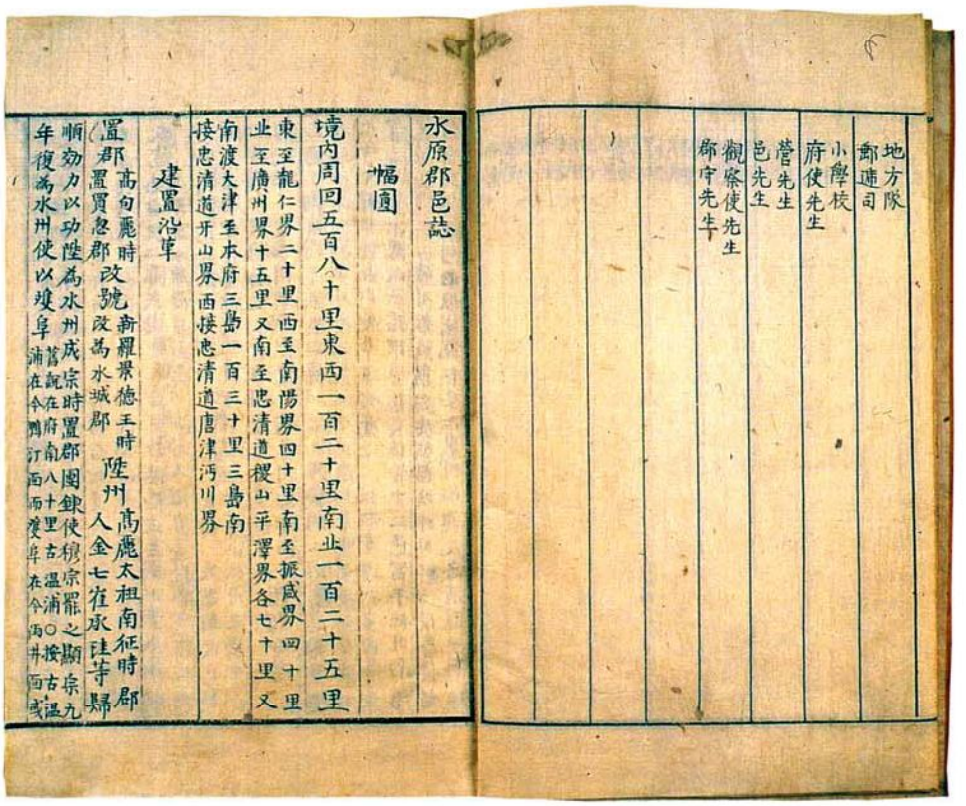

地方隊
郵遞司
小學校
府使先生
營先生
邑先生
觀察使先生
郡守先生

水原郡邑誌

幅圓

境內周回五百八十里東西一百二十里南北一百二十五里東至龍仁界二十里西至南陽界四十里南至振威界四十里北至廣州界十五里又南至忠清道稷山平澤界各七十里又南渡大津至本府三島一百三十里三島南接忠清道牙山界西接忠清道唐津沔川界

建置沿革

置郡高句麗時置買忽郡改號新羅景德王時改為水城郡陞州高麗太祖南征時郡人金七崔承珪等歸順効力以功陞為水州成宗時置郡團鍊使穆宗罷之顯宗九年復為水州使以瓊阜舊說在府南八十里古溫浦○按古溫浦在今鴨汀面而瓊阜在今丙井面或

사진4. 수원읍지(水原邑誌)

1899년(광무 3), 21.5×32.5cm, 장서각 소장



사진5. 화성(華城)



사진6. 화성행궁(華城行宮)



사진7. 화령전(華寧殿)



사진8. 융릉(隆陵 – 舊 顯隆園)



사진9. 건릉(健陵)



사진10. 축만제(祝萬堤)



사진11. 만년제(萬年堤)

華營日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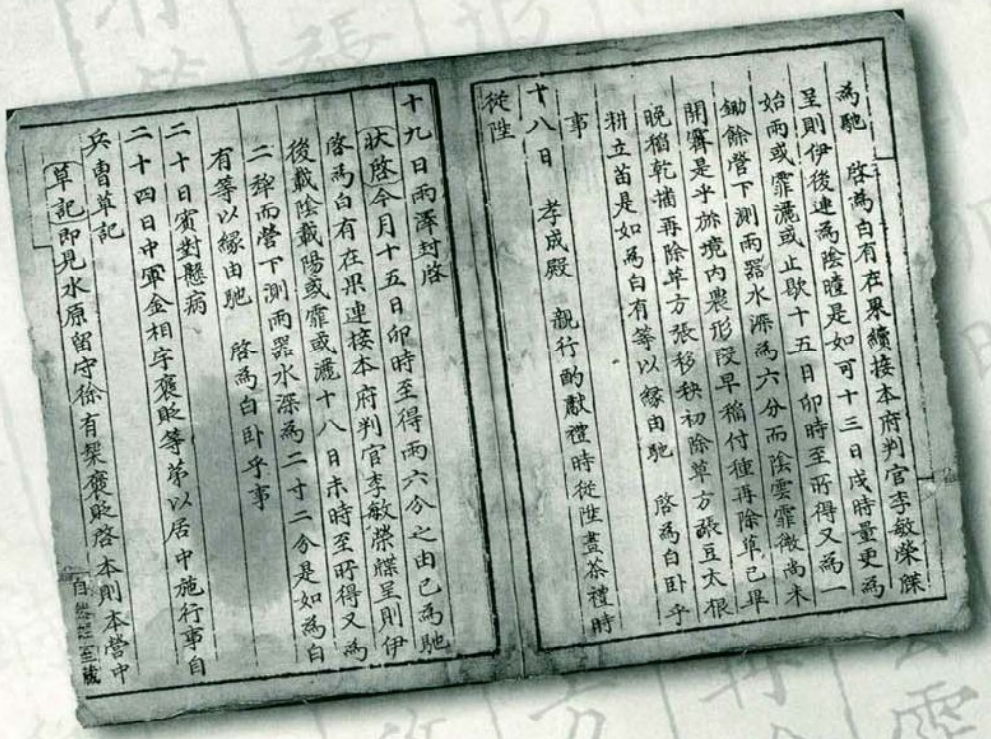

『華營日錄』에 대하여

鄭昌烈(한양대학교 명예교수)

『華營日錄』은 楓石 徐有榘(英祖 40, 1764-憲宗 11, 1845)가 水原留守로 있었을 때의 日記이다. 서유구는 그의 나이 73세 때 즉 1836년(憲宗 2년) 1월 11일에 수원부 유수에 임명되었다. 1월 15일에 上疏 辭職하였으나 不允되어 1월 26일에 辭朝하여 이튿날 수원부에 도임하였다. 서유구는 이듬해인 1837년(憲宗 3년) 12월 2일에 知經筵에 임명되고, 12월 12일에 수원부를 떠나 上京하였다. 이 日記는 丙申年(1836, 憲宗 2) 1월 1일에서 시작되어 丁酉年(1837, 憲宗 3) 12월 12일에 끝나고 있는 바, 2년에서 19일이 모자라는 기간 동안의 日記이다. 따라서 이 日記의 내용은 水原府 留守로서의 行政日記인 셈이다.

우선 서유구의 生涯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유구는 1764년(영조 40) 11월 10일에 태어나서 1845년(헌종 11) 11월 1일에 82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本貫은 達城이었다. 아버지는 吏曹, 禮曹, 兵曹, 刑曹의 判書를 역임한 徐浩修였고, 할아버지는 大提學, 平安道 觀察使를 지낸 徐命膺이었다. 字는 準平이었고, 號는 楓石이었다. 祖父 서명응(1716-1787) 때에 文名과 學名을 드날리게 되었고, 生父 서호수(1736-1799)와 仲父 徐瀅修(1749-1824), 그리고 서유구 자신에까지 家門의 榮光이 지속되었다.

서유구의 가문은 宣祖의 駙馬인 達城尉 徐景霌(1579-1643) 때에 顯閥로 등장하여 17, 18 세기 黨爭과 蕩平政局에서 少論의 입장에 있었다. 서명응은 1755년의 羅州壁書事件 이후 老論 주도의 蕩平政局이 성립되었을 때, 英祖의 蕩平政策에 협조하는 緩論으로 態度를 정한 이후 老論과도 密着된 關係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得勢하였고 따라서 학문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루어 갔다. 특히 그의 둘째 아들 서형수를 노론의 洛下山林이었던 洪啓能에 보내어 修學시키고, 서형수는 노론인 趙榮增의 孫壻가 되고, 또 노론의 金魯謙을 사위로 맞아들였는데, 노론이 政局 主導權을 결정적으로 掌握하였던 英祖 이후 政局에서 서유구의 집안은 노론과 이해관계를 거의 공유하는 측면도 가지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득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명응의 동생인 徐命善(1728-1791)은 英祖 말년 正祖를 제거하려 하였던 洪麟漢을 탄핵하여 正祖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된 이후, 다시 正祖 初年 世道 장악을 꿈꾸던 洪國榮을 축출하는데 일조함으로써 領議政에까지 오르는 큰 榮達을 하고 있었다. 이들 徐氏 一門은 正祖의 각별한 知遇 아래에서 소론 가문으로서는 최고

의 盛勢를 보였다. 특히 이 가문에서는 서명응·서호수·서형수의 학문이 하나의 家學을 이루면서 지속되어 당시 조선의 중앙 학계에서 특이한 빛을 발하였으며, 성장하고 있었던 서유구의 정치적·학문적 위치도 이러한 데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서유구의 생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成長期　1764 - 1790(科擧 及第)
仕宦期　1790 - 1806(政界 逐出)
放廢期　1806 - 1823(政界 復歸)
顯達期　1823 - 1839(致仕)
隱退期　1839 - 1845(逝去)

서유구의 생애를 위에 입각하여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서유구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서명응과 중부 서형수, 그리고 愚山 李義駿에게서 文章學과 經學을 공부하였다. 20세 전후의 시기에는 아버지인 서호수와 할아버지 서명응과도 밀접히 교류하고 있었던 朴趾源·李德懋·成大中·柳得恭·朴齊家·南公轍 등과 交遊를 맺었으며, 특히 박지원으로부터는 깊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성장기의 서유구는 평안감사로 가는 할아버지 서명응을 따라서 평양에 머물기도 하였고, 서울과 先山이 있는 長湍에서 讀書하기도 하였다. 23세 때인 1786년에는 生員試에 합격하였고, 27세 때인 1790년에는 文科에 급제함으로써 官人 생활을 시작하였다. 奎章閣과 藝文館의 직책을 거쳐 純祖 初年에 義州府尹과 成均館 大司成, 弘文館 副提學을 거치기까지 서유구의 官歷은 주로 書籍의 편찬과 교열 등 학구적 활동을 겸하는 職이 많았고, 특히 奎章閣에서의 官職은 많은 資料 閱覽이 가능하여서 서유구가 많은 知識을 蓄積할 수 있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서유구는 27세 때인 1790년(正祖 14)에는 「農對」를, 35세 때인 1798년(正祖 22)에는 正祖의 求言敎에 응하여 「淳昌郡守應旨疏」를 作成하였는데, 농업개혁론으로서의 提起인 것이었다. 농업개혁을 위한 방안의 提起이기는 하였지만, 20代와 30代의 젊은 시절에 작성한 것이어서, 18세기 農學思想의 일반적 경향을 크게 벗어날 만큼 出衆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후년의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은 있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務農之道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첫째는 限田制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당시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고 있었던 無田農民을 구제할 수 있고, 또 인구는 적고 땅은 넓은 곳에서 소수의 농민이 땅을 많이 경작함으로써 생기는 폐단도 시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土地所有의 上限을 정함으로써 無田農民에게는 耕作地가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소수의 농민이 많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생기는 農作의 不實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水利施設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업에서의 水利는 사람에게서의 핏줄과 같이 절대 불가결의 것이니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유구는 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의 정책화를 제언하였다. 중국 고대에 있었던 力田科의 제도를 살려서, 각 郡마다 富戶로 하여금 募丁赴役토록 하되, 매일 100夫 이상 就役하게 되면 그로 하여금 監督을 시키고, 일이 끝난 후에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道에서는 募丁의 多寡, 赴役의 日數, 水利施設 疏鑿의 廣狹 등을 살펴서 이들 富戶에게 樞銜이나 資級을 授與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農器具를 改良하여 농민들이 노력은 적게 들이고 소출은 많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農器具를 모두 일정한 규격으로 제작 보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務農之道에 관련하여 서유구가 특히 提論한 것은 新農書 編纂에 대한 提言이었다. 農業을 발달시키려면 그 指針書로서 農書가 꼭 필요하였다. 당시에도 「農家集成」이나 「山林經濟」와 같은 훌륭한 農書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엽에 걸쳐서 편찬된 것으로서 당시의 조건에는 맞지 않는 바도 있었다. 「농가집성」이나 「산림경제」로부터 1 세기 이상이나 지난 당시로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農書가 꼭 필요하였다. 「산림경제」의 증보편이 나오고 「北學議」와 「課農小抄」가 저작되고, 서유구의 할아버지인 徐命膺이 「攷事新書 農圃門」을 짓고, 아버지인 徐浩修가 「海東農書」를 짓고, 서유구 자신은 「林園經濟志」를 짓는 등 徐氏家가 家學으로서 農學을 연구한 것도 모두 이러한 시대적 要請에서 오는 것이었다. 朝廷에서 전국의 지식인들로부터 應旨進農書를 받아 新農書를 편찬하려고 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유구는 응지진농서를 통해서 농서를 편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서유구는 자료수집과 농업현실의 파악을 위해서는 각 道마다 1 局을 설치하여 농업전문가를 배속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그 지방의 風土, 産物, 播耨의 早晩, 농업개량에 관한 경험과 성패, 農圃訪問記 등을 작성 보고케 하며, 이것이 모두 모이면 朝廷은 내각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古今의 群書를 참고하고 절충함으로써, 당시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農書를 종합하여 편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순창군수로서 應旨疏를 올린 이듬해인 그의 나이 36세 때, 1799년(正祖 23) 1월에는 生父인 徐浩修가 他界하였다. 38세 때인 1801년(純祖 1)에 서유구는 司憲府 掌令, 刑曹參議, 承政院 同副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39세 때인 1802년(純祖 2)에는 義州府

尹이 되었고, 41세 때인 1804년(純祖 4)에는 左副承旨, 刑曹參議, 驪州牧使를 역임하였다. 42세 때인 1805년(純祖 5)에는 成均館 大司成이 되었고, 43세 때인 1806년(純祖 6) 1월에는 弘文館 副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같은 해, 僻派였던 右議政 金達淳이 朴致遠 등을 褒贈하라고 陳奏하였다가 刑曹參判 趙得永 등 時派로부터 正祖의 遺志에 違背된다는 공격을 받고, 洪州牧을 거쳐 南海岸에 安置되었다가 다시 康津縣에 移配되어 賜死되는 이른바 金達淳獄이 발생하였는데, 이 獄事에 연루되어 仲父 徐瀅修가 流配되자 서유구는 放廢되어 이후 隱居를 계속하게 되었다.

이 방폐는 18년간이나 계속되었던 바, 그의 나이 61세 때인 1824년(純祖 24)에는 仲父 서형수가 流配地에서 他界하였고, 서유구는 敦寧府 都正으로 정계에 복귀하였고, 곧 이어 강원도 淮陽府使로 나갔다. 이후 서유구는 평온한 官人 생활을 보내었는데, 62세 때인 1825년(純祖 25)에는 右副承旨가 되고 이어서 楊州牧使, 江華留守, 大司憲, 工曹判書를 지내었고 66세때인 1829년(純祖 29)에는 養父인 徐澈修가 他界하였다.

68세때인 1831년(純祖 31)에는 刑曹判書를 지내었고, 이어서 備邊司 提調, 藝文館 提學, 戶曹判書, 弘文館 提學을 역임하였고, 70세 때인 1833년(純祖 33)에는 全羅道 觀察使로 부임하였다가 2년 후인 1834년에는 돌아와 藝文館 提學, 議政府 左參贊, 奎章閣 提學, 兵曹判書를 지내었고, 73세 때인 1836년(憲宗 2)에는 水原府 留守가 되어 이듬해인 1837년(憲宗 3) 12월 2일까지 11개월 가량 在任하였는데 이 때의 行政日記가 本書 『華營日錄』이다. 이후 大司憲을 거쳐 1845년(憲宗 11) 11월 1일 廣州 斗陵의 別墅에서 侍史의 彈琴을 들으며 逝去하였다. 이듬해인 1846년(憲宗 12)에 長湍 金陵里 先塋에 묻히었다.

서유구의 학풍은 서울의 燕巖 一派 학자들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는데, 18세기 후반의 多岐한 학문경향, 이를테면 徐瀅修가 말한 義理之學, 名物之學, 詞章之學, 經濟之學의 四儒學分科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수용되고 있었고, 그것들을 종합하는 데에 서유구의 학풍이 형성되고 있었다. 서유구의 義理之學의 이해 태도는 주로 서명응과 서형수·이의준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18세기까지의 정통적인 학문 태도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 당시까지의 조선 주자학계는 노론이 주도하였고, 주자주의적 의리지학이 중심이었으며, 心性理氣와 禮論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소론학자였던 조부 서명응은 이와는 달리 博學的인 名物度數之學을 주로 연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朱子 중심의 宋代 性理學에 집착하던 당시의 학풍을 반성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서명응의 이러한 개성적 학풍은 그의 아들인 서호수와 서형수에게 계승되었고,

이러한 家學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서유구는 전통적인 心性論 위주의 義理之學에서 벗어나 家學의 名物度數之學的 기반과 중국 학술의 적극적 수용 태도에 힘입어 經學 연구에 있어서도 考證學的 태도와 방법을 수용하였다.

經學에 대한 서유구의 기본 입장은 朱子의 傳을 주로 하고 古註를 참조하자고 하였는데, 經典 註釋에는 朱子의 傳이 토대가 되어야 하지만, 올바른 經典의 해석은 漢儒의 註疏가 근본이 된다고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한유의 주소가 宋儒의 箚記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經學思想上의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었다. 서유구는 기존의 심성론 위주의 주자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서유구는 전통적 의리지학에 속박되지 않고 漢學의 수용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家學으로서의 名物度數之學的 기반 위에서 淸朝의 經學考證에 자연스럽게 접목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義理之學에서 名物度數之學과 經濟之學으로 서유구의 관심이 옮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서유구의 文學-詞章之學은 어린 시절 조부 서명응과 중부 서형수에게서 唐宋八家文을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유구의 문학에 대한 태도는 특히 박지원에게서 크게 영향받고 있었다. 박지원은 서유구의 형인 徐有本에게 이제 班固와 司馬遷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결코 반고와 사마천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今之人'으로서 '今之文'을 써야 한다는 '法古創新'의 문학사상을 고취하였다. 당시 일반적인 文士는 法古에 주력함에 반하여 박지원은 創新에 주력하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많은 비방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에서 출발하되 전통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전통 자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박지원의 문학관은 풍석 집안의 문학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었고 특히 서유구는 박지원의 지도를 직접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맺어진 박지원과 서유구의 연관은 박지원이 별세한 훨씬 뒤 다시 박지원의 손자 朴珪壽가 서유구를 추종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박지원의 사상은 서유구의 經濟之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박지원에게 있어서 經濟之學은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로서 士가 民事에 어두움을 반성하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農·工·商業의 원리를 아울러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實學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또한 서유구의 태도이기도 하였다. 서유구는 또한 우리나라의 士가 高談性命은 하지만 五穀의 이름도 분별하지 못하며, 讀書窮理를 하는 선비라도 스스로 經典의 '治人食人之義'에 거창하게 의탁해서 농업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지방관이 되었을 때 곤란을 겪는다고 하여 당시 士들의 학문 태도를 비판하였다.

나아가서 서유구는 士로서의 심각한 반성 위에 생산활동에 대한 士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었고, 당시 사회의 주된 생산기반이던 농업을 지도할 農學이 士에게 필

수적인 학문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서 서유구는 그의 방폐기에 農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필생의 대작 「林園經濟志」을 저술하였다. 여기에서 徐氏 一家의 家學인 農學이, 서명응의 「고사신서 농포문」, 서호수의 「해동농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원경제지」에 앞서 1820년 경에는 「擬上經界策」이 저술되었는데, 여기에서의 '屯田論'에서 서유구의 경제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田結制나 量田方案의 개선 문제도 포함되고 있었지만 이 시기의 농업경제상의 근본적인 모순을 타개한다는 農業變革의 論理의 核心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요컨대 土地所有關係나 農業經營關係의 전면적인 변혁을 목표로 하되 현실사회에서의 실현성 여부를 고려하여 점진적이고도 무리 없는 방법으로써 이를 성취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요약하여 규정한다면 國營農場的인 農業經營論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유구가 둔전론에서 국영농장적인 농업경영을 구상하고 제기한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가의 財源을 넓힘으로써 국가의 富力을 늘리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그는 둔전을 설치하여, 地力을 철저하게 이용하도록 농민들에게 農法을 교육함으로써 農業生産力을 발전시키려 하였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富 자체를 늘리려고 하였다.

둘째 농민층의 分化에 따라 零細小農層이나 無田農民層이 격증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農地 없는 농민들에게 農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둔전론을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이것은 오랜 연구와 모색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서유구는 본래 井田制를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생각하였지만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그 대안으로서 18세기의 대표적인 토지개혁론인 限田論을 젊은 시절의 農對나 應旨農政疏에서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전론으로서는 당시의 농업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전제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소유의 제한 즉 지주층에 대한 억제가 어려운 일임은 물론이지만 농업개혁을 위해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조정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까닭이었다. 서유구는 노년기에 이르면서 그리고 농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면서 토지를 에워싼 경제적 평등의 문제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농업생산의 사회화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문제로서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영농장제적인 농업경영론으로서 둔전제를 구상하고 이를 통해서 위에서의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 하였다. 둔전을 통해서 농민층의 경제적 평등도 이루고 또 농업생산을 사회화하여 생산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셋째 井田論으로서 대표되는 일련의 토지개혁론이 실행되려면 토지겸병자들이 소

유하고 있는 토지의 몰수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던 바, 이러한 문제를 피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둔전론이 모색되었다고 보인다.

당시에 토지겸병의 폐해의 개혁은 필수의 것으로서 공인되고 있었지만, 개혁에 대한 토지겸병자의 반발 또한 필연의 것이어서, 그 반발의 고려가 토지개혁 구상에서 필수의 것이기도 하였다. 서유구는 어떻든지 이상적인 토지개혁안으로서의 井田制에 가까운 농업개혁을 하되 지주층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구상으로서 국영농장으로서의 屯田論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와 배려에서 전개되는 屯田論은 內地屯田으로는 서울에 京屯, 地方에 營屯·邑屯을 두며, 邊地屯田으로는 鎭堡屯(官屯)·民屯을 두는 것이었다. 京屯은 동서남북의 4個屯을 두는데 각각의 屯田은 300 頃 혹은 200 頃이 되게 하는데 다 합한 면적이 1,000 頃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營屯은 각도의 營下의 근처에다 農場을 설치하는데 4,5백경 내지 7,8백경 정도로 하고, 邑屯은 고을마다 설치하는데 7,8십경 내지 數百頃으로 하였다. 이상 경둔, 영둔, 읍둔은 官有地 외에 起墾도 하고 買入도 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에 설치된 屯田을 경영하는 데에는 운영규정이 있어야 하였으니 農場의 經營規則이다. 첫째 數百頃이나 되는 農場을 10 頃 단위로 세분하고 이를 하나의 경영단위로서 삼으려고 하였다. 10 頃이라고 할 때의 頃은 結負法을 개정하여 頃畝法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할 때의 단위로서 1 頃은 대략 4,444 坪(약 1.5 町步, 약 30 斗落)이었으니 10 頃이면 44,444 坪, 약 15 町步, 약 300 斗落의 넓이였다.

10 頃의 단위 農場에는 5 世帶의 農家와 耦犁(一犁駕雙牛) 하나, 牛 4 頭, 車 2 乘이 배정되었다. 5 세대의 농가가 10 경의 농지를 집단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들 농민에게는 기본적 생산수단이 농민의 소유물로서는 수여되지 않았고 따라서 농민들은 국유의 農場을 국유의 생산수단으로서 공동으로 경작하였으며 그에 대한 代價로서 雇價, 즉 賃金이 지급되었다.

둘째 農場에서 쓰여질 農法과 農地耕作制度에 대한 규정이었다. 우선 耦犁를 雙頭의 牛로써 끌어서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地力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하여 深耕栽培를 한다는 것이었다. 농지경작제도로서는 移秧法과 畎種法 특히 一畝三畎의 代田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앙법은 영남의 방식을, 일무삼견의 대전법은 海西와 關西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을 것을 말하고 있었다. 경작 농민에게는 1 년에 500 내지 700 錢의 雇價를 주면 어렵지 않게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렇게 京屯에서 국영농장의 경영을 위해 각 지방에서 고용한 佃夫들이 수년 동안 영남식 水田農法과 兩西式 旱田農法을 익히게 되면, 이들을 점차 전국의 8道4都에

分遣하여 '以一傳十'하고 '以十傳百'함으로써 水田農業이나 旱田農業에 관한 농지경작제도나 곡물재배법을 敎導케 하려는 것이 서유구의 구상이었다.

셋째 農場經營에 소요되는 經費의 內譯을 정하는 것이었다. 서유구는 대체로 위에서와 같이 農場이 경영되면 평년작으로 쳐도 1 畝에 1 斛, 1 頃에 100 斛을 얻을 수 있고 200頃의 農場이면 2 萬斛, 300 頃의 농장이면 3 萬斛을 추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農場經營에 따르는 經費를 計定하였다. 그 수입의 반은 農場經營을 위한 經費로 쓰고 나머지 반은 저장하였다가 水旱不測之費로 사용한다는 것 즉 일단 정부 수입으로서 國庫에 넣는다는 것이었다.

넷째 이러한 農場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를 選定하는 문제였다. 서유구의 屯田 경영방식은 종래에는 없었고 서유구에 의해서 國富의 增大와 民富의 安定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농업경영론이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의 선발은 중요한 문제였다. 이 둔전은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었으므로 그 선발에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였다. 서유구는 국영농장의 관리 책임자 즉 典農官의 직책에는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새로운 人材로써 임명할 것을 구상하게 되었다. 서유구는 이러한 직책의 적임자로서 力農的인 營農階層을 적임자로서 지목하고 있었다. 이 계층은 農法 전환을 先導하여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유통경제와의 관련 하에 그 경영을 개선하여 상업적 농업을 전개함으로써 富를 증대하여 나가는 속에서 전통적 지주층과의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 사회세력이었다.

서유구는 농촌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가고 시대를 발전시키는 전진적인 자세에 있는 農民像, 그리고 새 시대를 담당할 능력 있는 사회세력을 이러한 사회계층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유구는 국영농장의 典農官에는 이러한 사회계층이 합당할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들이 아니고는 그것을 경영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유구는 모든 屯田에 明農者로써 典農官을 임명하고 그 屯田의 경영을 관장케 할 것을 구상하였다. 서유구는 나아가서 이들 典農官 중에서 農場經營에 특히 功이 있는 자에게는 일반 牧民官으로 轉補할 것도 아울러 구상하고 있었다.

이상은 京屯의 경영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지방의 營屯이나 邑屯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었다. 邊地屯田은 북방의 국경선과 동남해의 도서 및 해안지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국경선 일대를 개척하여 농장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海島 중의 牧馬場을 관서지방으로 옮기고 그 곳을 농장으로서 기간하며, 또 海路의 要地에 농장을 설치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지둔전에서의 농장경영의 내용은 내지둔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지는 않았으니, 국영농장을 꼭 고

집하지도 않았다.

이상과 같은 서유구의 농업개혁론을 동시대의 정약용의 농업개혁론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다른 바가 있었다. 정약용의 공동농장적인 농업경영론이나 독립자영농적인 농업경영론은 봉건지주층의 전면적 또는 점진적인 해체 위에서 농민에 의한 농업경영을 성취하려는 농민 위주의 개혁론이었음에 반하여, 서유구의 농업개혁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실현성 문제가 전제되고 생산력의 발전이란 문제도 고려되는 데에서, 봉건지주층의 전면적인 해체가 아니라 이들의 이용과 전환을 통한 새로운 생산양식의 수립이었으며, 따라서 그 개혁방안은 순전히 농민 위주가 아니라 지주층의 입장도 살리고 있는 점진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일반적인 농업개혁론에서 서유구의 개혁론이 가지는 현실적인 성격이었다고 여겨진다. 서유구는 봉건제 사회경제체제의 핵심으로서의 지주·전호제가 내포하는 기본적인 모순관계를 개혁은 하되, 그 해체로써가 아니라 그 질적인 전환을 통해서 그것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경제기구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屯田論 즉 국영농장을 통한 농업개혁론은 생산력의 발전이나 생산관계의 변혁이라는 점에서는 탁월한 바가 있는 것이었지만, 모든 농민의 경제적 평등화라는 점에서는 미흡한 바가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의상경계책」과 마찬가지로 「임원경제지」도 서유구의 방폐기에 저술이 착수되었다. 서유구는 조부와 父로 이어 오던 家學을 정치적 실의기에 완성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임원경제지」는 全 16 志(그래서 「임원십육지」라고도 일컬어진다) 總 113 卷의 방대한 저술이었다. 「山林經濟」와 마찬가지로 책의 전부가 농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었다. 林園에서의 士의 전체 생활내용이 광범위하면서도 정밀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家學의 전지식체계와 「北學議」 「課農小抄」 등 선배들의 지식체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지식체계들이 18년간의 서유구의 실제적 농업경험에 응축되어 전대미문의 넓은 지식폭과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저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서유구의 저술태도는 「임원경제지」 모두의 「例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취하였던 태도는, 우리 문물에 대한 우선적 이해, 또는 우리 농법에 대한 우선적 이해가 중국의 그것에 대한 것보다 강조되는 것이었다. 서유구는 중국과 조선이 가지는 壤地·習俗 등 자연적·문화적 조건의 차이를 직시하고, 「임원경제지」는 조선의 현실 조건에 적합한 것만을 채용한다고 하여, 조선의 현실이 중국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준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 시기 이미 무분별한 청조 문물의 수용이 행해지고 때로는 현실적 필요를 떠나 그 속으로 매몰되어 가던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서유구가 학문과 사상에서 무비판적인 청 문물·학술의 도입이

아니라 조선의 주체적 현실을 중요시하여 조선의 현실 상황 속에 튼튼히 뿌리 박은 사고를 전개한 것은 주목되는 바이다.

한편 서유구는 「임원경제지」「例言」에서 「임원경제지」가 林園에서의 '鄕居養志之書'로서 편찬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山林經濟」의 편찬 동기와도 같은 것으로 '出則濟世澤民 處則食力養志'하는 士의 기본 태도 가운데에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의 鄕村 生活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시기 京華士族家가 여러 代에 걸친 소비적 서울생활로 생산활동과 유리된 채 벼슬마저 못할 때에는 끝내 그 생활 근거마저 상실, 빈궁한 '遊食之士'로 대거 전락하였던 사회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서유구가 겪어야 했던 18년간의 방폐기에 그가 京華士族으로서 가졌던 임원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와도 관계되는 것이었다. 士로서 그리 빈궁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유구는 당시의 농업·공업의 생산 기술과 유통경제의 활력을 반영한 새로운 지식들을 종합함으로써 생산력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하였다.

「임원경제지」는 서유구의 필생의 저작으로서 방폐기에 저술에 착수하였으나 30여년 후에야 완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장기간의 과정에서 서유구는 「杏蒲志」·「金華耕讀記」·「種藷譜」·「經界策」·「蘭湖漁牧志」·「鏤板考」 등의 農學 및 기타에 관한 일련의 저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임원경제지」를 편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종래의 우리 農學의 체계 위에서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이 시기의 농업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농학자들의 최신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임원경제지」의 내용은 대체로 보아 농업기술론, 경무법론, 농업경영론 등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농업기술론부터 보기로 한다. 우선 경작방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논에서는 이앙법, 밭에서는 1畝 3畎의 代田法의 경작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유구는 農時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농시에 맞는 作物재배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또한 農作物의 品種이 개량되어야 할 것을 제기하였다. 농기구를 改良함으로써 농민들의 노고를 덜게 하려는 것은 일찍부터 서유구의 주장이었다. 施肥技術의 개량, 水利 문제의 해결 역시 서유구가 크게 강조하는 문제였다.

둘째 頃畝法論을 보기로 한다. 서유구는 結負法은 여러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어서 토지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頃畝法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농업경영론에서는 서유구는 收益性과 市場性을 크게 고려하였다. 영세농이면 그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농층이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市場性 고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서유구의 農學思想은 新舊 內外의 農學·農書를 종합하여 19 세기 전반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農學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에서 쫓겨나는 無田農民을 어떻게 하면 구제하고 사회변동의 주체적 담당자인 力農 者階層을 어떻게 하면 존속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小農經濟의 안정과 성장을 圖謀하는 農學思想이었고, 현실적으로 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업경제를 자급자족의 테두리 속에 가두지 않고 전경제기구와의 연계 속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한 농업경영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유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농업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왕의 농학을 종합하려고 하였다. 종래의 농업론 속에 있었던 重農的인 경향과 重商的인 경향을 새로운 차원에서 종합 절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종합 절충의 사고는 儒敎思想에 대한 서유구의 태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서유구는 儒敎思想에서도 주자학적인 인식체계와 漢儒的인 인식체계를 종합 절충하려는 입장이었다.

이제 다시 본서 『華營日錄』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수원유수부에서의 賑恤行政이 잘 나타나고 있다. 1836년 1월 말 서유구가 수원유수로 부임했을 때, 전년의 海溢로 11개면의 民이 춘궁기를 넘기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農耕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2월 말부터 각 면의 饑民을 가려서 이후 4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서 10일 간격으로 7 차례의 賑恤을 실시하였다. 환곡 가운데에 '流絶還穀'이 합하여 700 여석이 있음을 알고 비변사에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받아 들여져서 전액이 탕감되었다. 이에 서유구는 환곡회계의 현실화에 기초하여 환곡이 실제로 분배, 회수되는 운영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화영일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狀啓, 傳令, 甘結, 傳敎 등이다. 朝廷에 올린 狀啓에는, 顯隆園, 華寧殿, 健陵 등의 焚香·祭享 奉審狀啓, 廟堂에 稟議次 上京한다는 狀啓, 품의를 마치고 도로 도임하였다는 장계, 失火事를 보고하는 狀啓, 農形과 雨澤을 보고하는 狀啓, 褒貶狀啓, 年分狀啓, 陵園에의 植木狀啓, 祈雨祭 設行狀啓, 文武科 科擧擧行狀啓, 官門聚點狀啓, 기타 수원부 행정 관계의 狀啓 등이 있다.

수원부 유수로서 각 면(面)에 내린 傳令·甘結은 勸農傳令, 牛酒松三禁傳令 등이다. 廟堂 稟議次 上京해 있을 동안의 判官에의 「勸飭農務甘結」도 있다. 수원부에 내려 온 綸音·傳敎, 그리고 수원부 작성의 節目이 있고, 그날 그날의 행정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일록의 가장 큰 특징은, 農政學者로서의 서유구의 면목이, 그가 지방 행정에서 특히 勸農에 크게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鄕村의 실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일록의 기사 중

에서 조선왕조 후기의 사회경제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雨澤狀啓와 農形狀啓가 자주 그리고 상세히 나오고 있어서, 수원부 그리고 수원부에 이웃한 지역의 田作·畓作 농업의 경작 실상과 農法을 소상하게 알 수 있다. 둘째 牛畜 耗損이 당시의 농업경영에 큰 弊害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丙申 2월 1일의 「傳令 各面」에 보면, 「近因牛禁解弛 牛畜耗損 佃戶畜牛者 什未一二 因此曠農 在在皆然」이라고 하였다. 셋째 賦稅拒納이 班戶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丙申 2월 4일 判官에의 甘結에서 서유구는 章洲面에서는 「一切公納 全然拒納 苟究弊源 專由於班戶主頑拒 而小民亦爲效嚬」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넷째 鄕村에서의 賦稅 등에 관계되는 행정과 勸農行政의 일선 업무는 風憲·勸農官 등 面任과 里任, 大民, 頭目 頭人 등이 책임지고 있는 사실이다. 앞의 頑拒公納의 경우, 留守 서유구는 判官에게 지시하기를, 그러한 拒納의 결과 「無辜之面任輩 替當官納 轉成積逋」함으로 「該面風憲段 必以有風力勤實可堪者 各別擇差」라고 하였다. 풍헌들은 頑拒 班戶의 공납 몫을 자기의 財力으로써 채워 넣어야 하는 책임까지 지고 있었던 것이다.

丙申 2월 1일의 「勸農傳令」에서는 「俾無片土陳荒之弊爲去乎矣 各其面里大小民頭目之任 恪勤董飭」이라 하였고, 같은 날의 「牛酒松三禁傳令」에서도, 三禁을 범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該面面里任輩 亦當重勘」이라 하였는데, 勸農·牛酒松三禁의 일은 面任, 里任, 大民, 小民, 頭目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丙申 5월 3일의 判官에의 「勸飭農務甘結」에서 서유구는, 片地 隙土라도 경작되지 않거나 혹은 移秧이 안되는 경우에는, 「當該面里任任 斷當別樣嚴究 該里頭頭人段 亦難免全昧任恤之責」이니 「以此甘辭 翻謄知委于各面風憲勸農等任 俾各惕念擧行」이라고 하였는데, 面任 즉 風憲·勸農官과 里任, 頭人 등이 勸農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글은 金容燮의 「國營農場的인 農業經營論」『증보판 韓國近代農業史硏究』 上, 一潮閣, 1984 와, 「19世紀初 新·舊農書의 綜合과 두 農學思想의 持續」 『朝鮮後期 農學史硏究』 一潮閣, 1988, 그리고 유봉학의 「徐有榘의 學問과 農業政策論」『燕巖一派 北學思想硏究』 一志社, 1995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작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화 영 일 록
(華 營 日 錄)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1월

여 백

初 一日
候班未進

초 1일 후반(候班)[1]들이 진현(進見)[2]하지 못하였다.

初 四日
大臣閣臣 承 候入侍時
余以陳懇未蒙 恩遞 未進

초 4일 대신(大臣)과 각신(閣臣)[3]들이 임금에게 안후(安候)를 여쭐 때에 나는 진솔히 간청한 체직(遞職)[4]을 윤허(允許)받지 못하므로 진현(進見)하지 못하였다.

初 十日
宗廟移安慶熙宮時
以陪從閣臣 進參

초 10일 종묘(宗廟)를 경희궁(慶熙宮)에 옮겨 모실 때에 배종한 각신(閣臣)으로써 진참(進參)하였다.

十一日
水原留守 首擬蒙 點
徐能輔(病遞代)
兵判 命召使堂上軍官
賚納于政院

11일 수원유수(水原留守) 수의(首擬)[5]에 낙점(落點)을 받았다. 서능보(徐能輔)[6]의 병(病)으로 체대(遞代)[7]하였다. 병판(兵判)이 명소(命召)[8]하여 당상군관(堂上軍官)[9]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재납(賚納)[10]하게 하였다.

十五日
上辭疏

15일 사직(辭職)을 청하는 상소(上疏)를 올렸다.

---

1) 임금의 안부를 묻기 위해 늘어선 백관(百官)의 반렬(班列). 제후(諸侯)와 양반(兩班).
2) 임금 앞에 나아가 뵈옴.
3) 조선 시대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등의 관원.
4) 정해진 임기가 차서 그 벼슬을 해임함.
5) 의망(擬望)의 삼망(三望) 중 맨 첫 망에 쓴 것을 말함. 관원을 임명하거나 시호(諡號)·능호(陵號)·전호(殿號) 등을 정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수망(首望). 다음 것을 차망(次望), 그 다음 것을 말망(末望)이라 하여 임금이 셋 중에 뜻이 맞는 데에 낙점함.
6) (1769~?) 조선 순조(純祖) 때의 문신. 순조 2년(1802) 문과에 장원. 평안도 암행어사를 거쳐 교리(校理)를 지냈다. 동왕(同王) 11년 홍경래(洪景來) 난 때 이요헌(李堯憲)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뒤에 이조판서 등을 거쳐 좌의정을 지냈다.
7) 관리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대(交代)하는 것.
8) 1. 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은밀히 불러들이던 일 2.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고 몰래 입궐하는 의정대신·병조 판서·포도대장·삼군부 대장 등의 관원이 지니던 표. = 명소부(命召符).
9) 용호영(龍虎營)에 두었던 벼슬의 하나. 현종(顯宗) 9년(1668, 戊申)에 처음으로 두었으며, 정원(定員)은 16원(員). 그 중 1원은 방어사(防禦使)를 지낸 사람으로 임명하였음.
10) 문서나 물품을 싸서 드림.

[상소(上疏)]

받들어 생각하오니 세약(歲籥)[11]은 홀연히 지나가고 길일(吉日)을 가리어 태실(太室)[12]은 이봉(移奉)[13]의 예(禮)를 거행하고, 많은 기둥으로 증수(增修)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성상(聖上)의 효도는 계서(繼序)[14]에 더욱 빛이 나고 군정(群情)은 널리 손 모아 축하함이 절실합니다.

인하여 받들어 생각하오니 신(臣)은 고황(膏肓)[15]에 걸리어 그 죄가 관광(瘝曠)[16]합니다. 외람되게 변변치 못한 간청을 올리어 중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하여 주상(主上)의 답글은 받았건만 아직 허락한다는 윤허는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황공하고 민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연곡(淵谷)에 빠진 듯 천만번 가름하지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수원부(水原府)를 잘 다스리라는 명(命)을 받드니 신은 진실로 당황스럽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신은 삼대조정(三代朝廷)을 받들어 섬겨왔지만 다만 이제는 늙고 흰 머리로 죽지 않고 여태껏 온갖 크나큰 변화를 겪어 오면서 만가지 생각이 어렴풋한데 이 같은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릉(喬陵)[17]의 송백(松柏)[18]을 우러러 의지하고 원묘(原廟)[19]의 의관(衣冠)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나마 반염(攀髯)[20]의 남은 아픔을 위로하고 보잘것 없고 작은 정성을 펴는 것이 실지로 신의 지극한 소원이며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上疏]

伏以歲籥倏改 吉日載涓 太室 擧移奉之禮 旅楹 始增修之役 聖孝 采光於繼序 群情 普切於攢祝 仍伏念臣病在膏肓 罪積瘝曠 猥控微懇 冀卸重擔 及奉 批旨 未蒙 兪允 惶悶靡措 若隕淵谷 千萬不自意

忽伏奉華府保釐之 命臣誠悄怳悸踧 益不知措躬之所也 噫臣歷事 三朝 秖今老白首不死 亘刼滄桑 萬念灰冷 而至於比任 瞻依 喬陵之松柏 昵侍 原廟之衣冠 庶慰攀髯之餘慟 少伸褥蟻之微忱 此實臣之至願大榮也

---

11) 년말(年末) 사제(祀祭)때에 불어서 연주하는 피리. 또한 세말(歲末)을 비유함.
12)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13) 옮겨 받듦. 여기에서는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옮겨짓고 위패를 옮겨 모심을 뜻함.
14) 사위(嗣位)를 이어받음.
15) 고(膏)는 가슴 아래쪽. 황(肓)은 흉부(胸部)와 복부(腹部)와의 사이에 있는 얇은 막(膜). 고와 황의 사이는 치료하기 어렵다 함. 전하여 사물의 구하기 어려운 병폐.
16) 텅 비어 실속이 없음. 여기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음을 뜻함.
17) 높은 임금의 무덤. 여기서는 정조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과 건릉을 의미함.
18) 소나무와 잣나무. '절개의 군음'을 의미함.
19) 종묘(宗廟)에 들어갈 수 없는 신주를 위하여 따로 세운 사당. 추증되지 않은 왕이나 왕비를 모심.
20)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을 비유하는 말. 여기서는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

固宜聞 命卽趨 不俟駕履顧何敢爲備例飾讓之歸哉嗚呼 是府設始之初 臣嘗簪筆登 筵 恭聆營度之 謨訓 橐弭陪 駕 欣覩城池之壯麗每一追惟 淚隨言迸 某水某邱 皆經指畫 一艸一木 渾被雨露 允爲萬億年無疆之基 而管轄乎湖海 門屛乎京都 其責任之綦重 尤非三都之比矣

마땅히 군왕의 명을 받으면 곧바로 달려가고 가이(駕履)[21]를 기다리지 않아야 하건만 어찌 감히 예식(例式)을 갖추고 사양의 말을 꾸미면서 돌아가겠습니까. 아-! 이 부(府)를 설치하여 시작 할 무렵에 신은 잠필(簪筆)[22]로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영탁(營度)[23]의 모훈(謨訓)을 조용히 듣고 탁미(橐弭)[24]로 임금을 모시고 성지(城池)의 장려(壯麗)함을 흔쾌히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내리고 물과 언덕을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리시니, 하나의 풀과 나무도 우로(雨露)[25]의 은혜를 흠뻑 입었습니다. 이곳은 진실로 억만년(億萬年) 끝없는 터로써 호해(湖海)를 관할하고 경도(京都)의 관문(關門)이 되어 그 책임의 막중함이 더욱 삼도(三都)[26]에 비할 수 없습니다.

挽近以來 荐經歉荒 倉府之峙積如掃 閭里之凋瘵轉甚 百弊蝟起 矯捄沒策 殆若敗局殘枰 莫可下手 此時此任 雖使威望 足以鎭物 材器足以剸理者 當之 猶患其却顧而逡巡 今乃擧而畀之於癃病衰耗 不曉事務之瞶瞶如臣者 畢竟僨誤理 必無幸

근래에 와서는 거듭 흉년이 들어서 창부(倉府)[27]의 재고가 싹 쓸어 놓은 듯 바닥나고 백성들의 조채(凋瘵)[28]가 더 심하여 위기(蝟起)[29]를 곧게 바로잡을 계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패국잔평(敗局殘枰)을 손 쓸 수 없는 이때에 이러한 책임은 사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위력과 명망(名望)과 전행(專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재주라 할지라도 물러나서 머뭇거릴까봐 근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병들고 쇠약한 저에게 그 책임을 맡기니 사무에 밝지 못한 신 같은 사람은 필경에 크게 이치를 그릇 치어 결코 다행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

21) 타고 갈 가마와 신고 갈 신.
22) 붓을 머리에 끼움. 전하여 미관말직의 하찮은 벼슬.
23) 공역(工役)을 하기 위하여 경영하고 양탁(量度)함.
24) 활을 분해하여 자루에 담음. 또는 그 일.
25) 비와 이슬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은혜를 비유하는 말.
26) 조선시대 유수부가 있었던 개성·수원·강화·광주 4도(四都) 중 여기서는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을 지칭함.
27) 미창(米倉)과 금고(金庫).
28) 쇠약하여 병들음. 수척하여짐.
29) 고슴도치의 털이 곤두섬. 전하여 사태가 엉클어져 일어남.

신은 전도낭패(顚倒狼敗)하여 족히 백성들을 구휼(救恤)하지 못하고 이미 패한 국면을 돕지 못하여 한갓 신중히 간택하심에 누만 끼칠 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 신은 여기에 과분한 책임이 두렵고, 총록(寵祿)[30]으로 분수를 넘을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함부로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이에 감히 간략한 문자를 갖추어 숭엄(崇嚴)[31]을 욕되게 합니다.

바라옵건데 성상(聖上)의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고 신을 체임(遞任)[32]하여 거류(居留)의 소임을 새롭게 주시고, 자질의 중요함을 공평하게 하시어 분수의 타당함을 살피시옵소서.

臣身之顚倒狼敗　固不足恤 而其於無補已敗之局　而徒貽愼簡之累　何哉　臣於是懼擔夯之過任　惕寵祿之踰涯　百爾忖度　萬難冒膺　玆敢略具文字　仰瀆　崇嚴　伏乞　聖慈俯垂鑑諒　亟遞臣新授居留之任　俾公器重而微分安焉

[비답(批答)][33]
소장(疏章)을 살펴보고 모두 알았다. 경(卿)[34]은 사양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라.

[批答]
省疏具悉 卿其勿辭察任

16일

사은(謝恩)하고 곧 바로 내각(內閣)[35]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36]하였다.

十六日
謝 恩仍進內閣 校準 御製

17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十七日
進內閣 校準 御製

18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十八日
進內閣 校準 御製

---

30) 총애하여 봉록(俸祿)을 많이 줌.
31) 역대 존엄한 제왕을 일컬음.
32) 정해진 임기가 차서 그 벼슬을 해임함.
33) 신하의 상소나 계주문(啓奏文)의 말미에 적은 임금의 대답.
34) 조선시대 봉상시(奉常寺)등 육시(六寺)의 종3품 벼슬. 임금이 2품 이상의 신하에게 일컫는 말.
35)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의 별칭.
36) 글자의 잘못된 것을 대조하여 바로잡음.

十九日
進內閣 校準 御製

19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二十日
賓對懸病

20일 이 날은 빈대(賓對)[37]하는 날이지만 현병(懸病)[38]하였다.

二十一日
進實錄廳

21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二日
進內閣 進 御製 割付本申後 進實錄廳

22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바치고 부본(付本)을 떼어내어 신시(申時)가 지난 뒤에 실록청(實錄廳)에 바쳤다.

二十五日
進內閣 校準 御製

25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二十六日
下直肅拜後 勸講入侍時 同爲入侍 傳 曰水原留守留待傳 曰水原留守入侍 同日入侍罷後 出政院受符 陪奉敎諭書而出

26일 정숙히 절을 하고 하직한 뒤에 권강(勸講)[39]이 입시(入侍)[40]할 때에 함께 입시하였다. 전하여 말하기를 '수원유수(水原留守)는 남아서 기다리라.' 하시고 또 전하여 말하기를 '수원유수는 입시하라.' 하셨다. 같은 날 입시가 파한 뒤에 승정원에 나아가 병부(兵符)[41]를 받고 교서(敎書)와 유서(諭書)[42]를 받들어 나왔다.

---

37)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대신(議政大臣)과 대간(臺諫), 옥당(玉堂)의 관리들이 임금 앞에 나아가 중요한 정무(政務)를 임금에게 아뢰는 일.

38) 병을 이유로 결근할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함. 또는 병을 이유로 대고 결근하는 일.

39) 제왕(帝王)의 곁에서 학문을 강의하는 사람.

40)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알현하고 모시는 것.

41) 밀부(密符)·발병부(發兵符)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에 표지로 쓰이던 명령서 형식의 부절(符節)로 모양은 동글납작하였음. 한 면에 "第○符"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어압(御押)을 친서하여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유수(留守) 등에게 주었다. 한 가운데를 쪼개어, 한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다른 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려주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음.

[교서(敎書)]

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한나라 서경(西京)으로 통제(統制)는 바로 문무(文武)를 겸전(兼全)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요, 직무(職務)는 주나라 동교(東郊)의 보리(保釐)[43]를 본 받아야 하니 마땅히 내외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경(卿)을 번거롭게 하여 외직(外職)에 한번 나가도록 십행(十行)의 글을 부여한다.

오직 경은 세대(世代)로 충정(忠貞)을 돈독하게 하고, 가문에는 시례(詩禮)를 전하여 위포(韋布)[44]로부터 재상의 명망을 걸머졌다. 또한 경의 자질은 호련(瑚璉)[45]·규장(圭璋)이라 연참(鉛槧)[46]으로 사종(詞宗)의 명예를 떨쳤고 경의 문장은 생용(笙鏞)[47]·보불(黼黻)[48]이라.

심도(沁都)로부터 두허(斗墟)의 절제(節濟)를 누르고 주사(籌司)[49]의 국가의 큰 계책으로 홍문관의 으뜸이 되어 규화(奎華)[50]의 반렬(班列)을 차지하였다. 흡연히 문원(文垣)의 추천으로 중(重)하게 주연(胄筵)[51]에 있으면서 계도(啓導)를 게을리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추겼다. 그리고 전형(銓衡)[52]을 맡으면 미차(靡差)를 감별하여 공평하고 나라를 위할 뿐이었다.

[敎書]

王若曰 地是漢西京 控制正須文武兼全 職倣周東郊保釐 宜無內外異視 煩卿一出數予十行 惟卿世篤忠貞 家傳詩禮 韋布負宰輔之望 以器則瑚璉圭璋 鉛槧擅詞宗之譽 其文也笙鏞黼黻 自沁都而按斗墟之節濟 以籌司之紆謨 長瀛館而扱奎華之班 翕然文垣之推 重在胄筵而輔導不倦 啓心沃心 秉銓衡則鑑別靡差 公耳國耳

---

42) 임금이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 등 군사권을 가진 관리에게 병부(兵符)를 하사하거나 병력의 동원을 명령할 때 주는 문서.

43) 편안하게 다스림.

44) 가난한 선비, 유생(儒生), 벼슬하지 않은 선비, 야인(野人)을 뜻함.

45) 산호, 종묘제기의 하나.

46) 연판(鉛版). 활판(活版)에서 뜬 지형(紙型)에 납·주석·알루미늄의 합금을 녹여 부어서 만든 인쇄판.

47) 제례악(祭禮樂)을 연주하는데 필요한 악기의 총명. 원래 생(笙)은 동족에 설치한 악기. 용(鏞)은 서쪽에 설치한 악기라고 하는데 이들 악기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되었음.

48) 임금이 대례(大禮)·제복(祭服)으로 착용하던 곤복(袞服)에 놓은 문양. 도끼와 아(亞)의 형상의 문양을 보불이라 함.

49) 조선 시대 군무(軍務)와 정사(政事)를 논의하던 비변사(備邊司)를 달리 이르는 말.

50) 임금의 글을 지음.

51) 조선 시대에 왕세자 앞에서 경서(經書)를 강론하는 자리.

52) 사람의 재능을 시험하여 뽑음. 또는 그런 일을 맡은 관원.

天球弘璧 校 三宗之宸章 石室芸香 編 兩朝之國史 旣卿才展布斯著 而予心依毗也 隆睠茲畿 輔四都尤重 隋城一府 金湯天 設控湖嶺三路之衝 衣冠月遊 奉 寢園萬年之兆 肆 聖祖經始之意

천구(天球)[53]·홍벽(弘璧)에 삼종(三宗)의 신장(宸章)[54]을 교정(校正)하고 석실(石室)[55]·운향(芸香)에 두 조정(朝廷)의 국사를 편찬하였다. 인하여 경의 재주가 펼치어 나타나므로 나의 마음은 경에게 의비(依毗)하였다. 이 경기를 애착하여 4도(四都)[56]를 도우는 것으로 더욱 중하게 여겼다. 수성(隋城) 일부(一府)에 김탕천(金湯天)은 충청·호남·영남 3로(三路)의 요충지를 설치하였다. 의관(衣冠)을 갖추고 달빛을 거닐면서 만년 이어갈 왕실의 묘소를 받들고 성조(聖祖)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뜻을 폈다.

卜洛宅而粤瞻 亦 寧考繼述之謨 遷灤和而幷祔 一草一木 罔非 遺澤之均霑 某山某邱 尙說仙蹕之近駐 是以居留之職 亦必簡愼其人 兩聖之制置旣勤 正急堂搆之責 九卿之才 彦歷數誰 任摠理之功 玆授卿以水原府留守 兼摠理使

낙택(洛宅)을 정하여 멀리 쳐다보니 또한 영고(寧考)[57] 계술(繼述)[58]의 뜻이며 난화(鸞和)[59]를 옮기어 아울러 부제(祔祭)[60]를 지내니 한 포기의 풀과 한 그루의 나무도 유택(遺澤)이 골고루 내려졌다. 모산(某山)·모구(某邱)에 선필(仙蹕)[61]의 근주(近駐)를 말하였으므로 거류(居留)하는 관원(官員)도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

양성(兩聖)의 제치(制置)[62]에 부지런하고 당구(堂構)[63]의 책무를 급하게 여겨야하나니 구경(九卿)의 자질이 누가 훌륭하게 총리(摠理)의 공(功)을 맡겠는가. 이에 경(卿)에게 수원유수(水原留守) 겸 총리사(摠理使)를 제수한다.

---

53) 천구(天球)는 구슬 이름으로 하늘빛 색을 띠고 있으므로 곧 왕실을 뜻함.
54) 임금이 친필로 쓴 글이나 편지.
55) 도서(圖書)를 보관하는 곳.
56) 옛날 유수(留守)를 두었던 네 곳의 도읍(都邑). 곧 개성(開城)·광주(廣州)·수원(水原)·강화(江華)의 네 곳.
57) 재위 기간 동안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가신 부왕(父王)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의 선고(先考)이자 선왕(先王)을 높여 호칭하는 말.
58) 선왕(先王)이나 조상이 남긴 뜻과 사업을 잘 받들어 계승함.
59) 천자의 수레위에 다는 방울. 난(鸞)은 멍에에 화(和)는 가로막이 나무에 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수레가 가는 것을 조절함. 곧 임금의 수레를 뜻함.
60) 3년상을 마친 뒤 신주를 대묘(大廟)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
61) 신선이 행차할 때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쫓는 일. 또는 그 사람. 전하여 임금의 행차를 뜻함.
62) 할당하여 각각 자리 잡게 둠. 갖추어서 베풀어 둠.
63) 궁전(宮殿)의 건설(建設).

경은 관작(官爵)을 공경히 받들어 공역(工役)과 재정(財政)을 충당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어루만지어 양춘(陽春)[64]에 은혜를 베풀지어다. 또 졸승(卒乘)[65]을 뽑아서 성지(城池)를 수리하고 장마에 미리 힘써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날 호가(扈駕)[66]하는 곳에 이르러 마땅히 무슨 생각을 하였겠는가. 세사(歲事)를 모실 때에 전릉(展陵)[67]의 의식(儀式)에 힘써 다 하는 것이 직분이다. 아-! 역마길이 서울에 가까우니 매월 1일에는 기거(起居)[68]를 폐하지 말고 큰 계략이 있을 때에는 공거(公車)[69]편에 올려 보내면 조석(朝夕)으로 간언(諫言)을 아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모두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같은 날 경기 감영(監營)을 나와서 교귀(交龜)[70]한 뒤에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출발하여 저녁에 시흥현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었다.

卿其祗承 寵章 克恢茂績繕財賦 而撫黎庶 敷惠化於陽春 簡卒乘而修城池 懋預備於陰雨 莅昔日扈 駕之所當作何懷 奉歲時展 陵之儀勉盡乃職 於戲 馹路近接於京輦 毋替月朔之起居 鴻猷時 上於公車 何異朝夕之納誨 故玆敎示 想宜知悉 同日 出畿營交龜後 封啓 仍爲離發 夕抵始興縣止宿

[장계(狀啓)]

본부(本府)에 전(前) 유수(留守) 서능보(徐能輔)가 받은 발병부(發兵符)[71] 오른쪽 편 1척(隻), 수원유수(水原留守) 인신(印信) 1과(顆), 총리사(摠理使) 인신 1과, 본부판관(本府判官) 발병부(發兵符) 왼쪽 편 1척

[狀啓]

本府前留守 臣徐能輔所受發兵符 右一隻 水原府留守印信一顆 摠理使印信一顆 本府判官發兵符 左一隻 及

64) 음력 정월, 따뜻한 봄
65) 보병(步兵)과 전차(戰車). 걷는 군사와 말 탄 군사.
66) 임금의 거가(車駕)를 호위하며 좇음.
67) 능침(陵寢)을 보살핌.
68) 고려시대의 관직. 문종 때 문하부(門下部)에 종5품 1명을 두었는데, 1356년(공민왕 5) 정5품으로 승격시켰다. 궁중에서 임금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등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벼슬은 한대(漢代)부터 있었던 기거직(起居職)제도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여기서는 임금에게 간언(諫言)하는 것을 뜻함.
69) 군사용 수레 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수레.
70) 감사(監司)·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등이 바뀔 때 거북 모양의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서로 넘겨주고 받던 일.
71)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할 때에 표지로 쓰이던 명령서 형식의 부절(符節)로 모양은 동글납작하였음.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진호(鎭號) 등을 기록하여 한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려주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음.

所屬龍仁 振威 安山 始興 果川等 五邑發兵符 左五隻 臣於當日 到畿營 與兼留守 臣金道喜 面看傳受爲白乎 旀緣由 馳 啓爲白臥乎事

(隻) 및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 다섯 고을 발병부 왼쪽 편 5척은 신이 당일에 기영(畿營)에 도착하여 겸유수(兼留守) 김도희(金道喜)[72]와 더불어 대면하여 보고 전수(傳受)한 사연을 치계(馳啓)[73]합니다.

二十七日

平明離發 午刻到營肅拜 華寧殿 仍入于壯南軒 封發赴任狀啓

27일

아침 해가 뜰 때 출발하여 한 낮에 영문(營門)에 도착하여 화령전(華寧殿)[74]에 엄숙히 절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장남헌(壯南軒)에 들어가서 부임을 고하는 장계(狀啓)[75]를 봉(封)하여 발송하였다.

[狀啓]
臣於今月二十六日 辭 朝 二十七日 到營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
신은 이 달 26일에 사조(辭朝)[76]하고, 27일에 영(營)에 도착했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합니다.

二十九日

詣 健陵 顯隆園 奉審後 申刻還營 封啓

29일

건릉(健陵)·현륭원(顯隆園)에 가서 봉심(奉審)[77]하고 신시(申時)에 영(營)에 들어와서 봉계(封啓)[78]하였다.

---

72) (1783~1860) 본관은 경주(慶州). 조선 철종(哲宗) 때의 문신. 아버지는 판서 노응(魯應). 어머니는 이성규(李成奎)의 딸. 삼촌 노익(魯翼)에게 입양되었다. 순조(純祖) 13년(1813) 문과에 급제. 검열(檢閱)·참의(參議)·경기도 관찰사·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을 거쳐 헌종(憲宗) 4년(1838) 형조 판서가 되고 우의정·좌의정을 지냈다.

73) 말을 달려 아뢴다는 뜻으로 급히 계(啓)를 올려 상주(上奏)하는 것을 말함.

74) 경기 수원시 신풍동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전각. 사적 제115호. 1801년(순조 1) 순조가 선왕인 정조(正祖)의 지극한 효성과 유덕을 길이 받들기 위하여 세운 건물이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 8작지붕으로 화강석 기단 위에 세워진 익공(翼工)집이다. 총면적은 1만 2266 m2. 정전 안에 정조의 진영(眞影)을 봉안하고 해마다 제향을 드렸으며 '운한각(雲漢閣)'이라는 편액의 글씨는 순조의 친필이다. 경내에 풍화당(風華堂)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순조가 풍악을 즐기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오히려 순조가 선왕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 자리로 여겨진다.

75) 감사(監司) 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벼슬아치가 글로 써서 임금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76)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함.

77) 왕실(王室)의 침묘(寢廟)·산릉(山陵)·단(壇)·묘(墓)·태실(胎室)·비석(碑石)·사고(史庫) 등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점검하는 일.

78) 소관 사항에 대한 서장(書狀)이나 서계(書啓)등을 밀봉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

[장계(狀啓)]

신은 이 날 27일에 영문(營門)에 도착한 연유를 치계하고 당일에 화령전(華寧殿)에 엄숙히 절한 뒤에 곧바로 전내(殿內) 모든 곳을 봉심(奉審)하니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29일에는 건릉·현륭원의 능(陵)위와 원(園)위, 그리고 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의 모든 곳을 봉심하니 모두 탈이 없는 까닭으로 치계합니다.

[狀啓]

臣於本月二十七日 到營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當日 華寧殿肅拜後 仍爲奉審是白乎則 殿內諸處 無頉是白遣 二十九日 馳詣 健陵 顯隆園 陵上 園上 丁字閣 碑閣諸處 奉審是白乎則 俱爲無頉是白乎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2월

初 一日

華寧殿人奉審後 封啓

초 1일 화령전을 크게 봉심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華寧殿春孟朔 大奉審元定是白在去 正月十五日 當爲擧行 而前留守臣徐能輔 以身病不得擧行乙仍 于今初一日 臣與兼令臣李敏榮 兼衛將臣金相宇 焚 香後 仍爲眼同奉審是白乎則 殿內諸處 無頉是白乎旀

卽接 顯隆園參奉金益鼎牒呈 則今初一日 園上 殿內奉審 無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화령전은 춘맹삭(春孟朔)[79]에 정해진 의식에 따라 크게 봉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월 15일에도 마땅히 봉심을 거행해야 하건만 전유수(前留守) 서능보(徐能輔)의 신병(身病)으로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2월 초하루에 겸령(兼令) 이민영(李敏榮)과 겸위장(兼衛將) 김상우(金相宇)와 더불어 분향(焚香)한 뒤에 그들과 함께 봉심하였으나 전내(殿內) 모든 곳에 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륭원참봉(顯隆園參奉) 김익정(金益鼎)의 첩정(牒呈)[80]을 펼쳐보니 이 달 초하루 원상(園上)과 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아무 이상 없다고 하므로 연유(緣由)를 치계합니다.

同日 傳令各面 勸飭農務 又飭牛酒松三禁

같은 날 각 면(面)에 영(令)을 전하여 농사일에 힘쓰게 하고. 또 우·주·송(牛酒松) 삼금(三禁)을 칙명(勅命)하였다.

[勸農傳令]

爲知悉擧行事 敦本重農 有國之大政也 歲首 綸音十行 懇摯 雖愚夫愚婦 咸有以攢誦 字恤元元之 盛德至意是如乎

[권농전령(勸農傳令)]

모두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근본을 돈독하게 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라에 큰 정사(政事)이다. 새해 첫날에 윤음(綸音) 십행(十行)[81]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우부(愚夫)·우부(愚婦)라도 모두가 백성을 자휼(字恤)[82]하는 임금의 성덕(盛德)과 지극하신 뜻을 손 모아 칭송하였다.

---

79) 음력 정월(正月) 초하루의 별칭.

80) 종1품 아문(衙門)과 종1품 사신(使臣)과 정·종2품 사신이 1품 아문에 서면(書面)으로 보고하던 문서. 혹은 각 아문과 사신이 한 등급 이상 높은 아문에게 보내던 문서.

81) 열줄의 글. 곧 조칙(詔勅)의 글을 이르는 말.

82) 백성을 어루만져 사랑함.

본부는 거듭 겸황(歉荒)[83]을 지내면서 삼정(三政)[84]이 모두 병들고 백성은 몹시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근심이 있고, 땅에는 광폐(曠廢)의 한탄이 있는지라. 도도한 온갖 폐단이 모두 이로 인하여 생겨나니 지금에 이러한 폐단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식량을 넉넉하게 할 뿐이다.

本府 荐經歉荒 三政俱病 民有顚連之憂 地有曠廢之歎 滔滔百弊 一皆由此 爲今日蘇弊之方 惟在裕食 裕食之道 專在於勸農是置 見今春分已屆 東作伊始 堤洑貯水節 錢鎛資用之器 預先留意 毋或失時爲旀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농사를 권장함에 있는 것이다. 지금에 춘분(春分)이 이미 이르렀고 동작(東作)[85]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보(洑)를 치고 물을 가두어 두는 계절이며 가래와 호미 등 쓸 수 있는 도구를 미리 생각하여 혹시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작년(昨年) 수확할 때에 흉작(凶作)을 면치 못하여 동적(冬糴)[86]이 견디지 못하니 봄에 곤궁함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지금 농기구를 손질할 때에 끼니의 어려운 근심이 많을 것이다. 비록 비가 오고 날이 흐릴 때 만약 좋은 날에 이르더라도 다만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여 지력(地力)을 다 하지 못함에 이른다면 추색(秋穡)[87]의 사정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언념(言念)이 이에 이르러 어찌 민망하지 않겠는가. 인하여 종종 보조(補助)의 방법을 영부(營府)는 잘 생각하여 조처해야 할 것이다.

昨年年成 未免失稔 冬糴未勘 春窮可知 況今理耜之時 必多艱食之患 縱令雨暘時若休徵日至良置 秖緣人功之不逮 以致地力之未盡 則今秋穡事 亦可推知 言念及此 寧不悶然 種糧補助之方 營府從當爛商措處是在果

근간에 우금(牛禁)[88]이 해이하고 우축(牛畜)이 모

近因牛禁解弛 牛畜耗損 佃

83) 흉년이 들어 곡식이 안 됨.
84) 조선 시대 18~19세기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전정은 토지의 결수(結數)를 기준하여 받는 전세로 임진왜란 이후 점차 증가하여 각종 부과세와 수수료가 첨가되었고 군정은 원래 군적(軍籍)에 의하여 번상병을 차출하고 그에게 보(保)를 정급(定給)해 주는 병무 행정이었는데, 점차 군포(軍布)의 부과·징수를 행하는 수취 행정으로 변하여 각종 협작이 뒤따랐음. 환정은 환곡(還穀)이라고도 하여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과 종자를 빌려 주었다가 추수 후에 회수하는 구빈(救貧)행정이었는데 점차 고리대로 변하여 삼정 가운데 가장 그 폐해가 심각하였음. 이러한 삼정의 문란은 19세기 초·중엽에 일어난 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85) 봄철에 농사를 지음.
86)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임.
87) 가을에 영근 곡식을 거두어들임.
88) 농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소 잡는 것을 금함.

戶畜牛者 十未一二 因此曠農 在在皆然 春耕之時 移秧之節 必須隣里相借 毋或有愆期失農之歎爲旀 或因癘疫 不能耕作者 隣里族戚併力相助 俾無片土陳荒之弊爲乎矣 各其面里 大小民頭目之任 恪勤董飭 期有懇闢之實效是遣 營門 亦當有逐坪者 審考勤慢別般賞罰之道 切勿視以例飭 各別惕念 擧行宜當事

손(耗損)하여 전호(佃戶)[89]에 소를 기르는 사람이 열에 한·둘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광농(曠農)[90]이 곳곳마다 생겨나서 모두 그러하므로 춘경(春耕)의 때와 이앙(移秧)의 계절에 반드시 이웃 마을에서 서로 도와서 기일을 넘겨 농사를 망치는 한탄이 없어야 한다.

혹 여역(癘疫)[91]으로 인하여 능히 경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 마을 족척(族戚)들이 힘을 합하고 서로 도와서 한조각의 땅이라도 묵히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각 그 면리(面里)에 대소민(大小民) 두목(頭目)의 책임자는 부지런히 감독하고 경계하여 힘써 피하는 실효(實效)를 기약하라. 그리고 영문(營門)에서도 마땅히 축평자(逐坪者)는 근면과 태만이 특별한지 상벌(賞罰)의 도(道)를 살피되 그냥 보아서 넘기지 말고 각별히 생각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牛酒松三禁傳令]

爲惕念禁斷事 牛酒松三禁法典 自來嚴重 而 廟堂申飭不啻縷縷是去乙 近來民習瞥不畏法 恣意犯禁 弁髦 朝令 苟有一分紀綱 寧容若是第以牛禁言之 務盡地力之方不外乎耕墾 而耕墾之具 莫要於牛畜 牛畜之關係於利用厚生之道 果何如 而奸細輩無難冒禁 公行私屠 以致牛畜漸耗 耕墾失時

[우주송(牛酒松) 삼금전령(三禁傳令)]

두려운 마음으로 금단(禁斷)할 일이다. 우주송 (牛酒松) 삼금법전(三禁法典)은 그 유래가 엄중하여 묘당(廟堂)[92]의 신칙(申飭)[93]이 연이을 뿐만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백성들의 습관이 번민하여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금단을 범하여 조정의 명령을 변모(弁髦)하나니 진실로 일분(一分)의 기강(紀綱)이 어찌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금(牛禁)으로 말하자면 지력(地力)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간(耕墾)[94]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경간의 갖춤은 소를 기르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소를 기르는 것이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道)에

89) 대토지 소유자의 전지에서 소작(小作) 노동을 하는 농민.
90) 소홀하여 실속이 없는 농사.
91) 전염성 열병의 총칭.
92) 의정부의 별칭.
93) 단단히 타일러 경계함.
94) 논이나 밭을 개간하여 갊.

메여있건만 간세배(奸細輩)들은 금단을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사도(私屠)[95]를 행하여 소를 치는 일이 점점 줄고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이 때를 잃었다.

몇 해 전부터 해마다 흉년이 들어 묵혀두어 황폐한 땅이 많이 보이니 이것은 우금(牛禁)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어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관아(官衙)에서 고깃간을 설치하는 것은 법의 일이건만 하물며 저자에서 팔 수 있겠는가.

일전에 조정의 칙명이 엄격하였건만 본부경내(本府境內)에 고기를 저자에서 팔고 고깃간을 설치하는 폐단이 다른 지방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 심지어는 관포(官庖)[96]에 납세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조금도 거리낌 없다고 하니 해괴한 소문이 극치에 이르렀다.

이것은 엄하게 금하지 않는다면 영(營)과 읍(邑)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른바 관포(官庖) 수세(收稅)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일체 엄금한다. 이와 같이 별도의 칙령을 내린 뒤에 만일 전과 같이 금단을 범하여 염탐하는 사람에게 발견되면 해당자는 율형(律刑)에 따라 배단(配斷)[97]하고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하는 면리(面里)의 책임자에게 무겁게 죄를 주고 그냥 넘기지 않은 것이니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할 것이다.

주금(酒禁)에 있어서는 비록 풍년이 들어 즐거운 해라 하더라도 결코 그 책임을 늦출 수가 없다. 술의 피해가 곡식을 허비 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싸우거나 인명(人命)의 살상도 그 원인을 따지면 대부분 술에 취함으로 연유한 것이다. 이 또한 그 크게 분수를 넘음을 버려야 하고 저자와 주막 등에서 놀고먹는 무리들이 술에 취해 난잡하게 구는 폐단을

挽近　連年告歉　溢目陳荒　未必不由於此　此豈細故是旀　官廚設庖　已是法外　況旀場市是乙喩　日前　廟飭截嚴　纔已謄甘知委是在果　本府境內　場市設庖之弊　比他尤甚　諉以納稅官庖　狼藉行賣　少無顧忌云　無嚴除良駭聽極矣

此不嚴加禁斷　豈可曰有營有邑乎　所謂官庖收稅　自今爲始　一切嚴禁爲去乎　如是別飭之後　萬一有如前犯禁現發於廉探之下　則當者之依律刑配斷　不饒貸侭除良該面面里任輩　亦當重勘切勿視以例飭　惕念擧行爲旀

至於酒禁　雖在康年樂歲　決不可一任其解紐　麴蘗之爲害　不但糜穀而止　街路之鬪鬨　人命之殺越　苟究其因　率多由醉　此亦不可不祛其太甚是如乎　場市店幕等處無賴游食之輩　酗酒作拏之

95) 관가(官家)의 허가 없이 소나 돼지를 잡는 것.
96) 수령(守令)에게 쇠고기를 바치는 포주.
97) 어떠한 죄목에 적용하여 단죄(斷罪)함.

弊 各別禁斷犯禁者 各其面里任這 這指名馳告 以爲自官嚴治之地爲旀

각별이 금단한다. 따라서 금단을 범하는 사람들은 각각 그 고을에서 책임지고 그들의 이름을 지적하여 빨리 알리고 관청에서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以松政言之 近來法禁蕩然 大而封山局內 小而私養諸處 無難犯斫 在在童濯 泉原枯涸 堤塍潰決之患 職由於此 此豈非妨農病民之一大弊源是旀 又況本府 密邇陵園 所重自別 松禁一款 尤不可不別樣留心是如乎 毋論公私山 如有犯斫之弊則當者 與符同作奸之山直輩 斷當依律嚴勘 幷只知悉擧行爲乎矣

송정(松政)[98]으로 말하자면 근래에 법금(法禁)이 탕연(蕩然)하여 크게는 봉산(封山)[99]안에서부터, 적게는 개인이 가꾸는 곳에 범작(犯斫)[100]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민둥산이 곳곳에 있는지라. 따라서 샘의 근원이 고갈되고, 제방이 무너지는 우려가 모두 이에 연유한 것으로 이것이 어찌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큰 폐단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본부(本府)에서 아주 가까운 능원(陵園)은 스스로 구분하여 금단해야 할 조목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공산(公山)·사산(私山) 할 것 없이 함부로 벌목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자와 결탁하여 간계(奸計)를 꾸민 산직(山直)[101]의 무리들을 단연코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다스릴 것이므로 모두 알아서 거행할 것이다.

今此三政之飭 不但爲申明舊制 莅營之初 爲此先甲之令 佇有改觀之效 將此傳令揭諸坊曲 俾無一民 不知冒犯抵罪之弊宜當事

이 삼정(三政)의 칙교(飭敎)는 옛 제도를 거듭 밝힐 뿐만 아니라, 이영(莅營)[102]하는 처음에 선갑(先甲)[103]의 영(令)을 만들어 개관(改觀)[104]의 효과를 거두려 한다. 따라서 이 전령(傳令)을 가지고 방방곡곡에 게시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무모하게 죄를 저질러 법에 저촉되는 폐단이 없고자 한다.

98) 소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관한 정책. 또는 행정업무.
99) 나라에 필요한 목재를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지하는 산.
100) 벌채를 금지하는 산에 나무를 베어냄.
101) 산지기. 사유(私有)의 산이나 묘의 수호(守護)를 맡아 보는 사람.
102) 감영(監營)에 부임함.
103) 선갑후갑(先甲後甲). 갑(甲)은 법령(法令)을 새로 만드는 것. 법령을 처음 제정(制定)·발포(發布)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기 앞서 3일 동안 신중하게 하고 또한 만든 후 3일 동안 다시 검초한다는 뜻으로 사려가 깊고 추구함이 넓음을 말함.
104) 면목(面目)을 일신(一新)하여 새롭게 다시 살핌.

초 3일 알성(謁聖)[105]하였다. 같은 날에 주관(籌關)[106]으로 인하여 장교와 서리들에게 봉급으로 줄 쌀은 지난 계획에 의거하여 보낼 일로써 비국(備局)[107]에 논보(論報)[108]하였다.

初 三日 謁 聖
同日 因籌關以校吏料條米依前劃送事 論報備局

[보장(報狀)[109]]

상고할 사항을 사관(司關)[110]에게 답하는 공문(公文). 당면한 것은 광주유수(廣州留守)가 보고한 내용에 본부 창고의 재물이 탕진되고 장부(帳簿)가 텅비어 있으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하(應下)[111]하여 배비(排比)[112]하기가 실지로 어렵습니다. 화성 교리(校吏)[113]에게 지급하는 요조미(料條米)[114] 170석(石)은 전례에 의거하여 수송할 길은 전혀 없고 우선 감영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수송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당 부(府)와 해당 영(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습니다. 사세(事勢)가 이와 같다면 억지로 수송하기는 어렵고 본부로부터 달리 조처하는 바입니다.

지금에 이 요조(料條)[115]의 구획(區劃)은 옛적에 본영(本營)으로부터 경영하여 시작할 처음에 정식의 일을 연품(筵稟)[116]하여 지금까지 40여 년간 한결같이 시행하여 감히 위반하여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해부(該府)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의 형세가 어쩔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서 본영(本

[報狀]
爲相考事 節到付 司關內節該 卽者 廣州留守所報內以爲本府庫儲蕩析 倉簿枵罄 各樣應下 實難排比 華城校吏料條米 一百七十石零 萬無依例輸送之路 姑俟營養蘇醒 輸送之外 更無變通 以此意發關該府 亦爲置該營 事勢旣如此 則有難强令輸送 自本府從他措處 亦爲有臥乎所

今此料條之區劃 粵自本營經始之初 筵稟定式之事 而于今四十餘年 一例遵行 無敢違越是乎加尼 到今該府之有此持難 固知事勢之萬不獲已而 弊營 苟有一分措手之

105) 성균관(成均館) 문묘(文廟)의 공자(孔子) 신위(神位)에 참배하는 것.
106) 주사(籌司)와 관부(關府).
107) 조선 시대 비변사(備邊司)의 별칭.
108)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보고하던 일.
109) 상부 관아(官衙)에 보고하던 문서.
110) 나라의 재정을 맡아서 시장 경제를 유통시키는 관서(官署).
111) 관청에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지출.
112) 비례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놓는 것.
113) 지방 군영(軍營)의 관리(官吏)
114) 봉급조목의 쌀
115) 봉급(俸給)에 관한 사항.
116) 연주(筵奏).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아룀.

道 則其在相須共濟之誼 豈不思方便拮据之策是乎喩
庫儲蕩析 倉簿枵罄之狀 弊營較甚於該府 各樣應下塗抹 不得捨此 近二百包應入之穀 則將士支放 自歸於無麵不飥 揆以昔年設始之本意已極 萬萬悚悶 而目下校吏之一朝渙散 亦豈可不念是乎喩

且況同料米移劃 初非自該府輸送 該府還米之儲積於本營城內者 本爲弊營策應而設置 故每年一百七十石零 就其中推用 初無運輸往來之弊是如乎 該府事勢 雖云窘跲 是乃距府近百里之地外 倉穀劃送 與城餉中出庫輸送 煞有間焉是乎遣

弊營 則似此手中之物 不得如例推用 而以若儲畜俱空之時 有何方便措處之道乎 左思右量 計無所出 玆以據

營)이 한 가닥 손 쓸 길이 있다면 서로 기대고 함께 구제하는 정의가 있을 뿐이니 방편으로 길거(拮据)[117]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창고의 재물이 탕진되고 장부(帳簿)가 텅 비어 있는 상황은 본영(本營)이 해부(該府)보다 심하고 각양(各樣)의 기본 지방(支放)[118]을 그냥 넘기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0포에 가까운 곡식은 장사(將士)[119]들의 봉록(俸祿)으로 밀가루가 없으면 수제비를 만들 수 없는 셈이니 생각하면 옛적 처음으로 시설한 본래의 뜻은 이미 다하여 여러 가지로 송구하고 민망하여 목하(目下)[120] 교리(校吏)가 하루아침에 흩어짐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미(料米)[121]의 이획(移劃)은 애초에 해부(該府)로부터 수송한 것이 아니라 해부(該府)의 환곡(還穀)의 쌀을 본영(本營)의 성(城)안에 쌓아 두었던 것은 본영의 계책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170석은 그 가운데에서 미루어 사용하여 처음에는 운수(運輸)를 위해 왕래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해부의 사정이 비록 궁색하고 절박하더라도 이것은 부(府)까지 100리(里)에 가까우므로 창곡(倉穀)을 획송(劃送)[122]하는 것은 성향(城餉)[123]중에서 창고를 열어내어 수송하는 것과는 사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저희 감영은 이 수중(手中)의 물건을 예전과 같이 돌려쓰지 못하는 듯하니 이와 같이 저축(儲畜)이 텅 비었을 때에 무슨 방편으로 조처할 길이 있겠습니까. 좌우로 생각 해 봐도 계책이 나오지 않으므로 사실에

117) 손과 눈이 함께 등작함. 여기저기 다니면서 쉴 사이 없이 일을 함.
118) 관아(官衙)의 일군들에게 주는 봉급.
119) 장졸(將卒). 장수(將帥)와 병졸(兵卒).
120) 목전(目前)의 형편 아래. 바로 지금.
121) 서리(胥吏)·잡직(雜職) 따위의 하급 벼슬아치 및 군인들에게 급료로 지급하는 쌀. 하급관리의 봉급은 녹(祿)과 구분하여 요(料)라고 한다.
122) 갈라서 나누어 보냄.
123) 성을 지키기 위하여 비축한 쌀. 성을 지키는 군사의 군량과 기타 여러 가지 쓰임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양식임.

의거하여 첩보를 보내오니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해부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획송(劃送)하는 것이 마땅하나, 해부의 사정도 끝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인근 고을에 양곡(樣穀)[124]으로써 구획급대(區劃給代)[125]하여 폐국(弊局)에 한 가닥 버텨 보존할 처지를 만들 것입니다.

實牒報爲去乎 司敎是參量如右事情 發關該府 以爲依例劃送之地是乎去乃 該府事勢 終不可不念 則以隣近邑某樣穀 區劃給代 以爲弊局 一分支保之地爲只爲

초 4일

각면(各面)에 영(令)을 전하여 잡기(雜技)[126]를 경계하여 금했다.

初 四日

傳令各面 飭禁雜技

[전령(傳令)[127]]

모두 알아서 금지할 사항이다. 각 면리(面里)에 노름의 폐단을 듣자오니, 끝없이 부랑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무리들이 본분의 업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각각 와굴(窩窟)[128]을 둔다고 한다. 그리고 양가(良家)의 소년들을 백반(百般)으로 유인하여 돈과 재물을 암탈(暗奪)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몸을 망치는 무리들이 즐비하게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장사꾼들도 또한 꾀어서 권한 뒤 그 물건과 재물을 갈취한다고 말한다.

절도(窃盜)가 덩굴이 번식하듯 하고, 싸움과 고함이 난무함은 이에 연유하니 노름·술주정을 금하는 법이 어찌되어 하찮은 난민(亂民)무리가 조금도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소란을 일으키고, 우둔한 백성이 이들을 쫓아 물이 들고 화외(化外)[129]의 지역

[傳令]

爲知悉禁斷事 卽聞各面里雜技之弊 罔有紀極 浮浪無賴之輩 不守本分之業 締結徒黨 各置窩窟 良家少年百般誘引 暗奪錢財 蕩産誤身之類 比比有之 甚至過去之行旅商賈 亦爲慫恿 騙其物貨云

窃盜之滋蔓 鬪鬨之紛拏 未必不由於此 雜技酗酒法禁何如而么麽亂民輩 少無畏憚 恣意作拏 以致愚蠢之民從以濡染 胥入於化外之域

---

124) 양식(樣式)에 준한 관아(官衙)의 곡물.

125) 사항을 처리하여 물건을 대신 지급함. 획급(劃給)은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않고 그어 주는 것. 갈라서 나누어 줌. 타인·타부처 소장 세곡(稅穀)을 나누어 그 일부를 다른 사람, 다른 부처에 줌.

126) 잡된 여러 가지 노름.

127) 관원(官員)이 관할구역내의 관리·면임(面任)·민(民) 등에게 내리는 훈령(訓令)이나 고시(告示)이다. 갑오경장 이후 신식(新式)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128) 소굴(巢窟). 도둑·악한(惡漢)들의 본거지.

者 究其所犯 合置何辟 玆以先甲之令 有此別飭之擧爲去乎 逐戶曉諭 俾有懲戢之實效是遣

如有不悛舊習 恣意冒犯者是去等 這這指名馳告 以爲依律刑配之地爲旀 面里之設置風憲譏察等任 意義何如 而褻如充耳 不思禁察是隱喩 營門 從當有從他廉探之道是如乎 如是申飭之後若復有一民犯禁之弊 則當者之依律嚴處且置 勿論面里任 亦難免重究除尋 常惕念擧行宜當事

에 서로 들어감에 이르니 그들의 범하는 것을 합해 놓고 어찌 물리칠 것인가. 이 때문에 선갑(先甲)[130]의 영(令)으로 특별히 경계하니 가호(家戶)마다 알아듣게 일러서 징즙(懲戢)[131]의 실효를 거두게 해야한다.

만약에 옛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방자한 뜻으로 무모하게 범하는 자가 있으면 낱낱이 지명치고(指名馳告)하여 율형(律刑)에 의거하여 벌을 줄 것이다. 면리(面里)에 풍헌기찰(風憲譏察)[132]등을 두었건만 어떻게 되어 못 들은 척하고 금찰(禁察)을 생각하지 않는가. 영문(營門)에서도 별도로 염탐할 방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 뒤에 한 사람이라도 범금(犯禁)하는 폐단이 있으면 당자(當者)는 법률에 엄중하게 다스리고 면리(面里)의 책임자도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항상 척염(惕念)하여 거행함이 마땅한 일이다.

同日 甘結判官 嚴督章洲面還餉三稅 拒納班戶

같은 날에 판관(判官)[133]에게 감결(甘結)[134]하여 장주면(章洲面) 환향(還餉)[135] 삼세(三稅)를 납세를 거부하는 양반집을 엄히 감독하였다.

[甘結]

右甘爲營門 莅任屬耳 邑弊民瘼 姑未周察 而章洲一面凋弊最甚 一切公納 全然納苟求弊源 專由於班戶之

[감결(甘結)]

위 감결(甘結)은 영문(營門)에 부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이니 고을이 곤궁하고 백성이 병든 것은 짐짓 두루 살피지 못한 것이다. 장주(章洲) 한 면(面)은 조폐(凋弊)함이 가장 심하여 일체의 공납(公納)을 완

129)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地域).

130) 갑(甲)은 법령(法令)을 새로 만드는 것. 법령을 제정(制定)·발포(發布)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기 앞서 3일 동안 신중하고 또한 만든 후 3일 동안 다시 검토한다는 뜻으로 사려가 깊고 추구함이 넓음을 말함.

131) 허물을 뉘우치거 경계하고 나무람.

132) 풍기를 문란하거 하는 자를 단속하고 살핌.

133) 조선 왕조 때 감영(監營)·유수영(留守營) 및 큰 고을에 둔 벼슬. 종5품.

134) 감(甘)은 죄를 달게 받겠다고 자복했다는 뜻이고, 결(結)은 죄인의 신문(訊問)을 끝낸다는 의미임. 따라서 감결은 죄인의 자복을 받은 최종적인 신문서라는 의미임. 또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

135) 조선 후기 군사용으로 비축한 양곡을 환곡의 예에 따라 농민들에게 대여했다가 회수하는 미곡. 각도의 군영에서 군향(軍餉)으로 이획받은 곡식을 군영 소재지나 각 읍에 분급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했음.

전히 거부하였다. 그 폐단의 원인은 양반가에서 완강히 거절했기 때문에 소민(小民)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비웃는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부세(賦稅)의 조기 완납(完納)은 벼슬아치가 언제나 관령(官令)을 이행하고, 백성들의 습성을 헤아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頑拒　而小民　亦爲效嚬云　豈有如許事理　國賦早完　士子之常經官令　顧畏民習之當然是去乙

그러나 해당하는 면은 이곳 토지를 갈아먹고 살면서 공세(公稅)와 관령(官令)의 추착(推捉)[136]에 응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거절하면서 오지 않는지라. 필경에는 무고한 면임배(面任輩)로 하여금 관납(官納)을 막고서 도리어 적포(積逋)[137]를 조성하였다. 이처럼 곤란함이 극도에 달하여도 어쩔 수 없고 전하여 사방 해당 면(面)도 장차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該面段　耕食土地　而不應公稅官令　推捉而頑拒不來　畢竟使無辜之面任輩　替當官納　轉成積逋　求死不得　轉而之四該面　將至無面任之境云　似此民習　今始初聞　班民亦民　居此土籍此府　而瞥不畏法　蔑視官飭　至此之極　其所痛惋　較甚於蚩蠢之小民是如乎

이와 같은 백성들의 습성은 지금에 처음 들었다. 양반들도 또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이곳에 적(籍)을 두었다. 그러나 번민하게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칙(官飭)을 멸시하여 극도에 이르니, 그 아픔과 놀라움이 어리석고 미련한 소민(小民)보다 심한지라.

이것은 별도로 징계하여 쇄신함을 더하지 아니하면 소민들을 어떻게 징려(懲勵)할 수 있으며 또한 타면(他面)도 허물을 본받는 폐단이 없을지 어찌 알겠는가. 납세를 거부하는 반호(班戶)는 다과(多寡)를 논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초출(抄出) 해야 할 것이다.

此不別加懲創　何以懲勵小民　亦安知無他面效尤之弊乎　同拒納班戶　毋論所納多寡　一併抄出　先以申令之意捉致其奴子　定給日限　另加董督爲乎矣　若復如前愆納是去等　各其主戶捉囚報來以爲自營門　別般嚴處之地爲旀　該面風憲段　必以有風力勤實可堪者　各別擇差宜當事

우선 법령을 펴는 뜻으로 그들의 노자(奴子)들을 착치(捉致)하여 기한을 정해주고 별도로 감독을 더할 것이다. 그래도 예전과 같이 건납(愆納)[138]하거든 그 주인을 잡아 가두고 아뢰면 영문(營門)으로부터 별도로 엄히 처벌할 것이다. 해면(該面)에 풍헌(風憲)[139]은 풍력(風力)[140]에 성실하여 감당할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가려서 차출할 것이다.

136) 죄인을 찾아서 잡음.
137) 여러 차례 부세(賦稅)를 내지 않음.
138) 세금을 기한 안에 못 바침.

同日 火巢內 民家失火事 封啓

[狀啓]
卽接 顯隆園參奉 金益鼎牒呈 則巡山監官羅赫仁 來告內 火巢內安寧面鵲峴洞居 案山直徐快得家舍 去月二十九日 偶然失火 草家十間盡爲燒燼是如爲白有臥乎所 火巢內失火 萬萬驚悚 常時不善檢飭之該面任 捉來嚴治是白遣 被燒家舍段 使卽移搆於 火巢外 俾卽奠接而恤典租一石 依例上下之意 竝只分付於本府判官李敏榮處爲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화소내(火巢內)[141]에 민가(民家)가 실화(失火)한 일로써 봉계(封啓)했다.

[장계(狀啓)]
이제 현륭원(顯隆園) 참봉(參奉) 김익정(金益鼎)의 첩정(牒呈)[142]을 접하니 순산감관(巡山監官) 나혁인(羅赫仁)이 와서 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화소(火巢)안의 안녕면(安寧面) 작현동(鵲峴洞)에 사는 안산(案山) 산지기 서쾌득(徐快得)의 집이 지난 달 29일에 우연히 불이 나서 초가집 열칸이 모두 타버렸다고 합니다.

화소 안에 불이 난 것은 만만(萬萬) 놀라고 송구스러우며, 평소에 검칙(檢飭)[143]을 잘 하지 못한 해면(該面)에 책임자를 잡아와서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화재를 입은 집은 곧바로 화소(火巢)밖에 옮겨 전접(奠接)[144]하게 하고, 휼전조(恤典租) 1석(石)은 전례에 의거 조정하여 본부 판관 이민영(李敏榮)에게 분부하였기로 치계합니다.

初 五日
華寧殿奉審
同日 雨澤封啓

초 5일 화령전(華寧殿)에 봉심하고 우택(雨澤)[145]을 봉계(封啓)했다.

---

139) ①풍기(風氣)를 바로잡고, 관리의 정사청탁(正邪淸濁)을 감창 규탄하는 직임(職任). ②조선 시대 면(面)이나 이(里)의 함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140) 남을 감화시키는 힘.
141)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의 해자(垓子)밖의 초목을 불살라 버린 곳.
142) 각 아문(衙門)과 사신(使臣)이 한 등급 이상 높은 아문에게 보내던 문서.
143)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은 행정 조치를 조사하여 규정에 따르도록 단속함.
144) 자리 잡고 살만한 곳을 정하거나 안거(安居)시킴.
145) = 패택(沛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우리나라는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측량도구가 필요하여 고려시대 이후부터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깊이를 재는 방법(; 雨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단하거나 질퍽질퍽한 토지의 상태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1441년(世宗 23) 서운관(書雲觀)에서 측우기(測雨器)를 발명하게 되었다. 1442년에 측우기의 우량측정 제도가 확립되었는데 비가 그친 후 주척(周尺)을 써서 자, 치, 푼(分)까지 정확하게 재어 기록하도록 하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일시와 갠 일시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관상감(觀象監)과 각도의 감영(監營)등에서 측량한 값을 집계하여 각 지방별로 통계를 내어 중앙(戶曹)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에 걸친 강우량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였다.

[장계(狀啓)]

이제 본부(本府) 판관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살펴보니, '금월(今月) 초 4일 묘시(卯時)에 비가 시작되어 가랑비만 내리어 당일 오시(午時)에 겨우 티끌만 적시었다.'고 합니다. 측우기(測雨器)로 재어보니 수심(水深)이 3분(分)이므로 연유를 치계합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今月初四日卯時 量始雨或霏或灑 當日午時 至所得僅爲浥塵是如爲乎旀 營測雨器 水深爲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초 10일 화령전(華寧殿)에 봉심(奉審)하였다.

初 十日

華寧殿奉審

12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十二日

雨澤封啓

[장계(狀啓)]

이제 본부 판관(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살펴보니, '이 달 11일 술시(戌時)[146]에 비가 시작되어 가랑비만 내리어 12일 진시(辰時)[147]에 겨우 티끌만 적셨다.'고 합니다. 이에 신(臣)이 측우기(測雨器)로 재어보니 수심이 3분(分)이므로 연유를 치계합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今月十一日戌時 量始雨或霏或灑 十二日辰時 至所得僅爲浥塵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 水深爲三分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3일 본영(本營) 및 5개 속읍(屬邑) 관문(官門) 취점사(聚點事)[148]로 봉계하였다.

十三日

本營及五屬邑官門 聚點事封啓

146) 십이시(十二時)의 11째 하오 7 시부터 하오 9 시까지의 시각.
147) 하루를 12시로 나눈 다섯째 되는 시각. 곧 상오 7 시부터 상오 9 시까지의 시각.
148) 한곳에 모아서 점검(點檢)하는 일.

[狀啓]

節到付備邊司關內 節 啓下敎司 啓辭 各道春操 稟啓今纔齊到矣 莫重戎政之廢閣 已爲數十年 所其在陰雨之備 誠不免疎虞之莫甚 而昨年穡事 旣失全稔 目下民情 在在遑汲 此時徵赴之役 實乖懷保之義 詰戎雖係 不輕恤民 尤在所先

今春 各道四都水陸諸操 巡歷巡點 竝姑停止 官鎭門聚點 使之如例爲之 而充伍繕械之節 另加惕念 毋或疎忽 有堤堰處 移點完役 亦依年前申飭 俾有實效 而畿甸關北 救急邑鎭 雖與公賑有異 抄飢役民 勢難兩行 此則竝與聚點 而許令姑停 各樣都試 依例設行之意 竝爲分付何如

[장계(狀啓)]

이번에 받은 비변사 관문(關文)내 명령에 (임금께서) 비변사에 계하(啓下)[149]하신 가르침은 각 도(道)에 춘조(春操)[150]를 부여하신 계하가 지금 가지런히 이르렀습니다. 막중한 군사 행정의 유명무실함이 이미 수십 년이 되어, 갑자기 위기의 상황이 오면 소우(疎虞)[151]의 막심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년에 가을걷이는 이미 풍년이 들지 않아서 눈앞의 민정(民情)은 곳곳이 황급합니다. 이 때에 백성들을 징발하여 군역(軍役)에 부리는 것은 진실로 어루만지고 보호해야하는 뜻을 어기는 것이니 힐융(詰戎)[152]이 비록 얽매여 있으나 백성을 구휼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봄에 각 도(道)·4도(都)·수륙(水陸)에 모든 군사훈련의 순찰·순점(巡點)[153]은 아울러 짐짓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官)과 진문(鎭門)의 점호(點呼)는 그들로 하여금 전례와 같이 하되 대오(隊伍)를 충당하거나 기계를 수선 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하여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방(堤防)을 옮겨 완역(完役)하였으며 또한 년전(年前)과 같이 신칙(申飭)하여 실효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관북(關北)지역에 급히 구해야하는 읍과 진(鎭)은 비록 공진(公賑)[154]을 주어 달리하고, 기민(饑民)과 역민(役民)의 실태를 파악하더라도 양쪽 모두 형편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취점(聚點)하되 영을 내려 정지하게하고 각양(各樣) 도시(都試)[155]는 전례와 같이 시행하되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149) 임금이 재가(裁可)하는 것 또는 그 가르침

150) 봄철에 행하는 군사 훈련.

151) 조심을 하지 않고 어설프게 잘못을 저지름.

152) 힐융치병(詰戎治兵)의 약자로 군대의 일을 정리하고 다스림을 일컬음. 여기서 융(戎)은 군복, 병(兵)은 병기(兵器)를 가리킴. 《서경(書經)》 〈입정(立政)〉 "其克詰爾戎兵"에서 나온 말.

153) 순회점고(巡回點考). 곧 중외(中外)의 지역을 돌면서 관리의 근무나 혹은 민정(民情)을 살피는 것을 말함. 또는 군적(軍籍)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점을 찍어 인원수를 조사하는 것.

154) 조선 시대 흉년에 공곡(公穀)으로 굶주린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일.

155) 조선 시대 중앙에서는 병조(兵曹)와 훈련도감(訓鍊都鑑)의 당상관(堂上官)이, 지방은 관찰사(觀察使)와 각 진영(鎭營)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매년 봄과 가을에 무사(武士)를 선발하던 제도.

답하여 가로되 그 일을 윤허하신다는 전교(傳敎)[156]이십니다. 전교내(傳敎內) 사의(事意)를 받들어 시행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신(臣)은 영병마(營兵馬)를 전례에 의거하여 취점(聚點)하니 모두 궐액(闕額)[157]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군(步軍)은 각처의 제방(堤防)을 소준(疏濬)[158]하는 사업에 이점(移點)하고 소속 오읍군병(五邑軍兵)도 관사(關辭)에 의거하여 거행할 뜻을 영을 전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에 안산군수 김원순(金原淳), 진위현령(振威縣令) 오근상(吳謹常), 시흥현령(始興縣令) 이명원(李鳴遠)의 보고를 접하니 '3읍(邑)이 모두 구급읍(救急邑)으로써 취점을 정지하였다.'고 합니다.

과천현감 정만교(鄭晩敎)의 보고한 즉, '본현(本縣)에 군병(軍兵)은 전례에 의하여 취점하니 별다른 궐오(闕伍)[159]가 없었다.'고 하고, 용인현령 이굑(李漍)의 보고는 '본현(本縣)의 군병은 제방 소착(疏鑿)[160] 사업에 옮겨서 점검(點檢)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합니다.

答曰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 亦爲白有等以 臣營馬兵依例聚點俱無闕額 而步軍段 移點於各處堤堰疏濬之役是白遣所屬五邑軍兵 亦爲依關辭擧行之意 傳令知委是白加尼 卽接安山郡守金原淳 振威縣令吳謹常 始興縣令李鳴遠所報 則三邑 俱以救急邑 聚點停止是如爲白遣 果川縣監 鄭晩敎所報 則本縣軍兵 依例聚點 而別無闕伍 是如爲白遣 龍仁縣令李漍所報 則本縣軍兵 移點於堤堰疏鑿之役 是如爲白有等以 緣由幷以馳 啓爲白臥乎事

15일

화령전(華寧殿)에 분향(焚香)하고 봉심(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十五日

華寧殿焚 香奉審後 封啓

[장계(狀啓)]

신은 오늘에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의 첩정(牒呈)을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象 祖牒呈 則今日 園上

156)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일, 또는 그 명령. 하교(下敎).
157) 군사 등 국역(國役)의 정해진 액수에 도망이나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지 않은 인원수.
158) 물을 통하게 하여 이끌음.
159) 항오(行伍)가 모자람.
160) 개천이나 우물을 쳐서 물이 통하도록 함.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보니 "오늘 원(園) 뒤에 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연유(緣由)를 치계합니다.

十九日

陵 園所局內 松雜木補植封啓

19일 능원(陵園) 소국(所局) 안에 소나무와 잡목(雜木)을 보식(補植)[161]하고 봉계합니다.

[狀啓]

卽接 健陵令崔斗顯 顯隆園令李相祖牒呈 則 局內樹木稀疎處 年例補植之役 自今月十七日爲始 十八日至畢役 是如爲白有等以 補植經界 及植木株數 後錄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곧바로 건릉령(健陵令) 최두현(崔斗顯),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相祖) 첩정을 보니, '국내(局內)에 수목(樹木)이 드문 곳에 연례적으로 보식(補植)하는 사업을 이 달 17일부터 시작하여 18일에 필역(畢役)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식(補植)한 경계 및 식목(植木)의 그루수를 뒤에 적어 치계합니다.

二十日

顯隆園 寒食 祭享 以獻官進參

20일 현륭원(顯隆園) 한식(寒食) 제향(祭享)에 헌관(獻官)으로 나가서 참제(參祭) 하였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二十日 行 顯隆園寒食 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계본(啓本)]

삼가 제향한 일을 아룁니다. 이 달 20일에 현릉원 한식 제향에 신이 헌관(獻官)[162]으로 진참(進參)한 뒤에 원상(園上)을 봉심하니 잡초와 잡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산(山) 내에도 수목을 범작(犯斫)[163]

161) 인공조림(人工造林) 특히 식수(植樹) 조림에 있어서 묘목(苗木)이 시들거나 상하여 공지(空地)가 생긴 경우 그곳에 묘목을 심는 일.
162) 나라 제사 때 임시로 임명하는 제관(祭官).
163) 금(禁)하는 산에 들어가서 함부로 나무를 베어냄.

하는 폐단이 없습니다. 제관(祭官)들의 직함과 성명을 뒤에 기록하여 치계합니다.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능원소(陵園所)에서 춘대봉심(春大奉審)[164]을 마치고 신시(申時)에 감영(監營)에 돌아왔다.

同日 陵 園所春大奉審 申刻還營

[계본(啓本)[165]]

삼가 상고할 일을 아룁니다. 신은 이 달 20일에 건릉(健陵) 능위에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 이하 모든 곳과, 그리고 현륭원(顯隆園) 원위에 정자각과 비각이하 모든 곳을 봉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릉(健陵)에 제기(祭器)와 잡물이 깨져 손상된 것을 뒤에 기록하였으므로 해조(該曹)[166]로 하여금 조속하게 수개(修改) 할 것입니다.

현륭원(顯隆園) 전사청(典祀廳)[167]에 잡물이 탈이 있으면 전례에 의하여 신(臣)의 감영 관천고(管千庫)에서 형편에 따라 수개(修改)할 것입니다. 수목(樹木)은 화소(火巢)가 넓어서 일일이 적간(摘奸)[168] 할 수 없으므로 낱낱이 순심(巡審)하여 함부로 벌채하는 폐해가 없도록 능·원 관처(官處)에 별도로 신칙하였습니다.

만년제(萬年堤)[169]의 둑 안을 일체 살펴보니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앵봉(鸎峰)[170]의 부석소(浮石所)[171]에는 편비(褊裨)[172]를 보내어 적간하니 봉표(封標)내에도 탈이 없다고 하므로 사유를 아울러 치계합니다.

[啓本]

謹 啓爲相考事 臣於本月二十日 健陵陵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顯隆園園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奉審後 健陵祭器雜物破傷者 開錄于後 爲白去乎 令該曹 卽速修改爲白乎旀

顯隆園典祀廳 雜物有頉者依例 自臣營管千庫 從便修改是白遣 樹木段 火巢濶遠不能一一摘奸 而這這巡審俾無犯斫之弊事 另加申飭於 陵 園官處 爲白乎旀 萬年堤坰內 一體看審 則俱爲無頉是白遣 鸎峰浮石所 發遣褊裨摘奸 則封標內 亦無頉處是白乎等以 緣由 幷以馳 啓爲白臥乎事

---

164) 매년 봄에 대대적(大大的)으로 시행하는 봉심(奉審).

165) 임금에게 국사(國事)에 관하여 아뢰는 문서.

166) 육조(六曹) 중에서 해당하는 관서(官署).

167) 조선 시대 문묘 제향과 제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임.

168)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하여 적발함.

169) 현륭원과 화성 일대의 경제적 기반을 육성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둔전(屯田) 설치, 화산 일대의 대규모 조림(造林),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방 축조 등의 사업이 수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때 축조된 것이 만년제로 1797년(정조 21)에 완성되었다. 만년제는 현륭원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수원의 서둔(西屯), 서호(西湖) 등의 시설과 함께 정조의 권농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적이다.

170) 봉우리의 지형이 꾀꼬리처럼 생겼거나 산에 꾀꼬리가 많아서 붙은 이름인데 풍수지리에 「鶯鳥飮水形 代代富貴雙全之地(앵조음수형 대대부귀쌍전지지)」라 했다.

171) 능묘(陵墓)를 조성하거나 이장(移葬)할 때 쓰이는 돌을 캐서 다듬는 곳.

172) 대장(大將)을 보좌하며 소속 부대를 지휘하던 무관직.

二十一日

以海溢 十一面 抄飢救急事傳令

21일

해일(海溢)[173]로 인하여 11개 면(面)의 초기(抄飢)를 구급(救急)하는 일로 전령하였다.

[傳令]

營門 莅任不久 各面民情雖未到底領略 而昨年海溢諸面則窮春遑汲 較甚於他面 鶉鵠顦顇之狀 如在目前 況當省耕之時 宜有補助之方 故就海溢各面 中最遑急戶 略略抄來 以今二十七日爲始 每口米二升太二升式分給計料爲去乎

該面任 依成冊一一知委 當日曉頭 領率待令于後錄倉所 以爲受去之地 是矣 若有代受之戶 則卽當拔去 必以當戶率待 宜當向事

同日 離發上京 中火于果川 夕抵筆谷

[전령(傳令)]

영문(營門)에 부임한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각 면의 민정(民情)을 아직 영략(領略)[174]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에 해일(海溢)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 궁춘(窮春)[175]의 황급함이 다른 면에 비하여 심하다. 따라서 순곡(鶉鵠)의 함함(顦顇)[176]하는 형상이 눈앞에 있건만 하물며 성경(省耕)[177]의 때를 당하여 마땅히 보조할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해일을 당한 각 면에 가서 가장 황급한 집을 점점 초래(抄來)하여 이 달 27부터 한 사람마다 쌀 두되 콩 두되씩 나누어 줄 요량이다.

해당 면의 책임자는 책자를 만들어 일일이 알리고 당일 꼭두새벽에 그들을 인솔하여 영(令)을 기다렸다가 뒤에 기록한 창고에서 받아 가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신하여 받아 갈 집이 있으면 당연히 빼어버리고 반드시 해당하는 집을 인솔하여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같은 날 출발하여 상경(上京)하는데 과천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필곡(筆谷)에 도착하였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上京緣由 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은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사항이 있어서 당일에 출발하여 상경(上京)하는 연유를 치계합니다.

---

173) 지진이나 화산의 폭발 또는 폭우로 인하여 바다의 물결이 불시에 일어나서 육지로 넘쳐 들어옴.
174) 대강을 짐작하여 앎.
175)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새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아 사람들이 궁핍스럽게 지내는 봄의 절기.
176) 몹시 주리어서 걷딜 줄을 모름.
177) 천자(天子)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농사에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묻는 일.

23일 어제(御製) 교준(校準)의 일로써 내각(內閣)에 나아갔다.

二十三日
以 御製校準事 進內閣

25일 봄보리 갈이를 마친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五日
春牟麥畢耕事 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本府) 판관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에 봄보리 갈이를 이미 마쳤다.'고 하여 연유를 치계합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春牟麥 今已畢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27일 해일(海溢)이 일어나 각 면에 기민(飢民) 구급책(救急策)으로 첫 번째 순시하고 나눠주었다.[178]

二十七日
海溢 各面飢民救急 初巡分給 一倉 禮裨監分
松洞 四十四口 米八斗八升 太八斗八升 六七倉 座首監分 土津 六十三口 米十二斗六升 太十二斗六升
五朶 三十一口 米六斗二升 太六斗二升 宿城 六十四口 米十二斗八 浦內 五十八口

1창(倉)은 예비(禮裨)가 감독하여 나눠주니,
송동(松洞) : 44구(口), 쌀 8말 8되와 콩 8말 8되를 나눠주었다.
6,7창(倉)은 좌수(座首)가 감독하여 나눠주니,
토진(土津) : 63구(口), 쌀 12말 6되와 콩 12말 6되
오타(五朶) : 31구(口), 쌀 6말 2되와 콩 6말 2되
숙성(宿城) : 64구(口), 쌀 12말 8되와 콩 12말 8되

178) 옛 지명(地名)을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송동(松洞) : 화성시 매송면 일부.
토진(土津) : 평택시 청북면 일부.
오타(五朶) : 평택시 고덕면 일부.
숙성(宿城) : 평택시 오성면 일부.
포내(浦內) : 평택시 포승면 일부.
가사(佳士) : 평택시 현덕면 일부.
현암(玄巖) : 평택시 현덕면 일부.
장안(長安) : 화성시 장안면 일부.
압정(鴨汀) : 화성시 우정면 일부.
초장(草長) : 화성시 장안면 일부.
우정(雨井) : 화성시 우정면 일부.

米十一斗六升　太十一斗六升 佳士 三十口 米六斗 太六斗 玄巖 四十口 米八斗 太八斗 九倉　迎華察訪監分 長安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 太十四斗八升 鴨汀 一百九口 米一石六斗八升 太一石六斗八升 草長 四十九口 米九斗八升 太九斗八升 雨井 一百八十五口 米二石七斗 太二石七斗 合各面 七百四十七口 各米二升太二升 合米九石十四斗四升 太九石十四斗四升

포내(浦內) : 58구(口), 쌀 11말 6되와 콩 11말 6되
가사(佳士) : 30구(口), 쌀 6말과 콩 6말
현암(玄巖) : 40구(口), 쌀 8말과 콩 8말을 나눠주었다.
9창(倉)은 영화찰방(迎華察訪)이 감독하여 나눠주니,
장안(長安) : 74구(口), 쌀 14말 8되와 콩 14말 8되
압정(鴨汀) : 109구(口), 쌀 1섬 6말 8되와 콩 1섬 6말 8되
초장(草長) : 49구(口), 쌀 9말 8되와 콩 9말 8되
우정(雨井) : 185구(口), 쌀 2섬 7말과 콩 2섬 7말을 나눠주었다.
각 면(面)을 합하면, 747구(口)에게 각각 쌀 2되와 콩 2되씩 분급(分給)하여 합계 쌀 9섬 14말 4되와 콩 9섬 14말 4되를 나눠주었다.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3월

여 백

初 一日

營下得雨形止 封啓

초 1일

영문(營門) 아래에 비 온 상황을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金相宇牒呈 則去月二十九日未時量 始雨或霆或灑 三十日卯時至 所得 恰爲三犁而營下測雨器 水深爲五寸三分 是如爲白有臥乎所惜乾之餘 雨澤優洽 民事多幸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事事 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김상우(金相宇)의 첩정을 보니, '지난 달 29일 미시(未時) 즈음에 비가 시작하여 혹은 촉촉하게 혹은 주룩주룩 내리어 30일 묘시(卯時)까지 내린 비가 3리(犁)[179]에 충분하다.'고 하고 영문 아래에 측우기로 잰 수심(水深)이 5촌 3분이라고 하니 가뭄을 애석하게 여기던 나머지 비의 혜택이 흡족하고 민사(民事)가 다행하므로 이 같은 연유를 치계합니다.

같은 날 화령전과 현륭원을 봉심하여 무사한 일을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衛將金相宇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無事 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李相祖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奉審無事 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위장(兼衛狀) 김상우(金相宇) 첩정(牒呈)을 보니 금월(今月) 초하루에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무사(無事)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到付)[180]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 첩정에 이 달 초하루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여 무사(無事)하다고 하므로 연유를 치계합니다.

---

179) 보지락. 비가 온 분량이 보습에 들어갈 만큼 깊이가 된다는 말.
180) 공문 같은 것이 와 닿음.

초 2일 내각(內閣)에 나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고 곧 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二日
進內閣校準 御製 仍進實錄廳

초 3일 내각(內閣)에 나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고 곧 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三日
進內閣校準 御製 仍進實錄廳

초 4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四日
進實錄廳

초 5일 농사(農事)의 상황을 봉계(封啓)하였다.

初 五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 판관 이민영(李敏榮)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에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파릇파릇하고 봄보리는 싹을 틔워 삽역(鍤役)[181]이 바야흐로 펼쳐진다고 하므로 이에 연유를 치계합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秋牟麥向靑 春牟麥立苗 鍤役方張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초 6일 진시(辰時)[182]에 출발하여 시흥(始興)에서 점심을 먹고 신시(申時)[183]에 영문(營門)에 도착하여 봉계하였다.

初 六月
辰刻離發 中火于始興 申刻抵營 封啓

181) 가래의 역사(役事). 곧 농사일을 말함.
182) 십이시의 다섯째. 곧 상오 7시부터 9시까지.
183) 십이시의 아홉째. 곧 하오 3시부터 5시까지.

[狀啓]
臣 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은 묘당(廟堂)에 품의할 사항이 있어서 상경(上京)하였다가 당일에 영문(營門)에 돌아왔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합니다.

初 七日

海溢 各面飢民救急 再巡分給一倉 禮裨監分 松洞 四十四口 米八斗八升 太八斗八升 六七倉 座首監分 土津 六十三口 米十二斗六升 太十二斗六升 五朶 三十一口 米六斗二升 太六斗二升 宿城 六十四口 米十二斗八升 太十二斗八升 浦內 五十八口 米十一斗六升 太十一斗六升 佳士 三十口 米六斗 太六斗 玄巖 四十口 米八斗 太八斗
九倉 工裨監分 鴨汀 九十四口 米一石四斗八升 太一石四斗八升 長安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 太十四斗八升 草長 四十五口 米九斗太九斗 雨井 一百八十八口 米二石七斗六升 太二石七斗六升 合各面 七百三十六口 各米二升 太二升 合米九石十二斗二升 太九石十二斗二升

초 7일

해일(海溢)이 일어나 각 면에 기민(飢民)의 구급(救急)차 두 번째 순행(巡行)하여 분급(分給)하였다.

1창(倉)에는 예비(禮裨)가 감분(監分)하니,
송동(松洞) : 44구(口), 쌀 8말 8되와 콩 8말 8되를 나눠주었다.
6 · 7창(倉)은 좌수(座首)[184]가 감분(監分)하니,
토진(土津) : 63구(口), 쌀 12 말 6되와 콩 12말 6되
오타(五朶) : 31구(口), 쌀 6말 2되와 콩 6말 2되
숙성(宿城) : 64구(口), 쌀 12말 8되와 콩 12말 8되
포내(浦內) : 58구(口), 쌀 11말 6되와 콩 11말 6되
가사(佳士) : 30구(口), 쌀 6말과 콩 6말
현암(玄巖) : 40구(口), 쌀 8말과 콩 8말을 나눠주었다.

9창(倉)은 공비(工裨)가 감분(監分)하니,
압정(鴨汀) : 94구(口), 쌀 1섬 4말 8되와 콩 1섬 4말 8되
장안(長安) : 74구(口), 쌀 14두 8승 콩 14두 8승
초장(草長) : 45구(口), 쌀 9말과 콩 9말
우정(雨井) 188구(口), 쌀 2섬 7말 6되와 콩 2섬 7말 6되를 나눠주었다.
각 면을 합하면, 736구(口)에게 각각 쌀 2되와 콩 2되를 나눠 주니 도합(都合) 쌀 9섬 12말 2되와 콩 9섬 12말 2되를 나눠주었다.

184) 조선 시대 지방의 주·부·군·현(州府君縣)에 둔 향청(鄕廳)의 직.

같은 날 교리(校吏) 요미(料米)를 구분해서 보내는 사항을 다시 비국(備局)[185]에 아뢰고 또 광주부(廣州府)에 회이(回移)[186]하였다. 지난 달 교리(校吏) 요조(料條)는 전례에 의하여 나눠 보내는 사항을 주사(籌司)[187]에 논보(論報)[188]하였다.

그 회제(回題) 내용은, '본영(本營)과 해부(該府)의 사세(事勢)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에 만약 각 읍에 있는 광주가 맡아서 관장하는 화성 교리(華城校吏) 요조미(料條米)는 이 수량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내면 본영(本營)에 있어서 잃을 것이 없고 실지로 양쪽 편에 합당한 길입니다. 지금에 이에 따라 거행할 뜻을 남영(南營)에 관자(關子)[189]를 보내나니 해부(該府) 문이(文移)는 이점을 추용(推用)할 일입니다.

同日 校吏料米劃送事 更報備局 亦爲回移廣州府 去月以校吏料條 依前劃送事 論報籌司矣 回題內 本營 與該府事勢 俱不容不念是如乎 今若以各邑所在 廣州句管華城校吏料條米中 準此數劃送 則在本營 無甚爲失而實合兩便之道乙仍于 方以依此擧行之意 更關南營是在果待 該府文移 就此推用之地向事

남한산성 이문(移文)[190] 내용은, '상고할 사항입니다. 귀부(貴府)에 보낸 교리 요미(料米) 173석은 본 폐부(弊府)[191] 향곡(餉穀) 중에서 추이(推移)하여 나눠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폐부의 향부(餉簿)가 점점 줄어들어 전례에 의하여 보낼 길이 전혀 없으므로 이 뜻을 주사(籌司)에 논보(論報)하였습니다. 곧 관문(關文) 내용은, '양영(兩營)의 사세(事勢)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각 읍에 있는 본영(本營)이 구관(句管)하는 화성(華城) 교리 요조미(料條米) 중에서 수량에 맞춰 나눠 보내 번거롭게 왕복함이 없어야

○ 南城移文內 爲相考事 貴府所送 校吏料米一百七十三石零 本自弊府餉穀中推移劃送者 而見今弊府餉簿 漸致耗縮 萬無依例輸送之路 故以此意 論報籌司矣 卽到關文內節該 兩營事勢 俱不可不念 以各邑所在 本營句管華城校吏料條米中 準數劃送 無煩往復 亦爲有

185) 조선 시대 비변사(備邊司)의 별칭.
186) 해당 관아(官衙)에 문건(文件)을 조회함.
187) 조선 시대 군무(軍務)와 정사(政事)를 논의하던 비변사(備邊司)를 달리 이르는 말.
188) 하급 관아(官衙)에서 상급 관아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여 보고하던 일.
189) 관(關)이나 관문(關文)라고도 한다. 주로 동등 이하의 관서에 보낼 때 사용하며,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올리는 문서는 첩정(牒呈)을 썼다. 두 관청간에 필요한 사무를 상고(相考)하여 시행하기 위한 문서가 주종이며, 오늘날의 공문서와 비슷하다. 동등한 관청에 올리는 관문은 평관(平關), 예조에 보내는 관문은 예관(禮關)으로 칭했다.
190) 관청끼리 사건 처리를 넘기거나 어떠한 처지를 부탁하거나, 또는 어떠한 사실을 요구할 때에 보내는 공문. 또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는 일.
191) 자기 관아(官衙)의 겸칭(謙稱).

等以 依關辭 各邑所在穀中劃付 貴府以爲每年取耗之地是遣 同劃送邑名 及穀數後錄文移爲去乎 先自昨年耗條一百七十三石十二斗二升 發關取用爲宜向事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문의 말씀에 의하여 각 읍에 있는 곡식 가운데에서 획부(劃付)[192]하오니 귀부(貴府)에서는 매년 취모(取耗)[193]의 처지를 삼으시고 나눠 보낸 읍명(邑名)과 곡식의 수량을 후록(後錄)하여 문이(文移)합니다. 먼저 작년부터 모조(耗條)[194] 173석 12두 2승을 관문을 발송하고 빌려 쓴 일입니다.'

○ 是日一邊回移 一邊報籌司

○ 이 날에 한편으로는 회이(回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사(籌司)에 보고하였다.

[廣州回移]

爲回移事 卽到貴移內 節該本府校吏料米 一百七十三石零 以各邑所在穀中 後錄劃送 先自昨年 耗條發關取用 亦爲有置 弊府支放之條 必以貴營耗米 換劃者 當初設施之意 誠以弊營支放 必以本色 而各邑耗米 運輸有弊 貴營倉舍 旣在弊府城內 是隱則 耗米取用 在弊營無異手邊之物 在貴營 毋論五邑與華倉等是 作錢取用於此於彼 毫無異同 則以此換彼 事勢便順故耳

[광주회이(廣州回移)]

회이(回移)된 사항입니다. 방금 도착한 귀부(貴府)의 회이 내용에 이번에 본부에서 교리(校吏) 요미(料米) 173석 가량을 각 읍 소재의 곡물 중 후록(後錄)하여 획송하였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환곡의 이자조로 발관(發關)[195]하여 받아 썼어도 폐부(弊府)에 지방(支放)의 조건은 반드시 귀영(貴營)의 모미(耗米)[196]로 바꿔 구획(區劃)한 것은 당초에 설시(設施)한 뜻입니다. 진실로 폐영(弊營)에 지방(支放)도 반드시 본색(本色)[197]으로 각 읍 모미(耗米)를 옮겨 보내는 것이 폐단이 있었습니다.

귀영(貴營)의 창사(倉舍)가 이미 폐부(弊府)의 성내(城內)에 있으니 모미(耗米)를 빌려씀은 폐영에 있어서 손 주변의 물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귀영(貴營)에 있어서도 5읍(邑)과 화영(華營)의 창사(倉舍)

192) 갈라서 나누어 다른 계정(計定)에 부침.
193) 조선 시대 환곡제(還穀制)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곡식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빌려준 곡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이자(利子)로 받던 것.
194) 모미(耗米)의 조항.
195) 상관(上官)이 하관(下官)에게 관문(關文)을 보냄.
196) 조선 후기 환곡을 대여했다 거둘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곡식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빌려준 곡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이자로 더 거두는 쌀.
197) 조세(租稅)를 징수하는 데 미곡(米穀)이나 명주를 본색이라고 하고, 은전(銀錢)으로 환산(換算)한 것을 절색(折色)이라고 함. 즉 본색이란 다른 물건에 대한 조세 본래의 종류라는 뜻.

등을 따지지 않고 작전(作錢)[198]하여 빌려 쓰되 이쪽이나 그쪽에서 조금도 다르게 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그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사세(事勢)가 편순(便順)할 뿐입니다.

따라서 40여 년간 이것을 지켜오면서 어기지 않더니 지금에 갑자기 옛 법규를 바꾸었습니다. 이 대획(代劃)[199]의 거동이 금전(金錢)을 5읍(邑)에서 집행하고 쌀을 본부에서 무역한다면 시가(時價)가 상정(詳定)[200]하여 곧을 것입니다. 그리고 170여 섬의 값은 70~80여 섬도 무취(貿取)하지 못할 것이니 부족한 수량은 어디에서 취하여 갖출 것입니까. 폐영의 사세(事勢)가 전혀 조처할 수 없으니 두 말을 접어두고 귀영에 있어서도 본색을 실어가지 못한다면 돈을 가지고 빌려 쓸 뿐입니다.

귀영(貴營)에서 거래하는 쌀의 시가(市價)를 상정(詳定)한 것이 1석에 4량인 바 5읍(邑)에 신칙(申飭)하여 한결같이 시가(市價)에 따라서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면 귀영에 있어서도 털끝만큼도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부의 사세(事勢)가 매우 황급하건만 어찌 이와 같이 왕복의 어려움과 지번(支煩)[201]을 꺼리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이자로 받은 쌀을 취하여 쓴 한 기록에는 더더욱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 못하고 밀어내고자해도 밀어내지 못하는 정사(政事)에 얽매여 각 읍의 적정(糴政)[202]이 마감되어 해를 넘기고 삼춘(三春)에 분환(分還)[203]도 그의 창고가 비어 창고를 열어 실어오고자 하지만 그림 가운데 떡과 다름이 없습니다.

四十餘年 遵行勿替之餘 今忽變改前規 有此代劃之擧 將欲執錢於五邑 貿米於本府 則時價詳定 不啻徑庭 一百七十餘石 價本不足以貿取七八十石 不足之數 將於何取辦乎 弊營事勢之萬萬罔措 固不待兩言 而至於貴營 旣不可本色輸去 則等是執錢取用耳

貴營 貿米價詳定 不過一石四兩是乎所 申飭五邑 一從時價作錢 則在貴營 毫無所損是如乎 苟或不然 則弊府事勢 雖甚遑汲 豈如是往復持難 不憚支煩乎 至於昨年耗條取用一款 尤係行不得推不去之政矣 各邑糴政 磨勘經歲 三春分還 亦幾傾庫 今雖欲出庫輸來 殆無異畵中之餠 此箇事狀 較然明甚 方以此意 枚報籌司 計料而先此回移爲去乎 須念共濟之義 且軫俱便之策 同料米一百七十三石零 如例劃送俾卽頒料爲宜向事

198) ①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것 ②조선 시대 현물로 내던 세금을 돈으로 환산하여 내는 것.
199) 대용품(代用品)으로 획급(劃給)함.
200) 지방이나 중앙의 관청에서 필요한 세액이나 공물액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
201) 지루하고 어수선 함.
202)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이는 일.
203) 봄철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분급(分給)하여 꾸어줌.

이 같은 상황이 확연하여 바야흐로 이 뜻을 주사(籌司)에 낱낱이 보고하고 계산하고 생각하여 이 먼저 회이(回移)합니다. 따라서 모름지기 공제(共濟)의 의(義)를 생각하고 또 구편(俱便)의 계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요미 173석을 전례와 같이 획송하오니 곧바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備局報牒]
爲相考事 本府校吏料米 一百七十三石零 自廣州移來者 依前區劃 及時頒料事向有所論報矣司敎是題辭內本營與該府 事勢俱不容不念 今若以各邑所在廣州句管米中 準數劃送 則在本營無甚爲失 而實合兩便之道乙仍于 方以依此擧行之意更關南營是在果 待該府文移 就此推用之地亦是乎旀

鱗次到付廣州府移文內 本府料條米 依籌司關辭 各邑所在穀中 後錄劃付 以爲每年取耗 而先自昨年 耗條發關取用 亦爲有臥乎所 本府支放條之當初 以廣營耗米換劃者 專由於本營支放必以本色 而廣營倉舍 旣在

[비국보첩(備局報牒)]
상고(相考)할 일입니다.
본부 교리미(校吏米) 173석은 광주(廣州)로부터 옮겨 온 것으로 전례에 의하여 구획(區劃)한 것이니 때에 맞춰 녹봉(祿俸)을 지급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논보하신 제사(題辭)[204] 내용에 본영(本營)과 해부(該府)의 사세(事勢)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에 각 읍에 소재한 광주가 구관(句管)하는 쌀 가운데에 수량에 준하여 나눠 보낸다면 본영(本營)은 많이 잃을 것이 없고 실지로 양편(兩便)에 합당한 길입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거행할 뜻을 다시 남영(南營)에 관문(關文)을 보낸 것과 해부(該府)의 문이(文移)를 기다렸다가 이 점을 추용(推用)할 것입니다.
연이어 도부(到付)한 광주부 이문(移文) 내용에 본부 요조미(料條米)는 주사(籌司)의 관사(關辭)에 의하면 각 읍에 있는 곡식 가운데에서 후록(後錄) 획부(劃付)하였습니다. 매년 환곡의 이자쌀을 걷어서 우선 작년부터 취모(取耗)의 조건으로 관문을 띄우고 빌려 썼던바 본부 지방조(支放條)는 당초에 광주 감영(監營)의 이자로 받은 쌀로 환획(換劃)[205]한 것은 오로지 본영(本營) 지방(支放)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204) 관부에서 백성의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내리는 글발.
205) 물품을 바꾸어 획급(劃給)함.

지방(支放)은 반드시 본색(本色)으로 하기 때문에 광영(廣營)의 창사(倉舍)가 본부 성내(城內)에 있었다면 이자쌀을 취하여 씀에 번거로움 없이 운수(運輸)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영(廣營)에 있으면 각 읍과 화창(華倉)[206]을 논하지 않고 물건을 돈으로 바꿔 받아서 쓰니 이것으로 저것을 바꾸는 것은 사세(事勢)가 편리하고 순조로운 까닭인 것뿐입니다.

本 府城內 則耗米取用 無煩運輸是乎遣 在廣營 則毋論各邑與華倉等是 作錢取用 以此換彼 事勢便順故耳

40여년이나 준행하고 어기지 않더니 지금에야 갑자기 옛 법규를 고치어 대획(代劃)의 거동을 하고 각 읍에게 돈을 가지고 본부(本府)에서 쌀을 산다면 시가(時價)가 상정(詳定)하여 곧을 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170여 섬의 값은 겨우 70~80섬만 살 수 있으니 그 부족한 수량은 앞으로 어찌 취판(取辦)하겠습니까.

四十餘年 遵行毋替之餘 今忽變改前規 有此代劃之擧 將欲執錢於各邑 貿米於本府 則時價詳定 不啻徑庭矣 除良 一百七十餘石 價本僅可以貿取七八十石 則其所不足之數 將何取辦是乎喩

또 작년의 모조(耗條)로 말하자면 광영(廣營)은 각 읍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선 받아쓴다고 하였으나 소획(所劃)한 각 읍에 탐문하니 모두 본읍(本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한(南漢)에 곡식은 혹 들어왔다가 정퇴(停退)[207]하여 그 중에 혹 민간에서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약간 거두어들인 곡물은 초춘(初春)에 이미 분환(分還)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수량대로 수납하기엔 전혀 길이 없다고 합니다.

且以昨年耗條言之良置 廣營則以各邑所在中 爲先取用爲辭乎矣 探問於所劃各邑 則皆以爲本邑所在 南漢穀或入停退 中或有民間未捧者是遣 如干所捧之物 已於初春 分還無餘 則到今如數輸納 萬無其路是如是乎所

그렇다면 지금에 이 대획(代劃)의 곡식이 그림의 떡과 같아서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으므로 교리(校吏)의 지방(支放)[208]이 이로 인하여 빠트려서 없어지는 지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영(本營)의 사세(事勢)가 전혀 조처할 수 없으므로 사실에 의거하여 낱낱이 아뢰나니 다만 함께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 요미(料米)를 전례와 같이 획송키로 봉급

然則今此代劃之穀 殆同畵餠 名存實無 而校吏支放將未免因此闕廢之境 本營事勢 萬萬罔措乙仍于 玆乂據實枚報爲去乎司敎是 特軫俱便之方 同料米如例劃送 俾卽頒料之意 更爲關飭

206) 화영(華營)의 곡창(穀倉).
207) 선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공세(貢稅) 등의 정공(正供)이나, 환곡(還穀) 등을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이(災異)로 인해 진휼(賑恤)하는 차원에서 정하였던 납부 기간을 미뤄주는 것.
208) 관아(官衙)의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

該營之地爲只爲

을 지급하는 뜻을 다시 해당 영(營)에 관칙(關飭)[209] 토록 해야 합니다.

初 九日

華寧殿 攝行酌獻禮獻官 左議政入府殿內 奉審時入參

是月初五日 卽 英宗大王 昇遐回甲日也 初十日 正宗大王 登極回甲日也 大王大妃殿 敎曰今月初五日 卽我 英宗大王昇遐之舊甲也 新舊愴慕之慟 益新矣 當日 元陵酌獻禮 遣大臣攝行 該房知悉 又 敎曰是年是日 卽我 正宗大王 御極之周甲也 罔極之痛 於戲之思 靡所逮及 初十日 華寧殿酌獻禮 當遣大臣攝行 該房知悉 又 敎曰 元陵酌獻禮 領府事進去 華寧殿酌獻禮 左議政進去

是日 左揆陪 香祝下來 酉刻抵府 余往 華寧殿大門外 祗迎 香祝 大僚奉 香祝于 香大廳 仍行 殿內奉審 余

초 9일

화령전(華寧殿) 작헌례(酌獻禮)[210] 헌관(獻官)을 대신 수행하고 좌의정이 부(府)에 들어와서 전내(殿內)를 봉심할 때에 입참(入參)하였다.

이 달 5일은 곧 영종대왕(英宗大王;英祖)이 승하(昇遐)하신 후 첫 회갑(回甲)이 되는 날이며, 10일은 정종대왕(正宗大王;正祖)이 등극(登極)하신 후 첫 회갑(回甲)날이다.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이 달 5일은 곧 우리 영종대왕이 승하하신 구갑(舊甲)으로 신구(新舊) 창모(愴慕)의 아픔이 더욱 새롭다.' 고 하셨다. 그리고 '당일에 원릉(元陵) 작헌례(酌獻禮)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섭행케 하니 해당 관서는 모두 알지어다.' 라고 하셨다.

또 교서를 내리기를 '이 해, 이 날은 곧 우리 정종대왕 어극(御極)의 주갑(周甲)으로 망극의 아픔과 어희(於戲)의 생각이 미칠 곳이 없다. 3월 10일에 화령전(華寧殿) 작헌례(酌獻禮)에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섭행할 것이므로 해방(該房)은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교서를 내리기를 '원릉 작헌례에는 영부사(領府事)가 나아가고 화령전 작헌례에는 좌의정이 나아가라.' 고 하셨다.

이 날에 좌규(左揆)[211]가 향축(香祝)[212]을 모시고 내려와서 유시(酉時)에 부(府)에 도착하므로 나는 화령전 대문밖에 나가서 향축을 공경히 맞이하였다. 대료(大僚)[213]께서 향축을 향대청(香大廳)에 받들어 모

209)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보내는 공문서.
210) 임금이나 왕비의 조상, 또는 문묘(文廟)에 모신 공자의 신위에 임금이 직접 예로써 제사지내는 제도.
211) 좌의정(左議政)의 별칭.
212) 조선 시대 종묘(宗廟)·사직(社稷)을 위시한 국가의 각종 제사에 쓰이던 향과 축문.
213) 보국(輔國) 이하의 벼슬아치가 의정(議政)을 일컫는 칭호.

시고 곧바로 전내(殿內)에 가서 봉심하는데 그때 나는 제조(提調)[214]로서 따라 들어가서 봉심하였다. 그 후 대료(大僚)는 곧바로 향대청의 서쪽 방에 거처하였으므로 들어가서 뵙고 장남헌(壯南軒)으로 돌아왔다.

以提調隨入奉審後　大僚仍處 香大廳西偏房 入謁還壯南軒

[장계(狀啓)]

이 달 10일에 화령전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섭행할 헌관(獻官) 홍석주(洪奭周)가 본부(本府)에 도착할 무렵에 신(臣)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경계지점에 나가서 기다린 일을 첩보(牒報)의 제사(題辭) 내용에 하지 말라고 하신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今月初十日　華寧殿酌獻禮攝行獻官 洪奭周 到本府時臣依例出待境上事　牒報矣題內 安徐亦爲白有等以 緣由 馳 啓爲白臥乎事

초 10일

해뜰 무렵에 화령전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는데 나는 제조로써 겸위장(兼衛將) 김상우(金相宇)와 영화찰방(迎華察訪) 오치건(吳致健)과 더불어 전정서반(殿庭西班)에 입참(入參)하였다. 예(禮)를 마치고 좌의정이 서협문(西夾門) 밖에 나가서 수복(守僕)[215]으로 하여금 전해오는 말에 다시 소본어진(小本御眞)을 봉심하자고 하였다.

이에 나는 제조(提調)로써 거행하고 좌의정이 물러나와 장남헌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건릉과 현륭원에 가서 봉심하고, 미시(未時)에 돌아와서 부(府)에 들어갔다. 나는 공장(公狀)[216]을 드리고 장남헌(壯南軒)에 들어가서 뵈었다.

初 十日

平明 行 華寧殿酌獻禮 余以提調 與兼衛將金相宇 迎華察訪吳致健 入參 殿庭西班 禮畢　左揆出西夾門外使守僕送言 要更奉審 小本御眞 余以提調擧行 左揆退坐壯南軒 早飯後 仍往 健陵 顯隆園奉審 未刻還入府 余呈公狀 入謁于壯南軒

214) 조선 시대에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중앙 관직의 하나.

215) 조선 시대 종묘서(宗廟署)나 향실(香室)을 관장하던 교서관을 비롯해 각 단(壇)·능(陵)·궁(宮) 등에 소속되어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던 잡직(雜職),

216) 조선 시대 수령(守令)·찰방(察訪)이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를 공식으로 만날 때에 보내는 관직명을 적은 편지.

[獻官狀啓]
本月初十日 華寧殿酌獻禮敎是時 臣以獻官 陪奉 香祝下來 當日辰時設行後 祭官職姓名後錄 馳 啓爲白臥乎事
獻官 議政府左議政 洪奭周 典祀官 兼 殿司令水原府判官 李敏榮 執禮 司僕正趙在慶 大祝 弘文館修撰權濩 祝史 司僕寺僉正李奎秀 齋郎 副司果李玄五 贊者 義盈庫直長 姜潛 謁者 氷庫別檢鄭琬容 祭監 司憲府監察徐有隅

[헌관장계(獻官狀啓)]
이 달 10일에 화령전 작헌례(酌獻禮)를 할 때에 신은 헌관(獻官)으로 향축을 받들어 모시고 내려와서 당일 진시(辰時)에 설행(設行)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관(祭官)의 직함과 성명을 후록(後錄)하여 치계합니다.

헌관은 의정부 좌의정 홍석주, 전사관(典祀官)은 겸전사령(兼殿司令) 수원부판관(水原府判官) 이민영, 집례(執禮)는 사복정(司僕正) 조재경, 대축(大祝)은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권직(權濩), 축사(祝史)는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이규수(李奎秀), 재랑(齋郎)은 부사과(副司果) 이현오(李玄五), 찬자(贊者)는 의영고직장(義盈庫直長) 강지(姜潛), 알자(謁者)는 빙고별검(氷庫別檢) 정완용(鄭琬容), 제감(祭監)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서유우(徐有隅)이다.

十一日
平明 左揆還發復 命之行 叙別于壯南軒

11일
해가 뜰 무렵에 좌의정이 되돌아가는 복명(復命)[217]의 행차로 장남헌(壯南軒)에서 서별(叙別)[218]하였다.

[狀啓]
今月十一日 左議政洪奭周回還上京時 臣依例陪行之意 牒報矣題內 安徐亦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이 달 11일에 좌의정 홍석주가 서울로 되돌아 갈 때 전례에 의하여 수행하는 뜻을 첩보(牒報)의 제내(題內)에 하지 말라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十五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15일
화령전에 분향(焚香)하고 봉심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217) 명령을 받은 일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함.
218) 작별을 아룀.

[장계(狀啓)]

신은 금일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곧 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또 현륭원 참봉 김익정(金益鼎)의 첩정(牒呈)을 보니 금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였으나 이상 없다고 하므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에 농사 형편을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仍爲奉審 則殿內諸處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參奉金益鼎牒呈 則今日 園上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에 농형(農形)[219]이 가을보리는 무성하고, 봄보리는 파릇파릇하여 삽역(鍤役)을 마쳤다 . 그리고 올벼는 파종하여 자라나고 늦벼의 주앙(注秧)[220]은 가뭄으로 지금에서야 파종을 하였다.'고 하므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에 내사호피(內賜虎皮)를 공경히 반고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秋麰向茂 春麰向靑 鍤役了畢 早稻 付種方張 晩稻 注秧及乾 播今方始 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祗受 內賜虎皮 封啓

[전교(傳敎)]

화령전 작헌례(酌獻禮)로 인한 헌관(獻官) 이하 원역(員役) 등의 별단(別單)에 대해 전교(傳敎)하기를, '헌관(獻官) 좌의정 홍석주에게 내하(內下)한 대표피(大豹皮) 1령을 하사하고, 전사관(典祀官) 이민영에게 상현궁(上弦弓) 1장을 하사하라. 그리고 집례(執禮) 조재경(趙在

[傳敎]

以 華寧殿酌獻禮時 獻官以下員役等 別單 傳曰獻官左議政洪奭周 內下大豹皮一令賜給 典祀官 李敏榮上弦弓一張賜給 執禮趙在

219) 각 지방의 시·군에서는 춘분에서 추분 사이의 기간에 매 10일마다 농형과 강우의 양상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농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날짜별로 농사의 진행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① 春牟·秋牟는 立苗, 向靑, 胚胎(春牟의 경우), 苗茂, 發穗, 向熟, 刈取의 순으로, ② 早稻·晩稻는 耕播, 立苗, 移秧(晩稻의 경우), 3차례의 除草, 胚胎(晩稻의 경우), 發穗, 向熟, 黃熟, 刈取 등의 순으로, ③ 木花는 耕播, 立苗, 3차례의 除草, 起花, 結顆, 摘取의 순으로, ④ 根耕은 耕播, 立苗, 3차례의 除草, 結殼의 순으로 농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비가 내린 경우에는 10일을 단위로 하는 정식과 상관없이 수시로 기록하고 있다.

220) 봄에 볍씨를 모판에 뿌리는 일.

慶 大祝權濮 竝加資 祝史 李奎秀 齋郎李玄五 贊者姜 渚謁者鄭琬容 祭監監察徐 有隅 各上弦弓一張賜給 提調徐有榘 內下虎皮一令 賜給 兼衛將金相宇 上弦弓 一張賜給 兼令李敏榮 內下 鹿皮一令賜給 守門將洪時 榮 金遠浩 各上弦弓一張賜 給 員役等 竝考例施賞

慶), 대축(大祝) 권직(權濮)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축사(祝史) 이규수(李奎秀), 재랑(齋郎) 이현오(李玄五) 찬자(贊者) 강지(姜 渚), 알자(謁者) 정완용(鄭琬容), 제감감찰(祭監監察) 서유우에게 각 상현궁(上弦弓) 1장을 하사하라. 제조(提調) 서유구(徐有榘)에게 내하(內下) 호피(虎皮) 1령을 하사하고 겸위장(兼衛將) 김상우에게 상현궁(上弦弓) 1장을 하사하고 겸령(兼令) 이민영에게 내하(內下) 녹피(鹿皮) 1령을 하사하라. 수문장(守門將) 홍시영(洪時榮)·김원호(金遠浩)에게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을 하사하고 원역(員役) 등에게 아울러 전례를 상고하여 상(賞)을 주라.'고 하셨다.

[狀啓]

本月十五日 左副承旨 林翰鎭 成貼有 旨內 卿以 華寧殿攝行酌獻禮時 本殿提調內下大虎皮 一令賜給 使院吏賚傳 卿其祗受事 有旨一度 及大虎皮一令 院吏金鎭英 當日申時量 賚來爲白有等以 臣在本營 祗受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이 달 15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임한진(林翰鎭)이 성첩(成貼)[221]한 유지(有旨)[222]의 내용에 '경(卿)은 화령전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223]할 때에 본전(本殿)의 제조(提調)로써 내하(內下) 대호피(大虎皮) 1령을 하사하고자 원리(院吏)를 시켜 전하니 경은 공경히 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유지(有旨) 1통과 대호피(大虎皮) 1령을 원리(院吏) 김진영(金鎭英)이 당일 신시(申時) 무렵에 전해왔습니다. 신은 본영(本營)에 있으면서 공경히 받은 연유로 치계하는 일입니다.

十六日

華寧殿 守僕員役等 依禮曺 關 施賞後封啓

16일

화령전 수복(守僕)[224]·원역(員役)[225] 등을 예조(禮曺) 관자(關子)[226]에 의하여 시상한 뒤에 봉계(封啓) 한다.

---

221) 문서에 관청의 도장을 찍음.

222) 임금의 분부(分付)를 전하는 문서. 유지는 임금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담당 승지가 그 내용을 직접 써서 본인의 직함과 성(姓)을 쓰고 수결(手決)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하는 주요한 왕명서(王命書)임. 따라서 유지는 그 자체가 곧 왕명이고, 그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므로 그 전달 과정에서의 잘못은 중형(重刑)으로 다스렸음.

223) 대리로 행사의 직권(職權)을 맡음

224) 조선 시대 종묘서(宗廟署)나 향실(香室)을 관장하던 교서관을 비롯해 각 단(壇)·능(陵)·궁(宮) 등에 소속되어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던 잡직(雜職).

225) 관아에 딸린 이서(吏胥)의 일종.

[장계(狀啓)]

이번에 도부(到付)[227]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지시한 계하(啓下)에 화령전 작헌례(酌獻禮) 때에 헌관(獻官)이하 원역(員役) 등의 별단(別單)[228]에 대해 전교(傳敎)하시기를, '헌관(獻官) 의정부 좌의정 홍석주에게 내하(內下)[229] 대표피(大豹皮) 1령을 하사하고 전사관(典祀官) 수원부판관(水原府判官) 이민영과 집례(執禮) 사복시정(司僕寺正) 조재경과 대축(大祝) 홍문관수찬 권직에게는 아울러 가자(加資)하라. 그리고 축사(祝史)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이규수와 재랑(齋郞) 부사과(副司果) 이현오와 찬자(撰者) 의영고직장(義盈庫直長) 강지와 알자(謁者) 빙고별검(氷庫別檢) 정완용과 제감(祭監) 사헌부감찰 서유우에게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을 하사하라.

제조(提調)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 서모(徐某)에게 내하(內下) 호피(虎皮) 1령을 하사하고 겸위장(兼衛將) 수원부중군(水原府中軍) 김상우에게 상현궁 1장을 하사하라. 그리고 겸령수원부판관(兼令水原府判官) 이민영에게 내하(內下) 녹피(鹿皮) 1령을 하사하고 수문장(守門將) 홍시영과 김원호에게 각각 상현궁 1장을 하사하라. 그 나머지 수복(守僕)·원역(員役)등은 아울러 본부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상을 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교 내용의 말뜻을 봉심하여 시행하라고 하심으로 삼가 계하(啓下)하신 관자(關子)에 의하여 수복·원역 등에게 지난 예에 따라서 시상하고, 이 외에 탕고(帑庫)[230]에 있는 쌀과 포목(布木)을 마련하여 수급하여 원역의 성명과 상을 준 물품을 뒤에 기록하여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節到付禮曺關內節 啓下敎以 華寧殿酌獻禮時 獻官以下員役等 別單 傳曰獻官議政府左議政 洪奭周 內下大豹皮一令賜給 典祀官 水原府判官李敏榮 執禮 司僕寺正 趙在慶 大祝 弘文館修撰權濩 幷加資 祝史 司僕寺僉正 李奎秀 齋郞 副司果 李玄五 贊者 義盈庫直長 姜지 謁者 氷庫別檢 鄭琬容 祭監 司憲府監察 徐有隅 各上弦弓一張賜給 提調 水原府留守徐 內下虎皮一令 賜給 兼衛將 水原府中軍 金相宇 上弦弓一張賜給 兼令 水原府判官 李敏榮 內下鹿皮一令賜給 守門將 洪時榮 金遠浩 各上弦弓一張賜給 其餘守僕員役等 竝令本府 考例施賞事 傳敎敎是置 傳敎內辭意 奉審施行 亦爲白有等以 謹依 啓下關守僕員役等 施賞依已例 以外帑庫所在米 布木磨鍊須給是白遣 員役姓名 賞給物種 後錄 馳 啓爲白臥乎事

226) 조선 시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시달하는 공문서. 또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허가서.
227) 관찰사(觀察使)가 수령의 장보(狀報)에 대하여 답하는 공문.
228) 임금에게 보고하는 본 내용의 문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첨부한 문서.
229) 임금이 관청이나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줌. 공식적인 하사 이외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임금이 돈이나 물품을 내려주는 것을 말함.
230) 재화(財貨)를 넣어두는 창고.

[後] 守僕黃在中等 四人 殿直 劉漢濟 各木一疋 米二斗 照羅赤表判大等 四名 各布一疋 米二斗 軍士 孫明福等四名 各米五斗 以上木五疋 布四疋 米二石八斗

[후(後)] 수복(守僕) 황재중(黃在中)등 4인과 전직(殿直) 유한제(劉漢濟)에게 각각 나무 1필과 쌀 2두를 나눠 주었다. 그리고 조라치(照羅赤)[231] 표판대(表判大) 등 4명에게 각각 옷감 1필, 쌀 2두를 나눠 주었다. 군사(軍士) 손명복(孫明福) 등 4명에게 각각 쌀 5두를 나눠 주었다. 이상 나무 5필, 옷감 4필과 쌀 2석 8두를 나눠주었다.

十七日

寅刻 離發上京 中火于果川 午抵筆谷封啓

17일

인각(寅刻)에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길에 과천에서 점심을 먹고 오시(午時)에 필곡(筆谷)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上京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은 묘당(廟堂)[232]에 품의할 사항이 있어서 당일에 출발하여 상경(上京)하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海溢 各面飢民救急三巡 分給一倉 禮裨監分 松洞 四十二口 米八斗四升 太八斗四升 六七倉 座首監分 土津 七十口 米十四斗 太十四斗 五朶 三十二口 米六斗四升 太六斗四升 宿城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 太十四斗八升 浦內 六十六口 米十三斗 二升 太十三斗二升 佳士 三十五口 米七斗 太七斗 玄巖 四十六口 米九斗二升 太九斗二升

같은 날에 해일(海溢)이 일어나 각 면(面)에 기민(飢民)을 구급(救急)하기 위하여 세 차례 순행(巡行) 하여 나눠주었다.

1호 창고는 예비(禮裨)가 감분(監分)하니,

송동(松洞) : 42구(口), 쌀 8두 4승과 콩 8두 4승

6호·7호 창고는 좌수(座首)[233]가 감분(監分)하니,

토진(土津) : 70구(口), 쌀 14두와 콩 14두

오타(五朶) : 32구(口), 쌀 6두 4승과 콩 6두 4승

숙성(宿城) : 70구(口), 쌀 14두 8승과 콩 14두 8승

포내(浦內) : 66구(口), 쌀 13두 2승과 콩 13두 2승

가사(佳士) : 35구(口), 쌀 7두와 콩 7두

현암(玄巖) : 46구(口), 쌀 9두 2승과 콩 9두 2승을 나누어주었다.

---

231) ①고려 시대 임금의 호위를 맡았던 위사(衛士)의 하나. 치(치)는 몽고어에서 온 말로 하복(下僕)·사환(使喚)의 뜻임. ②조선 시대 궁중이나 나라에서 세운 절 등에서 청소를 맡은 하례(下隷). ③조선 시대 왕궁의 각전을 지키는 위병(衛兵)의 하나.

232) 의정부의 별칭.

233)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수향(首鄕).

9호 창고는 좌열장(左列將)[234]이 감분(監分)하니,
압정(鴨汀) : 99구(口), 쌀 1석 4두 8승과 콩 1석 4두 8승
장안(長安) : 74구(口), 쌀 14두 8승과 콩 14두 8승
초장(草長) : 45구(口), 쌀 9두와 콩 9두
우정(雨井) : 188구(口), 쌀 2석 7두 6승과 콩 2석 7두 6승을 나눠주었다.
각 면을 합하면, 771구(口)에게 각각 쌀 2되와 콩 2되를 나눠주니 합하여 쌀이 모두 10석 4두 2승이고 콩이 모두 10석 4두 2승이라.

九倉 左列將監分 鴨汀 九十九口 米一石四斗八升 太一石四斗八升 長安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 太十四斗八升 草長 四十五口 米九斗 太九斗 雨井 一百八十八口 米二石七斗六升 太二石七斗六升 合各面 七百七十一口 各米二升 太二升 合米十石四斗二升 太十石四斗二升

18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235]에 나아갔다.

十八日
進內閣 校準 御製 仍進實錄廳

19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十九日
進內閣 校準 御製

20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日
進內閣 校進 御製 仍進實錄廳

234) 행진(行陣) 때, 좌열의 군사를 맡아 거느리는 장수.
235) 실록찬수청(實錄纂修廳)의 약칭이다. 임금이 죽고 새 임금이 즉위하면 실록청을 임시로 설치하고 총재관(摠裁官)과 당상(堂上) ·낭청(郎廳)을 임명하여 여러 부서(部署)로 나누어 전왕대(前王代)의 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대개 도청(都廳)과 3방(房)으로 나누어 일을 분담하였다. 1778년(정조 2) 실록청의 관직을 규정하여 2품 이상은 지실록사(知實錄事)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라 하고, 3품 이하는 실록 수찬(修撰), 실록 편수(編修)라 하였다.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사관의 수초와 초초 ·중초를 없애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를 세초(洗草)라 하였다. 세초는 초기에는 하지 않았으나,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대북당인(大北黨人)만으로 편찬사업을 맡아 자기들에 유리하게 실록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뒤에 말썽이 있을까 두려워 사초를 없앴는데, 이후 세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세초는 관례가 되었다.

二十一日
進內閣 校準 御製 仍進實錄廳

21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二日
進內閣 校準 御製

22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二十三日
進內閣 校準 御製

23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二十四日
以校吏料米 劃送事 文移廣州府
月初 以校吏料條 依例劃送事 更爲文移南城 論報籌司矣 回題內 自本營 往復該府 務歸方便 更毋至煩報向事
南城回移內 爲回移事 卽到貴移是置有亦 斃營凋瘵之狀 不待飜縷 而貴營校吏料米 一百七十三石零之當初換劃雖出於共濟之義 年久遵行之事 今乃變改 亦非不知難愼 餉穀年年見縮 支放不能排用 目下事勢 如前劃送 萬無其路 不得已論報籌

24일 교리(校吏) 요미(料米)를 나눠 보내는 일로 광주부(廣州府)에 공문을 보냈다.
월초(月初)에 교리(校吏) 요조(料條)를 전례(前例)에 의하여 다시 남성(南城)에 공문을 보내고 주사(籌司)[236]에 논보(論報) 하였다. 회제(回題)[237] 내용에, '본영(本營)으로부터 해부(該府)에 왕복하면 하는 일이 편할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보고하지 말라.' 고 하였다.

남성(南城) 회이(回移) 내용에, '회이하는 사항은 곧 도착한 귀(貴) 회이였습니다. 폐영(斃營) 조채(凋瘵)[238]의 형상이 나루(飜縷)[239]를 기다리지 않고 귀영(貴營)의 교리(校吏) 요미(料米) 173석(石)을 당초에 바꾸어 나눠 준 것이 비록 공제(共濟)[240]의 의리에서 나왔으나 년도가 오래되어 좇아 행하던 일을 지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삼갈 것을 알았건만 향곡(餉穀)[241]이 해마다 줄어들고 지방(支放)을 능히 분배하여 나누어

236) 조선 시대 군무(軍務)와 정사(政事)를 논의하던 비변사(備邊司)를 달리 이르는 말.
237) 지방 각 감영 및 관청에서 아뢴 내용에 대한 중앙관서의 회답.
238) 쇠약하여 병들음.
239) 말이 자세하고 수다함.
240) ①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②같은 일을 함.

쓰지 못하니 눈앞에 형편이 전과 같이 나눠 보내하기에는 그 길이 전혀 없어서 부득이 주사(籌司)에 논보(論報)[242]하였습니다. 이미 각 읍에 있는 요미(料米) 환송(換送)의 제목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진실로 귀영(貴營)에 바꾸어 나눠 준 것이니 이에 속하는 각 읍에 있는 곡식은 바로 이것이 함께 편리한 계책(計策)이였습니다.

司矣　既有各邑所在華料米換送之題故　果爲換劃於貴營所屬　各邑所在之穀者　政是俱便之策是加尼

지금의 도착한 귀이(貴移)는 이와 같이 지탱하기가 어려우니 아마도 이 통변(通變)한 것은 오로지 만부득이 한데에서 나와 그러한 것입니다. 또 근간의 예로써 말하자면 원래가 본색(本色)으로써 수송하지 않고 해색배(該色輩)[243]가 값을 논하여 돈을 가지고 귀영(貴營)에 대납(代納)하는 자는 지금에 이속(移屬)하는 곡식은 한결같이 귀영에 의거하였습니다. 소속되는 5개 읍에 있는 곡식은 의례히 본색(本色)·집전(執錢) 사이에 한 몸으로 취용(取用)하면 털끝만큼도 귀영(貴營)에 손해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今到貴移　若是持難　盖此通變　亶出於萬不獲已而然　且以近例言之　原不以本色輸送該色輩　論價執錢　代納貴營者　則今此移屬之穀　一依貴營　所屬五邑　所在穀例本色與執錢間　一體取用　毫無所損於貴營是遣　華倉穀段　貴移中　雖云手邊之物　又有所不然者　非但穀品之麤劣　那倉之在本營　卽一逋藪　若以華倉所捧之耗　果有劃送之道　則豈有換劃於五邑穀之理乎

화창(華倉)의 곡식은 귀 감영의 이문 가운데에 비록 손 안의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니 다만 곡식의 품질이 추열할 뿐만 아니라 나창(那倉)이 본영에 있으니 곧 한 포수(逋藪)가 만약에 화창(華倉)에서 받드는 소모품으로 진실로 나눠 보내는 길이 있다면 어찌 5읍의 곡식을 바꾸어 나눠 주는 이치가 있겠는가.

얼마 전에 주사(籌司)에 아뢰고 회제(回題)를 받든 날에 귀영(貴營)이 알아서 거행할 뜻을 기다려 각 읍에 관문(關文)[244]을 보내니 그 밖에 있는 고을이 거행할 도리가 있으니 어찌 감히 지난날을 가볍게 여기고 본분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나누어 주는 것이 겨우 반 쯤 되니 다 팔려면 아직 멀었으니 별

頃於報籌司　承回題之日　待貴營知委擧行之意　發關各邑　則其在外邑擧行之道　豈敢輕先盡分乎　見今分還纔半　畢糶尙遠　則別無晩時之歎是如乎　到今如例劃送

241) 군량(軍糧)으로 쓰는 곡식.
242)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보고하던 일.
243) 그 직무를 맡은 사람. 여기서는 세무담당자.
244) 조선 시대 관부문서(官府文書)의 하나로 동등 이하의 관아에 보내는 문서 양식. 동ᄃᆞᆫ관아 간에 수수되는 경우는 평관(平關)이라 하며,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는 첩정(牒呈)이라 하였음. 관문의 내용은 주로 두 관청 사이의 현안을 묻고 내용을 서로 통하기 위한 것이었음.

非所可議乙仍于 玆以回移爲去乎 相考施行向事

다른 늦은 감이 없습니다. 지금의 전례와 같이 나눠 보내니 가히 의논할 바가 아니므로 회이(回移)를 하고 상고하여 시행할 일' 입니다.

[廣州移文]

爲相考事 弊營校吏料條米換劃事 萬萬罔措 更有文移而論報籌司矣 卽到貴營回移內 旣承籌司換劃之題 故以弊營句管穀中 在於貴營所屬各邑者 依數移劃是如乎旀 籌司回題內 自本營往復該府 務歸方便 亦爲有置

[광주이문(廣州移文)]

상고(相考)할 일입니다.

폐영에 교리(校吏) 요조미(料條米)을 바꾸어 나눠 주는 일은 전혀 조치할 수 없으므로 다시 문이(文移)[245]를 보내어 주사에 논보(論報)하였습니다. 곧 바로 도착한 귀영(貴營)의 회이 내용은 이미 주사가 바꾸어 나눠 주라는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폐영이 구관(句管)하는 곡식 가운데에 귀영(貴營)에 속하는 각 읍에 있는 것은 수량에 의하여 이획(移劃)하였으며, 주사의 회제(回題) 내용은 본영(本營)으로부터 해부(該府)에 왕복하면 하는 일이 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今此料條米 卽自弊營設始之初 筵稟定式 近五十年 恪遵毋替之餘 一朝毁劃 豈不十分難愼 而屢次往復 一向靳持 亦有欠於共濟之義 故發關督飭於穀在各邑矣

지금의 이 요조미(料條米)는 곧 폐영으로부터 설치하던 처음에 연품(筵稟)[246]하여 법을 정한 것이 50년이나 되어 충실히 지키면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것을 깨뜨리니 어찌 어렵고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한결같이 지켜온 것이 또한 공제(共濟)의 의리에 흠이 되기 때문에 관문을 발송하여 곡식이 있는 각 고을에 독칙(督飭)[247]합니다.

皆以本邑所在南漢穀 或入停退中 或有民間未收 及今收納 末由其路是如 同辭報來 是在如中 其中安城一郡所劃耗條 恰爲一百四十餘

모두가 본읍(本邑)에 있는 남한(南漢)의 곡식이 혹은 들어왔다가 멈추고 혹은 민간에게 거두지 못한 것을 지금에 수납한 것은 끝내 그 길을 연유한 것입니다. 이 말을 보고하건데 그 가운데에 안성(安城)의 한 군(郡)이 획모(劃耗)[248]한 것으로 모두 140여 석이

245) 관아(官衙)와 관아 사이에 공사와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냄. 또는 그 문건(文件).
246)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아룀.
247) 감독(監督)하고 계칙(戒飭)함.
248) 획급(劃給)하여 없어짐.

나 되고 해당하는 군(郡)이 보고한 것은 거듭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모두 함함(頷頷)[249]하였습니다.

비록 살이 깍이고 뼈골이 쑤시어 단연코 세금을 납부할 희망이 없으므로 광주부(廣州府)로부터 엄중한 관문이 연이어 와서 독봉(督捧)[250]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의 형편이 위와 같음으로 가을을 기다리고 기한을 늦추는 뜻으로 이미 논보(論報)한 바가 있어서 시행할 것을 허락 받은 바

지금에 비록 본영에 옮겨 주어 이처럼 엄중하게 신칙(申飭)할지라도 이 때에 독납(督納)[251]하는 것은 아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조처입니다. 본영이 조폐(凋弊)[252]하여 한 때에 위급하여 이 한 가닥의 길이 없으면 달리 손 쓸 곳이 없고 바꾸어 나눠 준 곡물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어서 자못 그림 가운데에 떡과 같으므로 이미 귀영(貴營)에 미루어 오지 못하고 또 각 읍에 책납(責納)하지 못하여 허다한 교리(校吏)들이 헛것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찾지만 요조(料條)가 모두 방출된지 이미 3개월에 이르러 눈앞이 막히고 민망한 형상을 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참으로 각 읍에 바꾸어 나눠 주더라도 모조(耗條)의 이추(移推)는 마땅히 금년 가을로부터 시작해야 하거늘 작년에 모조(耗條)는 세전(歲前)에 이미 정한 것입니다. 지금에 어찌 추가로 바꾸어 나눠 줄 것이며 또한 각 읍에 지징무처(指徵無處)[253]한 곡식을 이 궁춘(窮春)을 당하여 어디에 책봉(責捧)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리(事理)가 훤히 보이니 금년에 모미(耗米) 173 석은 전례와 같이 나눠 보내 반료(頒料)케 할 것입니다. 각 읍에 모조(耗條)는 금년 가을로부터 시작하여 바꾸어 나눠 주는 것이 방편(方便)에 매우 합당한 길이므로 이에 다시 문이(文移)하여 상고(相考)하고 시행할 일입니다.

石之多 而該郡所報 以爲荐歉 民情 擧皆頷頷 雖剝膚椎髓 斷無可捧之望乙仍于自廣州府 連有嚴關督捧 而事勢如右 待秋寬限之意 業有所論報 而已蒙許施是乎所

今雖移付本營 有此嚴飭 此時督納 係是行不得之政 是如爲置 本營凋弊 一時爲急非此一條路 則無他着手處 而換劃穀物 名存實無 殆同畫中之餠是如乎 旣未推來於貴營 又不得責納於各邑 許多校吏 奉虛望哺 料條闕放 已至三朔 目下壅悶之狀 已無可言是乎旀

假使眞箇換劃於各邑是良置 耗條移推 當自今秋 爲始是去乙 昨年耗條 卽歲前已勘者 則今豈可追後換劃是旀 又況各邑指徵無處之穀 當此窮春 將於何責捧乎 此箇事理 燎然可見是如乎 今年耗米一百七十三石零段 如例劃送 俾得頒料是遣 各邑耗條段 自今秋爲始 換劃甚合方便之道乙仍于 玆更文移爲去乎 相考施行向事

249) 주림에 견디지 못함. 굶고 주려 어찌 할 바를 모름.
250) 세납(稅納)을 독촉하여 거두어 들임.
251) 세금을 바치도록 독촉함.
252) 시들어 없어짐. 쇠약하여 해어짐.
253) 조세(租稅)나 사채(私債)에 있어서, 낼 사람이 죽거나 달아나거나 하여 물리어 받을 곳이 없음.

二十五日
農形封啓

25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境內農形 秋麰苗長 春麰向靑 甲稻付種了畢 晩稻注秧及乾播方張 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 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의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은 가을 보리는 싹이 나서 자라고 봄 보리는 파릇파릇 합니다. 올벼는 종자를 뿌려 마치고 늦벼는 주앙(注秧)[254]하였다가 건파(乾播)[255]하여 자라고 있으므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二十六日
進內閣 校準 御製

26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二十七日
宗廟永寧殿 還安時 西班陪從 申後進參 候班

27일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환안(還安)[256]할 때에 서반(西班)으로 배종(陪從)하여 신시(申時) 뒤에 후반(候班)[257]에 진참(進參) 하였다.

同日海溢 各面飢民救急 四巡分給 一倉 禮裨監分 松洞 四十二口 米八斗四升 太八斗四升 六七倉 座首監分 土津 七十口 米十四斗 太十四斗 五朶 三十二口 米六斗四升 太六斗四升 宿城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太十四斗八升 浦內 六十六口 米十三斗二升 太十三

같은 날 해일(海溢)이 일어나 각 면에 기민(飢民) 구호(救護)를 위해 네 번째 순행하여 나눠주었다.
1창(倉)은 예비(禮裨)가 감분(監分)하니,
송동(松洞) : 42구(口), 쌀 8두 4승과 콩 8두 4승을 나눠주었다.
6 · 7창(倉)은 좌수(座首)가 감분(監分)하니,
토진(土津) : 70구(口), 쌀 14두와 콩 14두
오타(五朶) : 32구(口), 쌀 6두 4승과 콩 6두 4승
숙성(宿城) : 74구(口), 쌀 14두 8승과 콩 14두 8승
포내(浦內) : 66구(口), 쌀 13두 2승과 콩 13두 2승

254) 봄에 볍씨를 모판에 뿌리는 일.
255) 직파(直播)의 한 가지. 물 없는 논에 그대로 씨를 뿌림.
256) 다른 곳으로 옮기었던 신주(神主)를 도로 제자리에 모심.
257) 조현(朝見)할 때의 반열(班列).

가사(佳士) : 35구(口), 쌀 7두와 콩 7두
현암(玄巖) : 46구(口), 쌀 9두 2승과 콩 9두 2승을 나눠주었다.
9창(倉)은 좌열장(左列將)[258]이 감분(監分)하니,
압정(鴨汀) : 99구(口), 쌀 1석 4두 8승
장안(長安) : 73구(口), 쌀 14두 6승과 콩 14두 6승
초장(草長) : 45구(口), 쌀 9두와 콩 9두
우정(雨井) : 188구(口), 쌀 2석 7두 6승을 나눠주었다.
각 면(面)을 합하면, 770구(口)에게 각각 쌀 2승과 콩 2승을 나눠주어 도합(都合) 쌀 10석 4두이고 콩 10석 4두를 나눠주었다.

斗二升 佳士 三十五口 米七斗太七斗 玄巖 四十六口 米九斗二升太九斗二升
九倉 左列將監分 鴨汀 九十九口 米一石 四斗八升 太一石四斗八升 長安 七十三口 米十四斗六升 太十四斗六升 草長 四十五口 米九斗 太九斗 雨井 一百八十八口 米二石七斗六升 太二石七斗六升 合各面 七百七十口 各米二升 太二升 合米十石四斗 太十石四斗

258) 행진(行陣) 때 좌열의 군사를 맡아 거느리는 장수.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4월

初 一日

孝成殿 晝茶禮 親行時 從陞仍進內閣 校準 御製

同日 華寧殿奉審 封啓

초 1일

효성전(孝成殿) 주다례(晝茶禮)[259]로 친행(親行)[260]할 때에 따라 올라갔다가 곧바로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에 화령전을 봉심하고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衛將金相宇牒呈 則今月初一日 焚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金益鼎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 겸위장(兼衛將) 김상우(金相宇) 첩정을 보니 이 달 초하룻날 분향한 뒤에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합니다. 동시(同時)에 도달한 현륭원 참봉 김익정(金益鼎) 첩정 내용에도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 없다고 함으로 이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孝和殿 夏享大祭 香祝 親傳時 從陞仍進內閣 校準 御製

초 3일

효화전(孝和殿) 하향대제(夏享大祭)에 향축(香祝)을 친전(親傳)할 때에 따라 올라갔다가 곧바로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하였다.

初 四日

孝成殿 夏享大祭 親行時 從陞

초 4일

효성전(孝成殿) 하향대제(夏享大祭)를 친행(親行) 할 때에 따라 올라갔다.

初 五日

賓對進參 仍進內閣 校準 御製

초 5일

빈대(賓對)[261]에 진참(進參) 하였다가 곧바로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하였다.

---

259) 임금이나 왕비의 인산(因山) 뒤 3년 안에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드리는 제사로, 그 일자는 일정하지 않았음.

260) 임금이 친히 행하는 제사.

261)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대신(議政大臣)과 대간(臺諫) 옥당(玉堂)의 관리들이 임금 앞에 나아가 중요한 정무(政務)를 임금에게 아뢰는 일.

초 6일 농형(農形)을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 농형(農形)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하여 배태(胚胎)[262]하고 간간히 이삭이 나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올 벼는 부종(付種)[263]하여 곧 싹이 나오고 늦 벼는 주앙(注秧)하고 건파(乾播)를 이미 마쳤다.' 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初 六日
農形封啓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秋麰已盡 胚胎間間發穗 春麰苗長 旱稻付種立苗 晩稻注秧 及乾播已畢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 爲白臥乎事

同日 進內閣 校準 御製

초 7일 내각(內閣)[264]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같은 날 해일(海溢)이 일어나 각 면에 기민(飢民)의 구급(救急)차 다섯 번째 순행하여 나눠주었다.

1창(倉)은 예비(禮裨)가 감분(監分)하니,

송동(松洞) : 42구(口), 쌀 8두 4승을 나눠주었다.

6·7창은 좌수(座首)가 감분(監分)하니,

토진(土津) : 70구(口), 쌀 14두와 콩 14두

오타(五朶) : 32구(口), 쌀 6두 4승과 콩 6두 4승

숙성(宿城) : 74구(口), 쌀 14두 8승과 콩 14두 8승

포내(浦內) : 66구(口), 쌀 13두 2승과 콩 13두 2승

가사(佳士) : 35구(口), 쌀 7두와 콩 7두

현암(玄巖) : 46구(口), 쌀 9두 2승과 콩 9두 2승을 나눠주었다.

初 七日
進內閣 校準 御製

同日海溢 各面飢民救急 五巡分給 一倉 禮裨監分 松洞 四十二口 米八斗四升 太八斗四升 六七倉 座首監分 土津 七十口 米十四斗 太十四斗 五朶 三十二口 米六斗四升 太六斗四升 宿城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 太十四斗八升 浦內 六十六口 米十三斗二升 太十三斗二升 佳士 三十五口 米七斗 太七斗 玄巖 四十六口 米九 斗二升 太九斗二升

---

262) ①아이를 뱀. 새끼를 뱀. ②전(轉)하여, 사물(事物)의 시초. 싹틈.

263) 논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려 심음.

264) ①규장각(奎章閣)의 별칭. ②조선 고종(高宗) 32년(1895)에 의정부(議政府)를 개편하여 만든 기관. 1896년에 다시 의정부로 고쳤다가 1907년 내각으로 환원, 한일합방으로 폐지됨.

九倉 右列將監分 鴨汀 九十九口 米一石四斗八升 長安 七十三口 米十四斗六升 太十四斗六升 草長 四十五口 米九斗 太九斗 雨井 一百八十八九 米二石七斗六升 太二石七斗六升 合各面 七百七十九各 米二升 太二升 合各十石四斗 太十石四斗

9창(倉)은 우열장(右列將)[265]이 감분(監分)하니,
압정(鴨汀) : 99구(口), 쌀 1석 4두 8승과 콩 1석 4두8승
장안(長安) : 73구(口), 쌀 14두 6승과 콩 14두 6승
초장(草長) : 45구(口), 쌀 9두와 콩 9두
우정(雨井) : 188구(口), 쌀 2석 7두 6승과 콩 2석 7두 6승
각 면을 합하니, 770구(口)에게 각각 쌀 2승과 콩 2승을 나눠주어 도합(都合) 쌀 10석 4두와 콩 10석 4두를 나눠주었다.

初 八日
以牙疼症 不得進內閣

초 8일 어금니 통증으로 내각(內閣)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初 九日
雨澤封啓

초 9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今月初八日午時量 始雨或霏或灑 同日申時 至所得恰爲浥塵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三分 是如爲白有臥乎所 惜乾之餘 甘澍伊始而濊潤 無幾旋卽開霽 言念民事極爲悶然 緣由馳 啓 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의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8일 오시(午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혹은 쏟아 붓는 듯 하여 신시(申時)에 이르러 대지를 흡족하게 적셨습니다. 영하(營下)에 측우기 수심(水深)이 삼분(三分)이 됩니다.'고 합니다. 가뭄을 애석하게 여기던 나머지 단비가 시작되어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활짝 개이니 말과 생각의 민사(民事)가 지극히 신비한 연유로 치계하는 일입니다.

265) 오른쪽 열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

12일

주사(籌司)로 인하여 계하(啓下)[266]한 관문은 본부가 유절(流絶)하여 도리어 탕감한 일로 봉계한다.

十二日

因籌司 啓下關 本府流絶還蕩減事封啓

[장계(狀啓)]

이번에 도달한 비변사 관문(關文) 내용은 이때에 계하(啓下)하셨습니다. 4월 5일 약방(藥房)의 입진(入診)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고 입시(入侍)할 때에 좌의정 홍석주가 아뢰기를, '신(臣)은 이번에 화성(華城)의 행차에 폐단의 방문자(訪問者)가 있으니 모두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조급하게 거류(居留)를 바로잡지 못하는 신하들입니다. 바야흐로 상탁(商度)[267]을 더하여 천천히 의논하고 이구(釐救)[268]하였건만 본부(本府)가 유절(流絶)[269]하여 도리어 도합 700여 석은 지난번에 이미 장계로 연차로 나누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봉납(捧納)할 수량이 너무나 적어서 이미 찾아내어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비록 연차별로 나누어 낸다고 말하지만 소민(小民)들은 허물없이 해(害)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적법(糴法)[270]이 지엄하여 진실로 그 봉납이 어려운 이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갑자기 활협(濶狹)[271]을 의논하였습니다. 지난번 남성(南城)에 견탕(蠲蕩)[272]의 은혜는 곧 이것이 격외(格外) 특전(特典)으로 아래에서 감히 전례를 들먹여서 우러러 청한 바가 아닙니다. 다만 본부(本府) 사체(事體)의 중요한 것만 생각하였으니 남성(南城)에 비교 할 뿐만은 아닙니다.

[狀啓]

節到付備邊司關內 節 啓下敎 今四月初五日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左議政洪奭周所 啓臣於今番華城之行 畧有弊端之訪問者 而皆非一朝一夕之所可遽矯居留之臣 方欲爛加商度 徐議釐捄 而本府流絶之還 合爲七百餘石 前已狀請排年 而所捧之數極其些畧 此旣皆指徵無處者 則雖曰排年分捧 而小民之無辜受害 則一也

糴法至嚴 固不容以其難捧之故 而輒議濶狹向來 南城蠲蕩之 恩 卽是格外之特典 有非自下 所敢援例仰請者 而第念本府事體之重 又不啻南城之比 粤自 昔年偏被我 正廟曠絶之 惠澤 如耗

266) 임금에게 올려진 계문(啓聞)에 대한 임금의 답이나 의견으로 내려진 것. 임금은 계문을 보고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친람(親覽)과 결재(決裁)를 마쳤음을 표시하였음.
267) 헤아려 생각함.
268) 잘 다스려서 바로잡음.
269) 유통이 끊어짐.
270) 쌀을 사들이는 법.
271) ①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②일을 주선하는 능력.
272) 미납된 조세 따위를 탕감함.

條之全數除減 乃是諸道列郡 所未有之例 其在 繼述之義 不宜使有一夫之呼冤 故敢此仰達矣

아득한 옛날부터 모조(耗條)의 전체 수량을 제감(除減)받은 것과 같은 정조임금의 다시없이 넓은 혜택이 우리에게 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뭇 도(道)와 여러 군(郡)에게는 없었던 예입니다. 그 계술(繼述)[273]의 의리는 마땅히 한 지아비라도 원통함이 있게 해서는 않되므로 이에 감히 아룁니다.'

大王大妃殿 答曰華城 卽陵園寢所奉之地 且 昔年軫念自別 特爲蕩減 使不當之民 無寃徵之弊 可也 事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 亦爲白有臥乎所 今此蠲蕩之 敎 寔出曠絶之澤 凡在分憂之地 宜盡對揚之道 是白乎等以 謹將 批旨內辭意 曉諭坊曲 使愚夫愚婦 咸有以仰頌 如傷若保之 盛德至意 爲白乎旀 緣由馳啓 爲白臥乎事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답하기를, '화성(華城)은 곧 능원(陵園)의 침소(寢所)로 받드는 곳이다. 또한 옛적에 (정조께서) 진념(軫念)[274]하여 몸소 특별히 탕감하시고 부당한 일을 당한 백성으로 하여금 원징(寃徵)[275]의 폐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옳다는 일로써 전교하셨으니 전교 내용의 일과 뜻을 봉심하여 시행하라.'고 하셨는 바 지금의 견탕(蠲蕩)의 전교는 넓고 크신 혜택을 넘었습니다.

무릇 분우(分憂)[276]의 처지에 있으며 마땅히 대양(對揚)[277]의 도(道)를 다할 것으로 삼가 비지(批旨)[278] 내용의 사의(辭意)를 가지고 방방곡곡에 환하게 밝혀 우부(愚夫)·우부(愚婦)로 하여금 모두 우러러 칭송케 하였다. 상(傷)한 이들을 보호하듯 한 성덕(盛德)과 지극한 뜻이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十五日

華寧殿 奉審封啓

15일

화령전에 봉심하고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李敏榮牒

[장계(狀啓)]

지금 화령전 겸령(兼令)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이

273) 조상 또는 선왕(先王)의 뜻과 사업을 이음.
274) 존귀(尊貴)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돌보아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주로 임금이 백성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쓰였음.
275) 원통하게 징수하는 세금.
276) ① 지방관(지방관)을 이름. ②지방관은 천자(天子)와 근심을 나눈다는 뜻.
277) 군명(君命)을 받들어 그 마음을 하민(下民)에게 칭양(稱揚)함.
278) 비답(批答)의 말씀.

달 15일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하옵니다. 동시에 도달한 현륭원령(顯隆園令)인 이상조(李象祖)의 첩정 내용에 이달 15일에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 없다고 하는 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동일(同日)에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呈 則今月十五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象祖牒呈內 今月十五日 園上殿內奉審 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雨澤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14일 신시(申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혹은 쏟아 붓는 듯 하여 다음날 묘시(卯時)에 한 호미 깊이정도로 흡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營) 아래에 측우기 수심(水深)이 5분(分)입니다.' 라고 하는 바 재차 비가 내린 것이 두루 미칠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계속하여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우러러 비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今月十四日申時量 始雨或霏或灑 當日卯時 至所得恰爲一鋤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五分 是如爲白乎所 再次得 雨猶未洽洽 繼而霈然方切顒祝 緣由馳啓爲白臥乎事

16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十六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은 가을 보리는 이삭이 피고 봄 보리는 배태(胚胎)하였지만 가뭄을 걱정하던 나머지 간간히 백삽(白颯)[279]이 불어왔습니다. 올 벼는 부종(付種)하여 파릇파릇하고 늦 벼는 주앙(注秧)하였으며 건파(乾播)를 이미 다하여 싹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바 연유를 치계 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境內農形 秋麰發穗 春麰胚胎 而惱旱之餘 間多白颯 旱稻付種向靑 晩稻注秧 及乾播已盡立苗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279)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十七日

海溢 各面飢民救急 六巡分給 一倉 禮裨監分 松洞四十一口 米八斗二升 太八斗二升 六七倉 座首監分 土津 七十口 米十四斗 太十四斗 五朶 三十二口 米六斗四升 太六斗四升 宿城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 太十四斗八升 浦內 六十六口 米十三斗二升 太十三斗二升 佳士 三十五口 米七斗 太七斗 玄巖 四十六口 米九斗二升 太九斗二升

九倉 右司把摠監分 鴨汀九十九口 米一石四斗八升 太一石四斗八升 長安 七十三口 米十四斗六升 太十四斗六升 草長 四十五口 米九斗 太九斗 雨井 一百八十八口 米二石七斗六升 太二石七斗六升 合各面 七百六十九口 各米二升 太二升 合米十石三斗 太十石三斗

17일

해일(海溢)이 일어나 각 면에 기민(飢民) 구급(救急)차 여섯 번째 순행(巡行)하여 나눠 주었다.

1창(倉)은 예비(禮裨)가 감분(監分)하니,
송동(松洞) : 41구(口), 쌀 8두 2승과 콩 8두 2승을 나눠주었다.
6 · 7창(倉)은 좌수(座首)가 감분(監分)하니,
토진(土津) : 70구(口), 쌀 14두와 콩 14두
오타(五朶) : 32구(口), 쌀 6두 4승과 콩 6두 4승
숙성(宿城) : 74구(口), 쌀 14두 8승과 콩 14두 8승
포내(浦內) : 66구(口), 쌀 13두 2승과 콩 13두 2승
가사(佳士) : 35구(口), 쌀 7두와 콩 7두
현암(玄巖) : 46구(口), 쌀 9두 2승과 콩 9두 2승을 나눠주었다.

9창(倉)은 우사파총(右司把摠)[280]이 감분(監分)하니,
압정(鴨汀) : 99구(口), 쌀 1석 4두 8승과 콩 1석 4두 8승
장안(長安) : 73구(口), 쌀 14두 6승과 콩 14두 6승
초장(草長) : 45구(口), 쌀 9두와 콩 9두
우정(雨井) : 188구(口), 쌀 2석 7두 6승과 콩 2석 7두 6승을 나눠주었다.
각 면(面)을 합하니, 769구(口)에게 각각 쌀 2승과 콩 2승씩 도합(都合) 쌀 10석(石)[281] 3두(斗)와 콩 10석 3두를 나눠준 것이다.

---

280) 조선 후기 군영 오른쪽에 소속한 정 4품의 무관직.

281) 쌀의 포장용기로는 옛날에는 볏짚으로 만드는 섬[표, 俵] 또는 섬[석, 石] 이라 한다. 신라 때부터 사용된 '섬'은 새끼로 날줄을 삼고 짚으로 엮어 곡식을 담는데 쓰는 물건이다. 여기에 채워진 양곡의 양이 한 섬이다. 원래는 15말이 한 섬이었지만 후대로 가면서 10말들이의 한 '석(石)'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요즘 말하는 섬 또는 석은 실제로 미터법 체계의 '무게'단위이다. 도정(搗精)한 쌀 144kg이 한 섬이고, 보리의 경우는 138kg이 한 섬이다. 그 밖에 홉 (합, 合) : 1되의 1/10, 되 (승, 升) : 1말의 1/10, 말 (두, 斗) : 1되의 10배가 된다.

22일 교리 요미는 광주(廣州)로부터 대신하여 획급(劃給)[282]한 것은 다른 모양의 곡식으로 구획(區劃)하는 일로써 주사에 논보하였다.

二十二日
校吏料米 自廣州代劃者 以他撲穀區劃事 論報籌司

[남성회이(南城回移)]

회이(回移)하는 일은 귀영(貴營)에 교리요조사(校吏料條事)로 전후(前後)에 왕복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므로 지금에 다시 가첩(架疊)[283]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영(弊營)에 향곡(餉穀)이 효경(枵罄)[284]하여 남음이 없는 가운데에 작년 것도 아직 봉납하지 못한 것이 또한 지나치게 많아서 본 성(城)의 지방(支放)의 수급(需給)도 배용(排用)할 수 없습니다. 귀영(貴營)에 요미의 나눠 보냄이 가히 겹질도 남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사(籌司)에 보고한 일은 진실로 사세(事勢)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실로 일분(一分) 변통(變通)의 도(道) 있으면 유래한 옛 법이 어찌 훼획(毁劃)[285]의 이치가 있겠습니까. 외읍(外邑)에 향모(餉耗)[286]를 바꾸어 나눠 준 뜻은 발송한 관문에 통지하였다. 이미 정월에 있어서는 외읍(外邑)은 마땅히 관사(關辭)[287]에 의하여 거행할 것이건만 수납(收納) 할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지체한 것은 진실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에 책납(責納)하라는 한 조목이 오직 곡식이 있는 고을이고, 폐영(弊營)으로부터 전례와 같이 나눠 보내할 길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다시 문이(文移)하오니 상고하여 시행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南城回移]
爲回移事 卽到貴移是置有亦 貴營校吏料條事 前後往復 非止一再 則今無容更復架疊 而弊營餉穀 枵罄無餘之中 昨年未捧 又復夥多 本城支放之需 亦無以排用 則貴營料米之劃送 可謂皮之不存 故所以有穀籌司之擧者 誠出於事勢之不得不然也
苟有一分變通之道 則流來之舊規 豈有毁畫之理哉 外邑餉耗段 換劃之意 發關知委 旣在於正月 則在外邑 固當依關辭擧行 是去乙 謂以收納之末由 尙今遲滯云者 實不勝駭歎 到今責納一款 惟在於穀在各邑是遣 自弊營 如例劃送 萬無其路乙仍于 玆更文移爲去乎 相考施行 爲宜向事

282) 정해진 수량대로 다 주지 않고 갈라서 다른 사람이나 관아에 나누어 줌.
283) 가설하여 덧 붙임.
284) 텅 비어 없음.
285) 기와를 헐고 흙손질한 벽에 금을 그음. 곧 남의 집에 해를 끼침을 이르는 말.
286) 군량미로 지급하는 곡식.
287) 관문(關文) 내용의 말.

[備局報牒]

爲相考事　本營校吏料條米自廣州代劃者 責捧無路 更有所論報矣　司敎是題辭內自本營 往復該府 務歸方便毋至煩報 亦敎是如乎 謹依題辭辭意 備控目下罔措之實狀 文移於廣州府矣 該營回移內 年久遵行之事 今乃變改 非不知難愼　而餉穀年年見縮 支放不能排比 目下事勢 實無如例劃送之路 論報籌司 旣承換送之題敎 故果以貴營所屬邑 依數代劃者 政是俱便之策是如

一例靳持 未見諒察 其在共濟之義 亦不可徒事相持乙仍于 不得已發關 督納於穀在各邑 則皆以本邑所在南漢穀 或入停退中 或有民間未捧 及今收納 其勢末由是如 同辭報來是在如中 其中安城一郡 所劃耗條 恰爲一百四十石之多 而該郡所報以爲荐歉糴簿 擧皆枵罄 窮春民情 轉益遑汲 雖斗斛之徵 斷無可捧之望

[비국보첩(備局報牒)]

상고(相考)할 일입니다.

본영(本營) 교리 요조미는 광주(廣州)로부터 대신 나눠 준 것은 봉납하기를 재촉할 길이 없으므로 다시 논보(論報)하였습니다. 제사(題辭)[288] 내용에, '본영(本營)으로부터 해부(該府)에 왕복하는 일이 편할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보고하지 말고 삼가 제사(題辭)의 사의(辭意)에 의하여 눈앞에 조처할 수 없는 실상에 대비하여 광주부(廣州府)의 해영(該營)에 문이(文移)하라.'고 하였다.

해영(該營)의 회이(回移) 내용에, '여러 해 준행한 일을 지금에 고치니 어렵고 조심스러움을 알겠습니다. 향곡은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방(支放)을 배비(排比)[289]하지 못하고 눈앞에 일의 형편이 실제로 전례와 같이 나눠 보내 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사(籌司)에 논보하고 이미 환송(換送)의 제교(題敎)를 받았기 때문에 귀영(貴營)의 소속 읍으로써 수량에 의하여 대획(代劃)하는 것이 모두 편리한 계책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한 예를 가지고 미루어 살피지 못하니 공제(共濟)의 의(義)에 있어서도 또한 서로가 지탱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곡식이 있는 고을에 납부를 독촉합니다. 본 읍에 있는 남한산성의 곡식은 혹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가운데에 민간(民間)들이 봉납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수납할 길이 없고 동(同) 사보(辭報)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가운데에 안성의 한 군(郡)이 획급(劃給)[290]한 모조(耗條)가 모두 140석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郡)이 보고한 바로는 거듭 흉년이 들어 적부(糴簿)[291]가 텅 비고 궁춘(窮春)에 백성의 실정이 더욱 더 황급하여 작은 양으로는 단연코 가히 봉납할 희망이 없습니다.

---

288) 관부(官府)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쓰는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指令).
289) 비례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놓는 것.
290)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않고 그어 줌. 갈라서 나누어 줌. 타인·타부처 소장 세곡(稅穀)을 나누어 그 일부를 다른 사람, 다른 부처에 줌.
291) 쌀을 사들인 장부.

광주부(廣州府)로부터 여러 차례 관문을 띄워 독촉(督促)이 있었으나 일의 상황이 위와 같으므로 가을을 기다리고 기한을 늦추는 뜻으로 논보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시행하라는 윤허를 받고 지금에 비록 본영(本營)에 이부(移付)하여 이 같은 관칙(關飭)[292]이 있지만 이 때에 징봉(徵捧)[293]하기는 전혀 이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른 바 바꾸어 나눠 준 곡물은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어서 자못 그림 가운데에 떡과 같습니다. 교리 요미(料米)는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가 바뀐 이후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승합(升合)[294]도 지방(支放)하지 못하더니 본부 교리(校吏)가 다른 생활자금의 믿을 바가 없어서 명(命)을 하는 것은 다만 두료(斗料)[295]가 있을 뿐입니다.

自廣州府 屢有關督 而事狀如右 以待秋寬限之意 業有所論報而已 蒙許施 則今雖移付本營 有此關飭 是乃此時 徵捧萬萬行不得之政是如爲有置 然則所謂換劃穀物 名存實無 殆同畵中之餠 而校吏料米 遂成無麵之不飩 歲翻以後 于今四朔 尙不得支放 孑合是如乎 本府校吏 自來無他 資活所恃 而爲命者 只有斗料而已

하물며 거듭되는 흉년을 당한 나머지 허다하게 먹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입에 든 음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은 단지 아침저녁으로 죽어나가지 않으면 오직 흩어져서 사방으로 가므로 조처할 수 없다고 말하니 오히려 헐후어(歇后語)[296]에 속합니다. 본부에 교리 요조의 시작은 아득한 옛날 이읍(移邑)의 처음에 연신(筵臣)이 거조(擧條)[297]한 비지(批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況當荐歉之餘 使許多望哺之類 一朝失口吻中物 此其勢除非朝夕塡壑 則唯有散而之四 而已罔措云云 猶屬歇后語矣 本府校吏料條之設始 粤在 昔年移邑之初 伊時筵臣擧條 批旨 若曰一念憧憧者 新邑校吏之資活軫念之 聖意 迥越尋常 及夫節目成出之後 又以若待秋成捧糴之時 則其間幾月 不可使之無斜供役 特命限九月捧糴前

"일념(一念)으로 걱정되는 것은 신읍(新邑)에 교리(校吏)의 생활자금과 임금의 보살핌과 성스러운 뜻이 평상시를 초월하여 그 절목(節目)이 성출(成出)한 뒤에 또 가을을 기다려 봉납으로 쌀을 거둘 때까지 그 사이 몇 개월간 그들로 하여금 급료 없이 공역(供役)하지 않았다. 특별히 명하여 9월 봉적(捧糴)[298]하기

292)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보내는 공문서.
293) 국가에서 세금 따위를 거두어 들이는 일.
294) 한 되와 한 홉. 전하여 아주 작은 양을 말함.
295) 한 말 가량의 작은 분량의 급료.
296) 숨기고 말하지 않는 말.
297) 임금께 아뢰는 조항(條項).
298) 환곡(還穀)의 상환

直就廣州倉 留庫穀中 每朔料米 分排出給敎是乎所 當初設置法意之 嚴重 如是矣于今四十餘年之間 雖値己巳甲戌等 慘歉是良置 初不擬議於通變者 誠以當初設置之規 便成關和 有不敢遽然毁劃故耳 豈意今日 忽當此阨塞之境界乎 目下壅悶日甚一日 而各邑事情 雖剝膚椎髓良置 實無一半包責納之道乙仍于 冒昧煩報之懼 玆更據實枚報爲去乎司敎是 細賜叅商 特軫俱便之方 同料條米 一百七十三石零段 以他某樣 見在穀準數區劃 俾得及今頒料 以爲一分支保之地爲只爲

전에는 광주(廣州)에 있는 창고의 곡식으로 매월 요미를 분배하여 출급(出給)하도록 하라." 고 하신 바이와 같이 당초에 설치한 법의 뜻이 엄중하였습니다.

지금 40여년 사이에 기사(己巳)·갑술(甲戌)년에 참혹한 흉년이 있어도 변통할 것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당초에 설치한 법이 관화(關和)[299]를 이루어 감히 경솔하게 훼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금일에 애색(阨塞)[300]의 지경을 당한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눈앞에 옹민(壅悶)[301]함이 날로 심하여 각 읍의 사정이 비록 살을 도려내고 뼈를 찧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금이라도 봉납하기를 재촉할 길이 없습니다.

번잡스런 보고의 송구함을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에 또다시 사실에 의거하여 낱낱이 보고하오니 자상하게 살펴서 특별히 모두에게 편리한 방책을 바랍니다. 봉급조의 쌀 173석(石)은 다른 모양으로 현재에 있는 곡식을 수량에 준하여 구획하고 지금에 반료(頒料)하여 일분(一分)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二十四日
進內閣 校準 御製

24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어제(御製)를 교준(校準)하였다.

二十五日
進實錄廳

25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六日
農形封啓

26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 합니다.

299) 관석화균(關石和鈞)의 준말. 석(石)은 1백 20근(斤), 균(鈞)은 30근으로 무게의 단위이고, 관(關)은 유통시킨다는 뜻이며, 화(和)는 고르게 한다는 뜻임. 석(石)은 유통시키고 균(鈞)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백성이 사용하는 저울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니, 곧 법도(法度)를 잘 지키도록 한다는 것임.

300) 운수가 꽉 막힘.

301) 암담하고 민망함.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은 가을 보리는 누런빛이 들고 봄 보리는 이삭을 틔웠습니다. 그러나 가뭄과 백삽풍(白颯風)이 불고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처음 제초(除草)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파릇파릇 합니다. 물의 원천이 있는 곳은 간혹 이앙(移秧)하고 물의 원천이 부족한 곳에는 애석하게도 물이 고갈되어 뒤집어 갈이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 바이 즈음 한번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비는 연유로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秋麰向黃 春麰發穗 而惱旱白颯 早稻付種初除草方始 晩稻乾播向靑有水根處 間或移秧 水根不足處 惜乾堅涸 翻耕無術是如爲白有臥乎所 際此一霈 方切顒祝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27일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의 수석(壽席)[302]에 갔다. 같은 날 해일이 있어 각 면 기민구급(飢民救急)차 일곱 번째 순행하여 나눠 주었다.

1창(倉)은 예비(禮裨)가 감분(監分)하니,

송동(松洞) : 41구(口), 쌀 8두 2승과 콩 8두 2승을 나눠주었다.

6 · 7창(倉)은 좌수(座首)가 감분(監分)하니,

토진(土津) : 70구(口), 쌀 40두와 콩 40두

오타(五朶) : 32구(口), 쌀 6두 4승과 콩 6두 4승

숙성(宿城) : 74구(口), 쌀 14두 8승과 콩 14두 8승

포내(浦內) : 66구(口), 쌀 13두 2승과 콩 13두 2승

가사(佳士) : 35구(口), 쌀 7두와 콩 7두

현암(玄巖) : 46구(口) 쌀 9두 2승과 콩 9두 2승을 나눠주었다.

9창(倉)은 중사파총(中司把摠)[303]이 감분(監分)하니,

二十七日

赴豊恩府院君壽席

同日海溢 各面飢民救急 七巡分給 一倉 禮裨監分 松洞 四十一口 米八斗二升 太八斗二升 六七倉 座首監分 土津 七十口 米十四斗 太十四斗 五朶 三十二口 米六斗四升 太六斗四升

宿城 七十四口 米十四斗八升 太十四斗八升 浦內 六十六口 米十三斗二升 太十三斗二升 佳土 三十五口 米七斗 太七斗 玄巖 四十六口 米九斗二升 太九斗二升 九倉 中司把摠監分 鴨汀

302) 장수를 기원하는 자리. 고희연이나 회갑연을 지칭함.

303) 조선 후기 군영 소속 정4품의 무관직. 선조 27년(1594) 훈련도감을 창설할 때 처음 설치된 관직으로, 이후 다른 군영으로까지 확대되어, 《대전회통》에 따르면 훈련도감 6인, 금위영·어영청 각 5인을 두었고, 총융청에는 본영에 2인, 북한산성에 1인을 두었으며, 수어청에 2인, 관리영(管理營)에 6인 등을 배치함. 또한 정조 때 임금의 숙위를 위해 조직된 장용영에도 3인이 배속됨. 임기는 2년으로 선전관(宣傳官)이나

九十九口　米一石四斗八升　太一石四斗八升　長安　七十三口　米十四斗六升　太十四斗六升　草長　四十五口　米九斗　太九斗　雨井　一百八十八口　米二石七斗六升　太二石七斗六升　合各面　七百六十九口　各米二升　太二升　合米十石三斗八升　太十石三斗八升

압정(鴨汀) : 99구(口) 쌀 2석 4두 8승과 콩 2석 4두 8승
장안(長安) : 73구(口) 쌀 14두 6승 콩 14두 6승
초장(草長) : 45구(口) 쌀 9두와 콩 9두
우정(雨井) : 188구(口) 쌀 2석 7두 6승과 콩 2석 7두 6승을 나눠주었다. 각 면(面)을 합하니, 769구(口)에게 각각 쌀 2승과 콩 2승을 나눠주니 도합 쌀 10석 3두 8승과 콩 10석 3두 8승이다.

二十八日

以校吏料條事 更移廣州府

28일

교리요조사(校吏料條事)로 다시 광주부(廣州府)에 공문(公文)을 보냈다.

[移文]

爲相考事　弊營校吏料米事　屢度往復 迄未見諒 悶鬱阨塞 不知所云 盖比料條之設始 粵在昔年移邑之初 伊時筵臣 擧條 批旨 若曰一念憧憧 新邑校吏之資活 軫念之 聖意 逈越尋常 及夫節目成出之後 又以若待秋成捧糴之時 則其間幾月不可使之無料供役

[이문(移文)]

상고(相考)할 일입니다. 폐영(弊營)에 교리 봉급의 건으로 여러 차례 왕복 하였으나 끝내 믿음을 주지 못하니 민망하고 답답하여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이 봉급 조목의 시작은 아득한 옛날에 고을을 옮기던 그 때에 연신(筵臣)이 임금께 올린 조항에 대한 비지(批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신읍(新邑) 교리의 생활자금으로 하라."하니 임금의 보살핌과 성스러운 뜻이 평상시보다 월등하셨습니다. 절목(節目)이 성출(成出)한 뒤에 또한 이와 같이 가을철 봉납으로 쌀을 받아들이는 때를 기다리면 그 사이 몇 개월간 봉급 없이 공역(供役)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령을 거친 자가 임명됨. 한편 금위영과 어영청에는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이라 하여 특정지역의 수령이 파총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번(下番) 중인 향군의 훈련과 군비상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이들을 중심으로 참전하기 위한 것임.

특별히 명하여 '9월 봉납으로 쌀을 받기 전에는 곧바로 광주창(廣州倉)에 나가서 남아있는 곡식 가운데에 마련하여 출급(出給)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또 명하기를 '절목(節目)을 성출(成出)한 양건(兩件)은 두 영문(營門)에 나누어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귀 영에서도 마땅히 감추어둔 원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40여 년간 기사(己巳)·갑술(甲戌) 등의 해에 참혹한 흉년이 들었건만 애초에 통변(通變)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당초 설치하는 법의 뜻을 엄중하게 여겨서 감히 갑작스럽게 훼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돈으로 바꾸어 나눠준 거동은 진실로 귀 영의 사세가 어쩔 수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공제(共濟)의 의(義)도 가히 서로가 한 결같이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特命限九月捧糴前　直就廣州倉留庫穀中　磨鍊出給敎是乎遣　又命節目成出兩件分藏兩營敎是乎所　貴營亦當有藏弆之本矣　至今四十餘年之間　雖値己甲等慘歉初不擬議於通變者　豈不以當初設置之法意　綦嚴且重有不敢遽然毁劃也歟　今此換劃之擧　固知貴營事勢之萬不獲已　則其在共濟之義亦不可一向相持乙仍于

이사(移辭)[304]에 의거하여 각 읍에 납부를 요구하면 모두가 작년 겨울에 봉납 받지 못한 것으로써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 중에 안성(安城)에 할당된 것은 거의 10분의 9가 되거니와 해읍(該邑)에 보고하는 말은 거듭되는 흉년으로 상환미의 장부가 모두 텅 비고 춘궁기에 민정(民情)은 더욱 더 황급합니다. 비록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깍더라도 단연코 한 반포(半包)라도 봉납할 희망이 없으니 이른바 바꾸어 나눠준 모조(耗條)는 모두 그림 가운데 떡 입니다. 따라서 교리(校吏) 봉급은 껍질에 털이 없는 격을 이루었습니다. 해가 바뀐 뒤 지금 4개월까지 오히려 승합(升合)[305]도 지방(支放)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본영(本營)에 교리의 요뢰(聊賴)[306]는 잔박(殘薄)하여 믿고 명령을 할 것은 작은 봉급인 것입니다.

依移辭責納于各邑　則擧皆以昨冬　未捧一辭推托舘除良　其中安城所劃　幾爲十分之九　而該邑報辭　以爲荐歉糴簿　擧皆枵罄窮春　民情轉益遑汲　雖剝膚椎髓　斷無一半包　可捧之望　是如云爾則所謂換劃耗條　都是畵中之餠　而校吏料米　遂成皮不存之毛矣　歲翻以後　于今四朔　尙不得支放升合是如乎本營校吏之聊賴　自來殘簿所恃而爲命者　只是如于斗料

하물며 거듭되는 흉년을 당한 나머지 허다하게 배부를 것을 바라는 이들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입에 든

而況當荐歉之餘　使許多望哺之類　一朝失口吻中物　此

304) 이송하는 이문(移文)의 말의 내용.
305) 되와 홉. 한 되의 십분지일이 한 홉(合)이다.
306) 남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감.

其勢必至於渙散 乃已罔措云云 猶屬歇后語矣 到今一分方便之策 唯有今年料條段

음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형세가 반드시 흩어짐에 이르러 이미 조처 할 수 없다고 말하니 끝난 뒤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에 일분(一分) 방편의 계책은 오직 금년의 요조(料條)에 있을 뿐입니다.

自貴營從便拮据輸送是遣 各邑換劃穀段 待秋捧幷督兩年耗條 而昨年耗 則貴營推用 今年耗則弊營推去 則兩相俱便 少無窒碍之端 捨此一條 更無他道是如乎

귀영(貴營)으로부터 편리한데로 길거(拮据)[307]하여 수송하고 각 읍에 바꾸어 나눠 준 곡식은 가을을 기다려 양년(兩年)에 모조(耗條)를 봉납하기를 독촉하되 작년 모조는 귀영이 찾아서 쓰고 금년 모조는 폐영(弊營)이 찾아서 가져가면 두 영(營)이 모두 편리하고 조금도 장애가 될 것이 없거니와 이 조목을 버리면 다시는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本色與時價若難 如例輸送則雖以貴營詳定是良置 趁卽準數劃送 以爲及今頒料之地爲乎旀 安城初非弊營屬邑是隱 則耗條推用 亦甚難便 安城所劃 一百四十餘石 亦卽分排於弊營屬五邑 以爲自今年 秋捧準數推用之地 爲宜向事

본색(本色)과 시가(時價)가 만약 어려워서 전례와 같이 수송하면 비록 귀 영이 상정(詳定) 하더라도 곧바로 수량에 준하여 나눠 보내 지금 반료(頒料)[308]해야 하며, 안성(安城)은 애초에 폐영(弊營)에 속하는 고을이 아니니 모조를 찾아서 쓰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안성에서 획급(劃給)한 140여 석도 곧바로 폐영(弊營)에 속하는 5개읍에 분배하고 금년 가을부터 봉납할 것은 수량에 준하여 취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二十九日

還營 早朝離發 到鷺梁 遇驟雨一陣 到始興縣 午炊旋發 到萬安橋 又遇雨一陣 酉刻抵府 則是日得雨 爲一寸一分云 封發雨澤啓 又封還營啓

29일

환영(還營)하였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노량(鷺梁)에 이르러 소나기를 한바탕을 만났다. 시흥현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출발하여 만안교에 도착하였는데 또 한바탕 비를 만났다. 유시(酉時)에 부(府)에 다다르니 이날에 내린 비의 양은 1촌(寸) 1분(分)이라고 말하므로 우택(雨澤) 장계를 발송하고 또 환영(還營) 장계도 봉(封)했다.

307)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넘겨 줌.
308) 나라에서 매달 주는 급료를 나누어 줌.

[우택장계(雨澤狀啓)]

지금 본부(本府) 판관 이민영의 첩정을 접수하니, '이 달 28일 오시(午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락가락하다가 29일 진시(辰時) 즈음에 다시 주룩주룩 내렸다. 그래서 그날 신시(申時)에 이르러 한 보습 깊이 가량의 비가 내렸다.' 고 합니다. 신의 감영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1촌(一寸) 1분(一分)이라고 하므로 가뭄을 걱정하던 나머지 이같은 단비가 내려 백성의 일을 생각하니 진실로 천만다행이고, 그 구름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우기(雨氣)가 남아있으므로 연이어 아뢸 것을 생각하오며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雨澤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今月二十八日午時量 始雨或霏或止 是如可 二十九日辰時量 更爲霪灑 同日申時 至所得幾近一犁 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 水深爲一寸一分 是白如乎 惜乾之餘 得此甘澍 言念民事 誠爲萬幸 而同雲未解 尙有雨意 嗣後所得 鱗次登聞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환영장계(還營狀啓)]

신은 묘당(廟堂)[309]에 품의(稟議)할 일이 있어서 상경(上京)하려고 하다가 당일에 영(營)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還營狀啓]

臣 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 緣由馳啓 爲白臥乎事

309)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5월

여 백

初 一日
華寧殿 夏大奉審後 封啓

초 1일

화령전 하대봉심(夏大奉審)[310] 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華寧殿 夏孟朔大奉審 元定是白在 去月十五日 當爲擧行 而臣在京未還 不得擧行是白遣 今月初一日 焚 香後 與兼令臣李敏榮 兼衛將臣金相宇 眼同奉審是白乎則 殿內諸處 俱爲無頉 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象祖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奉審 無頉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 爲白臥乎事

[장계(狀啓)]
화령전 하맹삭(夏孟朔)[311] 대봉심(大奉審)은 원래 정한 날짜는 지난 달 15일에 마땅히 거행되어야 하건만 신이 서울에 있고 돌아오지 못하여 거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 초하루에 분향을 하고 겸령신(兼令臣) 이민영과 겸위장(兼衛將) 김상우와 더불어 봉심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의 첩정을 보니 금일에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雨澤封啓

초 3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去月二十九日申時 至得雨一寸一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伊後 或霏微或止歇 是如可 今月初二日申時量 更爲霪灑 初三日卯時 至所得恰爲一鋤 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 水深爲七分 是白如乎 秧節已屆尙靳周洽 繼此霈然 方切顒望 緣由馳 啓 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난 달 29일 신시(申時)에 강우량이 1촌 1분이 되었음을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지금에 본부 판관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그 뒤에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이 달 초이튿날 신시(申時) 즈음에 다시 주룩 주룩 내리어 초사흘 묘시(卯時)에는 한 호미 깊이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감영(監營) 측우기 수심(水深)이 7분이라고 하므로 모심는 계절이 이미 이르러 계속해서 흡족한 비가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310) 여름철을 기하여 큰 행사로 전내(殿內)을 봉심하던 일.
311) 여름의 첫 번째 달. 곧 음력(陰曆) 4월을 말함.

같은 날 농무(農務)을 권칙(勸飭)하는 일로써 판관(判官)에게 감결(甘結)[312]하였다.

同日 以勸飭農務事 甘結判官

[감결(甘結)]

영문(營門)으로 하거(下車)[313]하는 처음에 권농(勸農)의 한 일을 별도로 감지(甘知)하였거니와, 각 면의 면임배(面任輩)들이 거행하는 과정은 어떠합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가뭄을 걱정하던 나머지 여러 차례 단비가 내리어 어찌 천만다행을 이기겠습니까. 추택(趨澤)[314]의 조급함은 시각을 다투건만 지금에 내린 비는 비록 흡족하지는 않지만 먼저 수근(水根)이 있는 곳에 점차로 이앙(移秧)을 하고 수근(水根)이 없는 곳은 다시 비를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농민(農民)이 힘을 더는 길은 일제히 분망(奔忙)하는 것보다 크게 나음이 있는 바

생각을 늦출 수 없는 것은 게으른 농부가 때를 잃고 곤궁해진 백성들이 자기(玆器)[315]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와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잘 깨우쳐서 서로가 빌려주고 도우면서 시일이 지연되거나 절후(節候)의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혹시나 병(病)으로 인하여 폐농(廢農)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 마을이 힘을 합하고 도우면서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의 책임자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면마다 감독하고 단단히 타일러 삼가게 할 것이며, 초복(初伏) 전후에 영문(營門)에서는 적간(摘奸)하는 별기감찰(別岐監察)[316]을 많이 보낼 생각입니다.

만일에 한 뼘의 묵은 땅이라도 개간할 수 있는 것을 개간하지 않았거나 모를 심을 수 있는 것을 심지

[甘結]

右甘爲營門下車之初 卽以勸農一事 別甘知委是加尼 未知各面面任輩之擧行勸慢 如何是喩 閱月惜乾之餘 數次甘澍 豈勝萬幸 趨澤之急 爭以時刻是如乎 今番所得 雖未高低周洽是乃 先從有水根處 次次移秧是遣 無水根處段 更待雨澤 隨宜奏功是隱則其在農民紓力之道 大有勝於一齊奔忙是乎所

所不能弛慮者 惰農之仍循失時 窘民之未辦玆器也 無牛無粮之類 曉諭隣里 互相借助 毋至淹延時日 蹉失節候之地爲旀 或有因病廢農者 是去等 自該里 合力扶助 切勿越視之意 面任周行阡陌面面董飭 爲乎矣 初伏前後 營門多遣摘奸別岐監察 計料爲去乎

萬一 有片地隙土 可墾而不墾 把禾握秧 可移不移 當

312)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
313)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감. 또는 지방관의 부임을 지칭하기도 함.
314) 비가 내리는 계절에 이름.
315) 김맬 때에 쓰는 농기구.
316) 나라에 조사(調査)·감독(監督)·취렴(取斂) 등의 일이 있을 때 지방(地方)에 파견(派遣)하던 임시 벼슬. 산성별감(山城別監)·권농별감(勸農別監)·염장별감(鹽場別監)·채방별감(採訪別監) 등

此雨順風調之時 忽致田土曠廢之歎 則是豈營門 一念憧憧 屢勤提飭之本意乎 當該面里任 斷當別樣嚴究是遣 該里頭頭人段 亦難免全昧任恤之責 以此甘辭 翻謄知委于各面風憲勸農等任俾各惕念擧行 形止亦卽牒報宜當事

않았다면 이렇게 바람과 비가 순조로운 때를 만나도 소홀하여 전토(田土)가 오래도록 폐지가 되는 탄식에 이른다면, 이것이 어찌 영문(營門)에서 일념(一念)으로 걱정하고 여러 번 제칙(提飭)[317]하는 본래의 뜻이겠습니까.

마땅히 해당 면리(面里)의 책임자는 단연코 별다른 모양으로 엄격하게 따질 것이고, 해리(該里)에 두두인(頭頭人)[318]도 또한 임휼(任恤)[319]을 무시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각 면의 풍헌(風憲)[320]·권농(勸農) 등의 책임자들에게 통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케 하고 그 상황도 즉시 첩보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初 五日

顯隆園 端午 祭享 以獻官進參

초 5일

현륭원에서 단오(端午) 제향(祭享)에 헌관(獻官)으로 진참(進參)하였다.

[祭享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初五日 行顯隆園端午 祭享時 丁字閣月臺右邊 磚石動退處 修改 兼告由 祭享 臣以獻官進參設行後 園上奉審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是白乎旀 祭官職姓名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제향계본(祭享啓本)]

삼가 제향의 일로써 장계(狀啓)합니다. 이 달 초닷새 날에 현륭원 단오(端午) 제향(祭享)에 갔을 때에 정자각(丁字閣) 월대(月臺) 오른쪽 벽돌이 움직여 물러난 곳에 수개(修改)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제향(告由祭享)에 신이 헌관으로 진참하고 설행(設行)한 뒤에 능 위를 봉심하니 잡초(雜草)와 잡목(雜木)이 없었으며 사방 산(山)의 안에도 수목(樹木)이 범작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祭官)의 직함과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是曉 過 享後 仍宿齋室 待天明 進詣 園上 奉審

같은 날 새벽 제향을 지낸 뒤 곧바로 재실(齋室)에서 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원상(園上)에 나아

317) 드러내어 신칙함.
318)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319) 구휼(救恤)의 책임.
320) 풍기(風氣)를 바르잡고 관리의 정사청탁(正邪淸濁)을 감찰 규탄하는 직임(職任).

가서 정자각(丁字閣) 월대(月臺)를 수리하는 공역(工役)장을 봉심하였다. 그리고 사시(巳時)에 감영에 돌아왔다가 오시(午時)에 화령전을 일차(日次)[321]로 봉심하였다.

丁字閣月臺修改役處　巳刻還營　午刻華寧殿　日次奉審

[예조이문(禮曹移文)]

상고(相考)할 일을 분부하여 예조를 시켜 계하(啓下)하신 단자(單子)는 대신들의 연주(筵奏)[322]에 따라 현륭원 정자각 오른쪽 벽돌이 움직여 물러난 곳을 단오 제향(祭享)에 고유(告由)를 행하고 역사(役事)의 시작을 정탈(定奪)[323]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에 좋은 날과 시간은 일관(日官)[324] 이병홍(李秉洪)으로 하여금 추택(推擇)케 하니 「다가오는 5월 13일 묘시(卯時)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날 이 시간에 거행하되 먼저 사유를 고하고 제향할 때에 향축문(享祝文) 가운데에 조사(措辭)[325]를 첨가하고 소입(所入)한 물종(物種)은 본부(本府)로 하여금 마련하여 진배(進排)[326]케 하였습니다.

또한 본원(本圓) 관원으로 하여금 공역(工役)을 감독하여 수리하는 일을 겸하게 한 일을 아울러 분부하니 아뢴 대로 시행 할 것을 계하하였습니다. 계하(啓下)한 사의(辭意)를 봉심하고 소입(所入)한 물종(物種)을 마련하여 진배하되 좋은 일시에 수개(修改)할 일을 상고하여 시행 할 일입니다.

[禮曹移文]

爲相考事節　啓下敎曹單子因大臣筵奏　顯隆園　丁字閣月臺右邊磚石動退處　端午祭享　兼行告由始役事定奪矣　修改吉日時　令日官李秉洪　推擇　則來五月十三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　而先告事由祭節　享祝文中　措辭添入　所入物種　令本府磨鍊進排　亦令本　園官員　兼監役修改事　幷以分付如何　啓依所啓施行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奉審　所入物種磨鍊進排趁　吉日時修改事　相考施行向事

321) 그날의 당번차례.
322)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과 같은 경연(經筵) 및 임금을 대하는 자리에서 임금에게 시사(時事) 혹은 정책(政策)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아뢰는 것을 말함.
323) 임금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재결(裁決)함.
324) 추길관(諏吉官)의 별칭.
325) 언어를 구사하는 것. 시가(詩歌)나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자의 용법과 문구의 배치 등을 일컫음.
326) 대궐이나 각 궁(宮)·관아(官衙)에서 쓸 여러 가지 물품을 호조(戶曹)나 해당 관아(官衙)에서 지급함.

初 六日
農形封啓

초 6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秋麰間間刈取春麰向黃 早稻付種 初除草方張 晩稻乾播 初除草方始有水根洞沓 方張移秧是如爲白有臥乎所 日前再次雨澤 尙未周洽 高燥之沓 尙今仰壟待雨 際此霈然 轉切顒望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本府) 판관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은 가을보리는 간간히 베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있다.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처음 풀을 매어 자라나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처음 김을 매기 시작하였으며 수근(水根)이 있는 논은 옮겨 놓은 모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두 차례 비가 내렸으나 아직까지는 두루 흡족하지 못하고 바싹 마른 논은 지금도 두둑을 쳐다보며 비를 기다려야 하니, 비가 주룩 주룩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九日
出往祝萬堤 審察農形

초 9일 축만제(祝萬堤)에 나아가서 농형(農形)을 심찰(審察)하였다.

初 十日
華寧殿 奉審

초 10일 화령전을 봉심하였다.

十一日
校吏料米 廣州 以代錢輸送

11일 교리(校吏) 요미(料米)는 광주(廣州)가 대전(代錢)[327]으로 수송하였다.

[廣州移文]
卽到貴移是置有亦 貴營校吏料米事 已悉於前後往復今不必架疊 而盖其換劃之

[광주이문(廣州移文)]
귀영(貴營)에 교리(校吏) 요미(料米)의 일은 이미 전후 왕복한 이문에 모두 말하였으므로 지금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327) 물건 대신으로 주는 돈.

대개 돈으로 바꿔서 나눠 준 일은 실질 사세(事勢)가 만부득이 한 데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에는 귀영(貴營)에 소속한 5개읍에 전체 수량의 곡식으로 구획하였습니다.

5개읍에 있는 곡식이 1,800여 석에 차지 않기 때문에 안성(安城) 곡식을 첨획(添劃)[328]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도착한 귀 영의 공문이 이와 같이 정중하건만 그 공제(共濟)의 의리에 있어서 한결같이 서로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에서 나눠 준 쌀 1,561석(石)은 다시 용인(龍仁)·남양(南陽)·죽산(竹山)·양성(陽城) 등 읍의 곡식으로 바꾸어 나눠 준 것을 뒤에 기록하고 한쪽에 문이(文移)하여 각 읍에 관문을 띄워 알렸습니다.

이것은 금년 모미(耗米)로 시작하여 가을을 기다려 추용(推用)할 처지이며 작년 모미(耗米)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 184포(包)는 귀이(貴移)의 내용에 폐영(弊營)이 상정(詳定)하여 수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본색(本色)으로 상정하여 나눠 보내지 못 하였다면 경외(京外)의 상정(詳定)을 논하지 말고 매석(每石)당 돈 3량으로 통행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전례에 의하여 매석(每石) 3량으로 수를 맞춰 수송할 것입니다.

처음 모든 고을에 이획(移劃)하고 안성 외 다른 고을은 곡식의 수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옮겨서 바꾸고 또한 소각(銷刻)[329]의 혐의가 없지 않으니, 이것은 전례에 의하여 옮겨서 나눠주고 아울러 작년의 모미(耗米)를 드립니다. 귀영(貴營)으로부터 편리에 따라 추봉(推捧)[330]하면 실지로 편의하다고 하므로 아울러 상고(相考)하여 시행 할 일입니다.

擧　實出於事勢之萬不獲已而然舍除良　當初移劃之時必欲以貴營所屬　五邑所在穀全數 區劃是乎矣

五邑所在穀　不滿一千八百餘石零　故至於安城穀添劃之境　是加尼　今到貴移　若是鄭重　其在於共濟之義　有不可一直相持乙仍于　安城所劃米　一千五百六十一石零段　更以龍仁南陽竹山陽城等邑之穀 換劃後錄 文移一邊　發關知委於各該邑爲去乎 此則自今年耗爲始 待秋推用之地爲旀　昨年耗中不足條　一百四十四包零段貴移內　以弊營詳定輸送云是乎矣

旣不以本色　而以詳定劃送則毋論京外詳定　每石三兩卽 是通行之例 故依例以每石三兩 準數輸送是乎旀

初次移劃諸邑中　安城外他邑段 非但穀數之無多 到今移易 亦不無銷刻之嫌 此則依前移 竝與昨年耗 而自貴營 從便推捧 實合便宜是如乎 幷以相考施行事

328) 더 보내어 획급(劃給)함.
329) 닳아서 없어짐.
330) 돈과 곡식을 물리어서 받아 들임.

十三日
雨澤封啓

13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相宇牒呈 則今月十一日申時量 始雨或霏或灑 間或止歇 十二日酉時 至所得爲二鋤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惜乾頗久 甘澍伊時 繼此霈然 方切顒祝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본부(本府) 판관(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김상우의 첩정을 보니, '이 달 11일 신시(申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 주룩 내렸다가 그치기도 하여 12일 유시(酉時)에 두 호미자락의 비가 내렸다.' 고 하였습니다. 신(臣)의 감영(監營) 측우기 수심(水深)이 1촌 2분이라고 하므로 가뭄을 애석하게 여긴지가 오래되어 단비가 내렸건만 이를 이어 주룩 주룩 비가 내릴 것을 애타게 빈다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 顯隆園丁字閣月臺 修改始役 卯刻進詣董役 申刻還營

같은 날 현륭원 정자각 월대 수개(修改)의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묘시(卯時)에 나가서 역사를 감독하고 신시(申時)에 영으로 돌아왔다.

[狀啓]
節到付禮曹關內節 啓下敎曹單子 因大臣 筵奏 顯隆園丁字閣月臺 右邊磚石動退處 端午 祭享 兼行告由始役事定奪矣 修改吉日時令日官李秉洪推擇 則來五月十三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 而先告事由

[장계(狀啓)]
이번에 도달한 예조의 관문(關文)안에 분부하기를, '예조에 계하한 단자(單子)는 대신들의 연주(筵奏)에 따랐던 것으로 현륭원 정자각 월대 오른쪽에 벽돌이 움직여 물어난 곳을 단오(端午) 제향(祭享)때에 고유(告由)[331]하고 역사(役事)의 시작을 정탈(定奪)[332]하였다. 수개(修改)에 좋은 일시는 일관(日官)[333] 이병홍(李秉洪)으로 하여금 추택(推擇)케 하니 다가오는 5월 13일 묘시(卯時)가 좋다고 하므로 이 날 이 시간에 역사를 거행하여 먼저 사유를 고하였습니다.

祭節享 祝文中 措辭添入

제향하는 축문가운데에 조사(措辭)[334]를 첨입(添入)

331) 국가나 사가(私家)에서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이나 치른 뒤에 그 사유를 종묘(宗廟)나 사당(祠堂)에 고(告)하는 일.
332) 임금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재결(裁決)함.
333) 점성과 복서(卜筮) 등으로 길흉을 판단하여 예언하던 관직.

하고 소입(所入) 물종(物種)은 본부로 하여금 잘 다듬어서 진배케 하였습니다. 또한 본원(本園) 관원으로 하여금 감역(監役)을 겸하여 수개(修改)할 일을 아울러 분부하고 장계에 아뢴 바에 따라 일을 시행할 것을 계하(啓下)하고 계하한 내용의 사의(辭意)를 봉심하여 거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오 제향 할 때에 고유(告由)의 이행한 경과를 이미 치계하였는 바 삼가 추택(推擇)한 일시에 따라서 지금 13일 묘시(卯時)에 공역(工役)을 시작하여 수개(修改)합니다. 신도 당일에 달려가서 본(本)원령(園令) 이상조(李象祖)·참봉 조병위와 더불어 감독한 연유를 우선 치계하는 일입니다.

所入物種 令本府排鍊進排亦令本 園官員 兼監役修改事 幷以分付何如 啓依所啓施行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擧行 亦爲白有等以 端午 祭享時 兼行告由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謹依推擇日時 今十三日卯時 始役修改 而臣於當日亦爲馳詣 與本 園令李象祖參奉趙秉緯 眼同董役爲白乎旀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15일

화령전에 분향하고 봉심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十五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장계(狀啓)]

신(臣)은 금일에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륭원(顯隆園) 참봉 조병위의 첩정을 보니 금일에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우택(雨澤) 및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參奉趙秉緯牒呈 則今日 園上殿內奉審 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同日 雨澤及農形 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 판관(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김상우(金相宇)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15일 인시(寅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 주룩 내리고 혹은 방타(滂沱)[335]하여 같은 날 오시(午時)에

[狀啓]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金相宇牒呈 則今月十五日寅時量 始雨或霏灑或滂沱 同日午時 至所得恰爲三犁 而境

334) 글의 마디를 얽어서 만듦.

內農形段　秋雉已盡刈取 春雉間間刈取

세 보지락이 충분 하고 경내(境內)에 농형(農形)은 가을 보리는 이미 모두 베어내었고 봄 보리는 간간히 베어내었다.

早稻付種 初除草已畢 晩稻乾播 初除草方張 移秧方張 豆太根耕　方始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 水深爲四寸五分　是白如乎　秧節漸晩 望霓政切 是白在如中 甘霈如幾高低周洽 言念民事 誠爲萬幸 見今油雲四集 霏灑不已 嗣後所得 鱗次登 聞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올벼는 부종하여 애벌의 풀을 다 매고, 늦벼는 건파하여 애벌의 풀을 매어 자라나며, 모내기도 자라고 두태(豆太)[336]의 그루갈이도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영(營) 측우기 수심(水深)이 4촌 5분이며 모내기 철은 점점 늦어지고, 가뭄에 비를 기다림이 절실한데 단비가 그나마 흡족하니 백성의 일을 생각하여 진실로 다행입니다. 지금에 비구름이 사방으로 모이여 주룩 주룩 비가 내리어 그치지 아니하니, 연이어 아뢸 것을 생각하오며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十六日

以勸飭農務事 更甘兼判官

16일

농무(農務)를 권장하여 신칙(申飭)하는 일로써 다시 겸판관(兼判官)에게 감결(甘結)하였다.

[甘結]

右甘 爲近以暵乾 晝宵憂慮 是在如中 昨日半尺之雨 奚啻渴者之得金莖露也　始以霢霂 終爲滂沱汰落 非所可虞 高低無不周洽 穰穰之豊 可執左契　而所不能弛慮者 特人力之未至耳　借助勸相

[감결(甘結)]

근래에 가뭄으로 낮 밤으로 근심하였는데 어제 반척(半尺)의 내린 비가 어찌 목마른 자가 금경로(金莖露)[337]를 얻은 것 뿐이겠습니까. 가랑비로 시작하여 끝내 세찬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근심 할 바가 아니요, 높고 낮은 곳에 두루 흡족하게 내리어 양양(穰穰)[338]한 풍년을 좌계(左契)[339]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인력(人力)이 미치지 못하는

335) 비가 세차게 쏟아짐.

336) 콩과 팥. '太'를 '콩 태'라 하여 '콩'의 뜻으로 쓰는 것은 한국에서 옛날에 '大豆'를 서리들이 속필하기 위하여 '太'로 쓴데서부터 시작된 俗字이다.

337) 감로(甘露), 곧 이슬을 받기위한 대야인 동(銅)으로 만든 승로반(承露盤)을 바치는 구리 기둥.

338) 곡물이 잘 결실한 모양.

339) 「노자(老子)에서 나오는 말」 둘로 나눈 부신(符信)의 한쪽. 하나를 자기 손에 두어 좌계로 하고, 남을 것을 상대방에 주어 우계(右契)로 함.

것으로 차조(借助)[340] 권상(勸相)의 절차를 이미 별도로 감결하여 신칙(申飭)하였습니다. 각 면의 책임자들은 모두 마음을 다하여 거행할 것이며 영문(營門)의 고심(苦心)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택(趨澤)[341]의 시급함을 시각을 다투어야 할 것이며, 만약 시일을 늦추어서 규중의 물을 잃어 진황(陳荒)[342]의 탄식에 이르면 당자(當者)의 태농(怠農)은 말할 수 없거니와 임장(任掌)[343]의 만령(慢令)이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之節 前已別甘申飭是加尼各面面任輩 果皆悉心擧行毋負營門苦心是喩 趨澤之急 爭以咎刻 苦或遷延時日放失畦中之水 竟致陳荒之歎 則當者之怠農 已無可言任掌之慢令 罪當何居

고조(高燥)[344]한 전답의 소유자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가 없으므로 소의 양식을 빌려서 양식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 맞춰 이앙(移秧) 할 것이며 일후(日後)에 근로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면 높고 낮은 전답에 빠짐없이 이앙하여 빈부(貧富)의 집이 모두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웃 마을에 훈훈한 풍속이 국전(國典)[345]에 실린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신명(申明)[346]을 더하여 지위(知委)[347]할 것입니다.

高燥田夫 每多貧寒 無牛而借牛之粮 而助粮 俾卽及時移秧是如可 日後鋤役 計傭受償是隱 則高田低田 無一未移 貧戶饒戶 兩無所失 此非但隣里厚風 亦是 國典所載 以此意 更加申明知委爲乎矣

또한 시일을 보아서 조사관을 보낼 생각이므로 만약에 편지(片地)와 극토(隙土)에 절기(節期)를 잃어 이앙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하는 면·리의 책임자 등은 단연코 특별한 본보기로 엄격하게 추궁할 것이니 금일 내에 감사(甘辭)을 번등(飜謄)하여 각 면에 지위(知委)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모르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의당한 일입니다.

差觀時日 分遣摘奸 計料爲去乎 萬一有片地隙土良置失節未移之弊 則當該面里任等 斷當別樣嚴究 今日內飜謄甘辭 知委各面 俾無一民未知之弊 宜當向事

---

340) 힘을 빌려서 도움.
341) 우기(雨期)를 쫓아 이용함.
342) 묵고 거칠어진 농사 일.
343) 서울의 각방(各坊) 또는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 사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의 총칭. 서울 각 방에서는 별문서(別文書)·별유사(別有司) 등이 있고, 지방에는 면임(面任)·이임(里任)·감고(監考) 등이 있었음.
344) 땅이 높고 메마름.
345) 나라의 법전(法典). 조선의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같은 것을 말함. 또는 이에 규정되어 있는 국법(國法).
346) 사실을 거듭 자세히 밝힘.
347) 통지나 고시 따위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 알려줌.

十八日
雨澤封啓

18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今月十五日午時 至得雨四寸五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伊後 或霏灑或止歇 十七日酉時 至所得 又爲一犁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水深 爲一寸八分 通計前後合爲六寸三分 而油雲未收 似有成霖之慮 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이 달 15일 오시(午時)에 4촌 5분의 내린 비로 치계하였건만 계속해서 본부 판관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그 뒤에 혹은 비가 쏟아지고 그치기도 하다가 17일 유시(酉時)에 한 보지락의 비가 내렸다 하오며 신(臣)의 감영내 측우기 수심(水深)이 1촌 8분으로 전후 통계가 6촌 3분입니다. 비구름이 아직 거치지 않으므로 장마의 조짐이 있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 還餉加分事 封啓

같은 날 환향(還餉) 가분(加分)[348]의 일을 가지고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以爲會付還餉 自來不敷雖在常年 每請加分是在如中 今年段 昨秋失稔停捧旣多 窮春還戶 此前倍蓰 況當農務方殷之時 民情轉益遑急 還餉留庫條中 租五千四十八石八斗三升 米二千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本府) 판관(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회부(會付)[349]한 환향(還餉)이 스스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평년이라도 언제나 가분(加分)을 청하여 왔건만 금년은 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어 정봉(停捧)[350]이 이미 많고 춘궁기에 환세(還稅)할 문호(門戶)가 근년에 비하여 두세 갑절이나 됩니다. 하물며 농사일이 바쁜 때에 민정(民情)이 더욱 황급하고, 환향이 창고에 있는 가운데에 벼 5,048석 8두 3승과

348) 조선 시대 삼정(三政)의 하나인 환곡(還穀)이나 군향미(軍餉米)를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
349) 금전이나 곡물을 회계장부에 회록(會錄)하고 해당 관아에 넘겨주는 일. 회록(會錄)은 결전법(結錢法) 시행 이후 분정법(分定法)을 혁파하였으나 흉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록의 이름을 세워 감영(監營)·병영의 넉넉한 곳에서 대략 양정하고 비국(備局)의 군작미와 호남의 검영미(檢營米)의 일정량을 구획하여 재원으로 삼은 것.
350) 부세 또는 공물을 바치는 것을 정지함.

쌀 2,847석 1두 2승과 콩 3,385석 8두 8승을 특별히 가분(加分)하여 계속 지급케 할 것입니다.

연이어 속읍(屬邑) 안산군수(安山郡守) 김원순(金原淳), 용인현령(龍仁縣令) 이굑(李涸), 진위현령(振威縣令) 오근상(吳謹常), 시흥현령(始興縣令) 이명원(李鳴遠), 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가 아뢰기를 '읍환(邑還)[351]이 매우 적어 추진해 나갈 방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부(本府)가 관할하는 남한(南漢) 향조(餉租) 창고에 있는 가운데에 안산(安山) 300석(石), 용인(龍仁) 2,251석(石) 9두(斗) 2승(升), 진위(振威) 1,779석 7두 3승, 시흥(始興) 590석 7두 5승, 과천(果川) 657석 9두 3승을 지난 예에 따라 가분(加分)한 일로써 아뢰어 왔습니다.

환향법(還餉法)의 뜻은 엄중하건만 모든 고을에 민정(民情)은 진실로 아뢸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에 한갓 엄중하여 두려운 것만 생각하고 변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권농(勸農) 보조(補助)의 도(道)가 아니므로 이에 감히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합니다. 본부 환향 창고에 있는 조(租)·미(米)·태(太) 합계 1,281석(石) 3두(斗) 3승(升)과 5개 읍에 있는 향조(餉租) 5,579석 3두 3승을 특별히 가분(加分)을 허락한 일로써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352]하여 분부케 하도록 합니다.

[비국회관(備局回關)]

상고(相考) 할 일을 계하(啓下)하신 계사(啓辭).

수원유수(水原留守) 서(徐)의 장계(狀啓)를 보니,

八百四十七石一斗二升　太三千三百八十五石八斗八升特請加分　俾卽繼給亦爲白乎旀

連接屬邑安山郡守金原淳龍仁縣令李涸　振威縣令吳謹常　始興縣令李鳴遠　果川縣監鄭晩敎所報　則以爲邑還尠少　排進無路　本府所管南漢餉租　留庫條中　安山三百石　龍仁二千二百五十一石九斗二升　振威一千七百七十九石七斗三升　始興五百九十石七斗五升　果川六百五十七石九斗三升　依已例加分事　報來是白乎所

還餉法意　非不嚴重　而諸邑民情　誠如報辭　今若徒懷嚴畏　不思變通　則有非勸農補助之道　是白乎等以　玆敢據實登　聞爲白去乎　本府還餉留庫條中租米太　合一萬一千二百八十一石三斗三升及五邑所在餉租　五千五百七十九石三斗三升　特許加分事　令廟堂稟旨　分付爲白只爲

[備局回關]

爲相考事節　啓下敎司啓辭卽見水原留守徐　狀　啓　則

351) 고을에서 환향(還餉)한 곡식.
352) 특정 사안을 보고하여 임금의 결재를 받음.

以爲會付還餉 自來不敷 而昨秋失稔 停捧旣多 今當農務方殷之時 排進無路 民情遑急 本府還餉留庫中租米太 合一萬一千二百八十一石零 屬邑餉租五千五百七十九石零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歉餘民勢在所軫念 秋節農粮 尤急補助 而所請石數 終涉過多 本府留庫中租米太合五千石 屬邑餉租中三千石 特許加分何如 答曰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向事

'회부(會付) 환향(還餉)이 스스로 펴지지 않건만 작년 가을에 흉년이 들어서 정봉(停捧)이 이미 많은데 농사일이 바쁜 때를 당하여 추진할 길이 없고 민정(民情)이 황급함을 생각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부 환향(還餉) 창고에 있는 벼·쌀·콩을 합산하여 11,281석(石)과 속읍(屬邑)의 향조(餉租)[353] 5,579석(石)을 특별히 가분(加分)을 허락한 일로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 분부케 할 것을 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굶주린 백성들의 형편을 진념(軫念)하여 추절(秋節)에 농량(農粮)은 더욱 긴급히 보조해야 하지만 청하는 곡식의 수량이 과다(過多)하므로 본부 창고에 있는 벼·쌀·콩을 합한 5,000석과 속읍(屬邑) 향조(餉租) 3,000석을 특별히 가분(加分)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답하여 윤허하는 일로써 전교(傳敎)하였으므로 전교내 일의 내용을 살펴 시행할 일입니다.

十九日

顯隆園丁字閣月臺 畢役後封啓

19일

현륭원(顯隆園) 정자각(丁字閣) 월대(月臺)의 역사(役事)를 마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顯隆園丁字閣月臺 磚石動退處 自今十三日卯時 始役修改之由 前已馳 啓爲白有在果 月臺西邊階砌廣六把 南邊近西階砌廣三把 幷撤退後 用沙礫築實地底 另鋪地臺石一層 仍以舊排階石地臺石一層 仍以舊排階石

[장계(狀啓)]

현륭원 정자각 월대(月臺)의 벽돌이 움직여 물러난 곳에 13일 묘시(卯時)로부터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수개(修改)한 사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월대(月臺) 서쪽 가에 섬돌 넓이 6파(把)[354]와 남쪽 가 서쪽 섬돌에 가까운 섬돌 넓이 3파(把)를 아울러 철퇴(撤退)한 뒤에 자갈을 땅 밑에 채워놓고 별도로 지대석(地臺石) 한 층(層)을 깔아서 옛 섬돌과 같이 고쳐 배열하였습니다.

353) 군량이 되는 벼.

354) 결(結)·부(負)·속(束) 등과 함께 토지면적의 한 단위로 사용되었는데, 10파가 1속, 10속이 1부, 100부가 1결임.

월대(月臺) 상면(上面)에 깔아 논 사각벽돌과 및 하면(下面)에 깐 벽돌이 연이어 물러나고 터진 곳을 모두 고쳐 깔았습니다. 그리고 정자각(丁字閣) 동·서·북쪽 섬돌이 기울어 진 것도 일일이 고쳐 깔아서 18일에 역사(役事)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잡물과 인력은 신(臣)의 영(營) 관천고(筦千庫)로부터 진배(進排)[355]한 연유(緣由)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依前改排是白遣
月臺上面 所鋪方甎 及下面所鋪磚石 鱗級退罅處 一幷改鋪 丁字閣東西北階砌石傾仄者 亦爲一一改排 今十八日至 畢役是白乎旀 所入物力 自臣營筦千庫 進排緣由 馳 啓爲白臥乎事

20일

향축(香祝)을 모시고 현륭원에 나아가서 월대(月臺) 역사(役事)하는 곳을 봉심하였다. 각신(閣臣)[356] 이태(李台) 헌위(憲瑋)가 하래(下來)했다.

二十日
陪 香祝詣 顯隆園 奉審月臺役處 閣臣李台憲瑋下來

21일

현륭원 기신(忌辰)[357] 제향(祭享)에 헌관(獻官)으로 참여하고 봉심한 각신(閣臣)과 더불어 영(營)으로 돌아왔다.

二十一日
顯隆園 忌辰祭享 以獻官進參 仍與奉審閣臣還營

[계본(啓本)[358]]

삼가 제향(祭享)의 일로써 아룁니다. 이 달 21일에 현륭원 기신(忌辰) 제향(祭享)을 거행하는데 신이 헌관(獻官)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치룬 뒤에 능 위를 봉심하니 잡초·잡목이 없고 사방 산내에도 나무를 범작(犯斫)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제관(祭官)의 직책과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359]하여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二十一日 行 顯隆園 忌辰祭享 臣以獻官進參設行後 園上奉審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

355) 대궐이나 각 궁(宮)·관아(官衙)에서 쓸 여러 가지 물품을 호조(戶曹)나 해당 관아에서 지급함.
356) 규장각(奎章閣)의 벼슬아치.
357) 죽은 사람의 제삿날. 음주하지 않고 매사에 삼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일(忌日)이라고도 함.
358) 임금에게 국사(國事)에 관하여 아뢰는 문서.
359)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의 말미(末尾)에 의견 또는 용건을 열기(列記)하는 것.

同日 以 御製校正監印閣臣 蒙 恩資 有旨 及敎諭書祗受後 封啓

같은 날 어제교정(御製校正) 감인(監印)[360] 각신(閣臣)으로 은자(恩資)[361] 유지(有旨)[362] 및 교유서(敎諭書)를 공경히 받은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二十日 以 純宗大王御製 翼宗大王御製 繕寫時 及 列聖御製 合附本奉印時 校正監印閣臣以下別單 傳 曰

20일 대순종대왕(純宗大王) 어제(御製)와 익종대왕(翼宗大王) 어제(御製)를 선사(繕寫)[363]할 때와 열성어제(列聖御製) 합부본(合附本)을 봉인(奉印)할 때에 교정(校正)·감인(監印) 각신(閣臣) 이하의 별단(別單)[364]에 대해 전교(傳敎)하기를,

原任提學 南公轍沈象奎洪奭周朴宗薰 各鞍具馬一匹面給 提學趙寅永 原任提學鄭元容 提學徐有榘 檢校直提學 徐憙淳 直提學朴永元 原任直閣徐俊輔 李光文李嘉愚李景在 竝加資 吳取善內下虎皮一令賜給

'원임(原任)[365]제학(提學) 남공철(南公轍)·심상규(沈象奎)·홍석주(洪奭周)·박종훈(朴宗薰)에게 안구마(鞍具馬)[366] 한 필씩 면급(面給)[367]하라. 그리고 제학(提學) 조인영(趙寅永), 원임재학(原任提學) 정원용(鄭元容), 제학(提學) 서유구(徐有榘), 검교(檢校)[368]직제학(直提學) 서희순(徐憙淳), 직제학(直提學) 박영원(朴永元), 원임직각(原任直閣) 서준보(徐俊輔)·이광문(李光文)·이가우(李嘉愚)·이경재(李景在)에게 가자(加資)[369]하고 오취선(吳取善)에게는 내하호피(內下虎皮) 한 벌을 사급(賜給)하라.

---

360) 공문(公文) 등을 발행할 때에 감인관(監印官)이 그 사목(事目) 내에 착오가 없는지 살핀 뒤에 도장을 찍던 일.

361) 임금이 공(功)이나 덕(德)이 있는 벼슬아치에게 상으로 품계(品階)를 올려 줌.

362) 임금의 분부(分付)를 전하는 문서.

363) 부족한 점을 고치고 보충하여 정서함.

364) 주본(奏本)에 첨부하는 문서(文書) 또는 인명부(人名簿).

365) 관직을 가졌다가 퇴임한 관원을 이르는 말. 조선시대에는 현직 관원을 시임(時任), 퇴임한 관원을 원임이라 하여 예우하였는데, 1469년(예종 1) 전직 관원을 대우하기 위해 정2품의 원임을 봉조하(奉朝賀)라 하고, 정3품의 원임을 봉조청(奉朝請)이라 하여 실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종신토록 품계에 따른 녹(祿)을 받게 하고 국가적인 의식이 있을 때 조복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원임 의정(議政), 즉 전에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지낸 모든 사람을 최고 합의기관인 비변사의 도제조(都提調)로 임명하여, 현직 관원들과 국난을 타개하도록 하였다.

366) 말안장과 그에 딸린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춘 말.

367) 물건이나 재물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건네줌.

368) 고려·조선 시대에 정원 외에, 또는 임시로 맡기는 관직 앞에 붙인 명칭. 조선시대에서는 영조·정조 때 규장각 제학(提學)이나 직각의 시임(時任:現任)이 사고가 있을 때에 원임(原任:前任)의 이름을 모두 써서 임금께 올려 낙점(落點)을 받아 임시로 그 사무를 맡게 하는 경우에 그 관직명 앞에 임시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붙인 말로, 검교제학 또는 검교직각이라 하였다.

369) 조선 시대 인사 제도에서 관리들이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자급(資級)이나 품계를 올려 주던 일.

직각(直閣) 이공익(李公翼), 원임대교(原任待敎) 이헌위(李憲瑋)·김정희(金正喜), 검교대교(檢校待敎) 조두순(趙斗淳)에게 가자(加資)하고, 김학성(金學性)에게 내하(內下)[370] 호피(虎皮) 한 벌을 하사하라. 그리고 대교(待敎) 김수근(金洙根)을 6품(六品)으로 승급(陞級)하고, 겸검서관(兼檢書官) 유본예(柳本藝)·원유영(元有永), 검서관(檢書官) 박종영(朴宗永)·안계량(安季良)·김봉서(金鳳敍)·김기순(金箕淳)에게 상당직(相當職)으로 조용(調用)[371]하라. 그리고 승진하지 못한 여섯 사람은 승서(陞敍)[372]하고 사자관(寫字官) 홍성로(洪聖老) 등 두 사람과 화원(畵員) 장준량(張駿良), 선사사자관(繕寫寫字官) 이희룡(李希龍) 등 25인은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그 성과를 참고하여 갑술년의 예에 의거하여 상을 주라. 그리고 택일관(擇日官) 박주환(朴周煥), 어제색서리(御製色書吏) 박완기(朴完基) 등 두 사람은 갑술년의 예에 의거하여 시상(施賞)하고 전(前) 어제색서리(御製色書吏) 강봉일(姜鳳一)·유재건(劉在建)은 모두 첩가(帖加)하여 거행하고 서리(書吏)이하 원역(員役)·공장(工匠) 등도 아울러 갑술년의 예에 의거하여 상을 주라.'고 하셨다.

直閣李公翼 原任待敎 李憲瑋 金正喜 檢校待敎趙斗淳 竝加資 金學性 內下虎皮一令賜給 待敎金洙根 陞六 兼檢書官 柳本藝元有永 檢書官 朴宗永安季良金鳳敍 金箕淳 竝相當職調用 未陞六人 陞敍 寫字官洪聖老等二人 畵員張駿良 繕寫寫字官 李希龍等二十五人 令內閣 考其工課 依甲戌年例施賞 擇日官朴周煥 御製色書吏朴完基等二人 依甲戌年例施賞 前御製色書吏 姜鳳一劉在建 竝帖加擧行 書吏以下員役工匠等 竝依甲戌年例施賞

전교에 이르시기를, '어제를 선사(繕寫)할 때에 교준각신(校準閣臣) 원임제학(原任提學) 남공철(南公轍)·심상규(沈象奎)·홍석주(洪奭周)·박종훈(朴宗薰)에게 각각 내하(內下) 표피(豹皮) 한 벌을 사급하라. 제학(提學) 조인영(趙寅永), 원임제학(原任提學) 정원용(鄭元容), 제학(提學) 서유구(徐有榘), 검교직제학(檢校直提學) 서희순(徐憙淳), 직제학(直提學) 박영원(朴永元), 원임직각(原任直閣) 서준보(徐俊輔)·이광문(李光文)·이가우(李嘉愚), 원임대교(原任待敎) 이헌

傳曰 御製繕寫時 校準閣臣 原任提學 南公轍 沈象奎 洪奭周 朴宗薰 各內下豹皮一令賜給 提學趙寅永 原任提學鄭元容 提學徐有榘 檢校直提學徐憙淳 直提學朴永元 原任直閣徐俊輔 李光文李嘉愚 原任待敎李憲瑋 各內下虎皮一令賜給 原任

370) 임금이 관청이나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줌.
371) 벼슬아치로 등용함.
372)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과(考課) 전최(殿最) 성적이 우수하거나, 혹은 임금의 특지(特旨) 등으로 벼슬을 올려주는 것을 말함.

直閣 李景在吳取善 直閣李公翼 原任待敎金正喜 檢校待敎趙斗淳 金學性 待敎金洙根 各內下鹿皮一令賜給 兼檢書官 柳本藝元有永 檢書官 朴宗永 安季良金鳳敍 金箕淳 各上弦弓一張賜給

위(李憲瑋)에게 각각 내하(內下) 호피(虎皮) 한 벌을 사급하라. 그리고 원임직각 이경재(李景在)·오취선(吳取善), 직각 이공익(李公翼), 원임대교(原任待敎) 김정희(金正喜), 검교대교(檢校待敎) 조두순(趙斗淳)·김학성(金學性), 대교(待敎) 김수근(金洙根)에게 각각 내하(內下) 녹피(鹿皮) 한 벌을 사급하라. 그리고 겸검서관(兼檢書官) 유본예(柳本藝)·원유영(元有永), 검서관(檢書官) 박종영(朴宗永)·안계량(安季良)·김봉서(金鳳敍)·김기순(金箕淳)에게 각각 상현궁(上弦弓) 한 장(張)을 하사하라.

寫字官以下 令內閣 考其工課 竝與員役工匠等 依辛酉年例施賞 傳曰 純宗大王御製 翼宗大王御製 列聖御製 合附本 奉謨堂文獻閣 五處史庫 外奎閣內閣 玉堂藏書閣 西庫 各一件奉藏 監印閣臣 原任提學 南公轍沈象奎洪奭周朴宗薰 提學趙寅永 原任提學鄭元容 提學徐有榘 檢校直提學徐憙淳 直提學朴永元 原任直閣 徐俊輔李光文李嘉愚李景在吳取善 直閣李公翼 原任待敎李憲瑋金正喜 檢校待敎趙斗

사자관(寫字官) 이하는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그 공과(工課)를 상고(相考)하여 원역(員役)·공장(工匠) 등은 신유년(辛酉年)의 예에 의거하여 시상(施賞)하라.'고 하셨다. 전교에 이르시기를, '순종대왕어제(純宗大王御製)와 익종대왕어제(翼宗大王御製)와 열성어제(列聖御製) 합부본(合附本)을 봉모당(奉謨堂)[373] 문헌각(文獻閣)과 다섯 곳의 사고(史庫)[374] 이외에 규장각(外奎閣)의 내각(內閣), 옥당(玉堂)[375]의 장서각(藏書閣)[376] 서고(西庫)[377]에도 각각 한 건씩 보관하라. 그리고 감인각신(監印閣臣) 원임제학(原任提學) 남공철(南公轍)·심상규(沈象奎)·홍석주(洪奭周)·박종훈(朴宗薰), 제학(提學) 조인영(趙寅永), 원임제학(原任提學) 정원용(鄭元容), 제학(提學) 서유구(徐有榘), 검교직제학(檢校直提學) 서희순(徐憙淳), 직제학(直提學) 박영원(朴永元), 원임직각(原任直閣) 서준보

373) 규장각의 부속건물로 역대 선왕들의 어제(御製), 어화(御畵), 고명(誥命), 유고(遺誥), 밀교(密敎), 선보(璿譜), 세보(世譜), 보감(寶鑑), 장지(狀誌) 등을 보관하였다.

374) 중앙의 춘추관(春秋館)과 지방의 강화 정족산·봉화 태백산·강릉 오대산·무주 적상산 등 4곳에 설치한 사고(史庫)를 이름. 임진왜란 전에는 지방에 충주·성주·전주 등 3곳에 있었으나 모두 불타 없어졌다.

375) ① 홍문관의 별칭(別稱) ② 규장각의 부속 서고(書庫)

376) 장서각(藏書閣)은 원래 세종 때 건립한 조선시대의 왕립 도서관이었다. 즉 집현전, 홍문관과 같은 왕립 학술기관의 부속 도서관 성격을 갖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그 후 정조 때 들어서 장서각은 그 명칭을 규장각(奎章閣)으로 바꾸었다. 식민지시대 때 일제는 한국의 고서를 강제로 인수해 가려 했다. 이왕가는 이에 강력히 저항하였고, 그 결과 왕실관련 자료들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뒤 1915년에 낙선재(樂善齋)의 동남쪽에 벽돌집 서고를 신축하여 옛 책들을 보관하다가, 1918년에 이 건물에 '장서각(藏書閣)'의 편액을 걸었다.

377) 규장각의 부속건물로서 조선본(朝鮮本) 서적을 보관.

(徐俊輔)·이광문(李光文)·이가우(李嘉愚)·이경재(李景在)·오취선(吳取善), 직각(直閣) 이공익(李公翼), 원임대교(原任待敎) 이헌위(李憲瑋)·김정희(金正喜), 검교대교(檢校待敎) 조두순(趙斗淳)·김학성(金學性), 대교(待敎) 김수근(金洙根)에게 각각 한 건씩 반사(頒賜)하라.' 고 하셨다.

이 날에 정사(政事)는 정헌(正憲)이 하비(下批)[378] 하였다.

淳金學性 待敎金洙根 各一件頒賜 是日政 正憲下批

[장계(狀啓)]

이 달 21일 동부승지(同副承旨) 권직(權溭)이 성첩(成貼)한 유지(有旨) 내용에, '경(卿)은 어제교정(御製校正) 감인각신(監印閣臣)으로 가자교유서(加資敎諭書)의 글을 내렸다. 그러나 그 글을 고치고 안보(安寶)[379]하여 원리(院吏)로 하여금 재전(賚傳)[380]하니 경은 공경히 받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지(有旨) 한 차례와 교서(敎書) 한 차례 그리고 유서(諭書) 한 차례를 정원(政院) 서리(書吏) 지봉벽(池鳳壁)이 재래(賚來)하였습니다. 신(臣)은 당일에 본영(本營)에서 공경히 받은 연유를 치계(馳啓) 하는 일입니다.

[狀啓]

本月二十一日 同副承旨 權溭成貼 有旨內 卿以 御製校正 監印閣臣 加資敎諭書 改書安寶使院吏賚傳 卿其祗受事 有旨一度 及敎書一度 諭書一度 政院書吏池鳳壁 賚來爲白有等以 臣於當日 在本營 祗受緣由 馳啓爲白臥乎事

22일 춘등(春等)[381]에 활쏘기 시험장을 동장대(東將臺)에 개설하여 인재(人才)를 뽑아서 상(賞)을 반급(頒給)하였다.

二十二日

春等賞試射 開場于東將臺 試取頒賞

23일 별군관(別軍官) 입속(入屬) 대상의 취재(取才)를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설행케 하고 병조(兵曺)에 이문(移文)한다.

二十三日

別軍官入屬取才 使中軍設行 移文兵曺

378) 신하가 올린 글장에 대하여 임금이 그 가부(可否)을 비답(批答)하여 내리던 일.
379) 옥새를 찍음. 옥새는 상서원(尙瑞院)에서 관리하고, 승지의 지시를 받아서 찍도록 되어있음.
380) 물건 등을 싸서 전달 함.
381) 한 해를 봄·가을의 두 기간으로 나누거나,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기간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그 첫째 기간.

[移文]
爲相考事 弊營別軍官額數姑未充定乙仍于 境內宣部薦出身 依節目取才是如乎三枝入格 爲十二人是乎等以 姓名矢數 修成冊以送爲去乎 相考施行向事

[이문(移文)]
상고(相考) 할 일입니다.
폐영(弊營)에 별군관(別軍官)의 정원수를 아직 충정(充定)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내(境內) 선부(宣部)[382]에서 천거한 절목(節目)에 의하여 인재(人才)를 뽑는데 세 가지에 입격(入格)한 사람이 12명이 되었다. 이에 성명과 화살수를 성책(成冊)하여 보내오니 상고하여 시행 할 일입니다.

二十四日
曉發往栢峰 與養吾少話 仍行茶禮于山所 戌刻還營

24일 새벽에 출발하여 백봉(栢峰)에 가서 양오(養吾)와 더불어 잠깐 대화를 하다가 산소에서 다례(茶禮)를 행하고 술시(戌時)에 영(營)으로 돌아왔다.

二十五日
華寧殿奉審 是日陰曀 只閤外奉審

25일 화령전(華寧殿)을 봉심하는데 이 날이 음에(陰曀)[383]하여 다만 합문(閤門) 밖에만 봉심하였다.

二十六日
農形封啓

26일 농사의 형편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春麰已盡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晩稻乾播 初除草已畢 移秧已畢 豆太根耕方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경내(境內)의 농사의 형편은 봄보리는 이미 다 베어내고, 올 벼는 부종(付種)하여 두 차례 김을 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늦 벼는 건파(乾播)하여 초벌 김매기를 마치고, 이앙(移秧)을 이미 끝내어 두태(豆太)의 그루갈이를 시작하였다.' 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382) 조선시대 무관(武官)을 천거하던 부서(部署).
383) 음산하고 흐린 모양.

동일(同日)에 청호면(晴湖面)[384] 담당자에게 전령(傳令)하였다.

同日 傳令晴湖面任

[전령(傳令)]

모두 알아서 거행할 일입니다. 지난 날 추택(趨澤)[385]이 시급하였건만 혹은 병으로 혹은 군겁(窘跲)[386]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치고 밭이랑의 물이 흘러 나갔습니다. 이에 기듭 폐농(廢農)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으므로 이웃끼리 서로 도우라는 글을 지어서 감칙(甘飭)[387]하였건만 지금에 본면(本面) 오산(烏山)·장촌(場村)에 때를 놓쳐 폐경(廢耕)하는 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고을 40여명이 서로 의논하고 도와서 주앙(注秧)[388]하는 사람은 소를 빌려 모를 옮겨 심고 부종(付種)하는 사람은 힘을 모아서 김을 매고 농작물을 가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훈훈한 풍속이 들려오므로 가상(嘉尙)함을 이기지 못하고 청주(淸酒) 10복자와 정육(正肉) 3근을 내어 보냅니다. 면임(面任)은 곧 바로 해당 마을에 나아가서 우두머리와 그 날에 부역(赴役)하는 전부(田夫)를 모으고 이 같은 뜻으로 고기와 술을 전하고 다른 마을은 어떤가를 마땅히 살피되 간혹 이에 반대하는 일이 생기면 이에 반하는 벌을 줄 것입니다. 또한 뜻을 투료(投醪)[389]하는 정사(政事)에 붙인다면 농무(農畝)를 다스리는 데에 시급하니 이 뜻 모두를 아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傳令]

爲知悉擧行事 前以趨澤時急而或因病故 或因窘跲 蹉却時候 走失畦水 則仍以陳廢不能無慮乙仍于 隣里顧助措辭甘飭是加尼 今聞本面烏山場村 有患時令廢耕之戶

而該洞農民四十餘人 相議顧助 注秧者借牛移揷 付種者合力鋤治云 此何等厚風聞來 不勝嘉尙 淸酒十鐍正肉三斤 出送爲去乎 面任卽爲進詣該村 聚會頭頭人及伊日赴役田夫 以此意傳及饋酒爲乎矣 他村如何 從當這這探察 或有反於此之事 亦當有反於此之罰 意實寓於投醪政 則急於易畝 此意一體 知悉宜當事

384) 현재의 오산시와 평택시 진위면 일부.
385) 비 내릴 계절에 이름.
386) 궁색하여 길이 막힘.
387) 감결(甘結)하여 신칙(申飭)함.
388) 봄에 볍씨를 모판에 뿌리는 일.
389) 부하에게 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것으로 곧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 한다는 뜻.

二十七日
雨澤封啓

27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今月二十六日亥時量 始雨或霆或灑 二十七日卯時至所得爲二鋤餘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접수한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에 보니, '이 달 26일 해시(亥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 보슬 혹은 주룩 주룩 내려 27일 묘시(卯時)까지 내린 비가 두 호미자락이 되었다.'고 하오며 신(臣)의 영(營) 측우기 수심(水深)이 1촌(寸) 2분(分)이 되었으므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二十八日
自營離發 中火于始興 夕抵筆谷

28일 영(營)으로부터 출발하여 시흥(始興)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필곡(筆谷)에 도착하였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上京緣由 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이 의정부에 품의할 사항이 있어서 당일에 출발하여 상경(上京)하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6월

여 백

初 一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頃事
封啓

초 1일 화령전(華寧殿) 현륭원을 봉심하여 무탈한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李敏榮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象祖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초하루 분향(焚香)한 뒤에 곧 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이 없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달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 첩정 내용에 이 달 초하루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雨澤封啓

같은 날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去月二十九日酉時量 始雨或霆灑 或止歇 今月初一日寅時 至所得爲二犁餘 而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지난 달 29일 유시(酉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 주룩 내리기도 하고 혹은 그치기도 하더니 이 달 초하루 인시(寅時)에 두 보지락 남짓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營下) 측우기의 수심(水深)이 3촌(寸) 1분(分)이 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六日
加資肅拜
同日 雨澤及農形 封啓

초 6일 가자(加資)로 숙배(肅拜)[390]하였다.
같은 날 우택(雨澤) 및 농사의 형편으로 봉계(封啓) 하였다.

390) 종친·백관이 임금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禮).

[장계(狀啓)]

이 달 초하루에 3촌(寸) 2분(分)의 비가 내린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그 뒤에도 유운(油雲)[391]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연이어 음에(陰曀)하다가 초 4일 미시(未時) 즈음에 혹은 비가 보슬 보슬 내리고 쏟아지기도 하여 초 5일 오시(午時)에 두 호미자락 남짓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營下) 측우기의 수심(水深)이 1촌(寸) 2분(分)이며 경내(境內)에 농사의 형편은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두벌 김을 매고, 늦 벼는 건파(乾播)하여 두 벌 김을 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앙(移秧)하여 초벌 김을 매기 시작하고 콩팥은 그루갈이를 이미 마쳤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今月初一日 至得雨三寸一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伊後油雲未散 連爲陰曀是如可 初四日未時量 更爲始雨 或霆或灑 初五日午時至 所得又爲二鋤餘

而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乎旀 境內農形段 早稻付種 再除草方張 晩稻乾播 再除草方始 移秧初除草方始 豆太根耕 已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초 7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七日

進 實錄廳

초 9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九日

進 實錄廳

초 10일 숙선옹주(淑善翁主)[392]의 상(喪)을 당해 성복(成服)[393]한 뒤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참여하였다.

初 十日

淑善翁主成服後 問 安班進參

391) 비가 내릴 듯한 구름.

392) 조선 22대 정조의 빈(嬪)으로, 원호(園號)는 휘경(徽慶)이신 현목수빈(顯穆綏嬪)의 딸이다.왕실의 지엄한 법도와 교육을 받고 자란 숙선옹주는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 효부로 알려졌다. 병약했던 옹주는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을 못할 때는 밤새워 촛불을 밝히고 아픈 몸을 돌보지 않고 일어나 앉아 명복을 비는 효부였다고 했다.

393) 초상이 나서 사흘이나 닷새 뒤에 처음으로 상복(喪服)을 입는 일.

十二日

本營褒貶等第修呈　以果川縣監鄭晩敎相避　不得考績事 別 啓

12일

본영(本營)의 포폄(褒貶)[394] 등제(等第)[395]를 수정(修呈)하고, 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는 상피(相避)[396]로 성적을 심사하지 못하는 일을 별도로 장계를 올렸다.

[褒貶等第]

○ 華寧殿兼衛將　金相宇恪勤拱衛上

○ 兼令李敏榮　肅敬以將上

○ 兼守門將　洪時榮　守鑰靡懈上　金遠浩　勤於供職上

○ 判官李敏榮　倉察欠斛案無滯牘上

○ 檢律卞學秀　頗解律例上

○ 從事官李敏榮　恬約成規贊佐何有上

○ 中軍金相宇　言須踏實猛必濟寬上

○ 別前司把摠　振威縣令吳謹常　催科心勞上

○ 別左司把摠　龍仁縣令李漑何適不宜上

[포폄등제(褒貶等第)]

화령전 겸위장(兼衛將) 김상우(金相宇)는 부지런히 공위(拱衛)하여 상등(上等)이고, 겸령(兼令) 이민영은 엄숙하고 공경하여 상등(上等)이고, 겸수문장(兼守門將) 홍시영(洪時榮)은 열쇠 지키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상등(上等)이고, 김원호(金遠浩)는 공직(供職)에 근면하여 상등(上等)입니다. 그리고 판관(判官) 이민영은 창고에 곡식을 잘 간수하여 장부정리에 지체됨이 없어 상등(上等)이고, 검률(檢律) 변학수(卞學秀)는 율례(律例)를 자못 이해하여 상등(上等)이고, 종사관(從事官) 이민영은 차분하게 법규를 지키어 찬좌(贊佐)에 잘못이 없어 상등(上等)이고, 중군(中軍) 김상우(金相宇)는 말한 것을 모름지기 실천하고 맹필제관(猛必濟寬)[397]하므로 상등(上等)입니다.

별전사파총(別前司把摠) 진위현령(振威縣令) 오근상(吳謹常)은 최과(催科)[398]로 애를 태우므로 상등(上等)이고, 별좌사파총(別左司把摠) 용인현령(龍仁縣令) 이굑(李漑)은 가는 곳 마다 잘 하므로 상등(上等)이

394) 전최(殿最). 관원들의 근무성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매기던 일.

395) 조선 시대 관료 행정의 하나로 관원의 근무 성적을 평함.

396) 일정 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속관계(統屬關係)에 해당하는 관사(官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게 하는 제도.

397) 관맹상제(寬猛相濟), 관이제맹(寬以濟猛), 맹이제관(猛以濟寬)이라고도 쓴다. 출전은 『좌전(左傳)』으로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서로 어울린다」는 뜻. 곧 치우침이 없이 원만하다는 뜻이다. 춘추(春秋)시대 정(鄭)나라에 공손교(公孫僑)라는 혁신적인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전제(田制)와 병부(兵賦)제도를 개혁,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어느날 공손교는 대신 자태숙(子太叔)에게 『강경한 정책으로 백성을 누르기는 쉽지만 관대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손교가 세상을 떠난 뒤 자태숙이 그의 뒤를 이었다. 자태숙은 처음에 관대한 정책을 폈지만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자 하는 수 없이 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노(魯)나라에 있던 공자는 이 소식을 듣고 『정책이 관대해지면 백성들이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경박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책이 강경해야 한다』며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했다.

398) 조세의 수납을 재촉하는 것.

고, 별중사파총(別中司把摠) 김노학(金魯學)은 공직(供職)[399]에 빠짐이 없으므로 상등(上等)이고, 별우사파총(別右司把摠) 안산군수(安山郡守) 김원순(金原淳)은 예(禮)에 밝아 실수가 없으므로 상등(上等)입니다. 협수겸파총(協守兼把摠) 시흥현령(始興縣令) 이명원(李鳴遠)은 작은 고을에서 형인(硎刃)하여 상등(上等)이고, 척후장(斥候將) 영화도(迎華道)[400] 찰방(察訪) 오치건(吳致健)은 폐역(弊驛)을 온전하게 하였으므로 상등(上等)이고, 독성겸파총(禿城兼把摠) 김상우(金相宇)는 관곡(官穀)의 방출이 공평하여 상등(上等)이고, 둔아병파총(屯牙兵把摠)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 박윤묵(朴允默)은 세납(稅納)에 허물이 없어 상등(上等)입니다.

○ 別中司把摠 金魯學 供職無闕上
○ 別右司把摠 安山郡守金原淳 曠禮非故上
○ 協守兼把摠 始興縣令李鳴遠 斗邑硎刃上
○ 斥候將 迎華道察訪 吳致健 弊驛幾完上
○ 禿城兼把摠 金相宇 分糶稱平上
○ 屯牙兵把摠 平薪鎭僉使朴允默 稅納無愆上

[별계(別啓)]

신(臣)의 영(營)에 속하는 별오사파총(別五司把摠)은 금년 춘·하등(春夏等)에 포폄(褒貶)하여 계본(啓本)한 가운데에 별후사파총(別後司把摠) 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도 마땅히 함께 마감(磨勘)[401]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천현감은 신과 더불어 구생(舅甥)[402]의 친분(親分)이 되는 바 군무(軍務)에서는 비록 상피(相避)가 없지만 다른 영의 예를 참고하여 마감하지 못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別啓]

臣營屬別五司把摠 今春夏等褒貶 啓本中別後司把摠果川縣監鄭晩敎 當爲一體磨勘 而該縣監 與臣爲舅甥之親是白乎所 軍務雖無相避是白乎 乃參考他營已例不得循例 磨勘是白乎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同日 進 實錄廳

같은 날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 하였다.

同日 雨澤封啓

399) 관청 또는 공공 기관의 직무(職務)를 맡아 봄.
400) 정조는 수원신도시 건설공사 후 양재도(良才道)를 없애고 그 대신 수원 북문 밖에 신설된 영화역(迎華驛)을 찰방역으로 정하여 이름도 영화도로 바꾸었다. 한성으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로 향하는 모든 교통이 이곳을 경유하게 되었으며, 추풍령을 경유하는 경상우도 방면의 교통 역시 영화역을 통하였다.
401) 일을 잘 살펴서 심사하여 끝을 맺음.
402) ①장인과 사위. ②외삼촌과 생질.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今月初十日酉時量 始雨或霆或灑 十一日午時 至所得爲二犁餘 而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三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이 달 10일 유시(酉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보슬 혹은 주룩주룩 내리더니 11일 오시(午時)에 두 보지락이 내렸다.' 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營下) 측우기의 수심(水深)이 3촌 3분이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三日
進 實錄廳

13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五日
望 祭班進參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15일 망제반(望祭班)[403]으로 참여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현륭원을 봉심하니 이상이 없음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李敏榮牒呈 則今月十五日 焚 香後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 到付顯隆園令李象祖牒呈內 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15일 분향한 뒤에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의 첩정 내용에 이 달 15일 원(園) 위와 전(殿) 안을 봉심하니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緣由)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六日
雨澤及農形 封啓

16일 우택(雨澤) 및 농사의 형편으로 봉계(封啓)하였다.

403) 망제(望祭)를 지내는 반렬(班列).

[장계(狀啓)]

이 달 11일 오시(午時)에 3촌 3분의 비가 내린 연유(緣由)를 치계(馳啓)하였거니와 계속하여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그 뒤에도 연이어 음에(陰曀)하더니 술시(戌時) 즈음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주룩 내리고 혹은 그치기도 하여 15일 묘시(卯時)에 또 한 호미자락 남짓 내렸습니다. 영하(營下) 측우기 수심(水深)이 6분이 되었건만 음운(陰雲)이 비미(霏微)[404]하여 활짝 개이지 않았으며 경내(境內)의 농사의 형편은 조도(早稻)는 부종(付種)하여 두 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만도(晩稻)는 건파(乾播)하여 두 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또한 모내기를 마치고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으며, 콩팥은 그루갈이하여 싹이 트고 있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今月十一日午時　至得雨三寸三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伊後連爲陰曀是如可 十三日戌時量 更爲始雨 或霏灑或止歇 十五日卯時 至所得又爲一鋤餘 營下測雨器水深　爲六分而陰雲霏微 尙未開霽是乎旀 境內農形段 早稻付種 再除草已畢　晩稻乾播　再除草方張 移秧初除草方張　豆太根耕立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8일

효성전(孝成殿)에 임금이 몸소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에 따라가고 주다례(晝茶禮)[405]때에도 따라갔다.

十八日

孝成殿 親行酌獻禮時 從陞 晝茶禮時 從陞

19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十九日

雨澤封啓

[장계(狀啓)]

이 달 15일 묘시(卯時)에 6분(分)의 비가 내린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연이어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그 뒤에도 흐렸다 개였다 하면서 혹은 단비가 내리기도 하고 혹은 소나

[狀啓]

今月十五日卯時　至得雨六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連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伊後載陰載陽 或霏或

404) 눈·비(雪雨)의 기운이 가득한 모양.

405) 임금이나 왕비의 인산(因山)뒤 3년 안에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드리는 제사로 그 일자는 일정하지 않았음.

灑 十八日未時 至所得又爲二犁 而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기가 내리더니 18일 미시(未時)에 또 두 보지락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營下) 측우기의 수심이 2촌 2분이 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二十日
賓對懸病

20일 빈대(賓對)[406]에 현병(懸病)하였다.

二十四日
中軍金相宇褒貶等第 以居中施行事 自兵曺草記

24일 중군(中軍) 김상우(金相宇)의 포폄등제(褒貶等第)를 거중(居中)[407]으로 시행한다는 사항을 병조(兵曺)로부터 초기(草記)[408]하였다.

[草記]
卽見水原留守徐有榘褒貶啓本 則本營中軍金相宇 以言須踏實 猛必濟寬 爲目 當置諸中考 而置之上考 殊無嚴明殿最之意 中軍金相宇以居中施行 該守臣 推考警責 何如 傳曰允

[초기(草記)]
지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서유구(徐有榘)의 포폄(褒貶) 계본(啓本)을 보니, '본영(本營) 중군(中軍) 김상우(金相宇)를 「언수답실(言須踏實), 맹필제관(猛必濟寬)」이라고 도목(都目)하여 마땅히 중고(中考)[409]에 두어야 할 것을 상고(上考)[410]에 두었으니 오히려 엄명(嚴明)한 전최(殿最)의 뜻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상우(金相宇)는 거중(居中)으로 시행하고 해당하는 수신(守臣)을 추고(推考) 경책(警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왕께서 허락하셨다.

二十六日
雨澤農形 封啓

26일 우택(雨澤), 농사의 형편으로 봉계(封啓)하였다.

406)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대신(議政大臣)과 대간(臺諫), 옥당(玉堂)의 관리들이 임금앞에 나아가 중요한 정무(政務)를 임금에게 아뢰는 일.
407) 벼슬아치가 도목정사(都目政事)에서 중등(中等)을 맞음.
408) 서울 각 관아에서 정무상(政務上)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
409) 관원의 근무 성적을 심사할 때 상(上)·중(中)·하(下)의 중에 해당함.
410) 관리의 근무 성적을 관리의 성적 고과에서 상등(上等)을 맞는 일.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영화도찰방(兼任迎華道察訪) 오치건(吳致健)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달 22일 묘시(卯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 주룩 내리고 혹은 활짝 개이더니 25일 묘시(卯時)에 두 호미자락이 내렸다. 영하(營下) 측우기의 수심(水深)이 1촌(寸) 1분(分)이 되었으며 경내(境內)에 농사의 형편은 올벼는 세벌 김을 매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두벌 김을 이미 다 매었다. 그리고 모를 심어 애벌 김 매기를 이미 마치고 콩팥을 그루갈이하는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 吳致健牒呈 則今月二十二日卯時量 始雨或霏灑或開霽 二十五日卯時 至所得爲二鋤 而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乎旀 境內農形段 早稻三除草方始 晩稻乾播再除草已畢 移秧初除草已畢 根耕豆太 鋤役方始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28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八日

進 實錄廳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7월

여 백

初 一日

孝成殿朔祭班 進參 晝茶禮時從陞 仍進 實錄廳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頃 封啓

초 1일

효성전(孝成殿) 삭제반(朔祭班)[411]으로 참여하고 주다례(晝茶禮) 때에 따라 올라갔다가 곧 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현륭원을 봉심하였는데 이상 없음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 兼令兼任判官迎華道察訪 吳致健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趙秉緯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 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겸임판관(兼令兼任判官) 영화도찰방(迎華道察訪) 오치건(吳致健)의 첩정을 보니, 이 달 1일 분향(焚香)한 뒤에 곧 바로 봉심하니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한 현륭원 참봉(參奉) 조병위(趙秉緯)의 첩정(牒呈) 내용에 이 달 1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 하는 일입니다.

初 二日

孝成殿 享祭班進參 朝進實錄廳

초 2일

효성전(孝成殿) 향제반(享祭班)[412]으로 참여하고 아침에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同日 本營秋操設行計料事封啓

같은 날 본영(本營)은 추조(秋操)[413]의 설행을 계획하는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營馬步軍兵 今秋習操 依定式擇日 設行計料爲白乎旀 本城及禿城山城城操 亦爲一體爲之爲白乎喩 幷 令廟堂稟 旨 分付爲白只爲

[장계(狀啓)]

신(臣)의 영(營)은 마보군병(馬步軍兵)을 금년 가을에 습조(習操)[414]할 것을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택일하고 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성(本城) 및 독성산성(禿城山城) 일체도 할 것이므로 아울러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를 내려 분부하도록 합니다.

411) 왕실(王室)에서 음력 초하룻날마다 조상에게 지내던 제사의 반렬.
412) 향제(享祭)를 지내는 반렬.
413) 가을철에 군사를 훈련시킴.
414) 말 타는 연습과 군사들의 조련(操鍊).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초 3일 같은 날에 중군(中軍)이 부임(赴任)한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신(臣)의 영(營)에 '중군(中軍) 박시회(朴蓍會)는 본(本) 중군직(中軍職)을 제수(除授) 받고 이 달 초이튿날에 조정(朝廷)을 떠나서 부임한다.' 는 첩정(牒呈)이 있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초 7일 농사의 형편을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영화도찰방(兼任迎華道察訪) 오치건(吳致健) 첩정(牒呈)을 보니, '경내(境內) 농사의 형편은 올벼는 이삭이 피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세벌 김을 매기 시작하였다. 또 이앙(移秧)하여 두벌 김을 매기 시작하고 그루갈이하는 콩팥의 서역(鋤役)[415]이 한창이다.' 라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11일 효화전(孝和殿) 가을 전알시(展謁時)에 따라 올라갔다가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12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415) 호미로써 김을 매는 일.

初 三日

進 實錄廳

同日 中軍赴任事 封啓

[狀啓]

臣營中軍朴蓍會 去月二十五日 政本職除授 今月初二日辭 朝 當日赴任是如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初 七日

農形封啓

[狀啓]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 吳致健牒呈 則境內農形早稻發穗 晩稻乾播三除草方始 移秧再除草方始 根耕豆太鋤役方張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十一日

孝和殿 秋 展謁時 從陞 仍進 實錄廳

十二日

雨澤封啓

[狀啓]
卽接本府判官兼任迎華道察訪吳致健牒呈 則今月初十日酉時量 始雨或霏或灑 十一日寅時至 所得僅爲浥塵而營下測雨器水深 爲四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영화도찰방(兼任迎華道察訪) 오치건(吳致健)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달 10일 유시(酉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 보슬 혹은 주룩 주룩 내렸으나 11일 인시(寅時)까지 겨우 티끌만 적셨을 뿐 이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하(營下)에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4분(分)이 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濟州貢馬中 十匹執留事 封啓

같은 날 제주공마(濟州貢馬) 가운데에 10필(匹)을 잡아 둔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營別驍士所受馬 限滿致斃者 依司僕寺回 啓 定式今來濟州貢馬中 執留十匹是白遣 同馬匹數爻 及禾毛色成冊 修送于該寺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영(臣營)의 별효사(別驍士)[416]가 받은 말로써 죽은 숫자를 사복시(司僕寺) 회계(回啓)[417] 정식(定式)에 의하여 지금에 온 제주공마(濟州貢馬) 가운데에서 10필을 집류(執留)[418]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필(馬匹)의 수효(數爻) 및 색깔을 책으로 만들어 해당하는 관청에 보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五日

望 祭班進參 晝茶禮時從陞宙合樓 奉審進參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頃事 封啓

15일

망제반(望祭班)으로 참여하고 주다례(晝茶禮) 때에 따라 올라가고 주합루(宙合樓)[419] 봉심에 참여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현륭원을 봉심하고 이상 없음을 봉계(封啓)하였다.

---

416) 조선 정조 17년(1793). 총융청(摠戎廳)의 외영(外營)인 남양·파주·장안에 둔 부대. 각각 2초씩 모두 6초이며, 별효사 별장(別將) 1인씩을 둠.
417)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함.
418) 공금을 사사로이 쓴 사람의 재산을 압류함.
419) 주합루는 정조가 세운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이었던 규장각이 있던 건물이다. 주합루는 일반적으로 비원이라 알려진 창덕궁의 후원에 있다. 비원이란 명칭은 일본인이 만들 것이고 본래는 후원이라 불리었다.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위장(兼衛將) 박시회(朴蓍會)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15일에 분향(焚香) 한 뒤 곧 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달한 현륭원 참봉(參奉) 조병위(趙秉緯) 첩정(牒呈)내용에 이 달 15일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 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衛將朴蓍會牒呈 則今月十五日焚 香後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顯隆園參奉趙秉緯牒呈內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7일 농사의 형편을 봉계(封啓)하였다.

十七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경내(境內)의 농사의 형편은 올벼는 사이사이에 누른 빛 띠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세벌 김 매기를 이미 마쳤다. 그리고 이앙(移秧)은 두벌 김 매기를 이미 마쳤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호미질을 이미 마쳤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境內農形 早稻間間尙黃晩稻乾播三除草已畢 移秧再除草已畢 根耕豆太鋤役已畢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8일 대전(大殿)의 탄신일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참여하였다.

十八日

大殿誕日 問 安班進參

20일 빈대(賓對)에 현병(懸病) 하였다.

二十日

賓對懸病

21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一日

進 實錄廳

二十二日
勸 講入 侍後 仍進 實錄廳

22일 권강(勸講)[420]으로 입시(入侍)한 뒤에 곧 바로 실록청에 나아갔다.

二十五日
進 實錄廳

25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六日
進 實錄廳

26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七日
勸 講入 侍

27일 권강(勸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

同日 農形封啓

같은 날 농사의 형편을 봉계(封啓) 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早稻間間刈取晩稻間間發穗 移秧胚胎 根耕豆太起花 而東風跨朔 仍又旱曝 早移之有水根處 雖未乾涸是乎乃 原野高燥之地 則田畓各穀 間多萎枯是乎遣 至於水下沿海各面段俱是乾播奉天之地 而久旱暘曝 醎氣上透 根焦莖枯 難期食實是如爲白有臥乎所言念民事 誠爲悶然 際此一霈 方切顒祝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받으니, '경내(境內)의 농사의 형편이 올벼는 간간이 베어내고 늦벼는 이삭을 틔우며 이앙(移秧)은 배태(胚胎)하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풍(東風)이 과삭(跨朔)하고 곧바로 가뭄과 폭염때문에 가뭄에 심어 수근(水根)이 있는 곳은 물이 마르지 않거니와 원야(原野)에 높고 건조한 땅에 전답(田畓)은 갖가지 곡식이 시들어 죽은 것이 많다. 그리고 물 아래 연해(沿海) 각 면도 모두가 건파(乾播)한 봉천(奉天)[421]의 땅으로 오랜 가뭄과 폭염 때문에 짠기운이 솟아오른다. 따라서 나무뿌리는 타고 줄기는 메말라서 열매를 거두어 꺽기가 어렵다.'고 하므로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진실로 민망합니다. 이 즈음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420) 제왕(帝王) 곁에서 학문을 강의하는 사람.
421) 천둥지기. 물의 근원이 없고, 물을 닿게 할 시설이 없어서 비가 와야만 모를 심게 된 논.

같은 날 환향(還餉), 분류(分留)[422]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還餉分留事 封啓

[계본(啓本)]

본부(本府)에 환향 각곡(各穀)과 아직 옮겨 획급(劃給)[423]하지 못한 남한(南漢) 향조(餉租)를 분류(分留)한 것을 성책(成冊)하여 어람(御覽)하실 문건과 아울러 비변사(備邊司)에 올려 보내는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啓本]

本府還餉各穀 及已未移劃南漢餉租 分留成冊 御覽件 幷以修正三件 上送于備邊司 爲白乎旀緣由 馳啓爲白臥乎事

29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九日 雨澤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28일 신시(申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 보슬 혹은 주룩 주룩 내리더니 같은 날 유시(酉時)에 겨우 티끌을 적셨다.' 고 합니다. 영하(營下)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5분이 되므로 가문 나머지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어 그나마 색사(穡事)[424]에 민망함을 더하지 않은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今月二十八日申時量 始雨或霏或灑 同日酉時 至所得僅爲浥塵 而營下測雨器水深 爲五分是如爲白有臥乎所 旱餘甘澍灑潤 無幾言念穡事 轉益悶然緣由 馳啓爲白臥乎事

422) 나누어 준 곡식과 창고에 남겨두는 곡식.
423) 정해진 수량대로 다 주지 않고 갈라서 다른 사람이나 관아에 나누어 줌.
424) 농사를 지어 수확 하는 일.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8월

여 백

初 一日

辰刻離發 中火于果川 申刻抵營 封啓

초 1일

진각(辰刻)에 출발하여 과천(果川)에서 점심을 먹고 신각(申刻)에 영(營)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緣由 馳啓爲白臥乎事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장계(狀啓)]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사항이 있어서 상경(上京)하였다가 당일에 영(營)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현륭원을 봉심하니 무탈(無頉)한 사항을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李敏榮牒呈 則今月初一日焚 香後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顯隆園令李象祖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이민영의 첩정을 보니, 이 달 초하룻날 분향(焚香) 한 뒤에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달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의 첩정(牒呈) 내용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과 전내(殿內)를 봉심하니 무탈(無頉)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二日

題本府殺獄查案

本府朴乭伊 與龍仁民高驗尙 同行至半亭川 爲高驗尙踢擠溺死

초 2일

본부(本府) 살인사건 사안(査案)의 제사(題辭)[425]

본부에 사는 박돌이(朴乭伊)가 용인에 사는 고험상(高驗尙)과 동행(同行)하다가 반정천(半亭川)에 이르러 고험상이 밀쳐 넘어짐으로 익사(溺死)하였다.

425) 조선 시대에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진정서(陳情書)의 좌편 하단 여백에 관에서 써주는 판결문 또는 처결문.

[제(題)]

사안(査案)을 봉상(捧上)하였거니와 취함으로써 취한 이를 밀치고, 취함으로써 취한 이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은 비록 평지에 있어도 쉽게 살상(殺傷)되는 것이다. 하물며 강물이 불어난 급류(急流)의 가운데서 어찌 사람을 밀치고 미끄러지게 하는 처지겠는가. 그 정황을 살펴보면 비록 죽이려는 마음으로써 죽이는 일을 실행하였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흔적을 따져보면 꼭 죽을 곳에 몰아가서 집어넣은 뒤에 그만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옥(成獄)이 되지 않으므로 법을 어찌 시행 할 것인가. 이른 바 피고(被告)는 곧 남의 발고(發告)로 이루어져서 정적(情跡)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題]

查案捧上是在果　以醉擠醉以醉踢醉　雖在平地良置易致殺傷　是去等　況旀漲水急湍之中　是豈擠人踢人之地乎　原其情　則雖不謂以殺心行殺事是乃　執其跡　則驅而納諸必死而後已　此不成獄　法安所施　凡所謂被告者　卽指被人發告　情跡　俱疑之類耳

한편으로는 떠다밀고 한편으로는 미끄러졌다고 저들이 이미 자복(自服)하였건만 지금에 이 피고의 눈은 크게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고험상을 우선 범인으로 짐작하여 낱낱이 고찰하고 엄중한 법으로 한 차례 문초하여 진술을 받았으나 시체는 아직 실제 원인을 검사하지 못했다. 비록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등 위에 누런 흔적은 손으로 떠다민 증거이며, 왼쪽 갈비에 붉으스름한 빛은 발이 미끄러진 흔적이다.

一擠一踢　渠旣自服是隱　則今此被告之目　太不襯當　同高驗尙　以元犯施行爲先　箇箇考察嚴刑　一次取招爲旀　屍體旣不檢驗實因　雖難的定　是乃　背上黃痕之爲手擠之驗　左脇紅暈之爲足踢之痕

양척(兩隻)[426]의 공초(供招)[427]가 이와 같이 부계(符契)[428]할 뿐만 아니라 비록 밀쳐서 미끄러진 확실한 흔적은 없으나 밀어서 빠져 죽었다면 죽음에 이른 원인이 밀어서 물에 빠진 것이다. 어찌 또 다시 의현(疑眩)의 단서가 있는가. 실제 원인은 밀어서 빠져 죽었다는 것을 이정(厘正)[429]하여 기록에 달아야 할 것이다.

兩隻之供　若合符契矣不喩　縱無擠踢之痕的是　推溺而死　則致死根因之爲被推溺水　豈更有疑眩之端　實因段被溺致死　厘正懸錄爲旀

426) 소송 당사자인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를 아울러 일컫는 말.
427)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
428) 나무조각이나 두꺼운 종이조각에 글자를 새기거나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에게 주고 다른 조각은 자기가 보관하여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는 물건.

行而作伴 閔完實也 醉而共酬 閔完實也 水中執髻 渠雖發明 用錢私和 豈非贓案 同閔完實 以干犯懸錄嚴刑一次取招 牒報爲旀 夫死之謂何而受人慫恿 貪賄忘讎 彼雖無識女人 那免鬻屍之律 而屍親也 決杖三十度放送 高太尙之挽還發告 亦不可無罪 決杖三十度 一體懲勵放送爲旀

길 가면서 동무가 된 민완실(閔完實)이요, 술 마시면서 함께 취한 민완실이다. 수중(水中)에서 상투를 잡았다고 그가 비록 변명하지만 돈으로써 사화(私和)[430]하였으니 어찌 장안(贓案)[431]이 아닌가. 따라서 이 민완실을 관련범인으로 문서에 기록하고 엄중한 법으로 문초하여 진술을 받아낼 것이다. 저 죽음이 어떻게 하여 남의 꾀임을 받고 뇌물을 탐하여 원수를 잊은 것인가. 저가 비록 무식한 여인이라도 어찌 시신을 파는 법률을 면할 수 있으며 시친(屍親)[432]이라고 하겠는가, 장형(杖刑)을 집행하여 30도(度)로 놓아 보내고, 고태상(高太尙)을 끌어들여 고발 한 것도 죄가 없지 않으니 결장 30도(度)로 모두 징려(懲勵)하여 놓아 보낼 것이다.

閔載天之瞞人告官 設計巧慝 當者雖已在逃而指使者完實也 以此添問目究覈爲旀 餘外諸囚 今無更問之端 當此農節 不可滯囚 到題卽時 一併放送爲乎矣 判官今旣還營 兼官仍定會査官 爲去乎 約日會坐擧行爲旀 文案中 多有訛誤之字 亦不無違越格例處 擧行刑吏 附過向事

민재천(閔載天)이 사람을 속여 관아에 고하고 계획을 세워 교묘하게 숨기어 당자(當者)가 도망가 있으나 지시하여 부린 자는 완실(完實)이라. 이 점을 가지고 죄목을 더 묻고 핵심을 캐낼 것이며 그 나머지 모든 죄수들은 지금에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면 이 농절(農節)을 당하여 마냥 가둬 둘 수 없으니 제사(題辭)가 도착하는 즉시 일제히 놓아 보낸 것이다. 판관(判官)이 이미 영(營)에 돌아왔으니 겸관(兼官)이 곧 바로 사관(査官)[433]을 정회(定會)하므로 약속한 날짜에 회좌(會坐)하여 거행 할 것이다. 문안(文案) 가운데에 잘못된 글자가 많고 격례(格例)에 어긋나는 곳이 있으니 거행하는 형리(刑吏)는 과오를 적어 둘 일이다.

初 四日

出往安寧章州等面 看察農形

초 4일

안녕(安寧)·장주(章州) 등 면(面)에 나가서 농사의 형편을 보고 살폈다.

429) 정리(整理)하여 바로잡아 고침.
430)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사(訟事)의 당사자끼리 화해함.
431) 부정한 뇌물을 받은 범한 관리의 이름을 기록해놓은 장부.
432) 인명과 관계된 사건에 기록된 죽은 사람의 친족.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친척은 이를 즉시 관아에 알려야 함.
433) 검사하는 일을 맡은 관원.

초 5일 화령전(華寧殿)에 당번(當番)으로 봉심하였다.

初 五日
華寧殿日次奉審

초 7일 농사의 형편을 봉계(封啓)하였다.

初 七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경내(境內) 농사의 형편은 올벼는 이미 다 베어내었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였다. 그리고 이앙(移秧)은 수원(水源)이 있는 곳은 간혹 이삭이 피는데 바람과 가뭄에 시달이어 혹은 백삽(白澁)[434]으로 시들어 죽거나 함축(含縮)되어 피지 않는다. 그리고 그루갈이한 콩팥도 꼬투리는 맺었지만 알이 매우 적다.'고 하는 바 이것은 동풍(東風)에 병들어서 끝내는 가을 가뭄에 손상한 것이며 절후(節候)는 점점 늦어가고 열매는 몇개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닷가 각 면(面)에 작년에 해일(海溢)이 일어난 곳은 짠기운이 치솟고 그루갈이가 모두 시들어 색사(穡事)를 생각하니 민망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早稻已盡刈取晩稻乾播 移秧有水根處 間或發穗 而惱風惱旱 或白澁萎枯 或含縮不發 根耕豆太間或結莢 而顆粒尠少 是如爲白有臥乎所 始痒於東風終損於秋旱 節候漸晩 實穎無幾 至於濱海各面昨年海溢處段 鹹氣上透根莖俱萎言念穡事 極爲悶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초 10일 화령전(華寧殿) 당번(當番)으로 봉심하였다.

初 十日
華寧殿日次 奉審

13일 양남(兩南)[435]지방의 모곡(耗穀)을 작전(作錢)[436]·차인(差人)[437]하는 절목(節目)을 성급(成給)한다.

十三日
成給兩南耗 作錢差人節目

434) 식물의 잎이나 어린 열매 같은 데에서 흰 반점 같은 것이 생긴.
435)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일컬음.
436) 조선 시대 현물로 내던 세금을 돈으로 환산하여 내는 것.
437) 각 관아에 소속되어 잡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차출함.

[節目]
爲惕念遵行事　本營之凋弊已甚　殆至莫可收拾之境者苟求其由　蔽一言曰各道穀作錢推納之　每每愆期故耳　盖自此穀設施之初　每年委送 差人作錢以來 而付之將吏廳　自各其廳　擇送差人當年所推於各道者　翌年六月內 準數納上于本營 行之多年 毋敢違越是加尼

挽近以來 京外浮浪之類 罔念公貨之莫重 闖生肥己之奸計 圖得差人名色 或看作己物 全數乾沒 或牟利興販 遷就不納 或假借他名 百計圖囑 或受出關文 轉相賣買 甚至往往有逃躲不現 指徵無處者 紀綱掃如且置 勿論此錢一年捧上之數 卽本營 一年支放之需是去乙 還錢則徒擁虛簿 支放則攢那公庫 一年二年 無復紀極 畢竟各庫遺在 漸次蕩盡 而年例支放 策應無術 則其勢自然侵支於帑庫封椿錢 見今封椿 十空八九然 則差人輩所爲 不但乾沒 尋常公貨而已

[절목(節目)]

두려운 마음으로 준행(遵行)할 일이다. 본영(本營)의 조폐(凋弊)[438]가 이미 심하여 자못 수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진실로 그 연유를 찾자면 폐일언(弊一言)하고 말 하노니 각 도(道)에 곡식을 작전(作錢) 추납(推納)한 것이 언제나 기간을 어겼던 것뿐이다. 대체로 이 곡식을 설시(設施)한 처음으로부터 해마다 위송(委送)하여 차인(差人) 작전(作錢) 이래로 장리청(將吏廳)에 부탁하여 각각 그 청으로부터 차인을 가려 보냈다. 그래서 당년에 각 도에 추납한 것은 그 다음 해 6월 안에 수량에 준하여 본영(本營)에 바쳐온 지 여러 해 동안 감히 어김이 없었다.

근래에는 서울 밖에 부랑(浮浪)하는 무리들이 공화(公貨)[439]가 막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간계(奸計)를 왈칵 내어 차인(差人)의 명색(名色)[440]얻기를 도모한다. 혹은 자기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전체 수량을 건몰(乾沒)[441]하고, 혹은 모리(牟利) 흥판(興販)하면서 시일을 미루어가며 납부하지 아니하고, 혹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백계(百計)를 도모하여 촉탁하거나, 혹은 관문(關文)을 받아 내여 서로가 사고팔기도 한다. 심지어는 가끔씩 도망쳐 피신하여 나타나지 않거나, 지정하여 징수할 곳이 없으니 기강(紀綱)이 쓸어버린 듯 없는 것이다.

이 작전(作錢)은 논할 것 없거니와 1년 봉상(捧上)의 수량은 본영(本營)에서 1년 지방(支放)의 수요(需要)이다. 환전(還錢)은 한갓 쓸모없는 장부만 남기고 지방(支放)은 국고(國庫)를 거두어 숨기어 1~2년에 끝이 없고 필경에는 남은 것이 점차로 탕진되었다. 따라서 년례(年例)로 지방(支放)하는 계책의 방법이 없고, 그

438) 시들어 없어짐. 쇠약하여 해짐.
439) 공공 단체나 관청의 돈.
440) 어떠한 부류(部類)에 쓸어 넣고 부르는 이름.
441) ① 물을 말려 없어듯이 관(官)에서 백성의 재물을 마구 몰수함. ② 법에 어긋나는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함.

형편은 저절로 당고(帑庫)와 봉장전(封椿錢)에 침지(侵支)되어 지금에 봉장(封椿)[442]에 십중팔구가 구멍이 났으니 이것은 차인배(差人輩)들이 한 것으로 평범한 공화(公貨)를 건몰(乾沒) 할 뿐만 아니다.

그 사실은 어용고(御用庫) 전화(錢貨)를 훔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고(御庫)를 훔친 죄목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에 지금의 큰일을 고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장차 영(營)이 없고서야 그만 둘 것이다. 이른바 '경장(更張)'은 다른 계책이 없는 것이다. 오직 옛 법규를 거듭 밝히라고 이를 뿐이다. 금년에 시작하여 각 도에 작전(作錢)의 한 조항을 장리청(將吏廳)에 영원히 붙이고 근면성실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집사 중에 두 사람과, 서리 중에 두 사람을 해청(該廳)으로부터 공의(公議) 택차(擇差)[443]한다. 따라서 모든 교리(校吏)들의 이름을 보증을 세운 뒤에 관문(關文)을 각 도에 나누어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세전(歲前)에 추출하게 하라. 그리고 다음 해 6월내에 호방소(戶房所)에 준납(準納)하고 7월 1일에 호소(戶所) 척문(尺文)[444]의 고환(考還)[445]으로 해야 한다.

간혹 부실한 사람을 차송(差送)[446]하여 기한을 넘기고 건납(愆納)[447]하는 폐단이 있거나, 혹은 약간 색책(塞責)[448]하여 흠축(欠縮)[449]함에 어려움이 없거든 그 해당자는 우선 제태(除汰)[450]하고 영원히 복속(復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일한 사람은 형벌을 엄하게 하여 귀양을 보내고 아직 봉나

其實 則與偸竊 御用庫錢貨無異 御庫偸竊 厥罪云何 如不及今大事更張 則將至無營而後已 而所謂更張 亦無他策 唯有曰申明舊規而已 今年爲始 各道作錢一款永付將吏廳 執事中二人 書吏中二人 以勤實可堪者 自該廳 公議擇差 諸校諸吏列名懸保後 授以關文 分送各道 使之歲前推出 翌年六月內 準納戶房所 七月初一日 以戶所尺文 考還爲乎矣

或以不實者差送 以致過限愆納之弊是去乃 或略干塞責 無難欠縮是去等 當者爲先除汰 永勿復屬 竝與同事之人 嚴刑遠配 未捧之數一併徵捧於該廳 一以杜浮

442) 창고의 하나. 홍수나 기근, 우박,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전란이나 전염병 등의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재용(財用)을 저장하던 곳.
443) 쓸만한 인재를 골라서 임명함.
444) 길이가 한 자 가량 되는 짧은 글.
445) 조선 왕조 때 세초(歲抄)에 군사(軍士)의 결원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6년마다 있는 장부 작성시에, 그 사실을 고사(考査)하여 결원을 빼고 채운 사람을 환원(還元)시키는 일.
446) 관리를 뽑아 파견함.
447) 조세를 기한 안에 바치지 못함.
448)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겉으로만 둘러대어 꾸미는 일.
449)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이 생김.
450) 하급 벼슬아치나 구실아치의 구실을 들어줌.

浪輩圖差乾沒之弊 一以爲營樣復舊之階爲旀 若有已試可堪不違期限之人 則不必以疊送爲拘 雖逐年定送是良置 亦無不可是遣 苟其家勢貧寒宿債許多之人 則雖十年不差是良置 渠當無言是如乎

하지 않은 수량을 해청(該廳)에서 징봉(徵捧)하여 그 하나는 부랑배(浮浪輩)들이 파견되기를 도모하여 건몰(乾沒)의 폐단을 막고, 또 하나는 영(營)의 모양새가 예전과 같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에 이 같은 일을 감당하고 기한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첩송(疊送)하여 구금(拘禁)하지 않고 해마다 정송(定送)하여도 옳은 것이다. 진실로 가세(家勢)가 빈한(貧寒)하여 묵은 빚이 많은 사람은 비록 10년 토록 파견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마땅히 말이 없을 것이다.

以此意 成出節目 繕寫二件 分置將吏廳 常目凜遵 毋或撓改爲旀 如或有自營府 分付特差之事是去等 諸校諸吏 持此節目 齊進稟防宜當向事

이 뜻으로 절목(節目)을 성출(成出)하고 두 건을 선사(繕寫)[451]하여 장리청(將吏廳)에 나누어 두고 언제나 보고 늠름하게 지키면서 혹시라도 고쳐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영부(營府)로부터 특별히 파견의 사항을 분부하거든 모든 교리(校吏)들은 이 절목을 가지고 가서 품의하여 대비함이 마땅하다.

十四日

以 顯隆園秋夕 祭享獻官陪 香祝詣 園所

14일 현륭원 추석제향(秋夕祭享)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나아갔다.

十五日

祭享設行後 仍爲封啓

15일 제향(祭享)을 설행(設行)한 뒤에 곧바로 봉계(封啓)하였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十五日 行 顯隆園 秋夕 祭享 臣以獻官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계본(啓本)]

삼가 제향사(祭享事)를 장계(狀啓) 합니다. 이 달 15일에 현륭원 추석제향에 신이 헌관(獻官)으로 참여하여 설행한 뒤에 원(園) 위를 봉심하니 잡초와 잡목(雜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의 산내(山內)에도 나무를 범작(犯斫)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의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452]하고 그 연유

451) 부족한 점을 고치고 보충하여 정서함.

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능원소(陵園所) 추대봉심(秋大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陵 園所 秋大奉審後 封啓

[계본(啓本)[453]]

삼가 봉심 한 일을 장계(狀啓)합니다. 신은 이 달 15일 건릉(健陵)[454] 위,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이하 모든 곳과 현릉원(顯陵園) 위, 정자각, 비각 이하 모든 곳을 봉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릉 제향시(祭享時)에 사용하는 잡물(雜物) 가운데 파손된 것을 뒤에 개록(開錄)하오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곧바로 수리하게 해야 할 것이며,

현륭원은 이상이 없고 수목(樹木)은 화소(火巢)[455]가 멀고 광활하여 일일이 적간(摘奸)하지 못했지만 낱낱이 순심(巡審)하여 범작(犯斫)의 폐단이 없도록 각별히 능·원관처(陵園官處)에 신칙(申飭)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년제 저수지 안을 일체 살펴 검사하니 모두 이상이 없고, 앵봉의 부석소(浮石所)에 편비(偏裨)를 보내어 적간하니 봉표내(封標內)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그 연유를 아울러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啓本]

謹 啓爲奉審事 臣於本月十五日 健陵 陵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顯陵園 園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奉審後 健陵 祭享時 所用雜物 破傷者 開錄于後爲白去乎 令該曹卽速修改爲白乎旀 顯隆園 無頃處是白遣 樹木段 火巢闊遠 不能一一摘奸而這這巡審 俾無犯斫之弊事 另加申飭於 陵 園官處 爲白乎旀 萬年堤堌內 一體看審則俱爲無堰是白遣 鴈峰浮石所 發遣褊裨摘奸 則封標內亦無頃處是白乎等以 緣由幷以馳 啓 爲白臥乎事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추대봉심(秋大奉審) 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華寧殿秋大奉審後 封啓

---

452)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의 말미(末尾)에 의견 또는 용건을 열기(列記)하는 것.

453) 임금에게 국사(國事)에 관하여 아뢰는 문서.

454) 정조와 효의왕후의 능으로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6호로 지정되었다. 사도세자의 융릉(陵陵)과 함께 동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생부(生父) 사도세자의 현륭원(顯隆園) 동쪽 구릉에 있던 것을 서쪽 구릉으로 이장할 때 효의왕후를 부장하였다. 그 구조는 동릉이실(同陵異室)로 병석(屛石) 없이 난간만 둘렀으며, 그 밖의 것은 융릉의 예에 따랐으므로 혼유석(魂遊石)은 1좌만 놓았고, 장명등(長明燈)을 세웠다.

455)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의 해자(垓子) 밖의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린 곳.

[狀啓]
華寧殿秋孟朔 大奉審元定是白在 去月十五日 當爲擧行 而臣在京未還 不得擧行是白遣 今月十五日 焚 香後 與兼令臣李敏榮 兼衛將臣朴耆會 眼同奉審是白乎則 殿內諸處 俱爲無頃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화령전(華寧殿) 추맹삭(秋孟朔)[456] 대봉심(大奉審)은 지난 달 15일에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서울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하여 거행하지 못하고 이 달 15일 분향한 뒤에 겸령(兼令) 이민영·겸위장(兼衛將) 박시회(朴耆會)와 더불어 입회하여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음으로 그 연유(緣由)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七日
農形封啓

17일 농사의 형편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則境內農形 晩稻乾播 移秧已盡發穗 根耕豆太 已盡結顆 而入秋以後 一直暵乾 田畓各穀之受損者 竟無蘇醒之望 是如爲白有臥乎所 東風才歇 晩暵繼酷 田畓各穀 白澁萎枯者 居多實顆尠少 言念民事 轉益悶然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경내(境內)에 농사의 형편은 만도(晩稻)는 건파(乾播)하고 이앙(移秧)은 모두 이삭이 피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모두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가을이 든 뒤로 한결같이 가뭄으로 건조하여 전답(田畓)에 손상을 입은 각종 곡식은 끝내 소생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바 동풍(東風)은 겨우 그쳤으나 때늦은 가을햇볕이 계속되어 전답(田畓)에 백삽(白澁)으로 시들고 마른 각종 곡식은 대다수 열매 맺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민망함이 더하는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八日
自營離發 中火于始興 夕抵筆谷 封啓

18일 영(營)으로부터 출발하여 시흥(始興)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필곡(筆谷)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456) 음력 7월을 일컬음.

[장계(狀啓)]

신(臣)이 의정부에 품의할 사항이 있어서 당일에 발행(發行)하여 상경(上京)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上京緣由 馳啓爲白臥乎

22일

정족산성(鼎足山城) 사각(史閣)[457]에 실록(實錄)을 봉래(奉來)[458] 할 때 협연군(挾輦軍)[459] 20명을 조발(調發)[460]하는 일로 교지(敎旨)가 있는 표신(標信)[461]을 공경히 받은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二日

鼎足山城史閣 實錄奉來時挾輦軍二十名 調發事 有旨 標信祗受後 封啓

[장계(狀啓)]

이 달 22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서대순(徐戴淳)이 성첩(成帖)한 내용에, '지금 강화부(江華府) 정족산성 사각(史閣)에 실록(實錄)을 봉래(奉來) 할 때에 협연군 20명 강화부 군병(軍兵)이 갑곶진을 건너면 협연군 20명 경기군병(京畿軍兵)은 기한 하루 전에 각각 그 경계에서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교대하고 성밖에 이르러 호송하여 옮긴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뒤쳐진 뒤에 전례에 따라 표신(標信)을 주는 것은 거행하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전관(宣傳官)이 표신병부(標信兵符)를 가지고 내려가거든 경(卿)은 공경히 받든 뒤에 이에 따라 거행하라는 유지(有旨)[462] 한 통과 하나의 '천(天)' 자 표신발병부(標信發兵符) 좌일척(左一隻)을 당일

[狀啓]

本月二十二日 右副承旨徐戴淳 成帖有旨內 今此江華府鼎足山城 史閣 實錄奉來時挾輦軍二十名 江華府軍兵渡甲串津 挾輦軍二十名 京畿軍兵前期一日 各其境上待候 爲白有如可 次次替代 到城外解送 而各其境上落後時依例除標信擧行之意

宣傳官 持標信兵符下去 卿其祗受後 依此擧行事 有旨一度 與一天字 標信發兵符左一隻 當日巳時量 宣傳

457) 사고(史庫).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 나라의 사기(史記)와 그 밖의 중요한 서적을 갈무리하여 두던 창고.

458) 위패(位牌)나 귀중한 서책과 문서 등을 받들어 모셔옴.

459) 조선 시대 임금이 행차할 때 사용하던 수레를 좌우에서 호위하던 군사. 또는 중요한 물건을 실은 수레를 호위하는 군사.

460) 전쟁 혹은 요역(徭役)에 사람·마필(馬匹)·물품 등을 징발하는 것.

461) 궁중(宮中) 혹은 군영(軍營)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을 드나들 때 사용되던 출입증. 조선 시대에는 왕명 전달·긴급호출·야간통행 등 여러 가지 목적의 표신이 사용되었음.

462) 임금의 분부(分付)를 전하는 문서.

官鄭益東 賫來爲白有等以臣在京祗受合驗後 發兵符左一隻 宣傳官鄭益東處 還爲祗付上送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사시(巳時) 즈음에 선전관(宣傳官) 정익동(鄭益東)이 가지고 옴으로 신은 서울에서 공경히 받고 표신을 맞추어 본 뒤에 발병부(發兵符) 좌일척(左一隻)을 선전관 정익동에게 도리어 공경히 부쳐 올려 보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挾輦軍 待候境上事 因兵曺關 翻謄傳令于始興縣令

같은 날 협연군(挾輦軍)이 경계에서 기다리는 일을 병조(兵曺) 관자(關子)에 따라 시흥현령에게 다시 베껴서 전령(傳令)하였다.

[傳令]

爲知悉擧行事 節到付兵曺關內 節 啓下敎曺 啓目 今此江華府鼎足山城史閣 奉 安正宗大王實錄奉來時 挾輦軍二十名 前射隊二哨 後射隊一哨 江華府軍兵 渡甲串津 挾輦軍二十名 前後射隊二哨 京畿軍兵 前期一日 各其境上 待候爲白有如可 次次替代 而 晝停所 宿所 則前後射隊軍兵 相連扈衛爲白乎旀 到城外解送 而各其境上落後時 依例除 標信擧行之意 宣 傳官 持 標信兵符 下諭于京畿監司摠戎使 水原留守 江華留守處事 令政院稟旨擧行何如 道光十六年八月二十一日 同副承旨臣趙在慶次知 啓依允爲旀 前後射隊幷置之事 判下敎是置

[전령(傳令)]

모두 알아서 거행할 일입니다. 이번에 도달한 병조(兵曹) 관자(關子) 내용은, '계하한 병조의 계목(啓目)으로 이번 강화부 정족산성 사각(史閣)에 정종대왕실록(正宗大王實錄)을 봉안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협연군 20명과 전사대(前射隊) 2초(哨)[463], 후사대(後射隊) 1초(哨)는 강화부 군병(軍兵)이 갑곶진을 건너거든 협연군 20명과 전·후사대 2초와 경기군병(京畿軍兵)은 기한 하루 전에 각각 그 경계에서 기다렸다가 서로 번갈아 대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소(晝停所)와 숙소는 전·후사대군병(前後射隊軍兵)이 연이어 호위하면서 성 밖에 이르러 호송하여 옮기되 각각 경계에서 떨어진 뒤에 의례히 표신(標信)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전관이 표신(標信)·병부(兵符)를 가지고 경기감사총융사(京畿監司摠戎使)·수원유수(水原留守)·강화유수(江華留守)에게 하유(下諭)하여 처리하되 승정원으로 하여금 품지(稟旨) 거행함이 어떻겠습니까. 도광(道光) 16년(1836) 8월 21일 동부승지 조재경(趙在慶)이 차지(次知)하여 계문대로 윤허하였으며 전·후 발사대(發射隊)를 아울러 둔 일도 판하(判下)

463) 옛날 군대편제의 한 단위. 청대(淸代) 함풍제(咸豊帝) 이후 1초(哨)를 100명으로 하고, 3초를 1기(旗), 5초를 1영(營)으로 편제함.

한 것입니다. 교지 내의 말뜻을 받들어 시행하되 다만 협연군 20명은 각각 그 지경위에 기다렸다가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받들어 오는 일자는 관사(關辭) 중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틀림없이 이 달 27~28일 사이 일 것이다. 따라서 협연군 20명은 반드시 건장한 사람을 미리 알아서 각별히 가려 군장(軍裝)과 복색(服色)도 선명해야 할 것입니다. 받들어 오는 일자는 차차로 다음에 머무를 고을에 탐문한 뒤에 먼저 본현(本縣) 처음 닿는 곳에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도착하면 곧 바로 모시고 따라가서 숭례문(崇禮門) 밖 압송(押送)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본영(本營) 집사(執事) 한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사이에 영전(令箭)[464]을 가지고 내려가서 일괄 지휘하여 거행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敎旨內辭意 奉審施行爲有矣 只挾輦軍二十名 各其境上待候擧行 亦爲有臥乎所
奉來日字 雖不塡書於關辭中 而要在今月二十七八日間 是如乎 挾輦軍二十名 必以健壯者 預先知委 各別擇差 軍裝服色 亦爲務從鮮明 而奉來日字 次次探問于前站邑後 先爲等待于本縣初境是如可 到卽陪從 至崇禮門外解送之地爲乎矣 本營執事一人 明再明間 當持令箭下去 一從指揮擧行 宜當向事

23일

권강(勸講)으로 입시(入侍) 한 뒤에 곧 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三日

勸 講入 侍後 仍進 實錄廳

25일

서리가 내려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五日

霜降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24일 새벽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가뭄이 이미 혹독하였고 엄상(嚴霜)이 바로 내렸다고 하는 바 만이(晩移)·건파(乾播)한 곡식이 백삽(白澁)으로 시들고 마른 것이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먹을 희망이 없으니 백성의 일을 생각하여 더욱더 민연(悶然)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李敏榮牒呈 則今月二十四日曉 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 晩暵旣酷 嚴霜徑下 晩移乾播之白澁萎枯者 竟無蘇醒食實之望 言念民事 轉益悶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464) 군령(軍令)을 전달할 때 쓰이는 화살.

二十七日
進 實錄廳

27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八日
進 實錄廳

28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9월

여 백

初 一日
朔祭 親行時 從陞

초 1일 삭제(朔祭)[465]에 임금께서 친히 행하실 때에 따라 올라갔다.

初 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초 2일 화령전(華寧殿)·현륭원을 봉심하니 이상 없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李敏榮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象祖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是如爲白有等以 緣由 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이민영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초하루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도달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 첩정(牒呈) 내용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進實錄廳
同日 鼎足山城史閣 實錄奉來時 挾輦軍 以始興縣束伍軍 調發扈衛 至崇禮門外除 標信解送後 封啓

초 3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같은 날 정족산성 사각(史閣)에 실록을 받들어 올 때 협연군(挾輦軍)은 시흥현(始興縣) 속오군(束伍軍)[466]으로 선발하여 호위하다가 숭례문(崇禮門) 밖에 이르러 표신(標信)을 받고 압송(押送)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江華府鼎足山城史閣 實錄奉來時 依兵曺 啓下關 挾輦軍二十名 以臣營所屬始興縣束伍軍 調發待候于該

[장계(狀啓)]
강화부 정족산성 사각(史閣)에 실록을 받들어 올 때에 병조(兵曺)가 계하(啓下)한 관자(關子)에 의하여 협연군 20명은 신의 영(營) 소속 시흥현 속오군으로 선발하여 해현(該縣) 경계에서 기다렸다가 이 달 3일

465) 왕실(王室)에서 유력 초하룻날마다 조상에게 지내던 제사.
466) 조선 후기 핵심적인 지방군의 하나.

에 호위하여 숭례문(崇禮門) 밖 시지(信地)에 이르러 표신(標信)을 받고 호송하여 옮기었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縣境上是白如可 今月初三日 扈衛至崇禮門外信地 除標信解送 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초 4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四日
進 實錄廳

초 5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五日
進 實錄廳

초 6일 권강(勸講)으로 입시(入侍)한 뒤에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六日
勸 講入 侍後 仍進 實錄廳

초 7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七日
進 實錄廳

초 8일 권강(勸講)으로 입시(入侍)한 뒤에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八日
勸 講入 侍後 仍進 實錄廳

초 9일 주다례(晝茶禮)로 친행(親行)할 때에 따라 올라갔다. 같은 날 본부(本府)에 모곡(耗穀)은 획급(劃給)하지 못하고 대곡(代穀)은 예(例)에 따라 획하(劃下)하는 일을 비국(備局)에 보고하였다.

初 九日
晝茶禮 親行時從陞
同日 本府耗不足給 代穀依例劃下事 報備局

[報牒]
爲相考事　本府句管各道穀
今年耗不足條一千二百二十
五石四升七合五里　各庫蕩
債給代米六百石　幷以修成
冊 牒報爲去乎 參商敎是後
依例劃下　以爲及時需用之
地爲只爲

[보첩(報牒)]
상고(相考) 할 일입니다. 본부(本府)가 관장(管掌)하는 각 도(道)에 곡식은 금년에 부족한 모곡(耗穀) 1,225석 4승 7홉 5리와 각 창고 탕채급(蕩債給)[467] 대미(代米) 600석을 아울러 책자를 만들어 첩보(牒報)합니다. 참고하여 헤아리신 뒤에 전례에 의거 획하(劃下)하여 때 맞춰 쓸 수 있도록 하시를 바랍니다.

初 十日

本生 先考 恩謚 受 點在於
乙丑 而未幾屛處鄕外 尙遲
延侑 今得便近之地 將以卄
五日 祗受於華營任所 故委
送有來 陪奉 祠宇 是日入
洛 與監役出往慕華舘 晡時
陪還 權奉于筆谷舍廊

초 10일

본생(本生) 선친(先親)의 은시(恩謚)[468]를 수점(受點)[469]한 것이 을축년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향외(鄕外)에 은거(隱居)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연회(宴會)를 지연(遲延)하였다. 지금 가까운 곳에 있게 되어 다가오는 25일에 화영임소(華營任所)에서 공경히 받으려고 한다. 때문에 위송(委送)해 와서 사우(祠宇)에 배봉(陪奉)하기로 하고 이 날에 서울에 들어와서 감역(監役)과 더불어 모화관(慕華舘)에 나가서 새벽에 모시고 돌아와서 필곡(筆谷)의 사랑(舍廊)[470]에 권봉(權奉)[471]하였다.

十一日

以營樣之凋弊無餘　尙未奉
慈闈 而余每因事赴營 旋卽
歸侍矣 是日陪奉 祠宇 仍
奉慈闈 而從子婦 亦隨行矣
午抵果川中火　甥侄鄭晩敎
以該倅迎拜 祠宇 事非偶爾

11일

영(營)의 형편이 조폐(凋弊)하고 여유가 없어 아직 모친(母親)을 받들지 못하고, 언제나 일로 인하여 영(營)에 다다렀다가 곧바로 돌아가서 모셨다. 이 날에 사우(祠宇)에 배봉(陪奉)하고 곧 모친(母親)을 받드는데 종자부(從子婦)도 따라갔다. 낮에 과천(果川)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생질(甥侄) 정만교(鄭晩敎)가 해쉬(該倅)[472]로 사우(祠

467) 채무(債務)를 탕감하여 줌.
468) 임금이 내려준 시호(諡號).
469) 임금에게서 낙점(落點)을 받음.
470)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471) 정상적인 도리·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편에 따라 어떠한 대상을 모시고 받드는 일.

宇)에 영배(迎拜)하니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곧바로 출발하여 황혼녘에 영(營)에 이르러 봉계(封啓)하였다.

也 仍爲離發 迫曛抵營封啓

[장계(狀啓)]

신(臣)이 의정부에 품의할 사항이 있어서 상경(上京)하였다가 당일에 영(營)에 돌아왔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 緣由馳啓爲白臥乎事

15일

화령전(華寧殿)에 분향(焚香)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十五日
華寧殿焚 香奉審後 封啓

[장계(狀啓)]

신(臣)은 오늘 화령전(華寧殿)에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의 첩정(牒呈)을 보니 오늘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월식(月食)이 있어 구식(救食)[473]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象祖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月食救食後 封啓

[장계(狀啓)]

지난 번에 도달한 예조 관자에 따라 이 달 15일 을미(乙未) 야망(夜望)[474]에 월식(月食)이 있었습니다. 신은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과 더불어 구식(救食)한 뒤에 식체(食體)를 도형(圖形)으로 그리고 후록(後錄)하여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병신(丙申,1836) 9월 15일 을미 야망에 월식의 식

[狀啓]
前矣到付禮曺關據 本月十五日乙未夜望 月有食之 臣與本府判官李敏榮 眼同救食後 食體圖形後錄 馳 啓爲白臥乎事
[丙申九月十五日乙未夜望

472) 해당하는 그 관아(官衙)의 부관(副官).
473)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이 있을 때, 임금이 각사의 당상관과 낭관(郎官)을 거느리고 기도를 드리던 일.
474) 음력 15일 밤.

月食分 一分十二秒初虧 亥初一刻五分 初虧東北食甚亥正初刻一分 食甚正北復圓 亥正二刻十二分 復圓西北]

분(食分)[475] 1분(分) 12초(秒)에 초휴(初虧)[476]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시초(亥時初) 1각(刻) 5분(分)에 동북(東北)쪽으로 깊숙이 이지러지고 해시정초각(亥時正初刻) 1분(分)에 정북(正北)쪽이 깊숙이 이지러졌다가 다시 둥글게 되어 해시정이각(亥時正二刻) 12분(分)에 다시 서북(西北)쪽으로 둥글게 되었습니다.]

二十日

華寧殿日次 奉審
同日 閣臣金台正喜 以 華寧殿 誕辰祭享 奉審之行下來

20일

화령전(華寧殿) 당번(當番)으로 봉심하였다. 같은 날 각신(閣臣)[477] 김정희(金正喜)가 화령전(華寧殿) 탄신제향(誕辰祭享) 봉심의 행차로 내려왔다.

二十一日

陪 香祝詣齋室 是日奉 命閣臣 陵園所奉審後 入府夜話于齋室 翌日旋發

21일

향축(香祝)을 모시고 재실(齋室)에 나아가니 이 날에 봉명각신(奉命閣臣)이 능원소(陵園所)를 봉심한 뒤에 수원부(水原府)에 들어와서 재실(齋室)에서 밤중까지 얘기 나누다가 이튿날 곧바로 출발하였다.

二十二日

華寧殿 祭享設行後 封啓

22일

화령전(華寧殿) 제향(祭享)을 설행(設行)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謹 啓爲 祭享事 今月二十二日 行 華寧殿 誕辰祭享 臣以獻官進參設行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삼가 제향(祭享)의 일을 아룁니다. 이 달 22일에 화령전(華寧殿) 탄신제향(誕辰祭享)에 신이 헌관(獻官)으로 참여하고 설행한 뒤에 제관직(祭官職)과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

475)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 때, 태양과 달이 이그러지는 정도.
476) 일식·월식에 해나 달이 가리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임.
477) 조선 시대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의 관원.

24일 선시관(宣諡官)[478]이 내려왔다.

二十四日
宣諡官下來

25일 화령전(華寧殿) 당번(當番)으로 봉심하였다.

二十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같은 날 연시처소(延諡處所)[479] 행궁내(行宮內)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정리소(整理所)에서 행례(行禮)를 하였다. [정리소(整理所)는 유여댁(維與宅) 중문(中門) 밖에 있는지라.] 예(禮)를 마친 뒤에 돌아와 사우(祠宇)에 봉향(奉享)하고 유여댁(維與宅)에 모여 앉아서 차례로 선시관(宣諡官) 및 각 차비관(差備官)[480]에게 예단(禮緞)과 폐물(幣物)을 전했다.
〔선시관(宣諡官)은 조민식(趙民植)이고, 거함관(擧函官)은 영화찰방(迎華察訪) 오치건(吳致健), 경안찰방(慶安察訪) 탁□□(卓□□)이고, 찬자(贊者)는 본부판관(本府判官) 이민영(李敏榮)이고, 알자(謁者)는 시흥현령(始興縣令) 이명원(李鳴遠)이고, 도예차(都預差)는 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이다.〕

同日 延諡處所 行宮之內有所未妥 行禮于整理所 [在維與宅中門外] 禮畢後還奉 祠宇 會坐于維與宅次第傳禮幣于宣諡官 及各差備官 〔宣諡官趙民植 擧函官迎華察訪吳致健 慶安察訪卓 贊者本府判官李敏榮 謁者始興縣令李鳴遠 都預差果川縣監鄭晩敎〕

뒤에 사당(祠堂)에 가서 제주(題主)[481]를 고치니 이날이 곧 선고(先考) 수신(晬辰)[482]으로 슬퍼하고 사모함이 더욱더 간절하여 은전(殷奠)[483]으로 다례(茶禮)를 설행(設行)하였다.
〔감역(監役) 및 삼종제(三從弟) 유교(有喬)·유상(有翔)과 내종제(內從弟) 송지양(宋持養), 생질(甥侄) 정만교(鄭晩敎), 서족숙(庶族叔) 필수(珌修)가 아울러 참석하였다.〕

後詣 祠堂 改題 主 是日卽先考晬辰也 愴慕罙切 以殷奠行茶禮

〔監役 及三從弟有喬有翔內從弟宋持養 甥侄鄭晩敎 庶族叔珌修 幷參〕

---

478) 임금의 명(命)으로 시호(諡號)를 전달하는 관리.
479)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관직에 있던 자가 죽었을 경우 생전의 인품이나 학식, 충절(忠節) 등을 고려하여 시호(諡號)를 내리면 시호를 받는 본가(本家)에서 받아 드리는 일.
480) 조선 시대 특별한 임무를 맡아 보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던 관원.
481) 신주(神主)에 글자를 씀.
482) 편지 따위에서 남의 생일(生日)를 높여 일컫는 말.
483) 성대하게 제사의 찬품(饌品)을 올림.

二十七日

年分狀啓 封發

27일

연분(年分)[484]의 장계(狀啓)를 봉발(封發)하였다.

[狀啓]

本府穡事形止 備陳於前後狀 聞中 是白在昊 本府地形 西南則濱海而斥鹵居多 東北則依山而灌溉甚尠 一有旱潦 灾眚偏甚 雖値占豊之歲 尙多失稔之處 是白在如中 今年段 俶載之初春雨頻仍 注秧播種 雖不愆期 而乃於秧苗抽苗之際 雨澤稍闕 間或有霏微之澤 終未免惜乾之患 是白如可 始於五月旬間 幸得大霈 時則夏至已過 趨澤之急 晷刻是爭

故甘飭判官 罔夜董督 使之助糧借牛 毋論高低 次第移揷 大有之望 庶幾執契是白加尼 夫何一雨成霖 晴曝恒少 如干旱移者 昻藏不茁減却幾分 至若晩移 則被灾尤酷 難期蘇醒 而況自六月念後 三朔亢旱 東風連吹 已發穗者 顆粒全疎 白颯居半 未發穗者 貼地蕭索 仍而含縮 實穎無幾 在在皆然是白遣

[장계(狀啓)]

본부의 색사(穡事) 형편을 전후(前後) 장계(狀啓)에 낱낱이 진술하여 아뢰었습니다. 본부의 지형(地形)이 서남쪽은 바닷가로써 척박하여 소금기가 많고, 동북쪽은 산에 닿아 관개(灌溉)가 매우 적어 한차례 가뭄이 있으면 재해(災害)가 매우 심합니다. 비록 풍년을 예상하는 해일지라도 곡식이 잘 영글지 않은 해가 많았습니다. 금년은 숙재(俶載)[485]하는 초봄에 비가 자주 내리어 논에 물을 대어 파종(播種)에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벼의 싹이 자랄 무렵에 우택(雨澤)이 점점 줄어들어 간혹 단비가 내리긴 하였으나 끝내 가뭄의 근심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순간(旬間)에 다행하게 큰 비가 내렸건만 하지(夏至)가 이미 지나서 추택(趨澤)의 시급함이 촌각을 다투었습니다.

때문에 감식판관(甘飭判官)이 밤도 없이 감독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돕고 소를 빌려주어 높고 낮은 곳 없이 차례로 이삽(移揷)하여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차례의 비가 장마로 이어져서 개인 날은 항상 적고 일찍 옮겨 심은 벼는 싹이 빼어나지 않아서 거의 모자라졌습니다. 그리고 늦게 옮겨 심은 벼는 피해가 더욱더 심하고 6월 20일 이후 3개월 동안에 더없이 가물고 동풍(東風)이 연이어 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삭이 핀 것은 알맹이가 성글어서 백삽(白颯)이 반을 차지하고, 아직 이삭이 피지 않은 것은 땅에 달라붙어 쓸쓸하고 차차 쪼그라들어 곳곳에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

484) 연사(年事)의 흉풍에 따라서 작정(酌定)하는 전세(田稅)의 율(率).
485) (농사) 일을 비로소 시작 함.

연해(沿海) 각 면은 작년 여름 해일(海溢)한 곳도 폭염(暴炎)이 내리 쪼이고 짠 기운이 두루 퍼져서 완전히 벼려진 들녘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곡식이 익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은 겨우 흉년은 면하고 늦게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은 한갓 빈 껍질만 남았습니다. 혹은 타작을 하여도 종세(種稅)[486]가 부족하고 혹은 들녘에 그냥 버려두어 끝내는 처음 생각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밭에 심은 각종의 곡식은 처음엔 장마로 인하여 서역(鋤役)[487]의 때를 잃었고 나중에는 가뭄으로 메말라 손상된 것이 반이 넘어 꼬투리가 떨어지고 열매를 맺은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至於沿海各面　昨夏海溢之處　則烈暘所曝　醎氣遍透全棄之坪　間多有之　始擬登熟者　僅得免歉　晩冀食實者徒存空殼　或登場而種稅不足　或在野而刈穫不到　畢竟成就大違始料是白乎旀　田種各穀段　初因潦水　而鋤役失時　終以暵乾　而枯損過半結莢零星　入實尠少

통틀어 논하면 전답(田畓)이 모두 황폐하여 우열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조사하는 일은 그 관계가 매우 중하여 머리카락 한올의 차이라도 더하거나 빼도 모두 죄가 됩니다. 올해에는 더욱 십분 조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곳에 따라 정리하고 장부를 조사하여 탕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초불(舊初不)[488]이 420결(結) 6속(束), 늦은 모내기가 506결(結) 24부(負) 5속(束), 풍해(風害)에 의한 손실이 287(結) 60부(負) 8속(束)이 되어 합계가 1,213결(結) 85부(負) 9속(束)이 됩니다. 지부(地部)[489]에 비교하여 획하(劃下)한 30결(結)이 1,183결(結) 85부(負) 9속(束)이 족히 되지 못합니다.

統以論之　丑畓均荒　優劣莫分是白乎旀　檢田一事　關係甚重　毫忽之差　濫約皆罪　如今之年　尤當十分難愼　故逐廛爬櫛　按簿查減是白乎　則舊初不爲四百二十結六束　晩移爲五百六結二十四負五束　風損爲二百八十七結六十負八束　合灾爲一千二百十三結八十五負九束　較諸地部劃下三十結　不足爲一千一百八十三結八十五負九束是白如乎

지금에 한갓 엄숙함과 두려움만 생각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재앙을 입은 백성으로 하여금 백징(白徵)[490]의 원통함을 갖게 한다면 우리 성상(聖上)께서 상처받은 이들을 보호하시는 성덕(盛德)의 지극한

今若徒懷嚴畏　不以實陳　致使灾民　或有白徵之寃　則孤負我　聖上如傷若保之　盛德至意乙仍于　玆敢不避猥屑

486) 종자(種子)까지 세조(稅租)로 바치는 것.
487) 곡식을 김을 매고 가꿈.
488) 햇수가 오래도록 파종(播種)하지 못한 토지.
489) 조선 왕조 때 호조(戶曹)을 일컬음.
490) 조세를 면할 만한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거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遽實陳 聞爲白去乎 上項不足灾一千一百八十三結八十五負九束 特許加劃敎是白乎則 臣謹當塗抹分俵是白乎旀

뜻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자질구레하고 비굴함을 피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따라 아뢰니 상항(上項)에 부족한 재해(災害) 1,183결(結) 85부(負) 9속(束)을 특별히 윤허하여 가획(加劃)한다면 신은 마땅히 임시변통으로 꾸며서 나누어 줄 것입니다.

仍伏念還餉法意 非惟嚴重嗣歲農糧 大係民政 今年當捧條各穀二萬二千八百八石二斗七升六合二夕四里段期於準捧

생각하니 환향법(還餉法)의 뜻은 엄중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해 농량(農糧)[491]은 민정(民政)에 중요하게 이어지니 금년에 봉납하는 곡식 22,808석(石) 2두(斗) 7승(升) 6홉(合) 2석(夕) 4리(里)는 준봉(準捧)을 기약합니다.

而至於海溢各面昨年停退條段 凡在籮簿 太半流亡 今欲一一追督 勢將徵隣徵族 以今年形民勢 爲此新舊 幷督之擧 竊恐有民穀俱失之慮是白如乎

그러나 바닷물이 넘친 각 면이 작년에 정퇴(停退)[492]한 조항은 적부(籮簿)에 태반이나 유실 되었습니다. 지금에 그것을 낱낱이 추적하여 감독하고자 하니 그 형편이 이웃에 징수하거나 친족에게 징수해야만 하고 금년의 상황과 백성의 형편으로 보아 신구(新舊)의 조세를 아울러 독촉하는 행위는 백성과 곡물을 모두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同停退各穀六千九百七十七石段 限明年許令仍停 以爲少紓民力之地爲白乎旀 推奴徵債 亦係擾民之端 一切防塞 恐合便宜 幷令廟堂稟旨分付爲白只爲

이 정퇴(停退)의 각 곡물 6,977석(石)은 내년으로 늦추어 백성의 힘을 들어주고 추노(推奴)[493]·징채(徵債)[494]도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단서이니, 모두 막고 편의에 맞도록 아울러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 분부케 하십시오.

同日 耗不足給 代穀劃下事 因防題更爲論報備局

같은 날 모미(耗米)를 지급하지 못하여 대곡(代穀)으로 획하(劃下)한 일을 방제(防題)[495]로 인하여 다시 비변사에 논보(論報)하였다.

---

491) 농사짓는 동안의 궁핍한 기간에 먹을 양식

492)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공세(貢稅) 등의 정공(正供)이나, 환곡(還穀) 등을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이(災異)로 인해 진휼(賑恤)하는 차원에서 정하였던 납부 기간을 미뤄주는 것.

493) 도망간 노비(奴婢)를 수색하여 잡아 옴.

494) 공·사(公私)로 꿔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함.

495) 방어사(防禦使)의 제사(題辭).

[주제(籌題)[496]]

이것은 혹 본부로부터 점차로 어떤 미봉책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재작년에 내년부터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송(題送)[497]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획급(劃給)한 것이 비록 사세가 어쩔 수 없는데서 나왔으나 지금에 경비(經費)가 너무 많고 곡식의 장부가 크게 줄어 해마다 알맞게 갈라서 획급할 길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이 뜻을 모두 알아서 전제(前題)의 방편에 의거 처리하여 경외(京外) 지속(持續)의 계책을 세울 일입니다.

[籌題]

此或有自本府　漸次經理某樣彌縫之道 故再昨年 以自明年 毋煩更請之意 有所題送 而昨年所劃 雖出於事勢之不獲已 到今經費旣多 穀簿大縮　實無逐年排劃之道是如乎 須悉此意 依前題方便拮据　以爲京外支繼之策向事

[보첩(報牒)]

상고(相考) 할 일입니다.

본부가 관할하는 각 도(道)의 곡식을 금년에 탕감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대미(代米)를 예(例)에 의하여 획하(劃下)한 첩보장(牒報狀) 서목(書目) 제사(題辭) 내용입니다. 이것은 혹 본부로부터 차츰 어떤 미봉책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재작년에 명년(明年)부터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송(題送)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획급한 것은 비록 사세(事勢)가 마지못한데서 나왔으나 지금에 경비(經費)가 이미 많고 곡식 장부가 너무 줄어서 실지로 해마다 배획(排劃)의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을 모두 알아서 전제(前題) 방편에 따라서 처리하여 경외(京外) 지속(持續)의 계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곡식의 설시(設始)는 아득한 무오년에 있어 본부에 환모(還耗)가 제감(除減)하는 처음에 장리(將吏)와 군졸(軍卒)의 지방(支放)의 수급(需給)이였습니다. 저 기사·갑술년 사이에 여러 번 정퇴(停退)와 탕감(蕩減)을 지내오면서 원곡(元穀)이 감축되어 지방을 획급하지 못한 형편을 부득불 비변사에 아뢰었

[報牒]

爲相考事　本府句管各道穀今年不足耗給　代米依例劃下牒報狀書目題辭內　此或有自本府　漸次經理某樣彌縫之道 故再昨年 以自明年 毋煩更請之意 有所題送 而昨年所劃　雖出於事勢之不獲已 到今經費旣多 穀簿太縮　實無逐年排劃之道是如乎 須悉此意 依前題方便拮据 以爲京外支繼之策 亦敎是乎所

盖此穀設始 粵在戊午 本府還耗除減之初 爲將吏軍卒支放之需是乎加尼 及夫己巳甲戌之間 屢經停蕩 元穀減縮 而支放不給 則勢不得不穀司 追劃者 初非原劃外

496) 비변사(備邊司)의 제사(題辭).
497) 상부 기관에서 하부 기관에 혹은 관(官)에서 백성에게 지령서를 보내어 명함.

加數請劃者也　于今三十餘年 便成歲課不易之典 未之或闕是乎所

挽近諸道穀簿 歲漸耗縮 一切給代 漸到竿頭 此箇事狀 豈或全昧 而今年請劃 冒昧修報者 誠以有營則有校卒 有校卒則有支放 而一年劃來之數 堇支一年放下之需 無剩無縮 加減不得除 非一番大更張改絃易轍之前 雖欲自本府 方便拮据 其勢末由故耳

再昨年請劃 報牒回題 以年年給代之請 深軫難繼 胥溺之慮 至以查祛兄費 從他牽補 自明年 毋煩更請爲敎 凡在保釐分憂之地 寧昧中外相須之義 而昨年本府 不得不冒昧請劃司敎是 不得不依例準劃 卽此一欵本府事勢之萬難措處 庶蒙俯燭是如乎

況旀今年經用之窘跲 較昨年不啻倍蓰 荐歉之餘 公私俱竭 各庫錢穀 在在枵罄 東西攛那 塗抹不得是在如中 捨却每年劃來之穀 別辦

습니다. 추가로 획급한 것은 애초에는 원획(原劃)외에 수량을 더 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30여년에 세과(歲課)[498]를 편성할 때 불역(不易)의 특전을 혹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모든 도(道)의 곡식장부가 해마다 줄어들고 일체를 다른 것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이 점점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어찌 모를까마는 금년에 우매함을 무릅쓰고 획급을 청하여 아뢰는 것은 진실로 영(營)이 있으면 교졸(校卒)[499]이 있고 교졸이 있으면 지방(支放)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획래(劃來)한 수량은 겨우 1년 내려보낼 수급(需給)을 유지할 뿐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가감(加減)해야 할 것입니다. 한차례 큰 가닥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비록 본부로부터 처리하고자 하지만 그 형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갈라주기를 청하는 보첩회제(報牒回題)에 해마다 대급(代給)하는 요청이 매우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가 몰락한다는 생각이 형(兄)의 비용으로 다른 곳을 채우는 격으로 내년부터는 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다스리면서 근심을 나눠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 어찌 중외(中外)가 서로 의존하는 의(義)를 묵살하겠습니까. 작년에 본부가 부득불 몽매함을 무릅쓰고 획급을 청하여 부득불 전례에 의하여 기준에 맞춰 획급하니, 이것은 한차례 본부가 사세(事勢)의 어려운 곳에 그나마 보살펴 주심을 입었습니다.

하물며 금년에는 경용(經用)의 궁색하여 기울어짐이 작년에 비교하여 배사(倍蓰)[500]일 뿐만 아니라 거듭된 흉년으로 인해 공사(公私)가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창고에 전곡(錢穀)이 곳곳마다 텅비어 바닥나고 동서(東西)가 어수선하여 도말(塗抹)할 수

498) 해마다 주어지는 과제(課題).
499) 조선 시대 군교(軍校)와 나졸(羅卒)을 합쳐서 부르는 말.
500) 배(倍)는 한 갑절. 사(蓰)는 다섯 갑절. 곧 갑절 이상 댓 갑절 가량.

없습니다. 해마다 획래(劃來)하는 곡식을 버리고 별도로 반만여(半萬餘)의 재화(財貨)를 갖추기는 시행하여 추진할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진실로 한 가닥 조처할 길이 있다면 어찌 감히 한두 차례 아뢰면서 지루한 번거로움을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민망하고 궁색함이 다하여 다시 사실에 의거하여 아뢰나니 사세(事勢)를 참작하여 이 부족한 모급(耗給) 대곡(代穀) 1,825석을 전례에 의거 획하(劃下)하여 때맞춰 추용(推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半萬餘金之貨　萬萬是行不得推不去之政　是乎置　苟有一分措處之道　豈敢一報再報　不憚支煩乎　悶隘之極輒復據實牒報爲去乎司敎是參量事勢　同不足耗給代穀合一千八百二十五石零　依前劃下　以爲及時推用之地爲只爲

29일

건릉(健陵)·현륭원(顯隆園) 국내(局內)에 연례 식목(植木)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九日

健陵 顯隆園局內 年例植木事 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건릉령(健陵令) 김성구(金性求)와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의 첩정을 보니 국내(局內)에 나무가 드문 곳에 년례(年例)로 보식(補植)[501]하는 역사(役事)가 이 달 26일에 시작하여 27일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에 보식(補植)의 경계와 심은 그루수를 뒤에 기록하여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 健陵令金性求 顯隆園令李象祖牒呈 則 局內樹木稀踈處 年例補植之役 自今月二十六日 爲始 二十七日至畢役 是如爲白有等以 補植境界及植木株數　後錄馳啓爲白臥乎事

501) 식수(植樹) 조림에 있어서 묘목(苗木)이 시들거나 상하여 공지(空地)가 생긴 경우 그곳에 묘목을 심는 일.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10월

여 백

初 一日

昧爽 行望闕禮 迎華察訪進參

同日 華寧殿焚香奉審後 封啓

초 1일

먼동이 틀 무렵에 망궐례(望闕禮)[502]를 행하는데 영화찰방(迎華察訪)이 참여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에 분향하고 봉심한 뒤에 봉계한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象祖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은 금일에 화령전에서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李象祖)의 첩정을 보니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二日

乙丙兩年 四等都試 以初三日擇定合設事 封啓

초 2일

을·병(乙丙) 양년(兩年) 사등도시(四等都試)[503]를 이 달 3일로 택정(擇定)하여 합쳐 설치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營別驍士 及列校 昨年春秋等 今年春秋等 合四等都試 以今月初三日擇定 設行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의 영(營)에서 별요사(別驍士)[504] 및 여러 군교(軍校)를 작년 춘추등(春秋等)[505]과 금년 춘추등(春秋等)을 합한 사등(四等)의 도시(都試)를 이 달 3일로 택정(擇定)하여 설행할 계획의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

502)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궐패(闕牌)에 절하던 의식.

503) 2년간 봄·가을 등 모두 사등(四等)의 도시(都試). 도시는 조선시대 무사(武士)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시험. 무재(武才)를 발굴함과 동시에 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1395년(태조 4)부터 실시하였으며, 1428년(세종 10)에는 병조(兵曹)·도진무(都鎭撫)·훈련원에서 주관하였다. 선발인원은 33명이었는데, 중앙에서는 병조와 훈련도감의 당상관(堂上官) 1명이 공동으로 시험관이 되어 1년에 1번씩 실시하였으며,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매년 봄과 가을에 2차례 뽑아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때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504) 특별히 훈련된 굳세고 용감스러운 군사.

505) 춘등(春等)과 추등(秋等)을 합친 말. 등(等)은 지금의 분기(分期)나 반기(半期)에 해당하는 말로 봄 상반기와 가을 하반기를 일컫는 말.

초 3일 이른 아침에 동장대(東將臺)에서 도시(都試)를 설행하는 과장(科場)에 나아가니 중군(中軍)과 영화찰방(迎華察訪)이 참석하였다.

初 三日
早朝詣東將臺都試設場 中軍迎華察訪 參座

초 4일 비가 반나절동안 세차게 내려 도시(都試)를 설행하지 못했다.

初 四日
因雨勢之半日霏霏 不得設場

초 5일 화령전(華寧殿) 당번(當番)으로 봉심한 뒤에 도시(都試)를 설행하였다.

初 五日
華寧殿 日次奉審後 設場

초 6일 도시(都試)를 설행(設行)하였다.

初 六日
設場

초 7일 도시(都試)를 설행(設行)하였다.

初 七日
設場

초 8일 도시(都試)를 설행(設行)하였다.

初 八日
設場

초 9일 도시(都試)를 설행(設行)하였다.

初 九日
設場

초 10일 화령전(華寧殿) 당번(當番)으로 봉심한 뒤에 설행한 도시(都試)를 이 날에 고흘(告訖)하였다.

初 十日
華寧殿 日次奉審後設場 是日告訖

十一日

都試設行 狀 啓封發

11일

도시(都試) 설행(設行)으로 장계(狀啓)을 봉발(封發)한다.

[狀啓]

臣營別驍士 及列校 昨今兩年春秋 四等都試 以今初三日 爲始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設場取才 而從事官李敏榮 適有身病 不得參試 故左列將朴宗林 差出參試 與中軍朴耆會 眼同擧行

初十日至 連爲試取後 別驍士 居首人沒技人 列校 居首人 姓名年父住 矢數後錄馳 啓爲白去乎 直赴 殿試事 令該曺 稟處爲白乎旀 乙未春等 居二右列別驍士 閑良鄭孝源 居三左列別驍士 閑良鄭煥榮 列校居二守堞軍官閑良林光祿 居三別武士 閑良金祥浩 乙未秋

[장계(狀啓)]

신(臣)의 영(營)에서 별요사(別驍士) 및 여러 군교(軍校)를 선발하기 위해 작년과 금년 두 해 봄·가을의 사등도시(四等都試)를 이 달 3일에 설행한 연유를 치계하였습니다. 신은 당일에 도시(都試)를 설행하여 인재를 뽑는데 종사관(從事官)[506] 이민영은 마침 신병(身病)이 있어서 시험에 참관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좌렬장(左列將) 박종림(朴宗林)를 차출하여 참관시키되 중군(中軍) 박시회(朴蓍會)와 함께 입회(入會)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연이어 시취(試取)[507]한 뒤에 별효사(別驍士) 거수인(居首人)[508]·몰기인(沒技人)[509]과 열교(列校) 거수인(居首人)의 성명, 나이 아버지의 성명, 사는 곳 그리고 화살의 수를 뒤에 적어 치계하므로 곧바로 전시(殿試)에 갈수 있도록 해조(該曺)로 하여금 품의해서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을미년의 춘등(春等)에 2등한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는 한량(閑良)[510] 정효원(鄭孝源)이며, 3등한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 정환영(鄭煥榮)입니다. 그리고 열교(列校)중 2등한 수첩군관(守堞軍官)은 한량

506) 조선 시대 각 군영(軍營)과 포도청(捕盜廳)에 딸린 종 6품 벼슬.
507) 조선 시대에 무재(武才)를 시험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말함.
508) 평가에서 최고를 차지한 사람.
509) 조선 시대 각종 무예 시험의 전과목에서 모두 우등 합격하는 일.
510)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걸쳐 특정한 사회계층을 가리키던 말. 그러나 전체시기에 걸쳐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한량이라고 부르던 사회계층은 직첩(職牒)·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무직사관(無職事官)과 직(職)·역(役)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뒤 사족자제로서 집안에 경제력이 있어 궁술 등 무예를 닦은 무역(無役) 한량자제에 대하여 국가는 그들의 무예를 국방력에 흡수하고자 세종 때부터 그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갑사(甲士)직을 제수하였고, 중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무과(武科) 응시를 허용하여 무인(武人)으로서의 성격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한량에 대한 의미가 무과 및 잡과 응시자를 가리키거나,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궁술의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였다.

임광록(林光祿)이며, 3등한 별무사(別武士)는 한량 김상호(金祥浩) 입니다. 을미년의 추등(秋等)에 2등한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 변문규(卞文圭)이며, 3등한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 홍성문(洪聖文)입니다. 그리고 열교(列校)중 2등한 수첩군관(守堞軍官)은 한량(閑良) 송현규(宋鉉圭)이며, 3등한 기패관(旗牌官)은 한량 장익두(張翼斗)입니다.

等 居二左列別驍士 閑良卞文圭 居三左列別驍士 閑良洪聖文 列校居二守堞軍官 閑良宋鉉圭 居三旗牌官 閑良張翼斗

병신년 춘등(春等)에 2등한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는 한량 이동규(李東珪)이며, 3등한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 변문규(卞文圭)입니다. 그리고 열교(列校)중 2등한 수첩군관(守堞軍官)은 한량 이세환(李世煥)이며, 3등한 기패관(旗牌官)은 한량 박재관(朴在觀) 입니다. 병신년 추등(秋等)에 2등한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는 한량 김순영(金順榮)이며, 3등한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 이명하(李命夏)입니다. 그리고 열교(列校)중 2등한 수첩군관(守堞軍官)은 한량 정시호(鄭時浩)이며, 3등한 토포군관(討捕軍官)은 한량 용영재(龍永在)입니다. 아울러 신의 영(營)으로부터 전례에 의거하여 상을 준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丙申春等 居二右列別驍士 閑良李東珪 居三左列別驍士 閑良卞文圭 列校 居二守堞軍官 閑良李世煥 居三旗牌官 閑良朴在觀 丙申秋等 居二右列別驍士 閑良金順榮 居三左列別驍士 閑良李命夏 列校 居二守堞軍官 閑良鄭時浩 居三討捕軍官 閑良龍永在 竝自臣營 依例施賞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을미년 춘등(春等)에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에 선발된 한량 이명하(李命夏)의 나이는 20세이며, 그의 아버지는 춘관(春寬)이고, 남부(南部)에 살고 있습니다. 이명하의 첫 번째 화살은 111보(步), 두 번째 화살은 120보(步), 세 번째 화살은 110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柳葉箭)[511]은 관중(貫中)이 둘, 변중(邊中)이 하나이고 편전(片箭)[512]은 변중(邊中)이 하나, 기추(騎芻)[513]는 적중(的中)이 하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이니 도합 10시(矢) 2푼(分)입니다.

乙未春等 左列別驍士 閑良李命夏 年二十 父春寬住南部 鐵箭一矢一百十一步 二矢一百二十步 三矢一百十步 柳葉箭貫二中 邊一中 片箭邊一中 騎芻一中 鞭芻二中 合十矢二分 列校守堞軍官 閑良金基錫 年三十一 父洛天住南部 鐵箭一矢一百十步 二矢一百六步 三矢一百十二步 柳葉箭邊

열교(列校) 수첩군관(守堞軍官)에 선발된 한량 김기석(金基錫)의 나이는 31세이며, 그의 아버지는 낙천

511) 화살의 한 종류로, 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겼으며, 조선후기 들어 본격적으로 사용된 주요 무기 중의 하나.
512) 짧고 작은 화살.
513)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이나 창·철편 등의 무기를 들고 표적인 허수아비를 쓰러뜨리는 기예.

二中 騎芻三中 鞭芻二中 鳥銃邊一中 合十一矢

(洛天)이고, 남부(南部)에 살고 있습니다. 김기석의 첫 번째 화살은 110보(步), 두 번째 화살은 106보(步), 세 번째 화살은 112보(步)에 이르렀습니다. 유엽전(柳葉箭)은 변중(邊中)이 둘, 기추(騎芻)가 셋, 편추(鞭芻)[514]가 둘이 적중(的中)하고, 조총(鳥銃) 변중(邊中)이 하나이니 도합 11시(矢)가 맞았습니다.

秋等 右列別驍士 閑良金守哲 年二十五 父得信 住晴湖面 鐵箭一矢一百六步 二矢一百四步 三矢一百五步 柳葉箭貫二中 邊二中 鞭芻一中 鳥銃貫一中邊一中 合十矢三分 列校別武士 閑良金祥浩 年二十六 父前虞侯 廷煥 住北部 鐵箭一矢一百十二步 二矢一百十一步 三矢一百十一步 柳葉箭邊三中 騎芻一中 鞭芻二中 鳥銃一中合十矢

추등(秋等)에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에 선발된 한량 김수철(金守哲)의 나이는 25세 이며, 그의 아버지는 득신(得信)이고, 청호면(晴湖面)에 살고 있습니다. 김수철의 첫 번째 철전(鐵箭)[515]은 106보(步), 두 번째는 104보(步), 세 번째는 105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柳葉箭)은 관중(貫中)이 둘, 변중(邊中)이 둘이며,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하나, 조총(鳥銃)은 적중(的中)이 하나, 변중(邊中)이 하나이니 도합 10시(矢) 3푼(分)입니다.

열교(列校) 별무사(別武士)에 선발된 한량 김상호(金祥浩)의 나이는 26세이며, 그의 부(父)는 전(前) 우후(虞侯)[516]인 정환(廷煥)이고, 북부(北部)에 살고 있습니다. 김상호의 첫 번째 철전(鐵箭)은 112보(步), 두 번째는 111보(步), 세 번째는 111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柳葉箭)은 변중(邊中)이 셋, 기추(騎芻)는 적중(的中)이 하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 조총(鳥銃)은 적중(的中)이 하나이니 도합 10시(矢)가 맞았습니다.

丙申春等 右列別驍士 閑良李東秀 年三十三 父仁德 住振威 鐵箭一矢一百十一步 二矢一百十步 三矢一百十八步 柳葉箭貫二中邊一中 片箭貫一中 騎芻二中

병신춘등(丙申春等)에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에 선발된 한량 이동수(李東秀)의 나이는 33세이며, 그의 아버지는 인덕(仁德)이고, 진위(振威)에 살고 있습니다. 이동수의 첫 번째 철전(鐵箭)은 111보(步), 두 번째는 110보(步), 세 번째는 118보(步)에 이르렀습니다. 유엽전(柳葉箭)은 관중(貫中)[517]이 둘, 변중(邊中)

514) 편곤(鞭棍), 즉 쇠도리깨와 곤방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치는 무술 혹은 훈련을 말함.

515) 육량전(六兩箭)·아량전(亞兩箭)·장전(長箭) 등 무쇠 화살의 총칭.

516) 병마우후(兵馬虞侯)와 수군우후(水軍虞侯). 조선조 때 무관직으로 각 도에 배치된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보좌관. 병마 우후는 종3품, 수군 우후는 정4품이었음

이 하나이며, 편전(片箭)은 관중(貫中)이 하나, 기추(騎芻)는 적중(的中)[518]이 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 조총(鳥銃)은 변중(邊中)이 하나로 도합 12시(矢) 3푼(分)입니다.

鞭芻二中 鳥銃邊一中 合十二矢三分

열교(列校) 기패관(旗牌官)에 선발된 한량 장익두(張翼斗)의 나이는 18세이며, 그의 아버지는 출신(出身)[519] 계복(啓福)이고, 남부(南部)에 살고 있습니다. 장익두의 첫 번째 철전(鐵箭)은 112보(步), 두번째는 108보(步), 세번째는 114보(步)에 이르렀습니다. 유엽전(柳葉箭)은 관중(貫中)이 둘, 변중(邊中)[520]이 하나이며, 기추(騎芻)는 적중(的中)이 하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 조총(鳥銃)은 변중(邊中)이 하나이니 도합 10시(矢) 2푼(分) 입니다.

列校旗牌官 閑良張翼斗 年十八 父出身啓福 住南部 鐵箭一矢一百十二步 二矢一百八步 三矢一百十四步 柳葉箭貫二中邊一中 騎芻一中 鞭芻二中 鳥銃邊一中 合十矢二分

추등(秋等)에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에 선발된 한량 변문규(卞文圭)의 나이는 31세 이며, 그의 아버지는 광위(光瑋)이고, 북부(北部)에 살고 있습니다. 변문규의 첫 번째 철전(鐵箭)은 128보(步), 두 번째는 116보(步), 세 번째는 125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柳葉箭)은 변중(邊中)이 둘, 편전(片箭)은 관중(貫中)이 하나, 변중(邊中)이 하나 이며, 기추(騎芻)는 적중(的中)이 하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 조총(鳥銃)은 관중(貫中)이 하나이니 도합 11시(矢)2푼(分)입니다.

秋等 左列別驍士 閑良卞文圭 年三十一 父光瑋住北部 鐵箭一矢一百二十八步 二矢一百十六步 三矢一百二十五步 柳葉箭邊二中 片箭貫一中邊一中 騎芻一中 鞭芻二中 鳥銃貫一中 合十一矢二分

열교(列校) 별무사(別武士)에 선발된 한량 김성달(金聲達)의 나이는 28세 이며, 그의 아버지는 제원(濟元)이고, 남부(南部)에 살고 있습니다. 김성달의 첫번째 철전(鐵箭)은 106보(步)·두번째도 106보(步)·세번째는 110보(步)에 이르렀습니다. 유엽전(柳葉箭)은 관중(貫中)이 하나 변중(邊中)이 셋이며, 편전(片箭)은 변중(邊中)이 하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이니

列校別武士 閑良金聲達 年二十八 父濟元住南部 鐵箭一矢一百六步 二矢一百六步 三矢一百十步 柳葉箭貫一中 邊三中 片箭邊一中 騎芻一中 鞭芻二中 合十一矢一分 左列別驍士 閑良尹志煥 年二十五 父龍祿住南部 片箭貫一中邊二中

517) 화살이 과녁의 복판을 맞힌 것을 말함.
518) 어김없이 꼭 목표에 들어맞음.
519) 고려·조선 시대 문·무과나 잡과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520) 활이나 총을 쏘아 과녁의 관(貫: 목표 부분) 밖의 부분을 맞힘.

도합 10시(矢) 1푼(分)입니다.

좌열별효사에 선발된 한량 윤지환(尹志煥)의 나이는 25세 이며, 그의 아버지는 용록(龍祿)이고, 남부(南部)에 살고 있습니다. 윤지환은 편전(片箭)으로 관중(貫中)이 하나, 변중(邊中)이 둘입니다.

十五日

昧爽行望闕禮 中軍進參 同日 華寧殿冬大奉審後 封啓

15일

동틀 무렵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중군(中軍)이 참여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동대봉심(冬大奉審)[521]을 한 뒤에 봉계한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冬孟朔大奉審 仍爲擧行 而兼令臣李敏榮 在京未還 故以迎華察訪吳致健 權差兼令與兼衛將臣朴蓍會 眼同奉審是白乎則 殿內諸處 俱爲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參奉趙秉緯牒呈 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은 금일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동맹삭(冬孟朔)[522] 대봉심(大奉審)을 곧바로 거행하는데 겸령신(兼令臣) 이민영이 서울에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영화찰방(迎華察訪) 오치건을 겸령(兼令)으로 임시 차출하여 겸위장(兼衛狀) 박시회와 함께 입회하여 봉심케 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륭원 참봉 조병위(趙秉緯)의 첩정을 보니 금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也 余偶患泄痢 不得進參

20일

화령전 당번(當番)으로 봉심해야 할 것이건만 내가 갑자기 설사병이 나서 참여하지 못했다.

---

521) 음력 10월이 동절(冬節)로 접어드는 첫 달로써 이때 이 달에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봉심(奉審).
522) 음력 10월을 일컬음.

25일

화령전 당번(當番)으로 봉심하였다. 같은 날 관진문(官鎭門) 취점(聚點)을 설행하는 일로 봉계하였다.

二十五日

華寧殿日次奉審
同日 官鎭門聚點設行事 封啓

[장계(狀啓)]

지난 번 도부한 비변사 관자(關子) 내용에 계하(啓下)하신 계사(啓辭)에 각 도(道)의 도수신(道帥臣)이 올린 가을철 훈련에 대한 품계(稟啓)가 지금에 가지런히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사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접어둔지 이미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적에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진실로 여러 가지 소홀함이 지금에 미치어 가을철 훈련의 거행을 그만두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상두(桑土)[523] 비예(備豫)의 도(道)를 생각하니 또한 모름지기 민력(民力)을 애양(愛養)하는 것으로 근본을 여깁니다. 지금에 동북(東北)지방을 보니 모두 흉년을 겪고 양서(兩西)[524] 지방도 또한 공억(供億)[525]에 피곤합니다. 기전(圻甸)[526]·삼남(三南)지방에 비록 등숙(登熟)[527]의 희망이 있지만 풍료(風潦)가 간간히 재해가 되고 가을일을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에 농무(農畝)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징조(徵調)[528]의 역사(役事)를 책임지우는 것은 실지로 품어 보호하고 너그럽게 돕는 의(義)가 아닙니다.

[狀啓]

前矣到付備邊司關內節 啓下敎司 啓辭 各道道帥臣秋操稟 啓 今已齊到矣 詰戎重務之全 然拋却已至數十年 所其安不忘危之意 誠爲萬萬 踈忽及今 擧行有不容已

而第念桑土備豫之道 亦須以愛養民力爲本 見今東北皆經歉荒 兩西又疲 供億圻甸三南 雖有登熟之望 而風潦間亦爲灾 秋事尙在未判 此時農畝之民 遽責徵調之役 實非所以懷保寬恤之義

---

523) 『시경(詩經)』 「상두주무(桑土綢繆)」에서 나온 말. 곧 폭풍이나 폭우가 오기 전에 새가 뽕나무 뿌리를 캐서 보금자리를 잘 구려 놓아 풍우(風雨)를 막는 것과 같이 사람이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함을 비유함.
524) 황해도와 평안도. 황평양서(黃平兩西).
525)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안정시킴.
526) 경기도 일원을 부리던 칭호.
527)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곡물이 잘 익은 것을 말함.
528) 명령을 내리어 군사와 군량미를 모음.

今秋八道三都 水陸諸操 巡歷巡點 竝姑停免 至於官鎭門聚點 雖與正操有異 若能着意講行 亦當有裨於鍊戎肄武之節 另加申飭 俾毋敢視以文具 有堤堰處 移點完役 亦依近例爲之 各樣都試覆審考講 及停退都試 竝爲設行之意 分付何如

금년 가을은 팔도(八道)·삼도(三都)[529]에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모든 조련(操鍊)과 순력(巡歷)·순점(巡點)을 아울러 정면(停免)하였습니다. 관진문(官鎭門) 취점(聚點)에 있어서는 비록 정조(正操)와 다름이 있으나 만약에 뜻에 두어 익혀 행하면 또한 마땅히 병기(兵器)를 단련하고 무예를 익혀 통솔함에 도움이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신칙(申飭)함을 더하니 감히 문구(文具)[530]로 보지 말고 제방(堤防)을 신축하는 곳에 이점(移點)하여 역사(役事)를 완결하되 또한 최근의 예에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각종의 도시(都試)·복심(覆審)[531]·고강(考講)[532] 및 물린 도시(都試)를 아울러 설행하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答曰 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辭意 奉審施行 亦爲白有等以 臣營馬步軍兵 今二十四日 依例聚點 俱無闕額是白遣 所屬五邑軍兵 亦爲依關辭擧行之意 傳令知委是白加尼 卽接龍仁縣令金芸淳 果川縣監鄭晩敎所報則本縣軍兵 依例聚點 而別無闕伍 是如爲白遣 安山郡守金原淳 始興縣令李鳴遠 振威縣令南興中所報 則本縣軍兵 移點於堤堰疏鑿之役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비답(批答)에 윤허하신 일의 전교(傳敎)에도 전교 내용의 취지를 받들어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臣)의 감영에서는 마보군병(馬步軍兵)을 지난 24일에 예에 따라서 취점(聚點)하니 모두 빠짐이 없고 5읍에 소속한 군병(軍兵)도 관사(關辭)에 의하여 거행할 뜻을 전령(傳令)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지금 용인현령 김운순(金芸淳)·과천현감 정만교(鄭晩敎)의 보고를 접하니, 본현(本縣)의 군사를 예에 따라 취점하니 별다른 대오(隊伍)의 이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군수 김원순(金原淳)·시흥현령 이명원(李鳴遠)·진위현령 남흥중(南興中)의 보고에는 본현(本縣)의 군사를 제방을 소축(疏鑿)[533]하는 일에 이점(移點)하였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

529) 조선 시대 광주(廣州)·수원(水原)·개성(開城)을 아울러 이르는 말.
530) 법문(法文)만 갖추어져 있고 실행되지는 않는 것.
531) 하급심의 의율(擬律) 상신 안건을 상급심에서 다시 심사하는 절차. 즉, 하급관사에서 심사한 것을 상급관사에서 재차 심사하는 절차를 말함.
532) 현직 관원(官員)에게 보이는 시험의 하나. 각기 경서(經書)나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서적의 강의·강독 등을 시험 침.
533)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하여 개천이나 우물·도랑 등을 침.

같은 날 모미(耗米)를 지급하지 못하고 전보(前報)에 의하여 대곡(代穀)으로 획하(劃下)한 일을 비국(備局) 회관(回關)[534]에 따라 경상(慶尙) 감영(監營)에 문이(文移)하였다.

同日 耗不足給 代穀依前報劃下事 因備局回關文移嶺營

[비국회관(備局回關)]

상고하는 일을 하교하신 계사(啓辭) 입니다. 수원(水原)이 관할하는 각 도(道)에 모자라는 곡식의 조항은 금년 모미(耗米) 1,225석(石)이며 탕채(蕩債)로 지급하는 대곡(代穀) 600석(石)입니다. 그리고 광주(廣州)가 관할하는 관서(關西)·호서(湖西)에 모자라는 곡식의 조항 을미년 모미 320석 입니다. 또 송도(松都)가 관할하는 관서(關西)의 곡식으로 금년 모대(耗代)의 조항 2,000석(石)은 각 해부(該府)로부터 대급(代給)을 아뢰어 청하므로 연례에 따라 대획(代劃)합니다.

수원은 영남(嶺南)에 가분모(加分耗)[535] 및 본사(本司)가 관할하는 각 명곡(名穀)[536]을 회록(會錄)[537]한 모중(耗中)에서 절미(折米)[538]하여 획급합니다. 광주(廣州)는 해서(海西)에 있는 본사(本司)가 관할 각 명곡(名穀)을 회록(會錄)한 모중(耗中)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합니다. 송도(松都)는 호서(湖西)에 있는 본사(本司)가 관할하는 각 명곡(名穀) 회록(會錄) 모중(耗中)에서 절미(折米) 획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답(批答)에 윤허하라 전교하시고 전교내(傳敎內) 사의(事意)를 봉심하여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득불 대획(代劃)하건만 내년부터는 모

[備局回關]

爲相考事 節 啓下敎司 啓辭 水原句管 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穀六百石 廣州句管 關西湖西穀見縮條 乙未耗米三百二十石零 松都句管關西穀 今年耗代條二千石 自各該府報請給代矣 係是年例代劃

水原 則以嶺南加分耗 及本司句管 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 廣州 則以海西所在本司句管 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 松都 則以湖西所在 本司句管 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 使之取用何如 答曰 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爲有矣 今年 則雖不得不代劃 而自明年 必須講究其充補之道 以爲方便支繼之地向事

534) 관문(關文)을 회람 함.

535) 조선 시대 삼정(三政)의 하나인 환곡(還穀)이나 군향미(軍餉米)를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모곡(耗穀).

536) 나름대로 이름이 붙혀진 곡식.

537) 전세(田稅)나 환곡(還穀) 등의 세곡(稅穀)을 징수할 때 자연 감모(減耗)를 보충하기 위해 거둔 1할의 모곡(耗穀)을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하여 일부를 떼어 용도가 다른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

538) 어떤 물건의 값을 쌀로 쳐서 셈함. 또는 그 셈한 쌀.

름지기 그 보충의 도(道)를 강구하여 방편으로 이어 갈 일을 만들 것입니다.

[移文]

爲相考事　弊營各道耗見縮條　今年不足耗　一千二百二十五石　四升七合七里　蕩債給代穀六百石　合米一千八百二十五石　四升七合七里　以嶺南加分耗　及備局句管各名穀會錄耗中　折米劃給事　自本司覆　啓蒙　允乙仍于　輸來次　委送差人林潞豊爲去乎　到卽依數出給　以爲及時輸來之地向事

[이문(移文)]

상고(相考)할 일입니다.

폐영(弊營) 각도(各道)에 모자라는 모곡(耗穀) 조항입니다. 금년에 부족한 모곡(耗穀) 1,225석 4승 7홉 7리와 탕채(蕩債)로 지급하는 대곡(代穀) 600석입니다. 이것을 합한 1,825석 4승 7홉 7리는 영남(嶺南)에 가분모(加分耗) 및 비국(備局)에서 관할하는 각 명곡(名穀)의 회록(會錄)된 모중(耗中)에서 절미(折米)하여 획급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본사(本司)로부터 복계(覆啓)[539]하여 윤허를 받은 것이므로 실어올 때에 차인(差人) 임노풍(林潞豊)을 보내어 도착하거든 수량에 의해 출급(出給)하여 때맞춰 수래(輸來)하는 일입니다.

539) 어떤 일을 임금에게 거듭 아룀.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11월

여 백

初 一日

昧爽 行望 闕禮 中軍判官 迎華察訪 進參

同日 華寧殿焚香奉審後 封啓

초 1일 동틀 무렵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 데 중군판관(中軍判官)과 영화찰방(迎華察訪)이 참여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에 분향하고 봉심(奉審)한 뒤에 봉계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頉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象祖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이 금일에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상조의 첩정을 보니 금일에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초 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540]로 봉심(奉審)하였다.

初 九日

自營離發 始興中火 夕抵筆谷 封離營啓

초 9일 영(營)을 출발하여 시흥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필곡(筆谷)에 도착하여 감영을 떠났음을 알리는 장계를 봉하였다.

[狀啓]

臣以今十三日 孝成殿 大祥 哭班進參事 當日發行上京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은 이 달 13일 효성전(孝成殿) 대상(大祥)에 곡반(哭班)[541] 진참사(進參事)로 당일에 출발하여 상경(上京) 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

540) 그 날의 당번(當番) 차례.

541) 국상(國喪) 때에 곡(哭)을 하는 벼슬아치의 반렬(班列).

11일 효성전 조상식(朝上食)[542]·주다례(晝茶禮)[543] 때에 따라 올라갔다.

十一日 孝成殿 朝上食 晝茶禮時 從陞

12일 효성전 조상식(朝上食)·주다례(晝茶禮)·석상식(夕上食) 때에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 이 밤에 대상반(大祥班)[544]으로 따라 올라가니 서러운 느낌이 더욱더 새삼스러웠다.

十二日 孝成殿 朝上食 晝茶禮 夕上食時 從陞 是夜 大祥班 仍爲從陞 慟廓采新

13일 현륭원 동지제향(冬至祭享)에 헌관(獻官)으로서 향축(香祝)을 모시고 궐내(闕內)로부터 출발하여 시흥에서 점심을 먹고 영(營)으로 돌아왔다. 이때 태보(台輔) 윤명규(尹命奎)가 건릉(健陵) 헌관(獻官)으로 함께 내려왔다.

十三日 以 顯隆園冬至 祭享獻官 陪奉 香祝 自 闕內離發 始興中火 侵夜還營 尹台命奎 以 健陵獻官 同爲下來

14일 환영계(還營啓)를 써서 봉하였다.

十四日 封還營啓

[장계(狀啓)]

신(臣)이 현륭원 동지제향(冬至祭享)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당일에 영(營)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以 顯隆園 冬至 祭享獻官 陪奉 香祝 當日還營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향축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나아갔다.

同日 陪 香祝 詣 園所

15일 헌관으로 참여한 뒤에 곧바로 봉계하고 건릉(健陵) 헌관(獻官)과 함께 의정부에 들어갔다가 이 날에 돌아왔다.

十五日 以獻官進參後 仍爲封啓 健陵獻官 同爲入府 是日還發

542) 상가(喪家)에서 아침에 영좌(靈座)에 드리는 음식.
543) 인산(因山) 뒤 삼년상(三年喪) 안에 아무 때든지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祭式).
544) 대상(大祥)을 지내는 반렬(班列).

[狀啓]
謹 啓爲 祭享事 今月十五日 行 顯隆園冬至 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獘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삼가 제향(祭享)에 관한 사항을 장계합니다. 이 달 15일에 현륭원 동지제향(冬至祭享)를 모실 적에 신(臣)이 헌관으로 참여하고 설행한 뒤에 원상(園上)을 봉심하니 잡초·잡목(雜木)이 없고, 사방 산내(山內)도 나무를 범작(犯斫)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祭官)의 직책과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545]하여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 昧爽 行望闕禮 中軍 判官 迎華察訪 進參

같은 날 동틀 무렵에 망궐례를 설행하는데 중군판관(中軍判官)·영화찰방(迎華察訪)이 참여하였다.

同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같은 날 화령전에 분향하고 봉심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 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 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이 금일에 화령전에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의 첩정을 보니 금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무탈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 以振威縣 軍錢愆納事 首鄕首吏 捉上之意 發關

같은 날 진위현(振威縣)이 군전(軍錢) 건납(愆納)한 일로써 수향(首鄕)[546]·수리(首吏)[547]를 촉상하는 뜻으로 관자(關子)를 띄웠다.

545)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의 말미(末尾)에 의견 또는 용건을 열기(列記)하는 것.
546) 좌수(座首)의 별칭.
547) 으뜸이 되는 향리(鄕吏) 곧 호장(戶長)을 말함.

[감결(甘結)[548]]

위 감결은 본현(本縣)을 위하여 상납하는 일이 지리(支離)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계년 조항에 각양(各樣)의 상납(上納)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오히려 2,000냥이나 되건만 한결같이 뒤엉키어 끝내 수납(收納)하지 못한 일은 옛적에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금년에 상납하는 일로써 말하자면 다른 고을은 모두 납부를 마쳤거니와 본현(本縣)은 수천(數千)의 상납에 가까운데 겨우 단백(單百)의 작은 수량으로 한차례 색책(塞責)에 그쳤습니다.

이에 전후로 칙령을 내려 감독하였건만 도모지 무익한 글만 부치고 털끝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더욱더 놀랄 일입니다. 또 월초(月初) 본현(本縣)이 공관(空官)[549] 할 때에 공형(公兄)[550]에게 영칙(令飭)하였건만 기한일이 이미 지나갔고 현령이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납(上納)의 여부는 이향상사(吏鄕上使)가 도무지 거론하지 않고 다만 환관(還官)의 일만 가지고 예(例)에 따라 아뢰어 오니 어찌 이 같은 일의 이치가 있겠습니까. 수리(首吏)·수향(首鄕)이 도관(到關)하는 즉시 형리(刑吏)를 정하여 착가(着枷) 상사(上使)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甘結]

右甘爲本縣上納事　可謂說亦支離　壬癸條　各樣上納未收　尙爲二千兩之多　而一直漫漶　終不收納　如許事狀振古所無瓮除良　至以今年上納事言之良置　他邑皆已畢納　而本縣則近數千上納僅以單百些略之數　一次塞責而止

前後董飭　都付空文　毫不動念者　尤極駭然　且於月初本縣空官之時　有所令飭於公兄處　是加尼　限日已過縣令旣還　而上納與否　吏鄕上使　都不擧論　只以還官事循例報來者　寧有如許事體首吏鄕到關卽時　定刑吏着枷上使　以爲依律嚴處之地宜當向事

20일

화령전(華寧殿) 당번(當番)으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548)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공문.
549) 지방의 수령이 어떤 경위로 자리를 비움.
550) 삼공형(三公兄)의 준말로 조선시대 관찰사나 수령 아래 각 고을의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의 세 상급 관속.

二十三日

別軍官取才都試 以二十五日 設行計料事 封啓

23일

별군관(別軍官)[551]을 취재(取才)하기 위한 도시(都試)를 25일에 설행할 계획의 일을 가지고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營別軍官 今秋等都試 以今月二十五日 擇定設行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의 영(營)의 별군관(別軍官) 추등도시(秋等都試)를 이 달 25일에 택정(擇定)하여 설행할 계획으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二十四日

以勸 講閣臣 承 內下章服 內外供恩賜 進講大學畢 講在去月晦間 至是 慈敎識喜有此 匪頒之錫也 是日閣吏賫來 〔粉紅雪漢緞一疋 藍水花方紬三疋〕 祗受 昔在壬戌 先朝 尙書畢 講後 臣以勸 講閣臣 承紬緞之 賜矣 不意老而不死 再被此恩於今日 榮耀之極感淚交迸

24일

권강(勸講) 각신(閣臣)으로 내하(內下)하신 장복(章服)[552]을 내외(內外)에 베푼 은혜를 입었다. 『대학(大學)』의 진강(進講)[553]을 마친 지난 달 그믐께였는데 이에 자교(慈敎)의 기쁨으로 나누어 내려주심이 있었다. 이 날에 각리(閣吏)가 가지고 온 분홍 설한단(雪漢緞) 한 필, 남수(藍水) 화방주(花方紬) 3필을 공경히 받았다. 옛 임술년 선대(先代) 조정(朝廷)에 있어서 상서(尙書)의 진강(進講)을 마친 뒤에 신이 권강각신으로 주단(紬緞)의 하사품을 받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여태껏 늙어오면서 죽지 않고 또 다시 이 같은 은혜를 오늘에 입으니 영광(榮光)이 다하여 감격의 눈물이 번갈아 내렸다.

二十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都監進排錢五千兩 輸送戶曺 仍報備局

25일

화령전 당번(當番)으로 봉심하였다. 같은 날 도감(都監) 진배전(進排錢)[554] 5,000냥을 호조(戶曺)에 수송하고 곧바로 비국(備局)에 보고하였다.

---

551) 조선 시대 훈련도감(訓練都監)·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장용위(壯勇衛)등과 같은 각 군영에 딸린 하급 군사.

552)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쉽게 어떠한 무늬나 또는 특별한 기호를 붙인 의복.

553) 임금 앞에 나아가 경서(經書) 등을 강론(講論)하는 것.

554) 대궐이나 각 궁(宮)·관아(官衙)에서 쓸 경비를 호조(戶曹)나 해당 관아에서 지급하는 돈.

[보첩(報牒)]

상고(相考)할 일입니다. 계하(啓下)하신 관자 내용에 이번에 각 도감(都監)이 진배차(進排次) 화성(華城)탕전(帑錢) 5,000냥을 호조에 이송(移送)하였다고 합니다. 외탕고(外帑庫) 행용전(行用錢)이 1,000여냥에 지나지 않거니와 이것은 당년(當年)에 각양(各樣) 응하(應下)[555]의 수요입니다. 봉하여 변동 없는 탕고 봉장법(帑庫封椿法)의 뜻을 6~7년간 엄중히 수납(輸納)한 것이 4차례가 되었으나 지금에 기록한 장부에 남아 있는 것은 10,000여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탕장(帑藏)[556]에 모축(耗縮)이 이미 송구함을 다 했건만 이러한 가운데에 또 5,000금(金)을 빼어내면 남은 것은 겨우 반만금(半萬金)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관방(關防)의 중요한 땅에 예기치 않은 대비를 어찌 이와 같은 홑 장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사(京司)[557]의 수용(需用)도 또한 긴급하며 그 내외(內外)가 공제(共濟)하는 의로움이 있으니 감히 어리석은 방보(防報)[558]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별다른 길거(拮据)[559]의 방법을 생각하여 일찍 계사년 간에 있어서 탕고(帑庫) 부상목(腐傷木)[560] 24필, 동(同) 34필을 개색차(改色次)[561]에 시장 상인에게 출급(出給)하였습니다.

그 뒤에 연이어 흉년이 들어서 본색(本色)[562]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형편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대전(代錢)으로 거둬 둔 것이 2,468냥이 되고

[報牒]

爲相考事 司敎是 啓下關內節該各都監進排次 華城 帑錢五千兩 移送戶曺 亦爲有臥乎所 外帑庫行用錢 不過千餘兩 而卽是當年各樣應下之需 是乎遣 至於封不動段 帑庫封椿法意 嚴重而六七年來 京司輸納 合爲四次見今記簿遺在 不過萬餘兩是如乎

帑藏耗縮 已極悚悶 而若就此中 又除出五千金 則存者僅爲半萬矣 關防重地 不虞之備 豈可若是單簿是乎喩 京司需用 亦係緊急 其在內外共濟之義 有不敢昧然防報乙仍于 另究從他拮据之方 曾在癸巳年間 帑庫腐傷木二十四 同三十四疋 改色次出給廛人矣

伊後 連値綿歉 本色收捧其勢末由 不得不以代錢捧置者 爲二千四百六十八兩

555) 관청에서 마땅히 지급해야할 지출.
556) 탕고(帑庫)와 같은 의미로써 화폐나 진귀한 보물을 넣어 두는 창고.
557) 서울에 있는 관청의 총칭. 정1품부터 종6품까지의 관청.
558) 상급 관청의 지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적에 그 이유를 변명하여 올리는 보고.
559)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넘겨 줌.
560) 흠이 생기어 상한 광목(廣木).
561) 조운(漕運)을 하는 과정에서 침수(沈愁)된 수침미(水沈米)와 병선(兵船)에 실은 군량으로 3년이 지난것. 또는 진휼청(賑恤廳)이나 관창(官倉)의 묵은 곡식 등을 그 지방민에게 나누어주고 그 수량만큼 신곡으로 대신 보충하여 원수(元數)를 맞추는 기회.

帑庫陳米二百五十石 從時價作錢者 爲一千兩 果川別置米耗條之以詳定價 推來例也 昨今兩年 耗作錢 爲一千五十三兩 湊合爲四千五百二十一兩 不足四百七十九兩段 以貯置庫錢足之 合五千兩 定色吏移文 上送于戶曺爲乎旀 緣由牒報爲臥乎事

탕고(帑庫)의 묵은 쌀 250석은 시가(時價)에 따라서 작전(作錢)한 것이 1,000냥이 됩니다. 이것은 과천의 별치미(別置米) 모조(耗條)의 상세하게 정한 가격을 미루어 온 전례(前例) 입니다. 작년과 금년 두 해의 모조(耗條)로 작전(作錢)한 것이 1,053냥이 되어 모두 4,521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한 479냥은 쌓아 둔 고전(庫錢)으로 채워 도합 5,000냥이니 색리(色吏)를 선정하여 이문(移文)하고 호조에 올려 보냈나니 그 연유를 첩보(牒報)하는 일입니다.

二十六日

別軍官試取設行事 封啓

26일

별군관(別軍官) 선발시험을 설행한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營別軍官 今秋冬等都試 以今二十五日 設行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與從事官李敏榮 中軍朴著會 眼同開場 二十六日至畢試是白乎旀 居首人姓名年歲 父名矢數 及越薦年條 薦主人職姓名 開錄于左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左列別軍官崔顯鼎 年三十一 父慶潤 丙申越部薦 薦主部將金應浩 鐵箭一矢一百十七步 二矢一百十步 三

[장계(狀啓)]

신(臣)의 영(營) 별군관(別軍官) 추·동등(秋冬等) 도시(都試)를 이 달 25일에 설행한 연유를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신은 그 당일에 종사관(從事官) 이민영·중군(中軍) 박시회와 함께 입회(入會)하여 개장(開場)하고 26일에 이르러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에 거수인(居首人)의 성명과 나이, 부(父)의 이름, 시수(矢數)[563] 및 월천(越薦)[564] 연조(年條), 추천자의 성명 등을 왼쪽에 개록(開錄)하여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거수(居首)한 좌열별군관(左列別軍官) 최현정(崔顯鼎)의 나이는 31세 이며, 그의 부(父)는 경윤(慶潤) 입니다. 최현정은 병신년 천망(薦望)에 빠졌으니 이에 천거한 사람은 부장(部將) 김응호(金應浩) 입니다.

562) 조세(租稅)를 징수하는 데 미곡(米穀)을 본색이라고 하고, 은전(銀錢)으로 환산(換算)한 것을 절색(折色)이라고 함. 즉 본색이란 다른 물건에 대한 조세 본래의 종류라는 뜻.

563) 과녁에 맞은 화살의 수

564) 잘못을 저질러 천망(薦望)에서 빠짐.

최현정의 첫 번째 철전(鐵箭)은 117보(步), 두 번째는 110보(步), 세 번째는 110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柳葉箭)은 변중(邊中)이 둘, 편전(片箭)은 관중(貫中)이 하나, 변중(邊中)이 하나이며, 기추(騎芻)는 적중(的中)이 하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 둘이니 합계 10시(矢) 1분(分)입니다.

矢一百十步　柳葉箭邊二中片箭貫一中　邊一中　騎芻一中　鞭芻二中　合十矢一分

28일

본부 연분(年分)[565] 결총(結摠)을 책자로 수성(修成)하여 호조에 보낸 일을 봉계하였다.

二十八日

本府年分　結摠修成冊　送于戶曺事　封啓

[계본(啓本)]

삼가 장계를 올려 상고할 일로써 이번에 도부한 호조(戶曺) 연분(年分) 사목(事目) 입니다. 계하하신 관문 내용에 수원 전답(田畓)은 을미년 원총(元摠) 5,839결에서 급재(給災)[566] 30결(結)을 제하면 실지로 5,809결로 마감(磨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에는 일찍부터 내려오는 거둬들이지 못하는 묵은 연고(緣故)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급재(給災)와 모두 집행하여 총합한다면 그 수량이 너무 많으므로 연유를 갖추어 우러러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70결의 혜택만 입었을 뿐 사목(事目)에 급재(給災) 30결을 포함하여 재난을 당한 정도를 헤아려 평균적으로 분표(分俵)[567]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재 전답(田畓)은 신기답(新起畓)[568]을 합한 4,863결 69부 6속내에 개간을 권장한 신기답 2결 39부는 조령(朝令)에 의하여 첫 해에 감세(減稅)되었습니다. 경신년에 권벽(勸闢)[569]한 가운데에 19결 45부 8속은 환진(還陳)[570]으로 감세(減稅)되었습니다.

[啓本]

謹　啓爲相考事　節到付戶曺年分事目　啓下關內　水原田畓　以乙未元摠五千八百三十九結內　給災三十結　實五千八百九結　磨勘亦爲白有矣　本府曾有流來舊陳　未入永頃者　幷與今災而執摠　則厥數甚多乙仍于　具由仰請特蒙九百七十結劃下　竝與事目所下災三十結　而參量被災淺深　平均分俵　爲白有如乎

今年　實田畓　竝新起四千八百六十三結　六十九負六束內　勸闢新起二結三十九負依　朝令初年減稅　庚申勸闢中　十九結四十五負八束　以

565) 1년 농사의 흉풍(凶豊)에 따라서 작정(酌定)하는 전세(田稅)의 율(率).
566) 재상(災傷)을 입은 전지(田地)에 대하여 전세(田稅) 등을 감면, 혹은 면제해 주던 것.
567) 흉년의 재해를 입은 논밭의 구실을 덜어 주는 일.
568) 새로 일구어 만든 논.

還陳減稅　實摠四千八百四十一結 八十四負八束 依備邊司啓下關 修成冊兩件 上送戶曺爲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이에 실재 총량 4,841결 84부 8속은 비변사 계하관자(啓下關子)에 의하여 책자 두 건을 수성(修成)하여 호조에 올려 보내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569) 땅의 개간을 권장함.
570) 환곡(還穀)과 진미(陳米).

여 백

병신년(丙申年 : 1836, 헌종 2년)

12월

여 백

初 一日

開東行望 闕禮 中軍迎華察訪 進參

同日 華寧殿焚 香奉審後 封啓

초 1일

먼동이 틀 무렵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중군(中軍)·영화찰방(迎華察訪)이 참여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봉계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頉是白乎旀 卽接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은 오늘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 이민기의 첩정(牒呈)을 보니 금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二日

公都會乙丙兩年條 合設 參試官 延曙察訪田齊賢 是日收券三百九張 夜出榜目 賦題鷄犬識路 詩題使聖人 壽富多男子

초 2일

공도회(公都會)[571] 을병(乙丙) 양년조(兩年條)를 합설(合設)하였다. 참시관(參試官)은 연서찰방(延曙察訪) 전제현(田齊賢) 이다.

이 날에 시권(試券)[572] 309장(張)을 거두어 밤에 방목(榜目)[573]을 내었다.

※ 부제(賦題)는 '닭과 개도 길을 앎 [鷄犬識路] '이며, 시제(詩題)는 '성인으로 하여금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아들이 많게 함. [使聖人壽富多男子] [574]'이다.

---

571) 조선 시대 과거(科擧)의 하나로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유수(留守)가 매년 자기 지방의 유생에게 보이는 소과(小科)의 초시(初試).

572) 과거 시험 답안지.

573) 고려·조선 시대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명단.

574) 삼다(三多)란 자식을 많이 두라는 다남(多男), 복을 많이 받으라는 다복(多福),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다수(多壽)가 그것이다. 《장자(莊子)》 천지편(天地篇)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요(堯) 임금에게 축원의 말씀을 올렸다. "성인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아들을 많이 낳게 하십시오(使聖人富 使聖人壽 使聖人多男子)"

[방목(榜目)]

부(賦) 삼하(三下)[575]:

이우신(李又新)·김성택(金星澤)·홍우주(洪雨周)·신준모(申濬模)·최동현(崔東顯)·한용근(韓容根)·심낙순(沈樂淳)·김석중(金錫中)·신형모(申衡模)·장주기(張周祈)·김제락(金濟洛)·이원용(李元容)·이배길(李培吉)·최재희(崔在熙)·윤태승(尹泰昇)·김종소(金鐘燾)·김재구(金在龜)·남윤승(南允升)·윤익선(尹益善)·한진욱(韓鎭彧)·김진수(金眞秀)

[榜目]

賦三下 李又新 金星澤 洪雨周 申濬模 崔東顯 韓容根 沈樂淳 金錫中 申衡模 張周祈 金濟洛 李元容 李培吉 崔在熙 尹泰昇 金鐘燾 金在龜 南允升 尹益善 韓鎭彧 金眞秀

차상(次上)[576]:

조장년(趙長年)·정학조(鄭鶴朝)·정낙연(鄭樂淵)·이종덕(李鐘德)·이만용(李晩容)·김용(金溶)·정우용(鄭禹容)·이용원(李容元)·정낙화(鄭樂和)·이호(李灝)·김기오(金箕五)·이수만(李壽萬)·김준(金準)·심낙선(沈樂善)·홍의순(洪義淳)·심태영(沈泰永)·한명이(韓明履)·이재유(李栽游)·윤찬(尹燦)·이수억(李壽億)·임태원(任泰元)·박뢰원(朴賚源)·정기학(鄭基學)·홍대원(洪大元)·윤달선(尹達善)·최숙(崔淑)·윤돈(尹燉)·최중의(崔重義)·이배철(李培哲)·정영일(鄭永一)·황기덕(黃基德)·심노증(沈魯曾)·원세윤(元世胤)·최환달(崔煥達)·신익모(申翼模)·이경회(李慶會)·정현풍(鄭鉉豊)·박재수(朴載壽)·최기호(崔氣鎬)·윤영배(尹榮培)·박화수(朴華壽)·이의익(李義翼)·유신환(兪宸煥)·서경보(徐檠輔)·신경(申綮)·김영호(金永浩)·한정이(韓正履)·윤치만(尹致萬)·이양익(李陽翼)·박진수(朴振壽)·최정순(崔靖淳)·조강년(趙崗年)·한치홍(韓致弘)·이용재(李容載)

次上

趙長年 鄭鶴朝 鄭樂淵 李鐘德 李晩容 金溶 鄭禹容 李容元 鄭樂和 李灝 金箕五 李壽萬 金準 沈樂善 洪義淳 沈泰永 韓明履 李栽游 尹燦 李壽億 任泰元 朴賚源 鄭基學 洪大元 尹達善 崔淑 尹燉 崔重義 李培哲 鄭永一 黃基德 沈魯曾 元世胤 崔煥達 申翼模 李慶會 鄭鉉豊 朴載壽 崔氣鎬 尹榮培 朴華壽 李義翼 兪宸煥 徐檠輔 申綮 金永浩 韓正履 尹致萬 李陽翼 朴振壽 崔靖淳 趙崗年 韓致弘 李容載

575) 과차(科次)의 하나 . 과거 시험의 성적은 상지상(上之上)·상지중·상지하·이상(二上)·이중·이하·삼상(三上)·삼중·삼하·차상(次上)·차중·차하로 나누고 삼하 이상을 뽑아서 입격(入格)시켰음.

576) 과거(科擧)의 시권(試券)에 매기던 등급 가운데의 하나. 등급은 상상(上上)·상중(上中)·상하(上下)·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로 나뉘어져 있음.

詩三下
鄭相鎭 曺錫建 尹東溥 李鶴休 任百愼 李能彬 韓用冕 李濂 宋正玉 李遠鎭 李敏愚 趙昌年 宋建和 尹鳳浩 金簧秀 金奎應 李奎

시(詩) 삼하(三下) :
정상진(鄭相鎭)·조석건(曺錫建)·윤동부(尹東溥)·이학휴(李鶴休)·임백신(任百愼)·이능빈(李能彬)·한용면(韓用冕)·이렴(李濂)·송정옥(宋正玉)·이원진(李遠鎭)·이민우(李敏愚)·조창년(趙昌年)·송건화(宋建和)·윤봉호(尹鳳浩)·김황수(金簧秀)·김규응(金奎應)·이규(李奎)

次上
李秉德 尹致鳳 李東爀 柳珽 趙熙徹 崔重厚 崔重翼 安思燮 金世斗 李濟翊 柳昌懋 崔鴻錫 任希濂 李運星 李雲驥 鄭大鉉 崔德峻 睦源翼 吳升默 禹宗赫 宋魯和 李敏用 成進修 李翼書 洪厚永 鄭鐸善 許弼 任百謨 趙在寅 李鳳信 朴宗奭 趙萬鵬 洪純謨 沈永奎 尹用善 鄭基奭 崔昌來 李遇新 洪鼎謨

차상(次上) :
이병덕(李秉德)·윤치봉(尹致鳳)·이동혁(李東爀)·유정(柳珽)·조희철(趙熙徹)·최중후(崔重厚)·최중익(崔重翼)·안사섭(安思燮)·김세두(金世斗)·이제익(李濟翊)·유창무(柳昌懋)·최홍석(崔鴻錫)·임희렴(任希濂)·이운성(李運星)·이운기(李雲驥)·정대현(鄭大鉉)·최덕준(崔德峻)·목원익(睦源翼)·오승묵(吳升默)·우종혁(禹宗赫)·송노화(宋魯和)·이민용(李敏用)·성진수(成進修)·이익서(李翼書)·홍후영(洪厚永)·정탁선(鄭鐸善)·허필(許弼)·임백모(任百謨)·조재인(趙在寅)·이봉신(李鳳信)·박종석(朴宗奭)·조만붕(趙萬鵬)·홍순모(洪純謨)·심영규(沈永奎)·윤용선(尹用善)·정기석(鄭基奭)·최창래(崔昌來)·이우신(李遇新)·홍정모(洪鼎謨)

初 三日

設場是日 收券三百三張 夜出榜目
賦題 避正堂舍蓋公 詩題 安知蓋公不往來於其間

초 3일

이 날에 과장(科場)을 설치하여 시권(詩卷) 303장을 거두어 밤에 방목(榜目)을 내었다.

※ 부제(賦題)는 '피정당사(避正堂舍)의 갑공(蓋公)〔避正堂舍蓋公〕' 이고, 시제(詩題)는 '어찌 갑공이 그 사이에 왕래하지 않는가. 〔安知蓋公不往來於其間〕'이다.

[방목(榜目)]
부(賦) 삼하(三下) :
이용원(李容元)·홍우주(洪雨周)·정우용(鄭禹容)·최환달(崔煥達)·이우신(李又新)·이명우(李名愚)·신경(申檠)·정기학(鄭基鶴)·심노증(沈魯曾)·조장년(趙長年)·서경보(徐檠輔)·윤치만(尹致萬)

[榜目]
賦三下 李容元 洪雨周 鄭禹容 崔煥達 李又新 李名愚 申檠 鄭基鶴 沈魯曾 趙長年 徐檠輔 尹致萬

차상(次上) :
신형모(申衡模)·정현풍(鄭鉉豊)·김석중(金錫中)·정낙화(鄭樂和)·심노수(沈魯洙)·김종소(金鐘燾)·김재구(金在龜)·심노필(沈魯弼)·이정택(李鼎澤)·송응만(宋應萬)·신태룡(申泰龍)·조언화(趙彦和)·황기락(黃基洛)·김용(金溶)·이배길(李培吉)·윤찬(尹燦)·홍의순(洪義淳)·이진덕(李鎭德)·　임태원(任泰元)·최환익(崔煥翊)·이의익(李義翼)·최숙(崔淑)·심낙순(沈樂淳)·최정순(崔靖淳)·정낙연(鄭樂淵)·한치홍(韓致弘)·최재희(崔在熙)·박재수(朴載壽)·이원용(李元容)·원세윤(元世胤)·이경회(李慶會)·이양익(李陽翼)·조강년(趙崗年)·김제락(金濟洛)·김기오(金箕五)·안병옥(安秉玉)·신준모(申濬模)·최동현(崔東顯)·신익모(申翼模)·한정이(韓正履)·이용재(李容載)·김진수(金眞秀)

次上
申衡模 鄭鉉豊 金錫中 鄭樂和 沈魯洙 金鐘燾 金在龜 沈魯弼 李鼎澤 宋應萬 申泰龍 趙彦和 黃基洛 金溶 李培吉 尹燦 洪義淳 李鎭德 任泰元 崔煥翊 李義翼 崔淑 沈樂淳 崔靖淳 鄭樂淵 韓致弘 崔在熙 朴載壽 李元容 元世胤 李慶會 李陽翼 趙崗年 金濟洛 金箕五 安秉玉 申濬模 崔東顯 申翼模 韓正履 李容載 金眞秀

시(詩) 삼하(三下) :
조석건(趙錫建)·조창년(趙昌年)·이봉신(李鳳信)·이제익(李濟翊)·백횡진(白潢鎭)·임희렴(任希濂)·조희철(趙熙徹)·윤치봉(尹致鳳)·이운기(李雲驥)·이운성(李運星)·조재완(趙在完)·채노영(蔡魯永)·이익서(李翼書)·홍정모(洪鼎謨)·성진수(成進修)·심영규(沈永奎)·정기석(鄭基奭)·정낙휴(鄭樂休)·최중익(崔重翼)·이우신(李遇新)·최창래(崔昌來)·유정(柳珽)

詩三下
趙錫建 趙昌年 李鳳信 李濟翊 白潢鎭 任希濂 趙熙徹 尹致鳳 李雲驥 李運星 趙在完 蔡魯永 李翼書 洪鼎謨 成進修 沈永奎 鄭基奭 鄭樂休 崔重翼 李遇新 崔昌來 柳珽

次上
金奎應 李基昇 朴斗炫 李能彬 李鶴休 尹東溥 宋正玉 韓用冕 尹鳳浩 睦源翼 李秉德 宋廷和 崔鉉翼 元厚鄧 李壽洪 崔鴻錫 李濂 李東嫩 許弼 尹養浩 洪純謨 鄭圭憲 金秀三 李載恒 朴宗瑜 朴會源 朴漢綺 兪鎭華 趙在性 安思煦 柳昌懋 李廷善 禹宗赫 宋持璟 崔顯周 李雲鵬 鄭大鉉 吳升默 李奎 趙在寅 尹周善 李元基 宋孝玉 宋魯和 朴宗奭 趙基冕 鄭敎承 文在中 李翼魯 鄭鐸善 李秉武 李鵬信 李敏愚 任百愼

차상(次上) :
김규응(金奎應)·이기승(李基昇)·박두현(朴斗炫)·이능빈(李能彬)·이학휴(李鶴休)·윤동부(尹東溥)·송정옥(宋正玉)·한용면(韓用冕)·윤봉호(尹鳳浩)·목원익(睦源翼)·이병덕(李秉德)·송정화(宋廷和)·최현익(崔鉉翼)·원후등(元厚鄧)·이수홍(李壽洪)·최홍석(崔鴻錫)·이렴(李濂)·이동혁(李東嫩)·허필(許弼)·윤양호(尹養浩)·홍순모(洪純謨)·정규헌(鄭圭憲)·김수삼(金秀三)·이재항(李載恒)·박종유(朴宗瑜)·박회원(朴會源)·박한기(朴漢綺)·유진화(兪鎭華)·조재성(趙在性)·안사후(安思煦)·유창무(柳昌懋)·이정선(李廷善)·우종혁(禹宗赫)·송지경(宋持璟)·최현주(崔顯周)·이운붕(李雲鵬)·정대현(鄭大鉉)·오승묵(吳升默)·이규(李奎)·조재인(趙在寅)·윤주선(尹周善)·이원기(李元基)·송효옥(宋孝玉)·송노화(宋魯和)·박종석(朴宗奭)·조기면(趙基冕)·정교승(鄭敎承)·문재중(文在中)·이익로(李翼魯)·정탁선(鄭鐸善)·이병무(李秉武)·이붕신(李鵬信)·이민우(李敏愚)·임백신(任百愼)

初 四日

設場是日 收券二百三十張 夜出榜目
賦題 居士殆將隱 詩題 伊水別墅 見簑笠牽蓮艇白衣與衲僧 泝流吟嘯 歎高逸之情 莫及

과장(科場)을 설행한 이 날에 시권(試券) 230장을 거두어 밤에 방목(榜目)을 내었다.

초 4일

※ 이 날에 부제(賦題)는 '거사는 자못 숨어 산다.［居士殆將隱］'이다. 그리고 시제(詩題)는 '이수별서에서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이가 연정(蓮艇)을 끄는 백의(白衣)가 장삼 입은 중과 더불어 물결을 거슬러 읊조림을 보고 고일(高逸)이 정이 미치지 못함을 탄식한다.［伊水別墅見簑笠牽蓮艇白衣與衲僧泝流吟嘯歎高逸之情莫及］'이다.

[방목(榜目)]
부(賦) 삼하(三下) :
신형모(申衡模)·정낙화(鄭樂和)·김종소(金鐘熽)·김재구(金在龜)·박재수(朴載壽)·한치홍(韓致弘)·서경보(徐檠輔)·이명우(李名愚)·윤치만(尹致萬)

차상(次上) :
이우신(李又新)·원세윤(元世胤)·정학조(鄭鶴朝)·신익모(申翼模)·정기학(鄭基學)·이종덕(李鐘德)·신준모(申濬模)·심태영(沈泰永)·김준(金準)·김성택(金星澤)·김기오(金箕五)·정우용(鄭禹容)·홍우주(洪雨周)

시(詩) 삼하(三下) :
이제익(李濟翊)·임희렴(任希濂)·심영규(沈永奎)·이운기(李雲驥)·김규응(金奎應)·정기석(鄭基奭)·안사섭(安思燮)·최창래(崔昌來)

차상(次上) :
조창년(趙昌年)·조석건(曺錫建)·조희철(趙熙徹)·홍순모(洪純謨)·조재인(趙在寅)·정교승(鄭敎承)·이익서(李翼書)·우종혁(禹宗赫)·이동혁(李東赫)·최홍석(崔鴻錫)·윤치봉(尹致鳳)·임학주(林鶴柱)·채노영(蔡魯永)·이학휴(李鶴休)·최현익(崔鉉翼)·이방헌(李邦憲)·윤동부(尹東溥)·박종석(朴宗奭)·윤봉호(尹鳳浩)·송정옥(宋正玉)

[榜目]
賦三下 申衡模 鄭樂和 金鐘熽 金在龜 朴載壽 韓致弘 徐檠輔 李名愚 尹致萬

次上
李又新 元世胤 鄭鶴朝 申翼模 鄭基學 李鐘德 申濬模 沈泰永 金準 金星澤 金箕五 鄭禹容 洪雨周

詩三下
李濟翊 任希濂 沈永奎 李雲驥 金奎應 鄭基奭 安思燮 崔昌來

次上
趙昌年 曺錫建 趙熙徹 洪純謨 趙在寅 鄭敎承 李翼書 禹宗赫 李東赫 崔鴻錫 尹致鳳 林鶴柱 蔡魯永 李鶴休 崔鉉翼 李邦憲 尹東溥 朴宗奭 尹鳳浩 宋正玉

초 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같은 날 공도회(公都會) 3일을 계획한 뒤에 부제(賦題)에 7인, 시제(詩題)에 9인을 뽑고 곧바로 봉계(封啓)하였다.

初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公都會三日計劃後 賦取七人 試取九人 仍爲封啓

[啓本]

謹 啓爲試取事 本府乙未丙申兩年條 公都會 臣於今月初二日爲始 連三場設行 而試官段文移畿營 以延曙道察訪田齊賢 差送眼同試取後 出榜爲白有如乎 本府無講經儒生願講者 乙仍于依定式 製述元額六人外 加抄二人 以準製講 八人之數是白遣 同入格儒生 開錄于後 爲白乎旀 居首試券 亦爲謄書 上送于 內閣 緣由幷以馳 啓 爲白臥乎事

乙未條 幼學李又新 年二十九 賦二分半 願赴生員試 父學生運翼 幼學洪雨周 年四十 賦二分半 願赴生員試 父成均進士性謨 幼學金在龜 年三十九 賦二分半 願赴進士試 父幼學箕燦 幼學金鐘燸 年五十八 賦二分半 願赴進士試 父通德郎致聖

幼學李雲驥 年五十一 詩二分半 願赴進士試 父通德郎昇鎭

[계본(啓本)]

삼가 시취(試取)한 일을 장계(狀啓)합니다. 본부에 을미·병신 양년조(兩年條) 공도회(公都會)는 신이 이 달 2일에 시작하여 삼장(三場)을 연이어 설행하였습니다. 시관(試官)은 경기 감영(監營)에 글을 띄워 연서도찰방(延曙道察訪) 전제현(田齊賢)을 차송(差送)하여 함께 입회하여 시취(試取)한 뒤에 출방(出榜)[577] 하였습니다. 본부에는 원하는 강경유생(講經儒生)이 없으므로 정식(定式)에 의하여 제술원액(製述元額) 6인 외에 추가로 2인을 더 뽑아서 제강(製講)에 준하니 8인이었습니다. 이에 입격(入格)한 유생(儒生)을 뒤에 개록(開錄)하고 수석(首席)을 차지한 시권(試券)을 베껴 적어서 내각(內閣)에 올려 보내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을미조(乙未條) :

유학(幼學) 이우신(李又新)은 나이 29세이며 부(賦) 2푼 반으로 생원시(生員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학생(學生) 운익(運翼)입니다. 유학(幼學) 홍우주(洪雨周)는 나이 40세이며 부(賦) 2푼 반으로 생원시(生員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성균진사(成均進士) 성모(性謨)입니다. 유학(幼學) 김재구(金在龜)는 나이 39세이며 부(賦)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유학(幼學) 기찬(箕燦)입니다. 유학(幼學) 김종수(金鐘燸)는 나이 58세 이며 부(賦)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통덕랑(通德郎) 치성(致聖)입니다.

유학(幼學) 이운기(李雲驥)의 나이는 51세이며 시(詩)는 2푼 반(半)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통덕랑(通德郎) 승진(昇鎭)입니다.

577)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발표하여 게시함.

유학(幼學) 심영규(沈永奎)의 나이는 32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통덕랑(通德郎) 헌조(憲祖)이고, 생부(生父)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경모궁령(行景慕宮令) 상조(尙祖)입니다. 유학(幼學) 임희렴(任希濂)의 나이는 45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학생(學生) 칠중(喆中)입니다. 유학(幼學) 정기석(鄭基奭)의 나이는 39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생원시(生員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학생(學生) 준용(濬容)이고 생부(生父)는 유학(幼學) 순용(循容)입니다.

幼學沈永奎 年三十二 詩二分半 願赴進士詩 父通德郎憲祖 生父通訓大夫 行景慕宮令尙祖 幼學任希濂 年四十五 詩二分半 願赴進士試 父學生喆中 幼學鄭基奭 年三十九 詩二分半 願赴生員試 父學生濬容 生父幼學循容

병신조(丙申條) :

유학(幼學) 신형모(申衡模)의 나이는 43세이며, 부(賦)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학생(學生)[578] 용록(用祿)입니다. 유학(幼學) 서경보(徐檠輔)의 나이는 33세이며, 부(賦)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유학(幼學) 유성(幼星)입니다. 유학(幼學) 윤치만(尹致萬)의 나이는 63세이며 부(賦) 2푼 반으로 생원시(生員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贈通政大夫左承旨) 겸경연참찬관(兼筵參贊官) 행절충장군순천영장(行折衝將軍順川營將) 형렬(衡烈)입니다. 유학(幼學) 조석건(曺錫建)의 나이는 48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시진(始振)입니다.

유학(幼學) 조창년(曺昌年)의 나이는 36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학생(學生) 만영(萬榮)입니다. 유학(幼學) 이제익(李濟翊)의 나이는 44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진

丙申條

幼學申衡模 年四十三 賦二分半 願赴進士試 父學生用祿 幼學 徐檠輔 年三十三 賦二分半 願赴進士試 父幼學有星 幼學尹致萬 年六十三 賦二分半 願赴生員試 父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 行折衝將軍 順天營將衡烈 幼學曺錫建 年四十八 詩二分半 願赴進士試 父 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 始振 幼學趙昌年 年三十六 詩二分半 願赴進士試 父學生萬榮 幼學李濟翊 年四十四 詩二分半 願赴進士試 父通德郎錫龜 幼學金奎應 年五十八 詩二分半 願赴進士試 父學

578) 각급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배우는 사람을 이르는 말.

生希星 生父學生希理 幼學崔昌來 年三十四 試二分半願赴進士試 父幼學悳鎭

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통덕랑(通德郞) 석구(錫龜)입니다. 유학(幼學) 김규응(金奎應)의 나이는 58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학생(學生) 희성(希星)이며, 생부(生父)는 희리(希理)입니다. 유학(幼學) 최창래(崔昌來)의 나이는 34세이며, 시(詩) 2푼 반으로 진사시(進士試)[579]를 희망하고, 그의 부(父)는 유학(幼學) 덕진(悳鎭)입니다.

初 七日

華寧殿守門將 差下事 封啓

초 7일 화령전 수문장(守門將)을 파견(派遣)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華寧殿 兼守門將洪時榮 瓜遞 代以臣營哨官徐鎬豊 差下爲白去乎 令該曺依定式單付 啓下之地 爲白只爲

[장계(狀啓)]

화령전 겸수문장(兼守門將) 홍시영(洪時榮)의 과체(瓜遞)[580]로 신(臣)의 감영 초관(哨官) 서호풍(徐鎬豊)을 대신 임명합니다. 해조(該曺)로 하여금 정식(定式)에 의하여 단부(單付)[581] 계하(啓下) 하도록 해야합니다.

初 九日

以 華寧殿臘享 祭享 獻官陪 香祝詣齋室

초 9일 화령전 납향(臘享) 제향(祭享)에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재실(齋室)에 나아갔다.

初 十日

臘享 祭享 設行後 封啓

초 10일 납향(臘享)[582] 제향(祭享)을 설행한 뒤에 봉계하였다.

---

579) 문과 응시를 위해서는 우선 생원시와 진사시라는 소과에 급제해야 했는데, 생원 진사가 되는 것도 초시 복시 두 단계를 통과해야 했다. 훗날 생원은 가벼운 칭호가 되었지만 조선 생원시의 고시과목은 '사서의(四書疑)' 1편과 '오경의(五經義)' 1편으로서 사서와 오경을 모두 알아야 붙을 수 있었다. 진사는 이보다 한 차원 높아서 부(賦), 고시(古試), 명(銘), 잠(箴)을 알아야 했다.

580) 벼슬의 임기가 차서 갈길. 또는 갊.

581)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582) 납일(臘日)에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祭祀).

[계본(啓本)]

삼가 제향(祭享)의 일을 봉계합니다. 이 달 10일 화령전 납향(臘享) 제향을 행하는데 신(臣)이 헌관(獻官)으로 참여하여 설행한 뒤에 제관직(祭官職)의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는 일입니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初十日 行 華寧殿臘享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祭官職姓名開錄于後 爲白臥乎事

12일

본영(本營)에 포폄(褒貶) 등제(等第)[583]로 봉발(封發)하는데 과천현감 정만교는 상피(相避)로써 고적(考績)[584]하지 못하는 일을 별계(別啓)하였다.

十二日

本營褒貶等第封發 以果川縣監鄭晩敎 相避不得考績事 別啓

[포폄등제(褒貶等第)]

화령전 겸위장(兼衛將) 박시회(朴蓍會)는 조심하여 받들어 경호함에 상등(上等)이고, 겸령(兼令) 이민영(李敏榮)는 한 마음으로 경근(敬謹)함에 상등(上等)이고, 겸수문장(兼守門將) 홍시영(洪時榮)은 이미 사만(仕滿)[585]하여 상등(上等)이고, 김원호(金遠浩)는 마음을 단속하여 삼감에 상등(上等)입니다. 판관(判官) 이민영(李敏榮)은 바야흐로 곡물(穀物)의 처리를 잘한 것이 좋았거니와 갑작스런 과숙(瓜熟)의 애석함에 상등(上等)이고, 종사관(從事官) 이민영(李敏榮)이 떠나감을 백성들이 애석해 하고 군사들도 애석해 함에 상등(上等)이고, 중군(中軍) 박시회(朴蓍會)는 번거롭지도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도적들을 체포하는 일을 완수하여 상등(上等)이고, 검률(檢律) 변학수(卞學秀)는 율례(律例)를 자못 익혔기에 상등(上等)입니다.

[褒貶等第]

○ 華寧殿兼衛將 朴蓍會 小心拱護上
○ 兼令李敏榮 一念敬謹上
○ 兼守門將洪時榮 已報仕滿上
○ 金遠浩 守鑰恪謹上
○ 判官李敏榮 方喜糴完 遽惜瓜熟上
○ 從事官李敏榮 民方惜去 軍亦同惜上
○ 中軍朴蓍會 不煩不撓 盜戢逋完上
○ 檢律卞學秀 律例頗鍊上

583) 매년 각 고을에서 벼슬아치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 함.
584) 조선 시대 관원의 근무 성적이나 공적·과실 등을 고찰·사정하여 포폄(褒貶)하는 인사 행정을 말함.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실시됨.
585) 조선시대 하급직종의 근무연한·진급상한(進級上限)이 다 채워진 것. 사만거관(仕滿去官)이라고도 함.

○ 別前司把摠　振威縣令 南興中 愆納亟督上
○ 別左司把摠　龍仁縣令 金芸淳 軍民胥悅上
○ 別中司把摠　金魯學 久而益勤上
○ 別右司把摠　安山郡守 李俊秀 來固屬耳上
○ 協守兼把摠　始興縣令 李鳴遠 前詴無改上
○ 斥堠將　迎華道察訪 吳致健 可矯弊邑上
○ 禿城兼把摠　朴耆會 糴政就緒上
○ 屯牙兵把摠　平薪鎭僉使 朴允默 催撫兩得上

별전사(別前司) 파총(把摠) 진위현령 남흥중(南興中)은 건납(愆納)으로 자주 독촉함에 상등(上等)이고, 별좌사(別左司) 파총(把摠) 용인현령 김운순(金芸淳)은 군민(軍民)이 서로 기뻐함에 상등(上等)이고, 별중사(別中司) 파총(把摠) 김노학(金魯學)은 오래도록 더욱더 부지런함에 상등(上等)이고, 별우사(別右司) 파총(把摠) 안산군수 이준수(李俊秀)는 속이(屬耳)[586]의 견고함에 상등(上等)입니다. 협수(協守) 겸파총(兼把摠) 시흥현령 이명원(李鳴遠)은 지난번의 평(評)과 다를 것이 없어 상등(上等)이고, 척후장(斥堠將)[587] 영화도찰방(迎華道察訪) 오치건(吳致健)은 폐읍(弊邑)을 바로 잡을 수 있음에 상등(上等)이고, 독성(禿城) 겸파총(兼把摠) 박시회(朴耆會)는 적정(糴政)[588]의 실마리를 찾음에 상등(上等)이고, 둔아병(屯牙兵) 파총(把摠)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 박윤묵(朴允默)은 최무(催撫)[589] 두 가지를 다 잘함에 상등(上等)입니다.

[別啓]
臣營屬別五司把摠　中別後司把摠 果川縣監鄭晩敎 與臣爲舅甥之親　故去春夏等褒貶時　不得一體磨勘之意 別 啓陳 聞爲白有在果 今秋冬等褒貶段置　不得循例磨勘 是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별계(別啓)]
신의 영(營)에 속하는 별오사(別五司) 파총(把摠) 중 별후사(別後司) 파총(把摠) 과천현감 정만교(鄭晩敎)는 신과 더불어 구생(舅甥)[590]의 친분이 되기 때문에 지난 춘・하등(春夏等) 포폄(褒貶)할 때에 같이 마감하지 못한 뜻을 별계(別啓)로 진술하여 아뢉니다. 그리고 추・동등(秋冬等) 포폄(褒貶)은 전례에 맞춰 마감하지 못하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586) 귀를 기울이고 들음.
587) 조선 시대 총리영(摠理營)에 딸렸던 종6품의 무관직. 영화도찰방(迎華道察訪)이 겸임함.
588) 곡물의 유통을 행하는 정치.
589) 세금의 독촉과 백성을 어루만져 위로함.
590) ①외삼촌과 생질. ②장인과 사위.

14일

현륭원 기신제향(忌辰祭享)에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재실에 나아갔는데 이 날에 봉심각신(奉審閣臣) 김학성(金學性) 영감(令監)[591]이 내려왔다.

十四日

以 顯隆園 忌辰祭享獻官 陪 香祝詣齋室 是日 奉審閣臣 金令學性 下來

15일

제향(祭享)을 설행한 뒤에 봉계(封啓)하고, 새벽에 봉심각신(奉審閣臣)과 더불어 의정부에 들어갔다가 이른 아침에 가서 뵙고 사별(辭別)하였다.

十五日

祭享設行後 封啓 是曉與奉審閣臣 同爲入府 早朝往見 辭別

[계본(啓本)]

삼가 제향의 일을 보고합니다. 이 달 15일 현륭원 기신제향(忌辰祭享)에 신이 헌관(獻官)으로 참여 설행한 뒤에 능 위를 봉심하니 잡초·잡목(雜木)이 없고, 사방 산(山)에도 나무를 범작(犯斫)[592]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의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화령전에 분향(焚香)하고 봉심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十五日 行 顯隆園 忌辰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華寧殿焚 香奉審後 封啓

[장계(狀啓)]

신(臣)이 오늘 화령전을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금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591)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당상관을 말함.
592) 산지(山地)를 범하여 나무를 찍어 냄.

十七日
牛禁另飭事 傳令各面

17일 우금(牛禁)을 특별히 신칙(申飭)하는 일을 각 면(面)에 전령(傳令)하였다.

[傳令]
爲惕念禁斷事 牛隻潛屠 係是三禁之第一條件 而 朝令自來嚴重 營飭繼以申複 是去乙 近來民習 瞥不畏法 種種犯禁 前後現捉 不一而足 言念紀綱 萬萬寒心 牛畜之關係農務 果何如 而豪班頑民 罔念法意 無難冒犯 日就耗縮 歲減一歲耕墾 每患失時 豊歉從以判焉 此豈細故也哉

若或一任拋置 不卽嚴加禁斷 則非但法禁之蕩然 東作不遠 墾闢無路乙仍于 營門之斷斷苦心 牛禁一事 必欲始終牢守 萬不饒改是如乎見今歲除在邇 或慮有奸細輩 恣意私屠之弊 有此先甲之令爲去乎 以此傳令 家諭而戶曉 朝禁而暮飭 俾無一民犯科之地是矣

[전령(傳令)]

척념(惕念)하여 금단(禁斷)하는 일이다. 소를 몰래 도살(屠殺)하는 것은 삼금(三禁)의 첫째 조건으로 조령(朝令)이 엄중하여 영칙(營飭)을 연이어 신복(申複)[593]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백성들의 관습이 번거롭게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종 금령(禁令)을 범하므로 전후(前後)로 드러나게 단속함이 많았건만 생각하면 기강(紀綱)이 이처럼 한심(寒心)한 것인가. 우축(牛畜)은 농무(農務)에 관계되는 것으로 진실로 어떻게 하였기로 호족(豪族) 양반(兩班)과 아둔한 백성들이 법의 뜻을 저버리고 함부로 범하여 어렵게 여기지 않는지라. 따라서 날로 감축되어 해마다 그 해의 경간(耕墾)을 축내어 언제나 농시(農時)를 잃고 이로 인하여 풍흉(豊凶)이 판가름 나니 이것이 어찌 작은 까닭이라고 하겠는가.

만약에 한번 버려두고 엄격하게 금단(禁斷)하지 않으면 법금(法禁)이 탕연(蕩然)할 뿐만 아니라 동작(東作)[594]이 멀지 않거늘 토지를 개간할 길이 없다. 영문(營門)의 단단(斷斷)[595]한 고심(苦心)은 우금(牛禁) 일사(一事)이니 반드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굳게 지키어 만에 하나라도 고쳐 왜곡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에 연말(年末)이 가까운데 혹시나 간세배(奸細輩)들이 방자한 뜻을 가지고 사사롭게 도살(屠殺)하는 폐단이 있을까봐 선갑(先甲)[596]의 영(令)을 내린다. 이것으로 명령을 전하여 집집마다 타이르고 깨우치게 하

593) 같은 사실을 거듭하여 상신(上申)함.
594) 농사를 지음. 또는 그 농사.
595) 마음에 정한 것을 고치지 않음.
596) 앞서 법령(法令)을 새로 만드는 것.

되 아침에 금하고 저녁에 신칙(申飭)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에 범법자(犯法者)가 있으면 반상(班常)을 따지지 말고 일일이 이름을 대고 달려와 아뢰되 법률에 의거 엄한 형벌로 판결함이 마땅하다. 소위 면임(面任)을 맡은 자가 사사로움을 숨기고 아뢰어 오지 않다가 별기감찰(別跂監察)이 염탐(廉探)하던 중에 탄로되면 범인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면임(面任)도 중죄(重罪)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심상(尋常)한 일을 제외하고는 각별히 척념(惕念)하여 거행하되 영이 도달하는 일시와 거행하는 상황을 우선 달려와서 아뢸 것이다.

萬一有冒犯者 是去等 毋論班常 一一指名馳告 以爲嚴刑照律之地 爲旀 所謂面任輩 循私掩匿 不卽報來 是如可 現露於別跂廉探之下則犯者除良 該面任 難免重勘 除尋常惕念擧行 令到日時 擧行形止 先卽馳告向事

20일 화령전 당번(當番)으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24일 경내(境內)의 90세 노인(老人) 및 효행인(孝行人)에게 술과 고기를 가지고 찾아가 문안하는 일을 각 면(面)에 영(令)을 전했다.

二十四日
境內九十老人 及孝行人 酒肉存問事 傳令各面

[전령(傳令)]

모두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나이 많은 사람과 효제(孝悌)하는 사람을 찾아가 살피는 것은 한리(漢吏)[597]의 훌륭한 법이다. 이에 그것을 본 받아 행하고자 하므로 본 면에 거주하는 90세 노인 및 효행인(孝行人)에게 술 1병과 고기 2근씩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기록하고 해당하는 면임(面任)에게 보내어 받은 즉시 찾아가 살핀 뒤에 그 상황을 보고할 일이다.

[傳令]

爲知悉擧行事 歲時 存問高年孝悌 漢吏之良法也 玆欲倣而行之爲去乎 本面九十老人 及孝行人 各酒一壺肉二斤式成單子後錄 出送該面任領納 仍爲存問後 形止馳報向事

597) 중국의 이문(吏文). 이문은 조선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특수한 관용(官用)의 공문서에 쓰이던 서체로 중국의 속어를 섞어서 쓴 순한문이며, 중국과의 외교에서 사용된 글이다. 승문원(承文院) 안에 이문학관(吏文學館)을 두어 관장시켰다.

二十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2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 봉심(奉審)하였다.

二十六日
淸國憲書 下送有 旨 祗受事 封啓

26일 청국(淸國)의 시헌서(時憲書)[598]를 내려 보낸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은 일을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本月二十五日 左副承旨趙秉憲 成貼有旨內 今此淸國憲書 一件下送 卿其營上事有旨一度 臣於當日 在本營祗受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이 달 25일에 좌부승지 조병헌이 성첩(成貼)한 유지(有旨) 내용은 지금에 이 청나라 시헌서(時憲書) 1건을 내려 보내니 경(卿)은 상사(上事)[599]를 영위(營爲)하라는 한차례 유지(有旨)였다. 이에 신은 당일에 영(營)에 있으면서 공경히 받은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 丁酉歲首 應資老人 後錄封啓

같은 날 정유년 설날에 응자노인(應資老人)[600]을 후록(後錄)하여 봉계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 朴蓍會牒呈 則來丁酉歲首 應資老人 修成冊牒報 亦爲白有等以 老人職姓名年歲 後錄馳 啓 爲白臥乎事 [前正言金若水 年八十 住楚坪]

[장계(狀啓)]
본부 판관(判官) 겸임 중군(中軍) 박시회의 첩정을 접하니 다가오는 설날에 응자노인(應資老人)의 책첩(冊牒)을 만들어 보고하였다고 하는 바로 이에 그 노인의 직함과 성명 그리고 연세를 뒤에 적어 치계하는 일입니다. [전임(前任) 정언(正言) 김약수(金若水)의 나이는 80세이며, 초평(楚坪)에 살고 있습니다.]

同日 龍珠寺久居僧徒 依定式後錄 封啓

같은 날 용주사(龍珠寺)에 오래 거주한 스님들을 정식(定式)에 의하여 뒤에 기록하고 봉계(封啓)하였다.

---

598) 역서(曆書). 일명 책력(冊曆)이라고도 함.
599) ①앞에서 서술한 내용. ②군왕이 경영하는 일. ③군왕에게 아뢰는 일.
600) 나라에서 베푸는 노인(老人) 대접에 응합(應合)한 사람.

[장계(狀啓)]

용주사(龍珠寺)에 30년간 오래도록 거주한 스님들은 남한(南漢)과 북한(北漢)[601]의 예(例)에 의하여 수신(守臣)이 장계로 조정에 아뢴 뒤에 첩가(帖加)[602]하여 성급(成給)하는 일입니다. 일찍이 정사년 정식(定式)이 있었던 그 뒤로 기한이 찬 스님들을 연이어 개록(開錄) 치계하여 첩가(帖加)의 은전(恩典)을 입게 하였습니다. 병인년부터 병신년까지 30년이 찰 때 까지 오래 거주한 스님이 5명이 되므로 삼가 정식(定式)에 의하여 기한이 찬 스님들의 명수(名數)를 뒤에 적어 치계하오니 첩가의 일관(一款)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합니다.

[통정(通政) 석의감(釋義坎), 통정(通政) 석치기(釋致琦), 통정(通政) 석선찬(釋善贊), 한산(閑散) 석도균(釋道均), 한산(閑散) 석최열(釋最悅). 이상 5명.]

[狀啓]

龍珠寺 三十年久居僧徒 依南北漢例 令守臣狀 聞後帖加成給事 曾有丁巳定式 而伊後限滿僧徒 連爲開錄馳 啓 俱蒙帖加之 典 是白如乎 自丙寅至丙申 滿三十年久居者 又爲五名 是白乎等以 謹依定式 同限滿僧徒等名數 後錄馳 啓 爲白去乎 帖加一款 令該曹 稟處爲白只爲

[通政釋義坎 通政釋致琦 通政釋善贊 閑散釋道均 閑散釋最悅]

28일

건릉 정조(正朝)[603] 제향(祭享)에 헌관(獻官) 김재삼 대감(大監)이 내려 왔다.

二十八日

健陵 正朝 祭享 獻官金台在三 下來

29일

현륭원 정조(正朝) 제향(祭享)에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나아갔다.

二十九日

以 顯隆園 正朝 祭享 獻官陪 香祝 詣 園所

601)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602) 첩지(牒紙)를 내려 신분을 더함.
603) 정월 초하루. 원단(元旦). 사시(四始). 삼시(三始). 세단(歲旦). 원신(元辰). 원조(元朝). 정단(正旦)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운다.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1월

여 백

初 一日

顯隆園正朝 祭享 以獻官進參後 封啓

초 1일

현륭원 정조(正朝) 제향(祭享)에 헌관(獻官)으로 참여한 뒤에 봉계하였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初一日 行 顯隆園正朝 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계본(啓本)]

삼가 제향(祭享)의 일을 보고합니다. 이 달 초하루에 현륭원 정조(正朝) 제향(祭享)을 행하는데 신이 헌관(獻官)으로 참여 설행한 뒤에 원상(園上)을 봉심(奉審)하니 잡초·잡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산에도 나무를 범작(犯斫)한 폐단이 없었으므로 이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치계하는 일입니다.

同日 因 享役 不得進參於孝成殿禫祀 而詣客舍 行望哭易吉服 愴廓采增 仍行望闕禮 中軍判官迎華察訪 果川縣監 竝參 健陵獻官 入來壯南軒 少話旋發

같은 날 향역(享役)[604]으로 인하여 효성전(孝成殿) 담사(禫祀)[605]에 나아가 참여하지 못하고 객사(客舍)에 가서 망곡(望哭)[606]을 하고 길복(吉服)[607]으로 갈아입으니 슬프고 허전함이 더 하였다. 곧바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중군판관(中軍判官), 영화찰방(迎華察訪), 과천현감(果川縣監) 등이 아울러 건릉헌관(健陵獻官)으로 참여하고 장남헌(壯南軒)에 들어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되돌아갔다.

同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에서 분향(焚香)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장계(狀啓)]

신(臣)이 오늘 화령전에서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

604) 제향(祭享)에 관한 일.

605) 장사를 지낸 뒤 두 돌만에 지내는 제사인 대상(大祥)을 지낸 다음, 그 다음 다음 달 즉 장사를 지낸 후 27개월째 되는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606) 먼 곳에서 임금이나 부모의 상사(喪事)를 당한 때나 곡을 할 자리에 몸소 가지 못하고 그 쪽을 향하여 애곡(哀哭)하는 일.

607)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

그리고 현륭원령 이민기(李民耆)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則今月 園上 殿內 奉審無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초 2일

영(營)으로 부터 떠나서 과천(果川)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필곡(筆谷)에 도착하여 이발(離發)의 계본(啓本)를 봉하고, 또 가을철 훈련을 설행할 계료사(計料事)의 계본(啓本)를 봉했다.

初 二日

自營離發 中火于果川 夕抵筆谷 封離發啓 又封春操設行計料事啓

[장계(狀啓)]

신(臣)이 진하반(陳賀班)에 참여하는 일로써 당일에 떠나서 상경(上京)하는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以陳 賀班進參事 當日發行上京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영(新營)에 기마병과 보병을 올 봄에 훈련시킬 것을 정식(定式)에 의하여 날짜를 정해 설행(設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성(本城) 및 독성산성(禿城山城)의 산성 훈련도 같이 할 것이므로 아울러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도록 바랍니다.

[狀啓]

臣營馬步軍兵 今春習操 依定式 擇日設行 計料爲白乎旀 本城及禿城山城 城操亦爲一體爲之爲白乎乙喩 竝令廟堂 稟 旨分付爲白只爲

초 3일

부묘(祔廟)[608] 전문(箋文)[609] 3부와 존숭(尊崇) 전문(箋文) 3부를 기영(畿營)에 봉송(封送)하였다.

初 三日

祔廟箋文三度 尊崇箋文三度 封送畿營

608) 부태묘(祔太廟). 3년상을 끝낸 뒤에 임금이나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는 일.
609) 나라에 길한 일이나 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써 바치던 4·6체의 글.

[祔廟箋文]

伏以三霜之餘哀　尙切慕深羹墻　兩朝之祔禮　肇稱慶溢宗祏　式序昭穆　允叶情文　恭惟光紹弘圖　遹追來孝　篤宸慕於追遠報本　喪盡哀祭盡誠　纘丕序於遺大投艱　志善繼事善述　迨中月遵常禫之制　而吉日擧陞祔之儀　伏念臣職忝釐東　志切拱北　仰太室宗禋之禮　慟靡逮於遺弓　效華封請祝之規　誠粗殫於擧笏　臣無任望　天仰　聖激切屛營之至

右　大殿

[부묘전문(祔廟箋文)]

엎드려 생각하오니 삼상(三霜)[610]의 남은 슬픔이 오히려 갱장(羹墻)[611]보다 더 깊고, 두 조정의 부례(祔禮)가 비로소 종석(宗祏)[612]에 경사(慶事)가 넘침니다. 소목(昭穆)[613]의 차례가 이어지니 진실로 정문(情文)[614]에 화합하는구나. 공경히 생각하노니 광명(光明)은 넓고 큰 계획에 이어지고, 선왕(先王)의 뜻을 따라 효도하셨습니다. 임금의 사모함은 추원보본(追遠報本)[615]에 돈독하여 초상(初喪)에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祭祀)에는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크나 큰 서열을 이으시니 뜻을 잘 잇고 일을 잘 처리하여 중월(中月)[616]에 상담(常禫)의 제도를 따르고, 길일(吉日)에는 승부(陞祔)[617]의 의식(儀式)을 거행하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은 직책으론 이동(釐東)[618]을 욕되게 하였건만 뜻만은 공북(拱北)[619]에 간절하였습니다. 태실(太室) 종인(宗禋)[620]의 예(禮)를 우러러 보면 아픔이 유궁(遺弓)[621]에 미치지 못하고 화봉청축(華封請祝)[622]의 법을 본받자니 정성이 거홀(擧笏)[623]에 조탄(粗殫)하였습니다.

---

610) 상제(喪制)로 있는 3년의 기간.

611) 우러러 사모함. 중국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 임금이 3년간 요 임금을 사모하여 앉으면 요 임금이 담장에 나타나고 음식을 대하면 국그릇에 비친다는 데에서 나온 말.

612) ①종묘(宗廟) 안의 돌로 만든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장(櫃). ②종묘(宗廟)를 달리 이르는 말.

613)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천자(天子)는 태조(太祖)를 중앙에 모시고 2·4·6세(世)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5·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삼소·삼목의 칠묘가 되고, 제후(諸侯)는 이소·이목의 오묘가 되며, 대부(大夫)는 일소·일목의 삼묘가 됨.

614) 예의(禮意)와 예물(禮物)·위의(威儀).

615)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제사 지내고,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616) 중월(中月)에 담제(禫祭)를 지냄을 뜻함.

617) 제왕(帝王)이나 그 비(妣)가 죽은 뒤 지위를 높이거나 혹은 다른 곳에 있던 임금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의 조상 곁에 모시는 일을 말함.

618) 동쪽 들녘을 다스림. 중국 상고 시대에 강왕(康王)이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동쪽 들녘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데에서 나온 말.

619) 모든 별이 북극성(北極星)으로 향하는 것과 같이 사방(四方)의 백성들이 천자(天子)의 덕화(德化)에 귀의(歸依)하는 것.

620) 조상의 제사.

621) 황제(黃帝)가 활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갔음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죽음을 말함.

622) 중국 요(堯) 임금이 화(華) 지방을 순행할 때 그곳의 봉인(封人)이 요 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수(壽)·부(富)·다남(多男)을 축복하였다고 한데에서 나온 말.

신은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624]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 위는 대전(大殿)에 보내는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오니 희사(熙事)[625]가 비로소 상담(常禫)[626]에 이루어지니 삼상(三霜)이 갓 끝남이 슬프고 번거로운 예(禮)를 종묘 제사에 거행하여 양성(兩聖)의 승부(陞祔)를 우러러 봅니다. 이에 슬픔과 기쁨이 교절(交切)하고 신인(神人)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공경하여 생각하니 덕(德)은 요(堯)임금의 여식(女息)[627]과 견줄 만 하고, 공(功)은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을 넘어섰습니다. 황조(皇祖)[628]의 짝이 되어 덕화(德化)를 도왔으니 호범(壺範)이 크게 빛나고 영고(寧考)[629]를 낳아서 천명(天命)을 돈독히 하고 자애로우신 은혜가 두루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에 성대한 예(禮)가 비로소 태실(太室)에 걸 맞춰 연하(燕賀)[630]가 흔정(昕庭)[631]에 번갈아 올랐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보배로운 함(函)을 공경히 받들어 그나마 호배(虎拜)[632]의 정성을 다 하건만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 위는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올리는 전문(箋文)임.

伏以熙事 載成於常禫 愴三霜之甫終 縟禮爰擧於宗禋 仰 兩聖之陞祔 悲喜交切 神人共休 恭惟德媲女堯 功邁母任 配 皇祖而贊化 壺範丕彰 誕 寧考而篤休 慈恩普洽 迨殷禮肇稱於 太室 而燕賀交騰於昕庭 伏念臣績乏保釐 誠切攢祝 遺弓莫逮 尙纏蟻褥之恫 寶函祗擎 粗殫虎拜之悃 臣無任望 天仰 聖 激切屛營之至
右 大王大妃殿

623) 거홀격사(擧笏擊蛇)의 약어(略語)로써 담력(膽力)과 식견(識見)을 갖춤.
624) 마음의 안정이 안 되어 방황(彷徨)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양.
625) 상서(祥瑞)로운 일. 전(轉)하여 임금의 위대한 업적을 비유함.
626) 상사(祥事)와 담사(禫事), 곧 대상(大祥)과 담제(禫祭). 상(常)은 상자(祥字)와 통함.
627) 당원(唐媛)은 도당씨(陶唐氏)인 요임금의 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말한다. 이 두 딸은 순임금에게 시집가서 순임금의 후예 요(姚)씨의 시조가 되었다. 본래 신성한 덕(德)을 드러내어 평범한 사람이라도 관계치 않은 것.
628) 임금의 할아버지, 또는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존칭.
629) 재위 기간 동안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가신 부왕(父王)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의 선고(先考)이자 선왕(先王)을 높혀 호칭하는 말.
630) 제비가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축하하며 기뻐한다는 뜻으로 남이 집을 지은 것을 축하하는 말.
631) 새아침이 밝아오는 뜰. 여기에서는 희망찬 왕실의 뜰을 뜻함.
632) 신하가 임금에게 배알하는 예(禮).

伏以殷制甫闋　愴祥禫之奄過　魯廟虔禋　仰昭穆之幷祔　縟儀載擧　餘哀罙深　恭惟祥膺曾沙　養隆長樂　德侔夏塗山配禹　六闈均頌陰教　功協周太任誕文　八域徧荷慈覆　肆當喪制纔畢　爰覩祔禮之肇成　臣職忝保釐　誠切蹈忭　喬山之歲月易邁　尙纏拚龍髯之恫　慈極之春暉方舒　粗殫祝鮐背之悃　臣無任望天仰　聖　激切屛營之至

右　王大妃殿

엎드려 생각하오니 은제(殷制)[633]가 갓 끝이나니 상담(祥禫)이 문득 지나감을 슬퍼하고, 노묘(魯廟)에 정성으로 제사지내고 소목(昭穆)의 병부(幷祔)를 우러러 봅니다. 이에 번거로운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니 남은 슬픔 더 더욱 깊습니다. 공경히 생각하니 상서(祥瑞)로움이 증사(曾沙)[634]를 안아 장락(長樂)[635]을 융성(隆盛)하게 길렀습니다. 덕성(德性)으로는 우(禹) 임금의 처(妻)인 하(夏)나라 도산(塗山)[636]처럼 되길 힘쓰니 여섯 명의 빈궁(嬪宮)이 모두 (왕비의) 음교(陰教)[637]를 칭송하였습니다. 공적(功績)은 주(周)나라 태임(太任)[638]이 문왕(文王)을 낳은 일에 따르니 온 나라 안이 두루 자애로운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상제(喪制)는 겨우 끝이 나고 이에 부례(祔禮)가 비로소 이루어짐을 보나니 신의 직무는 편안하게 다스려 백성을 보호함에 욕이 되었건만 정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례(賀禮)를 드립니다. 교산(喬山)[639]의 세월이 쉬이 지나가니 오히려 용염(龍髯)[640]이 아픔에 얽매입니다. 대비(大妃)의 봄빛은 바야흐로 펼치는데 그나마 태배(鮐背)[641]의 정성을 다 합니다.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 위는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드림.

---

633) 상(喪)을 마친 뒤에 행하는 성대한 제례(祭禮). 천자·제후가 3년상을 마치고 조상의 혼령을 합제(合祭)하는 큰 제사.

634) 중국(中國) 춘추시대(春秋時代) 지명(地名)으로 그 곳에 성녀(聖女)가 난다고 하였음. 즉 왕비의 고향을 뜻함.

635) 장락궁(長樂宮). 태후(太后)의 궁전을 말함.

636) 하나라 때 우(禹) 임금의 부인이 된 도산에 살던 여자를 이름.

637) 여자의 교화(敎化). 또는 비빈(妃嬪)의 교화. 집안과 궁궐에서 아내가 남편이나 임금을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르침을 베푼다고 해서 음교라 함.

638) 주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로 손자인 무왕(武王)이 천하를 평정할 때 그를 도운 10명 중의 한명이다.

639) 제왕(帝王)의 능(陵)이 있는 산.

640) 임금이 죽은 것을 뜻함.

641)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

[존숭전문(尊崇箋文)]

엎드려 생각하오니 옛 나라가 새로워지니 천명(天命)이 궁궐에 거듭하시어 태평치세(太平治世)입니다. 큰 덕은 필히 이름을 얻어 양(兩) 대전(大殿)에 숭비(崇賁)[642]의 휘호(徽號)를 바치니 공경히 현창(顯彰)하는 책문(冊文)을 받들어 빛나는 휘음(徽音)[643]입니다. 공손히 생각하니 크게 연모(燕謨)[644]를 이어 뛰어난 덕을 세우셨습니다. 자애로운 교훈(敎訓)은 공경히 임사(任姒)[645]를 받들어 삼조(三朝)에 성독(誠篤)하고 성효(聖孝)는 순임금과 문왕(文王)에 진실로 부합하여 한 나라를 길러 융성케 하셨습니다. 드디어 열성조(列聖朝)의 상례(常禮)에 따라서 양(兩) 자전(慈殿)에게 휘칭(徽稱)[646]을 바치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은 공적(功績)이 이동(釐東)에 결핍했건만 뜻은 공북(拱北)에 절실합니다. 몸소 임금을 모시고 성대한 의식을 변오(抃鰲)[647]에 보게 되어 손으로 낭함(琅函)을 받들고 작은 정성으로 그나마 배호(拜虎)에 다합니다. 이에 신은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 위는 대전(大殿)에 올리는 전문(箋文).

[尊崇箋文]

伏以舊邦維新 命重宸闈 亨泰之治 大德必得名 兩殿進崇賁之號 虔奉顯冊 光昭徽音 恭惟丕承燕謨 誕懋駿德 慈訓祗奉於任姒 誠篤三朝 聖孝允符於舜文 養隆一國 肆遵列聖朝彝典 爰進兩慈殿徽稱 伏念臣績乏釐東 志切拱北 躬陪玉仗 縟儀幸覩於抃鰲 手擎琅函 徵忱粗殫於拜虎 臣無任望 天仰 聖 激切屛營之至

右 大殿

엎드려 생각하니 보록(寶籙)[648]을 동쪽 하늘에 펼치어 드디어 하늘의 명(命)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첩보(牒報)를 길일(吉日)에 받들어 더욱더 홍명(鴻名)[649]이 솟아오릅니다. 현창(顯彰)하는 책문(冊文)은 거듭 드높이고 아름다운 모범이 크게 천명(闡明)하셨

伏以衍寶籙於 慈天 聿迓駿命 擎瑤牒於吉日 加隆鴻名 顯冊荐揚 徽範丕闡 恭惟媲周母姒 軼宋女堯 配 皇祖而治贊翟褕 慈恩普洽於寰

642) 문식(文飾)을 숭상(崇尙)함.
643) 아름다운 덕행과 언어에 따른 좋은 평판.
644) 자손에게 끼친 좋은 계책.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꾀.
645) 태임(太任)과 태사(太姒). 태임은 주(周) 문왕의 어머니이고, 태사는 문왕의 처(妻)로서 무왕의 어머니이다.
646) 휘호(徽號)·시호(諡號)·묘호(廟號) 등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647) 자라를 치면서 축하(祝賀)함.
648) 임금에 자리에 오를 전조(前兆).
649) 임금의 이름이나 명예. 또는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왕실의 명예나 그 은총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됨.

宇 翊 聖躬而謨詒燕翼 宗祊永鞏泰磐肆當 慈德之光臨 擧仰徽稱之加晉 伏念臣忝叨華封 竊效崇呼 頌柔化於克儉克勤 誠懸北極 介景福於曰康曰壽 拜獻南山 臣無任望天仰 聖 激切屛營之至

右 大王大妃殿

습니다. 공손히 생각하니 주(周) 무왕(武王)의 어머니 태사(太姒)인 듯 요(堯)임금의 딸인 듯 황조(皇祖)의 짝이 되어 치적(治績)이 적유(翟褕)[650]를 도우니 자은(慈恩)이 환우(寰宇)[651]에 흡족하고, 임금을 도와서 연익(燕翼)[652]을 도모하니 종묘(宗廟)가 크게 탄탄합니다. 드디어 자덕(慈德)의 빛이 내리어 휘칭(徽稱)의 더함을 우러러 봅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욕되게 화봉(華封)[653]를 모시고 나름대로 숭호(崇呼)[654]를 외쳤습니다. 극검(克儉)[655]·극근(克勤)[656]에 유화(柔化)를 칭송하니 정성(精誠)은 북극성(北極星)에 달렸고, 왈강(曰康)·왈수(曰壽)에 경복(景福)을 도와 남산(南山)에 절 드렸습니다. 이에 신은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 위는 대왕대비(大王大妃殿)에 드리는 전문(箋文).

伏以宮闈衍祥 八埏共囿於慈覆 琬琰昭度 二字棻稱於徽猷 勉回謙衷 丕膺渙號 恭惟德協儷日 位尊長秋 脫珥周闈 配 寧考而協贊鴻化 服練漢殿 翊 聖躬而永裕燕謨 玆當寶曆之綿休 爰擧玉

엎드려 생각하노니 궁위(宮闈)가 상사(祥事)를 펴니 온 나라안이 모두 자애로운 보살핌을 입고, 완염(琬琰)[657]이 법도에 밝으니 이자(二字)[658]가 휘유(徽猷)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힘씀이 겸손하고 충성스러워 크게 칙명(勅命)을 받았습니다. 공손히 생각하노니 덕(德)은 여일(麗日)[659]에 화협하고 자리는 장추(長秋)[660]에 더 높이고서 귀걸이를 주위(周闈)에서 떼셨

650) 붉은 비단에 꿩의 깃으로 장식한 왕비의 옷.
651) 천자가 다스리는 광의 전체.
652) 조상이 사람을 도와서 편안하게 하는 것.
653) 요(堯)임금이 화봉(華封:지금의 용계현(龍溪縣) 서북) 지방을 순행하였을 때, 화봉인(華封人)이 요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聖人)은 수(壽)하시고, 성인은 부(富)하시고, 성인은 다남(多男)하시라.'고 축복하였다는 고사(故事). 화봉 삼축(華封三祝).
654) 백성이 임금의 만세(萬歲)를 부름.
655) 집에서는 능히 사사로운 공양(供養)을 검소하게 한다는 뜻.
656) 나라의 일에 능히 부지런하여야 한다는 말.
657)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홀. 곧 보책(寶冊)을 가리킴.
658) 여기에서는 전문(箋文)을 지어서 이름붙인 두 글자.
659) 태양과 짝함. 여기에서는 군왕(君王)과 짝함을 뜻함.
660) 장추전(長秋殿). 한대(漢代)의 후비(后妃)의 궁전. 여기서는 왕대비전을 말함.

습니다. 영고(寧考)를 짝하여 홍화(鴻化)를 도와 이끌었건만 복련(服練)[661]한 대비전(大妃殿)입니다. 임금을 도와서 영원토록 연모(燕謨)를 넉넉하게 하셨나니 이에 보력(寶曆)[662]의 면면한 아름다움을 당하여 옥첩(玉牒)의 양렬(揚烈)함을 거행합니다.

牒之揚烈

엎드려 생각하노니 신은 동교(東郊)를 다스려 공적(功績)이 결핍하였건만, 대궐을 향하는 정성만은 깊습니다. 검옥(檢玉)[663]과 금니(金泥)로서 전문(箋文)을 봉(封)하여 백세(百世)토록 널리 퍼져나갈 아름다움을 보고, 해와 달처럼 끝없는 만년(萬年)의 축복을 빕니다. 이에 신은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伏念臣釐東績乏　拱北誠深
檢玉泥金　幸覩百世之闡美
升日恒月　粗伸萬年之祝禧
臣無任望　天仰　聖　激切屛
營之至

- 위는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올리는 전문(箋文).

右 王大妃殿

초 4일

내각전문(內閣箋文)을 두 차례 수정(修呈)하였다.

初 四日

內閣箋文 二度修呈

[부묘전문(祔廟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양암(亮闇)[664]의 복제(服制)가 끝나니 바야흐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생각이 깊고, 조상 제사(祭祀)의 예(禮)가 중하니 드디어 승부(陞祔)[665]의 의식(儀式)을 거행하여 신(神)과 사람이 서로 즐거워하고 넓은 땅이 함께 경사스러웠습니다. 공손히

[祔廟箋文]

伏以亮闇制終　方深慨廓之
思　宗禋禮重　聿擧陞祔之儀
神人胥歡　區宇同慶　恭惟學
懋就日　孝著出天　駿德自昭
於遵先　湯盤存警　燕謨祗承

661) 연복(練服). 연제(練祭) 때부터 담제(禫祭)까지 입는 거친 명주로 지은 상복(喪服).
662) ① 임금의 나이를 지칭하는 말. ② 임금 또는 천자(天子)의 운(運). ③ 왕실의 역사
663) 서함(書)의 덮개[蓋]를 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임.
664) 임금이 거상(居喪)함을 이르는 명칭.
665) 제왕(帝王)이나 그 비(妃)가 죽은 뒤 지위를 높이거나 혹은 다른 곳에 있던 임금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의 조상 곁에 모시는 일을 말함.

於啓後 堯羹寓誠 玆當三霜之奄過 爰擧 兩廟之躋祔 伏念臣誠切請祝 績乏保釐 愀如見一倡三歎 恫莫逮於褥蟻 熾而昌萬有千歲 誠粗殫於抃鰲 臣無任望 天仰聖 激切屛營之至

생각하니 배움은 취일(就日)[666]에 힘쓰고 효성(孝誠)은 출천(出天)에 나타나셨습니다. 준덕(駿德)은 스스로 선대(先代)의 덕업(德業)을 따름에 밝아서 탕반(湯盤)[667]의 경계를 간직하고, 연모(燕謨)가 공경히 후생(後生)들을 깨우쳐 열어주고 요갱(堯羹)[668]은 효성(孝誠)을 붙이셨습니다. 이에 3년이 불현듯 지나가고 양묘(兩廟)의 제부(躋祔)[669]를 거행하십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정성만은 뵙고 축원(祝願)드리기를 절실하건만 공적(功績)이 보리(保釐)에 부족합니다. 삼가 공손하게 한번 제창(提倡)하면 세 번 개탄(嘅歎)하는 아픔이 욕의(褥蟻)에 미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치열하게 만천세(萬千歲)를 불러서 그나마 정성을 변오(抃鰲)에 다 합니다. 신(臣)은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尊崇箋文]

伏以璇闈 衍慶元春 屆卽吉之期 瑤牒昭休 慈極 進揚徽之號 誠深愛日 頌騰描天 恭惟丕顯丕承 止仁止孝 寶扆 纘艱大之緖 夙夜采勤長樂 奉怡愉之歡 春暉欲報 拚懿號而 慈德貢闡 進顯冊而 宸孝益光 伏念臣猥厠邇班 獲覩縟禮 無疆惟休 無

[존숭전문(尊崇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선위(璇闈)[670]에 경사스런 일이 펼치는 원춘(元春)은 즉길(卽吉)[671]의 기약이며, 요첩(瑤牒)이 빛나고 아름다우니 왕대비께 양휘(揚徽)의 호(號)를 바치셨습니다. 효성(孝誠)은 애일(愛日)[672]에 더 깊고 칭송(稱頌)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공손히 생각하니 크게 나타나고 크게 이었나니 보의(寶扆)[673]는 간대(艱大)한 서업(緖業)을 이어서 숙야(夙夜)로 더욱더 부지런하고, 장락(長樂)은 이유(怡愉)의 기쁨을 받들어 춘휘(春暉)[674]에 갚고자 하였습니다. 의호

666) 요제(堯帝)의 덕(德)을 칭찬하는 취지여일(就之如日)의 약어(略語).
667)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목욕하던 그릇으로 나날이 덕업(德業)을 새롭게 한다는 명문(銘文)이 있음.
668)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뒤를 순(舜) 임금이 요 임금을 사모하여 국그릇을 대하면 그 국그릇에 요 임금이 비쳤다는 효성(孝誠)의 지극함을 뜻함.
669)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의 조상 곁에 올려서 부제(附祭)함.
670) 황태후(皇太后)의 궁전(宮殿)을 말함.
671) 상기(喪期)가 다 되어 상복(喪服)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 입는 것.
672) 해를 아낀다는 뜻으로, 부모에 대한 효양(孝養)을 말함.
673) 도끼 모양을 수 놓은 병풍. 여기에서는 병중에 있는 임금을 말함.

(懿號)를 반포하니 자덕(慈德)이 크게 천명(闡明)하고, 현책(顯冊)을 바치니 임금의 효가 더욱더 빛납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외람되게 근신(近臣)의 대열에 끼여서 성대한 예(禮)를 얻어 보았습니다.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사랑하니 연하(燕賀)가 숭호(嵩呼)[675]에 거행하니 반드시 그 수명(壽命)과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정성을 그나마 화축(華祝)에 다하니 신은 망천(望天)·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여 병영(屛營)의 지극함이 격절(激切)합니다.

疆惟恤 燕賀載擧於嵩呼 必得其壽 必得其名 蟻忱粗殫於華祝 臣無任望 天仰 聖激切屛營之至

초 5일

권농(勸農)·윤음(綸音)을 공경히 받고 그 상황을 봉계(封啓)하였다.

初 五日

勸農綸音祗受 形止封啓

[장계(狀啓)]

이 달 초이튿날 우승지(右承旨) 박종길(朴宗吉)이 성첩(成貼)한 유지(有旨) 내용에, '왕(王)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공경히 생각하니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는 민천(民天)[676]을 한결같이 생각하시어 조차(造次)를 게을리 하지 않고 곡식 농사의 어려움을 근심하셨도다. 그 34년 사이에 휴기(休氣)가 충색(充塞)하여 천화(天和)를 기다렸건만 태사(太史)의 다년간의 기록이 한결같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에 방백(方伯)·수령(守令)이 일찌기 몸소 보고 찬앙(攢仰)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나 충인(冲人)은 크고 어려운 사업을 이어서 3년이 끝나니 유모(孺慕)[677]가 더욱더 새로웠다. 전대(前代) 영인(寧人)[678]의 유지(遺志)를 이어 석일(昔日)에 회보(懷保)한 지인(至仁)·성덕(盛德)이 더

[狀啓]

本月初二日 右承旨朴宗吉成貼有 旨內 王若曰嗚呼 恭惟我 先大王 一念民天 造次靡懈 恤恤乎稼穡之艱難 光御三十四年之間 休氣充塞 天和徯應 太史有年之書 屢書而不一書 此皆今日方伯守令之所嘗躬覩 而攢仰者也

藐予冲人 嗣承艱大之業 三霜奄畢 孺慕罙新 其所以欽承 前寧人之 遺志 仰體 昔日懷保之 至仁盛德 尤在於

674) 부모의 따뜻한 보호. 부모의 은덕(恩德).
675) 백성이 임금의 만세(萬歲)를 부름.
676) 백성이 하늘같이 여기는 것 곧 식량.
677) 어린아이가 어버이를 따르듯이 몹시 사모함.

勤民而重農 夫農者 天下之大本 而穀者 民之司命也 農不殖則民不穀 民不穀則國無以爲國 是以神農親耕禹稷躬稼 文王卽康功田功 古昔先王 所以汲汲焉 惟是之爲先務

農之爲務 最於不失其時 仰候中星 旁察五運水功之蓄洩 土宜之燥沃 農器之便利無不備具 莫或愆失然後 始可望於萬億及秭 如京如坻 斯爲農夫之慶 亦惟邦家之上瑞也 其在字牧之任者 孰敢不戒飭省事 抑末敦本 宣揚今日敷告之至意也 況今關北關東 洊歉相仍 流離顚連 近止之憂 迫在呼吸 兩南之綿農 又此大無 哀彼無衣無食 如鶉如鵠者 何賴而爲生 凡係停蠲賙賑之方

욱더 백성을 부지런하게 하여 농사를 중하게 여김을 우러러 체득하였다. 대저 농사는 천하(天下)의 대본(大本)이며 곡식은 백성의 사명(司命)[679]이다. 따라서 농사가 증식(增殖)되지 않으면 백성에게 곡식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나라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신농(神農)께서 몸소 밭을 갈고 우직(禹稷)께서 몸소 곡식을 심었으며 문왕(文王)께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농사일에만 힘쓰게 한 공이 있었다. 예전 선왕(先王)께서 오직 이에 급급하여 먼저 힘썼던 것이다.

농사일은 때를 잃지 않은 것이 최상(最上)이므로 중성(中星)을 우러러 보고 오행(五行)의 움직임을 두루 살펴야 한다. 물을 이용함에 모아놓은 것과 새나가는 것이 있고, 각 지역마다 다른 땅의 성질은 메마름과 비옥함이 있다. 농기(農器)의 편리함을 두루 갖추어 혹이라도 부주의하여 실수하지 않은 뒤에 비로소 수많은 백성이 먹을 수 있다. 수확(收穫)이 풍부하면 이것이 농부의 경사(慶事)이며 또한 국가의 상서(上瑞)[680]일 뿐이겠는가. 따라서 자목(字牧)[681]의 책임을 진 사람이 누가 감히 계칙(戒飭)하여 일을 살피지 않겠는가. 말업(末業)을 짓누르고 본업(本業)인 농업(農業)을 돈독하게 하여 선양(宣揚)하는 것은 오늘에 펴서 아뢰는 지극한 뜻이다. 하물며 지금에 관북(關北)·관동(關東)에는 거듭 흉년이 이어져서 가족과 헤어져 떠돌고 그 곤궁함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운 근심이 코앞에 닥쳤다. 양남(兩南)지방에 연이은 농사가 또한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 메추라기와 고니 같은 자들이 애처로우니 어디에 힘입어 살 것인가. 무릇 조세(租

678) 본래 세상과 인민을 편안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말로 중국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영왕(寧王)이라 불리는 데 대한 그의 신하들을 뜻하던 말이었는데, 전(轉)하여 선대(先代)의 임금들을 일컫기도 하였음.
679) 생살(生殺)의 권한을 쥐는 것. 또 가장 의지(依支)가 되는 것.
680) 하늘이 선정(善政)을 느껴 내려주는 길조(吉兆).
681) 지방 수령(守令)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림.

稅)와 부역을 덜어주거나 정지시키고 진휼하여 구제하는 방책에 걸려있는 것이다.

하늘같은 자덕(慈德)[682]을 우러러 받으니 봄볕과 같은 따뜻함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모두 태화(太和)[683]·도균(陶均)[684]의 가운데에 있다. 비록 그렇게 굶주리고 동한(凍寒)이 살을 에는 듯하더라도 결코 자덕(慈德)의 뜻을 우러러 느끼어 울부짖음을 웃음으로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어 보호하고 어루만지고 휴지(携持)하여 각각 그의 보금자리를 편안케 하여 그의 생업(生業)에 종사케 하여야 한다. 지금에 이 정월(正月)이 돌아와서 준발(駿發)[685]이 가까이 있으니 농부는 민첩하고, 농사일을 권장하는 관리가 기쁨에 이르면 복을 받고 편안함을 누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태평함은 지금부터 시작되니 마치 좌부(左符)[686]를 잡은 것과 같다. 아! 너희 관리들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혹시라도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진휼하여 구제하는 계책을 저버리지 말 지어다.

仰藉如天之 慈德 春煦海涵 咸育於太和陶均之中 雖其頷頤 凍寒切於肥膚 必有以仰感 德意 回咷爲笑 轉苦爲樂保抱携持 各安其堵 各趨其業 今玆靑陽載回 駿發在爾 農夫克敏 田畯至喜 受福降康 同我泰平 自今伊始 如執左符 嗚呼咨爾有司之臣 殫竭乃心 罔敢或逸 勸課濟恤之策

진실로 농사에 이롭고 백성에게 여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각 그 힘을 다하여 우리 팔도(八道)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춘대(春臺)[687]의 조화(調化)를 입어 영원토록 부옥(蔀屋)[688]이 수심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독 한 사람의 다행이 아니라, 실지로 온 나라 백성의 복(福)이니 모두 알아서 지극한 뜻에 보답하라.' 는 한차례의 유지(有旨)가 있었습니다.

신(臣)은 이 달 초 4일 술시(戌時) 즈음에 서울에 있으면서 공경히 받은 뒤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박시회에게 감결(甘結)을 띄워 신칙(申

苟有利於農 而裕於民者 各盡其力 俾我八方民庶 共沐春臺之化 永無蔀屋之愁 非獨予一人之幸 實惟 宗社生靈之福 咸須諦悉 庸副至意 事 有 旨一度 臣於今月初四日戊時量 在京祗受後 發甘申飭於本府判官 兼任中軍朴著會 使之一一曉諭於境內民人等處爲白乎旀 臣

682) 군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덕업(德業)을 뜻함.
683) 음양이 조화된 원기.
684) 도공(陶工)의 녹로(轆轤). 천하를 잘 다스림의 비유.
685) 재빠르게 경작(耕作)함을 이름.
686) 부계(符契)의 왼쪽 반.
687) 《노사(老子)》에 나오는 말로 봄경치가 한창 좋을 때 내(臺)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즐거워진다는 뜻으로, 성세(盛世)를 비유한 것임.
688) 풀로 지붕을 이은 작은 집. 또는 차양을 쳐서 간이로 만든 집.

亦謹當隨時審察 勸課其趨澤 補助其艱乏 以對揚重農裕民之 盛德至意 計料緣由馳 啓爲白臥乎事

飭)하고 그로 하여금 경내(境內)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알아듣도록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신(臣)도 마땅히 때에 맞춰 살피고 그 추택(趨澤)[689]을 권장하고 간핍(艱乏)을 도와서 농사를 중하게 여기고 백성을 여유롭게 하라는 성덕(盛德)의 지극한 뜻을 대양(對揚)[690]할 생각입니다. 이에 그 연유(緣由)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六日

孝成殿 孝和殿 祔 太廟祗迎班 進參 仍留 宗廟門外依幕 是夜入參春享 大祭

초 6일

효성전(孝成殿)과 효화전(孝和殿)을 부 태묘(祔太廟)[691] 지영반(祗迎班)[692]으로 진참(進參)하고 곧바로 종묘(宗廟) 문 밖 의막(依幕)[693]에 머물렀다가 이날 밤에 춘향대제(春享大祭)에 참가하였다.

初 七日

宗廟 親展謁出還宮時 陪從仍參 問安班陳賀時 陞 殿

초 7일

종묘에 임금이 친히 전알(展謁)[694]하고 나와서 환궁(還宮)할 때에 모시고 따라가서 참배하고, 문안반(問安班) 진하(陳賀)[695] 할 때에 전(殿)에 올라갔다.

初 十日

大王大妃殿 王大妃殿 上尊號陳 賀時 陞 殿

초 10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에 휘호(徽號)를 올려 진하(陳賀)할 때에 전(殿)에 올라갔다.

同日 頒赦文祗受 形止封啓

같은 날 반사문(頒赦文)[696]을 공경히 받고 그 상황을 봉계(封啓)하였다.

689) 우계절(雨季節)을 신속하게 대비함.
690) 군명(君命)을 받들어 그 마음을 하민(下民)에게 칭양(稱揚)함.
691) 임금이나 왕비의 3년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태묘(太廟)인 종묘로 옮겨 모시는 일.
692) 감찰(監察)이 아침에 사헌부 장관을 맞이하는 것이나, 백관이 임금의 환행(還行)을 공경히 맞이함을 뜻함.
693) 임금이나 관원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막사.
694) 종묘(宗廟)·능침(陵寢)·문묘(文廟)·궁궐(宮闕) 등에 참배함.
695)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조신(朝臣)들이 모여 임금에게 나아가 축하하는 일.
696) 죄인의 사면(赦免)을 반포하는 글.

[사문(赦文)]

왕(王)께서 이같이 말 하셨다. 아! 돌아가신 할바마마의 상담(祥禫)을 뒤 이어 나는 선왕(先王)의 소목(昭穆)에 대향(大享)을 마치고 아울러 부묘(祔廟)하였습니다. 드디어 방락(訪落)[697]의 남기신 뜻을 가지고 알밀(遏密)[698]의 남은 생각에 답하노니 예(禮)를 감히 지나치지 못하여 슬픔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공경히 생각하니 우리 순종대왕(純宗大王)께서는 모습이 전왕(前王)보다 빼어나고 운수(運數)가 태평함을 꾀하니 화저(華渚)[699]의 홍류(虹流)[700]에 부합하며, 이잠산(尼岑山)에 경강(庚降)[701]의 모임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년(幼年)에 있어서 숙야(夙夜)로 기명(基命)[702]의 생각에 골몰하고, 오랜 기간의 창도(唱導)함에 미쳐 시종일관 진학(典學)[703]의 공(功)을 거두었습니다. 종묘(宗廟)의 공경에 이르고 전궁(殿宮)의 기쁨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해(東海)에 이르러 일월(日月)의 밝음을 맞이하고 천지(天地)의 큼을 용납하셨습니다.

비유하건데 북신(北辰)[704]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아! 환역(環域)[705]하는 억만의 군생(群生)을 수고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오려는 사람을 오게 하며, 사특(邪慝)한 사람을 바르게 하고, 그릇된 사람을 곧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향국(享國) 34년에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며,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이로움을 이롭게 여김을 스스로 얻어

[赦文]

王若曰 於乎 繼序皇朝祥禫外除此予大享 先王昭穆竝祔 肆將訪落之遺意 庸答遏密之餘思 禮不敢過 哀有未盡 恭惟我 純宗大王 姿挺上聖 運撫太平 華渚虹流之符 尼岑庚降之會 在 冲齡而懋夙夜基命之念 逮久道而 收終始典學之功 致 宗廟之敬 承 殿宮之歡 放諸東海 而準協日月之明 包天地之大

譬如北辰其居 嗟環域億萬群生 勞來匡直之 使自得厥享國三十四載 親賢樂利之於不忘 所以 聖功神化之大成 罔非天德王道之極致 廓掃潢醜 邦討用張 痛闢洋邪民彝攸叙 有夏象物之器 魑

697) 《시경(詩經)》 〈주송(周頌)〉의 편명(篇名).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묘당(廟堂)에서 군신(群臣)들에게 도의(道義)를 강론(講論)한 내용임.

698)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요(堯)임금이 죽자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삼년 동안 온 세상에 음악소리가 끊어졌다고 함.

699) ①고대 전설상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해(東海)의 섬. 곧 우리나라를 뜻함. ②우리나라의 임금

700) ①무지개가 물에 비치어 움직임. ②임금의 탄생

701) 서쪽하늘의 경성(庚星)이 내리비침.

702) 기명장(基命章)의 약칭(略稱). 임금이 처음 천명(天命)을 받고 즉위함.

703) 임금이나 왕세자가 학문에 전력(全力)함.

704) 북극에 있는 별. 북극성. 여기에서는 군왕을 비유함.

705) 북극성(北極星)이 운행(運行)하는 구역(區域)에 환역(環域)이 있는데 그 구역안으로 사방의 별들이 들어감. 곧 신하가 군왕을 향해 감을 비유함.

魅莫逃 方春布德之綸 草木皆樂 精義則俟百不惑 治法則兼三以施 國是大定於紹先 兢兢乎陰陽淑慝之際 天命永祈於誠小 憧憧乎水旱灾咎之間 其惟聰明睿智 神武而不殺夫 斯乃鰥寡孤獨廢疾者 有養也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공적이 신기한 조화로 대성(大成)하여 천덕(天德)·왕도(王道)의 극치로써 추악함을 확 쓸어 나라의 토벌(討伐)이 펼쳐지고 양이(洋夷)의 사특함을 통쾌하게 물리쳐 백성의 이륜(彝倫)이 퍼졌습니다.

유하(有夏)에 상물(象物)[706]의 도량(度量)으로 이매(魑魅)[707]가 도망가지 못하고 방춘(方春)에 은덕(恩德)을 넓게 펴는 윤음(綸音)으로 초목(草木)이 모두 즐겨하였습니다. 정의(精義)는 백의(百義)을 생각하여 의혹하지 않고, 다스리는 법은 삼법(三法)[708]을 겸하여 시행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소선(紹先)[709]에 크게 정(定)하여 음양(陰陽)과 숙특(淑慝)[710]의 즈음에 긍긍(兢兢)하고, 천명(天命)은 작은 일에 까지 정성을 쏟아 길이 기도하여 수한(水旱)·재구(灾咎)의 사이에 애를 태우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총명예지(聰明睿智)하고 무예가 뛰어나도 죽이지 않으니 바로 홀아비, 과부, 고아가 되어 폐질(廢疾)한 사람을 부양(扶養)하는 것 입니다.

矧玆克儉於卑室 實由丕顯於小心 屛外物之芬華 宴居驗淸明之象寂 上載之聲臭 躬行有玄默之風猗謨烈 無能爲名 伊文章可得而見 圖書應奎壁之運 化 則有靈臺鳶魚 制作回雲漢之光 奉以西序琬琰 亦惟我 翼宗大王地當主器之重 天開繼照之

하물며 궁실(宮室)에 능히 검소하셨나니 실지로 크게 밝음이 작은 조심에서 연유하여 외물(外物)의 화려함을 차단하셨습니다. 집에서 한가로이 있을 때에는 청명한 형상의 고요함과 상재(上載)의 성취(聲臭)[711]를 징험하였습니다. 몸소 과묵한 풍채가 의젓하고 일을 도모함에 열렬하였으나 이름이 없고 저 문장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도서(圖書)는 규벽(奎壁)[712]의 운동에 응합하여 영대(靈臺)[713]·연어(鳶魚)[714]가 은하수의 빛을 짓고 서서(西序)[715]에 보책

706) 천지(天地)의 물상(物象)을 법으로 취함.
707) 인면수신(人面獸身)의 사람을 잘 홀린다는 네 발 가진 도깨비.
708) 삼자(三刺)·삼유(三宥)·삼사(三赦)의 법(法).
709) 선대(先代)의 법(法)을 이어받음.
710) 선행(善行)과 악행(惡行).
711) 《시경》 〈대아〉에 나오는 "상천지재(上天之載), 무성무취(無聲無臭)."의 약칭(略稱)으로 사람의 명성(名聲)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을 비유함.
712) 규성(奎星)과 벽성(壁星)이 문자(文字)와 같이 생겼다 는 뜻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도서(圖書)를 뜻함.
713) 중국에서 옛날 임금이 망기(望氣)하던 누대.
714)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약칭(略稱)으로 소리개는 하늘에서 날고 고기가 연못에서 뛰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寶冊)을 받드셨습니다. 또한 생각하건데 우리 익종대왕(翼宗大王)께서는 땅에서는 주기(主器)[716]의 중임(重任)을 감당하고 하늘은 계속해서 비추어 상서(祥瑞)로움을 열었습니다. 깊고 어질고 총명하여 요(堯)임금은 부지런하고 순(舜)임금이 섭행(攝行)하시며, 구가송옥(謳歌訟獄)[717]하여 우(禹)임금의 도(道)를 계(啓)가 이어 삼선(三善)[718]을 하나로 가진 듯 학업에 나아갈 수 있는 연령부터는 세자의 법도와 구경(九經)[719]·사물(四物)[720]의 뜻을 삼가 지켰습니다.

祥 濬哲文明 堯于勤而舜攝 謳歌訟獄 禹之道而啓承 三善一有之資 自齒學而謹 世子之法 九經四勿之旨

이미 청정(聽政)할 때에는 성인(聖人)의 말을 공경하여 계술(繼述)[721]의 방법이 모두 인효(仁孝)로써 근본을 하셨습니다. 옥첩(玉牒)[722]에 아름다움을 돌리고, 갑관(甲觀)[723]이 만년(萬年)의 기반을 다지며, 요상(瑤觴)[724]에 복(福)이 모이고 해옥(海屋)[725]에 가을·겨울·봄·여름의 제사(祭祀)의 다스림을 더 하셨습니다. 이에 제기(祭器)를 엄숙하게 하여 의식(儀式)을 섭행(攝行)하고, 예·악·형·정(禮·樂·刑·政)이 진실하여 생용(笙鏞)[726]의 조화를 이루어 교화(敎化)를 도우셨습니다.

既 聽政而欽 聖人之言 是知繼述之方 皆以仁孝爲本 玉牒歸美 甲觀 衍萬年之基 瑤觴集禧 海屋 添 烝嘗禴祠之克 慥肅 圭瓚而攝儀禮樂刑政之允 鏘叶笙鏞而贊化 睿工摠括 經史 每頌討論之至 夜分宸藻 動合典謨 擧仰尊閣之在几上 邦有泰盤之勢 朝登星海之謠 何

는 말로 천지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인간 세상에도 덕화(德化)내지 교화(敎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유함.

715) 학교(學校) 이름. 중국 하(夏)나라의 소학(小學).

716) 사당(祠堂)·종묘(宗廟)의 제기(祭器)를 맡아 간수하는 일.

717) 임금의 인덕(仁德) 따위를 칭송하고, 옥사(獄事)를 판결함.

718)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랫사람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등의 세 가지 착한 예절을 말함.

719)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아홉가지 상도(常道). 곧 수신(修身)·존현(尊賢)·친친(親親)·경대신(敬大臣)·체군신(體群臣)·자서민(子庶民)·내백공(來百工)·유원인(柔遠人)·회제후(懷諸侯)를 말함.

720) 공자(孔子)가 안연(顔淵)에게 가르친 네 가지 조목. 곧 비례물시(非禮勿視)·비례물청(非禮勿聽)·비례물언(非禮勿言)·비례물동(非禮勿動)의 네 가지 "물(勿)"임.

721) 선왕(先王)이나 조상이 남긴 뜻과 사업을 잘 받들어 계승함.

722) 왕비로 책봉하는 옥책(玉冊)을 말함.

723) 세자궁의 별칭.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원제(元帝)의 태자로서 갑관서당(甲觀書堂)에서 탄생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724) 옥배(玉杯). 여기에서는 복을 비는 술잔을 뜻함.

725) 해상(海上)의 신선이 산다는 집. 장수(長壽)를 비는 집을 뜻함.

726) 제례악(祭禮樂)을 연주하는데 필요한 악기의 총칭. 원래 생(笙)은 동쪽에 설치한 악기. 용(鏞)은 서쪽에 설치한 악기라고 하는데 이들 악기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음.

閣運之重罹 奄 眞遊之荐陟 景籙未集於大統 鶴馭先催 遐籌不及於中身

예공(睿工)[727]이 경사(經史)를 총괄하여 언제나 토론의 지극함을 칭송하고 야분(夜分)에 신조(宸藻)[728]가 전모(典謨)와 동합(動合)하여 존각(尊閣)의 궤(几)위에 있음을 우러러 봅니다. 나라에는 태반(泰盤)의 세력이 있고 조정에는 성해(星海)[729]의 노래가 들리건만 어찌하여 운명이 거듭 걸리고, 진유(眞遊)[730]가 거듭 생기겠습니까. 경록(景籙)[731]이 아직 대통(大統)에 모이지 못했건만 학어(鶴馭)[732]가 먼저 재촉하여 하주(遐籌)[733]가 중년(中年)에 미치지 못하셨습니다.

烏弓 繼抱神雲 歛蒼梧之野 哀小子之藐孤 慈天臨紫微之垣 幸 太母之閔覆 漢家世獻 縱或伸擧國大同之情 周王追尊 豈能慰終天靡極之慟 寓羹墻之深慕 寶閣訖編摩之工 拓壇墠之舊規 太室就蠲密之役 肆當慨廓之日 厥有陞祔之文 流光易遒 居然 雕几之永撤 彝典克備 時則玄服之 皆將因祫事而迭遷 三年之喪旣畢 奉 禰

오궁(烏弓)[734]이 이어서 신비로운 구름을 따라 창오(蒼梧)[735]의 들녘에서 순(舜)임금의 시신(屍身)을 거두니 소자(小子)의 가련함이 애처롭습니다. 자천(慈天)[736]별이 자미(紫微)별의 담장에 임하여 태모(太母)[737]의 민망하여 덮어줌을 입고서 한가(漢家)[738]의 세세(世世)토록 헌향(獻香)함이 비록 거국적 대동(大同)의 정신으로 펼치어 주왕(周王)이 추존(追尊)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종천(終天)[739]에 다함이 없는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갱장(羹墻)의 심모(深慕)를 붙이어 보각(寶閣)에 편마(編摩)[740]의 공역(工役)을 마치니 단선(壇墠)[741]의 옛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태실(太室)[742]에 세밀하게

727) 정사(政事)에 통하는 공정(工程).
728) 임금의 문장(文章)과 시부(詩賦).
729) 별과 바다. 성(星)은 일월성신(日月星辰)을 뜻하고, 해(海)는 산천(山川)을 의미하여 주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되어 무한하다는 뜻으로 쓰임.
730) 참되게 노님. 곧 세상을 잊고 신선이 되어 간다는 뜻.
731) 큰 도록(圖籙). 곧 하늘이 명(命)하여 주는 부신(符信).
732) 신선이 학(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 곧 죽음을 뜻함.
733) 하수(遐壽) 곧 장수(長壽)를 뜻함.
734) 순(舜)임금의 대를 이은 우(禹) 임금을 뜻함.
735) 순(舜)임금이 죽었다고 전하는 곳.
736) 동방(東方) 제1일 별 이름.
737) 임금의 모친(母親)과 조모(祖母)를 가리키는 말.
738) 한실(漢室). 한(漢)나라의 왕실(王室). 곧 나라의 융성함을 기대함을 비유함.
739) 비통(悲痛)이 무한히 오래 간다는 말로, 친상(親喪)을 일컫는 말.
740) 경장록(羹墻錄)에 관한 편집(編輯)을 뜻함.
741) 단(壇)은 흙을 쌓아 높다랗게 한 것이고, 선(墠)은 땅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한 것으로 제사지내는 장소를 이름.
742) 태묘(太廟).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드디어 슬픔이 둘러싼 날에 그 승부(陞祔)의 의식(儀式)이 빛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조궤(雕几)[743]가 영원히 걷히고 이전(彝典)이 갖추어지니 그 때에 현복(玄服)[744]이 모두 협사(祫事)로 인하여 옮겨지고 3년의 상(喪)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에 이위(禰位)[745]를 받들어 7세(世)의 덕(德)을 질종(秩宗)하니 아침저녁으로 우러러 보아 신(神)이 잠들어 계신 곳이 매우 가깝고, 우로(雨露)가 내리면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더하여 신주를 모신 감실(龕室)이 멀다 합니다.

位而咸秩 七世之德 可觀晨昏之 尙有瞻依 神寢孔爾 雨露之采增怵惕 靈龕云避

올 해 정월(正月) 초 7일에 사당(祠堂)에 제부(躋祔)[746]하니 희준(犧尊)[747]는 부신(孚信)[748]에 차고, 용패(龍旆)[749]는 복(福)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상(祖上)에게 공(功)이 있고 종묘(宗廟)에 덕(德)이 있어 열성(列聖)의 척강(陟降)[750]이 양양(洋洋)한데 그릇을 진설하고 의복(衣服)을 설치하며, 많은 선비 가 분주히 많고 성한데 상제(喪祭)에는 생폐(牲幣)[751]를 받았습니다. 임술년의 일을 살펴보면 효도의 생각이 무궁하여 헌가(軒架)[752]는 정묘(正廟)에 따라 창작하지 않았으니 도수(陶遂)[753]의 정성이 절실하고, 휴휼(休恤)의 근심도 많으셨습니다.

本年正月初七日 躋祔于 廟 犧尊盈孚 龍旆承禧 祖有功而宗有德 列聖之陟降 洋洋陳其器而設其衣 多士之奔走 濟濟喪祭有受牲幣 稽壬戌之攸行 孝思無窮 軒架遵 正廟而不作 陶遂之誠方切 休恤之憂亦多 體元履端 愴物采之如舊 滌瑕蕩垢 喜霈澤之維新 於戲 嘉與父老軍民 昭告駿惠之頌 自此春臺化域

743) 죽은 이의 혼백이나 신주를 모셔두는 궤연(几筵).
744) 고대 상중(喪中)에 입었던 무늬 없는 복장.
745)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위(神位).
746) 삼년상을 마친 뒤에 신주를 사당의 조상 신주 곁으로 모시는 일.
747) 소의 그림을 그려 넣은 제기(祭器). 본래 중국 주대(周代)의 국가 제사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부터 사용하였음. 희준(羲尊)으로도 쓰고, "준(尊)" 자는 "준(樽)"으로도 씀.
748) 주역(周易)의 중부괘(中孚卦)에 구오효(九五爻)가 신실(信實)하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만물의 주인이 됨. 곧 여기에서는 종묘(宗廟)를 뜻함.
749) 용(龍) 무늬를 넣어서 그린 깃대.
750) 주(周) 문왕신(文王神)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후주(後主)를 도움. 여기에서는 종묘(宗廟)의 열성(列聖)을 비유 함.
751) 제사 때 올리는 희생(犧牲)과 공물(貢物).
752) 종(鐘)·경(磬)·고(鼓) 등의 악기(樂器)를 틀에 거는 것. 또는 그 틀이나 악기.
753) 생각이 마음속에 엉키어 밖으로 나타남.

祇承 燕詒之謨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趙寅永 製進

체원(體元)[754]·이단(履端)[755]하여 물채(物采)가 옛과 같음을 슬퍼하고 흠과 결점을 씻어버리고 때를 벗겨내어 패택(霈澤)[756]의 새로움을 기뻐하셨습니다. 기꺼이 부로(父老)·군민(軍民)들과 더불어 준 크신 은혜의 칭송을 밝게 고하노니 이로부터 춘대(春臺)·화역(化域)[757]이 연이(燕詒)[758]의 꾀를 공경히 받으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생각하여 마땅히 모두 알게 하십시오.
- 대제학(大提學) 조인영(趙寅永)이 지어 바치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朴耆會牒呈 則頒赦文一度 今月初八日酉時量 典獄寺主簿 宋益烈賫來乙仍于 依禮文祇受 頒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박시회(朴耆會)의 첩정(牒呈)을 보니 반사문(頒赦文) 한 개를 이 달 8일 유시(酉時) 즈음에 전옥시(典獄寺) 주부(主簿) 송익렬(宋益烈)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예문(禮文)에 의하여 공경히 받아 반포(頒布)하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十一日
判官赴任事 封啓

11일 판관(判官)이 부임(赴任)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丙申十二月二十五日 政本職 除授 今月初八日辭朝 初十日赴任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병신년 12월 25일에 본직(本職)에 제수받고 이 달 8일에 조정에 인사하고 10일에 부임(赴任)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754) 훌륭한 덕업(德業)을 체득함.
755) 제왕(帝王)이 즉위(卽位)하여 개원(改元)함.
756) 비가 내리어 만물을 소생케 한다 는 뜻에서 은택(恩澤)을 비유함.
757) 교화의 혜택을 입은 지역.
758) 자손을 위하여 내려준 계책.

12일

반사문(頒赦文)을 공경히 받고 그 상황을 봉계(封啓)하였다.

十二日
頒赦文祗受 形止封啓

[사문(赦文)]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태침종(太寢宗) 훈화(勛華)[759]의 덕(德)이 명인(明禋)[760]에 아울러 오르니 경실(京室)[761]이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의 아름다움을 이어 현책(顯冊)에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 예(禮)는 국조고사(國朝故事)로써 이 날 정월(正月) 상순(上旬)에 아! 태모(太母)의 의범(懿範)·융공(隆功)이 전대(前代)의 성녀(聖女)에 나아갔습니다. 철후(哲后)는 순조(純祖)가 면영(冕迎)[762]한 날 로부터 크게 펼친 30년간 빈조(蘋藻)[763]의 정치(政治)가 익고(翼考) 촉현(矚縣)[764]의 날 까지 억만년 과질(瓜瓞)[765]의 사업을 영원토록 터 잡았습니다. 이에 백복(百福)의 시작을 근원으로 하여 완유(惋愉)함이 전궁(殿宮)에서 솔선하고 만물이 생겨남을 바탕으로 하여 근검(勤儉)이 가옥(家屋)에 근본이 되었습니다.

[赦文]

王若曰太寢宗勛華之德 幷升 明禋 京室嗣 任姒之徽同晋 顯冊 其禮則 國朝故事 是日也 月正上旬 猗 太母 懿範隆功 邁前代聖女哲后自 純祖冕迎之日 誕敷三十載 蘋藻之治 逮 翼考矚縣之辰 永基億萬年瓜瓞之業 原百福之始 而惋愉先於 殿宮 資萬物之生 而勤儉本於 家屋

바야흐로 현담(玄紞)[766]의 차림으로 송주(誦奏)[767]를 드리는데 갑작스레 푸른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라. 구잠(緱岑)[768]의 생학(笙鶴)[769]이 아직 멀리 떠나가지 않았으니 백성에게 어찌 복록(福祿)이 없을까만, 교산(喬山)[770]의 궁검(弓劍)이 미치지 못하여 이치를 알

方 玄紞之騰誦 遽蒼旻之降灾 緱岑之笙鶴未迴 民胡無祿 喬山之弓劍莫逮 理實難諶 迺者 宮闈抗裘之儀寔軫宗祊綴旒之勢 翟褕 降哀痛

759)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을 이름.
760) 밝고 깨끗하게 하여 제사지냄. 담제(禫祭).
761) 왕실(王室)을 다르게 부르는 말.
762) 면류관을 쓰고 맞이함.
763) 종실(宗室)를 조심스레 이어감을 뜻함.
764) 자취를 감춤, 곧 죽음을 뜻함.
765) 오이와 북치. 종손(宗孫)과 지손(支孫)을 비유한 것으로 자손이 번성한 것을 말함.
766) 관(冠)의 전후(前後)에 드리워진 검은 단추.
767)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을 읽어 올림.
768) 중국 주(周)나라 구(緱)땅의 산 봉우리.
769) 전설로 전해오는 신선(神仙) 학(鶴).
770) 중국 황제(黃帝)를 장사(葬事) 지낸 곳으로 산릉(山陵)이 갑자기 무너지고 무덤이 텅비어 시신(屍身)이 없

之敎 勗以 先君麻冕 荷鞠育之恩

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궁궐에 항구(抗裘)[771]의 의식(儀式)이 마음 아프고, 종묘(宗廟) 철류(綴旒)[772]의 모양이 적유(翟褕)[773]였습니다. 애통한 가르침을 내리어 선군(先君)의 마면(麻冕)[774]으로 힘쓰면서 그래도 길러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閔予小子 俟聖不惑 有若增七廟之制 定百世之獻 繼列朝之編 視民如傷 以至蠲東州之採 停南路之織 轉北方之粟

불쌍한 나 소자(小子)는 성군(聖君)의 밝은 지혜를 기다려 의혹하지 않고 이와 같이 칠묘(七廟)[775]의 제사(制祀)[776]를 더하고, 백세(百世)의 헌관(獻官)을 정하여, 열조(列朝)의 편차(編次)을 이었습니다. 백성 보기를 애처롭게 여기어 동주(東州)의 세금을 덜어주고, 남로(南路)의 옷감을 짜는 일을 쉬게 하고, 북방(北方)의 곡식을 옮겼습니다.

雖 簾帷 主於靚邃 象魏懸日月之明 而幄幪遍於邇遐 肖蝯涵雨露之澤 彤管之模厚 地史不勝書 玉牒之頌慈 天典有不可攷 亦粤我大妃思媚之譽 寔贊 前寧人造端之休 襲芳猷於長秋 婦道克愼 迓純祺於彌月 母儀采隆 舊愴重以新哀 暨今日尙賴保護 慈恩 兼乎 嚴訓無一事不勤提撕

비록 발과 휘장을 내리고 고요하고 깊은 곳에서 주관하건만 상위(象魏)[777]는 일월(日月)의 밝음에 달려있고, 휘장(揮帳)이 멀고 가까운 곳에 두루 펼치니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 우로(雨露)의 은택(恩澤)에 함유(涵濡)하였습니다. 동관(彤管)[778]의 본보기가 두터우니 지사(地史)가 이루 다 쓰지 못하고 옥첩(玉牒)의 칭송이 자애로우나 천전(天典)이 가히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비(大妃)의 사미(思媚)[779]의 명예가 지난 영인(寧人)[780]이 개시럽고 순수한 복록(福祿)을 미

는데 다만 검석(劍舃)만이 남아있었다 고 함.

771) 3년간 모시고 있던 신주(神主)의 유품(遺品)을 탈상(脫喪)한 뒤에 산소에 묻는 일.

772) 깃술.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인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한 것임.

773) 꿩무늬를 수 놓아 지은 후부인(后夫人)의 제복(祭服).

774) 마포(麻布)로 지은 면류관으로 신하임을 뜻함.

775) 주대(周代)의 천자의 종묘. 곧 태조의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 소목(昭穆)은 종묘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776) 정례(定例)의 제례(祭例).

777) 대궐의 문을 가리킴. 상(象)은 법(法), 위(魏)는 고(高). 옛날에 법률을 높은 성문에 게시한 데서 온 말. 곧 궁문(宮門) 밖 법령을 게시(揭示)하는 곳을 말함. 전(轉)하여 법률제도를 가리키거나 또는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778) 대에 붉은 칠을 한 붓. 고대 중국 궁중의 여관(女官)들이 궁중의 정령이나 후비(后妃)들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때 사용하였음.

779) 남편에게 순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원전(原典)은 《시경》 〈주송(周頌)〉.

780) 천하(天下)를 편안하게 한 사람. 곧 무왕(武王)의 대신(大臣)을 이름.

월(彌月)[781]에 맞이하여 모의(母儀)가 더욱더 융성하였습니다. 옛적 슬픔이 거듭하여 새로운 슬픔으로 이었건만 오늘에 오히려 보호해 주는 자은(慈恩)과 엄훈(嚴訓)을 입어 일마다 부지런히 끌어주셨습니다.

대비전(大妃殿)은 삼대(三代) 조정(朝廷)의 기쁨을 이어 항상 해주(海籌)[782]의 더하는 경사(慶事)를 빌고, 반의(斑衣)[783]는 천승(千乘)[784]의 봉양(奉養)을 바치니 더욱 봄풀이 빛이남을 생각합니다. 끝내 이묘(二廟)[785]에 제부(躋祔)한 나머지 양전(兩殿)에 숭봉(崇奉)의 거행함이 있습니다.

의문(儀文)[786]이 남면(南面)[787]에 크게 새로우니 효도(孝道)는 현친(顯親)으로 우선하고 위호(位號)는 모두 동조(東朝)[788]에 마땅하니 예(禮)가 오직 갖추어진 뒤였습니다. 신헌인수(神憲仁粹)의 순서는 세덕(世德)이 지어서 구하고, 경수융우(慶壽隆祐)의 분명한 이름은 고훈(古訓)에 법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열행(烈行)을 천명하여, 진실로 미충(微衷)[789]에 사이가 없으며, 올바른 일을 지키고 존귀함을 표식(標識)하여 모두 태상(太上)[790]보다 숭상함이 없습니다.

璇闈 承三朝之歡 恒祝海籌之添慶 斑衣 供千乘之養 益思春草之報暉 肆於 二廟躋祔之餘 合有 兩殿崇奉之擧 儀文賁新於南面 孝以顯親爲先 位號咸宜於 東朝禮惟備物而後 神憲 仁粹之須序 世德作求 慶壽隆祐之辨名 古訓是式 揄徽闡 烈固無間於微衷 居正標尊 儘莫尙於太上

781) 잉태하여 10개월의 기간을 마침.
782) 해옥첨주(海屋添籌)의 준말. 해상(海上)의 신선이 산다는 해옥(海屋)에 선학(仙鶴)이 해마다 주(籌:대) 한 개씩 물고 온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장수(長壽)를 축하하는 말임.
783) 여러가지 빛깔의 옷감으로 만든 때때옷. 노래자(老萊子)가 늙어서도 때때옷을 입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뜻으로 효행을 뜻함.
784) 천 필의 수레. 승(乘)은 수레를 세는 단위. 중국 주(周) 나라 때 전시(戰時)에 천자(天子)는 만승(萬乘)을, 제후(諸侯) 천승(千乘)을 내도록 되어 있었음. 따라서 천승을 제후를 뜻하기도 함.
785) 부모(父母)의 사랑.
786) 의식을 치루는데 필요한 예절·법도·또는 그것을 기록한 문서.
787) 임금 또는 그의 지위를 가리키는 말. 임금이 정사를 듣는 위치가 북쪽이어서 그 얼굴이 항상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임.
788) ①대비가 거처하는 궁궐. 한(漢)나라 때에 황태후(皇太后)가 항상 머물던 장락궁(長樂宮)이 황제의 거처인 미앙궁(未央宮)의 동족에 있었던 것에서 유래함. 전하여 대비를 가리킴.②세자가 머물던 동궁(東宮). 나아가 세자를 일컬음.
789) 심중(心中)에만 깊이 있고 겉으로는 변변하지 못하게 나타낸다는 속 뜻.
790) 조선 시대에 태상왕인 태조(太祖).

謹奉冊寶 尊 明敬大王大妃殿下 加上尊號 曰文仁 尊王大妃殿下 上尊號曰孝裕 邦典上告而下布 天運否往而泰來 文室則顯 武室則承 縱虛雲之寂 斂 王母之福 壽母之喜 庶靈春之長留 寰宇聳觀 奚但縟禮之丕飾 雷雨作解 寔惟 慈德之普揄於戲 吉祥之事 皆臻太平之象 可見山川草木 摠入子育之仁 松柏岡陵 擧仰申錫之美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趙寅永 製進

삼가 책보(冊寶)[791]를 받들어 명경대왕대비전하(明敬大王大妃殿下)를 높혀 존호(尊號)를 더하여 올리나니 '문인(文仁)'이라 고 하고, 왕대비전하(王大妃殿下)를 높여 존호(尊號)를 올리니 '효유(孝裕)'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방전(邦典)은 위에서 아뢰고 아래에서 반포하고, 천운(天運)은 막힘은 물러가고 태평함이 다가왔었습니다. 또한 문실(文室)은 나타내고 무실(武室)은 이어받아 비록 텅 비어 적막한 곳에 왕모(王母)의 복(福)과 수모(壽母)의 기쁨을 거두었습니다.

영춘(靈春)이 길이 머물고 환우(寰宇)가 우뚝 솟아 보이나니 어찌 다만 성대한 예식(禮式)의 크게 장식할 뿐이겠습니까. 뇌우(雷雨)도 허물을 용서하였으니, 이것은 오직 자덕(慈德)이 널리 추급(推及)한 것입니다.

아! 길상(吉祥)의 일은 모두 태평함에 이르는 형상으로 산천초목이 모두 아들로 여기어 키워주는 사랑을 받고, 송백(松柏)·강릉(岡陵)도 모두 신석(申錫)[792]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봅니다. 이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대제학 조인영(趙寅永)이 지어 바치다.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 頒赦文一度 今月十五日酉時量 守門將金遠喜 賫來乙仍于 依禮文祗受 頒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본부판관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반사문(頒赦文) 한 차례를 이 달 15일 유시(酉時) 즈음에 수문장(守門將) 김원희(金遠喜)가 가지고 와서 예문(禮文)에 의하여 공경히 받고 반포(頒布)하였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791) 옥책(玉冊)·제왕(帝王)·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새긴 간책과 금보(金寶), 즉 추상존호(追上尊號)를 새긴 인(印)을 말함.

792) 거듭 보살피어 내려줌.

15일 이발(離發)하여 과천(果川)에서 점심을 먹고 신각(申刻)에 화영(華營; 지금의 수원)에 도착하였다. 화령전(華寧殿)·현릉원(顯陵園)을 봉심하여 무탈한 일을 봉계(封啓)하고 또 환영계(還營啓)를 봉(封)했다.

十五日 離發中火于果川 申刻抵營 華寧殿 顯陵園 奉審無頃事 封啓 又封還營啓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15일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 참봉 조병위(趙秉緯)의 첩정 내용에 이 달 15일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金漢淳牒呈 則今月十五日焚 香後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趙秉緯牒呈內 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이 진하반(陳賀班) 진참(進參)하는 일로써 상경(上京)하였다가 당일에 화영(華營)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以陳 賀班進參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緣由 馳啓爲白臥乎事

20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日

華寧殿日次 奉審

2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五日

華寧殿日次 奉審

27일 외탕고(外帑庫) 봉부동(封不動)[793] 마감(磨堪)으로 성책수정(成冊修正)하여 상송(上送)하는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七日

外帑庫 封不動磨勘 成冊修正 上送事封啓

793) 전쟁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물건을 창고에 넣고 봉하여 쓰지 못하게 함.

[狀啓]
外帑庫封不動錢　前在爲一萬八百八十六兩　而丁酉歲入三千兩 當依節目準數 捧入是白乎矣　修城庫錢一千兩段　北屯年久塡淤幾乎成陸 不可不及今疏濬 而所入物力　不得不取用於修城庫乙仍于　貯置庫錢二千兩舡入庫後 成冊修正 上送于承政院爲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외탕고(外帑庫) 봉부동(封不動)의 금전(今錢)이 지난번에 10,886냥(兩)이 있었는데 정유년(丁酉年)에 3,000냥(兩)이 들어오므로 절목(節目)에 준한 수량에 의하여 마땅히 봉입(捧入)하였습니다. 수성고전(修城庫錢) 1.000냥(兩)은 북쪽에 있는 둔전(屯田)이 오래되어 도랑이 무너지고 막히어 뭍이 되어 지금에 소준(疏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소용(所用)되는 물력(物力)을 수성고(修城庫)[794]에서 취용(取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축한 고전(庫錢)은 2,000냥뿐이므로 성책수정(成冊修正)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올려 보내는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794) 조선 시대 성곽의 수리에 대비하여 금전과 곡물을 쌓아둔 창고.

여 백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2월

여 백

初 一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中軍迎華察訪振威縣令 朴長馣竝參

同日 華寧殿 春大奉審後 封啓

초 1일

먼동이 틀 무렵에 객사(客舍)에 나가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중군(中軍) 영화찰방(迎華察訪) 진위현령(振威縣令) 박장암이 아울러 참례(參禮)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에서 춘대봉심(春大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華寧殿 春孟朔大奉審元定是白在 去月十五日 臣在京未還 不得擧行是白遣 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擧行而兼令臣金漢淳 適爲上京故以迎華道察訪吳致健 權差兼令 與兼衛將臣朴耆會眼同奉審 是白乎 則 殿內諸處 俱爲無頉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화령전(華寧殿) 춘맹삭(春孟朔) 대봉심(大奉審)은 원래 지난 달 15일이 정해 졌거니와 신(臣)이 서울에서 돌아오지 못하여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달 초하루에 분향(焚香)하고 곧 바로 거행하는데 겸령(兼令) 신(臣) 김한순이 마침 상경(上京)하였기 때문에 영화도찰방(迎華道察訪) 오치건을 겸령(兼令)에 임시로 차출하여 겸위장(兼衛將) 신(臣) 박시회와 함께 보고 봉심(奉審)케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곧 현륭원령 이민기(李民耆)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금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丙申夏等賞試射 開場于東將臺 試取頒賞

초 3일

병신년(丙申年) 하등(夏等)의 활쏘기 시험의 시상(施賞)이 동장대(東將臺)에서 열려 시취(試取)하여 상(賞)을 반급(頒級)하였다.

初 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초 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초 10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初 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13일

본부(本府)에 살옥(殺獄) 검안(檢案)에 관한 제사(題辭)[795]

이 고장 피고(被告) 박삼봉(朴三奉)이 김동전(金東田)에게 악명(惡名)을 덮어씌우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검관(檢官)은 진위현령(振威縣令) 박장암(朴長馣)이다.

十三日

題本府殺獄檢案

貢鄕被告朴三奉 勒加惡名於金東田 自縊致死 檢官振威縣令 朴長馣

[제(題)]

시장(屍帳)[796]을 봉상(捧上)하였거니와 검안(檢案)을 살펴보니 스스로 목매어 죽은 흔적이 있고, 증언을 참고하니 얻어맞은 징험(徵驗)이 없다. 따라서 이 옥사(獄事)의 원인은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복검(覆檢)[797]을 청하지 않으니 진실로 체면을 얻은 것이다. 장물(贓物)을 사로잡지 못하고 악명(惡名)을 덮어씌워 사문(私門)에 앉히어 묶어 놓고 때리니 이 무슨 어리석은 습성(習性)이며 무당을 불러 저주하니 또한 이 무슨 요망함의 극치인가. 끝내는 죽은 자로 하여금 횡폭(橫暴)한 행위를 속여 무마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어 차라리 갑자기 죽음에 이르러 거짓이 없기로 잠깐 사이에 7척(尺)의 몸을 버렸다.

비록 죽음이 매를 친 것에 연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몽둥이로 치고 칼로써 벤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題]

屍帳捧上是在果 主之以檢案 而自縊有痕 參之以詞證 而被打無驗 此獄實因 更無疑眩 不請覆檢 誠爲得體是旀 未捉贓物 勒加惡名 坐私門而縛打 是何愚悖之習 招巫覡而詛呪 又胡妖誕之極 遂使死者 痛橫逆之誣衊 寧溘死而無訛 捐捨七尺之軀 倏在俄頃之間

縱云死不由打 何異梃之與刃

795) 관부(官府)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쓰는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指令). 제지(題旨).

796) 시체를 조사하여 여러 상황을 적어 놓은 장부.

797) 조선 왕조 때의 검시(檢屍) 방법으로 송장을 두 번째 검증(檢證)하는 일.

檢庭頑賴 妄引不相干之張士仲者 亦極狡惡 是乃在渠猶屬薄物細故是如乎 同被告朴三奉身乙 爲先箇箇拷察嚴刑 一次取招 牒報爲旀 妖呪誣人 法禁至嚴厓除良 此獄根因 非渠伊誰 干連白召史一體 嚴刑取招爲旀 金判興段 觀於跋尾中跳踉恐動等語 其檢庭勃慢之光景 可以像想是如乎 無嚴極矣 不可以屍親曲怒 嚴刑一次懲勵放送爲旀

검정(檢庭)[798]이 완악하게 믿고 상관(相關)없는 장사중을 망녕되게 인책(引責)한 것도 또한 교활하고 간악함이 다 하였다. 이것은 저들이 오히려 자질구레한 사물이라고 하므로 피고 박삼봉을 먼저 낱낱이 고찰(拷察)한 후 엄히 형벌하여 한 차례 취초(取招)[799]를 첩보(牒報)할 것이다. 요망한 저주(詛呪)로 사람을 속이니 법금(法禁)이 지엄(至嚴)할 뿐더러 이 옥사(獄事)의 원인은 저들이 아니고 뉘이겠는가. 이에 사건에 관련(關聯)된 백소사(白召史)도 같은 무리이니 엄형(嚴刑)으로 취초(取招)할 것이며, 김판흥(金判興)은 발미(跋尾)[800] 가운데에 함부로 날뛰고 허둥거린 말들을 보면 검정(檢庭)이 발만(勃慢)[801]한 광경을 상상할 수 있으니 무엄함이 다 하였다. 그리고 죽은 자의 친족의 애절한 분노로 한차례 엄형(嚴刑)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놓아 보내지 못할 것이다.

東作在卽 滯囚可悶 應問各人 等一併自檢所 放送是遣 只被告干連 及金判興三囚 厓 着枷押送于本府獄爲旀 張士仲 安萬孫段 今無更問之端 幷以撤捕事 文移于本府判官 以爲依題辭擧行之地爲旀 行檢後 屍體封標以待處分 自是不易之規例是去乙 今此檢狀中 不少槩及是何委折是喩 屍體卽爲

동작(東作)[802]이 다가오므로 오래도록 가두어 두는 것이 민망하니 응당코 각인(各人)에게 균등하게 묻되 모두 검소(檢所)에서 놓아 보낼 것이다. 다만 피고, 관련자 및 김판흥(金判興)등 세 사람의 죄수는 착가(着枷)[803]하여 본부옥(本府獄)에 압송할 것이다. 장사중(張士仲)·안만손(安萬孫)은 지금에 다시 물을 단서(端緖)가 없으니 아울러 철포사(撤捕事)로 본부판관(本府判官)에서 문이(文移)[804]하여 제사(題辭)에 의하여 거행할 처지이다. 검사를 행한 뒤에 시체를 봉표(封標)[805]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꿀 수 없는 규례(規例)이다. 지금 검장(檢狀)중에 적지 않은 대목

798) 죄인의 실상을 조사하고 심문하는 곳.
799) 죄를 지은 사람을 조사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게 함.
800) 살인수(殺人囚)의 사람을 죽인 원인이나 그 정황 등을 심사하여 검안(檢案)에 기록하는 검시관의 의견서.
801) 발끈 성을 내면서 거만함.
802) 봄철에 농사를 짓는 일. 또는 그 농사.
803)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움.
804) 관아(官衙)와 관아 사이에 공사와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냄.
805) 능침(陵寢)의 자리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封墳)하고 세워 놓은 표.

의 곡절이 있건만 시체는 곧바로 내어주어 매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항후(項喉)의 후자(喉字)는 〃후(吼)〃자로 잘못되었고, 붕중(弸中)의 〃붕(弸)〃자는 붕(絣)자로 잘못되었으며, 억륵(抑勒)의 억(抑)자는 〃억(臆)〃자로 잘못되었으니 거행하는 형리(刑吏)는 별도로 부과(附過)[806] 할 일이다.

出給 俾卽埋瘞爲旀 項喉之喉字 誤作吼字 弸中之弸字 誤作絣字 抑勒之抑字 誤作臆字 擧行刑吏 別附過向事

15일 동틀 무렵에 객사(客舍)에 나가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중군(中軍) 판관(判官) 영화찰방(迎華察訪)이 아울러 참례(參禮)하였다.

十五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中軍判官 迎華察訪幷參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에 분향하고 봉심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장계(狀啓)]
신(臣)이 금일에 화령전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이어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의 첩정(牒呈)을 보니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頉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20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806) 관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를 별지(別紙)에 써서 정안(政案)에 붙여두던 일.

二十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2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八日
陵 園所局內 年例補植事 封啓

28일 능(陵)·원소(園所) 묘역(墓域)에 년례(年例) 보식사(補植事)[807]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健陵參奉趙道林 顯隆園參奉趙秉緯牒呈 則 局內樹木稀疎處 年例補植之役 自今月二十五日爲始 二十六日至畢役 是如爲白有等以 補植經界 及植木株數後錄 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本營及屬五邑 春操軍兵 赴役於堤堰修築事 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건릉참봉(健陵參奉) 조도림(趙道林)과 현륭원참봉(顯隆園參奉) 조병위(趙秉緯)의 첩정을 접하니, 묘역내 수목(樹木)이 희박한 곳에 년례(年例) 보식(補植)의 역사(役事)를 이 달 25일에 시작하여 26일에 필역(畢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보식(補植)한 경계 및 나무를 심은 그루수를 뒤에 적어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본영(本營) 및 이에 속하는 5읍의 춘조(春操) 군병(軍兵)이 제언(堤堰)을 수축(修築)하는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前矣到付 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 啓辭 各道春操稟 啓今纔齊到矣 詰戎之政 許久停閣 雖甚可悶 設賑諸道 旣不可更煩徵調 其餘四道 非但豊歉之相錯 亦有轉輸之爲勞 窮春擾民尤屬 當

[장계(狀啓)]
지난번에 도부(到付)한 비변사 관내(關內)에 계하(啓下)하신 계사(啓辭)에 각 도(道) 춘조(春操)의 품계(稟啓)가 지금에 겨우 도착하였습니다. 힐융(詰戎)[808]의 정사(政事)가 오래도록 시행되지 않아 매우 민망하기는 하지만 제도(諸道)에 진휼(賑恤)을 설행하여 이미 번거롭지 않게 징조(徵調)[809]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4개 도(道)는 풍년과 흉년이 서로 차이가

807) 인공조림(人工造林) 특히 식수(植樹) 조림에 있어서 묘목(苗木)이 시들거나 상하여 공지(空地)가 생긴 경우 그곳에 묘목을 심는 일.
808) 군사를 단속하여 다스리고 힐책함.
809) 명령을 내리어 군사와 그 양식을 모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수(轉輸)[810]의 수고로움이 있어서 춘궁기에는 요민(擾民)이 더욱더 모입니다.

마땅히 올 봄에는 팔도(八道)·사도(四都)에 수륙(水陸)의 모든 훈련 및 순력(巡歷)·순점(巡點)을 아울러 정지하고 공사(公私)로 고을을 구제하고 외관(外官) 진문(鎭門)의 취점(聚點)을 그들로 하여금 뜻을 두어 거행하되 항오(行伍)[811]를 충당하고 무기(武器)의 수선(修繕)을 특별히 경계하여 삼가하게 하였습니다.

念今春 八道四都 水陸諸操及巡歷巡點 幷姑停止 公私賑邑 外官鎭門聚點 使之着意擧行 充伍繕械 另加操飭

감히 문구(文具)로 보지 말고 제언(堤堰)에 소준(疏濬)[812]·방축(防築)할 경우가 생기면 근례(近例)에 의하여 나아가서 완역(完役)을 점검하되 실효(實效)을 거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양(各樣)의 도시(都試)는 아울러 설행하되 관동(關東)[813] 삼진(三鎭)에 춘등도시(春等都試)는 도신(道臣)이 이미 다른 날로 옮겨서 행할 것을 청하므로 가을을 기다려 합설(合設)할 것을 허락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毋敢視以文具 有堤堰處疏濬防築之節 依近例移點完役 俾有實效 各樣都試 幷爲設行 而關東三鎭 春等都試 道臣旣請退行 許令待秋合設之意 分付何如 答曰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奉審施行 亦爲白有等以 臣營馬步軍兵 依例聚點 俱無闕額 而步軍段 使之排日付役於萬石渠疏濬之役 爲白乎旀 所屬五邑軍兵 亦爲依關辭擧行之意 傳令知委是白加尼

답하시기를 "그 일을 허락한다." 고 전교(傳敎)하셨습니다. 전교(傳敎)내의 사의(事意)를 받들어 살펴 시행하라고 하신 것으로 신(臣)은 본영(本營)에 보병(步兵)과 기마병을 의례히 취점(聚點)하니 모두 궐액(闕額)[814]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군(步軍)은 그들로 하여금 날짜를 배정하여 만석거(萬石渠) 소준(疏濬)의 역사(役事)를 붙이고, 소속(所屬) 5읍의 군병(軍兵)도 관사(關辭)에 의하여 거행할 뜻을 전령(傳令)하였습니다.

---

810) 수송(輸送)되어온 물건을 다시 다른 지방(地方)으로 운반함.
811) 군대를 편성한 행렬(行列)
812) 막힌 곳을 뚫어 물이 흐르게 함.
813) 기호(畿湖)지방의 동쪽, 즉 대체로 강원도 지역을 말 하는데 좁게는 대관령(大關嶺) 동쪽 지역을 가리킴.
814) 군사 등 국역(國役)의 정해진 액수에 도망이나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지 않은 인원수.

卽接安山郡守李俊秀 始興縣令李鳴遠 龍仁縣令李鍾允所報 則本縣軍兵 移點於堤堰疏鑿之役 是如爲白遣振威縣令朴長馣 果川縣監鄭晩敎所報 則別無堤堰修築處 故依例聚點 俱無闕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그러나 지금에 안산군수(安山郡守) 이준수(李俊秀), 시흥현령(始興縣令) 이명원(李鳴遠), 용인현령(龍仁縣令) 이종윤(李鍾允)의 보고(報告)를 접하니 본현(本縣) 군병(軍兵)을 제언(堤堰) 소착(疏鑿)의 역사(役事)에 옮겨 점검하였다 고 합니다. 그리고 진위현령(振威縣令) 박장암(朴長馣), 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의 보고에는 제언(堤堰)의 수축할 곳이 별도로 없고, 의례히 취점(聚點)하니 모두 궐오(闕伍)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出往西北屯 看審疏鑿形便

같은 날 서북(西北) 둔전(屯田)[815]에 나가서 소착(疏鑿)의 형편(形便)을 보고 살폈다.

二十九日

健陵寒食 祭享 獻官金台在三 下來

29일 건릉(健陵) 한식제향(寒食祭享)[816]에 헌관(獻官) 김재삼(金在三) 대감(大監)[817]이 내려왔다.

815) 군인이 일선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던 전답.
816) 한식절(寒食節)에 지내는 제사.
817) 조선 왕조 때 정이품(正二品) 이상의 관원(官員)을 높여서 부르는 말.

여 백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3월

여 백

初 一日
華寧殿奉審後 封啓

초 1일 화령전(華寧殿)을 봉심(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頉是乎旀 卽接 顯隆園參奉趙秉緯牒呈則今日 園上 殿內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이 금일에 화령전(華寧殿)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참봉(顯隆園參奉) 조병위(趙秉緯)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금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以 顯隆園寒食 祭享獻官 陪 香祝 詣園所

같은 날 현륭원(顯隆園) 한식제향(寒食祭享)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818]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갔다.

初 二日
祭享設行後 封啓 健陵獻官入府旋發

초 2일 제향(祭享)을 설행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건릉헌관(健陵獻官)이 본부(本府)에 들어왔다가 곧바로 출발하였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初二日 行 顯隆園寒食 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계본(啓本)]
삼가 제향사(祭享事)를 계주(啓奏)[819]합니다. 이 달 초이튿날에 현륭원 한식제향(寒食祭享)을 행하는데 신(臣)이 헌관(獻官)으로 진참(進參)하여 설행한 뒤에 원상(園上)을 봉심하니 잡초(雜草)·잡목(雜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산내에도 나무을 범작(犯斫)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祭官)의 직책과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820]하여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818) 조선 시대 종묘(宗廟)·사직(社稷)을 위시한 국가의 각종 제사(祭祀) 때에 쓰이던 향과 축문.
819) 임금에게 아룀.
820)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의 말미(末尾)에 의견 또는 용건을 열기(列記)하는 것.

같은 날 능원소(陵園所)를 춘대봉심(春大奉審)[821]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陵園所　春大奉審後封啓

[계본(啓本)]

삼가 봉심(奉審)하는 일을 계주(啓奏)합니다. 신(臣)이 이 달 초이튿날 건릉(健陵)위·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 이하 모든 곳과 현륭원 위·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 이하 모든 곳을 봉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릉 정자각에 탈이 있는 곳과 제기(祭器)·잡물(雜物)이 파손된 것을 뒤에 개록(開錄)하니 해당 관서로 하여금 조속히 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륭원의 정자각, 비각 이하에 탈이 있는 곳은 의례히 신(臣)의 영(營) 관천고(筦千庫)로부터 편리에 따라 수개(修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樹木)은 화소(火巢)[822]가 넓고 멀어서 낱낱이 적발하고 순찰하지 못하므로 범작(犯斫)의 폐단이 없도록 능·원을 관리하는 관서(官署)에 특별히 신칙(申飭)하였습니다. 만년제(萬年堤) 둑방내 일체를 살펴보니 모두 무탈하고 앵봉(鶯峰) 부석소(浮石所)는 편비(偏裨)[823]를 보내어 적발하니 봉표(封標)내도 탈이 없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啓本]

謹 啓爲奉審事 臣於本月初二日 健陵 陵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顯陵園 園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奉審後 健陵 丁字閣 有頉處及祭器雜物破傷者 開錄于後 爲白去乎 令該曺 卽速修改爲白乎旀

顯隆園 丁字閣 碑閣以下有頉處 依例自臣營筦千庫從便修改是白遣 樹木段 火巢闊遠 不能一一摘奸 而這這巡審 俾無犯斫之弊事 另加申飭於 陵園官處 爲白乎旀 萬年堤坰內一體看審 則俱爲無頉是白遣 鶯峰浮石所 發遣褊裨摘奸 則封標內亦無頉處是白乎等以 緣由幷以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죽은 아이의 한점 혈육(血肉)은 한 여인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로부터 회적(蛔積)[824]이 시작하여 끝내는 몸이 부어올라 4개월이나 침고(沈痼)[825]하였다. 이 날에 원소(園所)로부터 영(營)에 돌아와서 집에서 부쳐 온 서신(書信)을 보

同日 亡兒一塊肉 只有一女在矣 自去年臘月 始以蛔積終成浮脹 四朔沈痼 是日自 園所還營 見家信 則以去三十日化去矣 情理慘絶

821) 봄철에 대대적(大大的)으로 시행하는 봉심(奉審).
822)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의 해자(垓子)밖에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린 곳.
823) 대상(大將)을 보좌하며 소속 부대를 지휘하던 무관직.
824) 회충(蛔蟲)이 뭉치어 때때로 움직이는 병.
825) 오래도록 낫지 않는 병.

一似無二於人　其母號哭欲絶云 卽令急速襲斂 送埋於金阡庶祖母墓右 慟哉慟哉

니 지난 달 30일에 화거(化去)[826]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리(情理)가 참혹하기 짝이 없고 한결같이 남에게는 둘도 없는 듯한 그의 어머니는 통곡소리가 끊어지듯 하였다고 한다. 곧바로 습렴(襲斂)[827]하고 김천(金阡) 서조모(庶祖母) 무덤 오른쪽에 보내어 묻으라고 영(令)하니 애통하고 애통하였다.

同日 金陵搬移 在於初六日 故從子婦 奉 祠宇先發 余以 親候之欠寧 不得隨行而出往五里程 祗送使有耒陪往直 抵樊里新舍

같은 날 금릉(金陵)[828] 반이(搬移)[829]가 이 달 초엿샛날 이므로 종자부(從子婦)가 사우(祠宇)를 모시고 먼저 출발하였다. 이에 나는 부모님의 체후(體候)가 편찮으심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하고 5리 쯤 나가서 공경히 보내되 잘 모시고 가서 곧바로 번리(樊里)의 신사(新舍)에 이르게 하였다.

初 四日

春麰畢耕事 封啓

초 4일 봄보리의 경작을 모두 마친 일을 가지고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朴著會牒呈 則境內春麰 今已畢耕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박시회(朴著會)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경내(境內)의 봄보리를 지금에 이미 경작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北屯疏鑿 始役

北屯 卽華城城役時 設置者而壬癸大水 覆沙塡閼 貯水無幾 幾乎成陸 今春聚點軍兵 移點于堰役 自是日始疏鑿之役

같은 날 북둔(北屯)[830]의 소착(疏鑿)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북둔(北屯)은 화성(華城)을 축성할 때에 설치한 것으로 임·계(壬·癸)년 두 해에 큰 홍수에 모래가 덮여 막혀서 거의 뭍이 되었다. 금년 봄에 군병(軍兵)의 취점(聚點)을 언역(堰役)을 옮겨 점검하고 이 날부터 소착(疏鑿)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826) 다른 것으로 변하여 간다는 뜻으로 죽음을 이르는 말.
827)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일.
828)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금릉리는 서유구 집안의 본거지이며 묘가 있는 곳
829) 짐을 날라 이사함.
830) 북쪽에 위치한 둔전(屯田).

초 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初 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초 8일 판여(板輿)[831]를 받들고 출발하여 과천(果川)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3~5시경에 필곡(筆谷)에 이르러 봉계(封啓)하였다.

初 八日
奉 板輿離發 中火于果川 申刻抵筆谷 封啓

[장계(狀啓)]
신이 묘당(廟堂)에 품의(稟議)할 사항이 있어서 당일에 출발해 가서 상경(上京)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 上京 緣由馳啓爲白臥乎事

12일 임금이 몸소 납징(納徵)[832]에 임할 때에 진참(進參)하였다.

十二日
親臨納徵時 進參

13일 임금이 몸소 고기(告期)[833]에 임할 때에 진참(進參)하였다.

十三日
親臨告期時 進參

15일 화령전(華寧殿) 현륭원(顯隆園)을 봉심하여 무탈한 일을 봉계(封啓)하였다.

十五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831) 관직에 있으면서 어버이를 모시는 일.
832) 주대(周代) 혼례의 육례(六禮) 가운데 하나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어 혼약(婚約)의 성립을 증거하는 예식. 보통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婚書)와 함께 함에 담아 신부집에 보냈음.
833) 수송이나 혼인 등 정해진 날짜를 알림.

[狀啓]
卽接 華寧殿 兼令金漢淳牒呈 則今月十五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民耆牒呈內 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금월 15일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李民耆)의 첩정에는 이 달 15일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農形封啓

같은 날 농형(農形)[834]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境內農形 秋麰下濕田早耕者 間或向靑 春麰耕播差晩 姑未立苗 鍤役方始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을 접하니, '경내(境內) 농사의 형편을 보면 가을보리를 하습전(下濕田)[835]에 일찍 경작(耕作)한 것은 간혹 파릇파릇 합니다. 그리고 봄보리는 파종(播種)이 조금 늦어져서 아직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가래질이 이제서야 시작하였다.'고 하므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七日
月食形止 封啓

17일 월식(月食)이 전개되는 형세(形勢)를 봉계(封啓)하였다.

834) 농사의 잡되고 못된 형편.
835) 낮은 지대의 습(濕)한 전지(田地).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을 접하니, 지난번에 도부(到付)한 예조관자(禮曹關子)에 이달 17일 새벽 월식(月食)을 바라볼 때에 의례히 구식(救食)[836] 하였다고 하므로 월식의 도형(圖形)을 보고하는 바에 의하여 뒤에 적어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前矣到付禮曹關 據今月十七日曉 望月有食之時 依例救食 是如爲白有等以 食體圖形 依所報後錄 馳啓爲白臥乎事

18일 임금이 몸소 왕비의 책봉(冊封)에 임할 때에 진참(進參)하였다. 같은 날 가례(嘉禮)[837]에 진하전문(陳賀箋文)[838]을 봉진(封箋)하였다.

十八日

親臨冊 妃時 進參

同日 嘉禮陳 賀箋文 封進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군주(君主)의 다스림이 극치를 세우니 수신제가(修身齊家)의 기반을 우러러 보고, 군자의 도(道)가 발하는 단서(端緖)가 되니 드디어 주량(舟梁)[839]의 성대함을 보나니 육의(六儀)[840]가 크게 길하고 양요(兩曜)[841]는 곧고 밝아집니다. 공경히 생각하노니 하늘이 낳은 자질은 인륜(人倫)을 위하여 크게 이어 나타나고, 크게 계총(啓寵)[842]을 명하여 만년(萬年)의 아름다움이 실가(室家)를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크나 큰 덕화(德化)는 이남(二南)[843]의 이웃에 전파되어 아름답구나 하늘이 합(合)을 지은 경사(慶事)이며, 실지론 땅이 자리를 정한 처음입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2년 동안 화영(華營)에 머물면서

[箋文]

伏以皇王之治建極 政仰修齊之基 君子之道造端 聿覩舟梁之盛 六儀元吉 兩曜貞明 恭惟以 天縱姿 爲人倫至丕承丕顯 駿命啓 萬年之休 宜室宜家 鴻化播二南之什 猗歟天作合之慶 實是坤定位之初 伏念臣兩載居留寸心圖報 跡厠奎署 長瞻蓬萊五雲 地符華封 恭祝本支百世

右 大殿

836) 조선 왕조 때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 때에 왕이 궁전 앞뜰에 앉아서, 천변(天變)에 대하여 자숙하는 뜻을 표하던 일. 각 관아(官衙)에서는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郎官)이 각 한 사람씩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기도(祈禱)를 올림.

837) 길(吉)·흉(凶)·군(軍)·빈(賓)·가(嘉)등 오례(五禮)의 하나로 경사스러운 의례(儀禮)라는 뜻. 임금의 성혼(成婚)·즉위나, 왕세자 왕세손의 성혼·책봉 같은 때의 의식.

838)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백관(百官)이 왕에게 지어 바치는 전문(箋文).

839) 배와 다리. 여기에서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뜻함.

840) 중국에서 제사(祭祀)·빈객(賓客)·조정(朝廷)·상사(喪祀)·군려(軍旅)·거마(車馬)의 여섯 일에 관한 의식.

841) 해와 달이라는 뜻으로, 임금과 왕후를 비유하는 말.

842) 왕이 사람을 폄.

843) 시경(詩經)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 2편을 말함. 곧 덕화(德化)의 은혜를 입음.

촌심(寸心)은 보답(報答)을 꾀하였습니다. 자취는 규서(奎署)[844]를 더럽히면서 봉래산(蓬萊山) 오색 구름을 언제나 쳐다보고, 위치는 화봉(華封)에 부합하여 공경히 본지(本支)[845]의 백세(百世)를 빌었습니다.

- 위는 대전(大殿)에 드리는 전문(箋文)

伏以思齊之 慈化普洽 方仰母儀之尊 貽燕之嘉謨誕垂聿賭 壺位之正 百兩以御億兆胥懽 恭惟 德媲姬姒功邁女堯 四載抗裘冕之治 復奠泰盤之洪基 六宮瞻翟褕之儀擧 毓觀津之餘慶 茲當冊 后之日 益迓緜簉之休 伏念臣拱于 北宸 尹茲南土 跡忝漢閣邇 列 欣睹六禮之儀 職同堯世華封 尤切三祝之悃

右 大王大妃殿

엎드려 생각하니 사제(思齊)[846]의 자화(慈化)가 널리 흡족(洽足)하여 모의(母儀)의 높음을 우러러 보고 이연(貽燕)[847]의 가모(嘉謨)[848]가 크게 드리워 드디어 곤위(壺位)[849]의 마땅함을 보나니 백량(百兩)[850]으로 모시어 억조(億兆)[851]가 서로 기뻐하였습니다.

공경히 생각하노니 덕화(德化)는 희사(姬姒)와 비등하고 공업(功業)은 여요(女堯)를 능가하여 4년간에 구면(裘冕)을 겨누는 치적(治跡)으로 태반(泰盤)의 홍기(洪基)를 이룩하셨습니다. 육궁(六宮)[852]에 적유(翟褕)[853]의 의거(儀擧)를 쳐다보고, 관진(觀津)[854]의 여경(餘慶)을 키워왔습니다. 이 책후(冊后)의 날을 맞이하여 면록(綿簏)[855]의 아름다움을 더 하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북신(北宸)[856]에 공수(拱手)하고 이 남토(南土)[857]에 으뜸이 되어 그 행적(行跡)이 한각(漢閣)[858]의 측근의 대열(隊列)을 더럽혔건만 육례(六禮)[859]의 의식(儀式)을 흔쾌히 보았습니다.

---

844) 황제(皇帝)가 있는 곳.
845) 종손(宗孫)과 지손(支孫).
846) 어진 사람을 흠모함.
847) 후세(後世)에 편안함을 남겨 줌.
848) 임금께 아뢰거나 권하는 좋은 의견.
849) 대비전(大妃殿)을 뜻함.
850) 제후의 딸을 시집보낼 때에는 수레 1백 대를 동원하여 보낸다는 말에서 온 말로 성대한 혼인을 치르는 것을 말함.
851) 억조창생(億兆蒼生)의 준말로 수많은 백성을 뜻함.
852) 중국의 궁중에서 황후(皇后)의 궁전과 부인(夫人)이하 의 다섯 궁실(宮室).
853) 꿩무늬를 수 놓아 지은 후부인(后夫人)의 제복(祭服).
854) 중국의 옛 지명(地名).
855) 연이어온 도록(圖錄).
856) 왕이 살고 있는 대궐을 뜻함.
857) 남쪽 땅. 여기에서는 화영(華營)을 뜻함.
858) 한대(漢代)의 전각(殿閣).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궁실을 비유함.
859) ①인륜의 대례(大禮), 곧 관(冠)·혼(婚)·상(喪)·제(祭)·향음주(鄕飮酒)·상견(相見)의 총칭. ②온인(媼姻)의 대례

직분(職分)은 요세(堯世)에 화봉(華封)[860]과 같이 더욱더 삼축(三祝)의 정성이 간절합니다.

- 위는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드리는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경실(京室)[861]이 사미(思媚)[862]의 명예(名譽)를 전파하여 모후(母后)를 기리어 기쁨을 잇고, 종방(宗祊)[863]이 유곤(裕昆)[864]의 모훈(謀訓)을 천명(闡明)하여 중궁(中宮)을 책봉(冊封)하여 자리를 바로 하니 욕례(縟禮)가 곧바로 거행되어 잠신(簪紳)[865]이 우뚝 쳐다보입니다.

공경히 생각하니 원길(元吉)은 황상(黃裳)[866]에 화협(和協)하고, 칭송(稱頌)은 현담(玄紞)[867]에 올랐습니다. 성인(聖人)으로 아들을 삼아 계우(啓佑)[868]의 방법을 모색하고, 그 명(命)을 이어 펼치니 더욱 기쁨이 흡족한 경사(慶事)에 응합(膺合)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금에 중곤(中壺)[869]이 책보(冊寶)의 날을 맞이하니 우리 종사(宗社)에 경록(景籙)[870]의 날을 이으셨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호부(虎符)의 은혜를 입고 원렬(鵷列)[871]의 직급(職級)에 있으면서 주행(周行)[872]에 욕되게 끼어 풍승(楓陞)[873]를 쳐다보며 삼창

伏以京室 播思媚之譽 贊母后而承歡 宗祊 闡裕昆之謨 冊 中宮而正位 縟禮載擧 簪紳聳瞻 恭惟吉協黃裳 頌騰玄紞 以 聖人爲子 恒軫啓佑之方 其承命用申 益膺熙洽之慶顧今 中壺 膺冊寶之日 卽我 宗社 綿景籙之辰 伏念臣恩被虎符 職隨鵷列 周行跡厠 瞻楓陞而呼三 魯頌歌騰 奉芝函而祝萬

右 王大妃殿

곧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폐(納幣)·청기(請期)·친영(親迎)의 총칭.

860) 화봉삼축(華封三祝)의 준말. 요(堯) 임금이 화(華:지금의 용계현(龍溪縣)서북) 지방을 순행할 때, 그곳의 봉인(封人)이 요 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聖人)은 장수(長壽)하시고 성인은 부(富)하시고, 성인은 다남(多男)하시라 고 축복했다는 고사. 이 고사에 근거하여 임금에게 경축의 인사말을 올릴 때 자주 사용함.

861) 왕실(王室)을 다르게 부르는 말. 원래 《시경(詩經)》 대아(大雅)에 실린 중국(中國)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과 관련한 고사에서 유래하여, 주로 왕실과 관련하여 부덕이 있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음.

862) 주(周)나라 태임(太任)이 시어머니 인 태강(太姜)을 효성으로 섬김을 비유함.

863) 종묘(宗廟). 방(祊)은 종묘의 문을 뜻함.

864) 종실(宗室)을 여유롭게 함.

865)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866) 부덕(婦德)을 의미함.

867) 관(冠)의 앞과 뒤에 드리워진 검은 단추.

868) 열어서 도와 줌.

869) 궁중(宮中)에 여관(女官)이 거처하는 곳.

870) 위대한 도록(圖籙).

871) 조정(朝廷) 관리들의 대렬(隊列).

872) 중국 주(周)나라 시대에 조정(朝廷)의 벼슬아치를 뜻함.

873) 중국 한(漢)나라의 궁전에 단풍나무가 많았던 데서 유래하여 임금이 사는곳을 뜻함.

(三唱)를 부르고 노송(魯頌)[874]의 노래가 울리어 지함(芝函)[875]을 받들어 만수(萬壽)를 빕니다.
- 위는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드리는 전문(箋文)

伏以坤承乾　以配極道始造端　月儷日而爲明禮隆　莅壺翟翬揚彩　關雎播謠　恭惟君子好逑　倪天之妹　柔嘉已得於天賦　夙著令聞　忠孝素傳於古家　動合內則　迨茲迎渭之日　益仰自天之休　伏念臣職忝居留　誠縣　宸極　八域同慶　欣覩爛兮雲之儀　萬壽無疆　恭效恒如月之祝
右 中宮殿

엎드려 생각하니, 곤(坤)이 건(乾)을 이어 극도(極道)[876]와 짝이 되어 비로소 발단(發端)하고, 달이 해와 짝을 지어 밝은 예(禮)가 되고 융성하게 중궁(中宮)[877]에 오르니 적휘(翟翬)[878]가 광채를 날리고 관저(關雎)[879]가 가요(歌謠)를 전파합니다.

공경히 생각하니 군자(君子)의 좋은 짝은 천제(天帝)의 누이로 여겼나니 온화한 미덕(美德)은 이미 천부(天賦)적으로 얻어 일찍이 좋은 소문이 나타나고, 충효(忠孝)는 본디 고가(古家)에 전하여 움직여 내칙(內則)[880] 응합(膺合)하셨나니, 이 영위(迎渭)[881]의 날에 이르러 더더욱 하늘로부터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봅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직책(職責)으론 유수(留守)에 욕이 되건만 정성(精誠)만은 신극(宸極)에 달려 있습니다. 팔역(八域)은 모두 경사(慶事)롭게 찬란한 구름의 의식(儀式)을 흔쾌히 보고, 만수무강(萬壽無疆)하리라 항상 달님처럼 되기를 공경히 축하를 드립니다.
- 위는 중궁전(中宮殿)에 드리는 전문

874)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의 맏아들 백금(伯禽)을 노(魯)나라에 봉하고 백금에게 천자(天子)의 예(禮)로 하늘과 산천(山川) 및 바다를 제사지내도록 하여 송(頌)으로 칭송하였다 함.
875) 조정(朝廷)에서 내리는 글.
876) 북극성(北極星)의 길. 곧 군왕을 비유 함.
877) 中宮: 왕후(王后)를 높혀 일컫는 말.
878) 왕비를 이르는 말.
879) 《시경(詩經)》 국풍(國風) 6편 중의 한 곡(曲). 내용은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말한 것으로 숙녀(淑女)를 얻어 군자의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는 것임.
880) 내부의 규칙. 내규(內規).
881) 문왕(文王)이 천제(天帝)의 누이 동생을 위수(渭水)에서 친히 맞이하여 배필(配匹)로 삼음.

엎드려 생각하니 자극(紫極)이 출진(出震)[882]의 다스림을 나타내어 억년(億年)의 준명(駿命)을 열어주고, 황상(黃裳)이 중곤(重坤)[883]의 형상을 화협하여 만세(萬世)의 홍기(鴻基)[884]를 다졌습니다. 이에 만품(萬品)이 모이어 더 기쁘고 육례(六禮)가 모두 갖추어 졌습니다.

공경히 생각하니 순(舜)인금을 이어 인륜(人倫)을 살피고, 문왕(文王)의 덕(德)을 체득하여 감복(感服)하였습니다. 대통(大統)은 능히 조종(祖宗)을 이어 봉력(鳳曆)[885]이 연이어 멀고, 백복(百福)은 부부에게 실지로 근원(根源)이 되어 귀서(龜筮)[886]가 협종(協從)합니다. 이에 책비(冊妃)의 날을 당하여 더더욱 축성(祝聖)[887]의 정성이 간절합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정성(精誠)만은 북궐(北闕)에 달렸건만 직책(職責)은 남도(南都)에 얽매이어 이곳에 머물러 사는 부로(父老)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춤추고 석주(錫疇)[888]의 복을 칭송하여 빌면서 자손(子孫)의 번창을 기원 합니다.

- 위는 내각(內閣)에 드리는 전문(箋文)

伏以紫極 著出震之治 啓億年之駿命 黃裳叶重坤之象 翬萬世之鴻基 萬品騰歡 六禮咸備 恭惟紹舜察倫 體文思服 大統克繼於 祖宗 鳳曆綿遠 百福實源於匹配 龜筮協從 茲當冊妃之辰 益切祝聖之悃 伏念臣誠懸 北闕職縻南都 居留比沛之鄉 與父老而蹈舞 頌禱錫疇之福 願子孫之熾昌

右 內閣箋文

20일

가례(嘉禮)를 거동할 때에 각반(閣班)으로 배종(陪從)하였다가 환궁(還宮)한 뒤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二十日

嘉禮擧動時 閣班陪從 還宮後 問 安班進參

같은 날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雨澤封啓

---

882) 만물(萬物)이 동쪽에서 발생(發生)한다는 뜻으로, 일의 시작을 뜻함.
883) 주역(周易)의 중지곤(重地坤)괘를 뜻함. 부인(婦人)의 곧고 유순함을 비유함.
884) 큰 업을 이루는 기초.
885) 임금의 나이.
886) 거북점과 시초점.
887) ①미사를 비롯한 온갖 의식에 쓸 정한 물건과 공용 건물 따위를 거룩한 것으로 이룩하는 일. ②방사(放赦)를 거룩하게 일컫는 말.
888) 임금의 자리를 어진 사람에 넘겨 주려는 요(堯)임금을 비유함.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今月十八日戌時量 始雨或灑或霆或止 二十日辰時至 所得爲二犁餘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三分 是如爲白臥乎所 惜乾之餘 甘澍周洽 言念民事 誠爲欣幸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18일 술시(戌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보슬 내리고 혹은 주룩주룩 내리다가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일 진시(辰時)에 이르러 두 보지락 남짓 비가 내렸는데 본영(本營) 아래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3촌(寸) 3분(分)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뭄을 애석하게 여긴 나머지 단비가 흡족하니 민사(民事)를 생각하여 진실로 기쁘고 다행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二十一日
親臨陳賀時進參 中宮殿朝見禮後 問 安班進參

21일 임금이 몸소 진하(陳賀)에 납실 때에 진참(進參)하고, 중궁전(中宮殿) 조견례(朝見禮)를 마친 뒤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二十二日
中宮殿朝見禮後 問 安班進參

22일 중궁전(中宮殿) 조견례(朝見禮)를 마친 뒤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二十三日
頒赦文祗受 形止封啓

23일 반사문(頒赦文)을 공경히 받고 그 형지(形止)를 봉계(封啓)하였다.

[赦文]
王若曰易六十四卦 乾元坤元爲之基 詩三百五篇 周南召南爲之首 是故 天德莫大於配體 王道必先於正家 式

[사문(赦文)]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주역(周易)의 64괘(卦)는 건원(乾元)[889]·곤원(坤元)[890]이 기초가 되고, 시경(詩經) 305편(篇)에 주남(周南)[891]·소남(召南)[892]이 머리가 됩니다. 이 때문에 천덕(天德)은 배체(配

889) 제왕(帝王)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890) 왕비(王妃)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891)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첫번째 편명(篇名).

體)[893]보다 큰 것이 없고, 왕도(王道)는 정가(正家)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큰 규범을 좇아 명훈(明訓)를 나타내나니 짝이 되는 즈음이 이 교화(敎化)의 근원임을 길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물(萬物)이 생겨난 뒤에 부부(夫婦)·부자(父子)·군신(君臣)의 윤리가 그 차례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遵弘規 載揚明訓 永惟嬪匹之際 實是敎化之原 有萬物然後 夫婦父子君臣之倫 得其叙矣

이성(二姓)[894]이 합하여 천지(天地)가 되니,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주인(主人)이 또한 중(重)하지 않겠습니까. 규예(潙汭)[895]에서 본보기를 보아 우정(虞廷)[896] 수의(垂衣)[897]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흡양(洽陽)[898]에서 합(合)을 지어 희가(姬家)[899] 면과(綿瓜)[900]의 아름다움을 더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백복(百福)의 근원으로 사덕(四德)[901]이 온전하므로 육례(六禮)가 갖추어지고 구어(九御)[902]가 가닥이 잡혔습니다.

合二姓以爲天地 宗廟社稷之主 不亦重歟 潙汭觀型贊虞廷垂衣之治 洽陽作合衍姬家綿瓜之休 盖其百福源而四德全 所以六禮備而九御統 肆當中月之制已畢政須 長秋之儀亟行 列祖之所顧歆 亶由笄珈之承事 兩殿之所企待 亦係珩璜之嗣音 徵天眷於瑞符 中垣耀後勾之位 考邦典於嘉會 大璋昭親迎之文

드디어 중월(中月)[903]의 복제(服制)는 이미 끝이 나고 바로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이 빠르게 거행됩니다. 열조(列祖)의 고흠(顧歆)[904]은 진실로 계가(笄珈)[905]의 받들어 섬김에 연유하고, 양전(兩殿)[906]의 기대(企待)

892)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편명(篇名). 소공(召公)이 다스린 남쪽 제후(諸侯)의 나라에서 유행하던 민요(民謠)를 수록한 것.
893) 남녀가 한몸이 됨을 뜻함.
894) 두 가지의 성. 혼인을 맺을 남자와 여자의 양쪽집.
895) 강(江) 이름.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의 남쪽. 역산(歷算)에서 서쪽으로 흘러 황하(黃河)로 들어감.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의 딸을 규예(潙汭)에서 아내로 맞이함.
896) 우(虞)나라의 조정(朝廷).
897) 주역(周易)에 황제·요·순(皇帝堯舜)이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천하를 다스렸다는 데서 나온 말.
898) 흡수(洽水)의 북쪽.
899) 중국 주(周)나라 왕비 희씨(姬氏)의 집.
900) 외의 넝쿨이 자라서 뻗어가듯 후손들이 번성함을 뜻함.
901)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네 가지 덕.
902) 천자를 받들어 모시는 부관(婦官).
903) 담제(禫祭)를 지내는 달을 말함.
904) 고명(顧命)을 받고 흠모(歆慕)함.
905) 부계(副笄)와 육가(六珈). 부계는 귀부인이 정장을 할 때 하는 머리 장식을 말하고, 육가는 부계에 다시 장식을 더함.
906)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

는 또한 형황(珩璜)[907]의 사음(嗣音)[908]에 이어졌습니다. 천권(天眷)[909]을 서부(瑞符)[910]에 징험하여 중궁전(中宮殿)이 왕비의 자리를 빛내고, 방전(邦典)을 가회(嘉會)에 살피어 대장(大璋)[911]이 친영(親迎)의 글을 밝혔습니다.

王妃金氏 篤生名祖之門 近屬 太母之系 承奕世之鼎軸伊巫之忠 蓋有由纘皇祖之舟梁 塗莘之福慶 未艾矧茲懿範之早就 允矣 令聞之夙彰 織紝組紃 十年 聽婉娩之敎 鐘鼓琴瑟六宮 誦窈窕之章 文定厥祥 卜云其吉 東朝則哲之聖簡 在柔嘉先王於昭之靈 默有佑陰 基厥初而本支百世 稽于衆而卿士庶民 茲涓昌辰 誕擧縟禮 已於本年三月十八日乙未授 冊寶正位 二十日丁酉大婚禮成 玄紱治內 黃裳在中

왕비 김씨는 이름난 선조(先祖)의 문(門)에 독생(篤生)[912]하여 임금의 조모(祖母)의 혈통에 근속(近屬)하고, 누세(累世)의 바탕을 이어 이무(伊巫)[913]의 충성에 주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할아버지의 주량(舟梁)[914]에 연유하여 도신(塗莘)[915]의 복경(福慶)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의범(懿範)이 일찍이 성취하고 영문(令聞)[916]이 일찍이 나타난 것입니다. 직임조순(織紝組紃) 10년에 완만(婉娩)[917]의 가르침을 듣고, 종고금슬(鐘鼓琴瑟) 후궁(後宮)에 요조(窈窕)의 글을 외었나니 글귀는 상서(祥瑞)로움을 정하고 점괘는 길(吉)하다고 이릅니다.

동조(東朝)[918]에는 철종(哲宗)의 간책(簡冊)[919]이 온화한 미덕(美德)에 있고, 선대왕(先代王) 소위(昭位)[920]의 신령이 묵묵하게 도우셨습니다.

그 처음을 다지어 본지(本支)[921]가 백세(百世)토록 이어지고, 무리들에 이르러 경사(卿士)와 서민(庶民)

907) 옥(玉) 이름. 여인(女人)이 차는 옥(玉)으로 형(珩)은 위 황(璜)은 아래에 차는 것을 말함. 또한 오덕(五德)을 겸비함을 말함.
908) 훌륭한 덕(德)이나 세업(世業)을 이어받음.
909) 하늘의 권애(眷愛). 임금의 사랑.
910) 발병(發兵)하는 부절(符節).
911) 천자(天子)가 순수(巡狩) 할 때에 산천(山川)의 제사에 소용(所用)되는 옥(玉). 요(堯) 임금때 만든 악기 이름.
912) 하늘의 명을 받아 후덕(厚德)하게 태어남.
913) 중국 은(殷)나라의 이척(伊陟)과 무함(巫咸). 모두 어진 신하 임.
914) 배를 이어 만든 다리. 주(周)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이어짐을 말함.
915) 중국 고대 도산씨(塗山氏)인 여와(女媧)가 신일(辛日)에 하(夏)나라 우(禹)에게 시집갔음을 말함.
916) 영명(令名). 좋은 명예.
917) 여자의 태도가 의젓하고도 부드러움.
918) 대비가 거처하는 궁궐. 한(漢)나라 때에 황태후(皇太后)가 항상 머물던 장락궁(長樂宮)이 황제의 거처인 미앙궁(未央宮) 동쪽에 있었던 것에서 유래함. 전하여 대비를 가리킴.
919) 옛날 종이 대신에 글씨를 쓰던 대쪽. 곧 필적을 뜻함.
920) 신주의 왼쪽 줄에 있는 신위(神位).
921) 종손(宗孫)과 지손(支孫).

이 있습니다. 이에 좋은 날을 가리어 욕례(縟禮)를 크게 거행하였나니 이미 금년 3월 18일 을미일(乙未日)에 책보(冊寶)를 주어 정위(正位)하고, 20일 정유일(丁酉日)에 큰 혼례(婚禮)를 이뤘나니 현담(玄紞)[922]을 안을 다스리고 부덕(婦德)은 그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뭇 사람이 우러러 봄이 숙옹(肅雝)[923]보다 발 돋우어 보니 저 사녀(士女)들을 다스리고, 대비(大妃)의 전교(傳敎)를 열예(悅豫)[924]보다 더 받들어 그 가인(家人)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비유컨대 양의(兩儀)[925]의 교합(交合)은 모름지기 이 뜻이었습니다. 합뢰(合牢)[926]로 합근(合巹)[927]하니 이로부터 만성(萬姓)을 부육(俯育)[928]하는데 그 근본은 헌견(獻繭)[929], 헌종(獻種)[930]합니다. 적유(翟褕)[931]가 처음 다다르니 부드러운 박후(博厚)[932]가 땅을 짝하고, 봉륜(鳳綸)[933]이 멀리 미치니 뭇 혜택이 봄과 같습니다.

아! 화기(和氣)는 궁위(宮闈)[934]에 융화(融和)하고, 환성(歡聲)은 구우(區宇)[935]에 넘치다. 지정(至靜)·지유(至柔)의 덕(德)은 인지(麟趾)[936]가 상서(祥瑞)로움을 쌓고, 일가(一家)·일국(一國)의 인(仁)은 귀주(龜

雝群瞻於肅雝 釐爾士女 奉慈敎於悅豫 宜其家人 譬若兩儀之交 須斯義也 合牢而合巹 自此萬姓之俯育其本則獻繭而獻種 翟褕初臨 猗博厚之配地 鳳綸遐暨 庶惠澤之同春 於戲 和氣融於宮闈 歡聲溢於區宇 至靜至柔之德 麟趾儲祥 一家一國之仁 龜疇錫福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趙寅永 製進

922) 관(冠)의 앞뒤에 드리워 진 검은 단추.
923) 주(周)나라 천자(天子)의 공주(公主)가 제(齊)나라 제후(諸侯)의 아들에게 삼가고 화합한 모습으로 시집가는 것을 비유함.
924) 백성들이 기뻐함.
925) 천지(天地) 또는 음양(陰陽)(의(儀))는 우주(宇宙)의 대법(大法).
926) 부부(夫婦)가 거처의 공간을 함께함.
927) 술잔을 맞추는 뜻. 전(轉)하여 부부가 됨을 비유함.
928) 굽어 살피어 길러줌.
929) 누에고치를 드림. 곧 누에고치의 실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계속 이어짐.
930) 씨앗을 드림. 씨앗이 계속 싹터 나오는 것처럼 R계속 이어짐을 뜻함.
931) 꿩무늬를 놓아 지은 후부인(后夫人)의 제복(祭服).
932) 넓고 두터움. 여기에서는 부인의 덕이 넓고 두터움을 비유함.
933) 칙서(勅書). 임금이 특정인에게 권계(勸戒)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어서 내리는 글.
934) 궁궐. 임금이 거처하는 곳.
935) 갈라 놓은 한 지역.
936) 인지지화(麟趾之化)의 약칭(略稱). 황후(皇后)의 덕화(德化)를 일컬음.

疇)[937]가 복(福)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교시(敎示)하나니 마땅히 모두 알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대제학(大提學) 조인영(趙寅永)이 지어 바치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朴蓍會牒呈 則頒赦文一度 今月二十二日申時量 守門將元錫中 賫來乙仍于 依禮文祗受 頒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938]]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박시회(朴蓍會)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반사문(頒赦文)[939] 한 차례가 이 달 22일 신시(申時) 즈음에 수문장(守門將) 원석중(元錫中)이 가지고 와서 그 때에 예문(禮文)에 의하여 공경히 받고 반포(頒布)하였다고 하는 바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二十六日
農形封啓

26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朴蓍會牒呈 則境內農形 今番雨澤後 秋麰之立苗者 一倍向茂 春麰之早耕者 漸次向靑 早稻付種 及注秧乾播 今方始役 鍤役已畢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박시회(朴蓍會)의 첩정(牒呈)을 접(接)하니, '경내(境內)에 농형(農形)은 이번에 비가 내린 뒤에 가을 보리는 곧바로 싹이 나와서 갑절이나 무성하고, 일찍 경작(耕作)한 봄보리는 점차로 푸른빛이 돋아나고, 올벼의 부종(付種)과 주앙(注秧)·건파(乾播)는 바야흐로 시작하여 삽역(鍤役)을 이미 마쳤다.'고 하는 바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

937) 신비로운 거북점을 비유함.
938) 감사(監司) 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벼슬아치가 글로 써서 임금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939) 죄인들을 사면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글. 사면권은 국왕의 사법권에 속하였는 바, 임금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들거나 왕실의 어른이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또는 원자 탄생, 세자 책봉 국왕 등극 등의 경사가 있을 때 반사(頒赦)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자연재해는 국왕의 부덕과 억울한 사람들의 한이 모여서 발생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임금의 부덕을 반성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푼다는 취지에서, 왕실의 경사는 국민과 함께 한다 는 취지에서 반사를 행한 것이었음.

28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박시회(朴蓍會)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27일 진시(辰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 주룩 혹은 보슬 보슬 내리더니 오시(午時)에 이르러 한 호미자락이 충분하게 내려서 화영(華營)아래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7분(分)이라고 하는 바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二十八日

雨澤封啓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朴蓍會牒呈 則今月二十七日辰時量 始雨或霏或灑 同日午時至 所得洽爲一鋤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4월

여 백

初 一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초 1일 화령전(華寧殿)과 현륭원(顯隆園)을 봉심(奉審)하여 이상 없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衛將朴蓍會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趙秉緯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奉審無頉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화령전(華寧殿) 겸위장(兼衛將) 박시회(朴蓍會)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하룻날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무탈(無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 참봉 조병위(趙秉緯)의 첩정(牒呈)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니 무탈(無頉)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二日
出樊溪 拜大宅 祠宇 仍留自然經室 兩宿而歸

초 2일 번계(樊溪)에 나가서 큰 댁(宅) 사우(祠宇)에 배례(拜禮)하고 곧바로 자연경실(自然經室)에 머물면서 이틀밤을 자고 돌아왔다.

初 六日
北屯疏鑿畢役事 報牒來到

초 6일 북둔(北屯) 소착(疏鑿)의 역사(役事)를 마친 일로 보첩(報牒)이 접수되었다.

[中軍報牒]
北屯疏鑿之役 至初六日 告竣是乎在果 槩其形便 島以西本土露出 一望平鋪是乎旀 島以東地形稍高 勢難與下格 相等是乎乃 自築新堤截然爲兩池 一池自爲一池之形是乎旀

[중군보첩(中軍報牒)]
북둔(北屯)에 소착(疏鑿)의 역사(役事)가 초 6일에 이르러 준공(竣工)을 하였습니다. 대체로 그 형편은 섬(島) 서쪽은 본토(本土)가 노출되어 평평하게 펼쳐 있고, 섬 동쪽은 지형(地形)이 조금 높아서 그 형세가 아래 부분과 서로 비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 방축을 쌓으니 저절로 두 연못이 되어 한 못은 자연히 한 못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횡제(橫堤)는 고저(高低)와 광활(廣闊)이 한결같이 지난번에 아뢴대로 수두(水竇)[940]를 설치한 두 곳에 하류(河柳)[941]를 무성하게 심어서 사초(莎草)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가의 둘러친 방죽은 흙을 모아 쌓아서 경계를 정하고 감히 지난번과 같이 모경(冒耕)[942]의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도(水道)는 옛 터를 이용하여 큰 장마에 부딪쳐 부셔지는 근심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의교(如意橋)는 가상(架上)의 구토(舊土)를 철거하니 석축(石築)에 가로지른 주목(柱木)이 썩어서 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훼손(毁損)에 따라 보완(補完)하고 다시 석제(石堤)를 쌓아 새 재료를 구비하여 일제히 완축(完築)하였습니다. 따라서 둔전(屯田)에 관계되는 모든 역사(役事)는 지금에 차례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전후로 들어간 재물(財物)과 인력(人力)은 합계 2416냥(兩) 2전(戔) 3분(分) 이므로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내는 연유를 첩보(牒報)하는 일입니다.

横堤段 高低廣闊 一依前此所報 而底設水竇二處 盛植河柳 多被莎草 是乎遣 東邊圍堰段 畚土設築 定其經界 無敢有如前冒耕之弊是乎矣 水道則任其舊址 俾無大潦衝破之患 是乎旀 如意橋段 撤去架上舊土 則石築橫決柱木 腐傷不可 但以隨毁隨補 故更築石堤 畧備新材 一併完築 凡係屯役今皆次第告訖 是乎旀 前後所入物力 合爲二千四百十六兩二戔三分 是乎等以 修成冊上送 緣由牒報爲臥乎事

같은 날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겸임중군(兼任中軍) 박시회(朴蓍會)의 첩정(牒呈)을 보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은 가을 보리는 간혹(間或) 싹이 나서 자라고, 봄보리는 점차로 무성(茂盛)하다. 그리고 올벼는 부종(付種)을 이미 마치고, 늦벼는 주앙(注秧) 및 건파(乾播)하여 바야흐로 자란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兼任中軍朴蓍會牒呈 則境內農形 秋麰間或茁長 春麰漸次向茂 早稻付種已畢 晩稻注秧 及乾播方長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940) 물이 통할 수 있는 구멍.
941) 물가에 자라는 버들.
942) 임자의 승락이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음.

初 八日
進 實錄廳

초 8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十日
賓對進參 以 健陵修改 自 筵千庫擧行事 及八達門外 御路 以舊路還爲修治事 筵稟蒙允

초 10일 빈대(賓對)[943]로 진참(進參)하였다. 그리고 건릉(健陵)의 수개(修改)를 관천고(筵千庫)로부터 거행할 일과 팔달문(八達門) 밖 어로(御路)[944]를 옛 길로 수치(修治) 할 일을 연품(筵稟)[945]하여 윤허(允許)를 받았다.

[擧條]
顯陵園遷奉後 火巢內民田 給價買取 儲置筵千庫 丁字閣以下修改之節 專綰擧行著爲令式 行之至今 而 健陵修改 猶循他 陵寢例 自度支擧行 每當功役之作 往復費日 終不如該庫之朝令而夕備

[거조(擧條)]
현릉원(顯陵園)을 천봉(遷奉)[946]한 뒤에 화소(火巢)[947]안의 민전(民田)을 값을 주고 매취(買取)하여 관천고(筵千庫)에 저치(儲置)[948]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각(丁字閣) 이하 수개(修改)는 이번에 특별히 거행하여 영식(令式)[949]으로 지금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릉(健陵)의 수개(修改)는 오히려 다른 능침(陵寢)의 예에 따라 탁지(度支)[950]로부터 거행하여 언제나 공역(工役)이 시작되면 왕복하는 날짜가 허비되어 해고(該庫)[951]가 아침에 영(令)을 내리면 저녁에 대비하는 것만 같이 못합니다.

---

943)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대신(議政大臣)과 대간(臺諫), 옥당(玉堂)의 관리들이 임금 앞에 나아가 중요한 정무(政務)를 임금에게 아뢰는 일.
944) 임금이 통행하는 길.
945) 연주(筵奏).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과 같은 경연(經筵) 및 임금을 대하는 자리에서 임금에게 시사(時事) 혹은 정책(政策)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아뢰는 것을 말함.
946) 능묘(陵墓)를 옮겨서 모심.
947)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의 해자(垓子) 밖의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린 곳.
948) 나라에서 비축(備蓄)함.
949) 표본이 되는 법.
950) 호조(戶曹). 재무(財務)를 총괄하던 부서.
951) 해당지역의 창고.

또한 한 국내(局內)의 능원(陵園)은 특별한 예(例)가 마땅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제후릉(齊厚陵) 수개(修改)는 개성부(開城府)로부터 거행하고, 헌릉(獻陵) 수개(修改)는 광주부(廣州府)로부터 거행하는 예(例)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건릉(健陵)의 수리(修理)는 해당하는 도감(都監)의 큰 역사(役事)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소한 수즙(修葺)[952]의 역사(役事)는 해고(該庫)로부터 거행하면 사세(事勢)가 편리하고 정리(情理)도 화협(和協)하건만 사체(事體)[953]가 막중하므로 대신(大臣)들에게 하순(下詢)[954]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且於一局之內 陵園 不宜異例 自今依 齊厚陵 修改之自開城府擧行 獻陵修改之自廣州府 擧行之例 健陵修理 除該都監 大役外小小修葺之役 自該庫擧行 則事勢既便 情理亦叶 而事體莫重 下詢大臣 處之如何

이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은 전(傳)하기를, "대신(大臣)들의 뜻은 어떤가?"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관천고(筦千庫)는 본래 원침(園寢)의 수개(修改)에 수요(需要)키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릉(園陵)의 사체(事體)는 마땅히 이동(異同)[955]이 없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전례(前例)가 있으니 화류(華留)[956]가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하였다.

大王大妃殿 傳曰大臣之意如何 右議政朴宗薰 曰筦千庫 本爲 園寢修改所需而設 陵園事體 宜無異同 且有可援之已例 依華留所奏施行似好矣 大王大妃殿 答曰依爲之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이 답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는 바, '본부(本府) 팔달문(八達門) 밖 어로(御路)[957]는 기유년 읍(邑)을 옮길 처음에 척량(尺量)[958]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천(上柳川)부터 벽산복(碧山洑)을 지나고 하류천(下柳川)을 지나 대황교(大皇橋)에 도달(到達)합니다. 그리고 을유년간

又所啓 本府八達門外 御路卽己酉移邑之初 尺量設始者也 自上柳川 過碧山洑歷下柳川 以達大皇橋矣 乙酉年間 設始南屯於碧山洑

952) 지붕·바람벽 등의 허름한 데를 고치고 이음.
953) 일의 이치와 체면.
954) 임금이 신하에게 물음.
955) 서로 같지 못함.
956) 화영유수(華營留守)의 약칭(略稱).
957) 임금이 통행하는 길.
958) 자로 재고 역사(役事)를 설행함.

時 移路於東偏陂垞之上 旣而南屯水門有頃 初不得貯水 而往來行人 以新作路之稍覺迂廻 復從舊路側作路 禁之不得 于今十餘年 仍成大路

(乙酉年間)에 남둔(南屯)을 벽산복(碧山洑)에 설치를 시작할 때에 어로(御路)를 동편(東偏)[959] 언덕위로 옮겼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남둔(南屯) 수문(水門)이 탈이 나서 물을 가두어두지 못하고 왕래하는 행인(行人)은 점차로 신작로(新作路)가 멀리 돌아서 감을 깨닫고 다시 옛 길 곁을 따라 길을 내어 다니므로 금지하지 못하고 10년이 된 지금에 큰 길이 형성되었습니다.

而新作路 則跋涉旣罕 草藪茂盛 春秋修治 徒費民力 今若復通舊路 畧加葺治 以備 幸行時輦路 而新作路則許民耕墾 每年稅入 付之筦千庫 則事甚便宜 大小民人 一辭願此 而當初移路 旣是狀 聞 擧行之事 有不敢擅 便敢此仰達矣 大王大妃殿 答曰以舊路 爲之可也

신작로(新作路)는 발섭(跋涉)[960]이 이미 드물고 잡초가 무성하여 춘추(春秋)로 수치(修治)하여도 한갓 민력(民力)만 소모할 뿐입니다. 지금에 만약 옛길을 다시 통하고 대략 보수하여 행행시(幸行時)[961] 연로(輦路)[962]에 대비하고, 신작로(新作路)는 백성들에게 경간(耕墾)을 허락하여 매년 세입(稅入)을 관천고(筦千庫)에 넣어두면 일이 매우 편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민인(大小民人)들이 한결같이 이것을 원하건만 당초(當初) 길을 옮길 적에 이미 장계(狀啓)를 올려 거행하지 못하고 감히 갑작스레 아뢰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이 답(答)하기를 〃옛길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

十一日
進 實錄廳

11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二日
進 實錄廳

12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959) 동쪽으로 치우침.
960)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님.
961) 임금이 궁궐 밖으로 거동함.
962) 어로(御路). 임금이 통행하는 길.

13일 봉모당(奉謨堂) 전배시(展拜時)[963]에 진참(進參)하고, 곧바로 규장각(奎章閣) 연경당(演慶堂)에 가서 어진(御眞)을 봉심(奉審)하고 표제(標題)를 베껴썼다.

十三日
華謨堂 展拜時進參 仍進奎章閣演慶堂 奉審 御眞標題書寫

15일 주합루(宙合樓) 연경당(演慶堂)을 봉심할 때에 진참(進參)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현륭원(顯隆園)을 봉심하고 이상 없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十五日
宙合樓 演慶堂 奉審時進參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 겸위장(兼衛將) 박시회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 달 15일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무탈(無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의 첩정(牒呈) 내용에 이 달 15일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무탈(無頉)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 華寧殿 兼衛將朴著會牒呈 則今月十五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民耆牒呈內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6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十六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15일 사시(巳時)[964]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주룩주룩 내리고 그치기도 하더니 같은 날 유시(酉時)[965]에 한 호미자락 가까이 내렸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今月十五日巳時量 始雨或灑或止 同日酉時至 所得幾近一鋤 而營下測雨器 水

963) 궁궐이나 종묘(宗廟)·능묘(陵墓)·문묘(文廟)등에 나아가 절하고 뵈는 것.
964)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사이.
965)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사이.

深爲五分是乎旀 農形段 秋麰間或胚胎 春麰漸次苗長 早稻付種 及注秧間間立苗 晩稻乾播已畢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그리고 본영(本營) 아래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5분(分)이라고 하며 농형(農形)은 가을 보리는 간혹 배태(胚胎)[966]하고, 봄보리는 점차 싹이 자라며, 올벼는 부종(付種)하고, 주앙(注秧)은 간간히 이삭이 트고 늦벼의 건파(乾播)는 이미 다 마쳤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七日
兩廟影幀 移奉景慕宮景祐宮時 陪從問安班 進參

17일 양묘(兩廟)의 영정(影幀)을 경모궁(景慕宮)·경우궁(景祐宮)에 이봉(移奉) 할 때에 배종(陪從)하고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十九日
景慕宮擧動時 陪從 還宮後 問 安班進參

19일 경모궁(景慕宮)에 거동할 때에 배종(陪從)하고 환궁(還宮)한 뒤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二十日
進 實錄廳

20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一日
進 實錄廳

21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二日
進 講入侍

22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

二十三日
進 實錄廳

23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966) 전(轉)하여 사물의 시초. 싹틈.

24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같은 날 서둔(西屯) 보축(補築)의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는 보첩(報牒)이 내도(來到)하였다.

二十四日

進 實錄廳

同日西屯補築始役 報牒來到

[중군보첩(中軍報牒)]

서둔제동(西屯堤垌) 준축(蹲縮)[967]한 곳 보축(補築)의 역사(役事)를 이 달 14일에 시작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中軍報牒]

西屯堤垌蹲縮處 補築之役 以今二十四日爲始 緣由馳報爲臥乎事

25일

태순(太淳)의 친사(親事)[968]을 27일로 택일(擇日)하고, 이 날에 삼가(三加)[969]의 예(禮)를 행하였다.

二十五日

太淳親事 以二十七日涓吉而是日行三加之禮

26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물러나온 뒤에 농형(農形)의 장계(狀啓)를 봉(封)하였다.

二十六日

進 講入侍公退後 封農形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을 접하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이 가을보리는 이미 이삭이 모두 피었고, 봄보리는 간혹 이삭이 핀다. 그리고 올벼는 부종(付種)하고, 주앙(注秧)은 이미 모두 싹이나고, 만도(晩稻)는 건파(乾播)하여 간혹 싹이 튼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境內農形 秋麰已盡發穗 春麰間或發穗 早稻付種 及注秧已盡立苗 晩稻乾播 間或立苗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

967) 지면(地面)이 주저앉아서 오므라짐.

968) ①친히 일을 다스림. ②결혼문제(結婚問題). 혼담(婚談).

969) 관례(冠禮) 때에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던 의식. 초가(初加)에는 입자(笠子)·단령(團領)·조아(條兒), 재가(再加)에는 사모(紗帽)·단령(團領)·각대(角帶), 삼가(三加)에는 복두(幞頭)·공복(公服)을 입었음.

同日夕 行納幣之禮

같은 날 저녁에 납폐(納幣)의 예(禮)를 행하였다.

二十七日
行親迎之儀 醮禮後 使新婦祗見 祠宇 仍行茶禮 撫古念今 愴甚於喜矣

27일 친영(親迎)[970]의 의식 초례(醮禮)[971]를 행한 뒤에 신부(新婦)로 하여금 사우(祠宇)를 공경히 뵙게 하고 곧바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이에 지난날을 회상하고 지금을 생각하니 슬픔이 기쁨보다 더 하였다.

二十八日
進 講入侍

28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

二十九日
西屯補築 畢役報牒 來到

29일 서둔(西屯) 보축(補築)의 역사(役事)를 다 마쳤다는 보첩(報牒)이 내도(來到)하였다.

[中軍報牒]
西屯堤堌 蹲縮處補築 今二十九日至畢役 而容入物力爲六百七兩一戔七分 是乎等以 緣由牒報爲臥乎事

[중군보첩(中軍報牒)]
서둔제동(西屯堤堌) 준축(蹲縮)[972]한 곳 보축(補築)을 지금 29일에 역사(役事)를 마쳤는데 여기에 들어간 물력(物力)이 607냥(兩) 1전(戔) 7분(分)이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製進端午帖

같은 날 단오첩(端午帖)[973]을 지어 바쳤다.

[五律]
九闥赫弘敞 薰飇殿角凉 菖樽涵淑氣 綵仗泛祥光 牒鏤慈徽闡 舟迎福履將 岡陵齊燕喜 三壽頌洋洋

[오율(五律)]
구달(九闥)[974]에 넓고 높게 빛나는데,
훈훈한 바람 전각(殿角)[975]이 시원하네.
창포(菖蒲)[976]의 술두루미에는 맑은 기운 은은하고,
채장(綵仗)[977]에는 상광(祥光)이 뜨네.

970) 육례(六禮)의 하나.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음.
971) 혼인 지내는 예식.
972) 지면(地面)이 주저앉아서 오므라짐.
973) 단오절(端午節)을 기하여 유신(儒臣)들이 임금에게 지어바치는 시첩(詩帖).
974) 임금이 살고 있는 구중궁궐(九重宮闕).
975) 임금이 거처하는 높은 궁전.
976) 창포주(菖蒲酒)의 약칭(略稱). 곧 창포를 썩어서 담근 술.

첩지(牒紙)에는 대비(大妃)의 휘호(徽號)를 새겨 천명(闡明)하고,

주즙(舟楫)은 복록(福祿)을 맞이하여 가지네.

강릉(岡陵)[978]은 연희(燕喜)[979]와 가지런한데.

삼수(三壽)[980]의 칭송이 양양(洋洋)하네.

[칠절(七絶)][981]

붉은 석류(石榴) 처음 터뜨리고 녹포(綠蒲)는 향기로운데, 고각(高閣)엔 평온한 시계소리 드물게 들리어 퍼지네.

한 낮 단지(丹墀)[982]에는 강지(講旨)[983]가 펼쳐지고,

유신(儒臣)들은 앞 다투어 이남(二南)[984]의 글을 바치네.

[七絶]

紅榴初綻綠蒲香　高閣稀聞暖漏長　日午丹墀宣講旨　儒臣首進二南章

977) 채색(彩色)한 의장(儀仗).

978) 《시경》 천보장(天保章)의 "천보정이(天保定爾) 여강여릉(如岡如陵)" 에서 따온 말로서, 국운이 산과 언덕처럼 장구하기를 축원하는 말.

979) 주연을 베풀고 기쁘함.

980) 세가지의 장수(長壽). 곧, 100세 상수(上壽), 80세의 중수(中壽), 60세의 하수(下壽)의 총칭.

981) 칠언절구(七言絶句)로 지은 한시(漢詩).

982) 단폐(丹陛)와 같은 말로써 곧 궁정(宮庭)을 의미하여, 임금을 뜻하기도 함.

983) 강독(講讀)의 교지.

984) 시경(詩經)의 주남(周南)가 소남(召南). 곧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의 덕치(德治)를 비유함.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5월

여 백

初 一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초 1일 화령전(華寧殿)과 현륭원(顯隆園)을 봉심하여 무탈(無頉)한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 兼令金漢淳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 參奉趙秉緯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 겸령(兼令)[985]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 1일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무탈(無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 참봉 조병위의 첩정(牒呈) 내용에 이 달 초1일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무탈(無頉)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二日
離發中火于果川 行到迎華亭 看審北屯疏鑿形便 未刻 抵營 封啓

초 2일 이발(離發)하여 과천(果川)에서 점심을 먹고 영화정(迎華亭)에 도착하여 북둔(北屯)의 소착(疏鑿) 형편을 살펴보고 미각(未刻)에 본영(本營)에 돌아와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에게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일이 있어서 상경(上京)하였다가, 당일에 감영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雨澤封啓

초 3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985) 수령(守令)으로서 다른 직책을 겸함.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1일 술시(戌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보슬 혹은 주룩주룩 내렸으나 당일 축시(丑時)에 이르러 겨우 티끌이 젖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신(臣)의 감영의 측우기(測雨器)가 4분(分)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뭄을 애석해 하던 나머지 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대지(大地)를 적시어 촉촉하더니 곧바로 날씨가 개이니 이로 인하여 계속 많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비는 연유(緣由)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今月初二日戌時量　始雨或霏或灑　當日丑時至　所得僅爲浥塵　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水深　爲四分是白如乎　惜乾之餘　甘澍伊始而濈潤　無幾旋卽開霽　繼此沛然　方切顒祝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건릉(健陵) 단오제향(端午祭享)에 홍의근(洪義瑾) 대감(大監)이 내려왔다.

同日　健陵端午　祭享　獻官洪台義瑾　下來

초 4일

현륭원(顯隆園) 단오제향(端午祭享)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갔다.

初 四日
以　顯隆園　端午　祭享獻官陪　香祝詣　園所

초 5일

제향(祭享)을 설행한 뒤에 봉계(封啓)하고, 건릉(健陵) 헌관(獻官)으로 입부(入府)하였다가 곧바로 출발하였다.

初 五日
祭享設行後封啓　健陵獻官入府旋發

[계본(啓本)]

삼가 제향(祭享)의 일을 장계(狀啓)합니다. 이 달 초 5일 현륭원(顯隆園) 단오제향(端午祭享)에 신(臣)이 헌관(獻官)으로 진참(進參)하여 설행한 뒤에 원상(園上)을 봉심하니 잡초·잡목(雜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산(山) 안도 수목(樹木)을 범착(犯斫)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初五日行　顯隆園端午　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華寧殿 日次奉審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初 七日

出往西屯 看審補築形便後仍坐杭眉亭 與中軍 半晌打話

초 7일

서둔(西屯)에 나가서 보축(補築)의 형편을 보고 살핀 뒤에 곧바로 항미정(杭眉亭)에 앉아서 중군(中軍)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初 八日

封雨澤農形啓

초 8일

우택(雨澤)·농형(農形)을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今月初七日申時量 驟雨所得 僅爲一鋤 而農形秋麰入實 春麰已盡發穗 早稻付種 初除草方始 晩稻乾播向靑而旱餘 驟過之雨濈潤無幾付種 與注秧 間多乾涸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水深爲六分 是白如乎 秧節已屆 惜乾頗久 今番所得無異沃焦 言念民事 誠切悶然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 7일 신시(申時) 즈음에 갑작스레 내린 비가 겨우 한 호미자락 깊이였고 농형(農形)은 가을보리는 결실(結實)을 맺고 봄보리는 이삭이 모두 피었습니다. 또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처음으로 풀을 매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푸른빛을 띠는데 갑자기 지나간 비가 촉촉하여 얼마간 있다가 부종(付種)·주종(注秧)하였으나 간간히 건고(乾涸)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신(臣)의 감영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6분(分)이라고 하므로 가을 절후가 이르러 가뭄을 애석한지 오래되었건만 지금에 내린 비가 메마름을 적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사(民事)를 생각하니 진실로 민망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九日

濬川之役 自是日伊始 出往看審

초 9일

준천(濬川)의 역사(役事)가 이 날부터 시작되어 나가서 살펴보았다.

초 10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같은 날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 탄신전문(誕辰箋文)을 봉발(封發)하였다.

初 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大王大妃殿 誕辰箋文 封發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이 천추(千秋)에 귀주(龜疇)의 복(福)을 크게 응수(膺受)하여 때는 5월에 곧 홍류(虹流)[986]의 기약이 돌아오니 경사(慶事)는 궁궐에 넘치고 기쁨은 조야(朝野)에 균등하였습니다.

공경히 생각하니 태임(太任)이 성인(聖人)을 짝하고 요녀(堯女)의 자태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숨은 공(功)이 보익(保翼)의 근실(勤實)함을 드리워 온 나라가 모두 감화(感化)하여 성인(聖人)의 짝이 요조(窈窕)[987]의 칭송(稱頌)에 오르고, 이남(二南)[988]이 처음을 시작하여 탄신(誕辰)의 날을 당하니 모두가 송도(頌禱)의 정성이 간절합니다.

엎드려 생각하노니 일념으로 공북(拱北)하였습니다. 이에 2년간 동쪽땅을 다스리어 화봉(華封)이 축삼(祝三)하니 정성이 배호(拜虎)[989]에 절실하고, 숭산(嵩山)에서 만세를 부르니 예(禮)가 그래도 변오(抃鰲)에 펼칩니다.

[箋文]

伏以節是 千秋 丕膺龜疇之福 時維五月 載回虹流之期 慶溢 宮闈 歡均朝野 恭惟 媲母任聖 邁女堯姿 陰功垂保翼之勤 八域覃化 聖配騰窈窕之頌 二南造端 肆當誕彌之辰 擧切頌禱之悃 伏念臣一念拱北 兩載釐東 華封祝三 誠幾切於拜虎 嵩山呼萬 禮粗伸於抃鰲

11일

서장대(西將臺) 수개(修改)의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

十一日

西將臺 修改始役

---

986) 음양(陰陽)이 맞닿아 무지개가 된다는 뜻에서 부부의 인연이 됨을 비유함.
987) 부녀의 행동이 얌전하고 조용함.
988) 시경(詩經)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 곧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의 덕치(德治)를 비유함.
989)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소목공(召穆公) 호(虎)에게 회이(淮夷)난을 평정하였다 하여 산천토전(山川土田)을 하사(下賜)한데서 유래함.

十四日

因秋曺關 本府無未錄 啓罪人 可以審理事封啓

14일

추조(秋曺)[990]의 관자(關子)에 따라 본부(本府)에서는 아직 녹계(錄啓)[991]하지 못한 죄인(罪人)을 심리(審理)할 일이 없으므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節到付刑曺關內 節 啓下敎今五月十二日 大臣備局堂上 引見入 侍時 大王大妃殿 傳曰京外審理 卽爲擧行事分付事 傳敎敎是置 本府未錄 啓罪人 親執査究 趁卽馳 啓 一以爲對揚 盛意 一以爲疏鬱伸枉之地 亦爲白有臥乎所 本府則初無未錄 啓罪人之可以審理者 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祈雨祭設行事 發甘判官

[장계(狀啓)]

이번에 도부(到付)한 관자(關子) 내용에 계하(啓下)하신 제가(制可)는 5월 12일 대신(大臣)·비국당상(備局堂上)이 인견(引見)[992]하여 입시(入侍)할 때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이 전(傳)하여 말하기를 경외심리(京外審理)는 곧바로 거행할 일로 분부한 전교(傳敎)이십니다. 본부에서는 아직 녹계(綠啓)하지 못한 죄인(罪人)은 친히 잡아서 조사하고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성대한 뜻을 대량(對揚)[993]하고, 또 하나는 소울(疏鬱)[994]·신왕(伸枉)[995]을 위한 처지입니다. 따라서 본부(本府)는 처음부터 녹개(錄啓)하지 못한 죄인(罪人)을 심리(審理)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기우제(祈雨祭)를 설행(設行)하는 일로써 감결(甘結)을 판관(判官)에게 보냈다.

[甘結]

右甘爲今月十二日 大王大妃殿 傳曰祈雨祭 不卜日設行分付事 命下矣 見今亢旱

[감결(甘結)[996]]

위 감결(甘結)은 이 달 12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이 전(傳)하여 말하기를 기우제(祈雨祭)를 택일(擇日)하지 않고 설행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지금에 가

990) 형조(刑曺). 조선 왕조 때 육조의 하나. 법률·소송·형옥·노예(奴隸) 등에 관한 일을 맡음.
991) 죄인의 심리나 처결, 인사추천 등에 관한 내용을 글로 적어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함.
992) 인도하여 보임. 임금이 신하를 불러 들여 만나봄.
993) 임금에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천하에 알림.
994) 답답함을 펴 헤침.
995) 잘못된 점을 밝힘.
996)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던 공문(公文).

묾이 혹독하고 비가 올 조짐이 막연하여 민사(民事)를 생각하니 천만번 애타고 민망합니다. 본부경내(本府境內)의 영험(靈驗)한 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되 택일(擇日)하지 않고 이 달 15일 정성으로 설행(設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품(祭品)·제기(祭器)의 정결(精潔)과 제관(祭官)·집사(執事)의 재목(齋沐)[997] 등을 십분 유념(留念)하여 거행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를 마친 뒤에 제문(祭文) 및 제물기수(祭物器數)와 제관(祭官)의 직함과 성명을 곧바로 치보(馳報)하여 계문(啓聞)[998]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孔酷　雨意漠然　言念民事萬萬渴悶　本府境內靈驗處祈雨祭不卜日　今十五日　虔誠設行爲乎矣　祭品祭器之精潔　祭官執事之齋沐等節十分着念　擧行爲旀　行事後祭文及祭物器數　祭官職姓名　卽爲馳報　以爲啓　聞之地　宜當事

15일

새벽녘에 객사(客舍)에 나가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중군(中軍)·판관(判官)이 진참(進參)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에서 하대봉심(夏大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十五日

開東詣客舍　行望　闕禮　中軍判官進參
同日　華寧殿　夏大奉審後封啓

[장계(狀啓)]

화령전(華寧殿) 하맹삭(夏孟朔)[999] 대봉심(大奉審)은 원래 지난 달 15일 이온 바 마땅히 그 때에 거행해야 할 것이지만 신(臣)이 서울에 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하여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15일 분향(焚香)한 뒤에 겸령신(兼令臣) 김한순(金漢淳)과 겸위장(兼衛將) 박시회(朴蓍會)와 더불어 함께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었으며,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李民耆)의 첩정에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이상 없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華寧殿　夏孟朔大奉審　元定是白在　去月十五日　當爲擧行　而臣在京未還　不得擧行是白遣　今月十五日　焚　香後　與兼令臣金漢淳　兼衛將臣朴蓍會　眼同奉審是白乎則　殿內諸處　俱爲無頉　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奉審無頉　是如爲白乎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997) 재계(齋戒)와 목욕(沐浴).
998) 신하가 정무에 관하여 임금에게 아룀.
999) 음력 4월을 뜻함.

同日 初次祈雨祭 設行事封啓 又封別軍官都試設行計料事啓

같은 날 첫번째로 설행(設行)한 일로 봉계(封啓)하고 또 별군관(別軍官) 도시(都試)를 설행할 계획으로 봉계하였다.

[狀啓]
今月十二日 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 大王大妃殿傳曰祈雨祭不卜日設行事傳敎敎是置 本府農形惱旱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向者驟過之雨 無異沃焦而後 七八日一直暵乾 水泉斷流 秧坂龜圻 目下民情 萬萬渴悶 是白乎等以 卽爲知委於本府判官金漢淳處 祈雨祭不卜日 以今十五日 虔誠設行 社壇後 祭官職姓名開錄于左 爲白乎旀
再次祈雨祭 間二日以今十八日 設行於府內光敎山 計料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이 달 12일 대신(大臣) 비국당상(備局堂上) 인견(引見)으로 입시(入侍)할 때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이 전(傳)하여 말하기를 기우제(祈雨祭)를 택일(擇日)하지 않고 설행(設行)하라는 일을 전교(傳敎)하셨습니다. 본부(本府)의 농형(農形)은 뇌한(惱旱)[1000]의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마는 얼마전 갑작스레 지나간 비가 메마름을 적신 뒤 7~8일 간 계속 가물어서 물의 원천이 끊이고 모판이 갈라져서 눈으로 보는 민정(民情)이 천만번 애타고 민망합니다. 이에 본부판관 김한순에게 명령하여 기우제를 택일하지 않고 이 달 15일에 사단(社壇)[1001]에서 정성으로 설행하라고 한 뒤에 제관직(祭官職)의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합니다.
재차(再次)로 기우제(祈雨祭)를 2일을 간격한 지금 18일에 부내(府內) 광교산(光敎山)에서 설행할 계획의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營別軍官 今春夏等都試以今月十六日 擇定設行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영(臣營)의 별군관(別軍官)[1002]을 선발하는 올해 춘하등(春夏等) 도시(都試)를 이 달 16일을 택정(擇定)하여 설행할 계획의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1000) 가뭄으로 인한 고뇌(苦惱).
1001) 사직단(社稷壇), 조선 왕조 태조(太祖) 3년(1394)에 세운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을 제사 지내던 제단.
1002) 조선 왕조 때 훈련도감·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 등에 속한 하사(下士)의 하나.

17일 별군관(別軍官) 도시(都試)를 설행하는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十七日
別軍官 都試設行事 封啓

[장계(狀啓)]
신영(臣營)에서 별군관(別軍官) 도시(都試)를 이 달 16일 설행한 연유를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신은 당일에 종사관(從事官) 김한순과 중군(中軍) 박시회와 더불어 시험장을 열어 시취(試取)하였습니다. 이에 거수인(居首人)의 성명과 나이 그리고 그의 부친(父親) 이름과 시수(矢數) 및 월천연조(越薦年條)[1003]와 추천자의 직책과 성명을 아래에 개록(開錄)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좌열(左列) 별군관(別軍官) 최홍원(崔弘元)은 각기(各技)[1004]의 합계가 10시(矢) 2분(分)입니다.

[狀啓]
臣營別軍官都試 以今十六日 設行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與從事官金漢淳 中軍朴蓍會 眼同開場試取後 居首人姓名年歲父名矢數 及越薦年條 薦主人職姓名 開錄于左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左列別軍官 崔弘元 各技合十矢二分

18일 재차(再次) 기우제를 설행(設行)하는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十八日
再次祈雨祭 設行事 封啓

[장계(狀啓)]
본부(本府)는 재차(再次) 기우제(祈雨祭)를 이 달 18일에 설행(設行)할 계획의 연유를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을 접하니 당일에 기우제를 광교산(光敎山)에서 정성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였습니다. 또 3차 기우제를 이 달 21일 부내(府內) 용연(龍淵)에서 설행할 계획의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本府再次祈雨祭 今十八日 設行計料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 則當日虔誠 設行於光敎山 是如爲白有等以祭官職姓名 開錄于左爲白乎旀 三次祈雨祭 以今二十一日 設行於府內龍淵計料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農形封啓

1003) 잘못을 저질러 천망(薦望)에 들지 못함.
1004) 각 기예(技藝).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境內農形 秋麰向黃 春麰入實 而惱旱惱風 間多白颯 旱稻付種 及晩稻乾播 初除草方張 而亦以久旱土垎 往往中撤 有水根洞畓 間或移秧 而漸就枯黃 水根不足處在在乾涸 翻耕無術 是如爲白有臥乎所 秧節漸晩 一霈尙悶 目下民事 轉益遑悶 際此沛然 方切顒祝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은 가을보리는 노랗게 물이 들고, 봄보리는 결실(結實)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한(惱旱)·뇌풍(惱風)[1005]으로 간간히 백삽(白颯)[1006]이 많다. 또한 올벼는 부종(付種)하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첫 번째 김을 매어 자라고 있지만 오랜 가뭄으로 흙이 말라서 가끔씩 중도에서 철폐(撤廢)하고 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이 있는 동답(洞畓)[1007]에 간혹 모을 심었지만 점차로 고황(枯黃)[1008]하고 수근(水根)이 부족한 곳에는 메말라서 번경(翻耕)[1009]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모 심을 절기는 점점 늦어지고 한 차례의 비도 쏟아지지 않아서 눈앞에 백성들의 일이 도리어 황망(遑忙)하고 민망합니다. 이 즈음에 간절히 비는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出往濬川所 及西將臺 看審役處

같은 날 준천소(濬川所)[1010] 및 서장대(西將臺)에 나가서 공사현장을 간심(看審)하였다.

十九日
本府還餉 及五邑所在 南漢餉租加分事 封啓

19일 본부(本府)에 환향(還餉) 및 5개 읍에 있는 남한(南漢) 향조(餉租)[1011]를 가분(加分)[1012]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1005) 바람으로 인한 고뇌.
1006) 흰빛이 들고 꺾이어 떨어짐.
1007)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짓는 논.
1008) 말라서 누렇게 됨.
1009) 논을 여러 번 갈아 뒤집음.
1010) 내를 파서 깊게 하는 그 장소.
1011) 환향(還餉)하는 곡식.
1012) 조선 시대 삼정(三政)의 하나인 환곡(還穀)이나 군향미(軍餉米)를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 김한순(金漢淳)의 첩정을 접하니, '회부(會付)[1013]한 환향(還餉)이 여태껏 시행되지 않아서 비록 당년(當年)에 그때마다 가분(加分)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거듭 흉년이 든 나머지 정봉(停捧)[1014]이 이미 많고 춘궁기 이래로 환호(還戶)[1015]가 배사(倍徙)[1016]합니다. 하물며 지금에는 양맥(兩麥)[1017]이 흉작(凶作)을 면치 못하니 농사철에 민정(民情)이 도리어 민망함을 더 합니다. 비록 어느 정도는 분급(分給)하였으나 계속하여 환향(還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고(倉庫)에 있는 벼 2,510석(石)과 쌀 1,065석(石)과 콩 1,528석(石)을 특별히 가분(加分)을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연이어 본부(本府)에 속하는 안산군수(安山郡守) 이준수(李俊秀)·용인현령(龍仁縣令) 이종윤(李鍾允)·진위현령(振威縣令) 박장암(朴長馣)·시흥현령(始興縣令) 이명원(李鳴遠)·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가 아뢴 바에 의하면, '읍환(邑還)[1018]이 매우 적어서 차례대로 수행할 길이 없고 눈앞에 사세(事勢)가 애타고 민망함을 다 한다. 그리고 본부(本府)가 소관(所管)하는 남한향조(南漢餉租) 창고에 있는 가운데에서 안산(安山) 200석, 용인(龍仁) 1,000석, 진위(振威) 1,600석, 시흥(始興) 590석, 과천(果川) 557석을 전례(前例)에 따라 가분(加分)하는 일로 첩보가 왔다.'고 하는 바 환향(還餉)의 법(法)이 엄중하지만 백성들의 어려움이 이와 같다고 하니 지금에 경법(經法)[1019]만 지키고 변통(變通)을 생각하지 않으면 백성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以爲會付還餉　自來不敷雖在當年　每請加分　是在如中　今年段荐歉之餘　停捧旣多　窮春以來　還戶倍蓰　況今兩麥　未免失稔　農節民情轉益悶然　雖略綽分給　無以排繼還餉　留庫條中　租二千五百十石　米一千六十五石　太一千五百二十八石　特請加分　亦爲白乎旀

連接屬邑安山郡守　李俊秀　龍仁縣令　李鍾允　振威縣令　朴長馣　始興縣令　李鳴遠　果川縣監　鄭晩敎所報　則邑還尠少　排巡無路　目下事勢俱極渴悶　本府所管　南漢餉租　留庫倏中　安山二百石　龍仁一千石　振威一千六百石　始興五百九十石　果川五百五十七石　依已例加分事報來是白乎所　還餉法意　非不嚴重　而灾民艱食　誠如邑報　今若徒守經法　不思變通　則有非恤民補助之道　是白

1013) 금전이나 곡물을 회계장부에 회록(會錄)하고 해당관아에 넘겨 주는 일.
1014) 부세 또는 공물을 바치는 것을 정지함.
1015) 환곡할 호수(戶數).
1016) 배(倍)는 한 갑절, 사(蓰)는 다섯 갑절. 곧 갑절 이상 댓 갑절 가량.
1017) 봄보리와 가을보리.
1018) 고을에서 관장하는 환향곡(還餉穀).
1019) 대경대법(大經大法). 공명정대한 원리와 법칙.

乎等以 玆敢據實 登 聞爲白去乎 本府還餉 留庫條中 租米太合五千一百三石 及五邑所在餉租中 三千九百四十七石 特許加分事 令廟堂 稟 旨分付爲白只爲

을 구휼(救恤)하여 돕는 길이 아니므로 이에 감히 사실을 아뢰옵니다.

본부(本府) 창고에 있는 환향(還餉) 조·미·태(租米太) 5,103석(石) 및 5개 읍(邑)에 있는 향조(餉租) 3,947석(石)을 가분(加分)의 일로 특별히 허락키로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케 합니다.

同日 顯隆園 忌辰祭享 奉審閣臣 金台興根 入府 直抵壯南軒 少話

같은 날 현륭원(顯隆園) 기신제향(忌辰祭享)[1020]에 봉심각신(奉審閣臣) 김흥근(金興根) 대감(大監)이 본부에 들어오므로 곧바로 장남헌(壯南軒)에 가서 잠깐 대화를 하였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以 顯隆園 祭享獻官 陪 香祝 詣 園所

20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같은 날 현륭원 제향(祭享)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나갔다.

二十一日

祭享設行事 封啓

21일

제향(祭享)을 설행(設行)하는 일을 봉계(封啓)하였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二十一日 行 顯隆園 忌辰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계본(啓本)]

삼가제향(祭享)의 일을 아룁니다. 이 달 21일에 현륭원 기신제향(忌辰祭享)을 행하는데 신(臣)이 헌관(獻官)으로 진참(進參)하여 설행하였다. 그리고 원상(園上)을 봉심하니 잡초·잡목(雜木)이 없고, 사방 산(山)내에도 수목(樹木)을 범작(犯斫)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 성명(姓名)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1020)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향(祭享).

같은 날 아침에 봉심각신(奉審閣臣)을 가서 뵙고 곧바로 작별하였다.

같은 날 3차 기우제를 설행한 일을 봉계하였다.

同日朝 往見奉審閣臣 仍爲敍別 同日 三次祈雨祭 設行事 封啓

[장계(狀啓)]

본부(本府)에서 3차 기우제(祈雨祭)를 이 달 21일에 설행한다는 계획의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그때에 신(臣)은 판관(判官)과 더불어 현륭원 기신제향(忌辰祭享) 제관(祭官)으로 상치(相値)[1021]하여 몸소 거행하지 못하고 영화도찰방(迎華道察訪) 오치건(吳致健)으로 하여금 부내(府內) 용연(龍淵)에서 정성으로 설행케 하였습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고, 4차 기우제(祈雨祭)를 이 달 24일에 부내(府內) 팔달산(八達山)에서 설행할 계획의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本府三次祈雨祭 今二十一日 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與判官 俱以顯隆園 忌辰祭享祭官相値 不得擧行乙仍于 使迎華道察訪 吳致健 誠設行於府內龍淵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 爲白乎旀 四次祈雨祭 以今二十四日 設行於府內八達山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4차 기우제(祈雨祭)를 몸소 행하기로 감결(甘結)을 판관(判官)에게 띄우다.

同日 四次祈雨祭 躬行事 發甘判官

[감결(甘結)]

이 달 24일에 4차 기우제(祈雨祭)를 행하는데 영문(營門)이 몸소 팔달산에서 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祭物)과 제품(祭品)을 힘써 정비(精備)하고 하예(下隷)[1022]들의 의복(衣服)도 세탁하게 할지어다. 제단(祭壇)과 도로(道路)는 각별히 수리하여 치워놓아 털끝만큼도 불성실함이 없도록 마땅히 할 일입니다.

[甘結]

今二十四日 行四次祈雨祭 營門當躬行於八達山 祭物祭品 務從精備 下隷衣服亦令澣濯 祭壇與道路段置 各別修治 俾無一毫不誠之地 宜當向事

같은 날 서장대(西將臺) 및 서포루(西舖樓)와 화양루(華陽樓)를 수개(修改) 역사(役事)를 이 날에 이르러 고흘(告訖)[1023]하였다.

同日 西將臺 及書舖樓 華陽樓 修改之役 至是日告訖

1021)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 침.
1022) 남자 종과 계집 종의 총칭(總稱).
1023) 일이 완성되었음을 알림.

[三處 容入物力 合爲一百二十七兩四戔]

[세 곳에 들어간 물력(物力)이 모두 127냥(兩) 4전(戔)이 되었다.]

二十二日

還餉加分準劃事 籌關來到

22일

환향(還餉) 가분(加分)[1024]의 준획사(準劃事)[1025]로 주관(籌關)[1026]이 내도(來到)하였다.

[籌關]

卽見水原留守徐 狀 啓 則以爲會付還餉 自來不敷 排巡難繼 況今兩麥 未免失稔 農節民情 轉益遑汲 本府還餉租米太 合五千一百三石 屬邑餉租 三千九百四十七石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分留法意 雖甚不輕 元還不敷 農糧難繼 歉餘民情 在所當念 所請數爻視近例不甚過多 依狀請許令加分何如 答曰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向事

[주관(籌關)]

지금 본 수원유수(水原留守) 서모(徐某)의 장계(狀啓)인 즉,

"회부(會付)[1027]한 환향(還餉)이 여태 시행되지 않아 배순(排巡)[1028]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양맥(兩麥)이 흉년을 면하지 못하여 농절(農節)과 민정(民情)이 도리어 황급함을 더합니다. 본부에 환향(還餉) 조·미·태(租·米·太) 합(合) 5,103석(石)과, 속읍(屬邑) 향조(餉租) 3,947석(石)을 특별히 가분(加分)하는 일로 의정부에 청하여 품지(稟旨) 분부하게 하되 분류(分留)하는 법(法)의 뜻이 비록 가볍지는 않으나 원환(元還)[1029]이 시행되지 않아 농량(農糧)을 지속하기 어려워 흉년 끝에 민정(民情)을 생각해야 하므로 청한 수효(數爻)는 근례(近例)에 비추어 과다(過多)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계(狀啓)의 요청에 의하여 가분(加分)을 허락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答)하여 말씀하시기를 "윤허(允許)할 일이라."고 전교(傳敎)하셨으니 전교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일입니다.

1024) 조선 시대 삼정(三政)의 하나인 환곡(還穀)이나 군향미(軍餉米)를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
1025) 법에 따라 획급(劃給)하는 일.
1026) 지방 관아(官衙)의 요구(要求) 사항을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내려보내는 공문.
1027) 금전이나 곡물을 회계장부에 회록(會錄)하고 해당 관아에 넘겨 주는 일.
1028) 차례대로 순행하여 살핌.
1029) 원래의 환향(還餉).

23일

기우제(祈雨祭)의 축문(祝文)을 지어 향(香)을 가지고 팔달산(八達山)에 갔다.

二十三日

製祈雨祭祝文 賫香詣八達山

[축문(祝文)]

아! 무슨 허물인가 이 경기(京畿) 지방의 농부들이여. 번번히 갖춘 것 없으니 경병(罄甁)[1030]에 뇌치(罍恥)[1031]하네.

서축(杼軸)[1032]이 모두 비었나니 찬여(鄽閭)[1033]가 이앵(咿嚶)[1034]한다.

그래도 지금에 바라옵건데 곤궁함이 변하여 형통하련만, 어찌 항양(亢陽)[1035]이 별안간 초경(初庚)[1036]에 임박하였는고.

냇물은 끊이어 메마르고 흙은 말라 터지어 붉게 되었네.

선비들은 길에서 슬퍼하고 농부는 경작(耕作)을 철폐하였네.

살아 놓은 듯 속이 탄 듯 우심(憂心)이 번거롭게 생겨나네.

사단(社壇)에 제(祭)를 지내고 들녘에 제지내어 이 제물(祭物)을 아끼지 안했다.

쓸쓸히 부는 바람과 밝은 태양은 시큰둥 나의 말 듣지 않네.

나는 이 땅에 으뜸이요, 신(神)은 이 성(城)에 시동(尸童)[1037]이로다.

백성들이 전히(殿屎)[1038]하건만 신(神)은 나의 황급함

[祝文]

嗚呼何辜 邦畿之甿 頻年備無 恥罍罄瓶 杼軸俱空 鄽閭咿嚶 尙冀今茲 窮變而亨 云胡亢陽 奄迫初庚 川斷而涸 土皸而赬 士嗟于途 農撤其耕 如焚如惔 憂心煩醒 徂 社徂郊 靡愛斯牲 凄風杲日 漠不余聽 我尹茲土 神尸茲城 民之殿屎 神恫我怔 陟彼崔嵬 潔我粢盛 以妥以侑 更祈冥應 祁祁其興 濛濛其零 膏我茬菽 勃我稻秔 千斯萬斯 百室其盈 曷不報謝 神賜孔明

1030) 물을 긷는 독.

1031) 병(甁)은 적고 뇌(罍)는 큰데 병이 텅비고 뇌가 가득차면 뇌가 부끄럽다 는 뜻. 전(轉)하여 나라가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라가 부끄럽다 는 뜻으로 비유함.

1032) 북과 바디. 베 짜는 일을 뜻함.

1033) 시골 마을.

1034)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1035) 양(陽)이 극도에 달함. 곧 무더움의 극치.

1036) 초복(初伏)의 별칭.

1037) 옛날에 제사 지낼 때에 신위(神位) 대신으로 그 자리에 앉히던 어린 아이.

1038) 신음(呻吟)하는 소리.

을 아프게 여길지어다.
저 높은 산에 올라서 나의 자성(粢盛)[1039]을 깨끗하게 하였다.
편안하게 제수(祭需)를 권하노니 다시 응답(應答)을 빕습니다.
기기(祁祁)[1040]하게 일어나고 몽몽(濛濛)[1041]하게 떨어지리라.
우리의 임숙(荏菽)[1042]을 기름지게하고 우리의 도갱(稻秔)[1043]이 피어나리라.
천(千)이며 만(萬)이 백실(百室)에 가득하기를.
어찌 감사하여 보답하지 않겠는가! 신(神)은 크나 큰 광명(光明)을 내리소서.

二十四日
四次祈雨祭 設行事封啓

24일 4차 기우제(祈雨祭)를 설행(設行)하는 일로써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本府四次祈雨祭 今二十四日 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虔誠設行於八達山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 爲白乎旀 五次祈雨祭 以今二十七日 設行於府內祝萬堤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본부(本府)에서 4차(次) 기우제(祈雨祭)를 이 달 24일에 설행(設行) 할 계획의 연유를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신(臣)은 당일에 팔달산(八達山)에서 정성으로 기우제(祈雨祭)를 설행한 뒤에 제관직(祭官職) 성명(姓名)을 뒤에 개록(開錄)하였습니다. 그리고 5차 기우제를 이 달 27일에 부내(府內) 축만제(祝萬祭)에서 설행할 계획으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東將臺 修改始役

같은 날 동장대(東將臺) 수개(修改)를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

1039) 나라의 대제(大祭)에 쓰는 서직(黍稷).
1040) 뭉실 뭉실 일어나는 구름의 모양.
1041) 비나 안개 같은 것이 내려 자욱한 모양.
1042) 들깨와 콩. 곧 여러가지 곡식을 뜻함.
1043) 벼와 메벼.

2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26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二十六日
雨澤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을 접하니, '이 달 26일 사시(巳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보슬 혹은 주룩주룩 내리더니 당일 오시(午時)에 이르러 한 보지락 흡족하게 내렸다.'고 하며 신(臣)의 감영 측우기의 수심(水深)이 1촌(寸) 5분(分)이 되었습니다. 목마르게 기다리던 나머지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진실로 천만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에 뭉게구름이 빽빽하게 퍼지고 보슬 보슬 혹은 주룩 주룩 내리는 비가 그치지 않았건만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흙을 적시기엔 아직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차 기우제(祈雨祭)에 정성으로 빌어 협망(愜望)에 기약합니다. 이에 비로소 내린 비의 형지(形止)를 먼저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今月二十六日巳時量 始雨或灑或霈 當日午時至 所得洽過一犁 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 是白如乎 渴望之餘 甘澍伊始 誠爲萬幸 見今油雲密布 灑霆不止 而積曀燥土霑漑未洽 故五次祈雨祭 齋誠虔禱 期於愜望 是白乎旀 始雨形止 爲先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기우제(祈雨祭) 축문(祝文)을 지어 향(香)을 가지고 축만제(祝萬堤)에 나아갔다.

同日 製祈雨祭祝文賫香 詣祝萬堤

[祝文]

堤名祝萬 云何之祝 萬億及秭 禾麻穜稑 維此堤工 粤在協洽 瀲灩千頃 節以一閘 玾曰大有 渠云萬石 於乎可忘 先王肇錫 遺老擊壤 今三紀歷 胡玆驕陽 流金爍礫 相彼原隰 旣皸而瘃 中田有苗 如髮曲跼 跨春徂署 蘊隆熇熇 神尸玆陂 秩居嶽瀆 民之近止 亦神之恧 維昨潺湲 若焦于沃 仍以滂沱 神惠是卒 雨師風伯 陰驅顯率 濺泥一尺 作霖三日 以灌以溉 澤此南國 黍稷薿薿 時萬時億 顧名思義 毋癘厥職 同我衿紳 來禱來索 如響斯應 庶不終夕

[축문(祝文)]

제(堤)의 이름을 축만(祝萬)이라 하였나니 무엇을 비는가.

만억(萬億)이며 천억(千億)의 화·마·동륙(禾·麻·穜稑)[1044]이로세.

이 제(堤)의 공역(工役)은 아득하게도 협흡(協洽)[1045] 함에 있었다.

염렴(瀲灩)[1046]한 1천 이랑에 한 물문(水門)으로 적합하였네.

들녘은 대유(大有)라고 말하고, 계천(溪川)은 만석(萬石)이라 부르네.

아! 잊을 것인가, 선왕(先王)이 주신 것이네.

유일(遺逸)[1047]의 늙은이가 경양가(擊壤歌)[1048] 불러온 지 지금에 삼기(三紀)[1049]가 지냈네.

어찌 이 교만한 태양이 유금(流金)[1050]을 녹이는가.

저 언덕에 진펄을 보나니 갈라 터졌다.

밭 가운데에 싹은 불에 그을린 두발(頭髮)처럼 굽어 있네.

봄을 지나 더위를 맞이하여 무더위가 혹혹(熇熇)[1051]하네.

신(神)은 이 언덕에 시동(尸童)[1052]이 되고 질종(秩宗)[1053]은 악독(嶽瀆)[1054]을 차지하였네.

백성이 이곳에 멈췄거니 또한 신(神)도 부끄러워하리라.

엊그제 잔원(潺湲)[1055]하여 메마름이 기름지고, 곧바로 방타(滂沱)[1056]하여 신(神)의 은혜 다 하리라.

1044) 벼와 삼, 늦벼와 올벼, 곧 모든 곡식을 뜻함.
1045) 화협하고 흡족함.
1046) 물이 넘치는 모양. 또는 잔잔한 물결이 넓혀지는 모양.
1047)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지 않아 세상에 나타나지 않음.
1048) 옛날 중국 당요(唐堯) 때에 늙은 농부가 격양하면서 천하 태평함을 부른 노래.
1049) 1기(紀)가 12년, 3기(紀)는 36년 임.
1050) 쇠도 녹이는 무더위를 비유함.
1051) 불이 발열(發熱)함.
1052) 제사 때 신위(神位) 대신으로 앉혀놓던 어린아이.
1053) 모든 신(神)의 자격.
1054) 큰 산과 개천.
1055) 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
1056) 큰 비가 내리는 모양.

우사(雨師)[1057]와 풍백(風伯)[1058]은 음기(陰氣)를 몰아 뚜렷이 다스리고.
1척(尺)의 비가 쏟아져 질퍽이고, 삼일간(三日間) 장마비 내리어 논밭에 물 대고.
이 남쪽 나라에 혜택을 주어 서직(黍稷)[1059]의 의의(薿薿)[1060]하리라.
그 이름을 보고 명명(命名)의 의(義)를 생각하여, 이 직분을 병(病)들게 마소서.
우리 금신(衿紳)[1061]들이 와서 빌고 와서 찾노니.
소리처럼 울리어 이 저녁을 넘기지 마소서.

27일

5차 기우제(祈雨祭)를 설행(設行)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본부(本府)에서 5차 기우제(祈雨祭)를 이 달 27일에 설행하는 계획의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신(臣)은 당일에 축만제(祝萬祭)에서 기우제를 정성으로 설행한 뒤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어제 오시(午時)에 한 보지락의 비가 내린 뒤에 혹은 보슬 보슬 혹은 주룩 주룩 내리어 당일(當日) 묘시(卯時)에 또 한 보지락 남짓 비가 내렸으며 신(臣)의 영(營) 측우기의 수심(水深)이 1촌(寸) 5분(分)이 되어 전후(前後) 통계(通計)가 도합(都合) 3촌(寸)이 되었다.'고 하므로 지금에는 유운(油雲)[1062]이 사방에서 모이고 우의(雨意)[1063]가

二十七日

五次祈雨祭 設行事 封啓

[狀啓]

本府五次祈雨祭 今二十七日 設行計料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虔誠設行於祝萬堤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左 爲白乎旀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昨日午時至 得雨一犁之後 或霏灑或滂沱 當日卯時至 所得 又爲一犁餘 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 水深爲一寸五分 通計前後 合爲集 雨意向濃 六次祈雨祭段

1057) 비를 내리게 한다는 신(神).
1058) 바람을 맡은 신(神).
1059) 기장과 피.
1060) 자라나는 곡식이 무성한 모양.
1061) 사(士)와 대부(大夫). 곧 선비와 관리를 일컫는 말로 사류(士類) 혹은 유생(儒生)을 뜻함.
1062) 비가 내릴 듯한 구름. 우기(雨氣)를 품은 구름.
1063) 비가 내릴 듯한 기운.

更觀嗣後所得之多寡 各面農形之如何停止 與仍設間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짙으므로 6차 기우제(祈雨祭)는 앞으로 강우량(降雨量)의 다과(多寡)와 각면(各面)의 농형(農形)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계속 아뢸 생각으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農務勸相之方 申飭各面之意 發甘判官

같은 날 농무(農務)를 권상(勸相)하는 방향으로 각 면(面)에 신칙(申飭)하는 뜻으로 판관(判官)에게 감결(甘結)을 발송하였다.

[甘結]

右甘 爲昨今所得雨澤 雖未可謂高低周洽 是乃低田之引水移揷 高田之破塊種植 當如救焚拯溺 爭以時刻是如乎 此時補助勸相之節 不可不十分留意 當日內 傳令各面 申飭任掌 周行阡陌 着實勸督 無牛者借牛 乏糧者貰力 期盡及時奏功 毋至放失一勺之水爲乎矣 數日內 分送摘奸 計料是在果 雖一畦一壟是良置 如有可移而未移 可種而不種處 則當該面里任 斷當施以違令慢蹇之罰 以此意措辭嚴飭形止亦卽牒報向事

[감결(甘結)]

위 감결(甘結)은 작금(昨今)에 내린 비의 은택(恩澤)이 비록 높고 낮은 전답(田畓)에 두루 흡족(洽足)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낮은 전답에는 물을 끌어 이삽(移揷)[1064]하였고 높은 전답에는 흙덩이를 깨뜨리어 씨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단연코 타오르는 불을 끄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과 같이 시각(時刻)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때에 돕고 권상(勸相)하는 절의(節義)를 십분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내(當日內)에 각 면(面)에 영(令)을 전하여 책임자에게 신칙(申飭)하되 언덕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착실하게 권독(勸督)[1065]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牛)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를 빌려주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어 기한이 다 한 때에 공효(功效)를 아뢸 것입니다. 그래서 일작(一勺)의 물도 놓아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일내에 적간(摘奸)[1066] 할 사람을 보낼 것이며, 비록 한 이랑과 한 언덕에 이삽(移揷) 할 곳에 이삽하지 않거나 심을 만한 곳에 심지 않으면 마땅히 영(令)을 어기어 만건(慢蹇)[1067]한 벌(罰)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공문(公文)을 보내어 엄칙(嚴飭)하노니 그 진행상황을 또한 즉시 첩보(牒報)할 일입니다.

1064) 모판에서 모를 옮겨 심음.
1065) 타일러 권하고 감독함.
1066)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적발함.
1067) 만만히 여기어 교만함.

같은 날 동장대(東將臺) 수개(修改)의 역사(役事)를 마쳤다.
※ 들어간 물력(物力)은 32량(兩) 9전(戔) 8분(分) 이였다.

同日 東將臺 修改畢役
容入物力 爲三十二兩九戔八分

29일 며칠 전부터 한보지락 가량의 내린 비가 끝내 흡족(洽足)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자욱하던 안개가 흩어지고 자못 개일 조짐이 있어 근심과 민망함을 더하여 다시 규벽(圭璧)[1068]을 신(神)에게 바치고자 한다. 그런데 오후부터 시작한 가랑비가 늦게 주룩주룩 내리어 통쾌하고 갈증이 조금 풀리어 민정(民情)에 공사(公私)의 다행함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二十九日
數昨犁雨終靳優洽 今朝重霧解駁 頗有霽意 憂悶轉甚 將欲復薦圭璧矣 自午後 始焉霏微 晩益霪霈 快愜渴望 少紓 民情公私之幸 無以名言

30일 우택(雨澤)·농형(農形)의 장계(狀啓)를 봉(封)하였다.

三十日
封雨澤農形啓

[장계(狀啓)]
이 달 27일에 이르러 3촌(寸)의 비가 내린 연유를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그 뒤에 주룩 주룩 비가 내리고 그치면서 잠깐 흐리고 햇볕이 나더니, 29일 오시(午時) 즈음에 다시 주룩 주룩 비가 내리어 당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개천이 넘쳐 흐르면서 비가 그치지 않고 개이려는 조짐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에 신(臣)의 영(營)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5촌(寸) 8분(分)이 되었습니다.

[狀啓]
今月二十七日至 得雨三寸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伊後或霏或止 乍陰乍陽 是如可 二十九日午時量 更爲始雨 仍以霪霈 當日卯時至 川渠漲滿 而霏灑不已 尙無霽意 是如爲白遣 臣營測雨器 水深爲五寸八分 是白乎旀

1068) 서옥과 둥근 옥. 천자가 봉작의 증거로 제후에게 주는 것으로 천자를 알현할 때 보이거나 제사 지낼 때 규벽을 바치고 소원을 빌었음.

各面農形 分送裨校 看審以來 則秋麰之入實向黃者 已盡登場 春麰間間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始 晩稻乾播初除草方張 而兩次沾潤之後 擧皆勃然茁長 根耕豆太今始耕播 移秧段低下處已移者 一倍向茂 高燥地未移者 次第移揷 是如是白如乎 日前犁雨 猶未浹洽 顒祝方切 甘霈繼降 毋論高低 灌溉優足 言念民事 誠極萬幸 見今秧節晩晩 趁澤時急 是白乎等以 勸相補助之方 發甘申飭於判官處 爲白乎旀 祈雨祭段 停止緣由 馳啓爲白臥乎事

각 면(面) 농형(農形)은 비교(裨校)를 보내어 살펴보니 가을보리가 누렇게 익은 것은 이미 모두 등장(登場)[1069]하였고 봄보리는 간간히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올벼는 부종(付種)[1070]하여 두벌논을 매기 시작하고, 늦벼는 건파(乾播)[1071]하여 초벌논을 매어 벼가 자라나고, 두 차례 촉촉히 비가 내린 뒤에 싹이 갑자기 자라났습니다.

근경(根耕)[1072]할 팥과 콩은 비로소 경파(耕播)[1073]하고, 이앙(移秧)은 낮은 지역에 옮겨 심은 모는 한결같이 무성(茂盛)하고, 높고 메마른 곳 아직 옮겨심지 못한 모는 차례로 이삽(移揷) 할 것입니다. 일전에 한 보지락 가량 내린 비가 오히려 흡족하지 못하여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패(甘霈)[1074]가 계속 내리어 높고 낮은 곳 없이 관개(灌溉)가 우족(優足)하니 민사(民事)를 생각하여 진실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앙절(秧節)이 원만(晩晩)[1075]하고 추택(趁澤)[1076]이 시급(時急)하므로 권상(勸相) 보조(補助)의 방책으로 판관(判官)에게 감결(甘結)을 띄워 신칙(申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우제(祈雨祭)는 정지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1069) 새로운 제품(製品) 같은 것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옴. 여기에서는 생산된 보리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을 말함.
1070) 파종(播種). 씨앗을 뿌림.
1071) 마른 논에 씨를 뿌림.
1072) 그루갈이. 한 해 한 땅에 두 번 농사를 지음. 벼를 거둔 뒤에 보리를 가는 따위.
1073)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림.
1074) 매우 기다리던 비가 한목 충분히 옴.
1075) 해가 짐. 곧 늦었음을 뜻함.
1076) 내린 빗물을 재빠르게 이용함.

여 백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6월

여 백

初 一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中軍判官進參
同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초 1일 새벽녘에 객사(客舍)에 나가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중군(中軍) 판관(判官)이 진참(進參)[1077]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에 분향(焚香)하고 봉심(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이 금일에 화령전(華寧殿)에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의 모든 곳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 이민기(李民耆)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무탈(無頃)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雨澤封啓

초 3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去月三十日卯時至 得雨五寸八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續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 則伊後 或霏灑或霆霈 今初二日酉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大小川渠 無不漲滿 是如爲白乎旀 臣營測雨器 水深又爲八寸八分 通計前後 合爲一尺四寸六分 而初三日卯時量 仍爲開霽 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난 달 30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5촌(寸) 8분(分)의 비가 내린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그 뒤에 혹은 보슬보슬 혹은 주룩주룩 비가 초 2일 유시(酉時)에 이르러 내린 비가 서려(鋤犁)[1078]를 논하지 않고 크고 작은 개천이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신(臣)의 감영의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또한 8촌(寸) 8분(分)이며 전후통계(前後通計)가 모두 1척(尺) 4촌(寸) 6분(分)이였습니다. 초 3일 묘시(卯時) 즈음에 날씨가 활짝 개이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1077) 과장(科場)·잔치·제사 등에 참여함.
1078) 호미와 보습. 곧 내린 비가 땅에 스며들어간 깊이의 단위로 호미자락 과 보지락을 뜻함.

초 5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같은 날 각 면(面)에 농사를 권장하는 뜻으로 판관(判官)에게 감결(甘結)을 발송(發送)하였다.

初 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各面勸農之意 發甘判官

[감결(甘結)]

위 감결(甘結)은 농상(農桑)을 권장하는 것으로 곧 영문(營門)이 평일에 고심(苦心)하는 바입니다. 봄·여름을 지내오면서 우택(雨澤)이 인색하여 개종(漑種)[1079]한 모(秧)는 쓸쓸이 그을리고, 육경(陸耕)[1080]한 밭에는 자기(鎡基)[1081]가 들어가지 않은지가 달을 넘겨 무더우니 간폐(肝肺)[1082]가 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 지난 그믐과 초순(初旬) 사이에 한 자가 넘는 수심(水深)의 비가 내리어 높고 낮은 지대의 밭을 막론(莫論)하고 두루 흡족하였습니다. 이에 민정(民情)을 생각하니 어찌 이 같은 만행(萬幸)을 이기겠습니까.

모내기 절기(節氣)가 차만(差晩)[1083]하고 추택(趨澤)이 시급하므로 권상(勸相) 보조(補助) 방책을 한 시각도 헛되게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일전에 감사(甘辭)[1084]에 의하여 별도로 신칙(申飭)한 처음으로 편비(褊裨)[1085]를 나누어 보내서 면(面)마다 적간(摘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인(官人)이 오래도록 외촌(外村)에 머물면 민폐(民弊)가 적지 않으므로 우선 정지할 것을 신칙(申飭)합니다.

결코 한 장의 전령(傳令)으로 하고 전례(前例)를 갖

[甘結]

右甘爲勸課農桑 卽營門之平日 苦心所在 是在如中跨春涉夏 雨澤慳悶 漑種之秧 蕭然可焚 陸耕之田 鎡基不入 閱月薰厲 肝肺欲焦是加尼 幸於晦初之間 優得過尺之雨 高田低田 無不周洽 言念民情 豈勝萬幸

秧節差晩 趨澤時急 勸相補助之方 不可一刻虛徐 是如乎果 依日前甘辭 別樣申飭是喩 初欲分送褊裨 逐面摘奸是加尼 官人之多日 逗遛於外村 亦不無些少貽弊之慮 乙仍于 姑且停止 是乃此等申飭 決不可以一張傳令 備例知委而止是置 各倉

1079) 논에 물을 대어놓고 모를 옮겨 심음.
1080) 지대가 높은 곳의 경작지(耕作地).
1081) 밭을 가는 농구(農具).
1082) 간장과 폐장. 전(轉)하여 마음.
1083) 어기어 늦어짐.
1084) 감결(甘結)의 내용.
1085) 대장(大將)을 보좌하며 소속 부대를 지휘하던 무관직.

監色 方以雉還捧上 出去各面 各該倉所屬 各面勸農監色 差定爲去乎 限雉還畢捧前 各別董飭 無牛備牛 乏糧助糧俾無把束未移之處爲乎矣

추어 지위(知委)[1086]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 창(倉)에 감색(監色)[1087]은 모환(雉還)[1088]을 바쳐 올리되 각 면(面) 각 해창(該倉) 소속에 출거(出去)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면(面) 권농감색(勸農監色)을 차정(差定)[1089]하오니 모환(雉還) 봉상(捧上)을 마치기 전까지 각별히 감독하고 신칙하여 소가 없으면 소를 빌려주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도와서 파속(把束)[1090]이라도 옮기 못하는 곳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其中 或有因病廢農者是去等 該里頭頭人處 各別飭諭使之合力移秧 待秋成受雇爲旀 畢移狀 今月望內 鱗次報來 則趁農務少歇之時始爲分送 摘奸計料爲去乎 雖一畦一壟是良置 萬一有陳廢不墾 而昧然以已移報來者 則該面監色 嚴刑汰去斷不饒貸 以此意嚴明措辭知委 宜當向事

그 가운데에 병(病)으로 인하여 농사를 폐(廢)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마을 회장(會長)에게 각별히 칙유(飭諭)[1091]하여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 이앙(移秧)하고 추수(秋收)를 기다려 품삯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이장(畢移狀)[1092]이 이 달 15일 내에 인차(鱗次)[1093]로 보고해 오니 농무(農務)가 조금 쉴 때에 비로소 나눠 보내 적간(摘奸)할 생각입니다. 비록 한 이랑 한 두둑이라도 만일에 묵히어 개간하지 않고 애매하게 모내기를 마쳤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면(面)의 감색(監色)을 엄형(嚴刑)으로 태거(汰去)[1094]하고 단연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뜻으로 엄격히 밝히고 조사(措辭)[1095]하여 지위(知委)하노니 마땅히 시행할 일입니다.

初 六日

離發中火于始興 申刻抵筆谷 封啓

초 6일

이발(離發)하여 시흥(始興)에서 점심을 먹고 신각(申刻)에 필곡(筆谷)에 이르러 봉계(封啓)하였다.

1086) 통지나 고시 따위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 알려줌.
1087)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1088) 모맥(牟麥)을 이용한 환상(還上).
1089) 임명하여 사무를 맡김.
1090) 논밭의 결세(結稅)의 단위인 줌과 뭇.
1091) 신칙(申飭)하여 그유함.
1092) 모내기를 다 마쳤다는 서장(書狀).
1093) 비늘과 같이 차례(次例)로 잇달음.
1094) 비리를 저질렀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은 관원 등을 쫓아내는 일.
1095) 글의 마디를 얽어서 만듦.

[장계(狀啓)]
신(臣)이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사항이 있어서 당일에 발행(發行)하여 상경(上京)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上京緣由 馳啓爲白臥乎事

초 8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八日
進 實錄廳

초 9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九日
進 實錄廳

초 10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 같은 날 우택(雨澤)·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初 十日
進 講入侍
同日 雨澤農形 封啓

[장계(狀啓)]
지금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8일(初八日) 신시(申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보슬 혹은 주룩주룩 내리면서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초 9일 인시(寅時)에 이르러 그의 한 호미자락 정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영하(營下)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4분(分)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형(農形)은 봄보리는 자라나서 베어내고, 올벼는 씨를 뿌려 두벌김을 매어 자라났습니다. 또 늦벼는 건파(乾播)[1096]하여 두벌김을 매기 시작하고, 높고 건조(乾燥)한 땅에 아직 옮겨 심지 못한 모는 이제야 옮겨 심고 그루갈이한 것은 바야흐로 자라나기 시작하여 경파(耕播)[1097]가 이와 같은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今月初八日申時量 始雨或霏或灑或止 初九日寅時至 所得幾近一鋤 而營下測雨器 水深爲四分是乎旀 境內農形段 春麰方張刈取 早稻付種 再除草方張 晩稻乾播 再除草方始 高燥地未移者 今方移揷 根耕豆太方張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096) 직파(直播)의 한 가지. 물 없는 논에 그대로 씨를 뿌림.
1097) 밭 갈고 씨 뿌림.

十二日

進 實錄廳

同日 本營春夏等褒貶 封進以果川縣監鄭晩敎 相避不得考績事 別啓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12일 같은 날 본영(本營) 춘하등(春夏等) 포폄(褒貶)을 봉진(封進)함에 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는 상피(相避)[1098] 관계로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일로 별계(別啓)하였다.

[褒貶等第]

○ 華寧殿兼令金漢淳 敬謹以將上

○ 兼衛將朴耆會 殫誠衛護上

○ 兼守門將金遠浩 奉職恪勤上 徐鎬豊 守鑰惟謹上

○ 判官金漢淳 一念圖酬隨事殫竭上

○ 中軍朴耆會 簡不至弛綜不過刻上

○ 從事官金漢淳 吏治戎政相須相濟上

○ 檢律卞學秀 律例頗嫺上

○ 別前司把摠 振威縣令朴長馣 崔科宜勉上

○ 別左司把摠 龍仁縣令李鐘允 初政修擧上

[포폄등제(褒貶等第)]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은 경근(敬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상등(上等)이고, 겸위장(兼衛將) 박시회(朴耆會)는 정성을 다 하여 호위(護衛)하여 상등(上等)이고, 겸수문장(兼守門將) 김원호(金遠浩)는 봉직(奉職)함에 부지런히 힘쓰므로 상등(上等)이고, 서호풍(徐鎬豊)은 수약(守鑰)[1099]이 오직 치밀하여 상등(上等)입니다. 판관(判官) 김한순(金漢淳)은 한마음으로 도수(圖酬)[1100]하여 일마다 성의를 다 하여 상등(上等)이고, 중군(中軍) 박시회(朴耆會)는 간략하되 해이(解弛)하지 않고, 자상하여 시각(時刻)을 넘기지 않으니 상등(上等)이고, 종사관(從事官) 김한순(金漢淳)은 이치(吏治)[1101]·융정(戎政)[1102]이 서로가 필요로 여겨 서로 구제하니 상등(上等)이고, 검률(檢律) 변학수(卞學秀)는 형률(刑律)을 판례(判例)함에 자못 숙달(熟達)함에 상등(上等)입니다.

별전사파총(別前司把摠) 진위현령 박장암(朴長馣)은 최과(崔科)[1103]에 마땅히 힘쓰므로 상등(上等)이고, 별좌사파총(別左司把摠) 용인현령 이종윤(李鐘允)은 초정(初政)[1104]을 수거(修擧)[1105]하여 상등(上等)이고,

---

1098) 일정 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속관계(統屬關係)에 해당하는 관사(官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게 하는 제도.

1099)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창고를 지키는 일.

1100) 일을 도모하여 계획함.

1101) 관리로서의 행정능력, 즉 수령의 치적을 말함.

1102) 군사 문제에 대한 일반 행정 사무.

1103) 조세(租稅)를 상납할 때가 가깝게 닥쳐 옴.

별중사파총(別中司把摠) 김노학(金魯學)은 한결같이 침굴(沈屈)[1106]하지 않으니 상등(上等)이고, 별우사파총(別右司把摠) 안산군수 이준수(李俊秀)는 군민(軍民)이 원망하지 않으니 상등(上等)입니다. 그리고 협수겸파총(協守兼把摠) 시흥현령 이명원(李鳴遠)은 더욱더 명예를 얻어 상등(上等)이고, 척후장(斥堠將) 영화찰방(迎華察訪) 오치건(吳致健)은 재질이 풍부한 목민관(牧民官)이므로 상등(上等)이고, 독성겸파총(禿城兼把摠) 박시회(朴蓍會)는 조세(租稅)의 출납이 공평하여 상등(上等)이고, 둔아병파총(屯牙兵把摠) 평신진첨사(平薪鎭僉使) 박윤묵(朴允默)은 세납(稅納)에 허물이 없어 상등(上等)입니다.

○ 別中司把摠 金魯學 一何沈屈上
○ 別右司把摠 安山郡守李俊秀 軍民無怨上
○ 協守兼把摠 始興縣令李鳴遠 久益播譽上
○ 斥堠將迎華察訪 吳致健材優字牧上
○ 禿城兼把摠 朴蓍會 糶精糶均上
○ 屯牙兵把摠 平薪鎭僉使朴允默 稅納不愆上

[장계(狀啓)]

신(臣)의 영(營)에 속하는 별오사파총(別五司把摠) 중별후사파총(中別後司把摠) 과천현감 정만교(鄭晩敎)는 신(臣)과 더불어 구생(舅甥)[1107]의 친분(親分)이 됩니다. 때문에 포폄(褒貶)할 때에 덧붙여 마감하지 못한다는 뜻을 이미 별계(別啓)하여 아뢰었습니다. 지금 춘하등(春夏等) 포폄(褒貶)도 예(例)에 따라 마감(磨勘)하지 못하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營屬別五司把摠 中別後司把摠 果川縣監鄭晩敎 與臣爲舅甥之親 故褒貶時 不得一體磨勘之意 前已別 啓陳 聞爲白有在果 今春夏等褒貶段置 不得循例磨勘 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3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三日 進 實錄廳

1104) 임금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정사(政事)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 혹은 지방의 감사(監司) 수령으로 부임한 자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
1105) 업무를 잘 거행함.
1106) 자신을 낮추어 비굴함.
1107) ①외삼촌과 생질. ②장인과 사위.

十四日
雨澤封啓

[狀啓]
今月初九日寅時至 得雨四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伊後或陰或陽 間或霏霆 十三日卯時至 所得又爲一犁餘 而濃雲未解 尙無霽意 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進 實錄廳

14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이 달 초 9일 인시(寅時)에 이르러 4분(分)의 비가 내린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그 뒤에 혹은 흐리고 혹은 햇볕이 나고 혹은 주룩 주룩 비가 내리다가 13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또 한보지락 남짓 비가 내리고 농운(濃雲)[1108]이 흩어지지 않아 개일 조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영하(營下)에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1촌(寸) 5분(分)이 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五日
進 實錄廳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狀啓]
卽接 華寧殿 兼令金漢淳牒呈 則今月十五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民耆牒呈內 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15일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현륭원(顯隆園)을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頉) 한 일을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15일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무탈(無頉)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 첩정내(牒呈內)에 이 달 15일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무탈(無頉)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1108) 짙은 구름. 검은 구름.

16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六日
進 實錄廳

20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二十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은 올벼는 씨를 뿌려서 두 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두 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찍 옮겨 심은 모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게 심는 모는 지금에 끝이 났습니다. 근경(根耕)한 팥과 콩은 경파(耕播)[1109]를 거의 마쳤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境內農形 早稻付種 再除草已畢 晩稻乾播 再除草方張 早移秧 初除草方始 晩移秧已畢 根耕豆太 幾盡耕播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同日 進 實錄廳

21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二十一日
進 實錄廳

22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二十二日
進 實錄廳

24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二十四日
進 實錄廳

1109)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림.

二十五日
進 實錄廳

25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二十六日
進 實錄廳

26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二十七日
進 實錄廳

27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二十八日
進 實錄廳

28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二十九日
進 實錄廳

29일 실록청(實錄廳)에 나갔다.

여 백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7월

여 백

初 一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頃事 封啓

초 1일 화령전(華寧殿)·현륭원(顯隆園)을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頃)한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金漢淳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趙秉緯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하룻날에 분향(焚香)하고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무탈(無頃)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 참봉 조병위(趙秉緯) 첩정내(牒呈內)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頃)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農形封啓後 出往樊溪

같은 날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한 뒤에 번계(樊溪)에 나갔다.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三除草方張 晩稻乾播 再除草已畢 移秧初除草已畢 根耕豆太立苗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경내(境內)의 농형(農形)이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세벌 김을 매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앙(移秧)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근경(根耕)한 팥과 콩은 싹이 돋아난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六日
自樊溪還筆谷

초 6일 번계(樊溪)로부터 필곡(筆谷)에 돌아왔다.

初 七日
過行庶侄婚事

초 7일 서질(庶侄)[1110]의 혼사(婚事)가 지나갔다.

1110) 첩에게서 난 족하.

11일 우택(雨澤) 및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갔다.

十一日
雨澤及農形封啓 仍進 實錄廳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 9일 오후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보슬 혹은 주룩주룩 내리다가 10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두 보지락 남짓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하(營下)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2촌(寸) 4분(分)이 되었습니다. 경내(境內) 농형(農形)은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바야흐로 배태(胚胎)하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또 이앙(移秧)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치고 근경(根耕)한 팥과 콩도 김매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則今月初九日午時量 始雨或霏或霆 初十日卯時至 所得恪爲二犁 而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乎旀 境內農形段 早稻付種 方張胚胎 晩稻乾播 三除草已畢 移秧再除草已畢 根耕豆太 鋤役方張 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2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二日
進 實錄廳

13일 대전탄신(大殿誕辰)에 진하전문(陳賀箋文)[1111]을 기영(畿營)에 한차례 봉송(封送)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三日
大殿誕辰 陳 賀箋文 一度封送畿營 仍進 實錄廳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만억년 끝없이 천지(川至)[1112]의 복록(福祿)을 크게 받고, 5백년 운기(運氣)가 진작(振作)하여 이윽고 홍류(虹流)의 기약이 돌아왔습니다. 경

[箋文]
伏以萬億年疆 誕膺川至之祿 五百運有作 聿回 虹流之期 慶溢寰區 歡均蹈抃

1111) 임금에게 하례(賀禮)를 드리는 전문(箋文).
1112) 성장(盛長)함이 끝이 없음을 뜻함.

恭惟天縱大德 日新 聖工聰明叡智之姿 冠百王而卓越 中和位育之 化 囿庶彙而裁成 肆當 千秋之節回 益仰百福之鼎至 伏念臣跡厠華封 誠切嵩呼 瓊樓昵陪幸叨虎拜之列 瑤函擎進 粗伸鰲抃之忱 臣無任望 天仰聖 激切屛營之至

사(慶事)는 환구(寰區)[1113]에 넘치고 기쁨은 도변(蹈抃)[1114]에 균등(均等)합니다. 공경히 생각하노니 하늘은 대덕(大德)을 놓으시어 날로 성공(聖功)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총명예지(聰明叡智)의 자태는 백왕(百王)에 우뚝하여 탁월(卓越)하고, 중화위육(中和位育)의 교화(敎化)는 무리를 감싸 재성(裁成)하셨습니다. 드디어 천추(千秋)의 절회(節回)[1115]를 당하여 더욱 백복(百福)의 정지(鼎至)[1116]를 우러러 봅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화봉(華封)에 욕되게 있으면서 정성은 숭호(嵩呼)에 절실합니다. 경루(瓊樓)[1117]에 가깝게 모시면서 다행하게 호배(虎拜)의 대열에 끼이고, 요함(瑤函)[1118]을 받들어 바치면서 그나마 오변(鰲抃)[1119]의 정성을 폈습니다. 이에 신(臣)은 망천(望天)·앙성(仰聖)[1120]을 감당하지 못하고, 병영(屛營)[1121]의 지극함이 격렬하고 절실합니다.

十四日
進 實錄廳

14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十五日
大殿誕辰 陳 賀箋文 一度封進 奎章閣 仍進 實錄廳

15일 대전탄신(大殿誕辰)에 진하전문(陳賀箋文)을 규장각(奎章閣)에 한차례 봉진(奉進)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1113) 천지(天地). 천하(天下).
1114) 발을 굴리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 춤춤.
1115) 조정에서 절일(節日)에 행하는 날이 돌아옴.
1116) 성대하게 이름(至)을 뜻함.
1117) 달 속의 궁전(宮殿). 곧 궁궐(宮闕)을 뜻함.
1118) 서함(書函)으로 타인(他人)을 글을 높여 일컬음.
1119) 남의 생신을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침.
1120) 성군(聖君)을 우러러 봄.
1121) 방황하는 모양. 두려워하는 모양.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선극(璇極)[1122]이 아름다움을 더하여 태형(泰亨)[1123]의 운(運)을 크게 열고, 금감(金鑑)[1124]이 칭송을 바치어 진숙(震夙)[1125]의 기약이 돌아오니, 8천년이 봄이 되고 5백년에 성군(聖君)을 낳으셨습니다. 공경히 생각하니 천명(天命)을 받아 좋은 계책을 공경히 이으셨습니다. 삼주(三晝)[1126]에 의견을 물어 충심(衷心)을 살피시어 학업(學業)은 날로 진보함에 힘쓰고 양전(兩殿)[1127]엔 이유(怡愉)[1128]의 즐거움을 받들어 효도(孝道)는 출천(出天)[1129]에 빛나셨습니다. 이에 북추(北樞)[1130]에 전요(電曜)[1131]하는 날이 돌아와서 더더욱 남극(南極)[1132]에 성요(星曜)의 상서(祥瑞)로움을 우러러 봅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신(臣)은 화봉(華封)의 직책에 끼여 정성은 규경(葵傾)[1133]에 절실하였습니다. 크나큰 은혜를 아로새기어 연애(涓埃)[1134]·진찰(塵刹)[1135]도 갚지 못했건만 성절(聖節)[1136]을 맞이하여 그나마 송백(松柏)[1137]·강릉(崗陵)[1138]을 헌축(獻祝)하였습니다. 이에 신(臣)은 망천(望天)[1139]·앙성(仰聖)을 감당하지 못하고 병영(屛營)의 지극함만 격절(激切)합니다.

[箋文]

伏以 璇極衍休 誕啓泰亨之運 金鑑進頌 載回 震夙之期 八千爲春 五百生 聖 恭惟 丕膺駿命 祗紹燕謨 三晝 軫咨訪之衷 學懋就日 兩殿奉怡愉之樂 孝光出天 玆回 北樞電繞之辰 益仰 南極星曜之瑞 伏念臣職忝 華封 誠切葵傾銘鏤 洪恩 縱未酬於涓埃塵刹 遭逢 聖節 粗獻祝於松柏崗陵 臣無任望 天仰 聖 激切屛營之至

1122) 임금의 자리나 대궐을 이르는 말. 북두(北斗)의 추기(樞機)에서 유래함.
1123) 태평하고 형통함.
1124) 중국 당(唐)나라 장구령(張九齡)이 왕에게 지어 바친 글에서 유래함.
1125) 크게 놀라고 공경스럽고 엄숙함. 강원(姜嫄)이 후직(后稷)을 낳으므로 인류가 시작되었다 는 뜻에서 유래함.
1126) 임금이 신하에게 후한 예물을 내리고 날 동안에 세 차례나 접견하여 친히 예수하는 일.
1127) 대전(大殿)과 중전(中殿). 곧 왕의 부모를 뜻함.
1128) 부모를 모실 적에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심.
1129) 출천지효(出天之孝). 천성(天性)으로 타고난 효성(孝誠).
1130) 임금의 자리를 뜻함.
1131) 황제(黃帝)의 어머니 부보(附寶)가 번개의 빛이 북두성(北斗星)에 엉키어 있는 것을 보고 잉태하여 황제를 낳았다 는 데에서 유래함.
1132) 별 이름. 남극(南極) 가까이 있어 수명(壽命)을 맡아본다는 별.
1133) 해바라기 꽃이 햇볕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 곧 임금이나 어른의 덕(德)을 앙모(仰慕)하는 것.
1134) 물방울과 티끌.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1135) 티끌같이 작은 수(數)가 헤아릴 수 없는 세계(世界).
1136) 임금의 탄일(誕日).
1137) 솔과 잣나무와 같이 오래 산다는 뜻.
1138) 시경(詩經) 천보장(天保章)의 천보정이(天保定爾) 여강여릉(如岡如陵)에서 따온 말로서, 국운이 산과 언덕처럼 장구하기를 축원하는 말.
1139) 하늘을 우러러 봄. 곧 천자(天子)를 우러러 봄을 비유함.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頉事 封啓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현륭원(顯隆園)을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頉)한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 金漢淳牒呈 則今月十五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趙秉緯牒呈內 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 爲白臥乎事

[장계(狀啓)]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15일에 분향(焚香)하고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한 현륭원 참봉 조병위(趙秉緯) 첩정내(牒呈內)에 이 달 15일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여 무탈(無頉)하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六日
雨澤封啓

16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 則今月十四日戌量 始雨或霆或灑 十五日卯時至 所得恰爲二鋤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九分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14일 술시(戌時)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 보슬 혹은 주룩주룩 내리더니 15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두 호미자락 남짓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영 아래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9분(分)이 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八日
大殿誕辰 問 安班進參

18일 대전(大殿) 탄신(誕辰)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十九日
進 實錄廳
同日 雨澤封啓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19일

같은 날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이 달 15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9분(分)의 비가 내린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지금에 본부 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그 뒤에 혹은 흐리고 혹은 햇볕이 나며, 혹은 주룩주룩 혹은 보슬보슬 비가 내리더니 18일 신시(申時)에 이르러 세 보지락의 비가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하(營下)에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3촌(寸) 7분(分)이 되므로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今月十五日卯時至 得雨九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伊後或陰或陽 或灑或霆 十八日申時至 所得幾爲三犁 而營下測雨器 水深爲三寸七分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20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日
進 實錄廳

21일 열성(列聖)[1140]의 지장(誌狀)[1141]에 속인(續印)[1142]의 역사(役事)가 있었는데 감인각신(監印閣臣)이 수점(受點)[1143]한 이 날에 회동(會同)하여 내각(內閣)에 나아갔다가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一日
列聖誌狀 有續印之役 而監印閣臣 受點是日會同 進內閣 仍進 實錄廳

22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二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 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경내(境內) 농형(農形)은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바야흐로 이삭이 피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간혹 배태(胚胎)한다. 그리고 이앙(移秧)은 세 벌 김매기를 마치고, 그루갈이한 두태(豆太)는 서역(鋤役)[1144]을 이미 마쳤다.' 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付種 方張發穗 晩稻乾播 間或胚胎 移秧三除草已畢 根耕豆太鋤役已畢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140) 역대(歷代)의 임금.
1141) 지문(誌文)과 행장(行狀).
1142) 연이어 인쇄(印刷)함.
1143) 임금에게 낙점(落點)을 받는 일.
1144) 호미질을 하여 북돋고 김매는 일.

二十五日
進 實錄廳 午後進 內閣 校準 誌狀

25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가 오후에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지장(誌狀)을 교준(校準)하였다.

二十六日
進 實錄廳

26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八日
雨澤封啓

28일 우택(雨澤)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今月二十五日亥時量 始雨或灑或霆 二十七日卯時至 所得不可以鋤犁論 而大小川渠 無不漲滿 營下測雨器水深 爲七寸七分 是如爲白臥乎所 各穀發穗之際 有此近尺之雨 不無痒稼之慮是白如乎 各面農形 汰落有無 這這探報事 申飭判官處爲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25일 해시(亥時) 즈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혹은 보슬보슬 혹은 주룩주룩 내리어 27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서려(鋤犁)[1145]를 논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천거(川渠)가 넘쳤다고 합니다. 이에 영하(營下)의 수심(水深)이 7분(分) 7촌(寸)이 되었습니다. 모든 곡식이 이삭이 피는 즈음에 1척(尺)에 가까운 비가 내리어 곡식에 해로울 염려가 있습니다. 각 면(面) 농형(農形)의 상황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판관처(判官處)에 신칙(申飭)하였으며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二十九日
雨澤及祝萬堤西水門 潰決事封啓 仍進實錄廳

29일 우택(雨澤) 및 축만제(祝萬堤)의 서수문(西水門)이 무너진 일로써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1145)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깊이의 한가지 표현으로 호미자락과 보지락.

[장계(狀啓)]

이 달 27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7촌(寸) 7분(分)의 비가 내린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그 뒤에 연이어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하(營下) 측우기(測雨器) 수심(水深)이 또 1촌(寸) 2분(分)을 더하여 전후 통계(通計)가 8촌(寸) 9분(分)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 인시(寅時) 즈음에 비로소 날씨가 개였습니다.

한자(尺)에 가까운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축만제(祝萬堤) 서수문(西水門) 양변(兩邊)이 불어난 물에 부딪치어 점점 깍이어 무너져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문(水門) 좌우에 무너진 부분이 두 아름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나 둑 밑 전답(田畓)은 수문(水門) 아래에 물길이 본래부터 넓었으므로 둑이 무너진 뒤에도 물이 옛 물길을 따라서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둑 밑 전답(田畓) 침손(浸損)[1146]과 태복(汰覆)[1147]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바 이에 판관(判官)과 중군(中軍)에게 감결(甘結)을 띄워 무너진 둑을 곧바로 보축(補築)하여 저수(貯水)[1148]하게끔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今月二十七日卯時至　得雨七寸七分之由 已爲馳 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金漢淳牒呈　則伊後連爲霆下所得營下測雨器水深　又添一寸二分 通計前後 恰爲八寸九分 二十八日寅時量 始爲開霽是乎所

近尺之雨 一時暴霆 祝萬堤西水門兩邊內　托爲漲水所衝嚙 漸就剝落 防遏無路水門左右潰決之體垌 假量十餘把 是乎旀 垌底田畓段水門下水道　本自深濶乙仍于 雖於潰決之後 水從舊水道直下　堤底田畓之浸損汰覆 不至夥多 是如爲白乎所發甘知委於判官　及中軍處潰決堤垌 趁卽急速補築 俾爲及今貯水之地　爲白乎旀緣由馳 啓爲白臥乎事

30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三十日

進 實錄廳

1146) 물에 잠기어 손해를 입음.
1147) 사태가 나서 덮임.
1148) 상수도(上水道) 또는 관개용(灌溉用)으로 물을 모아둠.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8월

여 백

初 一日

進 實錄廳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 無頃事 封啓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초 1일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현륭원(顯隆園)을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頃)한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 金漢淳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 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民耆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 奉審 無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 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하룻날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무탈(無頃)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한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의 첩정내(牒呈內)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頃)하다고 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二日

農形封啓 仍進 實錄廳

초 2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日前大雨後 傍川低下之田 不無略干浸損處 而開霽水退後 各穀旋卽蘇醒是乎遣 早稻付種向黃 晩稻乾播發穗 移秧胚胎 根耕豆太起花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일전(日前)에 큰 비가 내린 뒤에 냇물가 낮은 지대의 전답(田畓)이 약간 침손(浸損)[1149]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개인 뒤에 여러 가지 곡식이 소생(蘇生)하며, 올벼는 부종(付種)하여 누른빛을 띠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여 이삭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앙(移秧)은 배태(胚胎)하고 근경(根耕)한 팥과 콩은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1149) 물에 잠기어 손해를 입음.

초 3일 제주목(濟州牧) 세공마(歲貢馬) 가운데에 10필(匹)을 정식(定式)에 의하여 잡아서 유치한 일로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장계(狀啓)]

신(臣)의 감영 별요사(別驍士)가 받은 말(馬)이 기한이 차서 죽은 것은 사복시(司僕寺)가 회계(回啓)[1150]한 정식에 의하여 지금에 온 제주목(濟州牧) 세공마(歲貢馬)[1151] 가운데에서 10필(匹)을 집류(執留)하였습니다. 이에 마필(馬匹) 수효(數爻)와 화모색(禾毛色)을 성책(成冊)하여 해당 관청에 수송하였으며,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濟州牧歲貢馬中十匹 依定式執留事 封啓 仍進 實錄廳

[狀啓]

臣營別驍士所受馬 限滿致斃者 依司僕寺回 啓定式 今來濟州牧歲貢馬中 執留十匹是白遣 同馬匹數爻 及禾毛色成冊修送于該寺 爲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초 4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지장(誌狀)을 교준(校準)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四日

進 內閣 校準 誌狀 仍進 實錄廳

초 5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五日

進 實錄廳

초 6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같은 날 축만제(祝萬堤) 무너진 곳 보축(補築)의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는 보첩(報牒)이 내도(來到)하였다.

初 六日

進 實錄廳

同日 祝萬堤潰決處 補築始役事 報牒來到

[중군보첩(中軍報牒)]

축만제(祝萬堤) 서수문(西水門) 무너진 곳 보축(補築)의 역사(役事)를 이 달 6일에 시작한 연유를 첩보(牒報)하는 일입니다.

[中軍報牒]

祝萬堤西水門 潰決處補築之役 以今初六日 爲始緣由 牒報爲臥乎事

1150)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함.

1151) 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말.

初 七日
列聖誌狀開印 進內閣

초 7일 열성(列聖)의 지장(誌狀) 개인(開印)[1152]으로 내각(內閣)에 나아갔다.

初 九日
秋夕 享役在邇 將發還營之行 故昨日未進內閣矣 諸僚或以式暇 或因病故 昨無進院之員 慈敎荐降 命委折知入 余以公役 將發還營 雖非無故不進 而惶悚之蹤 與諸僚無異 馳進內閣 晩後退歸私次 慈敎隨下 有昨日未進閣臣下隷 幷令兵曺 決棍之 命 惶蹙震剝 與諸僚往復相議 將聯陳惶悃之忱 仰請譴何矣 夜深後 有俄下處分 還收之 命

초 9일 추석(秋夕)이 임박하여 영(營)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제에는 내각(內閣)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동료들도 혹은 식가(式暇)[1153] 혹은 병고(病故)로써 어제에는 내각(內閣)에 나간 관원(官員)이 없었다. 이에 자교(慈敎)[1154]에 거듭 명을 내리어 곡절을 알아 오라고 하였다.
나는 공역(公役)으로 영(營)에 돌아오니 비록 까닭 없이 안나간 것이 아니건만 황송(惶悚)한 발걸음이 다른 모든 동료들이 다름없이 내각(內閣)에 달려갔다가 늦게 사차(私次)에 돌아왔다. 그런데 자교(慈敎)가 따라 내려왔는데 어제 내각(內閣)에 나오지 않은 각신(閣臣)들의 하인(下人)에게 병조(兵曺)로 하여금 곤장(棍杖)을 치라고 명하였다. 이에 황축(惶蹙)[1155] 진박(震剝)[1156]하여 모든 동료들과 더불어 왕복하면서 황육(惶悃)의 시정을 펴 꾸지람을 자청(自請)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상의(相議)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은 뒤에 처분을 내려 환수(還收)하라는 명이 있었다.

初 十日
進內閣監印

초 10일 내각(內閣)에 나아가서 감인(監印)하였다.

十一日
以 享役之迫近 不得不離發 中火于果川 申刻抵營封啓

11일 향역(享役)이 임박하여 부득불 이발(離發)하여 과천(果川)에서 점심을 먹고 신각(申刻)에 감영으로 돌아와서 봉계(封啓)하였다.

1152) 관부(官府)의 인신(印信)을 문안(文案)에 찍던 일.
1153) 관원(官員)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休暇).
1154) 대비(大妃)의 전교(傳敎).
1155) 황송하여 몸을 움츠림.
1156) 살결이 진동하여 깎이듯 떨림.

[장계(狀啓)]
신(臣)이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사항이 있어서 상경(上京)하였다가 당일에 영(營)에 돌아왔습니다.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 緣由馳啓爲白臥乎事

12일 축만제(祝萬堤)에 나가서 보축(補築)의 형편을 살펴보았다.

十二日
出往祝萬堤 看審補築形便

13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였다.

十三日
農形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接)하니, 경내(境內)에 농형(農形)은 올벼는 바야흐로 베어내고 늦벼는 건파(乾播)하였으며, 일찍이 옮겨 심은 모는 모두 이삭이 피었고 늦게 옮겨 심은 벼는 간간히 이삭이 피었고, 그루갈이한 팥과 콩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境內農形 早稻方張刈取晩稻乾播 及早移秧已盡發穗 晩移秧間間發穗 根耕豆太結顆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건릉(乾陵) 추석제향에 헌관(獻官) 이노집(李魯集) 대감이 내려왔다.

同日 健陵秋夕 祭享獻官 李台魯集下來

14일 현륭원 추석제향(秋夕祭享)에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갔다.

十四日
以 顯隆園秋夕 祭享獻官陪 香祝詣園所

15일 제향(祭享)을 설행한 뒤에 봉계(封啓)하고 건릉헌관(健陵獻官)으로 입부(入府)하였다가 돌이켜 출발하였다.

十五日
祭享設行後 封啓 健陵獻官入府旋發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十五日 行 顯隆園秋夕 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 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계본(啓本)]
삼가제향(祭享)의 일로 장계(狀啓)합니다. 이 달 15일에 현륭원(顯隆園) 추석제향(秋夕祭享)을 행하는데 신(臣)이 헌관(獻官)으로 진참(進參)하여 설행한 뒤에 원상(園上)을 봉심하니 잡초·잡목(雜木)이 없고, 사산(四山)의 안도 수목(樹木)을 범착(犯斫)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同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判官中軍進參

같은 날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는데 판관(判官) 중군(中軍)이 진참(進參)하였다.

同日 陵園所秋大奉審後 封啓

같은 날 능원소(陵園所)를 추·대봉심(秋大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啓本]
謹 啓爲奉審事 臣於本月十五日 健陵陵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顯隆園園上 丁字閣 碑閣以下諸處 奉審後 有頉處 及祭器雜物破傷者 謹依 筵稟新定式 幷自臣營 筦千庫 從便修改是白遣 樹木段 火巢濶遠 不能一一摘奸 而這這巡審 俾無犯斫之弊事 另加申飭於 陵園官處 爲白乎旀 萬年堤垌內 一體看審 則俱爲無頉 是白遣 鴈峰浮石所 發遣褊裨摘奸 則封標內無頉處 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계본(啓本)]
삼가 봉심(奉審)한 일을 아뢰옵니다. 신(臣)은 이 달 15일에 건릉(健陵) 위에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이하 모든 곳과 현륭원(顯隆園) 위에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이하 모든 곳을 봉심(奉審)하였습니다. 그래서 탈(頉)이 있는 곳과 제기(祭器), 잡물(雜物)이 파상(破傷)된 것은 삼가 연품신정식(筵稟新定式)에 따라서 모두 신(臣)의 영(營) 관천고(筦千庫)로부터 편리한 대로 수리하였습니다.

수목(樹木)은 화소(火巢)[1157]가 활원(闊遠)하여 일일이 적간(摘奸)하고 낱낱이 순심(巡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범착(犯斫)의 폐단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능원관(陵園官)에게 특별히 신칙(申飭)하였습니다. 만년제(萬年堤) 동내(垌內)를 살펴보니 모두 무탈(無頉)하였습니다. 그리고 앵봉(鴈峰) 부석소(浮石所)에 편비(褊裨)를 보내어 적간(摘奸)하니 봉표내(封標內)가 무탈(無頉)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1157)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의 해자(垓子)밖의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린 곳.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추대봉심(秋大奉審) 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同日 華寧殿 秋大奉審後 封啓

[장계(狀啓)]

화령전(華寧殿) 추맹삭(秋孟朔)[1158] 대봉심(大奉審)은 원래 지난 달 15일에 마땅히 거행해야 하건만 신(臣)이 서울에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달 15일 분향한 뒤에 겸령신(兼令臣) 김한순과 겸위장신(兼衛將臣) 박시회와 더불어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무탈(無頉)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華寧殿 秋孟朔大奉審 元定是白在 去月十五日 當爲擧行 而臣在京未還 不得擧行是白遣 今月十五日焚 香後 與兼令臣金漢淳 兼衛將臣朴著會 眼同奉審是白乎 則殿內諸處 俱爲無頉 是白乎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9일

축만제(祝萬堤) 공사현장에 나가서 패장(牌將) 및 역부(役夫)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였다.

十九日

出往祝萬堤役所 饋餉牌將及役夫等

20일

화령전(華寧殿) 일차(日次)로 봉심(奉審)하였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21일

영(營)에서 이발(離發)하여 시흥(始興)에서 점심을 먹고 신각(申刻)에 필곡(筆谷)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二十一日

自營離發 中火于始興 申刻抵筆谷 封啓

[장계(狀啓)]

신(臣)이 의정부에 품의할 일이 있어서 당일에 발행(發行)하여 상경(上京)한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上京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1158) 음력 7월을 말함.

二十三日
進內閣監印 仍進 實錄廳

23일 내각(內閣)에 나가서 감인(監印)[1159]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四日
農形封啓 仍進 實錄廳

24일 농형(農形)으로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境內農形 早稻已盡刈取 晩稻乾播 及早移秧向黃 晩移秧已盡發穗 根耕豆太入實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경내(境內)에 농형(農形)은 올벼는 이미 모두 베어내었고 늦벼 건파(乾播)한 것과 일찍 옮겨 심은 모는 누른빛을 띠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모두 이삭이 피었다. 그리고 근경(根耕)한 팥과 콩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므로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二十六日
進 實錄廳

26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七日
列聖誌狀畢印 是日進書于仁政殿時進參 仍進 實錄廳

27일 열성(列聖) 지장(誌狀)[1160]에 도장을 다 찍고 이 날에 인정전(仁政殿)에 책을 바칠 때에 진참(進參)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八日
內賜 列聖誌狀 一件祗受 傳曰 列聖誌狀 奉謨堂三件 宙合樓內閣 外奎章閣 五處

28일 내사(內賜)[1161] 열성지장(誌狀) 1건(件)을 공경히 받았다.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열성지장(列聖誌狀)을 봉모당(奉謨堂)에 3건, 주합루내각(宙合樓內閣)·외규장각(外奎章閣)·오처사

1159) 공문(公文)을 발행할 때에 감인관(監印官)이 그 사목(事目) 내에 착오가 없는지 살핀 후에 도장을 찍던 일.
1160) 지문(誌文)과 행장(行狀).
1161) 임금이 물건을 신하에게 내려 줌.

고(五處史庫)·서고(西庫)·홍문관(弘文舘)의 장서각(藏書閣)에 1건씩을 봉안(奉安)[1162]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봉조하(奉朝賀) 남공철(南公轍), 영부사(領府事) 이상황(李相璜), 판부사(判府事) 심상규(沈象奎), 우의정(右議政) 박종훈(朴宗薰), 제학(提學) 조인영(趙寅永), 원임제학(原任提學) 정원용(鄭元容), 제학(提學) 서유구(徐有榘), 원임직제학(原任直提學) 김로(金鏴), 검교직제학(檢校直提學) 서희순(徐憙淳), 원임직제학(原任直提學) 정기선(鄭基善)·박기수(朴綺壽), 직제학(直提學) 박영원(朴永元), 원임직각(原任直閣) 서준보(徐俊輔)·이광문(李光文)·이가우(李嘉愚)·김매순(金邁淳)·이경재(李景在)·김정집(金鼎集)·오취선(吳取善), 검교직각(檢校直閣) 이공익(李公翼), 직각(直閣) 정최조(鄭崔朝), 원임대교(原任待敎) 이헌위(李憲瑋)·김정희(金正喜)·김영순(金英淳), 검교(檢校) 김흥근(金興根)·조두순(趙斗淳)·김학성(金學性)·김수근(金洙根), 대교(待敎) 김영근(金英根), 행도승지(行都承旨) 김도희(金道喜),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인고(李寅皐), 우부승지(右副承旨) 윤치정(尹致定), 동부승지(同副承旨) 송응룡(宋應龍), 주서(注書) 윤치성(尹致成)·유치영(兪致榮), 별겸춘추(別兼春秋) 신석우(申錫愚), 검렬(檢閱) 조석우(曺錫雨), 응교(應敎) 이시원(李是遠), 부응교(副應敎) 서원순(徐元淳), 교리(校理) 이서(李㻐)·임백경(任百經), 부교리(副校理) 이노확(李魯確)·조운승(曺雲承), 수찬(修撰) 남헌교(南獻敎)·김재근(金在根), 부수찬(副修撰) 박내화(朴來華)에게 각각 1건씩 사급(賜給)하라고 하셨다.

史庫 西庫 弘文舘 藏書閣 一件奉安 奉朝賀南公轍 領府事李相璜 判府事沈象奎 右議政朴宗薰 提學趙寅永 原任提學鄭元容 提學徐有榘 原任直提學金鏴 檢校直提學徐憙淳 原任直提學鄭基善 朴綺壽 直提學朴永元 原任直閣徐俊輔 李光文 李嘉愚 金邁淳 李景在 金鼎集 吳取善 檢校直閣李公翼 直閣鄭崔朝 原任待敎李憲瑋 金正喜 金英淳 檢校金興根 趙斗淳 金學性 金洙根 待敎金英根 行都承旨金道喜 右副承旨李寅皐 右副承旨尹致定 同副承旨宋應龍 注書尹致成 兪致榮 別兼春秋申錫愚 檢閱曺錫雨 應敎李是遠 副應敎徐元淳 校理李㻐 任百經 副校理李魯確 曺雲承 修撰南獻敎 金在根 副修撰朴來華 各一件賜給

二十九日

29일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 태묘(太廟)를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 경우궁(景祐宮)을 전배(展拜)할 때에 배종(陪從)하였다가 환궁(還宮)한 뒤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大殿 中宮殿 太廟 展謁 景慕宮 景祐宮 殿拜時 陪從 還宮後 問 安班進參

1162) 받들어 모셔 둠.

三十日

以 列聖誌狀 監董閣臣 內下豹皮一領 祗受

傳曰 列聖誌狀 監董閣臣以下 別單書入 又傳曰提學趙寅永 徐有榘 檢校直提學徐憙淳 各 內下豹皮一領賜給 直提學朴永元 檢校待敎金興根 趙斗淳 各 內下虎皮一領賜給 檢校直閣李公翼 直閣鄭晛朝 檢校待敎金學性 金洙根 待敎金英根 各 內下鹿皮一領賜給 檢書官安季良 金鳳敍 金箕淳 姜潛各 內下帿弓一張賜給 員役等 幷令該曹 從厚分等施賞 唱準計士寫字官工匠等 自本閣考例 令該曹從厚分等施賞 進上時員役等 幷令該曹 分等施賞

30일

열성(列聖) 지장(誌狀)[1163] 감동각신(監董閣臣)[1164]으로 내하표피(內下豹皮) 1령(領)을 공경히 받았다.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열성지장(列聖誌狀) 감동각신(監董閣臣) 이하의 별단(別單)을 기록하여 들이라고 하셨다. 또 제학(提學) 조인영(趙寅永)·서유구(徐有榘), 검교직제(檢校直提) 서희순(徐憙淳)에게 각각 내하표피(內下豹皮) 1령씩 사급(賜給)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직제학(直提學) 박영원(朴永元), 검교대교(檢校待敎) 김흥근(金興根)·조두순(趙斗淳)에게 각각 내하호피(內下虎皮) 1령씩 사급(賜給)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검교직각(檢校直閣) 이공익(李公翼), 직각(直閣) 정최조(鄭晛朝), 검교대교(檢校待敎) 김학성(金學性)·김수근(金洙根)·대교(待敎) 김영근(金英根)에게 각각 내하녹피(內下鹿皮) 1령씩 사급(賜給)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검서관(檢書官) 안계량(安季良)·김봉서(金鳳敍)·김기순(金箕淳)·강진(姜潛)에게 내하후궁(內下帿弓) 1장을 사급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원역(員役) 등은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후하게 분등(分等)하여 시상(施賞)하고, 창준(唱準)·계사(計士)·사자관(寫字官)·공장(工匠) 등은 본각(本閣)으로부터 전례를 참고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후하게 분등(分等)하여 시상(施賞)하라고 하시고, 진상(進上)할 때에 원역(員役) 등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분등(分等)하여 시상(施賞)하라고 하셨다.

1163) 지문(誌文)과 행장(行狀).

1164) 책의 편찬이나 성역(城役) 등의 공역(公役)의 일을 감독함.

여 백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9월

여 백

初 一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頃事 封啓

초 1일 화령전과 현륭원을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頃)한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衛將 朴耆會 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李克聲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위장(兼衛將) 박시회(朴耆會)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초하룻날 분향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무탈(無頃)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한 현륭원 참봉(參奉) 이극성(李克聲)의 첩정내(牒呈內)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무탈(無頃)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進 實錄廳

초 3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四日
進 實錄廳

초 4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五日
農形及各面海溢事 封啓 仍進 實錄廳

초 5일 농형(農形) 및 각 면(面)에 해일(海溢)이 일어 난 일로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 則境內農形 晩稻乾播 及早移秧 間或刈取 晩移秧已盡向黃 根耕豆太 向黃是乎旀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本府判官) 김한순(金漢淳)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경내(境內)에 농형(農形)은 늦벼 건파(乾播) 및 일찍 옮겨 심은 모는 간혹 베어내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이미 누른빛을 띠었고 근경(根耕)한 팥과 콩은 누른빛을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17일에 영풍(獰風)[1165]이 크게 일어나서 본부(本府) 해안가 각 면에 해일(海溢)의 근심이 많으므로 장리(將吏)를 분견(分遣)하여 그들로 하여금 적간(摘奸)케 하였습니다. 이에 송동(松洞)·오정(梧井)·광덕(廣德)·가사(佳士)·현암(玄巖)·포내(浦內)·장안(長安)·우정(雨井)·압정(鴨汀)·초장(草長)·청룡(靑龍)·숙성(宿城)·종덕(宗德)·수북(水北)·오타(五朶) 등 15면(面)은 모두 바닷가로서 피해를 입은 논이 90여결(結)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해 온 바 해일(海溢)을 당한 정도가 비록 정묘·을미 양년(兩年)에 크게 손상한 것에는 미치지 않으나 이와 같이 각종 곡식이 익을 무렵에 해곡(海曲)[1166]에 농가(農家)가 이 같은 흉작(凶作)을 만나니 진실로 긍민(矜憫)[1167]함이 간절합니다. 여기에 곳에 따라 자상하게 조사하고 사실에 따라 급재(給災)[1168]하였습니다. 언답(堰畓)[1169] 무너진 곳은 해리(該里)로 하여금 합력(合力) 수축(修築)하여 영원히 땅을 묵히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본부판관(本府判官)에게 신칙(申飭)하였습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去月十七日 獰風大作 本府沿海各面 多有海溢之患 乙仍于 分遣將吏 使之摘奸則松洞梧井廣德佳士玄巖浦內長安雨井鴨汀草長靑龍宿城宗德水北五朶等十五面俱以濱海之面 被災畓麤 爲九十餘結 是如爲白有臥乎所 海溢形止 雖不至如丁卯乙未兩年之大段傷損 而當此各穀登熟之時 海曲農戶之遇此獨歉 誠切矜悶 是白如乎 逐麤詳査 從實給災 堰畓潰缺處段 使該里合力修築 俾不至永陳之地事 另加申飭於本府判官處 爲白乎旀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초 6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六日
進 實錄廳

초 7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七日
進 實錄廳

초 8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初 八日
進 實錄廳

1165) 매우 무서운 바람.
1166) 바닷가의 마을. 섬.
1167) 가엾게 여겨 근심함.
1168) 재상(災傷)을 입은 전지(田地)에 대하여 전세(田稅) 등을 감면, 혹은 면제해 주던 것.
1169) 방죽을 쌓아 물을 대는 논.

初 九日

豊淳自樊里 搬移于黃橋新定之家 是日出往東大門外陪來 祠宇奉 安 行茶禮

초 9일

풍순(豊淳)이 번리(樊里)로 부터 황교(黃橋)의 새로 정한 집에 이사(移徙) 하였다. 이 날에 동대문(東大門) 밖에 나가서 위패(位牌)를 사우(祠宇)에 모셔 봉안(奉安)하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初 十日

進 實錄廳

同日 本府所管 各道穀耗不足 及蕩債給代米劃給事 籌司關文 來到

초 10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같은 날 본부(本府)가 관할하는 각 도(道)에 모곡(耗穀)이 부족한 것과 및 채무를 탕감(蕩減)하는 대미(代米)를 획급(劃給)하라는 주사(籌司) 관문(關文)이 도착하였다.

[關文]

備邊司 爲相考事 節 啓下 敎司 啓辭 水原勾管 各道穀見縮條 今年耗米一千二百二十五石零 蕩債給代米六百石 自該府報請給代矣 支放不足耗之從他代劃 便成年例 以嶺南所在本司勾管 各名穀會錄耗 及加分耗中折米劃給 使之取用何如 答曰允事 傳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向事

[관문(關文)]

비변사(備邊司)가 상고(相考)할 일로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계사(啓辭)는 수원(水原)이 구관(勾管)[1170]하는 각 도(道) 곡식의 견축(見縮) 조항(條項)입니다. 금년에 모미(耗米) 1,225석과 채무를 탕감(蕩減)하는 대미(代米)[1171] 600석은 해부(該府)로부터 급대(給代)할 것을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지방(支放)[1172]이 부족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획(代劃)하고, 년례(年例)에 따라 영남(嶺南)에 있는 본사(本司)가 구관(勾管)하는 각 명곡(名穀) 회록모(會錄耗) 및 가분모(加分耗)[1173] 중에서 절미(折米)[1174]로 획급(劃給)하여 취용(取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하시기를 그 일을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시니 전교 내의 사의(事)를 봉심(奉審)하여 시행하라는 일입니다.

1170) 업무를 맡아서 관장함.
1171) 다른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쌀.
1172) 관아(官衙)의 일꾼들에게 주는 봉급.
1173) 조선 시대 삼정(三政)의 하나인 환곡(還穀)이나 군향미(軍餉米)를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모곡(耗穀).
1174) 어떤 물건의 값을 쌀로 쳐서 셈함. 또는 그 셈한 쌀.

12일 대전(大殿)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영칙(迎勅)[1175]할 때 따라 올라갔다가 내전(內殿)으로 돌아 온 뒤에 문안반(問安班)으로 진참(進參)하였다.

十二日
大殿詣 仁政殿 迎勅時 從陞 還內後 問 安班進參

14일 반포된 사문(赦文)을 공경히 받고 그 형지(形止)를 봉계하였다.

十四日
頒赦文祗受 形止封啓

[사문(赦文)]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대혼(大昏)[1176]이 백복(百福)의 근원을 맞이하여 부덕(婦德)이 화합하여 길하고, 중종(中宗)께서 구장(九章)[1177]의 의복을 반사(頒賜)하여 단위(丹闈)[1178]가 글을 봉했다. 이에 함께 기쁨을 표하고 부고(敷告)를 편다.

생각하면 이 묘궁(眇躬)[1179]이 외람되게 홍서(鴻緖)[1180]를 이어받고 어진 배필을 만나서 비로소 적유(翟褕)[1181]를 맞이하였다. 열조계후(列祖啓後)의 기반을 이으니 왕도(王道)는 부부에서 시작이 되고, 태모영상(太母迎相)의 명을 받자오니 천덕(天德)이 왕과 왕비에 합작(合作)한다.

후궁(後宮)들의 아름다운 칭송은 연패(衍珮)[1182]를 차고 가르침을 지켰으며, 칠묘(七廟)[1183]의 명인(明禋)[1184]에는 빈번(蘋蘩)[1185]을 바치어 정성을 담았다. 주(周)나라 이남(二南)의 아름다운 거동(擧動)을 열어 몸을 가지런히 하여 지극함을 짝하고 한실(漢室) 황후궁(皇后宮)의 제윤(制允)[1186]을 본받아 만물을 갖추어 이름을 바르게 하였다.

[赦文]

王若曰大昏 迓百福之源 黃裳吉 中廟 頒九章之服 丹闈疏封 式表同歡 庸伸敷告 念眇躬 叨承 鴻緖 賢匹肇御翟褕 紹 列祖啓後之基 王道造端於夫婦 奉 太母迎相之命 天德作合於乾坤 六宮之嘉頌 載飭衍珮守訓 七廟之明禋 共薦蘋蘩齋誠 闡 周家二南之休擧 幸齊體而儷極 倣漢室長秋之制允 宜備物而正名

1175) 중국 황제의 칙서(勅書)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함.
1176) 고대 중국의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혼례를 일컫는 말.
1177) 구장복(九章服). 임금이나 세자가 제례(祭禮)시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
1178)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 임금을 뜻함.
1179) 자신의 겸칭.
1180) 임금의 국가통치의 대업 또는 임금의 혈통(血統).
1181) 붉은 비단에 꿩의 깃으로 장식한 왕비의 옷.
1182) 조선시대 금관조복(金冠朝服)의 좌우에 늘이어 차는 옥(玉).
1183) 중국 주나라의 천자(天子)의 사당. 곧 3소(昭)·3목(穆)과 태조(太祖)의 사당.
1184) 맑고 깨끗하게 하여 제사 지냄. 담제(禫祭).
1185) 개구리밥과 산흰쑥이라는 뜻으로 변변치 못한 제사음식을 일컫는 말.

肆專价 啓陳奏之行 而皇旨企許準之典 靑邱修執壤之禮 庶有願而必從 紫廷邀錫冊之恩 寔靡情而不顧 迨茲御命之 使纔返儼然宣誥之勅遄臨 星槎馳柝木之躔 恩出同慶 繢總備珠軒之餙 寵紆匪頒 啓芝泥而駿命寶天 擎琅函而龍光燭地 欣壺位之新苙 縟儀旣成於冕迎荷 皇靈之遠敷 顯號克正於璽諭 歡溢環域 賀騰昕庭 琴瑟諧音 正屬六禮之飾喜 雷雨解澤 宜有八方之覃恩

드디어 진주사(陳奏使)[1187]의 사은행(謝恩行)을 열어 황지(皇旨)가 허락하는 전례(典禮)를 기획하였다. 이에 우리나라가 집양(執壤)[1188]의 예를 닦으니 서민(庶民)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따르고 왕실(王室)이 칙서(勅書)를 내리시는 은혜를 맞이하니, 백성은 진정으로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이 무렵에 어명(御命)이 엄연하게 선고(宣誥)하는 칙서가 내렸으니, 성사(星槎)[1189]는 별의 궤도를 달려 은혜는 함께 경사스러운데서 나고 궤총(繢總)[1190]에 구슬로 장식한 창문의 문채(文彩)를 갖추어 총애(寵愛)가 나누어 하사(下賜)하심에 얽혔다.

지니(芝泥)[1191]를 열어 하늘의 명(命)은 빈천(寶天)[1192]하고, 옥함(玉函)을 받들어 임금의 은혜는 땅에 비친다. 곤위(壺位)[1193]가 새로이 임함을 기꺼워하여 성대한 의식(儀式)은 이미 면영(冕迎)[1194]에 이루어지고, 황제의 신령(神靈)이 멀리 떨침에 은혜를 입어 휘호(徽號)가 능히 새유(璽諭)[1195]에 바르게 합하니 기쁨은 환역(環域)[1196]에 넘치고, 하례(賀禮)는 궁정(宮庭)에 오른다.

금슬(琴瑟)이 해음(諧音)하니 바로 육례(六禮)의 식희(飾喜)[1197]에 속하고, 뇌우(雷雨)[1198]의 은택이 사방에 펴지니, 의당히 온 나라의 담은(覃恩)[1199]이 있다.

1186) 제가(制可)하여 윤허함.
1187) 조선시대 외교적으로 중국에 통고해야 할 일이 생긴 경우 임시로 파견한 사신.
1188) 방물(方物)로 바치는 각종 물건
1189) 임금의 사절(使節)이 타고 가는 배.
1190) 그림과 문채가 있는 얇은 비단.
1191) 인주(印朱). 또는 인주가 담긴 통.
1192) 하늘에 손님이 되라는 뜻으로 천자(天子)의 죽음을 말함.
1193) 왕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1194)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고 맞이함.
1195) 천자(天子)의 옥새가 찍힌 유지(諭旨).
1196) 별들이 운행하는 구역.
1197) 경사스런 일에 기쁨을 보이기 위하여 잔치를 베품.
1198) 천지(天地)의 기운이 순조로워 천둥소리가 울리고 비가 내려 만물이 소생함을 뜻함.
1199) 은택을 널리 베품. 옛날에 조정에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봉증(封贈)·상사(賞賜)·사면(赦免) 등을 통틀어 말함.

이 달 12일 새벽부터 이전에 모반대역(謀反大逆), 모반(謀叛), 자손이 조부모·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때리고 욕한 것, 처첩이 지아비를 모살(謀殺)한 것, 고의로 살인(殺人)·염매(魘魅)[1200]·고독(蠱毒)[1201]을 도모하는 것 등 국가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과 장오(贓汚)[1202], 강절도(强竊盜), 잡범(雜犯)으로 죽을 죄를 제외하고는 도류(徒流)[1203] 이하 부처(付處)[1204]·안치(安置)·[1205]충군(充軍)으로 이미 유배지(流配地)에 이르렀거나 아직 이르지 못한 것,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못한 것, 이미 결정한 것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죄는 모두 유제(宥除)[1206]하라.

그리고 당돌하게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가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를 주고,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자급(資級)씩 더해주고 자궁(資窮)[1207]한 사람에게는 대가(代加)[1208]하라.

아! 음교(陰敎)를 굉연(紘誕)[1209]에 넓히어 궁궐 약원(祢元)[1210]의 다스림을 돕고, 나라의 기반을 과질(瓜瓞)[1211]에 공고히 하여 본지(本支)[1212]가 백세(百世)의 복(福)을 더할 것을 교시(敎示)하니 생각하여 모두 알지어다.

自本月十二日 昧爽以前 除謀反大逆 謀叛子孫 謀殺毆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故殺人 魘魅蠱毒 關係 國家綱常 贓汚强竊盜 雜犯死罪外 徒流以下 付處安置 充軍 已至配所 未至配所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廣陰敎於紘誕 贊宸極祢元之治 鞏邦基於瓜瓞衍本支百世之祺 故玆 敎示 想宜知悉

1200) 선량한 사람을 꾀이고 두렵게 하여 정신을 흐리게 함.
1201) 독약으로 사람을 해침.
1202) 부정한 재물을 탐함.
1203)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1204) 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
1205) 울타리를 쳐서 한 곳에 가두어 둠.
1206) 임금이나 왕후의 즉위나 책봉 등의 경축할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교지를 내려 죄를 경감하거나 없애주는 것.
1207)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에 오른 벼슬자리. 곧 정3품 통훈대부를 이르는 말.
1208) 조선시대 정3품 이상의 현직 문무(文武) 관리에게 품계를 더해질 경우, 이를 해당 관리의 친족이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는 제도.
1209) 좌우에 드리운 면류관의 끝. 곧 조정(朝廷)을 뜻함.
1210) 선대(先代) 임금을 모시는 제사.
1211) 오이 줄기가 뻗어가듯 자손이 번창함을 이르는 말.
1212) 본손(本孫)과 지손(支孫).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 頒赦文一度 今月十三日酉時量 武兼高慶赫 賫來乙仍于 依禮文祗受頒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본부판관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반사문(頒赦文) 한차례가 이 달 13일 유시(酉時) 즈음에 무겸(武兼)[1213] 고경혁이 가지고 오므로 예문(禮文)에 의하여 공경히 받아 반포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十五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頃事 封啓後 出樊溪 仍留自然經室

15일 화령전(華寧殿)과 현륭원(顯隆園)을 봉심(奉審)하여 이상이 없는 일로 봉계(封啓)한 뒤에 번계(樊溪)에 나가서 자연경실(自然經室)에서 머물렀다.

[狀啓]
卽接 華寧殿兼令 金漢淳牒呈 則今月十五日焚 香後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李克聲牒呈內 則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 화령전 겸령(兼令) 김한순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이 달 15일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달한 현륭원 참봉 이극성의 첩정(牒呈)에 이 달 15일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이상 없다고 하므로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十六日
夕還筆谷

16일 저녁에 필곡에 돌아왔다.

十八日
離發中火于果川 申刻抵營 封啓

18일 출발하여 과천에서 점심을 먹고 신시(申時)에 감영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1213)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의 약칭.

[장계(狀啓)]

신이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일이 있어서 상경하였다가 당일에 감영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馳啓)합니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　還營　緣由　馳啓爲白臥乎事

19일　서리가 내려 봉계(封啓)하였다.

十九日

霜降　封啓

[장계(狀啓)]

지금 본부판관 김한순의 첩정을 접하니, 이 달 18일 새벽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므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외탕고(外帑庫) 봉부동전(封不動錢) 10,000냥을 양남(兩南)에서 작전(作錢)하는 일을 비변사에 아뢰었다.

[狀啓]

卽接本府判官　金漢淳牒呈則今月十八日曉　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外帑扈封不動錢　一萬兩　作錢於兩南事　報備局

[보첩(牒報)]

본부에 외탕고(外帑庫) 봉부동(封不動)[1214]이 지금에 기록한 장부에 있는 것은 12,800여냥(兩)이 됩니다. 전수(典守)[1215]의 방전(方錢)은 곡식만 같지 못할 뿐 아니라 양남(兩南)·양서(兩西)[1216]는 모두 본부가 구관(句管)하는 곡식이 있습니다. 지금에 만약 외탕전(外帑錢) 가운데서 10,000냥을 상정(詳定)한 가격으로써 외도(外道)에서 작곡(作穀)하면 절미(折米)[1217] 3,300여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곡(耗穀)에 모곡(耗穀)을 더하여 해마다 늘

[牒報]

本府外帑庫封不動　卽今記簿所在　爲一萬二千八百餘兩矣　典守之方錢　不如穀瓮不喩　兩南兩西　俱有本府句管穀　今若於外帑錢中一萬兩　以詳定價　作穀於外道則可得折米三千三百餘石是如乎　耗上加耗　年年滋殖是乎遣　帑庫歲入錢　爲三千兩

1214) 전쟁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물건을 창고에 넣고 봉하여 쓰지 못하게 함.
1215) 어떠한 일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나 이를 맡은 사람을 말함.
1216) 황해도와 평안도
1217) 어떤 물건의 값을 쌀로 쳐서 셈함. 또는 그 셈한 쌀..

是置 次次封椿滿四年 則合爲一萬二千兩 依右例 除出萬兩作穀 則不出十年 可得數萬餘石 此所謂藏鏹千萬不如銖兩而時入者也

리고 탕고에 세입(歲入)으로 들어 온 돈이 3,000냥입니다. 이것을 차차로 봉장(封椿)[1218]하여 4년이 차면 모두 12,000냥이 되니 우례(右例)에 의하여 10,000냥을 덜어내어 작곡(作穀)하면 10년을 벗어나지 않고 수만여석(石)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 바 돈꿰미에 천만(千萬)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주 적은 것이 때때로 들어오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不但在本府大有裨益 當此穀日縮之時 數萬石作穀在外道 亦不害 爲得寸亦寸是乎所司敎是 參量事勢 嶺湖南良中 各一千六百五十石式分排作穀 名以華城外帑穀 自明年依他例 斂散取耗 每於年終元劃穀磨勘時 一體磨勘於本府 雖値謙年 切勿混入 停減之意 嚴明定式 永久遵行事 發關知委爲只爲

이것은 본부만 크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곡식이 날로 줄어 들 때를 당하여 수만석의 작곡(作穀)이 외도(外道)에 있으면 또한 해롭지 않고 한 마디를 얻어도 역시 한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사세(事勢)를 잘 참작하여 영호남에 각각 1,650석씩 분배하여 작곡(作穀)하고 이것을 화성(華城) 외탕곡(外帑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다른 예에 의하여 감산(斂散) 취모(取耗)하되 언제나 연말(年末) 원획곡(元劃穀)을 마감할 때 일체 본부에서 마감해야 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도 결코 혼입(混入)하지 말고 정감(停減)의 뜻을 엄격히 밝히어 법을 정하고 오래도록 준행할 일로 관문(關文)을 띄워 통지합니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華寧殿監 祭閣臣 金令學性下來

20일 화령전을 일차(日次)로 봉심하였다. 같은 말 화령전 감제각신(監祭閣臣) 김학성 영감(令監)이 내려왔다.

二十一日

奉 香詣 殿內齋室

21일 향(香)을 받들어 가지고 전내(殿內) 재실(齋室)에 나아갔다.

1218) 창고의 하나. 홍수나 기근 등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재용(財用)을 저장하던 곳.

22일

제향(祭享)을 설행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감제각신(監祭閣臣)이 출발하여 상경(上京)하였다.

二十二日
祭享設行後 封啓 監 祭閣臣 離發上京

[계본(啓本)]
삼가 제향(祭享)의 일을 장계(狀啓)합니다. 이 달 22일에 화령전 탄신제향을 행하는데 신(臣)이 헌관(獻官)으로 진참하여 설행한 뒤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치계하는 일입니다.

[啓本]
謹 啓爲 祭享事 今月二十二日 行 華寧殿誕辰祭享 臣以獻官進參設行後 祭官職姓名 開錄于後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감역(監役)이 송장백 영감(令監)과 더불어 내려왔다.

同日 監役 與宋令莊佰下來

25일

화령전을 일차(日次)로 봉심하였다. 같은 날 축만제(祝萬堤) 건설현장에 나가서 패장(牌將) 및 인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二十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出往祝萬堤役所 饋餉牌將及役夫

26일

도시(都試)를 설행할 계획의 일로 봉계하였다.

二十六日
都試設行計料事 封啓

[장계(狀啓)]
신(臣)의 감영에 별효사(別驍士) 및 열교를 선발하는 금년 춘등과 추등 도시(都試)를 이 달 27일에 설행할 계획의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狀啓]
臣營別驍士 及 列校 今年春秋兩等都試 以今 二十七日 設行計料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축만제의 공사를 마쳤다는 보첩이 왔다.

同日 祝萬堤畢役 報牒來到

[中軍報牒]
祝萬堤潰缺處 今二十六日至 畢役而客入物力 爲四千八百五十八兩四戔二分 緣由馳報爲白乎事

[중군보첩(中軍報牒)]
축만제(祝萬堤)의 무너진 곳이 이 달 26일에 이르러 공사를 마쳤는데 이곳에 들어간 물력(物力)[1219]이 4,858냥 4전 2분이 되므로 그 연유를 달려 보고하는 일입니다.

二十七日
年分封啓

27일 년분(年分)으로 봉계(封啓)하다.

[狀啓]
本府穡事形止 備陳於前後狀 聞中 是白有在果 本府地形 濱海跨野 斥鹵居多沃壤甚少 一有旱澇 灾眚偏甚 是白在如中 今年段春夏暵乾 原隰如焚 圭壁屢薦 民情遑急 是白加尼 幸於五月晦間 甘霈始降 高低周洽 時則夏至已過 秧節晩晩 趁澤之急 爭以晷刻 故甘飭判官 使之多方勸相 期於次第移揷 是白乎乃 其奈秧苗已老 人力靡逮 加之厲氣熾盛 廢農者多是白遣 秧功纔畢 時雨旋闕 早種者蹲縮而就枯 晩移者蕭色而不振

[장계(狀啓)]
본부(本府)에 농사일의 진행상황을 전후의 장계에서 갖추어 보고합니다. 본부에 지형(地形)은 해안(海岸)이 들녘을 넘어서 척로(斥鹵)[1220]가 많고 기름진 땅은 매우 적으므로 한번 가물거나 장마가 지면 재생(灾眚)[1221]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봄과 여름이 가물어 언덕이 불타듯하고 규벽(圭璧)[1222]을 여러 차례 바치면서 백성들의 실정이 황급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그믐의 사이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높고 낮은 지대가 두루 흡족하였지만 그때는 하지(夏至)가 이미 지났고 이앙(移秧)하는 절후(節侯)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택(趁澤)[1223]의 시급함이 귀각(晷刻)을 다투기 때문에 감칙판관(甘飭判官)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가 권장하여 차례대로 이삽(移揷)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앙묘(秧苗)는 이미 늙었고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여기에 여기(厲氣)[1224]가 치성(熾盛)하였습니다. 또한 앙공(秧功)은 겨우 마쳤건만 적시에 비가 내리지 않아 일찍 심은 곡식은 시들어 마르고 늦게 옮긴 벼는 쓸쓸하여 자라나지 못하였습니다.

1219) 조세(租稅) 이외에 백성의 재산의 다소(多少)를 헤아려 돈을 징수하는 것.
1220) 염분이 많은 땅.
1221) 자신의 과실. 또는 재난에 의하여 범한 죄.
1222) 서옥과 둥근 옥. 천자가 봉작의 증거로 제후에게 주는 것으로 천자를 알현할 때 보이거나 제사 지낼 때 규벽을 바치고 소원을 빌었음.
1223) 비의 은택을 곧바로 이용함.
1224) 못된 돌림병을 일으키는 기운.

겸하여 시기를 놓친 누에고치가 치성(熾盛)을 부리는데 뽕나무 줄기와 잎은 손상이 많았습니다. 저 중경(中庚)[1225]이 지난 뒤에 땅이 축축해질 정도의 비가 내리어 그나마 소성(蘇醒)하기를 기대하였건만 한 척(尺)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고 벼이삭이 필 무렵에 수일간 스산한 바람으로 포영(苞穎)[1226]한 뒤에 종종 재해가 있어 이미 소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해 각 면은 8월 보름 사이에 풍조(風潮)가 범람하여 침몰(沈沒)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兼以愆蚕乍熾 莖葉多損 逮夫中庚之後 有時滋潤 庶期蘇醒 而夫何近尺暴雨 乃在發穗之際 數日凄風 又値包穎之後 種種爲灾 已減幾分是白乎旀 沿海各面 則八日望間 風潮汎濫 沈墊之患 間多有之 幸賴秋候頗調 霜信差退 向所謂蹲縮者 間抽旁莖 蕭索者亦入半米 是白乎矣 及夫滌場 顆粒零星 大違始料 咸稱失稔是白遣至於田種各穀段 播耘罔愆 靡不善遂 此是一境農形之大略也

그러나 다행하게 가을의 기후가 고르고 서리가 내릴 조짐이 물러감으로 앞에서 말한 시들어 마른 벼는 간간히 옆에서 줄기가 나오고 쓸쓸한 이삭도 반 정도 영글었습니다. 그런데 타작을 마친 뒤에는 과립이 엉성하여 처음 짐작과 크게 어긋나서 모두가 흉작(凶作)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밭에 심은 각종의 곡식은 파운(播耘)의 착오가 없어서 잘 수확하였으니 이것이 한 지경에 농형(農形)의 대략입니다.

검전(檢田)[1227]과 표재(俵災)[1228]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여 남약(濫約)이 모두 죄가 됩니다. 하물며 금년에는 명(名)과 실(實)이 서로 어긋나므로 더더욱 십분 살피고 삼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판관(判官)에게 신칙하고 장리(將史)를 보내어 곳에 따라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옮겨 심지 못한 모와 늦게 심은 모가 병충해(病蟲害)를 입은 것이 458결 37부 3속이 되고, 해일(海溢)로 입은 재해가 94결 99부가 되고, 아울러 유래(流來)한 구초불(舊初不)[1229]이 424결 29부 9속이 되어 통계 977결 57부 2속이 됩니다.

儉田俵災 關係甚重 毫忽之差 濫約俱罪 況如今年 則名與實華 尤當十分審愼 故別飭判官 分遣將吏 逐鹿爬櫛 是白乎 則今未移晩移虫 소等灾 爲四百五十八結 三十七負三束 海溢爲九十四結九十九負 竝與流來舊初不 四百二十四結 二十負九束 通計爲九百七十七結 五

1225) 중복(中伏). 하지가 지난 뒤의 넷째 경일(庚日).
1226) 방동사니 과(科) 식물의 소수(小穗)의 밑동에 있는 몇 개의 잎.
1227) 토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함.
1228)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 또는 자연적인 흉년이 들었을 경우 국가에서 해당지역의 재해정도에 근거하여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것.
1229) 햇수가 오래도록 파종(播種)하지 못한 토지.

十七負二束 較諸地部劃下十五結不足 爲九百六十二結五十七負二束 是白如乎 今若徒懷嚴畏 不以實陳 致使災民 或有白徵之寃 則孤負我 聖上如傷若保之 盛德至意 自敢不猥越 據實登聞 爲白去乎 上項不足灾九百六十二結 五十七負二束 特許加劃敎是乎 則臣謹當塗抹分俵 是白乎旀

그런데 지부(地部)가 획하(劃下)한 것은 비교하면 15결이 부족한 962결 57부 2속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에 만약 엄격한 두려움만 생각하여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재민(災民)으로 하여금 혹시나 백징(白徵)[1230]의 원통함이 있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성상(聖上)께서 백성이 상할까봐 보호하듯 하는 성덕(盛德)과 지극한 뜻을 저버린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사실에 의거하여 아뢰노니 상항(上項)에 부족한 재해 962결 57부 2속을 특별히 가획하신다면 신은 마땅히 도말(塗抹)[1231] 분표(分俵)[1232]할 것입니다.

仍伏念還餉法意 非惟嚴重嗣歲農糧 大關民政 今年當捧條段 期於準捧 而至於乙未停退條段 專在濱海各面 太半流亡 徒成虛簿 苟欲一一追督 勢將徵出於隣里 而新舊並督 竊恐有民穀俱失之慮 是白如乎 同停退各穀之千九百七十七石段 限明年 許令仍停 以爲少紓民力之地 爲白乎旀 推奴徵債亦係擾民之端 一切防塞 恐合便宜 並 令廟堂稟 旨 分付爲白只爲

따라서 엎드려 생각하니 환향법(還餉法)의 뜻이 엄중할 뿐만 아니라 다음해 농량(農糧)은 민정(民政)에 큰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바쳐 올리는 조항(條項)은 마땅히 준수하여 봉납할 것을 기약할 수 있거니와 을미년에 미뤄 논 조항(條項)은 오로지 해변가 각 면에 있으므로 태반이나 유망(流亡)하여 한갓 헛된 장부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쫓아 독촉(督促)한다면 이웃마을에까지 징출(徵出)하되 신구(新舊)의 것을 아울러 독촉해야 하므로 아마도 이것은 백성과 곡식을 모두 잃는 염려가 있습니다.

정퇴(停退)[1233]한 각 곡식 6,977석(石)은 내년을 기한하여 늦추어 주어 백성들의 힘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추노(推奴)[1234]·징채(徵債)[1235]도 백성을 요란케 하는 단서이므로 일체 방지하여 편리하도록 아울러 의정부로 하여금 품지(稟旨) 분부(分付)하시기를 바랍니다.

1230) 조세를 내지 않은 땅이나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를 물리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1231) 이리저리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추어 꾸밈.

1232) 모든 물품을 나누어 줌.

1233) 전세(田稅)와 대동미, 공세(貢稅) 등의 정공(正供)이나, 환곡 등을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이(災異)로 인해 진휼하는 차원에서 정하였던 납부기간을 미루어 주는 것.

1234) 도망간 노비를 수색하여 잡아 옴.

1235) 공식적으로 또는 사사로이 꿔 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함.

28일

양남(兩南)지방에 작곡(作穀)[1236]하는 일로 비변사의 회관(回關)이 당도하여 전라·경상 양도(兩道)에 문서를 이첩하였다.

二十八日

兩南作穀事　備局回關來到文移兩道

[주관(籌關)[1237]]

이번에 계하하는 내용은 9월 25일에 약방(藥房) 입진(入診) 대신(大臣) 비국당상(備局堂上)이 인견(引見)[1238]하여 입시(入侍)할 때에 우의정 박아무개가 아뢰기를, "지금에 수원유수 서아무개가 본사(本司)에 아뢴 사연을 본 즉, '외탕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돈 12,800냥은 전수(典守)[1239]의 방전(方錢)으로 곡식으로 제출(除出)[1240]한 10,000냥을 각 도에서 상정하여 작곡(作穀)하면 절미(折米) 300여석을 얻을 수 있음만 같지 못합니다. 또한 모곡(耗穀)을 모아 기록하고 본고(本庫)에 세입(歲入)한 3,000냥은 4년이 되면 마땅히 12,000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례(例)에 의거하여 제출(除出)하여 첨작(添作)하면 10년을 벗어나지 않고 수십만 석(石)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부에 있어서 큰 이익이 있으니 먼저 1,000냥을 영·호남 양도(兩道)에 분배하고, 화성(華城) 외탕고의 곡식을 이름을 붙여 내년으로부터 감산(斂散)[1241]·취모(取耗)를 원획(元劃)한 곡식과 함께 본부에 마감하되 비록 흉년이 들더라도 정감(停減)[1242]하지 말고 영원히 준행(遵行)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환곡(還穀)을 더함이 비록 어렵고 조심

[籌關]

節　啓下敎今九月二十五日藥房入　診大臣　備局堂上引見入　侍時　右議政朴□□所啓　卽見水原留守徐□□報本司辭緣　則外帑庫記簿所在錢爲一萬二千八百餘兩典守之方錢　不如穀除出一萬兩　以詳定作穀於外道　則可得折米三百餘石　取耗會錄　而本庫歲入三千兩　至四年當爲一萬二千兩　依右例除出添作　不出十年　可得數十萬石.

在本府大有裨益　爲先以見在萬兩　分排於嶺湖南　以華城外帑穀　作名　自明年斂散取耗　與元劃穀　同爲磨勘於本府　雖値歉歲　勿入停減永久遵行　爲辭矣　添還雖屬難愼　而兩南旣有本府勾管

1236) 치러야 할 돈이나 물품을 곡식으로 환산하여 냄.
1237) 비변사가 보내는 관문(關文).
1238)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만나 봄.
1239) 어떠한 일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나, 이를 맡은 사람을 말함.
1240) 일정한 수량이나 수효에서 일부를 덜어 냄.
1241) 전세(田稅)나 혹은 진휼곡(賑恤穀) 등을 거두고 흩음.
1242) 흉년이 들어 백성이 조세·환곡 등을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 그 정도에 따라 징수하지 않거나 감하여 주던 일.

穀 今以此數 分排兩道 則數亦不多 在本府封椿之政誠非少補 依所報施行何如

스러우나 양남지방에 이미 본부가 관할하는 곡식이 있으니 지금에 이 수량을 양도(兩道)에 분배하면 수량도 많지 않고 본부 봉장(封椿)[1243]의 정사(政事)에 도움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大王大妃殿 答曰依爲之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爲有矣 兩南各一千六百六十石 十斗式 待本府拮据 卽爲作穀後 着意斂散添耗會錄 雖値歉年 勿入停蕩之意 今方發關 是如乎同錢各五千兩 亦須從便下送 無或稽緩宜當向事

대왕대비전이 답하시기를, "그대로 할 일이라."고 전교하시고 전교내의 사의를 받들어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남지방은 각각 1,660석 10두씩을 본부에 길거(拮据)[1244]하고, 즉시 작곡(作穀)한 뒤에 각별히 감산(斂散)·첨모(添耗)를 회록(會錄)하되 비록 흉년이 들더라도 정퇴(停退)와 탕감(蕩減)하지 말라는 뜻으로 관문을 띄웁니다. 이 돈 각 5,000냥은 편이에 따라 하송(下送)하니 혹시라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移文]

則到備邊司關內云云 見上亦爲有臥乎所 今此作穀 實爲 帑貨典守之方 則其所關重與他自別 斂散取耗之節 自貴道亦當十分着意 是在果 貴道作穀條 五千兩段事當及今下送 而非但輸運之有弊 今旣有弊營 作錢推來之耗穀 則就其中相換除置仍作元穀 實爲兩營 俱便之方是如乎 弊營今年推來耗穀中 一千六百六十六石 十

[이문(移文)]

지금에 이른 비변사 관문 내용에 운운(云云)하기를, '지금에 이 작곡(作穀)은 실지로 탕화(帑貨)를 전수(典守)하는 방책이니 소관(所關)의 중요함이 다른 것과 다릅니다. 감산(斂散) 취모(取耗)할 때에 귀 도(道)로부터 십분 뜻에 따를 것과 귀 도 작곡조(作穀條)의 일은 지금에 마땅히 내려 보내야 하건만 운수(運輸)에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폐 영(營)에 이미 작전(作錢)하여 미루어 논 모곡(耗穀)이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바꾸어 두고 곧바로 원곡(元穀)을 만들면 실지로 양쪽 영(營)이 모두 편한 방책입니다.

저희 영(營)이 금년에 미뤄 온 모곡(耗穀)중에 1,666석 10두의 곡식이 각 읍(邑)에 있으니 구분하여

1243) 창고의 하나로 홍수나 기근(饑饉), 우박,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전란(戰亂), 전염병 등의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재용(財用)을 저장하던 곳.

1244) 갑이 을에게 받은 돈을 병에게 넘겨 줌.

별도로 두고 화성(華城) 외당고의 곡식이라고 이름 지어 내년부터 모두 나누어 취모(取耗)하되 원곡(元穀)에 첨작(添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영이 주관하는 곡식을 회안(會案)하여 다가올 때에 별도로 명색(名色)을 세워 일체 마감할 것이며, 그 진행상황을 먼저 문서로 회답하여 뒤에 증빙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斗穀 在各邑良中 區別仍置名以華城外帑穀 自明年盡分取耗 添作元穀爲乎矣 弊營勾管穀 會案修來時 別立名色 一體磨勘爲乎旀 形止先卽回移 以爲憑後之地 爲宜向事

29일

도시(都試)에서 시취(試取)[1245]하는 일로 봉계합니다.

二十九日

都試試取事 封啓

[장계(狀啓)]

신(臣)의 감영에서 별효사(別驍士) 및 열교(列校)를 선발하는 금년 춘·추 양등(兩等) 도시(都試)를 이달 27일에 설행한다는 연유를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신은 그 당일에 종사관 김한순과 중군(中軍) 박시회와 함께 개장(開場)하였습니다.

29일에 이르러 연이어 시취(試取)한 뒤에 양등(兩等) 도시(都試)의 수석 합격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는 곳과 맞춘 화살수를 뒤에 적어 치계하므로 전시(殿試)에 참가하는 일은 해당 관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바랍니다.

춘등(春等)에 2등을 차지한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閑良) 김성종이며, 3등을 차지한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는 한량(閑良) 정용석입니다. 그리고 열교(列校)에 2등을 차지한 기패관(旗牌官)은 한량(閑良) 김인상이며, 3등을 차지한 별무사(別武士)는 한량(閑良) 홍수민입니다. 추등(秋等)에 2등을 차지한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閑良) 김성종이며, 3등

[狀啓]

臣營別驍士 及列校 今年春秋兩等都試 以今二十七日設行之由 已爲馳 啓 爲白有在果 臣於當日 與從事官金漢淳 中軍朴蓍會 眼同開場 二十九日至 連爲試取後兩等居首人姓名年 父住 矢數後錄 馳啓爲白去乎 直赴殿試事 令該曹 稟處爲白乎旀

春等居二 左列別驍士 閑良金聲鍾 居三右列別驍士 閑良鄭龍錫 列校居二 旗牌官閑良金仁詳 居三別武士 閑良洪秀民 秋等居二 左列別驍士 閑良金聲鍾 居三左列別驍士 閑良李德良 列校居

1245) 조선시대에 무재(武才)를 시험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말함.

二 守堞軍官 閑良崔東臣 居三旗牌官 閑良金仁詳 竝自臣營 依例施賞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을 차지한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는 한량(閑良) 이덕량입니다. 그리고 열교(列校)에 2등을 차지한 수첩군관(守堞軍官)은 한량(閑良) 최동신이며, 3등을 차지한 기패관(旗牌官)은 한량(閑良) 김인상이므로 신의 감영으로부터 예(例)에 의거하여 시상(施賞)한 연유를 치계합니다.

春等 左列別驍士 閑良李守業 年三十七 父泰得住日用面 鐵箭一矢一百八步 二矢一百七步 三矢一百八步 柳葉箭貫一中 邊一中 片箭貫一中 鞭芻一中 合八矢二分 列校 守堞官 閑良姜周成 年三十三 父洛得範住晴湖面 鐵箭一矢一百六步 二矢一百八步 三矢一百八步 柳葉箭邊一中 片箭邊二中 鞭芻二中 鳥銃邊二中 合十矢 秋等 右列別驍士 閑良曺源振 年三十一 父前五衛將允恒住梅谷面 鐵箭一矢一百二十四步 二矢一百二十四步 三矢一百二十二步 柳葉箭 貫一中 邊一中 片箭貫一中 騎芻二中 鞭芻二中 合十矢二分 列校守堞軍官 閑良李世煥 年三十二 父德文住安寧面 鐵箭一矢一百

춘등(春等) 좌열별효사(左列別驍士)는 한량(閑良) 이수업으로 나이는 37세이며, 그의 부(父)는 태득, 일용면에 살고 있습니다. 이명하(李命夏)의 철전(鐵箭) 첫 번째 화살은 108보(步), 두번째 화살은 107보, 세번째 화살은 108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柳葉箭)[1246]은 관중(貫中)이 하나, 변중(邊中)이 하나이고, 편전(片箭)[1247]은 관중(貫中)이 하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하나이니 도합 8시(矢) 2분(分)입니다.

열교(列校) 수첩관(守堞官)은 한량(閑良) 강주성으로 나이는 33세이며, 그의 부(父)는 득범, 청호면에 살고 있습니다. 김기석(金基錫)의 철전(鐵箭)의 첫번째 화살은 106보(步), 두번째 화살은 108보(步), 세번째 화살은 108보(步)에 이르렀습니다. 유엽전(柳葉箭)은 변중(邊中)이 하나, 편전(片箭)은 변중이 둘, 편추(鞭芻)[1248]가 둘이 적중(的中)하고 조총(鳥銃)이 변중(邊中)이 둘이니 도합 10시(矢)가 맞았습니다.

추등(秋等)에 우열별효사(右列別驍士)는 한량(閑良) 조원진으로 나이는 31세이며, 그의 부(父)는 전오위장(前五衛將) 윤항이고, 매곡면에 살고 입니다. 철전(鐵箭)[1249]의 첫번째는 124보(步), 두번째는 124보(步), 세번째는 122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

1246) 화살의 한 종류로, 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겼으며, 조선 후기들어 본격적으로 사용된 주요 무기 중의 하나.
1247) 짧고 작은 화살.
1248) 편곤(鞭棍), 즉 쇠도리깨와 곤방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치는 무술 혹은 훈련을 말함.
1249) 정량(正兩)대·육량전(六兩箭)·아량전(亞兩箭)·장전(長箭) 등 무쇠 화살의 총칭.

(柳葉箭)은 관중(貫中)이 하나, 변중(邊中)이 하나이며 편전(片箭)은 관중(貫中)이 하나, 기추(騎芻)는 적중(的中)이 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로 도합 10시(矢) 2푼(分)입니다.

열교(列校) 수첩군관(守堞軍官)은 한량(閑良) 이세환으로 나이는 32세이며 그의 부(父)는 덕문이고, 안넝면에 살고 있습니다. 철전(鐵箭)은 첫번째가 108보(步), 두번째는 108보(步), 세번째는 113보(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엽전(柳葉箭)은 관중(貫中)이 하나, 변중이 둘이며, 기추(騎芻)는 적중(的中)이 둘, 편추(鞭芻)는 적중(的中)이 둘이니 도합 10시(矢) 1분(分)이 맞았습니다.

八步 二矢一百八步 三矢一百十三步 柳葉箭 貫一中邊二中 騎芻二中 鞭芻二中合十矢一分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10월

여 백

初 一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判官進參 同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초 1일 동틀 무렵에 객사(客舍)에 나가서 망궐례를 행하는데 판관(判官)이 진참(進參)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을 봉심(奉審)한 뒤에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於今日 華寧殿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頉是白乎旀 卽接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今日 園上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同日 監役與宋令 同發上去

[장계(狀啓)]
신(臣)이 오늘 화령전(華寧殿)에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륭원령 이민기의 첩정(牒呈)을 접하니, 오늘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이상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감역(監役)이 송령(宋令)과 함께 출발하여 올라갔다.

初 五日
華寧殿 日次奉審

초 5일 화령전 당번(當番)으로 봉심하였다.

初 六日
自營離發 中火于果川 酉刻抵筆谷 封啓

초 6일 감영에서 출발하여 과천에서 점심을 먹고 유시(酉時)에 필곡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上京緣由 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이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일이 있어서 당일에 출발하여 상경(上京)한 연유를 치계합니다.

初 八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초 8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으로 나아갔다.

초10일 건릉(健陵)·현륭원(顯隆園)에 년례(年例) 보식(補植)하는 일로 봉계(封啓)하였다.

[장계(狀啓)]

지금에 건릉령(健陵令) 김성구와 현륭원령(顯隆園令) 이민기의 첩정(牒呈)을 보니, 국내(局內) 수목(樹木)이 희소(稀踈)[1250]한 곳에 년례(年例)로 보식(補植)[1251]하는 역사(役事)를 이 달 6일에 시작하여 7일에 역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에 보식(補植) 경계와 식목(植木) 주수(株數)[1252]를 뒤에 기록하여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十日

健陵 顯隆園 年例補植事 封啓

[狀啓]

卽接 健陵令金性求 顯隆園令李民耆牒呈 則 局內樹木稀踈處 年例補植之役 自今月初六日爲始 初七日至 畢役是如爲白有等以 補植境界 及植木株數 後錄馳 啓爲白臥乎事

11일 번계(樊溪)로 나갔다.

十一日

出往樊溪

14일 번계(樊溪)로부터 필곡에 돌아왔다.

十四日

自樊溪還筆谷

15일 화령전(華寧殿), 현륭원을 봉심하여 무탈한 일로 봉계하였다.

十五日

望 闕禮 判官進參 同日 華寧殿 焚 香奉審後 封啓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의 첩정을 접하니, 이 달 15일에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령 이민기의 첩정(牒呈)내용에 이 달 15일 원상(園上)·전내

[狀啓]

卽接 華寧殿 兼令金漢淳牒呈 卽今月十五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頉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令 李民耆牒呈內 卽

1250) 사이나 틈이 성김.
1251) 식수(植樹) 조림에 있어서 묘목(苗木)이 시들거나 상하여 공지(空地)가 생긴 경우 그곳에 묘목을 심는 일.
1252) 그루나 포기의 수효.

今月十五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殿內)를 봉심(奉審)하여 이상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二十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20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二十四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同日 北屯祝萬堤諸處 畢役形止 及監董以下 請賞事 封啓

24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같은 날 북쪽 둔전(屯田) 축만제의 모든 곳을 공사를 마친 상황과 감동(監董)에게 상 줄 것을 청하는 일로 봉계하였다.

[狀啓]
本府北屯疏濬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自三月始役 別擇裨校 泜之各務 淤泥之積久成陸者 期以深鑿 垌堰之漸致汰落者 務從完築是白遣
如意橋 卽是旱澇藏洩之戶 而左右石築 太半動退 故並爲政築爲白遣 東邊入水處 年久澱淤 民或冒耕 故尺量開拓 略築新堤 一復設如初境界 爲白乎旀 城內開川 自華虹門至南水門 流沙積淤 幾與路齊 一値潦漲 東西汎溢 傍近民戶 每患沈墊 不可不及今 疏濬乙仍于 開鑿沙礫 補築堤岸 爲白乎旀

[장계(狀啓)]
본부 북둔(北屯)에 물길을 트는 연유를 치계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비교(裨校)를 특별히 선택하여 각 의무를 나눠 정하고, 진흙이 막혀 뭍이 된 곳은 깊게 파내고, 방죽이 무너진 곳은 완전히 쌓도록 하였습니다.
여의교는 한로(旱澇)·장설(藏洩)하는 어귀로서 좌우에 석축(石築)이 태반이나 밀려났기 때문에 아울러 개축(改築)하였습니다. 동쪽에 물이 들어 노는 곳은 햇수가 오래되어 찌꺼기가 쌓이고 혹 백성들이 모경(冒耕)[1253]하기 때문에 척량(尺量)하고 개척하여 새 방죽을 쌓되 처음 경계와 같이 하였습니다.
성안의 개천은 화홍문(華虹門)으로부터 남쪽 수문(水門)에 이르기까지 모래와 진흙이 쌓여 길의 높이와 같게 되었습니다. 한차례 장마를 만나면 동서(東西)가 잠겨 넘쳐 이웃 민가(民家)가 침몰될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물길을 트지 않을 수 없음으로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방죽과 언덕을 보축(補築)하였습니다.

1253) 땅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농사 지음.

축만제 서편 수문(水門)이 무너진 형편을 이미 아뢰었습니다. 이곳은 북쪽 둔전에 비교하면 괴인 물이 많아서 관개(灌溉)의 이로움이 일부(一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수문이 무너지는 날에는 저장된 물이 일시에 유실되므로 진작 개축(改築)하여 삼동(三冬)에 비와 눈의 물을 가두어 두지 않으면 방죽 아래 수십리에 뻗어있는 전답(田畓)에 물을 끌어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부(人夫)들을 모으고 역사(役事)를 감독하되 물길의 설치는 오로지 벽돌을 사용하되 혹은 옛것과 같이 하거나 혹은 새로운 자재(資材)를 취하여 가로 세로 배열하였습니다. 이에 수갑(水閘)[1254]이 완성되어 흙을 쌓고 모래를 덮으니 옛 보양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감독하고 신칙(申飭)한 것으로 지금에 겨우 준공(竣工)을 아룁니다.

동·서 장대(將臺) 및 화양루(華陽樓)·서포루(西鋪樓)에 간간히 무너진 곳도 일일이 보수한 크고 작은 공역(工役)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차례차례 마쳤습니다. 각처에 수축한 파수(把數)와 형편을 낱낱이 구분하여 왼쪽에 개록(開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역(工役)에 모든 감독의 직분에 관계되는 일을 어찌 수상(酬賞)[1255]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부터 본부가 늘 공역(工役)을 일으켰더니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고 상 줄 것을 청하여 예(例)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각 항목에 수축(修築)한 큰 공사가 수두룩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책으로 수록하였거니와 사안(事案)이 은혜를 간구(干求)함에 매였습니다.

祝萬堤西偏水門　潰決形止已卽登　聞　是白在果　較諸北屯　渟滀倍蓰　灌溉之利爲一府之最　而水門潰決之日　全堤貯水　一時走矢　若不趁卽改築　以瀦三冬雨雪之水　則堤下數十里繡錯之畦畛　更無引溉長禾之處　是白乎所　亟令雇丁董役　而水竇之設　專用磚石　或仍舊貫或取新材　橫鋪堅排　水閘旣成　築土被沙　堤形復完　不住董飭　今纔告竣　是白乎旀

東西將臺　及華陽樓西鋪樓間間頹圮處段置　亦爲一一修補　大小工役　凡閱七朔而今始次第了訖　是白如乎各處修築之把數形止　秩秩區別　開錄于左　爲白乎旀此等工役　凡爲監董者　係是職分內事　豈有酬賞之可言而自前本府　每有興役　不論鉅細　輒皆請賞　便成已例且今番各項修築役處　非一事工甚鉅　其在激勸之方　合有收錄之典　是白乎矣　事係干　恩

1254) = 수문(水門)
1255) 상을 주어 보답함.

臣不散擅 便謹稽已例 幷以後錄 爲白去乎 令該曺 照例 稟處爲白乎旀 各項所入物力段 自臣營修城庫貯置庫 分排取用後 修成冊 上送于備邊司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그래서 신(臣)이 감히 이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삼가 전례에 따르고 아울러 뒤에 기록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들어간 물력(物力)은 신의 감영 수성고(修城庫)·저치고(貯置庫)에서 분배하여 취용(取用)한 뒤에 책으로 만들어서 비변사(備邊司)에 올려 보내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後] 北屯堤內疏鑿 及堤垌補築 北堤補築 長二百二十把 廣七把 東堤新築 長二百八十把 廣四把 如意橋二十問 改建左右石築 高四尺 廣十尺 祝萬堤水門改建 及體垌改築水門石柱 高十五尺五寸 左右石築 長二十八尺 高五尺 磚石改鋪 長二十八尺 廣三尺 體垌改築長三十五把 廣二十把 高七把

북둔(北屯) 제내(堤內) 물길내기 및 제방 보축(補築)과 북쪽 제방 보축의 길이는 220파(把)이고 넓이는 7파(把)이며, 동쪽 제방 신축한 길이는 280파이고 넓이는 4파이다. 여의교(如意橋) 20칸을 다시 건축한 좌우 석축(石築)의 높이는 4척이고 넓이는 10척입니다.

축만제 수문(水門)의 개건(改建) 및 체동(體垌)에 다시 건축한 수문(水門) 석주(石柱)의 15척 5촌이며, 좌우 석축의 길이는 28척이고 높이는 5척입니다.벽돌을 고쳐서 편 길이는 28척이고 넓이는 3척이며, 체동(體垌)에 개축(改築)한 길이는 35파(把)이며, 넓이는 20파이고 높이는 7파입니다.

城內川堤 左右補築 長六百三十把 廣二十把斗周防川五十間 東西將臺 及華陽樓西鋪樓 間間修補

그리고 성내의 하천제방 좌우에 보축(寶軸)한 길이는 630파이고 넓이는 20파이며, 두주방천(斗周防川) 50칸을 보축하였습니다. 또 동장대(東將臺)·서장대(西將臺)·화양루·서포루 사이사이를 보수(補修)하였습니다.

都廳監董 裨校以下 工匠等姓名秩 各所都廳 水原府中軍朴耆會 北屯監董 前郡守趙玄鈺 別看役 五衛將 金致夏 都裨將敎練官折衝將軍 車聖民 看役 牌將敎鍊官副司果 林聖龍 敎鍊官副

<도청감동(都廳監董) 비교(裨校)이하 공장(工匠) 등의 성명 차례>

각소도청(各所都廳) 수원부중군(水原府中軍) 박시회(朴耆會), 북둔감동(北屯監董) 전군수(前郡守) 조현옥(趙玄鈺), 별간역(別看役) 오위장(五衛將) 김치하(金致夏) · 도패장교련관절충장군(都裨將敎練官折衝將軍) 차성민(車聖民), 간역(看役) 패장교련관부사과(牌將敎

鍊官副司果) 임성룡(林聖龍) · 교련관부사과(敎鍊官副司果) 이기배(李基培) · 별무사부사과(別武士副司果) 김성혁(金星赫), 축만제감동(祝萬堤監董) 전무겸(前武兼) 유면근(柳勉根), 별간역(別看役) 전주부(前主簿) 변학수(卞學秀) · 도패장교련관절충(都牌將敎鍊官折衝) 이문배(李文培), 간역(看役) 패장교련관부사과(牌將敎鍊官副司果) 김중관(金重寬) · 교련관부사과(敎鍊官副司果) 한경조(韓慶祖) · 기패관절충(旗牌官折衝) 김백려(金百麗)입니다.

司果 李基培 別武士副司果 金星赫 祝萬堤監董 前武兼 柳勉根 別看役 前主簿 卞學秀 都牌將敎鍊官折衝 李文培 看役 牌將敎鍊官副司果 金重寬 敎鍊官副司果 韓慶祖 旗牌官折衝 金百麗

준천감동(濬川監董)은 전찰방(前察訪) 박사응(朴師膺), 별간역(別看役) 교련관부사과(敎鍊官副司果) 박준석(朴駿碩), 간역(看役) 패장기패관가선(牌將旗牌官嘉善) 지계은(池繼殷) · 교련관부사과(敎鍊官副司果) 이기평(李基平), 동서장대(東西將臺) 별간역(別看役) 자헌(資憲) 문세준(文世駿) · 도패장전첨사가의(都牌將前僉使嘉義) 신정익(申廷翼), 간역(看役) 패장별효사부사과(牌將別驍士副司果) 이광윤(李光潤), 각소도책응서리(各所都策應書吏) 라동승(羅東升), 간역(看役) 서리(書吏) 박민풍(朴民豊) · 차윤홍(車允弘) · 박완영(朴完英) · 한도석(韓道錫), 석수변수(石手邊手) 양만동(梁萬同) 등 13명, 야장변수(冶匠邊手) 김칠손(金七孫) 등 4명, 목수변수(木手邊手) 백유손(白有孫) 등 7명입니다.

濬川監董 前察訪 朴師膺 別看役 敎鍊官副司果 朴駿碩 看役 牌將旗牌官嘉善 池繼殷 敎鍊官副司果 李基平 東西將臺 別看役 資憲 文世駿 都牌將前僉使嘉義 申廷翼 看役 牌將別驍士副司果 李光潤 各所都策應書吏 羅東升 看役 書吏 朴民豊 車允弘 朴完英 韓道錫 石手 邊手 梁萬同 等 十三名 冶匠 邊手 金七孫 等 四名 木手邊手 白有孫 等 七名

25일

본영(本營) 및 본영에 속한 5읍 군병관문(軍兵官門) 취점을 제언(堤堰) 수축(修築)에 옮기는 일로 봉계합니다.

二十五日

本營及屬五邑 軍兵官門聚點 移付於堤堰修築事封啓

[장계]

지난 번에 도부한 비변사(備邊司) 관문(關文) 내용은,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비변사 계사(啓辭)에 각

[狀啓]

前矣到付 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 啓辭 各道秋操

稟 啓今已齊到矣 有國所重 莫過詰戎 頻年停操 便成恒式 陰雨之備 實涉踈虞 一番修擧 在所不已 第念四道設賑兩南 則添以轉輸之勞 西路雖曰小康 見今使客絡續 供億旁午 畿邑事勢 亦無異同 此時徵調有難 議到今秋 八道三都 水陸諸操 巡歷巡點 幷姑停止

도(道) 추조(秋操)의 품계(稟啓)가 지금에 이미 제도(齊到)하였습니다. 나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군사 훈련보다 더 한 것이 없건만 여러 해로 훈련을 정지하여 이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마에 대한 대비가 실지로 소우(踈虞)[1256]를 막는 것으로 한차례 수거(修擧)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四道)를 생각하고 양남(兩南)을 진휼(賑恤)한다면 전수(轉輸)의 수고로움을 더 합니다.

서로(西路)가 비록 조금 편하다고 하지만 지금에 살펴보면 사객(使客)[1257]이 이어지고 공억(供億)[1258] 방오(旁午)[1259]하는 기읍(畿邑)의 일의 형세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때에 불러서 조련(調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금년 가을에는 8도(道)와 3도(都) 수륙(水陸)의 모든 훈련과 순력(巡歷)·순점(巡點)을 아울러 우선 정지하였습니다.

至於官鎭門聚點 則伍繕戒申明約束 毋敢視以文具 裨有整飭之效 有堤堰處 使之移點 各樣都試覆審考講 按例擧行 停退都試 一體合設之意 分付何如 答曰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 亦爲白有等以

관진문(官鎭門) 취점(聚點)에 있어서는 오열(伍列)을 채워서 다스리되 약속을 거듭 밝히어 감히 문구(文具)로 보지 말고 실지로 정칙(整飭)의 효과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언(堤堰)이 있는 곳에 그들을 옮겨 점검하고 완역(完役)하고 각양(各樣)의 도시(都試)·복심(覆審)·고강(考講)을 예를 참고하여 거행하되 미루어 논 도시(都試)와 일체 합해서 설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답하시기를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시고 전교 내의 사의(事意)를 받들어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臣營馬步軍兵 依例聚點 俱無闕額 而步軍段 移點於各處堤堰疏濬之役 是白遣 所屬五邑軍兵 亦爲依關辭擧行之意 傳令知委是白加尼 卽

신의 감영 마보군병(馬步軍兵)을 예에 의하여 취점(聚點)하니 모두 부족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보군(步軍)은 각처 제방 소준(疏濬)의 역사에 이점(移點)하였고, 5읍에 소속한 군병(軍兵)도 관사(關辭)에 의하여 거행하라는 뜻을 전령하여 지위(知委)하였습니다.

1256) 조심성이 부족하여 그릇함.
1257) =객사(客使), 연로(沿路) 수령(守令)이 봉명사신(奉命使臣)을 일컫는 말.
1258)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안정시킴.
1259)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 붐비고 수선스러움. 또는 일이 매우 복잡함.

지금에 안산군수(安山郡守) 이준수(李俊秀), 용인현령(龍仁縣令) 이종윤(李鍾允), 진위현령(振威縣令) 박장암(朴長馣), 시흥현령(始興縣令) 이명원(李鳴遠)의 보고를 접하니 4개읍의 군병을 제방 소착(疏鑿)의 역사에 옮겨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과천현감(果川縣監) 정만교(鄭晩敎)의 보고에는 본현의 군병을 예에 의하여 취점하니 별로 오열(伍列)이 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합니다.

接安山郡守李俊秀 龍仁縣令李鍾允 振威縣令朴長馣 始興縣令李鳴遠所報 則四邑軍兵 移點堤堰疏鑿之役 是如爲白遣 果川縣監 鄭晩敎所報 則本縣軍兵 依例聚點 別無闕伍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28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곧바로 실록청에 나아갔다.

같은 날 재결(災結)[1260]의 가획(加劃)[1261]과 구환(舊還)[1262]을 멈춰줄 것을 지난 장계에 의하여 내려 주시기를 청하는 일로 봉계하였다.

二十八日

進講入 侍 仍進實錄廳

同日 災結加劃 舊還仍停 依前狀請準下事 封啓

[장계(狀啓)]

신(臣)은 본부의 연분(年分) 장본(狀本)에 농형(農形)과 민정(民情)을 갖추어 진술하고 재결(災結)의 가획(加劃)과 환향(還餉)을 그대로 멈춰줄 것을 우러러 청하였습니다. 지금에 주사(籌司)[1263]가 복계(覆啓)[1264]한 행회(行會)[1265]를 보니 재결(災結)의 감표(減俵)[1266]가 462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미년에 미룬 환향(還餉)을 절미(折米)로 거두어들였는데 방출(放出)을 혹시라도 남용하지 않았으나 쌀 사들이기를 멈춘 것이 후폐(後弊)를 끼쳤습니다.

[狀啓]

臣於本府年分狀本中 備陳農形 與民情 仰請災結之加劃 還餉之仍停 是白加尼 卽狀見籌司覆 啓之行會者 則災結減俵 至爲四百六十二結零是白遣 乙未停退還餉 折米收捧 亦是白如乎 檢放之不宜或濫 停糴之徒貽後弊

1260) 가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해를 입은 전답에 대해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1261) 갈라서 나눠주는 것을 더함.
1262) 상환 기간이 지난 환곡(還穀).
1263) 조선시대 군무(軍務)와 정사(政事)를 논의하던 비변사를 달리 이르던 말.
1264) 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임금에게 엎드려 아룀. ② 죄인을 거듭 심리(審理)함.
1265)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각 관서의 장(長)이 그 부하에게 전달하고 실행방법을 토의하기 위한 것임.
1266) 조세 등을 감하여 나누어 줌.

臣雖瞶劣 豈敢全昧 而前此之據實 仰請實出於萬不獲已 是白乎所 今年穡事 可謂無灾 不有始因嘆乾孔酷秧役愆時 兼以厲氣方熾 民力多絀 旋以鋤後 惜乾愆蚤肆氣暴雨凄風 一直痒稼是白遣 至如海溢 各面偏被沈墊之患 而幸賴秋候頗調 雖有如干蘇醒 是白乎乃 畢竟成就 大失所望 或在野而刈獲不到 或登場而種稅不足 惟以田穀之稍登 不得歸之於歉荒 而市價方秋刁騰 民情無異窮節 是白如乎

신이 비록 외열(瞶劣)[1267]하지만 어찌 감히 전혀 모르면서 이에 앞서 사실에 의거하여 그 사실이 어쩔 수 없는데서 나왔음을 우러러 청하겠습니까. 금년의 농사일은 그 가뭄의 재앙이 혹독하여 모심기의 때를 놓치고, 겸하여 돌림병이 치성(熾盛)을 부리고 민력(民力)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돌이켜 묘종을 심은 뒤에 애석하게도 잠사(蚕事)[1268]를 그르치고 짓궂은 폭우(暴雨)와 처량한 바람이 한결같이 농작물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닷물이 넘치어 각 면(面)이 침몰(沈沒)의 근심이 생겨났으나 다행하게 가을 기후의 순조로움을 입고서 약간의 소성(蘇醒)함은 있었으나 끝내는 크게 희망을 잃었습니다. 혹은 들녘에 있는 곡식을 베어들이지 않고 혹은 타작(打作)을 하였지만 종세(種稅)가 부족하였습니다. 오직 밭작물은 조금 수확을 하였지만 흉작을 면치 못하였으며 시중 가격이 가을보다 폭등하여 민정(民情)이 궁절(窮節)[1269]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以此年形民勢 新舊災結之未滿千數 揆以常年比捻庶無一毫濫觴而 今以五百十五結劃下之災 較諸舊初不四百二十四結零之流來災頃 及海溢災九十四結零之已經登聞者 猶有不足之數則今灾段 更無把束之俵給是白置 使此失農之民 復添白徵之寃 恐非所以仰體軫恤之道 是白乎旀 至於乙未停退還餉各穀段 伊年海溢 卽數十年來初有之灾 濱海二十餘面 便成滄桑 堌堤

이 해의 형편과 백성들의 삶이 신구(新舊)의 재결(災結)이 천수(千數)에 차지않았습니다. 이것은 편년의 비총(比摠)[1270]으로 계산하여 털끝만큼의 생각도 없이 지금에 515결을 내려 준 재결(災結)은 구초불(舊初不) 424결의 유래와 해일(海溢) 재난 94결에 비교하여 이미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수를 지금 재결(災結)에 파속(把束)의 표급(俵給)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실농(失農)한 백성들에게 백징(白徵)의 원통함을 다기 더하면 아마도 불쌍히 여기는 도(道)를 우러러 체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을미년에 정퇴(停退)한 환향(還餉) 곡식은 이 해에 해일이 수십년 이래에 처음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바닷가 20여개의 면(面)은 갑자기 창상(滄桑)을 이루어 제방과 두둑은 곳곳이 무너지고, 어전(漁箭)[1271]

1267) 사리에 어둡고 용렬함.
1268) 양잠(養蠶)하는 일.
1269) 묵은 곡식은 다 떨어져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아 농민이 곤궁하게 지내는 봄철.
1270)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 전체의 수량이나 분량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합하는 것. 또는 합한 총액

과 염분이 모두 부셔지고 연안 포구(浦口)에 사는 백성들은 농사를 잃고 이익을 잃어 유망(流亡)이 이어져 10집에 8~9는 텅 비었습니다.

일체 공납(公納)은 징봉할 길이 없이서 마침내는 이 같은 분수(分數) 정퇴(停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또 흉작을 면치 못하여 진폐(陳廢)한 곳은 개간하지 못하고 흩어진 사람은 모으지 못하여 민정(民情)과 사세(事勢)가 지난번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사실에 의거 진문(陳聞)[1272]하여 특별히 잉정(仍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금년의 농사일이 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바닷물이 넘치어 예전과 같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면은 당년에 새 환곡과 신포(身布)[1273]가 오히려 징봉(徵捧)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이 까닭으로 이미 유망(流亡)하여 찾아서 징수할 곳이 옛 환곡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서 봉납을 독책(督責)할 것입니까.

진실로 일일이 미루어 독촉하면 사세(事勢)가 이웃이나 친족에게 징봉(徵捧)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 바 이웃과 친족도 모두 빈사(濱死) 하담(荷擔)[1274]의 유(類)이니 이 명령을 들으면 낭고사산(狼顧四散)[1275]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환(舊還)은 말할 것 없거니와 아울러 금년에 받아먹을 환곡(還穀)도 모두 찾아서 징수할 곳이 없으니 이것은 진실로 사세(事勢)의 적연(的然)함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복주(覆奏)[1276] 계하(啓下)한 뒤에 다시 일이 번거롭고 외람되고 주제넘음을 알건만 백성들의 목숨이 매인 것으로 이에 우매함을 무릅쓰고 호소합니다. 재결(災結)의 획급(劃給)을 더하고 구환(舊還)을 그대로 정퇴(停退)할 것을

堰畦塍 隨處潰決 漁箭鹽盆擧皆漂頹 沿浦居民 失農失利 流亡相續 十空八九
一切公納 徵捧無路 畢竟有此分數停退之擧 而昨秋年事 又未歉 陳廢者未墾 渙散者未集 民情事勢 與前無異故 據實陳 聞 特蒙仍停是白加尼 今年穡事 又復如右所陳 而海溢爲灾依舊 是濱海之面 則當年新還 與身布 猶患難捧 是白去等况以此已流亡無指徵之舊還 將處責捧乎

苟欲一一追督 勢不得不徵隣徵族 而所謂隣族 皆濱死荷擔之類 一聞此令 狼顧四散 則舊還毋論 竝與今年受食之還 亦都歸指徵無處之科 此實事勢之的然無疑者也 覆奏 啓下之後 更事煩瀆 極知猥越 而民命攸係 玆不得不冒昧申籲 爲白去乎 災結加劃 舊還仍停 並依前狀請準下事 令廟堂稟旨 分付爲白只爲
同日瓜滿事 報備局移吏曹

1271) 어살. 물고기를 잡기위하여 물 속에 나무를 세워 고기를 돌게하는 나무 울타리.
1272) 진술하여 아룀.
1273) 조선 후기에 양인(良人)이 신역(身役), 즉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대신에 매년 바치던 포.
1274) 어깨에 매는 일과 등에 지는 일
1275) 뒤돌아 보면서 사방으로 흩어짐.
1276) 다시 심사하여 임금에게 아룀.

아울러 전장(前狀)에 의하여 준하(準下)를 청하는 일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 분부하도록 바랍니다.

같은 날 과만(瓜滿)[1277]의 일로 비변사에 아뢰고 이조(吏曹)에 이문(移文)하였다.

〔報牒〕
爲相考事　留守去丙申正月十二日　政本職除授　同月二十六日辭 朝 二十七日到營 今年十二月 至爲二十四朔之限 是乎等以 緣由牒報爲臥乎事

[보첩(報牒)]
상고할 일입니다. 유수(留守)가 된 지난 병신년 1월 12일 본 화영유수(華營留守)에 제수되어 같은 날 26일에 화영(華營)에 도착하였습니다. 금년 12월이 24개월의 기한이 되므로 그 연유를 첩보하는 일입니다.

1277) 관직(官職)·관계(官階)에 따른 관원(官員)의 임기.

여 백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11월

여 백

初 一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
無頃事 封啓

진강(進講)으로 입시하였다가 곧바로 실록청에 나아갔다.

초 1일

같은 날 화령전과 현륭원을 봉심(奉審)하여 무탈한 일로 봉계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 兼衛將朴蓍會牒呈 則今月初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 殿內諸處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李克聲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奉審無頃 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 겸위장(兼衛將) 박시회의 첩정을 접하니, 이 달 초하룻날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하니 전내(殿內) 모든 곳이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한 현륭원 참봉 이극성의 첩정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 전내(殿內)를 봉심하여 이상 없다고 합니다. 이에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初 四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同日 災結加劃 舊還仍停事
籌司覆 啓關文 來到

진강(進講)으로 입시하였다가 곧바로 실록청에 나아갔다.

초 4일

같은 날 재결(災結)의 획급(劃給)을 더하고 옛 환곡(還穀)을 정지하고 미루는 일로 주사(籌司)가 복계(覆啓)[1278]한 관문(關文)이 도달해왔다.

[籌關]
爲相考事 節 啓下敎司 啓辭 頃因水原留守徐□□災實狀啓 加講灾五百結許劃乙未停退還餉 限折半收捧之意 覆 啓行會矣

[주관(籌關)[1279]]
상고(相考)할 일로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계사(啓辭)에, '얼마전에 수원유수 서□□의 재실(災實) 장계(狀啓)에 의하여 재결(災結)을 더 청한 500결을 허락하여 획급합니다. 을미년에 미뤄 논 환향(還餉)을 절반을 한정하여 수봉(收捧)할 뜻을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합니다.

1278)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서계(書啓)를 토대로 이조(吏曹)에서 지방관의 처리를 보고한 장계(狀啓)를 복계(覆啓)라고 한다. 또한 이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암행어사의 별단(別單)은 비변사에서 처리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별단을 처리한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한 문서가 '비국복계(備局覆啓)'이다.

1279) 비변사의 관문(關文)

지금에 해당하는 유수(留守)의 장계를 보니 다시 연형(年形)과 민세(民勢)를 진술하고 조세(租稅)의 감면을 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62결 57부 2속을 재결하여 특별히 준수(準數)하여 획급하는 것을 허락하고, 을미년 환향도 전 수량을 허락하여 정퇴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 분부하게 하였습니다.

재획(灾劃)의 관계는 일찍이 재량(裁量)할 수 없거니와 더 청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어찌 배표(排俵)[1280]가 부족하여 오히려 백징(白徵)의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실(寧失)[1281]의 의(義)로써 특별히 200결을 더 획급하고, 을미년의 정퇴(停退)는 백성들의 실정을 낱낱이 거론하여 애씀이 이에 이르니 또한 정퇴(停退)를 허락하여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답하시기를, '옳은 일이라.'고 전교하시므로 전교내의 사의(事意)를 봉심하여 시행할 일이다.

卽見該留守狀 啓 則復陳年形民勢 仍請見減 灾四百六十二結五十七負二束 特許準劃 乙未還餉 亦許全數仍停事 令廟堂稟 旨分付矣 灾劃始沫 嘗無裁量 而加請又如是 豈排俵不足 尙有白徵之慮乎 以寧失之義 特許二百結加劃 乙未停退 枚擧民情 勤渠至此 亦許仍停俾紓民力何如 答曰允事 傳敎敎是置 傳敎內事意 奉審施行向事

초 7일 진강(進講)으로 입시하였다가 곧바로 실록청에 나아갔다.

初 七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11일 진강(進講)으로 입시하였다가 곧바로 실록청에 나아갔다.

十一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13일 인릉(仁陵)의 기신제향(忌辰祭享)[1282]에 문안반(問安班)으로 나아가 참석하였다.

十三日
仁陵忌辰祭享 問 安班進參

14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과천에서 점심을 먹고 신시(申時)에 감영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十四日
自京離發 中火于果川 申刻抵營 封啓

1280) 이리 저리 조리있게 나눠 줌.
1281)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현행 법도를 집행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름.
1282) 돌아가신 날에 드리는 제향.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上京爲白有如可 當日還營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臣)은 의정부에 품의할 사항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당일에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를 급히 알리는 일입니다.

十五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判官中軍進參
同日 華寧殿 冬孟朔大奉審後 封啓

15일
개동(開冬)에 객사(客舍)에 나가서 망궐례를 행하는데 판관(判官)·중군(中軍)이 나아가 참석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 동맹삭(冬孟朔) 대봉심(大奉審)을 마친 뒤에 봉계하였다.

[狀啓]
華寧殿 冬孟朔大奉審 元乭是白在去月十五日 當爲擧行 而臣在京未還 不得擧行是白遣 今月十五日 焚香後 與兼令臣金漢淳 兼衛將臣朴蓍會 眼同奉審是白乎 則殿內諸處 俱爲無頉 是白乎旀 顯隆園令 李民耆牒呈 卽今日 園上 殿內 奉審無頉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화령전 동맹삭(冬孟朔) 대봉심(大奉審)은 원래 지난달 15일에 마땅히 거행해야 하건만 신이 서울에서 돌아오지 못하여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달 15일에 분향을 마치고 겸령(兼令) 김한순과 겸위장(兼衛將) 박시회와 같이 봉심하니 전내 모든 곳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현륭원령 이민기의 첩정을 접하니, 이 날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하니 이상이 없었다고 하므로 이에 그 연유를 치계하는 일입니다.

二十日
華寧殿 日次奉審
同日 冬至 箋文 封進

20일
화령전을 일차(日次)로 봉심하였다. 같은 날 동지전문(冬至箋文)을 봉하여 바쳤다.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임금께서 건원(乾元)[1283]의 덕(德)을 체득하여 교화(敎化)가 대시(對時)[1284]에 천명(闡明)하고, 황종(黃鐘)[1285]이 복형(復亨)[1286]의 날을 맞이하니 칭송이 아세(亞歲)[1287]에 오르네. 해는 남극으로 향해 가고 별들은 북신으로 향해오네. 공경히 생각하니 빛나게 홍도(鴻圖)를 잇고, 크게 준명(駿命)에 응합하였네. 학업은 날로 성취함에 힘써 탕(湯)임금이 소반에 새겨놓듯 공정(工程)에 나아가고, 도광(道光)은 하늘을 범칙하여 순(舜)임금의 공평함으로 정사(政事)를 가지런히 하셨다네.

이에 이장(履長)의 절후를 당하여 더더욱 새해의 아름다움을 맞이하네. 엎드려 생각하노니 신은 정성으로 숭호(嵩呼)[1288]하고 직분은 화봉(華封)에 매였나이다. 가회(葭灰)[1289]는 율력(律曆)과 응합하여 다행하게 첨선(添線)[1290]의 기약에 이르고, 규침(葵忱)[1291]은 태양을 향하여 그나마 보잘것없는 정성을 펴나이다.

-위는 대전(大殿)에 바치는 전문(箋文)

엎드려 생각하니 선위(璇闈)[1292]가 경사를 더하니 순수한 복을 동조(東朝)[1293]에 칭송하고, 옥촛대가 기운을 고르게 하니 맑은 햇살을 남지(南至)에 맞이하네. 달은 자월(子月)[1294]을 세웠나니 하늘이 써 펼치네. 공경히 생각하니 주(周)나라 어머니 태임을 짝하

[箋文]

伏以 紫極 體乾元之德 化闡對時 黃鐘 協復亨之辰 頌騰亞歲 日行南陸 星控北宸 恭惟 光紹鴻圖 丕膺駿命 學懋就日 銘湯盤而晋工 道光則天 在舜衡而齊政 玆當履長之節 益迓泰來之休 伏念臣誠切嵩呼 職縻華封 葭灰應律 幸値添線之期 葵忱頃陽 粗伸獻襪之悃

右 大殿

伏以 璇闈衍慶 頌純禧於東朝 玉燭調元 迓淑景於南至 月維建子 天其用申 恭惟 媲周母任 邁宋女舜 玆天徧覆 陰敎普被於八堨 瑞

1283) 제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84) 임금과 신하가 상대함을 뜻함.
1285) 음력 11월의 이칭(異稱).
1286) 지뢰복(地雷復) 괘(卦)로서 동지절(冬至節)에 형통한다는 뜻
1287) 동지(冬至)의 다른 말. 이장(履長)이라고도 함.
1288) 백성이 임금의 만세를 부름.
1289) 기후(氣候), 시절(時節)
1290)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짐.
1291) 해바라기 꽃이 햇볕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 곧 임금이나 어른의 덕(德)을 우러러 사모함.
1292) 황태후의 궁정. 여기서는 대왕대비의 궁전.
1293) 대비(大妃)가 거처하던 궁궐. 한(漢)나라 때에 황태후(皇太后)가 항상 머물던 장락궁(長樂宮)이 황제의 거처인 미앙궁(未央宮)의 동쪽에 있었던 것에서 유래.
1294) 음력 11월.

暉滋長 遐祝方騰於 萬歲 茲當亞歲 添一線之日 益仰 寶籌 躋五旬之休 伏念臣職 縻分司 誠深慈 闕 際頒曆 之昌會 縱阻鵷班 效獻襪之 微忱 恭進燕賀
右 大王大妃殿

니 송나라 딸이 순(舜)에게 시집갔나이다.

대왕대비께서 두루 덮어주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내조(內助)는 팔도(八道)에 널리 나타나고, 상서로운 빛이 더 자라나니 영원을 축하함이 바야흐로 만세(萬歲)에 오르시네. 이 동지(冬至)를 당하여 한 실마리의 날을 더하고, 더욱 보주(寶籌)[1295]를 우러러 보니 오순(五旬)의 아름다움에 오르셨네.

엎드려 생각하니 신의 직분은 분사(分司)[1296]에 얽매이어 정성이 대비전에 더 깊었나이다. 반력(頒曆)의 좋은 모임에 즈음하여 그래도 원반(鵷班)[1297]을 차지하고 보잘 것 없는 작은 정성으로 공경히 연하(燕賀)[1298]를 마치나이다.

- 위는 대왕대비(大王大妃)에게 바치는 전문.

伏以用敷錫九疇五福 天佑 東方 開次第萬呼千門 日屆 南至 叢霄瑞色 匝域歡聲 恭惟 時敏聖工 天縱大德 積累 洪業 光啓萬億年無疆 對育 神功 爭仰天一運有作 茲當添繡線之日 丕闡調玉 燭之休 伏念臣時際泰回 職 忝華封 望五雲於 丹極 那 禁戀 闕之誠 呼千歲於碧嵩 粗伸祝嵩之悃
右 內閣箋文

엎드려 생각하오니 구주(九疇)[1299]·오복(五福)을 펴어 내리어 하늘이 동방을 도우고, 차례로 만호(萬戶)·천문(千門)을 열어 날이 동지에 이르렀네. 온 하늘엔 상서로운 빛이 나고 지역 곳곳에는 환성(歡聲)이 들리네.

공경히 생각하오니 때론 성공(聖工)께서 영민(英敏)하고 하늘이 대것을 낳으셨네. 홍업(洪業)을 쌓아 영광을 억만년에 끝이 없고, 신공(神功)을 대육(對育)하여 다투어 천일(千一)의 움직임을 우러러 보네. 이에 수선(繡線)[1300]의 날을 더하여 옥촉(玉燭)의 아름다움을 크게 천명하여 순조롭네.

엎드려 생각하오니 신은 새해가 돌아오는데 직분(職分)은 화봉(華封)의 자리를 메웠나이다. 오색구름을 단극(丹極)에서 바라보니 어찌 궁궐을 그리워하는

1295) 임금의 나이를 지칭함.
1296) 중앙에 있는 관아(官衙)의 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하여 다른 곳에 따로 설치한 관아.
1297) 품계에 따라 늘어선 문무백관의 반렬(班列).
1298) 제비가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축하하며 기뻐한다는 뜻으로, 남이 집을 지은 것을 축하하는 말.
1299) 기자(箕子)가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물음에 응답한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가지의 대법(大法).
1300) 주역(周易) 지뢰복(地雷復) 괘의 아래에 한획의 선을 더함. 곧 음력 11월을 뜻함.

정성을 금하겠습니까. 천세(千歲)를 푸른 빛 숭산(崇山)에서 부르고 그나마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정성을 펴나이다.
- 위는 내각에 보내는 전문(箋文)

24일

현륭원 동지제향에 헌관(獻官)으로 향축(香祝)을 모시고 원소(園所)에 나아갔다.

二十四日
以 顯隆園冬至 祭享獻官陪 香祝 詣 園所

25일

제향(祭享)을 설행한 뒤에 봉계(封啓)하고 곧바로 감영에 돌아와서 망하례(望賀禮)[1301]를 행하였다.

二十五日
祭享設行後 封啓 仍還營行望 賀禮

[장계(狀啓)]
삼가제향(祭享)의 일을 장계(狀啓)합니다. 이 달 22일에 현륭원(顯隆園) 동지제향을 행하는데 신(臣)이 헌관(獻官)으로 진참하여 설행한 뒤에 원상(園上)을 봉심(奉審)하니 잡초·잡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산(山) 안에도 나무를 무단히 벌목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관직(祭官職)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여 치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날 화령전 일차(日次)로 봉심하였다.

[狀啓]
謹啓爲 祭享事 今月二十五日 行 顯隆園冬至 祭享 臣以獻官 進參設行後 園上奉審 雜草雜木 無乎是白遣四山之內 亦無樹木犯斫之弊 是白乎旀 祭官職姓名開錄于後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同日 華寧殿 日次奉審

26일

감영에서 출발하여 과천에서 점심을 먹고 신시(申時)에 필곡에 도착하여 봉계(封啓)하였다.

二十六日
自營離發 中火于果川 申刻抵筆谷 封啓

1301) 경절(慶節)에 고을 원이 전패(殿牌)에 절하던 의식.

[狀啓]
臣有廟堂稟議事　當日發行
上京緣由 馳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신이 의정부에 품의(稟議)할 일이 있어서 당일에 출발하여 상경(上京)한 연유를 치계합니다.

二十八日
進 實錄廳

28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으로 나아갔다.

여 백

정유년(丁酉年 : 1837, 헌종 3년)

12월

여 백

初 二日

進講入 侍 仍進 實錄廳
報瓜已三月矣 是日出代李台紀淵爲之
同日 華寧殿 顯隆園 奉審無頃事 封啓

초 2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고 곧바로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과만(瓜滿)이 3개월이 지났건만 이 날에도 이기연 대감(大監)을 대신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華寧殿), 현륭원(顯隆園)을 봉심하여 이상 없는 일로 봉계하였다.

[狀啓]
卽接 華寧殿 兼令金漢淳牒呈 卽今月一日 焚 香後 仍爲奉審 則殿內諸處 無頃是如爲白乎旀 同時到付 顯隆園參奉 李克聲牒呈內 今月初一日 園上 殿內 奉審無頃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 啓爲白臥乎事

[장계(狀啓)]

지금에 화령전(華寧殿) 겸령(兼令) 김한순의 첩정을 접하니, 이 달 초하루에 분향(焚香)한 뒤에 곧바로 봉심(奉審)하니 전내(殿內)에 모든 곳이 이상이 없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부(到付)한 현륭원 참봉 이극성의 첩정(牒呈)내용에 이 달 초하룻날 원상(園上)·전내(殿內)를 봉심(奉審)하여 이상 없다고 하므로 이에 그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

初 三日

進 實錄廳 以知經筵首擬蒙點

초 3일

실록청(實錄廳)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수의(首擬)[1302]로 몽점(蒙點)[1303]받았다.

初 五日

進講入 侍

초 5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

初 六日

王大妃殿 誕辰 問 安班進參
同日 華寧殿 兼守門將 差下事封啓

초 6일

왕대비전 탄신(誕辰)에 문안반(問安班)으로 나아가 참석하였다. 같은 날 화령전 겸수문장 차하(差下)[1304]하는 일로 봉계하였다.

1302) 의망(擬望)의 삼망(三望)중 첫 망에 쓴 것을 말함.
1303) 임금이 벼슬자리에 추천된 후보자들중에서 낙점(落點)을 직접 하는 것.
1304) 벼슬을 임명함.

[장계(狀啓)]

화령전 겸수문장 김원호의 과체(瓜遞)[1305]로 신의 감영 초관(哨官) 손치영으로 대신 차하(差下)하니 해당 관서(官署)로 하여금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단부(單付)[1306] 계하토록 합니다.

[狀啓]

華寧殿 兼守門將 金遠浩瓜遞 代以臣營哨官孫致榮 差下爲白去乎 令該曹依定式單付啓下之地 爲白只爲

초 7일 선원전(璿源殿)에서 구본(舊本)의 영정을 모셔올 때에 동문(東門)에 나가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初 七日

璿源殿 舊本 影幀 奉來時出東門祗迎

초 9일 본부 영화역(迎華驛)에 살고있는 김순강이 담배 값을 주지 않은 일로 남문 밖 가게 주인 안덕신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 뒤에 김계득이 때려서 죽었다고 함. 초검관(初檢官)은 용인현령 이종윤이고 복검관(覆檢官)은 진위현령 박장암이다.

初 九日

題檢狀

本府迎華驛居 金順江 以烟價不給事 見迫於南門外店主安德信 進後竟被金癸得陽打致死初檢官 龍仁縣令李鍾允 覆檢官 振威縣令朴長馣

[검제(檢題)]

시장(屍帳)[1307]을 받들어 올렸거니와 처음에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안덕신이며 끝내 고발을 당한 사람도 안덕신이다. 그런데 행검(行檢)한 뒤에 김계득의 이름이 처음 나와서 범론(泛論)[1308]하니 옥체(獄體)가 어긋남을 까달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대체적으로 검험(檢驗)한 것이다.

비록 여러 사람이 모여 싸우고 상처가 한곳이 아니더라도 실지로 정한 법을 따르면 반드시 요해(要

[檢題]

屍帳捧上是在果 始初起鬧者 安德信也 終被發告者安德信也 及夫行檢之後 金癸得之名 始出泛論 獄體殊覺牴牾 是乃大凡檢驗之法 雖其群毆衆鬪 傷處非一是良置 實因執之 必在要害部位 此卽不易之大經也 安

1305) 벼슬의 임기가 차서 갈림.
1306)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1307) 시체를 조사하여 여러 상황을 적어 놓은 장부.
1308) 요령을 알 수 없는 이야기.

德信之首先犯手　不過打頰牽裾而止　則未可謂致命之根因是遣　金癸得　雖云追入助勢　而脇脅背　是何等緊要之剖位　一踢猶或致命　矧又再爲强壯　亦難支吾　況彼病殘

害)한 부위가 있으니 이것이 곧 변경할 수 없는 큰 법이다. 안덕신이 먼저 손을 범하였다고 하지만 뺨을 치고 옷깃을 끌어당긴 것에 불과하다면 치명적(致命的)인 근본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김계득이 비록 따라 들어가서 무리를 도왔다고 하지만 갈비뼈와 등마루는 중요한 부위로서 한 번 치면 혹시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하물며 건장한 사람도 버티기가 어렵건만 병약(病弱)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겠는가.

宿昔無睚眦之怨　當場無唇舌之爭　而逞憤於不干之地　施毒於疲癃之貧　使箇鴛鴦之脚　踢倒支離之疏　原其情則究說不得　執其跡則狂藥所使　雖不可謂以殺心　行殺事　而以證招則毆踢交加　以檢帳則初覆沕合　此獄正犯非渠而誰　同金癸得身乙　爲先箇箇考察嚴刑　一次取招牒報爲旀　安德信段　噂爾之與　尙云薄俗批牽之逐　無乃已甚　始因三文錢討債　遂致七尺軀殞命　禍之首而厲之階也

옛부터 애자지원(睚眦之怨)[1309]이 없고, 당장에 말다툼도 없었건만 간여하지 아니할 처지에 분노하여 피륭(疲癃)한 걸인에게 독하게 하였다. 저 원앙(鴛鴦)의 발로 지리소(支離疏)[1310]를 차 죽인 격으로 그 사정을 따지면 말이 되지 않고, 그 자취를 살펴보면 광약(狂藥)[1311]이 시킨 것이다.

비록 죽이려는 마음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증초(證招)에는 치고 찼다고 하고, 검장(檢狀)에는 초검(初檢)·복검(覆檢)이 물합(沕合)하다고 하였다. 이 옥사(獄事)에 진범(眞犯)은 그가 아니고 뉘 이겠는가. 김계득을 먼저 낱낱이 고찰하여 엄형(嚴刑)으로 한차례 취초(取招)하여 첩보할 것이다.

一獄無兩犯　雖不得歸之　元犯　而不可以尋常干犯論　一體嚴刑　取招爲乎矣　兩因依近例　移因龍仁獄　果川縣監

그리고 안덕신은 "옛다."하고 던져주어도 오히려 야박한 세상에 끌어내어 쫓은 것이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작이 3문(文)의 돈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쳐서 7척(尺)의 몸을 죽게 하니 재앙의 그 첫째이며 사나움의 단계이다.

한 옥사(獄事)에 두 범인이 없으니 비록 원범(元犯)을 귀정(歸正)하지 못하더라도 예사스럽게 간범(干犯)으로 논하지 못하니 일체 엄형(嚴刑)으로 취초(取招)할 것이다. 두 죄수는 근례(近例)에 의하여 용인관

1309) 남에게 눈흘김을 받을 정도의 조그마한 원한.
1310) 중국 고대(古代)에 늙고 병든 걸인(乞人).
1311) 술의 별명.

아의 옥(獄)으로 옮겨 수감하고 과천현감은 동추관(同推官)[1312]을 차정(差定)할지어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회추(會推)를 거행할 것이며, 시체는 곧바로 내어주어 묻게 할 것이다. 수감되어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지금에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으므로 아울러 내보낼 뜻을 지방관(地方官)과 초검관(初檢官)에게 낱낱이 이문(移文)하여 실행할 일이다.

差定同推官爲去乎 約日會推擧行爲旀 屍體卽爲出給埋瘞 在囚諸人 今無更問之端 竝只放送之意 地方官及初檢官良中 枚移施行向事

초 10일 진강(進講)으로 입시(入侍)하였다.

初 十日
進講入 侍

11일 전생(典牲) 제조(提調)를 수의(首擬)로 몽점(蒙點) 받았다.

十一日
典牲提調 以首擬蒙點

12일 남문밖에 나가서 새로운 유수(留守)와 더불어 교귀(交龜)[1313]하고 곧바로 대궐에 가서 지경연(知經筵)에 병부(兵符)를 환납하고 은혜에 사례하였다.

十二日
出往南門外 與新留守 交龜仍詣 闕納符知經筵 謝恩

1312) 합동으로 죄인을 추문하는 관리.
1313) 감사(監司)·병마절도사·수군통제사 등이 바뀔 때, 거북 모양의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서로 넘겨 주고 받던 일

부 록

(1. 11. 111)

여 백

朝鮮王朝實錄 徐有榘 記事 拔萃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8월 27일(을해)]
문관과 무관에게 강받기와 글짓기를 실시하고 일차유생(日次儒生)들에게 전강(殿講)을 실시하였다. 문과 초시에서 여러 문체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보았다. 유생 전강에서 순통(純通)을 한 유학(幼學) 서유구(徐有榘)를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였다.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9월 30일(정미)]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과 대교(待敎)의 선출을 위한 권점(圈點)을 시행하였는데, 직각으로서 5점을 맞은 사람은 서영보(徐榮輔)·이면응(李冕膺)·정동관(鄭東觀)이고 대교로서 5점을 맞은 사람은 심상규(沈象奎)와 서유구(徐有榘)였다.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 9월 30일(정미)]
의정부에서 강경과 제술에 참가한 문신 조득영(趙得永)·윤지눌(尹持訥)·김경(金憬)·최벽(崔璧)·신성모(申星模)·송지렴(宋知濂)·이희갑(李羲甲)·정노영(鄭魯榮)·김이재(金履載)·이명연(李明淵)·서유구(徐有榘)·박종순(朴鍾淳)·한용탁(韓用鐸)·엄기(嚴耆)·정약전(丁若銓)·김달순(金達淳)·홍수만(洪秀晩)·윤행직(尹行直)·박종경(朴宗京)을 뽑아 보고하였다.

[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2월 11일(경술)]
서유구(徐有榘)를 규장각 대교(待敎)로 삼았다.

[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3월 21일(경인)]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는데, 【봉교 이중련(李重蓮)·홍낙유(洪樂游), 대교 서유문(徐有聞).】 3점을 맞은 자는 심능적(沈能迪)·심상규(沈象奎)·김이재(金履載)·서유구(徐有榘)·박종경(朴宗京)·임경진(林景鎭)·채홍원(蔡弘遠)이었다.

[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3월 24일(계사)]
춘당대에 나아가 한림 소시(翰林召試) 【서유구(徐有榘)·임경진(林景鎭) 2명을 뽑았다.】 및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봄 시사(試射)와 성균관 유생들의 응제(應製) 시험을 행하였다.

[정조실록 권34, 정조 16년 3월 24일(계사)]
서유구(徐有榘)를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3월 11일(무술)]
한림(翰林)의 후보자에 대한 권점(圈點)을 도당(都堂)에서 거행하게 하였다. 도당이 시임(時任) 별겸 춘추(別兼春秋) 홍낙유(洪樂游)·서유문(徐有聞)과 일찍이 한림을 역임한 이상황(李相璜)·이중련(李重蓮)·서유구(徐有榘)·임경진(林景鎭)을 관례에 따라 모두 삭직(削職)하기를 계청하니, 전교하기를,
"도당의 회권(會券)에 관한 규정에는 한림과 별겸 춘추가 없고 난 뒤에야 하게 되어 있다. 어제 별겸 춘추 서유문의 말에 따라 승지가 아뢰는 말을 듣고 당상관 중에는 과연 별겸 춘추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도당에게 회권하라는 명을 하였다. 이 초기(草記)를 보니 홍낙유·서유문 외에도 일찍이 한림을 역임한 사람이 숱하게 있으니 이 사람들을 별겸으로 삼을 만하며 또 3명을 채울 수도 있겠다.
당초에 승지가 도당에서 회권하기를 요청한 것은 극히 소홀히 한 행위이다. 당해 승지는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고 잘못 아뢴 별겸 춘추 서유문은 삭직시키며 외임(外任)으로 나간 사람과 지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모두 규정에 따라 삭직시키라. 경들은 물러가서 일찍이 한림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별겸 춘추를 관례를 대조하여 정원을 채운 다음 계하를 받을 것이며 즉시 패초하여 본관에서 회권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4월 2일(임오)]
규장각에서 직각(直閣)에 대한 회권(會圈)을 행하였다. 【제학(提學) 심환지(沈煥之), 검교(檢校) 직각(直閣) 남공철(南公轍), 검교 대교(待敎) 서유구(徐有榘)이다.】 이시원(李始源)이 4점을 얻고, 박종순(朴鍾淳)·김근순(金近淳)이 3점을 얻었다.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12월 7일(무인)]
내각에 명하여 새로 인쇄할 삼경(三經)과 사서(四書)의 구두를 교정하게 하였는데, 이조가 뽑아 아뢴 경에 밝은 문신 1권명과 성균관이 뽑아 아뢴 경에 밝은 유생 1권명이 대조해 가며 검열하고 교정하였다. 대교 서유구(徐有榘)와 초계 문신 김희조(金熙朝)가 이 일을 주관하였는데, 일이 끝나자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6월 2일(신미)]
《향례합편(鄕禮合編)》이 완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을묘년 혜경궁(惠慶宮)의 환갑

경사 때에 윤음을 내려 서울과 지방으로 하여금 향음(鄕飮)하는 예(禮)를 바로 세우게 하고, 또 각신(閣臣)들에게 명하여 역대의 향음하는 의식을 책으로 만들어 장차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려고 하였다. 마침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향약(鄕約)은 한쪽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하자, 상이 향약은 단지 한 고을에 시행할 만한데 만약 조정에서 법을 만들어 반행(頒行)하게 한다면 효과는 없고 폐단만 있다는 이유로 어렵게 여겼다. 시동이 시행하기를 극력 청하자 마침내 각신인 서유구(徐有榘)와 예조 당상 민종현(閔鍾顯) 등에게 편집하도록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향음의주(鄕飮儀注) 및 향약(鄕約)을 신의 부서에서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각각 준행하도록 할 일에 대하여 이미 성명(成命)을 받들었습니다. 신들이 삼가 향음하는 예를 상고하니 《의례(儀禮)》의 경문(經文)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행하면 의식은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의 사지(史志)를 고찰하면 덜고 뺀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진실로 시대에 맞게 변통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재된 의주(儀注)는 고금의 전장(典章)에 비교해 보건대 참으로 잘 다스려진 세대에서 이룩된 법이니, 진실로 별도의 찬정(撰定)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반행하는 책은 이미 역대의 의절(儀節)을 갖추어 기재하였으니, 진실로 학식이 넓고 성품이 우아하며 옛 것을 좋아하는 선비가 있으면 스스로 여기에 나아가 절충하고 변통할 것입니다. 오직 중앙이나 지방의 유사(有司)인 신하가 받들어 시행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향약의 법은 송(宋)나라의 유학자인 여대균(呂大鈞)에서 시작되었는데, 주자(朱子)가 그 글을 가져다 보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만세에 통행하는 훌륭한 법입니다. 여씨의 전문은 오늘날에 전해지지 않지만 주자가 보태거나 줄인 본(本)은 문집 《주자대전》에 실려 있으니, 중묘(中廟) 14년과 선묘(宣廟) 6년에 반행한 향약은 이 본으로 만들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조종조의 고사를 준행하여 주자가 보태거나 줄인 여씨향약을 4도(都)와 8도(道)에 반포하되 그것이 간혹 풍속과 맞지 않아 미루어 시행하는 데 구애됨이 있으면, 단지 향음 행례(鄕飮行禮)하는 날에 삼대(三代)에 독법(讀法)하던 의식을 대략 모방하여 사정(司正)이 치사(致詞)한 뒤에 별도로 문사(文詞)가 있는 사람을 정하여 향약의 내용을 한 번 읽도록 해서 각기 엄숙하게 듣고서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를 들어 두 가지를 얻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 도신(道臣)과 수령으로 하여금 시무(時務)의 적절함을 참작하고 시행해야 할 방법을 강구하여 예(禮)와 교화로 인도하려는 조정의 본의를 저버리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서울에는 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중묘조(中廟朝)의 성훈(聖

訓)이 분명하게 《국조보감(國朝寶鑑)》에 게재되어 있으며,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 또한 서울에서는 향약이라는 제목이 걸맞지 않다는 말을 하였으나, 진실로 진신(搢紳)과 장보(章甫)로 하여금 서로 예로써 돕고 선으로 관찰하게 하여 이에 서민에게 파급시켜 본받게 한다면, 향약이라는 명칭은 없다 하더라도 향약의 실상은 있게 될 것입니다.

관례(冠禮)와 혼례(婚禮) 두 예에 이르러서는 처음을 시작하는 의식으로 성왕(聖王)이 소중하게 여겼던 바인데, 요즈음에 와서는 고을에서 예를 갖추는 자가 드무니, 그것이 비록 속습이 점차로 낮아진 데 연유하기는 하지만 역시 문견(聞見)이 고루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가 상의 재가를 따라 《사마씨서의(司馬氏書儀)》·《주자가례(朱子家禮)》·《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編) 아래에다 덧붙여 실어 먼 고을과 궁벽한 마을에서도 모두 얻어다 강독하여 밝히게 하였으니, 이에 향례(鄕禮)의 규모가 모두 갖추어지고 절문(節文)이 모두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제(孝弟)가 일어나고 예양(禮讓)이 일어나 크게 풍속이 바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니,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즉시 인쇄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6월 12일(경술)]

《육주약선(陸奏約選)》이 완성되었다. 상이 평소 육지(陸贄)의 주의(奏議)가 명백하고 간절하여 정치와 교화에 보탬이 있다고 여겼는데, 즉위한 초기에 교서관에 명하여 전집(全集)을 인행(印行)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직접 그중에서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29편을 뽑아 이황(李滉)의 《주서절요(朱書節要)》의 의례(義例)를 모방해서 자구(字句)를 절산(節刪)해서 송독(誦讀)에 편리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고쳐서 2편(編)으로 만들고 각신 서유구(徐有榘) 등에게 명하여 교정을 거쳐 활자로 인쇄하게 하였다.

[순조실록 권4, 순조 2년 3월 12일(임오)]

내각(內閣) 【제학 이만수(李晩秀)·김조순(金祖淳), 검교 직각(檢校直閣) 이시원(李始源)·김근순(金近淳), 검교 대교(檢校待敎) 서유구(徐有榘)이다.】 에서 회권(會圈)하였다. 직각(直閣) 5점은 박종경(朴宗慶)·김매순(金邁淳)·오연상(吳淵常)·이영로(李永老)이고, 대교(待敎) 5점은 이교신(李敎信)·조석정(曹錫正)이었다.

[순조실록 권4, 순조 2년 12월 13일(경술)]

황승원(黃昇源)을 형조 판서로 윤광보(尹光普)를 한성부 판윤으로, 서유구(徐有榘)를 의주 부윤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1월 21일(정해)]
평안 감사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의주 부윤(義州府尹) 서유구(徐有榘)는 영하(營下)에 이르러 대론(臺論)이 있었음을 말하고 임소(任所)에 나아갈 뜻이 없으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견보(譴補)는 천적(遷謫)과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감히 거듭 '처의(處義)' 두 글자를 등문(登聞)할 수 있겠는가? 이는 초망(草莽)에 목숨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분의(分義)와 기강(紀綱)에 있어 모두 몹시 해연(駭然)하다. 엄중히 신칙하여 발송하게 하되 이틀 길을 하루에 걸어 부임(赴任)하도록 하라."
하였다.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9월 2일(갑오)]
의주 부윤 서유구(徐有榘)가 치계(馳啓)하기를,
"흠차(欽差) 부도통(副都統) 성경 공부 시랑(盛京工部侍郎)의 찰문(札文) 1도(度)를 봉성(鳳城)의 우정청(郵政廳)으로부터 보내 왔는데 이르기를, '고려구(高麗溝) 지방(地方)에 간민(奸民) 유문희(劉文喜)·진사뢰(秦士雷)·포유상(鮑有祥)·장구(張九)·손유교(孫有交)·고학언(顧學彦) 등 6인이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모은 다음 몰래 나무를 베었으므로 본 부도통 등이 명을 받들어 먼저 나와서 조사하자, 해당 간민들이 많은 당류를 거느리고 죄를 두려워하여 도망해서 달아나 해국(該國)의 장자도(獐子島)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해국의 신하는 천조(天朝)를 받들어 이제까지 지극히 공순(恭順)했었으니, 이를 듣고 부근 해구(海口)에서 매우 엄중하게 사찰(査察)한다면, 간민들이 따라서 감히 가볍게 숨어서 범월(犯越)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장자도(獐子島) 일대에 거주하는 해국의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 유문희 등이 긴급히 나포(拿捕)한다는 말을 듣고 시기를 틈타 몰래 바다를 건너서 법망(法網)을 피해 달아나려고 꾀하므로, 본 부도통 등은 일면(一面)에 나누어 명을 내려 군사를 먼저 보내어 체포하게 하였다.
이밖에 해국의 그 땅을 지키는 관리들은 서찰(書札)의 유시(諭示)가 도착하거든 또한 협조하여 체포하되 오직 우두머리가 된 유문희 등 6인을 나포(拿捕)하여 해송(解送)하도록 조처할 것이며, 임의로 자취를 숨기거나 멀리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일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장자도는 곧 용천부(龍川府)의 신도(薪島)입니다. 체포하는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신의 부(府)에서 제멋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이 뜻을 순영(巡營)과 병영(兵營)에 논보

(論報)하고, 한편으로는 해부(該府)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상과 우상을 소견하고 피인(彼人)이 범월한 것에 대해 무엇 때문에 쫓아 보내지 않고 이러한 말썽을 빚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으니, 좌의정 서용보(徐龍輔)가 말하기를,
"신도(薪島)는 본래 방수(防守)가 없었으나, 어채(漁採)의 이로움이 여러 도(道) 가운데 으뜸이므로, 전부터 피인들이 범월의 금법(禁法)을 무릅쓰고 왔었습니다. 전에 이윤빈(李潤彬)이 용천 부사로 있었을 때 신도에 범월한 호인(胡人)이 있었는데, 설치한 장막(帳幕)이 매우 많으므로 이윤빈이 그 장막들을 훼철(毁撤)하고 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후 수년 동안 범월에 대한 근심이 없었는데, 근년 이래로 변금(邊禁)이 조금 해이해지자, 이번의 일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크게 변통을 더한다면, 훗날의 근심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9월 13일(을사)]
의주 부윤(義州府尹) 서유구(徐有榘)가 치계(馳啓)하기를,
"흠차 부도통(欽差副都統)과 공부 시랑(工部侍郎)이 나오는 기일과 머물러 있는 지방에 대해 봉성(鳳城)의 아문에 탐문해 보았더니, 부도통 책파극(策巴克)·공부 시랑 파령아(巴靈阿)는 바야흐로 심양(瀋陽)에서 안사(按查)하고 있으며, 이달 초 3,4일 사이에 심양에서 발행(發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전해 들은 것이고, 애초에 공문(公文)으로 지위(知委)한 것이 없으므로, 언제 봉성에 도착할는지와 봉성에서 다시 어디로 향할는지를 아울러 미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성 대장(代將)에게 행차의 기일과 머물 곳을 탐문하려고 갑군(甲軍)을 보냈으나 아직 정확한 기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도통이 파송(派送)한 군사는 심양 협령(瀋陽協領) 항복(恒福), 수사영 장경(水師營章京) 항경(恒慶)인데, 지난달 21일 이후 해로(海路)를 따라 잇달아 떠났으며, 전후에 붙잡은 적비(賊匪) 1백여 명은 이미 부도통이 있는 곳으로 압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영의 관원과 수암현(岫巖縣)의 관원들은 전후에 떠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9월 17일(기유)]
의주 부윤 서유구(徐有榘)가 치계(馳啓)하기를,
"용천 부사(龍川府使) 최조악(崔朝岳)이 이문(移文)한 가운데, '본월 초하루에 장교와 군사 3백여 명을 거느리고 신도(薪島)에 들어갔더니, 대국(大國)의 배 4척이 먼저 와서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사(小通事)로 하여금 나온 까닭을 물어 보게

하였더니, 「관원 2인과 갑군(甲軍) 2백 명이 흠차 부도통의 지휘로 간민(奸民) 유문희(劉文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 떠나 24일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데, 매일 순행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체포하지 못했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수토(搜討)하겠다는 뜻으로 왕복하여 약속하고 하루 종일 수색하였습니다.
초이틀에 대국의 관원 2인이 또 와서 도착하여 먼저 도착했던 2인과 합하여 4인이 되었습니다. 이날 부근의 여러 섬을 두루 수색하여 적비(賊匪) 유청산(劉靑山)·채법(蔡法)을 붙잡아 모두 대국의 관인(官人)이 있는 곳에 보내었습니다. 초닷새에 관원 4인 가운데 수암성 방어(岫巖城防禦) 2인은 적비 2명을 압령(押領)하여 심양(瀋陽)으로 향하고, 수사영 방어(水師營防禦)와 효기교(驍騎校) 2인은 도로 해도(該島)에 도착하였습니다. 초엿새에 곳곳마다 수토(搜討)하였고, 장교와 소통사 등을 보내어 실정을 탐문해 보게 하였더니, 회고(回告) 가운데, 「피지(彼地)의 서해 1백여 리 바다 가운데에 대고산(大孤山)이 있었는데, 곧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작은 섬입니다.
따라서 적비가 도망하여 그 가운데 접거(接居)할까 염려한 나머지 체포하기 위해 갑군을 나누어 배 2척을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하였습니다. 초이레부터 11일까지 대국의 군사들과 협동하여 수토하였으며 빽빽이 우거진 갈대숲을 죄다 불태우고, 높은 언덕과 깊은 계곡까지 두루 순찰하였으나, 다시는 적비의 형적이 없었습니다. 16일 대국에서 파견한 군사들이 철수하여 돌아갔는데, 곧 수토한 형지(形止)를 가지고 정문(呈文)을 만들어 봉성(鳳城)에 들여보냈으며, 파견한 군사들을 16일에 철수하여 돌아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5, 순조 3년 10월 13일(갑술)]
의주 부윤 서유구(徐有榘)가 치계(馳啓)하기를,
"성경 장군(盛京將軍) 부곤(富坤) 흠차 부도통(欽差副都統) 책파극(策巴克), 성경 공부 시랑(盛京工部侍郎) 파영아(巴靈阿)의 찰문(札文)에 이르기를, '해국(該國) 의주 부윤의 정문(呈文)에 의거하건대, 그 내용에 일컫기를, 「해국에서 파견한 용천 부사(龍川府使) 최조악(崔朝岳) 등이 근역(跟役) 3백 인을 거느리고 바다를 순시하던 관병(官兵)들과 수암(岫巖)에서 회동(會同)하였는데, 장자도(獐子島)에서 남은 범인 유청산(劉靑山)·채법(蔡法) 2명을 수색해 잡아 방어(防禦) 복해(福海)에게 인계(引繼)하여 해송(解送)하여 왔다.」 고 하였으니, 해국의 정사(情辭)는 지극히 공순하였습니다. 이번에 간교한 적비(賊匪)를 체포한 것은 진실로 틀림없는 사실이오며, 보내 온 정문을 받아 보고 이미 본 부도통 등이 사실에 의거해서 주문(奏聞)을 갖추어 올려 대황제(大皇帝)의 깊이 가장(嘉奬)함을 입었습니다. 해국의 변계(邊界)를 조사하여 지난번에 관애(關隘)를 엄중하게 설치하였는데, 장자도는 동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있

어서 인적(人跡)이 닿지 않으므로, 해국뿐만 아니라 본래 거주하는 백성이 없으니, 곧 내지의 상선이나 여객선도 또한 그곳에 왕래하여 정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간교한 무리가 범법(犯法)하고 나포(拿捕)될 것을 두려워하며 비로소 도망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게 되었는데 나무를 몰래 작벌(斫伐)한 유문희(劉文喜) 등 6인의 적비가 그 자취를 숨기고 몰래 도망칠 것이 염려됨으로 해국에 서찰을 보내어 일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소굴을 두루 순찰하였으나 마침내 종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그들의 정형(情形)이 드러날 것이니, 해국에서는 오직 관장하는 해당 관원 등을 신칙하여 앞으로의 만남에서 내지의 백성 가운데 도망해서 장자도 지방에 오는 자들은 자신이 반드시 간교한 짓을 하여 죄과를 범한 무리에 관계되므로, 그 시비(是非)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무를 몰래 작벌한 죄안(罪案)에 해당한 범인들이니, 곧 내지의 관원에게 압송(押送)하여 조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안건(案件)의 수범(首犯)인 6명에 이르러서는 진사뢰(秦士雷)·포유상(鮑有祥) 등은 이미 본 부도통 등이 관원을 파견하여 나획(拿獲)하였고, 장구(張九)·손유교(孫有交) 두 범인도 또한 산동(山東)을 지나다 순무(巡撫)에게 나획되었으나 신문에서 풀려나왔는데, 오직 유문희·고학언(顧學彦)은 아직 체포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문희 한 범인은 이미 포유상의 공술에 의거하여 유정선(劉廷宣)의 친속임이 드러났는데, 이 범인은 고학언과 더불어 그대로 반드시 산동 일대에 숨어 있을 것이므로, 현재 이미 엄밀하게 탐문해서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두 범인은 몰래 해국의 지경으로 도망하였는지 또한 알 수가 없으니, 해국에서는 마땅히 각 관애(關隘)에 신칙해서 정찰에 유의하고 협동하여 체포하게 하되, 3백여 명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여 많은 비용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황제께서 깊이 돌보시는 지극한 뜻에 우러러 부응하도록 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4월 15일(무진)]

실록 교정 당상(實錄校正堂上) 박종경(朴宗慶)·서유구(徐有榘)에게 계속 교수(校讎)하는 직임을 살피라고 명하였다.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5월 27일(경술)]

한용탁(韓用鐸)을 이조 참판으로, 신현(申絢)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서유구(徐有榘)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7, 순조 5년 12월 7일(병술)]

조득영(趙得永)을 이조 참의로, 김사목(金思穆)을 판의금부사로, 서영보(徐榮輔)를 예조 판서로, 서유구(徐有榘)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8, 순조 6년 1월 15일(계해)]
서유구(徐有榘)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8, 순조 6년 1월 18일(병인)]
부제학 서유구(徐有榘)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어제의 상소에서 같은 집안에서 교대로 양록(兩錄)을 주관하는 것은 나아가기 어려운 단서가 된다고 아뢴 데 대해 비지(批旨)에는 힘써 찾아보라는 것으로 책망하시고 이미 전례가 있다고 하유하였습니다. 전해 오는 관규(館規)를 신이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오직 고(故) 중신(重臣) 김종정(金鍾正)은 부제학으로서 본관(本館)의 권점(圈點)을 주관하였고 고 상신(相臣) 김치인(金致仁)은 영상으로서 도당록(都堂錄)의 권점을 주관하였습니다. 고 중신과 고 상신은 비록 동종(同宗)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원족(遠族)이니, 이를 가져다가 신의 한집안의 지친(至親) 사이와 비유한다는 것은 전혀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할 수 있는 전례를 가지고 말하여 보건대, 선조(先朝) 임자년에 내각(內閣)에서 장차 직각(直閣)의 회권(會圈)을 행하려 할 적에 신이 각직(閣職)에 대죄(待罪)하고 있었는데 선신(先臣) 서호수(徐浩修)와 신의 재종 숙부(再從叔父)인 고 판서(判書) 서정수(徐鼎修)가 모두 원임(原任)으로서 검교(檢校)에 차하(差下)되었습니다만, 선신이 한집안에서 세 사람이 권좌(圈坐)에 동참하는 것은 편치 못하다는 것으로 진달하여 결국 두 사람은 검교에 차하하는 명을 정지하였었습니다. 옛날 영묘(英廟) 때 신의 증조부(曾祖父) 문민공(文敏公) 서종옥(徐宗玉)이 동전(東銓)의 장관으로 있을 적에 고 판서(判書) 이주진(李周鎭)이 병조 판서에 제배되었는데, 신의 증조부는 처남과 매부가 나란히 문무의 양선(兩選)을 주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오랫 동안 버티다가 견삭(譴削)을 당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신이 비록 불초(不肖)하지만 어떻게 감히 가훈(家訓)을 변모(弁髦)처럼 여겨 조정의 체통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전삭(鐫削)을 허락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이미 이와 같으니, 특별히 체직을 허락한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28, 순조 26년 8월 14일(계해)]
숭릉(崇陵)의 수개(修改)하는 역사(役事)를 마치고 당상관과 낭관 이하에게 시상(施賞)하고, 보토 당상(補土堂上)인 양주(楊州) 목사(牧使) 서유구(徐有榘)에게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였다."

[순조실록 권28, 순조 27년 3월 1일(병자)]
서유구(徐有榘)를 강화부(江華府) 유수(留守)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0, 순조 28년 8월 20일(정해)]
봉심 대신(奉審大臣)을 불러 보았으니, 혜릉(惠陵)과 원릉(元陵)의 사초(莎草)와 허물어진 곳을 수축한 뒤에 돌아 왔기 때문이었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사행(使行)을 사은(辭恩)으로 칭호한다면, 부사(副使)는 마땅히 종2품(品)으로, 서장관(書狀官)은 승품인(陞品人)으로 차출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사 유정양(柳鼎養)은 가선(嘉善)을 가자하고, 서장관 박종길(朴宗吉)은 승품(陞品)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조(先朝) 때 각신(閣臣)으로서 허구한 날 침체되어 있는 강화 유수(江華留守) 서유구(徐有榘)를 바라건대 정경(正卿)으로 승탁(陞擢)시키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

[순조실록 권30, 순조 28년 8월 29일(병신)]
대점하여 서유구(徐有榘)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는데, 첨서 낙점한 것이었다. 신위(申緯)를 강화부 유수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0, 순조 28년 9월 20일(정사)]
대점하여 서유구(徐有榘)를 공조 판서(工曺判書)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0, 순조 28년 11월 24일(경신)]
하령하기를,
"호판(戶判) 김노(金鏴), 예판(禮判) 서준보(徐俊輔), 병판(兵判) 박종훈(朴宗薰), 공판(工判) 서유구(徐有榘)·지신(知申) 서희순(徐憙淳)을 진찬 당상(進饌堂上)으로 차하(差下)토록 하라."

하였다.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5월 15일(무신)]
서유구(徐有榘)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완식(李完植)을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로, 이형권(李亨權)을 전라좌도(全羅左道)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삼았는데, 이완식과 이형권을 곧바로 교체하고, 김수기(金守基)와 심능준(沈能俊)으로 대신하였다.

[순조실록 권30, 순조 29년 8월 25일(병술)]
서유구(徐有榘)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가 곧바로 체개하고, 송면재(宋冕載)로 대신하였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1년 12월 25일(계묘)]
도정(都政)을 행하여 【이조 판서 심능악(沈能岳)·참판 권돈인(權敦仁)·병조 판서 김유근(金根)이다.】 박주수(朴周壽)를 한성부 판윤으로, 서유구(徐有榘)를 형조 판서로, 김선(金)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언순(李彦淳)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서능보(徐能輔)를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홍석주(洪奭周)를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2월 10일(정해)]
평안 감사 김학순(金學淳)과 호군(護軍) 조인영(趙寅永)·서경보(徐耕輔)와 강화 유수 홍명주(洪命周)를 정경(正卿)에, 부호군 이인태(李寅泰)·박제문(朴齊聞)·이언순(李彦淳)과 영흥 부사 이기재(李基栽)를 아경(亞卿)에 발탁하고, 홍희준(洪羲俊)·심능악(沈能岳)·서유구(徐有榘)·김기은(金箕殷)·이익회(李翊會)를 비변사 제조에 임명하였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2월 26일(계묘)]
문형 회권(文衡會圈)을 행하였다. 【우의정 전 대제학 김이교(金履喬)·이조 판서 심능악(沈能岳)·호조 판서 조만영(趙萬永)·예조 판서 이지연(李止淵)·판윤 박주수(朴周壽)이다.】 5점(點)에는 홍석주(洪奭周)·서유구(徐有榘)이고, 4점에는 김조순(金祖淳)·박종훈(朴宗薰)·신재식(申在植)이었는데, 김조순을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2월 28일(을사)]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외람되게 이 직임(職任)을 맡은 지 지금 31년이 되었습니다. 앞뒤 누차의 제

수(除授)에서 반드시 사양하여 해면(解免)하고서야 그쳤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앎이 진실하였고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 감히 이 사람으로서 이 직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전에 잠시 제배되었음은 진실로 전연(傳硯)의 일이 급하고 미룰 곳이 없어 우선 염치없이 무릅쓰고 대신할 사람을 천거하여 영원히 면직되기를 바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미 청연(淸燕)의 자리에서 모실 때 다 털어놓았으니, 또한 거의 천총(天聰)에 통철(通徹)되어 반드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권점(圈點)을 받은 수는 신과 아울러 신구(新舊)를 합하여 모두 다섯 사람인데, 신은 신과 네 사람의 실정을 일일이 진달하겠으니, 시험삼아 조감(照鑑)을 내리소서. 신의 미천하고 분열된 점과 쇠모하고 그릇됨은 아직 그냥 두고 논할 것 없이, 박종훈(朴宗薰)의 시문(詩文)을 깊이 연구하여 습득한 영화(英華)로 법도를 잃지 않는 데에는 신이 미치지 못하고, 홍석주(洪奭周)의 널리 배우고 잘 기억하여 응용(應用)함에 끝이 없는 데에는 신이 미치지 못하며, 서유구(徐有榘)의 힘써 옛사람의 가르친 일을 따라 늙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데에는 신이 미치지 못하고, 신재식(申在植)의 경전(經傳)을 주체로 하고 사서(史書)를 보조로 하여 거기에 따라 하는 데에는 신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훌륭한 재목인데,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고서 신과 같은 최하의 인물로서 가리워져 그냥 지나가게 하였으니,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태평 세대의 문치(文治)가 어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겠으며 사방의 문풍(文風)이 어디로 말미암아 떨쳐지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반치의 은전을 내리시고, 이어서 다시 권점을 행하시어 네 사람 중에서 간택하여 직임을 맡긴다면, 돌아보건대, 한번의 일을 하여 세 가지의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청한 바를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였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2월 29일(병오)]

하교하기를,

"전임 대제학을 명초(命招)하여 문형 회권(文衡會圈)을 행하라."

하였는데, 【우의정 김이교(金履喬)·전 대제학 김조순(金祖淳)·호조 판서 조만영(趙萬永)·예조 판서 이지연(李止淵)·형조 판서 서경보(徐耕輔)이다.】 3점(點)을 받은 자에 박종훈(朴宗薰)·홍석주(洪奭周)·서유구(徐有榘)·신재식(申在植)·김조순(金祖淳)이 첨입(添入)되자, 홍석주를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으로 삼고 서유구를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7월 28일(임신)]
서유구(徐有榘)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엄도(嚴燾)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8월 27일(신축)]
서유구(徐有榘)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9월 15일(무오)]
이희갑(李羲甲)을 좌빈객(左賓客)으로 서유구(徐有榘)를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9월 24일(정묘)]
호조 판서 조만영(趙萬永)이 상소에서 병의 실상을 말하고 체직을 바라니, 허락하고 서유구(徐有榘)로 대신하였다. 송면재(宋冕載)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9월 5일(무인)]
이광문(李光文)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서유구(徐有榘)를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10월 10일(임자)]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관서(關西)의 도신(道臣)이 올린 영변(寧邊)의 죄인 신사화(申士化) 등의 사안(査案)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먼 시골 인심이 요망스럽고 흉측하며 사람을 미혹(迷惑)한 데 대하여 놀랍고 통분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즉시 포착하여 더는 만연(蔓延)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 중에서 신사화·이이덕(李以德)·이두천(李斗千) 등 세 놈은 거짓말을 지어내어 임심을 선동하였으니, 진인(眞人)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요망스런 참서(讖書)에 끌어다가 붙인 것이고 성을 공격한다는 말은 지적이 확실한 공초(供招)가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관장(官長)을 끌어내고 군기(軍器)와 양초(粮草)를 빼앗는다는 계획과 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대장이 되고 원수(元帥)가 된다는 말 등등 적정(賊情)이 이미 드러나 형률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이는 항심(恒心)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무리들이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騙取)하려던 계책에 불과하였는데, 차차로 번져 난언(亂言)과 부도(不道)에 이르러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과에 빠지게 된 것이니, 왕부(王府)로 끌어올려 형을 집행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위의 세 죄수는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결안(結案)을 받은 후에, 백성을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민중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윤문(金允文)은 말과 행동이 비밀스럽고 허황하였는데, 다

른 나라의 표착선(漂着船)과 말을 주고 받은 일과 갑오년(甲午年)에 부귀(富貴)하게 된다고 협박 공갈한 점 등은 본인도 조사를 받는 마당에서 자복하였으며, 서성모(徐成模)·이정현(李正賢)·박율(朴律) 등은 더러는 허황한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더러는 흉패한 음모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니, '지정률(知情律)'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그 실정을 살펴보면, 모두가 못나고 무지한 무리로서 흉도의 꾀임에 빠져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니, 특별히 관전(寬典)을 써서, 김윤문에게는 다시 엄형을 가한 뒤에 감사(減死)하여 원악도(遠惡島)로 보내어 노복(奴僕)으로 삼게 하고, 서성모 등 세 놈은 모두 엄형 원배(遠配)하여 한편으로는 징려(懲勵)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진복(鎭服)시키는 것이 두 마음 품는 자들을 안정시키는 도리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죄인을 지금 조사해 내어 형을 집행하게 되었으니, 당초에 발고한 지제목(池濟穆) 강병규(康炳奎) 등에게는 논상하는 거조가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그들 소원에 따라 장문(狀聞)하고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은(銀)의 산출(算出)이 매우 적으나 공사(公私)의 비축이 바닥이 드러나기는 오늘날과 같은 때가 없었으니, 만일 한번 변통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지탱하여 조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은 값을 넉넉하게 정하여 매년의 사신 행차 때에 서로 교환하여 사 오면 연경(燕京)의 은자(銀子)가 틀림없이 많이 흘러나올 것인데, 얼른 보아서는 이익이 없는 듯이 보일지라도 오래 지속한 뒤에는 은자를 거두기를 기필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모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논의는 전부터 있었으나 논자들이 폐단을 말한 조건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인심은 거짓됨이 많아 조정 명령이 아래에까지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어떤 법이고를 막론하고 오래 행하지 않은 나머지에 행해보려 하면 의례히 여러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므로 지장이 되는 사단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나, 요는 참작해서 행함에 있어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유사(有司)가 있으므로 신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 실속 없는 논의에 동요되어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무릇 법이 편리하면 행해지고 불편하면 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마는, 이 일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작하였다가 바로 파해버리고 잠깐 시험하였다가 바로 철폐하여, 확신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공사(公私)의 저축이 앞으로 썩은 재물이 되어 낭패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신은 오래 전부터 이 일로서 아뢰고 싶었으나 신중을 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득불 변통을 하여야 하겠는데, 오직 결단만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비국(備局) 당상(堂上)에게 물어 각자 소견을

말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비국 당상들의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지중추부사 조만영(趙萬永)은 말하기를,
"은자(銀子)와 동전(銅錢)을 섞어서 쓰는 이해와 편부(便否)를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잘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병조 판서 박주수(朴周壽)는 말하기를,
"아까 빈청(賓廳)에서 그 대강을 듣기는 하였으나,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하여 잘라 대답해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며,
이조 판서 이지연(李止淵)은 말하기를,
"은화와 동전을 섞어서 쓰는 것은 변통에 속한 일이니, 졸지에 상세히 대답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 근래에 전폐(錢幣)를 전용하였기 때문에 통용할 기회가 없었지만, 만일 완급(緩急)이 있다면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원대한 계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화를 쓰지 않은 까닭으로 본국의 소산(所産)이 외국의 소용이 되고 그 때문에 중외의 저축이 고갈이 되었으니, 어찌 몹시 아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매년 연경(燕京)의 장사꾼이 몇 만냥의 은화를 가지고 가서 허다한 잡품(雜品)을 사 왔으나, 전연 실용됨은 없고 한갓 사치의 풍조만 조장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통용한다면 쓸모없는 물건은 자연히 감소될 것이고 쓸모 있는 은화는 따라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백성이고 국가고 간에 목전의 이해로만 따질게 아니라 국중에 재화(財貨)가 넉넉해지면 공사간에 힘이 됨이 필시 많을 것이니, 신은 행용(行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형조 판서 이면승(李勉昇)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도 은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세속에서 상용(常用)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치 못한 소산으로 쓸모없는 물건과 바꾸어 자연히 고갈되어 버리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가석한 일입니다. 지금 만일 항구적인 식례(式例)로 만들어 동전과 함께 통용하게 한다면 외국의 재화를 빌어서 쓸 수가 있고, 공사간에 저축이 생기면 자연히 해결하는 방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과 편리하고 편리치 않은 것은 오로지 책정한 값의 높고 헐함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헐하면 저절로 흘러 들어올 이치가 없고 너무 높으면 장래의 폐단이 있는 것이므로 높고 헐한 중간에서 절충하여 값을 작정한 뒤에 행하는 것이 유익할 듯합니다." 하였으며,
지돈녕부사 서능보(徐能輔)는 말하기를,
"은화를 행용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이해에 대해서는 신은 상세히 모르오나, 다만

은화는 본국에서 많이 나는데 쓰기는 연경에 가서 쓰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은화와 동전을 통용한다면 역시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하였고,

호조 판서 서유구(徐有榘)는 말하기를,

"은화와 동전을 통용하는 것은 고금 천하에서 통털어 행해온 준례인데, 우리 나라에서 동전 한 가지만 쓰고 있는 것은 경중(輕重)의 형평(衡平)을 꾀하는 도리에 자못 결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은 은화를 통용하는 것이 유익하고 폐단도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며, 우참찬 조인영(趙寅永)은 말하기를,

"대신이 이미 발의하여 아뢰기까지 하였는데, 신과 같은 천견(淺見)이 어찌 가부를 말하겠습니까마는, 하찮은 소견이 있으니 감히 대답치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법례(法例)의 변통은 비록 국가에는 불편하더라도 백성에게는 반드시 유리해야만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그렇지 못하고 다만 은화의 값만 높일 따름이며, 애당초 백성과 나라에서 재화(財貨)를 불리는 길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화라는 것은 본래 저들이나 우리가 통용하는 것인데, 지금 만일 저들에게 있어서는 낮은 값으로 사 올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높은 값으로 책정하여 행용한다면, 그것이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것은 동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만일 피아(彼我)간에 시가(時價)를 절정(折定)한다면 또 사 올 길이 없게 됩니다. 허다한 협잡과 장래의 이해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예조 판서 송면재(宋冕載), 지훈련(知訓鍊) 유상량(柳相亮), 좌윤(左尹) 이유수(李惟秀), 형조 참판 신경(申絅)은 모두 그 편부(便否)에 대해 감히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남공철이 말하기를,

"의견은 거의 같았으나 여러 당상 중에는 혹 상세히 알지 못하여 한가지도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한 이도 있고, 혹 그 일이 유해 무익할까 염려하여 불편을 말한 이도 있었는데, 구차하게 동조하지 않은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화의 통용은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의 사세는 더욱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어코 한번 실행해 보고자 하는 바이니, 사신 행차의 배표(拜表)가 있기 전에 여러 유사(有司)와 호조 및 선혜청의 당상이 본사(本司)에 제회(齊會)하여 다시 검토하고 강구한 뒤에 제반 조건과 영구히 준행(遵行)할 수 있는 도리를 절목(節目)으로 강정(講定)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그 후에 여러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 일은 마침내 중단되었다.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3월 10일(신사)]

서유구(徐有榘)를 전라도 관찰사로, 홍석주(洪奭周)를 호조 판서로 삼았다.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 12월 16일(임자)]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유구(徐有榘)가 소(疏)를 올려 산골 고을의 대동 면포(大同綿布)를 순전히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을 내려 시행하도록 윤허하고, 이윽고 하교하기를,
"완백(完伯)의 소청을 이제 특별히 시행하라고 하였다. 호서와 영남에 면화가 흉년을 당한 것은 호남보다 덜하지 않은데, 단지 우심한 고을에만 대신 돈으로 바치게 한다면 반드시 낙망(落望)하는 탄식이 있을 것이다. 두 도의 대동목(大同木)도 3등읍(三等邑)을 논하지 말고 모두 순전히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할 것을 허락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성화(星火)같이 빨리 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헌종실록 권2, 헌종 1년 3월 30일(기축)]
이익회(李翊會)를 공조 판서로, 서유구(徐有榘)를 의정부 좌참찬으로, 이기연(李紀淵)을 우참찬으로 삼았다.

[헌종실록 권2, 헌종 1년 5월 21일(기묘)]
대제학의 회권(會圈)을 행하였다. 김유근(金逌根)·조인영(趙寅永)·서유구(徐有榘)·정원용(鄭元容)·신재식(申在植)이 6점(點)이었다.

[헌종실록 권2, 헌종 1년 5월 21일(기묘)]
김도희(金道喜)를 경기 관찰사로, 조인영(趙寅永)·서유구(徐有榘)를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박영원(朴永元)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삼았다.

[헌종실록 권2, 헌종 1년 6월 11일(기사)]
서유구(徐有榘)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헌종실록 권2, 헌종 1년 6월 19일(정축)]
이조 판서 서유구(徐有榘)가 세 번 상소하여 사직하니 허락하고, 김학순(金學淳)으로 대신하였다.

[헌종실록 권2, 헌종 1년 9월 14일(경자)]

서유구(徐有榘)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헌종실록 권2, 헌종 1년 10월 9일(갑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는데, 《소학(小學)》을 강(講)하였다.
각신(閣臣) 서유구(徐有榘)가 말하기를,
"이 문단(文段)에서 논한 바는 척불(斥佛)의 말입니다. 불도(佛道)는 본래 서이(西夷)에서 나온 것인데,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에 처음으로 중국(中國)에 들어왔고, 훨씬 내려와 육조(六朝)에 이르러서는 점점 더욱 치성(熾盛)해져 깊이 파고 들었고, 당송(唐宋)에 즈음하여서는 총명하고 준수한 인재들이 그에 유인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아뢰기를 채 마치지 않아 임금이 말하기를,
"불도에 어떤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기에 이와 같이 깊이 빠져든 것인가?"
하니, 서유구가 말하기를,
"거기에 이른바 신묘(神妙)함을 극도로 연구하여 변화(變化)의 도(道)를 두루 안다는 것인데, 이는 모두가 그 총명하고 준수한 인재들이 즐겨 듣는 바이나, 실제로는 그것이 마침내는 허무하고 적멸(寂滅)하여 이륜(彝倫)을 훼절(毁絶)하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程朱)가 불도를 배척한 공이 하우(夏禹)가 홍수(洪水)를 막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조(我朝)에 들어온 이후로 치교(治敎)가 크게 밝아져 이단(異端)의 설(說)이 횃불이 꺼지는 것과 같았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도(正道)와 이단의 분변은 반드시 사물(事物)의 이치를 궁구한 연후에야 비로소 마음과 눈이 환히 밝아지는 것인데, 깊이 연구하여 안다는 것도 또 한갓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공부란 모름지기 독서(讀書)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독서의 요체는 오직 의심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캐묻고 밝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조목에 성의(聖意)를 두소서."
하였다.

[헌종실록 권3, 2년 1월 26일(경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서유구(徐有榘)를 소견하였는데,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헌종실록 권3, 헌종 2년 5월 19일(신축)]
규장각(奎章閣)에서 아뢰기를,
"순종 대왕(純宗大王)의 어제(御製) 정서본(正書本) 1권책 3건(件), 익종 대왕(翼宗大

王) 어제 정서본 6책 5건, 순종 대왕·익종 대왕 어제를 합부(合附)한 열성 어제본(列聖御製本) 12책 7권이건 및 별인(別印)한 순종 어제 8책의 내하지(內下紙) 8건, 당지(唐紙) 9건, 익종 어제 5책의 내하지 5건, 당지 6건을 인쇄하여 들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종 대왕 어제, 익종 대왕 어제, 열성 어제 합부본을 봉모당(奉謨堂) 문헌각(文獻閣)과 다섯 곳의 사고(史庫) 이외에 규장각(奎章閣)의 내각(內閣), 옥당(玉堂)의 장서각(藏書閣) 서고(西庫)에도 각 1건씩 받들어 소장하고, 감인(監印)한 각신(閣臣)들에게 각 1건씩 반사(頒賜)하도록 할 것이며, 선사(繕寫), 교준(校準) 및 교정(校正), 감인한 각신 제학 조인영(趙寅永), 원임 제학(原任提學) 정원용(鄭元容), 제학 서유구(徐有榘), 검교 직제학(檢校直提學) 서희순(徐憙淳), 직제학 박영원(朴永元), 원임 직각(原任直閣) 서준보(徐俊輔)·이광문(李光文)·이가우(李嘉愚)·이경재(李景在), 직각 이공익(李公翼), 원임 대교(原任待敎) 이헌위(李憲瑋)·김정희(金正喜), 검교 대교(檢校待敎) 조두순(趙斗淳)을 모두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종실록 권3, 헌종 2년 5월 25일(정미)]
문형 회권(文衡會圈)을 행하였다. 3점(點)을 받은 자는 김유근(金逌根)·조인영(趙寅永)·서유구(徐有榘)·정원용(鄭元容)·신재식(申在植)이었는데, 조인영을 대제학으로 삼았다.

[헌종실록 권5, 헌종 4년 5월 25일(을축)]
김정집(金鼎集)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서유구(徐有榘)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한진(林翰鎭)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헌종실록 권5, 헌종 4년 6월 10일(기묘)]
대사헌(大司憲) 서유구(徐有榘)가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올해 기호(畿湖)의 가뭄은 실로 처음 있는 재해(災害)인데, 일전에 내린 비는 높고 낮은 지역에 두루 흡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복(中伏)이 이미 임박하고 가을 절기가 멀지 않았는데, 지금 비록 갈아서 뒤집어 엎고 이종(移種)한다 하더라도 사실 자라서 영글 여가가 없을 듯합니다. 일전에 다른 것으로 대신 파종(播種)하라는 명령은 저곳에서 잃은 것을 이곳에서 얻어서 전부 황폐해지지 않게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건양(愆陽) 끝에 반드시 복음(伏陰)이 있고, 항양(恒陽) 뒤에는 반드시 항우(恒雨)가 있는 법이니, 그 이치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옛날 정조실록(正祖) 무오년에 볏모

를 심는 시기가 지나자, 조정에서 대신 메밀을 심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그 당시 순창 군수(淳昌郡守)로 있으면서 그 일을 권장하여 도와 주었는데, 얼마 안되어 여러 날 장마가 져서 남쪽 지방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음을 고하였으니, 대신 파종한 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었으나 그 심은 종자가 적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곡식 종자에 명칭과 품목(品目)이 비록 많지만, 늦게 파종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메밀과 녹두 두 종류가 있는데, 모두 습(濕)한 것을 싫어하고 건조(乾燥)한 것을 좋아하여 척박한 땅에 맞고 비옥한 땅을 싫어하므로, 이 종자를 기름지고 습한 땅에 심게 되면, 가뭄이 극심한 끝에 반드시 장마가 져서 한갖 애만 쓰고 공들인 보람이 없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신은 듣건대, 중원(中原)·통주(通州) 등지에 6권일 벼가 있는데, 초가을에 파종(播種)하여 초겨울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상해(上海)·청포(青蒲) 등지에는 깊은 물에서 자라는 홍도(紅稻)가 있는데, 6월에 파종하면 9월에 성숙(成熟)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안부(德安府)에는 향자 만도(香晩稻)가 있는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지 5, 60일이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늦게 모종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매년 절사(節使)가 갈 때 여러 방면으로 찾고 구하여 사가지고 와서 팔도(八道)에 전해 주어 심게 한다면, 1,2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 좋은 종자를 널리 퍼지게 하고 재황(災荒)을 구제하는 데 있어 어찌 작은 보탬이라 하겠습니까?
옛날에 송(宋)나라 진종(眞宗)은 점성국(占城國)에 추위를 견디는 벼가 있고 서천(西天)의 인도(印度) 땅에 낟알이 많은 녹두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어 그 종자를 구해다가 민간(民間)에 흩어 주고, 인하여 파종(播種)하는 법을 전운사(轉運司)에 내린 바 있습니다. 명(明)나라의 유학자(儒學者)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송제(宋帝)의 이러한 조치는 《주역(周易)》의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輔相)하여 <백성을> 좌우(左右)한다」는 데에 부합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곡물(穀物)을 함께 파종하게 하고, 유사(有司)가 고과(考課)하여 그 권면(勸勉)하여 도와준 수(數)를 써서 그 땅에 옛날에는 없던 것을 오늘날 있게 한 자는 관청에서 상(賞)을 주게 한다면, 옛 임금의 의범(懿範)을 찾을 수 있고, 이름있는 신하들의 좋은 모책(謀策)도 민멸(泯滅)되지 않을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성의(聖意)에 깊이 유념하셔서 유사(有司)의 신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신은 또 듣건대, 흉년을 구제하는 방책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상책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급선무는 제일 먼저 수리(水利)부터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래에 기호(畿湖)와 양남(兩南)에서 흉년을 고(告)하는 것은 거의가 봄·여름의 극심한 가뭄 때문인데, 오로지 물을 끌어댈 도랑이 있는 밭과 저수지에 의뢰할 수 있는 전지(田地)만이 풍숙(豊熟)을 독점(獨占)하고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제도(諸道)의 제언(堤堰)에 함부로 경작(耕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거듭 엄중하게 밝히고, 소착(疏鑿)의 공역(功役)을 각별히 베풀어 안부(案付)된 이외의 저수지의 제도를 더 만들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으면, 또한 지방관(地方官)으로 하여금 수축(修築)할 수 있는지를 물어서 강구(講究)하게 하고, 여러 고을과 진휼(賑恤)할 방법을 의논하여 주자(朱子)의 절동(浙東)의 주달(奏達)에 의거해서 기민(饑民)을 모집하여 수축하게 하소서.

만약 그 재력(財力)이 넉넉하지 못한 곳은 경내(境內)의 부요(富饒)한 가호(家戶)에게 장정을 모집하여 부역(赴役)하는 것을 들어주어 날마다 1백 명 이상씩 사역(使役)시키되 감관(監官)을 차정(差定)하고, 역사가 준공(竣工)된 후에 도신(道臣)이 그 명단을 계문하면, 모집한 장정의 많고 적음과 부역한 거리의 멀고 가까움과 소착(疏鑿)한 공사의 넓고 좁음을 살펴서 혹 추함(樞銜)을 단부(單付)하기도 하고 혹은 작질(爵秩)을 헤아려 주기를 한(漢)나라에서 설치했던 역전과(力田科)의 유의(遺意)를 본받게 하소서.

그리고 저수지를 신설(新設)하여 세금을 내는 땅으로서 기지(基地)로 차지했을 경우에는 또한 장문(狀聞)해서 견면해 주도록 허락한다면 한꺼번에 진정(賑政)과 언정(堰政)의 두 가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니, 이보다 편리한 방책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밭에 경작(耕作)하는 농사일이 무논에 경작하는 농사일보다 갑절이나 어려운데다가 또 쌀밥을 먹는 풍습이 백년 이래로 극성(極盛)해져서 물길이 먼 건조한 들이나 산에 매달린 계단식의 밭까지도 모두 무논으로 뒤짚어 만들지 않는 것이 없어서, 한 번 가뭄이 들면 번번이 포기해 버려 황폐해지고 있는데도 전안(田案)에 한전(旱田)으로 매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파속(把束)에 급재(給災)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구별하는 데 한 번 착오가 있으면 아전은 농간하여 감정(勘定)한 과실이 있게 되고 백성에게는 불모(不毛)의 땅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결과가 되니, 이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종합하여 자세히 밝히는 정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과조(科條)를 엄중하게 세워서 관개(灌漑)하는 수로(水路)가 있거나 저절로 나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본래는 한전(旱田)에 매어 있으나 뒤짚어 수전(水田)으로 만든 것은 자리마다 모두 조사하여 한결같이 도로 한전으로 만들게 하고, 만약 금법(禁法)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대전(大典)》의 속여서 경작한 율(律)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재해로 흉년이 드는 것을 대비하는 방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이는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의 한 방책이기도 하니, 또한 원하건대, 묘당(廟堂)에 하문(下問)하시어 재처(裁處)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본직(本職)은 체차(遞差)를 허락한다. 상소(上疏)한 내용이 매우 좋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일일이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겠다."
하였다.

[헌종실록 권5, 헌종 4년 6월 20일(기축)]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심상규(沈象奎)가 졸(卒)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네 조정(朝廷)을 섬긴 기구(耆舊)이다. 청아(淸雅)하고 개제(愷悌)한 자태로 단정하고 굳은 지조(志操)가 있었으며 나라를 빛낸 문장(文章)이요 가문을 정도(正道)로 잡아간 사람이다. 동조(同朝)에 추허(推許)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묘조(正廟朝)께서 재위(在位)하셨을 때에는 더욱 대우가 매우 융숭하여 복심(腹心)으로 의탁하였었다.
우리 순조대왕(純祖大王)께서도 선대(先代)의 뜻을 우러러 본받아 영의정(領議政)에 발탁하기에 이르렀으며, 나 소자(小子)에 미쳐서는 의탁하여 믿는 돈독함이 시귀(蓍龜)와 같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더욱이 원상(院相)의 노고까지 있는 것이겠는가? 병환(病患)의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안되어 장서(長逝)의 부음이 갑자기 이르니, 일단(一段)의 나라를 위한 그 고심(苦心)을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겠는가?
나의 이 애도(哀悼)하고 확연(廓然)한 심정을 비유할 데가 없다. 졸(卒)한 심 판부사의 집에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를 실어 보내고,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녹봉(祿俸)을 3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고, 3년상을 마치기를 기다려 사손(嗣孫)을 조용(調用)하도록 할 것이며, 예장(禮葬) 등의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심상규는 성품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판서(判書) 서유구(徐有榘)가 그 묘지(墓誌)에 이르기를, '공(公)은 성품이 오만(傲慢)하여 모든 사물에 있어 둘째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니, 당시의 사람들이 깊이 아는 말이라고 하였다. 시(詩)에 능하고 서간(書簡)을 잘하였으며, 장서(藏書)가 많아서 세상에서 그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음성이 그 몸보다 커서 전상(殿上)에 일을 아뢸 때마다 뭇 수레가 굴러가는 듯한 굉음(轟音)이 울렸다.

[헌종실록 권5, 헌종 4년 7월 30일(기사)]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김

홍근(金弘根)·김도희(金道喜)·박영원(朴永元)을 발탁하여 정경(正卿)으로 삼고, 심의신(沈宜臣)·조용화(趙容和)·남이무(南履懋)·한진호(韓鎭皞)을 아경(亞卿)으로 삼았다. 또 김이재(金履載)·서유구(徐有榘)를 발탁하여 종1품(從一品)으로 삼았다.

[헌종실록 권6, 헌종 5년 8월 10일(계유)]
상호군(上護軍) 서유구(徐有榘)가 두번째 상소(上疏)하여 휴치(休致)를 원하니, 윤허하였다.

[헌종실록 권6, 헌종 5년 8월 16일(기묘)]
희정당에서 진강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서유구(徐有榘)를 불러 보았다.

※ 위에 인용한 기사(記事)는 민족문화추진회刊 『정조실록』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刊 『순조실록』, 『헌종실록』에서 발췌(拔萃)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힙니다.

徐有榘 年譜

1764년[英祖 40] : 出生(11월 10일). 生父는 달성서씨 浩修, 養父는 澈修, 어머니는 漢山李氏 彝章의 따님.

1776년 (13세) : 평안도 관찰사였던 祖父 徐命膺을 좇아 평양에 머묾.

1777년(14세)[正祖 元年] : 조부 서명응에게 唐宋八家文을 배움.

1784년(21세) : 조부의 『保晩齋叢書』 「緯史」를 보완함.

1786년(23세) : 生員試에 급제.

1787년(24세) : 조부 서명응 타개함.

1788년(25세) : 『楓石敲篋集』 6권 이루어짐.

1790년(27세) : 文科에 급제함.

1792년(29세) : 奎章閣 待敎로 弘文館 正字를 겸함.

1794년(31세) : 弘文館 副校理가 됨.

1795년(32세) : 아들 宇輔 태어남.

1797년(34세) : 가을 淳昌郡守로 부임.

1798년(35세) : 應旨封事(「淳昌郡守應旨疏」)를 올려 농업론을 개진함.

1799년(36세) : 生父 서호수 타개함.

1801년(38세)[純祖 元年] : 司憲府 掌令, 刑曹參議, 承政院 同副承旨 역임.

1802년(39세) : 義州府尹이 됨.

1804년(41세) : 가을에 돌아와 左副承旨가 되고 형조참의, 驪州牧使 지냄.

1805년(42세) : 成均館 大司成이 됨.

1806년(43세) : 弘文館 부제학에 임명되나 나아가지 않음.
金達淳 獄事에 연루되어 仲父 徐瀅修가 유배되자 放弊되어 이후 隱居를 계속함.

1824년(61세) : 仲父 서형수 유배지에서 타개함.
돈녕부 都正으로 정계에 복귀, 淮陽府使로 나아감.

1825년(62세) : 右副承旨가 됨. 『杏蒲志』를 지음.

1826년(63세) : 楊州牧使가 됨.

1827년(64세) : 江華留守가 되나 任地에서 아들 宇輔를 여의게 됨.

1828년(65세) : 영의정 南公轍의 상주로 正卿에 오름. 대사헌(8월), 공조판서(10월) 지냄.

1829년(66세) : 養父 澈修 타개함.

1831년(68세) : 형조판서 지냄.

1832년(69세) : 備邊司 提調로 有司를 맡음. 예문관 제학, 호조판서, 홍문관 제학 역임함.

1833년(70세) : 耆社에 들어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함.

1834년(71세) : 任地에서 『種藷譜』를 廣布함.

1835년(72세)[憲宗 元年] : 돌아와 藝文館 提學, 議政府 左參贊(4월), 奎章閣 提學이 됨.(6월). 이조판서에 임명되나 사양함. 병조판서가 됨.

1836년(73세) : 水原府 留守가 됨.

1838년(75세) : 大司憲으로 救荒三策을 올리고 그에 따라 중국 절강지방에서 구입해 온 稻種 十二品을 시험 재배함. 奉朝賀가 됨.

1845년(82세) : 廣州 斗陵 別墅에서 侍史의 彈琴을 들으며 타개함.(11월 1일)

1846년[憲宗 12년] : 長湍 金陵里 先塋에서 장사지냄.(1월)

達城徐氏 徐有榘 家系圖

출전:『萬姓大同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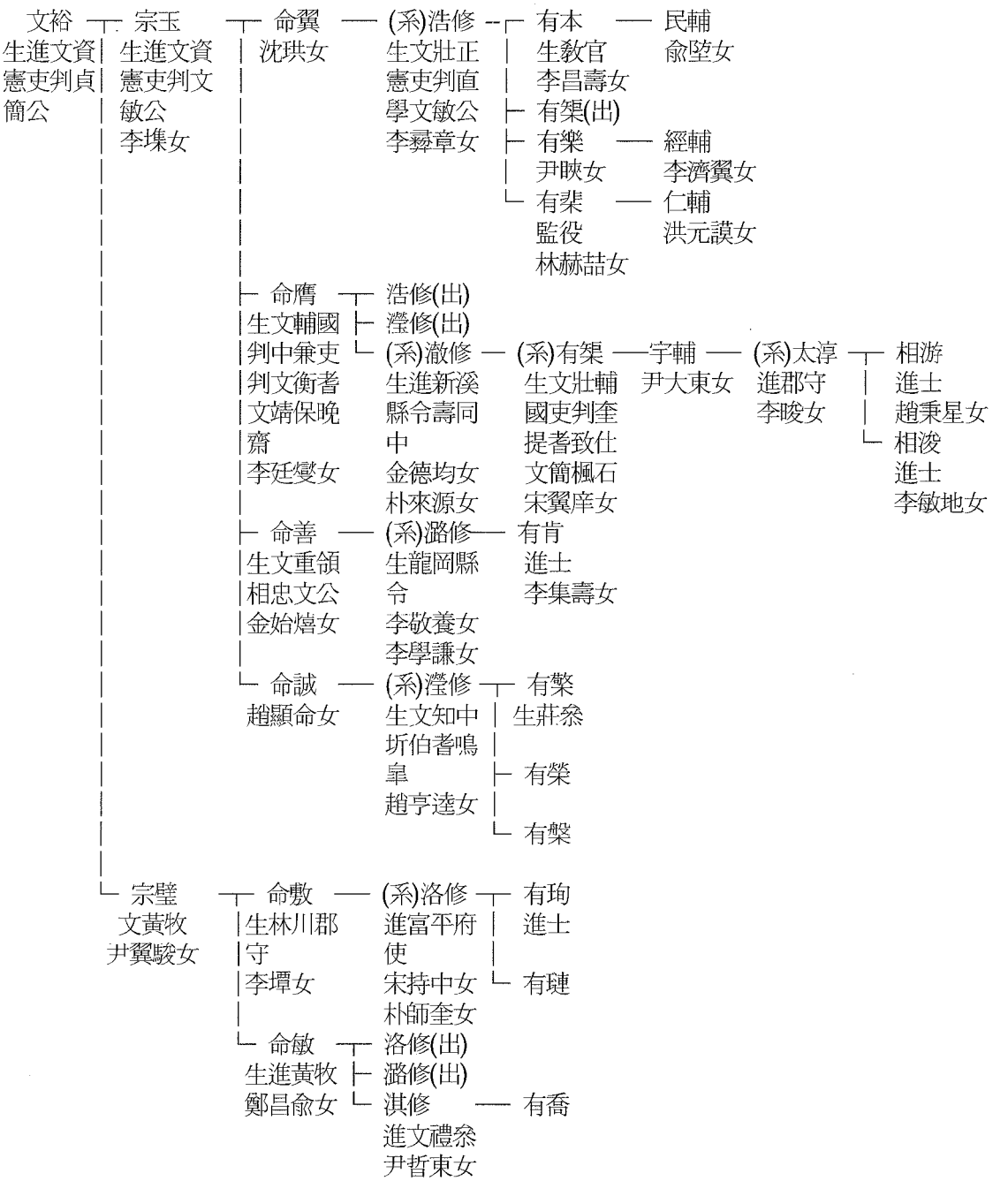

화영일록

2004년 2월 인쇄
2004년 2월 발간

편·저 자 : 경기도박물관
발 행 인 : 손학규
발 행 처 : 경기도 박물관
449-905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번지
TEL : 031)288-5300, FAX : 288-5379
편집·제작·공급 : (주)웅지기획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번지
TEL : 031)230-2235, FAX : 233-3011

An Administrative Diary of Seo Yoo-goo as the Mayor of Suwon

경기도박물관